

C·O·N·T·E·N·T·S



학생부

최우수상

- 세대주 권한 규정과 성별 불평등 효과 1
김정혜(서울대 법학과 박사과정)

우수상

-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에 의한 노동건강권 및 인권 침해
- 매장판매원이 겪는 감정부조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47
김동재 · 김민지 · 김종호 · 김형국 · 윤가영 · 임동환 · 조정희 · 최용범(연세대 법사회학회)
- 대학 내 장애학생의 학습권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연구 95
강영아 · 김희진 · 정소라(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특수교육전공)

가작

- 청소년이 바라본 신상공개제도의 적정성에 대한연구 137
오지윤(대원외국어고등학교)
- 학생의 선택권의 보장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을 중심으로- 175
김정식(서강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일반아동과 다문화 가정 아동과의 관계 개선 방안	215
최아라 · 한빛나(성결대학교 행정학과)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한국의 ‘혼혈’ 문제	267
한 솔(대원외국어고등학교)	
예술창작의 자유와 인권: 위태로운 외줄타기	315
유성애(한양대 철학과 석사과정)	



우수작

헌법상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구속기준	357
정영훈(국선 전담 변호사)	
주거권 지표 개발	
- 인권으로서의 적절한 주거	401
김명수 · 김은영 · 문혜정 · 임재우(인권운동사랑방 주거권지표개발팀)	

가작

다문화가정자녀의 교육권 보장에 관한 연구	451
김 솔(도계원초등 교사)	

학생부
최우수상

세대주 권한 규정과
성별 불평등 효과

김 정 혜

(서울대 법학과 박사과정)

목 차

Contents

제1장 서론	7
제1절 문제제기	
1. 세대주의 의의 및 관련 규정	
2. 세대주의 지위와 문제점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1. 연구 방법 및 범위	
2. 논문의 구성	10
제2장 세대주의 권한	10
제1절 주택마련	11
1. 주택의 공급	11
2. 주택의 임대	31
3. 주택조합의 구성	41
4. 제한 구역에서의 주택 신축허가	44
제2절 주택 관련 저축 가입 및 세금 혜택	50
1. 주택마련 위한 저축 가입	50
2. 주택 관련 저축불입금, 대출상환금의 소득공제	50
3. 주택 관련 저축의 이자 비과세	60
제3절 정착금 지원	61
1. 정착자금 용자	61
2. 정착금 및 보상금 지급	66
제4절 건강검진 및 취학 인정	70
1. 건강검진	71
2. 취학으로 인한 거주기간 예외	70

목 차

Contents

국가인권위원회

제3장 세대주 개념과 세대주 권한 규정의 효과	8
제1절 세대주 개념의 문제점	8
1. 세대주 개념의 불명확성	8
2. 세대와 세대주 동일시의 오류	9
제2절 가구주로서의 세대주 개념과 그 문제점	9
1. 가구주의 의의	10
2. 세대주와 가구주의 동일시	11
3. 가구주와 세대주의 불일치	3
4. 단독 생계부양자 모델의 비현실성	3
제3절 세대주 권한 규정의 불평등 효과	4
1. 입주자저축 가입 및 청약 자격	4
2. 주택 관련 저축 가입 및 세금혜택	5
3. 정착금 지원	12
4. 건강검진 및 취학 인정	6
제4장 세대주 권한 규정과 헌법상 평등권	7
제1절 세대주 권한 규정의 헌법적 문제	7
제2절 간접차별 해당성	8
1. 간접차별의 의의	8
2. 세대주 성비의 불균형	9
3. 세대주 권한 규정의 성별 불평등 효과	2
제3절 성차별의 정당성 판단	6
1. 평등권 심사	6
2. 심사척도	7
3. 비례성 판단	7
제5장 결론	4
< 참고 문헌 >	3

요 약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주로 등재된 자를 의미하는 ‘세대주’는 자격 조건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권한을 갖는다. ‘세대주’라는 용어는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나 그 의미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데다가 형식적 세대주 개념과 실질적 세대주 개념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실질적 세대주 개념은 통계상의 가구주 개념에 더 가까우며, 세대주 권한 규정은 세대별로 한 사람의 주된 생계책임자가 있을 것, 그 주된 생계책임자가 세대주일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대에 단 한 사람의 가구주가 존재한다는 가정은 생계책임이 분산되는 현실을 무시하며 가사노동 가치의 인정을 차단하는 것이다. 세대주일 것을 자격조건으로 하여 주택마련, 주택 관련 저축 가입 및 세금혜택, 정착금 지원, 건강검진 및 취학기간 인정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세대주가 세대를 부양하는 자, 세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자로서의 위상을 갖게 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특히 남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함으로써 대부분 세대주가 되지 못하는 기혼여성들에게 불평등한 효과(disparate impact)를 가져온다.

무엇보다도 주택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세대주에게 귀속시키거나 그러한 결과를 야기하는 세대주 권한 규정은 특히 기혼여성의 재산권 행사에 현저한 불이익을 야기한다. 비록 ‘세대주’라는 자격 조건은 외관상 성별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남성이 세대주가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 세대주에 대한 지원을 여성이 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대주 권한 규정은 타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헌법이 특별히 평등대우를 명령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차별 대우가 정당화되려면 엄격한 비례성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규정들의 입법 목적을 볼 때 목적 적합성은 인정되나 필요성을 충족시킨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여성의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것은 사익에 비하여 공익을 지나치게 우선하는 것으로 법익의 균형성을 해친다고 하겠다. 더구나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체 수단이 가능하므로, 해당 규정들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실제적 기여도에 따라 세대주 권한을 세대원들에게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다른 수단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1. 세대주의 의의 및 관련 규정

주민등록법 상 ‘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할 때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세대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주민등록법은 세대주의 요건으로서 성별이나 나이, 생계부양 등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며, 호주제가 폐지되기 이전에도 호적상 대표자인 호주가 반드시 세대의 세대주가 되어야 한다거나 호주승계순위에 따라야 한다거나 하는 조항은 없었다. 오히려 호주가 아닌 자를 세대주로 등록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의 기재순위는 세대주를 우선으로 한다고¹⁾ 하여, 호주와 세대주가 일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누구나 세대주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제에서 세대주의 의무와 권한은 광범위하다. 세대주를 언급한 규정들은 크게 네 종류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거주지 변경 등 각종 사항을 신고하거나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이다.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할 때 일차적인 신고의무자는 세대주이며,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 취득시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대주로 하여금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 등 건강보험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2항. 이 조항은 2008년 2월 22일에 대통령령 제20615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호주에 대한 언급이 삭제되었다.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방세법에 따라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납부 의무자는 세대주이다.

둘째, 주민의 의견을 파악하는 데 있어 세대주의 의견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할 때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상입지의 반경 2k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도로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도로명 변경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가 도로명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 도로명 변경 요구는 주소사용자 20%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하여야 하는데, 이때 동의를 할 수 있는 ‘주소사용자’는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단체의 대표자와 건축물 등의 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의 세대주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로 제한된다.

셋째, 성인인 가족 또는 세대원 중에서 편의상 1인을 선정하는 경우 가족이 아닌 세대주가 포함되는 조항이다. 향토예비군설치법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역예비군 소집통지서를 대리수령하거나 동원보류원서를 대리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 세대의 세대주 또는 가족 중 성인자이다.

넷째, 세대에 대한 주택공급이나 세금혜택, 각종 생계지원을 받을 자격이 세대주에게 부여되는 경우이다. 세대주일 것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사례는 특히 주택공급에서 도드라진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세대주일 것이 요구되며, 주택마련을 위한 각종 저축 상품도 세대주여야 가입할 수 있는 예가 많다. 세대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정착금 등도 세대주에게 지급된다. 또 하나의 특이한 사례는 건강검진권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40세 미만인 자는 세대주여야만 공단의 검진을 받을 수 있다.

2. 세대주의 지위와 문제점

누구나 세대주로 등재할 수 있으므로, 세대주 관련 규정들은 세대원 중 무작위로 선정된 한 사람이 세대주일 수 있음을 가정한 것이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렇다면 세대주에게 지나친 의무를 부과하거나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특히 후자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마저 있게 된다. 앞서 살펴본 네 가지 범주에서 첫째, 주거지 이전 등 각종 사항의 신고나 주민세 납부 의무와 같이 가

벼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둘째, 주민의 일차적인 의견 파악을 위하여 세대주의 의견을 수집하는 경우²⁾, 셋째, 예비군 소집 통지서의 수령자로 세대주를 지정하는 경우 등은 과도한 의무나 권한의 부여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그러나 네 번째 범주와 같이 세대의 부양과 관련된 사항에 세대주 자격을 요구하는 조항은 세대주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일 수 있다. 특히 주택공급에서처럼, 세대주로 하여금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규정은 세대의 재산이 세대주에게 집중되도록 하여 세대주가 주도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게 한다. 더욱이 우리 사회에서 남성이 세대주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임을 볼 때, 이는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단독 생계부양자 남성, 가사노동·육아를 담당하는 전업주부 여성이라는 가족 형태를 전제로 하여, 2인 이상이 경제적 부담을 분배하는 가족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가사노동이 가족의 생계에 기여하는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1. 연구 방법 및 범위

이 글에서는 네 번째 범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이 범주의 세대주 관련 조항들은 세대주일 것을 자격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들이므로 통틀어서 ‘세대주 권한 규정’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이상에서 정리한 네 범주를 비롯하여 본문에서 상술할 세대주 권한 규정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주제어를 ‘세대주’로 하여 검색한 결과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주제어 검색에서 잡히지 않았으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살펴본 과정에서 일부 추가한 조항들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세대주’를 언급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항을 검토하여 우리 법령이 세대

2) 물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 ‘세대의 의견’ 또는 ‘주민의 의견’이 아닌 ‘세대주의 의견’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행정편의적인 것이다. 동일 세대 내의 세대원간의 의견이 일치된다면 세대주의 의견이 곧 세대의 의견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세대주의 의견만을 반영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주민의 의견 수렴이라는 목적에 실질적으로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의 의사를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다만 세대주의 의견을 요구하는 사항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 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거주자 동의, 도로명 변경 요구와 같은 사안인 만큼 광범위하거나 중대한 권한은 아니라고 보아, 이 글의 논의 범위에서는 제외하였다.

주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지를 살피고, 그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세대주 권한 규정이 차별적 효과를 유발함을 보이고자 하였다. 세대주 권한 규정은 세대주일 것을 자격조건으로 하므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모두가 세대주에 비하여 평등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무배우 남성 세대원은 혼인 등의 사유로 세대를 분리하면 대부분 세대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차별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유배우 여성은 세대주가 될 확률이 훨씬 낮기 때문에 세대주 권한 규정으로 인한 차별에 더 취약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일 세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부를 중심으로 세대주 권한 규정의 효과를 탐색하였다. 부부 중 남편이 세대주가 될 확률이 더 높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세대주의 성별 통계를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세대주 권한 규정이 성별에 따라 다른 효과를 불러일으킴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평등권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차별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하였다.

2. 논문의 구성

본론에서는 각종 법령에서 세대주가 어떠한 권한을 가지는지 네 가지 영역별로 상술하고(2장), 이를 통하여 ‘세대주’라는 용어의 실질적 의미를 파악한 뒤, 세대주 권한 규정이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함으로써 불평등한 효과를 유발하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3장). 그 다음으로 세대주 권한 규정을 헌법적으로 검토하되, 주택마련과 관련된 규정을 중심으로 기혼 여성에게 미치는 불평등 효과를 살핍으로써, 이 규정들이 여성의 평등한 재산권 향유를 침해함을 논증하고,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4장)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할 것이다.

제2장 세대주의 권한

세대주일 것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그 중 가장 큰 권한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자격 또는 우선권이다. 그 다음으로 주택마련과 관련된 저축의 가입 및 세금혜택, 정착금 등의 주거안정 지원, 그리고 건강검진과 취학 기간 인정 등이 있다.

제1절 주택마련

세대주는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거나 주택의 일반·특별·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광범위한 자격 조건이다. 주택공급에 있어서의 ‘1세대 1주택’ 정책은 ‘세대주에게 주택공급’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³⁾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에 직계가족의 개념을 더하여 세대 개념을 재구성하고 있다. 동 규칙이 적용되는 세대주가 되려면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경우에 따라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한다. 배우자, 직계가족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는 ‘단독세대주’로 분류되어 20세 이상이어야⁴⁾ 동 규칙 상의 세대주 범위에 포함된다.

1. 주택의 공급

가. 주택의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의 ‘주택’⁵⁾은 크게 ‘국민주택등’⁶⁾과 민영주택으로 나뉜다. ‘국민주택등’에는 주택법 상의 ‘국민주택’이 포함되고, 국민주택에는 다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⁷⁾이 포함된다.⁸⁾

C 중 분양주택 및 D는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20세 미만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인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동 규칙 제4조 1항), 성인인 경우 세대주 여부는 기준이 아니지

-
-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공공건설임대주택에도 적용된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1항은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 4) 나이 규정은 1998년 6월 15일 개정에서 변경된 것이다. 이전에는 단독세대주 중에서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있는 자도 ‘세대주’로 인정하였다.
 - 5) 이하에서 ‘주택’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의 주택을 의미한다.
 - 6) ‘국민주택등’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지방은 100㎡ 이하)인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및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85㎡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5호, 주택법 제2조 3호.
 - 7)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국민주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60㎡ 초과 85㎡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5의2호.
 - 8) 이하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C, C를 제외한 ‘국민주택’을 B, B와 C를 제외한 ‘국민주택등’을 A, ‘민영주택’을 D라 한다. 즉 A, B, C의 합집합이 ‘국민주택등’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의 ‘주택’을 전체집합으로 보면 $(A \cup B \cup C) \cap D = D$ 이다.

만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라면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세대주여야 한다(동 규칙 제11조의2 1항 1호). 수도권 지역은 거의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⁹⁾ 수도권에 건설되는 대부분의 주택은 건설주체와 규모에 상관없이 세대주여야만 1순위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이를 제외한 모든 주택, 즉 A와 B, 그리고 C 중에서 분양주택을 제외한 주택과 근로자, 공무원 등의 위탁건설 사택은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하되, 무주택인 세대주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동 규칙 제4조 1항).

나. 주택의 특별공급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공급할 때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건설량의 10% 내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는데, 공급 대상은 무주택세대주¹⁰⁾이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항). 장애인은 예외 규정이 있어서, 세대주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세대주의 배우자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때에는 특별공급의 대상이 된다.

민영주택 공급시에도 국민주택등과 유사한 내용의 특별공급조항이 있다. 이때 역시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요구한다(동조 2항). 이외에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이나(동조 3항)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민영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도(동조 4항)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주택인 세대주여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대한 특별공급(동조 6항), 유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도(동조 7항) 무주택세대주일 것이 요구된다.

수도권정비계획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학교, 공장 등에 근무하는 자는 수도권 외 지역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데, 단 당해 근로자가 세대주여야 한다(동조 5항). 마찬가지로 산업단지 구역에 민영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

9) 2008년 8월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2008년 1월 30일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27호로 조정된 것으로, 자연보전권역 중 가평·양평·여주,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일부를 제외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건설교통부 보도자료, “지방 투기과열지구 모두 해제…지방 주택투기지역 6곳도 해제”, 2008.1.25 참조.

10)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뜻한다.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할 때, ‘세대원’에는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이 포함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호.

예정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종사자에게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4). 역시 당해 종사자가 무주택세대주여야 하기 때문에 종사자가 세대주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종사자의 세대에 대한 특별공급은 되지 않는다.

다. 주택의 우선공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때, 1순위 중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자는 우선공급의 대상이 되는데, 부양자는 무주택세대주일 것이 요구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청약예금제도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 2년이 지나지 않은 지역에서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장, 군수가 사업주체로 하여금 일정 자격을 갖춘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 때 우선공급 대상은 1, 2, 3순위 모두 세대주를 자격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거주 기간에 따라서만 순위의 차이를 둔다(동 규칙 제13조 3항).

2. 주택의 임대

가. 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되는 영구임대주택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이 입주할 수 있는데,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1항). 세대의 월평균소득 수준에 따라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을 막론하고 무주택세대주에게만 공급한다(동 규칙 제32조).

나. 주택의 우선임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어촌 주택 등의 시설물을 임대할 때,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그 사업이 시행된 읍·면·동 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인 세대주에게 우선임대할 수 있다(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3조).

3. 주택조합의 구성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하거나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주택법 시행령 제38조).

농어촌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도시지역의 주민과 당해 농어촌지역의 주민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농어촌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농어촌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주이거나, 건설예정지에 거주 목적의 이주를 예정하고 있는 세대주이거나, 조합주택 건설예정지에 거주하는 농림어업인이어야 한다(농어촌주택개발촉진법시행령 제9조). 즉, 주택 건설이 예정된 당해 농어촌지역의 거주자가 아닌 한, 조합원이 되려면 세대주여야 한다.

4. 제한 구역에서의 주택 신축허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만을 할 수 있다. 단 농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인데, 이때 농업인 주택은, 농업인이 있는 세대로서 농림축산업으로 인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의 절반을 넘거나 세대원 노동력의 절반 이상이 농림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여야 한다(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수도법 상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일정한 사유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그 중 한 경우가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때이다(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2호). 그런데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려면, 보호구역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원거주민으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여야 한다.

제2절 주택 관련 저축 가입 및 세금 혜택

1. 주택마련 위한 저축 가입

각종 입주자저축에 가입하는 것은 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다. 입주자저축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는데,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한다. 입주자저축은 종류에 따라 가입 자격이 제한된다.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이 가입할 수 있으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1항),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은 2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지만 세대주는 20세 미만이어도 가입할 수 있다(동규칙 제5조의3 1항).

주택청약 자격이 되는 입주자저축은 아니나 주택마련과 관련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또한 무주택이거나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만이 가입할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87조 1항).

2. 주택 관련 저축불입금, 대출상환금의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세대주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1채만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불입금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87조 2항). 또한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받을 수 있다(소득세법 52조 2항).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취득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거나(소득세법 52조 3항),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의 전환을 조건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소득세법 52조 4항 3호), 당해 연도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세대주가 아닌,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인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관련한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가 당해 특별공제를 받지 않거나,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차입 원리금 상환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않거나,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에 따른 소득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소득세법 52조 3항). 또한 세대주는 실거주와 관계없지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소득세법 52조 4항 1호).

3. 주택 관련 저축의 이자 비과세

세금혜택이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만이 가입할 수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으로는 2009년 말까지 가입하면 저축액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동법 87조 1항).

제3절 정착금 지원

1. 정착자금 용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지방중소기업 직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장기저리의 정착자금을 용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도지사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에서 장기저리의 자금을 용자할 수 있는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계 또는 기능계 부문 기술자격소유자이고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같은 회사에 2년 이상 종사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8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2. 정착금 및 보상금 지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정착금 및 보상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이후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정착 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등에 따라 정착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착금 지급 대상은 독립유공자 본인이거나 그 유족 중 세대주이다(동법 제26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순위는 사실혼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

순으로, 동 순위자가 여럿일 때에는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으로 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우선하고, 동 순위 유족들이 협의하여 보상받을 자를 지정할 수 있다(동법 제12조, 제5조). 하지만 정착금은 유족의 순위와는 무관하고, 세대주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된다. 보상금 또한 국내에서 이미 보상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유족 세대가 국내에 정착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상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상관없이 우선 정착한 세대의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제4절 건강검진 및 취학 인정

1.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일반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가 받을 수 있고, 이 중 암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필요한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

2. 취학으로 인한 거주기간 예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 또는 주택을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가 가능한데, 이 때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정함에 있어서도 세대주 규정이 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내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가 포함되는데,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서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제3장 세대주 개념과 세대주 권한 규정의 효과

제1절 세대주 개념의 문제점

1. 세대주 개념의 불명확성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¹¹⁾ 주민을 등록하게 하고 세대별로 주민등록을 편제한다. 각 세대에는 세대주를 두어 주민등록 변경시 신고의무를 부과한다. 인구 동태 파악과 행정사무 처리의 편의성만을 놓고 볼 때, 세대주가 될 자격을 따로 정하지 않아 누구나 세대주가 될 수 있도록 한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세대주는 주민등록법뿐만 아니라 수많은 법령에서 사용되는 개념인데, 각 법령에서의 세대주 개념은 누구나 세대주가 될 수 있다는 원칙과 무관하게 보인다. 물론 모든 법령이 하나의 용어에 대하여 일관되게 단일한 개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각 법령의 입법 목적에 따라 입법자는 해당 법령에만 필요한 개념을 새로이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는 각 법령에 그 개념의 정의 규정을 두어 다른 법령에서 사용된 동일한 용어와 혼동되지 않게 하고, 문언의 명확성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대주 권한 규정 가운데 세대주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유일하다. 다른 법령은 정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채 세대주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서도, 주민등록법 상의 세대주 개념과 모호한 관습상의 세대주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과거 긴급통화조치법시행령은 ‘세대주의 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세대주가 기혼 남성일 것을 당연시함을 암시하였고,¹²⁾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주민등록법 상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로는 판단할 수 없는 ‘사실상의 세대주’라는 문구를 쓰

11) 주민등록법 제1조.

12) 긴급통화조치법시행령 제5조는 화폐개혁을 위하여 세대별로 일괄하여 구권을 신고하도록 하였는데 신고 의무자는 세대주, 세대주의 처, 세대원 중 최연장자 순이다. ‘세대주의 부(夫)’라는 표현은 없다. 가장 마지막 개정인 1994년 개정은 재정경제원 및 소속기관 직제 개편에 따른 것이었고, 긴급통화조치법 및 그 시행령이 제정, 시행된 것은 1962년이었는데, 당시의 주민등록법 상 세대주나 그 전의 기류법 상 가구주가 되기 위한 자격으로도 ‘기혼 남성’과 같은 요건은 찾아볼 수 없다.

고 있다. ‘사실상의 세대주’ 개념이 적용되는 다른 사례는 한부모가족에 온라인복권 판매의 우선계약 체결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무배우이거나 배우자가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부양자인 경우에는 보호대상인 ‘한부모가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동법 제4조 2, 3, 4호). 그런데 한부모가족의 우선계약을 규정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한부모가족의 세대주”를 우선계약 체결의 자격 요건으로 하여,¹³⁾ 한부모가 아니라 한부모가족의 세대주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해석 상으로는 한부모와 자녀 이외의 가족이 동거하고 한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한부모와 그 자녀를 독립 세대로 보고 한부모를 세대주로 보아 한부모가 우선계약 체결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¹⁴⁾ 이 때 언급하는 ‘독립 세대’나 ‘세대주’는 주민등록표와는 무관한 사실상의 개념이다.

헌법재판소는 ‘1세대 1주택’이라는 법률 문언이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가를 살피면서, “‘세대’는 세대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가리키는 것임이 “사전상으로 명백”하므로 “‘1세대 1주택’이란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는 1가족이 소유하는 1채의 주거용 건물을 의미하는 것임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¹⁵⁾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명확하다고 판단한 ‘세대’ 또한 형식적 세대 개념과는 다르게, 가족의 범주와 교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대’의 ‘세대주’ 개념 역시 가족의 범주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2. 세대와 세대주 동일시의 오류

‘세대’가 생계를 공유하는 경제단위이자 공동주거단위라고 할 때, 주택공급, 세금혜택, 주거안정 지원 등이 세대 단위로 시행되는 것은,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재산 증식 목적보다는 주거의 필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며, 생계단위별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리화될 수 있는 정책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세대 단위의 지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시행하는가이다.

1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3호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를 우선계약 체결 대상 중 하나로 두고 있다.

14)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개념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가족지원과는 “부모가 세대주인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일 경우 별도가구로 보아 그 한부모가족만 별도의 세대로 보고 모자가정일 경우 모가, 부자가정일 경우 부가 세대주가 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15) 헌법재판소, 1997.2.20, 95헌바27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례집 제9권 1집, 162-3쪽 참조.

세대주 권한 규정은 세대 단위의 지원을 위하여 ‘세대주에 대한 지원’이라는 수단을 선택하였다. ‘세대주’를 유일한 요건으로 삼는 것은 세대주를 세대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세대주와 세대를 동일하게 여긴다는 의미라 하겠다. 그러나 세대주에 대한 지원은 세대에 대한 지원의 한 방식일 뿐, 언제나 세대주에 대한 지원으로써 세대에 대한 지원을 수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세대주에 대한 지원이 세대에 대한 지원과 다른 이유는, 세대주에 대한 지원은 세대원 공동이 아닌 세대주 개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세대 간의 관계에서 볼 때 세대 단위로 시행하는 지원은 특정 세대에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으나, 세대주에게 시행하는 지원은 세대 내의 부를 세대주에게로 편중시킨다. 만일 세대주가 단순히 지원을 신청할 자격만을 갖고, 그 결과가 세대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될 수 있다면, 세대에 대한 지원을 세대주에 대한 지원으로 같음함으로써 세대주에게 특별한 위상이 부여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세대주 권한 규정은 그렇지 않다.

세대주일 것을 자격조건으로 하는 많은 규정들은 세대주가 우리 법령에서 단순히 주민등록표 상의 등재자 이상의 의미를 가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세대주 권한 규정들이 전제로 삼고 있는 세대주 개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권한이 대부분 세대의 경제적 측면에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세대주와 유사한 개념인 가구주 개념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제2절 가구주로서의 세대주 개념과 그 문제점

1. 가구주의 의의

법령은 ‘세대’와 ‘세대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인구주택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각종 통계에서는 ‘가구’ 및 ‘가구주’ 개념을 주로 사용한다.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인 가구¹⁶⁾의 가구주는 실질적으로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하는 용어로, 단순히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로 등재된 자를 의미하는 세대주와는 다르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정의하는 가구주란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16)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2조 3호는 가구를 “1인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사람”¹⁷⁾이며, 가계조사에서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해당가구의 구성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또한 사실상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사람”¹⁸⁾으로, 가계지출의 의사결정자와는 다르다고 한다. 따라서 세대주가 형식적인 개념이라면 가구주는 실질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가구주 역시 세대주와 마찬가지로 단 한 사람만을 인정하는데, 이는 가구의 생계책임자라는 정의와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가구원 중 2인 이상이 생계비를 조달한다고 가정할 때, ‘생계를 책임’지거나 ‘사실상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 2인의 소득이 동일하거나, 소득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모아 생계를 공동으로 유지한다면 생계책임자는 한 사람일 수 없다.¹⁹⁾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통계 작성 시에 가구주를 2인 이상으로 집계하지는 않는다.

2. 세대주와 가구주의 동일시

주택공급, 주택공급과 관련된 저축의 가입 및 소득공제, 정착금 지급 등은 세대 단위로 행해진다.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은 제외)의 공급은 1세대 1주택이 원칙이고, 따라서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도 1세대 1통장만이 허용된다. 공공기금이 투입되거나 우선·특별공급을 하는 주택, 규모가 작은 주택 등 주거안정 지원의 성격이 강할수록 세대주 자격을 요구하는 편이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투기 목적의 주택 청약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택 거래를 제한하기 위하여서도 세대주 자격을 요구한다.

이때 세대 단위의 지원이 세대주에 대한 지원으로써 시행된다는 것은, 세대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곧 세대주라는 관념과 관계가 있다. 지방중소기업 직원이 정착자금 용자를 신청하려면 해당 직원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거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가주택을 신축하려면 혼인 후 세대주가 되는 사람이 원거주민이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세대 또는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사람이 세대주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직

17) 통계청(<http://www.nso.go.kr>)> 용어검색의 ‘표준용어’

18) 통계청 홈페이지> 용어검색의 ‘표준용어’

19) 통계청은 2인 이상이 동일한 금액을 모아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2인이 공동 가구주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질의에 대하여, 그러한 경우라도 “사실상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주로 조달”하여 “가족 구성상 생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가구주라고 답변하였다.

원 또는 원거주민으로서 조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세대주가 아니면 주요 생계부양자가 아니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세대에 대한 지원에 있어 세대주 자격의 요구는 다음의 수순에 따라 정당화됨을 알 수 있다.

- ① 세대에 대한 지원은 세대의 주된 생계부양자에게 행해져야 한다.
- ② 주된 생계부양자(S)는 세대주(A)이다($S \rightarrow A$).
- ③ 따라서 세대에 대한 지원은 세대주에게 행해져야 한다.

여기에서 다음이 도출된다.

- ②' 어떤 사람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그는 그 세대의 주된 생계부양자가 아니다($\sim A \rightarrow \sim S$).
- ③' 따라서 세대에 대한 지원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에게 행할 필요가 없다.

지방중소기업 직원이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착자금 용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②'와 ③'에 의해 정당화된다. 동시에, 세대주이기만 하면 주된 생계부양자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지원 대상이 된다. 이러한 경우 ①이 ③'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명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 ②'' 어떤 사람이 세대주이면 그는 그 세대의 주된 생계부양자이다($A \rightarrow S$).

②와 ②''를 종합하면, 주된 생계부양자(S)와 세대주(A)는 같은 범주임이 드러난다($S=A$). S가 통계상의 가구주 개념이므로, 결국 세대주 권한 규정에서 전제하는 세대주는 가구주를 의미하는 것이다.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사실상의 생계비용을 조달하는 자가 가구주 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가구주 이외의 가구원은 생계비용의 조달과 유지·관리에 아무런 기여도 하고 있지 않다면, 세대에 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마련을 위한 비용을 조달한 가구주에게 주택이 공급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일 수 있다. 가구주에게 주택을 공급하므로 주택마련과 관련된 저축의 가입이나 세금혜택도 가구주에게만 적용되면 충분하고, 정착을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것도 가구주이므로 정착금은 가구주에게 지급하면 된다는 논리이다. 건강검진이나

취학 인정 또한 그러하다.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의 건강을 미리 검진함으로써 가구원들의 생계에 미칠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하여 사회복지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고, 가구주의 취학은 가구원들의 장래의 생계를 더 나아지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직계비속의 취학과 더불어 가구주의 취학으로 인한 이주에 예외를 둔다는 것이다.

결국 형식상의 세대주에게 세대의 경제적 부양이나 재산권과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세대의 주된 생계부양자가 당연히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을 것이라는 암묵적 전제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전제는 두 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첫째, 가구주와 세대주가 동일할 것이라는 가정, 둘째, 가구주, 즉 세대주는 단 한 사람일 것이라는 가정이 그것이다.

3. 가구주와 세대주의 불일치

앞의 논리구조에서, ①로부터 ③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②가 참이어야 한다. 그러나 ②가 언제나 참인 것은 아니다. 주된 생계부양자이지만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만 해당 세대의 주된 생계부양자가 아닌 사례는 경험적으로 충분하며, 세대주가 될 자격조건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누구나 세대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논리적으로도 가능하다. 호주제도는 폐지되었지만 남성 ‘가장(家長)’이라는 상상적 존재는 아직 굳건하여, 남편 또는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서 남편 또는 아버지는 주된 생계부양자가 아닌 경우에도 여전히 ‘가장’으로 호명된다. 세대주가 세대를 ‘대표’하는 자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이상, 많은 가정에서 가구주 아닌, 즉 주된 생계부양자가 아닌 남성을 세대주로 등재하는 양상은 일반적일 것으로 보인다.²⁰⁾ 이러한 사례들은 ②와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주된 생계부양자와 세대주는 항상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S≠A). 즉 가구주가 세대주일 것이라는 가설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4. 단독 생계부양자 모델의 비현실성

기술했듯 통계상 가구주는 2인 이상 집계되지 않고, 세대주 또한 세대별로 1인만 등록할 수 있다. 세대주 권한 규정이 1인의 세대주를 규정한 주민등록법 상 세대주 개념을 변형 없이 차용하는 것은 생계부양자 남편, 전업주부인 아내, 그리고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되는

20) 이 논문 제4장 2절에서 후술할 세대주 성비 통계는 이러한 관습이 잔존하고 있음을 입증해 준다.

소위 ‘정상가족’을 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²¹⁾ 하지만 현실의 가족은 한 사람의 생계부양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모습이 아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점진적이지만 증가하고 있으며, 한 사람만의 소득으로는 가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환경이 심화되고 있다.

1995년과 2005년에 행해진 가구 총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생계부양 책임을 분담하는 가족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주 부부를 살펴볼 때, 아내가 일하는 가구는 35.7%에서 39.2%로 3.5% 증가하였고, 맞벌이 가구도 33.4%에서 35.2%로 소폭 증가하였다. 소위 ‘정상가족’의 형태인, 생계부양자 남편과 전업주부 아내의 조합은 55.6%에서 46.3%로 9.3%나 하락하여, 더 이상 일반적인 가족 형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단독’ 생계부양 가구로 범위를 넓혀 아내만 일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2005년 기준 50.3%로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²²⁾²³⁾ 이렇듯 세대에 단 한 사람의 생계부양자가 존재하고 그가 세대주일 것이라는 확실적 가정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제3절 세대주 권한 규정의 불평등 효과

1. 입주자저축 가입 및 청약 자격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가정에서 출발한 세대주 권한 규정은 세대주와 세대주 아닌 세대원 간의 불평등을 야기한다. 입주자저축에 가입하는 것은 단지 동산을 소유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입주자저축의 가입자만이 주택을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자가 분양권자가 되고, 분양권자가 소유자가 된다. 입주자저축은 2인 이상의 명의로 가입할 수 없고,

2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의하는 ‘세대’가 바로 이러한 구성인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8호.

22) 통계청 홈페이지> 주제별통계> 인구·가구> 인구총조사> 가구부문> 총조사가구(2005)> 경제활동(10%표본)> “가구주 부부의 경제활동상태/산업별 가구(일반가구)-시도”, 통계청 홈페이지> 주제별통계> 인구·가구> 인구총조사> 가구부문> 총조사가구(1995)> 경제활동(일반가구:10% 표본)> “시도/가구주 부부의 경제활동상태 및 산업별 가구(일반가구)” 참조.

23) 따라서 주요 통계가 사용하는 ‘가구주’ 개념 역시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본다. 1인의 가구주만을 집계하는 방식으로는 생계부양의 실제 책임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없다. 가구주의 개념상 49.9%의 생계비용을 조달하는 자 대신 50.1%의 생계비용을 조달하는 자가 가구주로 집계될 것이므로 남편보다 소득이 적은 아내는 가구주 통계에서는 ‘생계책임자’로서 드러날 수 없다. 한편 아내의 소득이 더 많다고 해서 가구주로서 통계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기도 어렵다. 통계조사의 응답자는 가구주 1인을 기재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관념적(남성)가장을 가구주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

입주자저축 가입자 이외의 자가 공동청약자가 될 수도, 공급받은 주택의 공유자가 될 수도 없다. 세대주 아닌 세대원이 입주자저축 불입금을 일부라도 납부하는 등 주택마련에 기여하였더라도, 공급받은 주택을 공유로 하기 위해서는 증여나 명의신탁해지와 같은 별도의 법률행위가 필요하다. 결국 청약저축 가입 자격이나 주택 청약 자격, 또는 1순위 자격으로 세대주일 것을 요구하는 조항들은 해당 세대 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을 세대주로 제한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2. 주택 관련 저축 가입 및 세금혜택

입주자저축을 제외하고 주택마련과 관련된 저축에 가입하거나 세금혜택을 부여함에 있어 세대주 자격을 요구하는 조항들은, 주택공급과 같이 세대주를 부동산 소유자로 사실상 강제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으나, 세대주를 중심으로 주거안정 지원 정책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겠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주택 청약과 직결되는 입주자저축은 아니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불입금을 소득공제해 주는 저축이다. 이와 같은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저축을 세대주만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세대주를 주택마련에 가장 크게 기여한 자, 장래 주택의 소유자가 될 자의 지위에 올려놓는다. 이는 세대원 공동의 기여를 통하여 주택 관련 저축을 해온 경우라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주택 관련 저축의 불입금과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는 세대주로 제한되고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에 의한 공제 대상이 되는 세 가지 저축 중 청약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처음부터 세대주만이 가입할 수 있는 저축이다. 세대주가 아닌 자도 가입할 수 있는 저축은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뿐이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2년 말로 폐지되어 추가 가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상의 소득공제에서 세대주만이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은 주택공급에서 세대주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며 독자적인 의미는 없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 차입자에 대하여 행해지는 특별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반드시 세대주에게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세대원이 대신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에는 다만 세대주가 우선하여 공제를 받는 것으로, 주택공급의 경우보다는 세대주의 권한이 다소 완화된 것이

다. 그러나 혜택의 대상이 세대주로 제한되어 있거나 세대주에게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주택에 대한 일차적 책임과 권리가 세대주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효과는 마찬가지이다.

3. 정착금 지원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정착금 지급이나 용자도 이와 유사하다. 세대주인 지방중소기업 직원에게 정착자금을 장기저리로 용자하는 경우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게 정착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정착금으로 주택을 마련할 때 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세대주여야 할 것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세대주에게 정착금이 지급된다고 해도 그것이 세대주의 특유재산이 될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세대주에게 정착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은 세대주가 세대의 주거에 주된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는 정착금 용자에서 좀더 두드러진다. 지방중소기업 직원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정착금 용자 대상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세대에 대한 지원이 세대원 중 한 사람 또는 세대원 공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신 세대주에게 행해지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착금 지원 관련 조항들은 세대주에게 재산의 소유권을 강제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세대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로서의 위상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겠다.

4. 건강검진 및 취학 인정

건강검진과 취학기간 인정 조항은 다른 방식으로 세대주의 위상에 영향을 미친다. 세대주는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직장건강보험상의 가입자가 아니라면, 40세가 될 때까지는 건강보험공단의 일반검진 및 암검진을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은 직장가입과 같이 부양자와 피부양자를 나누지 않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함에도 불구하고 40세 미만의 지역가입자인 세대주는 세대주라는 이유로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 용도변경에 있어서는,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등²⁴⁾의 취학을

2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동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직계비속등’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세대주의 배우자 등을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세대주의 배우자 등이 포함된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서 거주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이외의 자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서 거주하였다면 그 취학기간은 거주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듯 세대주는 세대원 중에서 국가가 건강검진 혜택을 부여하는 자이며, 취학으로 인한 일시적 거주 이전에 예외를 둘 수 있는 자이다. 세대원과의 관계에서 보자면 이와 같은 예외 규정으로 인한 결과는 동산과 같이 세대원 모두에게 배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대주에 대하여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가진다. 결국 세대주의 건강권과 교육권은 다른 세대원에 비해서 한차원 더 높게 보장되는 셈이다.

제4장 세대주 권한 규정과 헌법상 평등권

제1절 세대주 권한 규정의 헌법적 문제

지금까지 세대에 대한 지원을 세대주에게 귀속시키는 조항들이 세대주와 세대원간의 불평등을 발생시키며 이는 특히 여성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렇다면 세대주 권한 규정은 헌법상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세대주에게 이상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상의 차별 금지를 위반하는 것인가? 헌법은 법앞의 평등을 규정하면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대주 권한 규정은 성별을 이유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²⁵⁾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호주제도는 호주승계순위에 있어 남성을 여성보다 우선하고, 혼인시 남성의 호적에 여성이 입적하도록 하여 성별에 따른 다른 대우를 명시하고 있었으나, 세대주는 성별에 상관없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주로 등재되기만 하면 된다. 그러므로 세대주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외관상 성별중립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주 권한 규정으로 인한 혜택이 남성에게 집중된다면 이는 성차별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의도적으로 차별적인 기준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사실

다면 굳이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등’이라고 제한하여 표현하지 않았을 것으로 이해된다.

25) 헌법재판소, 2005.2.3, 2001헌가9·10·11·12·13·14·15, 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편, 헌법재판소 판례집 제17권 1집, 1쪽 참조.

적인 차이로 인하여 특정한 집단에 대하여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이는 차별의 한 양태로서 간접차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다음에서는 세대주에게 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는 규정을 중심으로 하여 헌법상 성차별금지에 위배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앞서 제2장에서 상술한 세대주 권한 규정 중 제1절 ‘주택마련’과 제2절 ‘1.주택마련 위한 저축 가입’이 검토 대상이 된다.²⁶⁾

제2절 간접차별 해당성

1. 간접차별의 의의

헌법 제11조 1항에 따라 성별을 기준으로 한 의도적인 차별은 당연히 금지되는데, 문제는 간접차별도 금지 범위에 포함되는가 여부이다. 간접차별이란 대우하는 기준 자체는 일견 중립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로 인하여 특정한 집단에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그 기준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직접차별의 결과가 개인적인 것이라면 간접차별의 결과는 집단적이다. 헌법은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법적 평등을 기본으로 하지만, 법적 평등은 현실의 차별을 온존시키는 경향이 있다. 역사적인 차별 또는 구조적인 차별로 인하여 다른 위치에 있는 집단에게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의 대우만을 허용한다면 그러한 차별은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평등을 지향하고자 한다면 구조적 차별을 소멸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써, ‘같은 것도 다르게, 다른 것도 같게’ 대우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적 평등까지도 평등원칙은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때문에 비록 ‘중립적인’ 기준을 사용하여 법적으로는 다르게 대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차별적 효과가 발생하는 간접차별까지도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²⁷⁾

26) 제2절의 2, 3은 처음부터 세대주만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혜택에 대하여 따로 논의할 실익이 없거나(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추가 가입이 더 이상 불가능하거나(근로자주택마련저축),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아예 막혀 있지는 않은 경우(이자 지급에 대한 특별공제)에 해당되므로 평등권 심사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한편 제4절 ‘건강검진 및 취학 인정’은 후술할 평등권 심사 중 자의금지 심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본다. 세대주에 대한 4절의 혜택을 다른 세대원은 평등하게 향유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세대원의 건강권이나 교육권이 침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4절의 혜택은 세대의 생계 위험을 줄이고 세대의 장래 생계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은 세대주가 가구주라는 전제 위에서만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보았듯이 세대주와 가구주는 동일한 범주가 될 수 없으므로 4절의 조항들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역시 간접차별을 차별의 한 양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제대군인 가산점제 판결²⁸⁾이다. 제대군인이 공무원 시험 등에 응시할 때 3~5%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여성도 지원에 따라 현역복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군인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거의 모든 여성은 제대군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는 반대로 남성의 80% 이상이 제대군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성별에 의한 차별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간접차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가산점 부여에 있어 ‘제대군인’이라는 기준은 그 자체로서 성별을 나타내는 직접적 차별이 아니고 그 기준의 적용 결과 대부분의 여성이 대상에서 배제됨으로써 차별적 결과가 발생한 사례이므로, 이는 간접차별의 위헌성을 인정한 판례라 볼 수 있다. 이렇듯 성별을 이유로 하여 명시적으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더라도 성별에 따라 불평등한 효과를 초래하고 그 차별에 합리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없다면 간접차별로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금지 규정에는 간접차별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차별 판단 기준으로서 “정리해고의 합리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동일 직장내 배우자가 근무하는 자를 정리 해고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회 관념 또는 당해 직업의 속성상 특정 성의 해고를 강요하거나 특정 성이 우선적으로 해고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²⁹⁾를 예시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을 차별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서도 헌법재판소 판결과 유사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의 농업종사경력 산정 방식에 관한 결정³⁰⁾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농업인’ 인정에 있어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상의 소유자 및 농업인’이라는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 여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이 기준은 성별중립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 기준을 적용할 때 남성을 세대의 대표자로 보는 것을 당연시하는 풍토에 따라 여성의 농업경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성별에 따라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고, 그러한 기준의 채택에 합리성이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27) 간접차별의 개념이 모호하여 입법자의 형성의 여지가 지나치게 축소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으나, 차별적 효과의 의미를 중시하면서 간접차별이 차별에 포함됨을 인정하되 정당화요건이 완화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한다. 계획열, 헌법학(중) 보정판, 2002, 227-8쪽 참조.

28) 헌법재판소, 1999.12.23, 98헌마363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편, 헌법재판소 판례집 제11권 2집, 770-99쪽 참조.

29) 차별연구모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판단을 위한 지침, 2002, 33쪽.

30) 국가인권위원회, 2005.9.28, 05진차467 결정.

당해 제도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현행법 중 간접차별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이다. 동 조항은 채용 및 근로조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도 ‘차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동일한 조건의 적용이 특정한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이 정당하다면 간접차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³¹⁾도 ‘차별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차별로 명시함으로써 간접차별을 여성에 대한 차별에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17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차별금지법안³²⁾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안 또한 간접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었다.

이상으로부터 성별에 의한 간접차별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성별에 상관없이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어야 하고, 둘째, 한쪽 성에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현저히 적고, 셋째,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넷째,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어야 한다. 세대주 권한 규정에서 ‘세대주’는 성별을 판단 척도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세대주일 것’이라는 요건은 ‘동일한 조건’이라는 원칙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서는 둘째와 셋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넷째 요건인 정당성에 대해서는 절을 바꾸어 제3절에서 논한다.

2. 세대주 성비의 불균형

세대주 권한 규정들이 성별에 따라 조건 충족의 정도가 현저하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현재 세대주로 등록된 자의 성별 비율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성별에 따라 세대주의

31)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조약 제855호로 1985년 1월 26일 발효되었다. 동 협약 제1조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기타 영역에서,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여성에 의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식, 향유, 행사를 무효화하거나 저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성별에 기초한 구별, 배제, 제한”이라고 하여, 차별의 목적이 있는 행위만이 아니라 차별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까지도 차별로 보고 있다.

32) 차별금지법안은 제3조 2호에서 “외견상 성별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를 차별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의안번호 제8002호, 정부제출 차별금지법안(제출 2007.12.12). 동 법안은 17대 국회의 임기만으로 자동폐기되었다.

비율에 크게 차이가 없다면, 최소한 성별에 따른 차별적 효과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된다. 그러나 남녀 중 일반적으로 남성을 세대의 대표자로 인정하는 관행은 세대주 성별 비율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전국 1,800만여 세대 중 남성 세대주는 13,584,120명(71.9%), 여성 세대주는 5,304,750명(28.1%)으로 남성이 여성의 2.5배 정도가 된다. 그러나 남녀 중 누가 더 세대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보기 위해서는 부부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의 세대주 성비를 파악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부부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남성을 세대주로 등록하는 경향이 더 확연히 드러난다. 부부 중 남편이 세대주가 되는 비율은 남편 9,194,835명(96.6%), 아내 322,375명(3.4%)으로 대부분의 부부 동일 세대에서 남편이 세대주가 됨을 알 수 있다.³³⁾ 여성 세대주 530만여 명의 대부분은 남편과 같은 세대에 속하면서 아내가 세대주로 등록된 것이 아니라, 무배우자이거나 남편과 독립세대를 구성한 이들이다. 설령 세대주가 주된 부양자라고 가정하여 남녀 취업자수³⁴⁾와 세대주수를 단순 비교해보더라도, 취업자가 세대주일 확률은 남성 97.9%, 여성 52.9%로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단순비교는 가사노동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성이 세대의 생계에 기여하는 바가 세대주 자격으로 반영될 가능성은 이보다 더 낮다고 할 수 있다.

농가는 남성을 세대주로 하는 경향이 더욱 높은 편이다. 농업인 및 그 가족의 성별 인구와 농업인 세대주의 성별 인구³⁵⁾를 보면, 남성이 세대주가 될 확률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농가 인구 구성비는 여성이 48.5%, 남성이 51.5%로 남성이 다소 많을 뿐이나, 전체 세대주 중 남성 비율은 80.4%에 이른다. 농가에서 남성이 세대주가 될 확률은 40.5%이지만 여성은 10.5%로 남성이 여성의 약 4배에 달한다.

33) 세대주 성비에 대한 두 가지 통계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주민과 제공 자료임. 2008.8.18 기준.

34) 2008년 7월 기준으로 취업자는 남성 13,879천명, 여성 10,025천명이다. 통계청 홈페이지> 주제별통계> 고용·노동·임금> 고용> 취업자(63년~현재)> “연령/성별 취업자” 참조.

35) 이하의 수치는 농림부에서 농업인의 건강보험 지원을 위하여 2004년 작성한 통계이다. 농업인건강안 전정보센터(<http://farmer.rda.go.kr>)> 농업인 질병/사고 현황> 농업인 손상차트> 건강보험> “연구대상자 성별, 연령별 인구분포” 참조.

3. 세대주 권한 규정의 성별 불평등 효과

가. 소유권 박탈

이렇듯 여성이 세대주가 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것은 세대주 자격을 요구하는 모든 권한들을 향유할 가능성 또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했듯, 세대주가 아닌 여성은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없고, 주요 공공건설 주택을 청약할 자격이 없다. 이는 여성이 주택마련에 기여한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함께 마련한 주택은 공동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인 남편의 특유재산이 된다. 부부 공동의 노력과 비용으로 마련한 주택이 세대주 1인에게 귀속된 경우, 소유권을 복구하려면 증여나 명의신탁해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판례상³⁶⁾ 명의신탁해지가 적법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탁자가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히려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을 띤 증여로 간주한다. 때문에 재산 출연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운 때에는 자신의 재산을 거꾸로 증여받아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만일 소유권을 복구하지 않고 소유자인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 명의신탁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여성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지위에 놓이게 되고, 상속세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증여나 명의신탁해지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고자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권을 곧바로 공유로 변경할 수 없어서,³⁷⁾ 상당 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결과를 낳는다.

36)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재산 취득에 있어 신탁자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예컨대 소규모 사업장에 단기간 취업을 반복하는 많은 기혼여성들의 사례와 같이 재산의 대가 부담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는 이 판례와 같은 입장 아래에서 명의신탁을 인정받기가 힘들 것으로 보이며, 가사노동 가치는 전혀 반영될 여지가 없게 된다. 대법원, 1998.12.22, 98두15177 판결. 따름판례로는 대법원, 2007.8.28, 2006스3 결정, 대법원, 2007.4.26, 2006다79704 판결.

37) 주택법 제41조의2 1항 1호. 수도권과 충청권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그 이외의 지역은 1년간(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 1항) 상속을 제외한 일체의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우리 민법은 재산 명의에 따라 그 소유자를 추정하며, 혼인 중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는 부부별산제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때문에 혼인의 파탄시에나 재산 분할이 가능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소유권 분쟁을 ‘가정파탄’의 한 양상으로 이해하는 우리 문화에서 여성이 세금과 복잡한 절차를 감수하면서까지 소유권의 복구를 끝까지 시도하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부부관계에서 입증 자료를 준비해 두면서 명의신탁의 형태를 갖춰 세대주인 남편 명의로 주택을 분양받는다든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우며, 본인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으로는 강제된 명의신탁이란 과연 어떤 법리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도 의문이다.

나. 주택마련의 불이익

이외에도 주택마련에 있어 세대주 자격을 요구하는 조항들은 세대주가 아닌 기혼여성에게 불평등한 효과를 가져온다.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세대주가 아닌 여성은 우선공급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의 임차인 지위는 남편인 세대주가 갖게 된다.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거나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 주택을 설치할 자격도 얻을 수 없고,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는 일 또한 불가능하다.

세대주 자격과 근로자 지위 등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는 불평등한 효과가 세대에까지 미친다.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공장이나 산업단지 구역에 입주 예정인 기업 등의 종사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조항에서는 당해 종사자가 세대주일 것을 요구한다. 만일 종사자가 여성이고 관행에 따라 남편을 세대주로 등재하였다면 해당 세대가 비수도권이나 산업단지 구역으로 이주한다고 해도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는 없다. 세대주인 다른 (남성) 종사자에 비하여 주택마련에 어려움을 겪든지, 아니면 주거이전을 하지 않기 위해 퇴사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세대주를 당해 종사자인 여성으로 변경한다면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남편인 세대주에게 이미 다른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면, 세대주 변경은 단순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주거불안으로 인해 퇴사가 선택지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³⁸⁾

38) 기혼여성을 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발령하는 것이 우회적인 해고 통보이기도 하다는 현실을 보면, (대부분 세대주인) 남성 종사자가 겪지 않을 주거 마련의 부담을 (대부분 세대주가 아닌) 여성 종사자가 겪는다는 점은 근로환경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 가사노동 가치의 부정

세대주 권한 규정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생계부양자 남편과 전업주부 아내로 구성된 가족에서도 문제는 남는다. 세대주에게만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에서는, 직접적으로 소득을 발생시키지는 않으나 생계유지에 유무형의 기여를 하는 가사노동이 전혀 고려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성발전기본법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법제도나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³⁹⁾ 이혼시 전업주부였던 배우자의 재산분할권을 인정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이다. 한 연구는 전업주부의 무급가사노동의 가치가 월 106만원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⁴⁰⁾ 하지만 세대주 권한 규정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이기도 하다. 행여 세대주가 세대원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생계비를 조달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형성된 재산은 가사노동의 조력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기는커녕 가사노동은 여성의 몫이라는 현실규범으로 인하여 취업여성조차도 “이차부양자”⁴¹⁾로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세대주 권한 규정은 여성이 ‘이차부양자’로나마 인정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세대주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세대주가 아닌 대부분의 여성은 일차적이건 이차적이건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 형성에 기여가 없는, 단지 세대의 일원으로서만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맞벌이 세대인 경우는 여성의 재산권이 이중으로 침해되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취업자인 기혼여성⁴²⁾의 가사노동시간이 기혼남성에 비해 4.9배에 달하

39) 여성발전기본법 제26조.

40) 이 연구는 전업주부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체여성과 남성의 무급가사노동 가치를 비교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체여성은 월 66만원, 전체남성은 월 16만원의 가치가 있는 무급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금액은 Hybrid II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것을 천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이다. 김종숙 외, 여성 무급가사노동의 실태와 가치평가, 가계생산의 국민소득계정 통합을 위한 연구보고서, 2005, 133-4쪽 참조.

41) 김수정·김은지, 한국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과 경제적 의존의 관계, 2007, 170-1쪽 참조. 이 글에서 필자들은 한국 가족의 강력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여성을 “이차부양자이자 가사노동전담자로 규정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남성의 가사노동 절대 시간은 매우 낮고 여성의 소득기여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이와 달리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소득이 높은 경우 여성의 소득 증가에 따라 줄어들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성의 소득 증가에 따라 소폭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 준다.

42) ‘취업주부’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지만 여기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 용어는 여성이 취업을 했을 때라도 가사노동의 주된 책임을 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만, 역으로 취업한 여성도 본질적으로는 가사노동의 책임이 있는 ‘주부’임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본다.

기 때문에⁴³⁾ 맞벌이 세대에서 무급가사노동이 생산하는 가치에 있어서는 취업자인 기혼 여성의 기여도가 남성보다 훨씬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남편이 세대주가 되어 세대주로서의 지원을 받는 경우, 아내는 본인의 근로소득이 생계에 기여하는 바를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으로 인하여 가계에 기여하는 바도 역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결국 주거안정을 지원하거나 각종 혜택을 부여함에 있어 세대주일 것을 자격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여성이 가사노동을 통하여 가정경제에 기여한 데 따른 재산권을 전면 부인하는 셈이다.

라. 농업인 지위의 불안정

세대주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세대주 권한 규정의 효과와 관련하여 농가의 경우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저소득 농가에서 세대주가 된다는 것은 농업인의 지위와 직결되기 쉬우므로, 농가의 세대주 성비는 도시보다도 성별 불평등 효과와 연관성이 높다고 하겠다. 도시에서는 예컨대 공공건설 주택을 분양 받는 대신 단독주택을 공동명의로 매입하는 것과 같이 세대주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방식의 재산권 행사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지만, 농가의 경우 세대주 여부의 영향이 도시보다 더 직접적이다.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일정액 이상의 거래 실적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거나, 일정 기간 이상 농업에 종사할 것 등이 요구되는데, 여성이 이 조건을 충족하여 농업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⁴⁴⁾ 농업인 경력을 증명

43) 2004년 기준으로 20세 이상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평균 39분, 20세 이상 기혼여성 중 취업자는 3시간 10분이다. 남성 통계는 혼인상태에 따른 분류일 뿐 취업여부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기혼남성 중 취업자의 가사노동시간은 더 짧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홈페이지> 주제별통계> 보건·사회·복지> 사회> 생활시간조사> 생활시간조사(1999년, 2004년)> 평균시간(1999, 2004)> “혼인상태별평균시간(20세 이상)”, “20세이상 기혼여자의 취업여부별 평균시간” 참조.

4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은 ①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⑤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을 농업인으로 본다. 그런데 농업인이 되기 위한 이상의 요건들은 여성이 충족하기 어렵다.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이름으로 농산물을 출하하여야 하고 본인의 통장을 개설하여 농산물 판매 대금을 입금한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대개는 남편의 명의로 하는 것이 관행이다(한 연구에서는 ‘출하하는 전 농산물을 남편명의로 상품을 출하하는 농가’, ‘남편 명의의 통장으로 상품 판매 대금의 전부를 거래하는 농가가 각각 75.7%, 74.3%로 집계되었다. 박민선, 여성의 재산권 확립방안, 2004, 301쪽 참조). 소규모 농가일수록 판매 대금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편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성의 이름으로 농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편견이 작용하여 더 낮은

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인 농지원부는 한 농가(세대)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인 이상 있는 경우 한 사람만을 농업인으로, 나머지는 ‘세대원’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세대에서 한 사람을 농업인으로 등록하여야 할 경우, 남성을 등록하는 것이 관습이기도 하겠거니와, 농지원부가 농가 구성원을 ‘농업인’과 ‘세대원(업무집행사원)’으로 분류함으로써,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가 ‘농업인’으로, ‘세대원’이 ‘세대원’으로 등록되는 관행은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하여 대부분 세대원인 여성은 실제 농업 종사 경력과는 무관하게 농업인으로서의 지위가 매우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제3절 성차별의 정당성 판단

이상과 같이 세대주 권한 규정은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에 해당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따라서 세대주 권한 규정이 헌법 제11조에 따라 금지되는 성차별이 아니기 위해서는 세대주일 것을 요구하는 기준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평등권 심사으로써 판단한다.

1. 평등권 심사

우리 헌법재판소의 평등권 심사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뉜다. 자의금지심사와 비례성심사가 그것이다.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는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자의적인 차별 대우가 아니라면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는, 완화된 심사척도이다. 이에 비하여 비례성심사는 법익균형성까지 검토하는 엄격한 심사척도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로 두 가지를 든다.⁴⁵⁾ 첫째는 헌법이 특별히 평등 대우를 명령하

등급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특히 농산물을 직접 시장에 가지고 나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통장에 판매 기록이 남지 않는다. 농업에 주로 종사하는 여성이라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되겠지만, 이를 누가 확인해줄 것인지에 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는 유명 무실하다. 동 시행령 동조 2항은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고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되어 1년 이상 일하지 않는 한,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농업인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는 농지원부의 작성 대상이 되므로(농지법 시행령 제70조 1항), 농지원부에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가 농업인 지위를 인정받을 주요한 요건이 된다. 오미란, 여성농업인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2008, 7-8쪽 참조.

고 있는 경우이다. 헌법 제32조 4항이 근로에서 여성 차별 금지를 규정한 것이 그 예이다. 둘째는 차별 대우가 타인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이다. 이 두 경우에는 입법형성권이 축소되며, 비례성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즉 차별 대우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수단 간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한 비례성 심사는 적합성, 필요성, 법익균형성을 검토한다.⁴⁵⁾

2. 심사척도

그렇다면 세대주 권한 규정은 어떠한 심사척도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가?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 세대주 권한 규정은 비록 성별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부 동일 세대에서 대다수의 남성이 세대주가 되는 현실로 인하여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헌법이 특별히 평등대우를 명령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한편 주택마련에 있어 여성의 기여에 무관하게 세대주인 남성이 소유권 및 임차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여성이 각종 소득 및 가사노동 등을 통하여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권을 제한받게 된다. 따라서 세대주 권한 규정은 차별대우가 ‘타인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되게 되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엄격한 심사척도에 따른 비례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3. 비례성 판단

가. 적합성

적합성원칙은 목적을 달성하고 촉진하는 데 있어 그 수단이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목적을 가급적 최대한도로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요구한다. 세대를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하는 단위로 볼 경우, 국민의 주거안정 지원에 있어 세대를 단위로 하는 정책은 합리적일 수 있다. 투기적 목적의 주택 취득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택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고 국

45) 헌법재판소, 1999.12.23, 98헌마363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편, 헌법재판소 판례집 제11권 2집, 787쪽 참조.

46) 헌법재판소, 2001.2.22, 2000헌마25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편, 헌법재판소 판례집 제13권 1집, 405-12쪽 참조.

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은 정당한 것이며, 주택 공급을 개인이 아닌 세대 단위로 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세대주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마련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하는 수단은, 세대의 대표자에 대한 지원이 특정 세대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 세대 단위의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고 이해되므로 적합성이 인정된다.

나. 필요성

두 번째로 수단의 실행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필요불가결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라도, 입법자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되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고 기본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⁴⁷⁾ 한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제한 규정을 기본권 행사 ‘방법’에 관한 규정과 기본권 행사의 ‘여부’에 대한 규정으로 구분하고, 입법자는 기본권 침해가 좀더 적은 ‘방법’에 관한 규제를 먼저 시도한 다음 공익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여부’에 관한 규제를 선택하여야 한다고 한다.⁴⁸⁾ 따라서 세대주 권한 규정 중 주택공급에 관련된 규정이 목적 적합성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면 당해 수단은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기본권 행사의 ‘방법’에 대한 규제로도 공익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여부’에 대한 규제보다도 이를 우선하여야 한다.

세대주 권한 규정은 주택에 관한 권한을 세대주에게 집중하는 수단을 선택하여 세대별 주택 공급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세대에 대한 지원은 세대주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수단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 청약과 주택 관련 저축 가입 등을 세대주 단독으로 하여야 하는 현행 규정은 세대주가 아닌 여성의 재산권이 행사될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기본권 행사의 ‘여부’에 대한 규제에 해당된다.

주택은 세대의 재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세대마다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세대주가 주택마련에 독보적인 기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세대주 권한 규정이 포괄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그뿐이다. 부부가 협력하여 주택마련 비용을 분담하거나

47) 헌법재판소, 1998.5.28, 96헌가5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편, 헌법재판소 판례집 제10권 1집, 556쪽 참조.
48) 같은 곳.

일방이 가사노동을 통하여 기여를 할 수도 있고,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할 수도 있다. 세대주 권한 규정은 이러한 다양한 양상을 무시한 채,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부부간의 주택 소유권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획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여성의 기본권 행사 ‘여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재산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현실을 고착시킬 우려가 있으며, 더욱이 이 규정들로 인해 침해되는 여성의 재산권을 보완하기 위한 다른 특별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세대주로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더라도 세대의 필요에 의한 주택 공급과 투기 목적의 주택 취득 제한, 주거생활의 안정과 같은 목적 달성이 저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대 단위의 주택 공급은 ‘세대’를 단위로 하고자 하는 것이지 ‘세대주’를 단위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세대마다 하나의 주택을 공급하는 수단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결국 주택마련과 관련된 세대주 권한 규정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을 넘어서 여성의 평등한 기본권 향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 법익의 균형성

평등권 심사의 마지막으로, 법익의 균형성을 살핀다. 법익의 균형성은 차별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기본권간에 적절한 균형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세대주 권한 규정은 세대주에게 우선권을 주는 차원을 넘어 세대주에게만 재산의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때 침해되는 여성의 기본권은, 재산권의 ‘행사’에 관한 것이기 이전에 소유권 ‘취득’ 여부에 관한 문제로서, 이는 재산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더욱 엄격한 비례성이 요구된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헌법 제36조 1항에 의거, 양성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세대주 권한 규정은 대부분 남성인 세대주에게 재산권을 집중시켜 부부간 평등을 저해한다. 물론 헌법 제23조 2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재산권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부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산권의 한계를 형성함에 있어 입법자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 그러나 입법형성권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에까지 이르지 않는 못한다고 할 것이다.

주거안정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만일 ‘주거안

정'이 '세대'의 주거안정인 때에는, 세대원 중 누군가에게 주택에 대한 권리가 귀속되면 그것이 누구든 상관없이 주거안정이 실현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권리가 귀속되는 세대원 중 한 명이 세대주여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가 누구든 세대주가 될 수 있고 세대주에게만 소유권, 임차권을 부여하는 현 규정의 입장일 것이다. 하지만 '주거안정'이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것이며, 세대원 간의 분쟁이 있을 때, 소유자가 아닌 자의 '주거안정'은 곧바로 불안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세대주가 되지 못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세대주 권한 규정을 통하여 궁극적인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가 없게 된다.

더구나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대체 수단이 불가능하다고 볼 것도 아니므로, 이 규정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세대주 권한 규정은 재산의 실제적 소유관계를 무시하고, 적절한 예외도 없이 오직 세대주에게만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사익에 비하여 공익을 지나치게 우선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을 해하는 규정이라고 하겠다.

제5장 결론

세대주 1인에게 주택의 소유권 및 임차권을 귀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현재의 세대주 권한 규정들은 여성의 재산권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여 헌법 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재산권은 헌법이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물론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지만, 세대원으로서 여성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 공공복리를 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는 볼 수 없다. 투기 목적의 부동산 소유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억제할 필요가 있지만, 세대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수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며 필요불가결한 것도 아니다. 성별에 따른 불평등 효과가 입증된 이상, 해당 규정의 성별 '중립성'은 더 이상 주장될 수 없으며, 불평등한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권한을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에게도 부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하겠다. '세대주' 대신 '세대원 중 1인'과 같이 자격 조건을 변경할 경우, 세대를 단위로 하는 종전의 원칙은 유지하면서, 각 세대에서 자율적으로 해당 세대원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근로소득 공제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맞벌이 부부가 중복 공제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둘 중 한 사람만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 중 한 사람이 신청하면 되고, 둘 중 누구여야 한다고 법이 먼저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부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세대주가 남편이라는 이유에서 발생하는 불평등효과는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한계가 있다. 단 한 사람만이 세대를 대표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특히 주택마련과 관련하여서는 세대주 권한 규정과 유사한 결과를 낳을 우려도 있다. 일반적으로 남편을 세대주로 등재하듯, 세대주일 것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도 남편을 주택의 명의자로 하는 관행의 존재는 가족의 자율적 결정이 반드시 성평등한 방식으로 작동할 것을 기대할 수 없게 한다.

더구나 앞서 살폈듯 세대 공동의 주택 마련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며, 한 사람의 독보적 기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고 할 것이다. ‘세대원 중 1인’이라는 요건 역시 단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된다는 점에서는 세대주 권한 규정과 다르지 않다. 이는 또한 세대주 권한 규정이 어떤 측면에서 차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이 된다. 이 글에서는 성별 불평등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논하였으나 세대주 권한 규정은 세대주와 세대주 아닌 세대원을 다르게 대우한다는 점에서 직접차별이기도 하다고 본다. 만일 부부 동일 세대에서 세대주 성비가 엇비슷해지는 경우를 가정하면, 세대주 권한 규정이 성별 불평등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대신 그 때에는 세대주와 세대원 간의 차별이 문제로 남는다. 단독세대가 아닌 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세대주의 권한을 분산시킴으로써만 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세대주의 권한이 실제 기여에 따라 세대원에게 분산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부부 또는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이 공동으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추후 주택청약에서도 공동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부양 개념을 도입하고 가사노동의 기여를 인정하여 주택청약시 입주자저축 명의자 이외의 자가 기여도를 입증함으로써 공동청약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무주택세대주를 요건으로 하는 많은 규정들이 세대주만이 아니라 세대원 전원, 세대주의 동거하지 않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세대원까지도 무주택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들)이 공급 대상이 된다고 해서 무주택 요건이 완화되어 주택 공급의 형평성이 깨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거가 필요한 것은 세대주만이 아니며, 현재의 세대주

와 세대원이 언제나 동일한 주거를 공유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⁴⁹⁾ 예를 들어 산업단지구역에 입주예정인 기업의 여성 종사자가 세대주 아닌 세대원이라고 해서 그녀에게 직장에서 가까운 주거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또한 세대주가 그녀의 남편이라고 해서 무주택 세대원인 그녀가 다른 방식으로 주택을 마련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도 없다.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무주택 요건은 현행과 같이 넓게 적용한다면 굳이 무주택세대주로 자격을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듯 공공주택 공급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고 공공복리 적합성을 충족시키면서도 여성 및 세대원의 평등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세대주 권한 규정은 단독 생계부양자 모델 하에서 가족 단위의 공동 경제생활을 전제하면서 여성의 개별적 재산권을 경시한 결과이다. 여성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 투기나 재산 도피의 방법으로 인식됨과 동시에 여성의 재산권이 남성을 통하여 향유된다는 암묵적인 가부장주의적 판단에 따라, 세대에 대한 지원과 세대주에 대한 지원은 동일시될 수 있었던 것이다. 투기와 재산 도피를 규제하는 것과 여성의 재산권을 차단하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전혀 없다. 여성이 소득활동을 한다면 그 결과물로서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평등에 합당한 것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다면 그 지분을 갖는 것 또한 당연하다. 그것은 재산 도피가 아니라 재산권을 제자리로 돌려 놓는 것이다. 만일 부부가 기여분만큼 주택을 공동 소유로 하는 등 세대원 간에 주택 소유권을 분산함으로써 인하여 부의 편중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면, 이는 세제 개편이나 부동산 정책 자체에 대한 개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이지 세대의 재산권을 세대주에게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입법적 노력 없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러한 방식은 여성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불러오며, 소유권의 왜곡과 함께 부부간의 불평등을 조장한다. 그보다는 실질적으로 세대의 생계 부양 책임이 분산되는 만큼 주택에 대한 소유권도 세대원 간에 분산되는 것이 당연하며, 가사노동이 부양에 기여하는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실제적인 소유권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도리어 공공복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49) 세대원이 세대주와 다른 주거에서도 살 수 있어야 함은 당연하나, 현행 세대주 권한 규정은 세대주가 세대원과 지속적으로 동거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세대 분리를 예정하고 있다면 서류상으로 세대를 미리 분리해두어야 하는 왜곡을 초래한다. 실제로 세대 분리를 앞두고 미리 친척집 등 주소지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함으로써 세대주 자격을 취득하는 일은 빈번하며, 이는 사회 초년생에게 상속에 속하는 재산 관리 방법이기도 하다. 세대 내의 갈등이 있는 경우도 유사하다. 예컨대 남편과 장기간 별거중이고 연락이 두절되었으나 남편이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 여전히 세대주인 경우, 아내는 세대주 자격을 요구하는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길이 없다.

<참고문헌>

* 단행본/논문

계희열, “헌법학(중)” 보정판, 박영사, 2002, p.831

김종숙 외, “여성 무급가사노동의 실태와 가치평가, 가계생산의 국민소득계정 통합을 위한 연구보고서”,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2005, p.287

차별연구모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판단을 위한 지침”, 2002, p.203

김수정·김은지, “한국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과 경제적 의존의 관계”,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회, 제41집 2호, pp.147-174, 2007.4

박민선, “여성의 재산권 확립방안: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에 대한 평가와 재산권확립방안”, 한국행정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pp.298-310, 2004.3

오미란, “여성농업인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성평등의 이론과 실제(III): 여성노동자농민을 중심으로, 한국젠더법학회 외, pp.1-15, 2008.8(미간행)

이준일, “소수자의 기본권”, 인권과정의, 대한변호사협회, 제328호, pp.137-150, 2003.12

* 판례 및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2005.9.28, 05진차467 결정

대법원, 1998.12.22, 98두15177 판결

대법원, 2007.4.26, 2006다79704 판결

대법원, 2007.8.28, 2006스3 결정

헌법재판소, 1997.2.20, 95헌바27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1998.5.28, 96헌가5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1999.12.23, 98헌마363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01.2.22, 2000헌마25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05.2.3, 2001헌가9·10·11·12·13·14·15, 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 홈페이지

통계청(<http://www.nso.go.kr>)

농업인건강안전정보센터(<http://farmer.rda.go.kr>)

* 이 논문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개정일자**는 다음과 같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전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5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22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4.16 국토해양부령 제6호)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7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7.29 대통령령 제20947호)

기류법(제정 1962.1.15 법률 제967호, 폐지 1962.5.10 법률 제1067호)

긴급통화조치법시행령(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81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6.20 대통령령 제20854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농지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6.20 대통령령 제20854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전부개정 2008.6.20 대통령령 제20854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32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83호)

민법(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20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73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8.7.29 대통령령 제20947호)

상수원관리규칙(일부개정 2008.2.5 환경부령 제277호)

소득세법(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11호)

여성발전기본법(일부개정 2008.6.13 법률 제9126호)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일부개정 2008.5.28 기획재정부령 제25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전부개정 2008.6.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2008.6.5 법률 제9088호)

주민등록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9.6 대통령령 제19673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08.7.2 국토해양부령 제32호)

주택법(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46호)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7.29 대통령령 제20947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8.5.26 대통령령 제 20791호)

한부모가족지원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에 의한 노동건강권 및 인권 침해

- 매장판매원이 겪는 감정부조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김동재·김민지·김종호·김형국
윤가영·임동환·조정희·최용범
(연세대 법사회학회)

목 차

Contents

국가인권위원회

I. 서론	5
1. 문제의 제기	5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7
3. 연구 방법	5
II. 기존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1
1. 감정노동	6
2. 기존 논의의 한계	4
III. 감정노동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양상	6
1.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	6
2.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2
3. 감시 통제에 의한 억압	6
4. 소결	0
IV.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11
1. 노동의 인간화	18
2. 여성주의 관점에서 노동의 재정의	3
3. 소비자 운동	48
V. 결론	8
1. 연구의 한계	88
2. 제언	9
<참고문헌>	11

요 약

본 논문은 노동자들이 겪는 감정 노동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감정노동은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을 숨기고 그 상황에 표출하도록 되어있는 표현규칙에 따라 인위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주로 서비스 노동자들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왔다. 감정노동은 외국에서는 이미 중요성이 인식되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연구 성과가 미미하고 그 연구 방향도 노동자보다는 경영자의 입장에서만 다루어져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연구 결과 감정노동은 노동자들에게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이 직무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인 질병들이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서비스업, 특히 매장판매업의 경우 여성 노동자의 비중이 매우 높음에 감정노동은 매장은 물론이고 여성 노동자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성차별을 강요하게 되고, 이러한 성차별은 고착화되어 새로운 성차별을 재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감정노동은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로 가능한데, 푸코의 논의를 빌려서 살펴본 바 이러한 통제는 노동자들을 훈육된 신체, 즉 통제 가능한 자율성을 잃은 인간으로 만들어 인간의 존엄성이란 측면에서 그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감정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를 피하기 위한 노동의 인간화가 필요하다. 노동자로 하여금 노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노동을 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가고 동시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노동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이성·남성중심적 노동관에서 탈피하여 감성성·여성성을 포괄할 수 있는 폭 넓은 노동의 개념의 재정립이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감정노동을 하는 원인인 고객중심주의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캠페인이다. 소비자와 노동자 그리고 기업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할 수 있는 의식·제도적인 노력이 있음으로써 감정노동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에 의한 노동건강권 및 인권 침해

- 매장판매원이 겪는 감정부조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김동재·김민지·김종호·김형국·윤가영·임동환·조정희·최용범(연세대 법사회학회)

I. 서론

1. 문제의 제기

산업 혁명 이후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산업화, 기계화 현상은 노동자들의 직종을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이동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주로 농업, 어업, 수공업에 집중되었던 노동자들은 빠른 속도로 2차 산업에 집중되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산업화를 거치는 나라에서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이후 이른바 3차 혁명이라고 불리는 정보화 혁명의 바람이 불자,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노동 분포가 이동했던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 2차 산업인 공업, 제조업 중심의 노동 분포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3차 산업으로 이동하는 변화가 발생하였다. 대한민국도 2008년 6월 현재 사회 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의 비중이 74.7%를 차지할 정도로 대다수의 노동자들의 이른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노동 분포의 변화는 따라서 기업 경영의 목표도 변화하게 하였는데, 과거의 기업들의 목표가 좋은 품질의 상품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높은 효율로 생산하느냐에 맞추어져 있었다면 오늘날 기업들의 경영 목표는 기업의 성장, 발전을 통해 고객, 종업원, 공급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경영 목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품질, 유연성, 신뢰성, 및 서비스 등의 전략적 과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유시정·양태식·오종철, 2008). 즉, 서비스업의 비중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들은 서비스를 상품화 하고 통제, 경영하려고 하는 시도가 늘어나는 것이다.

서비스라는 개념은 기존의 신체적 요건을 이용한 노동에서 개인의 감정까지 노동의 개념에 산입시키는 것을 요구한다. 1,2차 산업에서는 노동의 과정은 중요하지 않았고 오로지 노동 투입에 의한 결과의 수량만이 중요했으며, 경영자들이 노동자들의 감정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노동자들의 감정이 노동 생산력의 향상과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감정이 노동에 포함되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러나 3차 산업에서 노동자들은 노동 투입의 과정이 곧바로 노동의 결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신들의 감정을 통제하려 하고 경영자들은 그러한 노동자들의 감정을 관리하게 된다. 서비스는 고객들과 대면하는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상품화되기 때문에 그 동안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노동자들의 감정은 이제 엄연히 노동의 일부분이 되었다.

감정표현이 직무의 일부를 이루는 직업은 주유소, 편의점, 슈퍼마켓, 호텔, 패스트푸드점, 항공사, 관광회사 등 서비스 업체의 종업원에서부터 제조업체의 관출 및 영업사원뿐만 아니라 변호사,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내부고객과의 접촉 기회가 잦은 일반 기업의 중간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여러 산업에 걸쳐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김상표, 2000). 이제 서비스는 단순히 3차 산업에만 국한된 노동 형태가 아니라 1,2차 산업 간의 결합을 통해서 얼마든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서비스는 노동의 개념에서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경영자는 서비스의 품질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이러한 인식의 확산은 인간 감정의 상품화(commercializing of human feeling)가 전면적으로 진행되는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훅쉴드(Hochschild), 1983).

감정의 상품화는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상태만을 의미했던 감정을 노동의 개념으로 끌어 들였다. 훅쉴드는 항공기 승무원과 연체금 수금원의 직무 특성을 분석하면서 그들이 노동을 하는 과정 중에 자신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품게 되는 감정을 인지하지만, 그 감정의 표출이 자신의 노동 환경과 맞지 않을 경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직무 상황에 맞는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 즉, 자신이 느끼는 개인적인 감정과 노동에서 요구되는 감정의 부조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감정보다는 회사가 요구하는 감정을 우선적으로 따르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훅쉴드는 ‘감정 노동’(emotional labor)라고 명명했다. 감정 노동은 자본주의 특유의 감정 관리(emotion management)의 한 형태이다. 감정 노동이란 ‘외부적으로 관찰 가능한 표정과 행동적인 표현을 만들어 내기 위해 감정을 조절하는 것.’으로 정의된다(훅쉴드, 1983).

자본주의 시대를 포함한 어떤 시대에도 인간은 사적 영역에서 자아를 지키고 타인과의 원만한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관리해왔다(고프만(Goffman), 1969). 이런 의미에서 감정은 언제나 사용가치(use value)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감정이 임금을 받고 팔리게 되는 교환가치(exchange value)의 성격을 띠게 되면서 감정은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 늘 가다듬고 가치를 향상시켜야 할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감정의 가치 변화는 그 동안 자신만의 전유물로만 느껴졌던 감정을 박탈하고 마치 외모를 가꾸어서 자신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처럼 감정 통제를 연습하고 이에 익숙해져야 함을 강요하게 되었다.

이제 감정의 문제는 노동자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속한 집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기업에서도 감정노동과 노동자의 업무 능력에 관한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연구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감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나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추세이다.

문제는 감정 노동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대부분이 경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고, 노동자들의 인권의 입장에서 감정노동을 연구하는 논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라는 점이다. 이때까지의 감정 노동에 관한 연구는 감정 노동이 조직 분위기 등과 같은 인사조직 변수 사이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김민주, 1998)나 감정노동과 직무 태도와의 관계에서 외부적인 통제에 관한 연구(박봉규, 2008)와 같이 감정노동이 노동 효율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이고, 회사는 이러한 감정노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직 시스템을 가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에 그쳤다. 또한 사실상 전 영역에 걸쳐서 감정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노동 상황을 비추어볼 때 거시적인 관점에서 노동자의 인권과 감정 노동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국내 논문은 간호사(정명숙·김광점, 2006), 호텔업 종사자(김민주, 2006), 항공기 승무원(민영희, 2005), 콜센터 직원(윤시내, 2005) 등 특정 직종에 국한되어 연구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산업화 이후 노동의 기계화를 통한 노동자들의 소외 현상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켰고, 노동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주기를 요구하였으나 재산권 보장을 내세운 경영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노동자들을 착취해온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와 노동자들의 투쟁에 의해서 노동법이 제정되고 이제는 육체적 강제나 물리적 혹사와 같은 불합리한 처우는 노동자들의 인권, 즉 노동권의 침해라고 간주되어 사회 각층의 반발을 받기 마련이고, 경영자들도 경영 이익의 최대화에 앞서 노동자들의 인권을 먼저 신경 쓰

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서 감정 노동 또한 엄연한 노동의 일부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통제하려고만 하고 막상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시 감정 노동을 개인의 테두리에 국한시키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감정 노동은 자신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무엇이지, 자신의 인권이나 권익을 침해받을 수 있는 당당한 권리의 성격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감정 노동에 의해서 침해받을 수 있는 노동자들의 인권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노동자들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정 노동과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 특히 문제 삼고자 하는 바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감정 노동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어느 정도 침해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이 어떠한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직무 스트레스와 노동자들의 건강과의 관계는 다른 연구에서도 그 영향이 입증되었지만, 직무의 여러 상황에 따라서 정확히 어떠한 요인 때문에 직무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꼬집어 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감정 노동과 같은 경우 노동자들이 감정 노동의 개념 자체에 생소한 경우가 많고, 이러한 노동을 당연시 하는 경향이 있어 노동자들의 정신건강과 감정 노동 간의 상관관계가 정말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둘째, 서비스업의 가장 큰 목표는 고객 만족을 꾀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목표는 여성의 성 상품화와 관련되어 대표적인 서비스업종의 대다수가 여성에게 맡겨지는 현상을 빚게 되었다. 매장 판매원이나 콜센터 직원, 항공사 승무원 또는 간호사와 같은 감정노동의 최전선에 위치해있다고 볼 수 있는 직종의 대다수는 여성 노동자들이다. 회사는 이러한 여성 노동자들에게 감정노동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그들의 성을 상품화하고 그들의 몸을 통제하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이러한 직종에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회사의 근무 강령에 의해 화장을 해야 하고, 치마와 스타킹의 색깔을 강요받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 건강권의 침해 이전에 성 평등 차원에서 여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데에 감정 노동이 사용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셋째, 서비스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회사에서는 사원들에게 근로 상황에 맞는 서비스 매뉴얼을 나누어 준다. 이 서비스 매뉴얼에는 고객을 기다릴 때의 자세부터,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어떻게 처분하라 등과 같은 세세한 내용까지 담겨있다. 또한 사원들의 서비스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고객을 가장한 조사요원을 보낸다든지, 카메라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근무 태도를 감시하는 등의 서비스 강조로 인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통제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통제를 제지할 법적인 수단이 미비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불편해 하면서도 이를 자신이 당연히 감수하여야 할 근무 조건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조직화된 통제가 노동자들의 인권에 어떤 침해를 가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가.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주된 대상은 서울 시내의 백화점에 종사하고 있는 판매직 노동자들이다. 감정 노동을 연구하기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이제는 거의 모든 직종에서 감정노동이 행해지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혹셀드가 처음 감정노동 문제를 제기한 고객과 직접적인 대면이 이루어지는 직종이 감정노동의 문제가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고 그들의 피해 양상도 관찰하기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뒤에서도 논의가 될 것이지만 감정노동으로 받는 여러 피해양상은 다른 여러 가변요소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는데, 감정노동의 빈도나 강도가 약한 직종에서 연구를 할 경우 그들이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받는 피해 양상이 감정노동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인지 아닌지를 뚜렷이 밝히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백화점 노동자, 그중에서도 판매직 종사자들이 감정노동을 가장 충실히 실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둘째,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호텔 근무원, 항공사 승무원, 판매원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이 바로 판매원이고 동시에 우리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직종이 판매원이기도 하다. 2006년 기준으로 1,435,875명에 노동자들이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항공 운송업(14,875명), 호텔업 종사자(37,881명)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숫자이다.¹⁾ 판매업 중에서도 고객 접촉 횟수가 많고 매출액이 높은 백화점 판매원이 감정 노동 연구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²⁾

1) 통계청(2006), □□시도·산업·조직형태별 사업체수, 종사자수□□에 따라 재구성. 여기서 판매업이란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업을 의미하며 이 범주에는 종합소매업·백화점·슈퍼마켓·및 기타 소매업이 포함된다.

2) 통계청(2005), □□산업세분류별 총괄□□에 따르면 종합 소매업 중 백화점업은 81개 사업체가 총 17조3755억4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반면 대형 종합 소매업의 경우엔 397개 사업체가 41조 845억 35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즉, 백화점 한 사업체의 매출이 대형 종합 소매업 한 사업체의 약 2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셈이다.

셋째, 최근에 각 세부 업종의 감정노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항공사 승무원(민영희, 2006), 콜센터 직원(윤시내, 2005), 호텔업 종사자(이유라, 2008), 간호사(이복임, 2006), 돌봄노동 종사자(박수경 2005; 김경희·강은애, 2008)등에서 감정 노동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에 반해 백화점 종사자에 관한 논문은 박홍주(1995)의 논문이 유일한데 이는 10여년도 전에 조사한 것을 토대로 발표한 것이고, 그 사이 한국은 IMF와 같은 경제 환란을 거치면서 산업 구조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박홍주의 논문에 보고된 사실과 현재는 다른 점이 상당히 많았다.³⁾ 따라서 박홍주의 논문이 밝히고 있는 사실을 토대로 현재 백화점 노동자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연구를 위해 심층면접 대상을 선정하였는데 서울 시내에 있는 4개 백화점에 판매직 노동자로 종사하고 있는 10분을 상대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면접을 위해 판매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서 인터뷰 요청을 통해서 이루어 졌으며, 미진한 부분을 위해 전화통화를 통해서 부족한 질문을 보충하였다. 면접 대상은 최대한 다양한 직종·성별·연령대를 아우르려고 노력하였지만 10분 중 9분이 여성이었으며 연령 분포도 주로 20~30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전체적으로 판매원 노동자들의 근속년수가 길지 않고 남성보다는 여성 노동자가 판매직에 더 알맞다는 의식 때문으로 보인다. 그들이 근무하는 백화점과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하였으며, 근속 년수와 판매직종, 나이·성별은 따로 기재해 놓았다. 다음은 인터뷰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정리한 표이다.

3) 1997년 IMF를 거치면서 한국의 기업들은 대규모 구조조정과 동시에 노동자들을 대량 해직하였다. IMF 체제를 통해서 한국은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체제로 들어서게 되는데, 신자유주의 체제의 특징은 구조적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정치와 공공부문의 영역을 최대한 축소하고 시장에서 경쟁을 통한 자원배분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에서 제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들이 우선적으로 직장에서 쫓겨났는데, 특히 판매직 여성의 경우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근무 환경이 열악해졌다. 이후 IMF체제를 벗어나면서 다시 여성 노동자들이 직장으로 복귀하기 시작하였지만, 고용구조는 그전과는 다르게 고소득 직장과 비정규직 직장의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되었다(최승경, 2008:7-17). 백화점업의 경우에도 1997년에는 109개 사업체가 12조 5421억 7600만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2005년에는 사업체가 28개나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38%가까이 증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의 근무 환경은 IMF를 전후해서 판이하게 달라졌다.

번호	이름	판매직종	나이	근속년수	성별	백화점
1	선미	아동제품	33	5	여	A
2	안소희	영캐주얼	28	7	여	A
3	민선예	여성의류	25	6	여	B
4	박예은	여성의류	37	11	여	B
5	김유빈	스포츠·골프	26	2	여	B
6	김태연	식품매장	23	8개월	여	C
7	임윤아	화장품	27	4	여	C
8	김효연	가구	34	7	여	D
9	이순규	의류	30	6	여	D
10	김희철	전자제품	28	3	남	D

3. 연구 방법

연구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본 논문에서는 질적연구방법, 그 중에서도 백화점 점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감정노동에 관한 연구는 연구주체의 특성상 서구에서는 혹셀드로부터 시작되어 주로 질적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연구의 흐름이었으나, 국내의 최근 연구들은 양적인 방법을 활용해왔다(이복임, 2006; 나태균·박인수·전정철, 2005; 박상언, 2008; 강재호·김민주, 2008).

양적 방법은 변인간의 관계설정이 용이하고, 연구자의 주관에 개입될 요소가 적어 객관성의 확보에서 탁월함을 보인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감정노동이라는 주제는 이러한 양적 방법의 수월성에도 불구하고, 감정노동자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고객과의 상호작용과 그에 관련된 행위자들, 감정표현규범, 주변 환경으로 구성된 다양한 직무 상황 속에서의 맥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감정이 주요 연구 대상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다양한 맥락과 수많은 감정, 상황 등을 유형화, 개념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설사, 그 유형화 혹은 개념화가 가능하더라도 유형과 유형간의 경계를 설정하기는 쉽지 않은 일일뿐더러, 경계를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경계의 모호성으로 인해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요소가 빈출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감정노동의 특성상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질문지법과 같은 양적방법은 질적

방법의 부수적인, 제한적 형태로 밖에 이용될 수 없을 것이다(김상표, 2000).

질적방법, 그 중에서도 심층면접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질문자와 응답자의 관계 속에서, 응답자에게 있어서는 잘못 설정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질문의 목적과 용법들이 질문자로부터 응답자에게로 일방향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또한, 질문자와 응답자의 문화적, 언어적 지식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인터뷰가 왜곡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했다. 이를 부르디외는 그의 저서 『세계의 비참』에서 ‘상징적 폭력’이라고 표현하였다⁴⁾(부르디외, 김주경 옮김, 2002).

질적연구방법 내에서 이러한 왜곡의 가능성을 모두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 이기에, 우리는 왜곡의 가능성으로부터 오는 효과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보았다. 부르디외의 표현을 빌리자면, 질문자와 응답자의 불균형적인 관계로부터 행사될 수 있는 상징적 폭력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상대방의 말에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관계를 확립하려고 노력했다. 이는, 모든 각본과 예상된 질문이 미리 짜인 인터뷰와도 거리가 있으며, 아무런 지시 없이 이루어지는 방임형 인터뷰와도 거리가 멀다. 기본적인 질문은 정형화하되, 각 응답자의 상황과 맥락에 맞추어 다양한 변용을 꾀했다. 이러한 인터뷰 방법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질문자와 응답자 간에 다방면적으로 사회적 불균형이 예상되는 관계에서 상호 평등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질문자는 응답자를 완전히 신뢰하며, 각 응답자마다 독특한 개인사로 인한 다양한 응답이 가능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경우 응답자, 곧 백화점 점원의 신상정보로부터 시작하여, 작업 유형, 고객대응수칙, 다양한 고객 대응 사례 등에 대하여 정형화된 질문을 시도하면서도, 각 응답자별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묻거나, 해결의 방향을 제시해보라는 등의 제언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부르디외, 김주경 옮김, 2002).

주된 연구방법으로 심층면접법을 택한 후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문헌연구는 기존연구를 검토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각종 사

4) 부르디외는 □□세계의 비참□□에서 이러한 질문자와 응답자 간의 불균형의 요인을 두 가지 속성으로 정리하였다. 하나는 질문자가 설정한 목적과 용법들이 일방적으로 사전협상 없이 인터뷰를 통해 응답자를 향해 흘러들어가는 일방성이었고, 다른 하나는 질문자가 응답자에 비해 여러 가지 자본-특히 문화적 자본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두 가지 속성이 결국 불균형의 원인이 되며, 연구 결과의 왜곡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 것이 부르디외의 생각이었다. 그는 이러한 불균형적인 관계 속에서 질문자가 응답자의 태도, 답변을 왜곡, 단정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과정을 ‘상징적 폭력’이라고 언급하였다.

회학 서적과 매스미디어 저작·출판물, 정부자료 등을 분석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이는 해석적, 귀납적인 성격을 가진 질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선행과정이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자료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백화점 내부 정보 혹은 지표를 나타내는 지침 혹은 수칙 등은 외부인인 우리가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연구에 있어서 활용한다면 연구의 수월성 측면에서 훨씬 유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층면접을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자(질문자)의 신분과 목적을 충분히 밝히고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선행되었던 일부 연구 혹은 매스미디어에서 맥락을 무시한 채 자신의 연구 혹은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부분만을 활용하여 응답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던 경우가 있어, 인터뷰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하여, 인터뷰 지원자를 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랐으며, 시종일관 조심스러운 태도로 임하여야 했다. 연구자 혹은 질문자의 도덕성이 크게 요구되는 부분이었다.

II. 기존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 감정노동

감정 노동은 사회학자인 혹셀드(1983)이 그의 저서 『The Managed Heart』에서 항공기 승무원들과 연체금 수금업자(bill collector)들의 노동 양상을 연구하면서 처음 제안한 용어이다. 혹셀드는 산업혁명을 통한 노동의 기계화가 노동자들이 노동에 대한 소외를 경험하는 것처럼 이제 감정노동으로 인해서 서비스 노동자들은 노동으로부터 소외를 경험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감정노동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분된다. 첫째, 얼굴 또는 목소리를 통한 대중과의 직접 접촉. 둘째, 고용인들이 고객들에게서 특정한 감정 상태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요구사항. 셋째, 고용주에게 고용인들의 감정 관련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배권을 허용하는 훈련과 감독 방식. 감정의 관리와 조작은 표면행위(surface acting)나 진심행위(deep acting)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표면행위란 ‘우리가 느끼지 않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실제로 느끼는 것을 위장하는 것’을 뜻하고, 내면행위란 ‘감정생산의 수단을 접거하고 실제로 우리의 느낌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혹

셀드, 1983:33). 감정노동은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이 느끼는 감정과 표현해야 하는 감정의 괴리를 초래하는데, 이를 감정 부조화(emotional dissonance)라고 부르며 이 감정 부조화로 인하여 노동자들은 심한 정신 스트레스를 겪으며 정신 질환을 앓을 수 있다고 한다. 감정 노동이 노동자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혹셀드의 이러한 견해는 이후 감정 노동 연구의 주된 기류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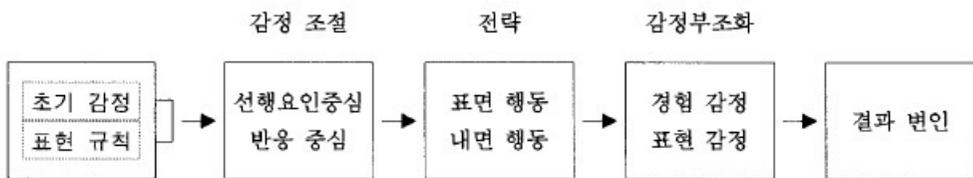
라펠리 & 서튼(Rafaeli & Sutton, 1987, 1989)은 감정 노동이 기업의 업무 생산성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요건임에 주목하였다. 고객은 의식·무의식적으로 판매원의 친절함을 원하고, 따라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심정적으로 더 끌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감정 노동은 이제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통제하여야 할 노동의 분과로 인식되게 되었고 노동자들의 감정 통제를 위하여 표현규칙(display rule)이 탄생하게 되었다. 표현규칙은 ‘외적으로 표현되어야만 하는 감정(What emotions ought to be publicly expressed)’를 의미하는데, 내적 심리보다는 행위와 관련된 규칙을 지칭한다.⁵⁾ 이러한 표현규칙을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경우 감정은 고객과 조직의 동료 구성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수단(control move)로 기능할 수 있고, 근로자들에게 감정조절을 강제하기 위하여 기업은 고객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이복임, 2006).⁶⁾

이들은 감정 노동이 오로지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끼친다는 혹셀드의 견해에 반대한다. 감정부조화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는 노동자들이 표현규칙을 내면화하지 못한 탓에 일어나는 노동자들의 개인적인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Sutton(1991)은 조직이 근로자의 감정표현을 관리하는 것이 그들의 감정과 직무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고객과의 감정적 충돌을 피하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5) 감정 노동의 연구들은 표현규칙(display rule)과 느낌규칙(feeling rule)을 구분한다. 느낌 규칙은 ‘종업원이 느껴야만 하는 감정(what I should feel)’을 의미하는 용어로 주로 종업원의 내적 심리 상태와 관련되어 있다.(혹셀드, 1979, p. 565) 예를 들어 고객이 주문하는 술이 없음에도 계속해서 그 술을 가져다 달라고 주장하는 손님에게 늘 웃는 모습으로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규칙은 어떤 상황에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통제해야 한다는 표현규칙에 해당하지만, 칭얼거리는 어린 고객은 손님이 아니라 자신의 작은 조카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한결 너그러워 진다는 식의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 지침은 자신의 감정과 표현 감정 사이의 괴리가 아니라 표현되어야 할 감정을 내면화 시키는 느낌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느낌규칙은 노동자들의 감정부조화를 해결한다는 측면 때문에 노동자들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요건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혹셀드는 오히려 느낌규칙은 자신의 진심마저 속이기 때문에 표현 규칙보다 더 위험한 자기기만이라고 경고한다.

6) 라펠리 & 서튼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상점은 고객이 친절한 인사와 상냥한 미소를 짓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알려줄 경우 5달러의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는 예를 들었다. 이와 같은 고객을 이용한 노동자들의 통제는 이제 한국을 비롯한 세계 전역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통제수단이다.

모리스 & 펠드만(Morris & Feldman, 1996)은 혹설드에 의해서 도입된 감정노동을 발전시켜 감정노동을 ‘대인접촉 동안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노력, 계획, 통제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이들은 혹설드의 주장, 즉 감정노동은 노력이 소요되고 감정표현은 상품화되어지고, 조직의 규칙은 전형적으로 감정표현을 조정하고 명령하는 장치라는 것에 동의하였다. 모리스 & 펠드만은 지금까지 감정노동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인 양상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감정노동을 네 가지 측면 즉, 감정표현의 빈도, 표현규범에 대한 주의성(attentioness), 감정표현의 다양성, 감정적 부조화 등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림 1> 감정노동프로세스

감정 노동은 개인이 어떤 감정든지 표현해야 하는 감정 표현 상황에서 시작된다. 이 상황 속에서 개인은 자신이 느낀 감정과 표현 규칙을 비교해보고 감정 조절에 들어간다. 감정 조절이란 ‘자신이 어떤 감정을 가질 것이며, 언제 그 감정을 가질지, 감정을 어떻게 경험하며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는 과정’을 의미하며,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감정 요소에 대해 감정을 증가시키고, 유지하고, 감소시키는 등의 모든 노력의 요소들을 말한다.(그로스(Gross), 1998) 감정 조절은 어떤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조절하는가에 따라 선행요인 중심(antecedent-focused)감정 조절과 반응중심(response-focused)감정 조절로 나뉜다.

선행 요인 중심 감정 조절이란 내가 경험한 감정이 조직에서 요구하는 표현 규칙에 가까워지도록 상황을 바꾼다거나 상황에 대한 인지를 변화시킴으로써 경험감정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다. 반면 반응 중심 감정 조절은 실제 경험한 감정에 대한 수정 없이, 표현되는 감정만을 조직의 표현규칙에 맞추는 것이다. 이때는 경험한 감정은 그대로 둔 채, 반응만을 억제, 가장, 혹은 과장함으로써 행동만을 수정하게 된다(그랜디(Grandey), 2000).

7) 김민수·강원경(2006), “감정 노동 프로세스에서 감정 부조화의 역할에 대한 재고찰”, p.4에서 인용

이제 감정 조절을 마치면 표면 행동 또는 내면 행동을 통하여 감정 노동을 수행한다. 그 결과 개인은 자신이 느낀 감정과 자신이 표현한 감정 사이에 차이를 느끼게 되는데 이를 감정부조화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감정부조화상태가 오랜 기간 유지되면 이런 긴장을 줄이기 위해 감정을 변형하게 되고, 이러한 감정의 변형은 개인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김민수·강원경, 2006:4-6)

기존의 연구들은 감정노동이 노동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혹셀드는 승무원들이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흥분제와 진정제를 사용함으로써 약물복용 문제를 갖게 되었으며, 다른 연구에 따르면 비행 승무원들은 종종 섭식장애를 겪는데 이는 몸무게 제한규정과 기내음식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페닝튼(Pennington), 1991).

또한 노동자들이 자신의 내적 감정을 변화시키지 않고 외적인 표현만을 표현규칙에 맞추어 행하는 경우(표현행동) 감정적 부조화를 경험하게 되고,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위선자라고 생각하는 ‘거짓 자아(false self)’개념을 키워가고 심할 경우 자기 비하와 냉소주의에 빠질 위험도 있다.(애쉬포스 & 험프리(Ashforth & Humphrey), 1993)

국내 연구에서도 감정노동을 필요로 하는 여러 서비스 분야에서 감정 노동은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노동자들에게 감정소인을 경험하게 하거나 이직 사유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보고되었다(이복임, 2006; 김민주, 2006; 안준수 1998; 허지훈, 2000; 윤시내·이승륜, 2007; 민영희, 2007 등). 이러한 직무스트레스는 작업자들의 건강과 직무 불만족, 높은 결근율, 높은 이직률, 낮은 생산성 및 낮은 조직몰입 등의 조직적인 문제를 유발시키거나, 정신환자와 심장병 등 심리질환 역기능을 초래 한다(이선규, 1992).

2. 기존 논의의 한계

감정노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 촉발되어 90년대 이후 대한민국에 도입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 논문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는 감정노동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늘어나고, 이를 통제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의도와 맞물려 발생한 현상이다. 많은 논문에서 감정노동이 노동자들의 건강이나 업무 생산성을 동시에 저하함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패션 제품 판매원의 감정노동이 고객 지향적 판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경복·정명선, 2008)이나 또는 회사원들의 감정 노

동 스트레스가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한주원, 2005), 감정 노동의 통제수단과 조직지원을 통한 자기유능감 제고(박봉규, 2008)등의 논문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논문은 경영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감정 노동의 부정적인 영향을 억제하고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가에 중심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논문들은 감정노동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인 노동자의 인권은 언급되지 않고 2차적 피해자인 기업의 생산성에 대해서만 논해왔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감정 노동 연구의 선구자인 혹쉴드는 그의 저서에서 항공사 여직원의 감정노동이 성상품화⁸⁾의 경향을 띠고 있는 것을 서술하고 이러한 성상품화된 감정 노동은 여직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경고하였다.⁹⁾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에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각 30.2%와 69.2%이고(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5)남성들이 여성보다 승진이 빠르고 직급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감안할 때(박홍주, 1995), 서비스 노동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판매업에는 주로 여성 노동자들이 배치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성상품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가 되어버리고 기업은 이를 이용하면서도 여성 노동자 자신은 이에 대한 저항적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감정 노동 종사자의 대다수인 여성 노동자들의 이러한 성상품화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부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란 것이다. 성상품화는 여성 노동의 독자적인 연구 분야로 자리 잡았지만, 감정노동과 관련지어 성상품화를 논한 글은 박홍주(2007)의 것뿐이고, 학술 논문으로는 돌봄노동의 상품화를 연구한 김정희·강은애(2008)의 논문이 있는데 이 또한 유급가사노동자들에게만 국한되었다는 점, 즉 대다수의 여성 노동자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8) 성상품화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거래를 통하여 실제로 육체를 사고파는 이른바 매매춘업과 같은 높은 단계의 성상품화와 광고나 문학, 영화 등 다양한 문화 텍스트를 통하여 자신의 몸의 성적 가치를 상품화하여 이윤을 얻는 낮은 단계의 성상품화가 그것이다. 이 논문에서 언급하는 성상품화는 낮은 단계의 성상품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9) 혹쉴드는 감정노동이 남녀 성별 차이에 의해서 그 역할이 분할되어 있음에 주목하였다. 남자들은 빗쟁이와 같은 종류의 직업에서 감정 노동을 하는 반면, 여성들은 스튜어디스와 같은 유형의 직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가 확장되어 사회적으로 각각의 성별에 알맞은 직업이 있다는 사회적 성 차이에 관한 인식에 의한 것이다. ‘친절함’, ‘상냥한 미소’, ‘부드러움’등과 같이 서비스 노동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이 여성들이라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재능으로 간주되고, 여기에서 성상품화를 위해 여성들의 복장과 외모가 통제된다. 이는 여성들은 최대 몸사이즈를 명시한 규정의 지배를 받는 반면, 소방대나 경찰과 같은 전통적인 남성의 직업에서는 최소 몸사이즈를 규정하는 경향이 있는 점에서 잘 들어난다.

있다.

마지막으로 감정 노동을 통제하기 위한 기업들의 다양한 시도들, 예를 들어 감시카메라 설치나 손님을 가장한 직원 평가자 등이 노동자들에게 육체적·심리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부재하다. 이미 서구권에서는 노동과 기업 통제에 관한 관계, 특히 몸의 통제를 통한 억압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 있지만¹⁰⁾국내에는 감정 노동의 통제에 관한 김상표(2000)의 논문이 있을 뿐이다.

III. 감정노동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양상

1.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

가. 직무스트레스

스트레스(stress)는 라틴어인 “Stringere”에서 유래된 말로 17세기경에는 “곤란함(hardship), 역경(adversity), 또는 심신의 고뇌(affliction)”의 의미로 흔히 쓰였다. 그리고 18세기엔 “압력(pressure), 중압감(force), 긴장(strain), 또는 많은 수고(strong effort)”등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스트레스는 캐넌(Cannon)에 의해 처음으로 인간에게 적용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현대적 의미의 스트레스의 어원은 셀리에(Selye)에 의해서 정립되었다. 셀리에에 의하면 스트레스란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인체반응의 최소공통분모이다¹¹⁾(송기석, 2008). 이후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스트레스의 개념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었다.

10) 기본적으로 감정 노동이 노동자들의 정신 건강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표현규칙을 통한 다양한 방식의 몸의 통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예컨대 감정노동의 성별화에 따른 불평등이라거나 사생활 영역이 축소되고 자기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 바로 그것이다. 크리스 쉘링, <몸의 사회학>, p.173-184, 나남출판사

11) Hobfoll은 자원 유지모델(Model of Conservation of Resources)로 스트레스를 설명하려고 한다. 즉,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서 정의되는 스트레스는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 손실에 대한 위협(실직의 위기, 질병 징후 등), 자원의 손실(부도, 실직, 이혼, 질병진단 등), 그리고 자원의 손실로 인한 새로운 자원의 보충의 부족이나 결핍(자금 동원의 어려움, 재고용 불능, 건강회복 불가능성 등)에 의해 스트레스가 발생된다고 본다. 송기석, “할인점 종사원의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p.38에서 인용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개념 정의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일치되는 견해를 미루어 ‘직무관련 상황의 요구가 자신의 능력을 초과한다는 지각과 그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각에서 초래된 불쾌한 감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미옥, 2006). 이러한 직무스트레스는 근로자와 직무조건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하게 된다. 한편 직무스트레스의 일차적 원인이 개인적 특성이나 아니면 직무 조건이나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성격(personality)이나 대응(coping)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적 특성을 스트레스의 발생에 가장 영향을 주는 예측인자로 간주한다. 반면 직무 환경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직무스트레스의 주원인으로서 과도한 업무량의 요구와 기대의 상충 등이 주 스트레스원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김양희 · 김영택 · 선보영 · 고상백, 2006).

직무스트레스의 원인에 관하여 미국 국립 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에서는 크게 직무요인, 개인적 요인, 직업 외적인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¹²⁾ 더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직무 요인에는 온도나 소음 등의 물리적 환경, 역할갈등, 역할모호, 대인관계갈등, 직업미래의 모호성, 업무자율성, 양적직무부담, 작업부담 변화, 정신적 부담, 고용 기회, 기술 활용의 저조, 교대작업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개인적 요인에는 A형 타입¹³⁾, 성, 연령, 결혼상태, 근무시간, 직급, 경력, 자존감 등이 포함되며 마지막으로 직업 외적인 요인으로는 가사노동, 육아 등과 같이 가정 내 요구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직무스트레스와 정신적 · 신체적 건강의 영향의 상관관계는 오래전부터 여러 연구자들

12) 직무스트레스의 요인에 관한 이론은 크게 4가지가 존재한다. 프렌치 & 칸(French & Kahn)의 개인-환경 합치모델(Person-Environment Fit Model), Cooper와 Marshall의 직무 스트레스 모델, 이반세비치 & 매트슨(Ivancevich & Matteson)의 조직 스트레스 모델, 그리고 NIOSH의 직업성 스트레스 모델이 그것이다. 이 중 NIOSH의 직업성 스트레스 모델은 앞선 세 모델의 절충·포괄적 개관을 시도하여 작업 스트레스가 심리적, 행동적, 생리적 급성 반응을 일으키고, 장기화 될 경우 정신 및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일 미친다는 모델을 제시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이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전체 항목 수가 183문항이나 되는 문제점 때문에 실제로 이를 모두 사용하는 연구는 드물고 비실용적이라는 단점이 존재한다. 전경구(1998), “작업 스트레스 척도 개발 : 이론적 탐색” p.83-88

13) A형 타입은 프리드먼 & 로즈먼(Friedman & Roseman, 1974)에 의해서 관상동맥질환과의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제안되면서 이후 스트레스를 받는 개인의 행위 유형으로 널리 사용된 개념이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A형 타입의 행위 유형은 ‘적은 시간에 보다 많은 성취를 하려고 끊임없는 투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경쟁적이고, 공격적이며, 시간적 압박감을 느끼고, 참지 못하며, 스트레스에 직면하면 쉽게 포기하게 되고 무기력감을 보였고, B형 타입의 경우는 이러한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A형 타입 행위자는 B형 타입 행위자에 비해 CHD(심장관상혈관질환) 발생률이 2.3배 높으며, B형 행위자 보다 자신이 일을 더 스트레스적이라고 평가한다고 한다.

에 의해서 연구되어져 왔다.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으로는 순환기 질환, 근골격계 질환, 면역기능의 저하, 탈진이나 우울증 등이 보고되었고 여성의 경우 저체중아 출산과 같은 임신장애 질환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양희·김영택·선보영·고상백, 2006). 또한 직무스트레스는 업무생산성, 결근율, 이직률, 직업 소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최정명 외, 1999; 이선규, 1992; 송기석, 2008).

나. 정신 건강의 악화 요인으로서의 감정노동

노동자들의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의 한 요인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것이 최근의 일반적인 견해이다.¹⁴⁾혹셀드는 감정노동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감정부조화, 즉 내부 감정과 표현 감정 간의 괴리로 인하여 정신적 우울,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소외가설(alienation hypothesis)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무스트레스의 요인은 다양하며 실제로 사회적 지지 또는 작업조직 및 작업장의 결속력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 직무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에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결정적인 요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이복임, 2008; 모리스 & 펠드만, 1996). 실제로 국내에 소외가설을 지지하는 논문으로 피부관리사(김희진, 2003), 항공사 객실승무원(박영식, 2007), 관광산업 종사자(강재호, 2005), 외식산업 종사자(나태균 외, 2005), 콜센터 종사자(정무관 외, 2008), 항공사 콜센터 상담원(윤시내·이승륜, 2007) 등이 있지만 대부분의 논문에서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결정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음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나온 결과이다.

14) 이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안면환류가설(facial feedback hypothesis)이 존재한다. 자녹(Zajonc, 1985)는 생리학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웃는 표정은 근육 운동을 촉진시키고 이는 혈액순환과 호르몬분비에 영향을 주어 즐거운 내적 감정을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 라펠리 & 서튼(1987, 1989)은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노동자들이 표현규범과 일치된 방식대로 감정을 표현하면 노동자 자신 내부의 감정도 이와 동일하게 변화하게 되고 이는 내부 감정과 표현 감정의 일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감정부조화는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감정노동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를 지지하는 연구 논문으로 은행원과 병원 근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와튼(Wharton, 1993)의 논문과 국내 호텔 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김민주(1998)와 이유라(2008)의 논문이 있다. 이 논문에 의하면 감정 노동과 노동자의 정서적 건강 사이에 유의할만한 부정적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정 노동이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인터뷰 사례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내용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는 조사된 직종의 업무 환경과 성격이 다른 직종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혹셀드는 이러한 연구 결과에 비판을 가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 서술하겠다.

따라서 감정 노동이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일 미친다는 가설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선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간의 관계만 단편적으로 조사하기보다는 그 이외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여러 요인간의 상관관계도 함께 분석하여야 한다. 이복임(2006)은 이러한 문제 설정을 하고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세분화 한 뒤 각각의 설문지를 통하여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임을 밝혔다.¹⁵⁾ 이 연구에 의하면 감정노동, 조직문화 요인, 사회적 지지는 각각 직무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일상생활 스트레스나 개인적 요인은 통계적 유의성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감정노동의 표면행위에 미치는 효과만이 통계적 유의성을 띠고, 사회적 지지가 감정 노동의 진심행위에 미치는 효과나 조직문화 요인이 감정 노동의 표면·진심 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되어 감정 노동이 다른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상당한 독립성을 지니는 요인이라는 것을 밝혔다.

양적 통계 조사에서 지지된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은 면접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를 토로하였고, 이로 인한 건강악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큰 병이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몸이 무거워진대거나 속 울렁증 등을 경험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아, 그런 거야 당연히 있죠. 저희들도 사람인데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정말 몸이 미덥지 않고, 속이 울렁거리고 막 그러죠. 집에서 나쁜 일이 있으면 그날 하루 종일 몸이 무거운 것처럼,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손님이 오셨다 하면 그날은 기분이 나빠서 그런지 몸이 다른 때랑은 다른 게 사실이죠. 회사에서도 그런 것을 아니까 조회시간에 꼭 긍정적인 말들을 해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늘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해요. (사례 9)

15)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세부 요인으로는 개인적 요인(A형 타입, 자존감), 조직적 요인(역할부적절성, 미래불확실성, 업무자율성, 직무부담), 일상생활 스트레스, 감정노동이 있고, 반대로 직무스트레스를 억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랜디의 감정노동 모델과 NIOSH의 직무스트레스 모델을 체계적으로 합성하여 다섯 가지 가설 명제를 설정하였다. 각 명제에서 다시 세부적인 연구 가설을 도출하여 총 15개의 연구 가설을 설문조사에 활용하였으나 밑에는 가설 명제만 소개한다.
 첫째, 감정표현 양상은 감정노동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개인적 요인은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조직문화 요인은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친다.
 넷째,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다. 표면화되지 않은 감정 노동의 문제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로 인하여 감정 노동이 직무스트레스와 노동자들의 건강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자들이 ‘감정노동’이라는 개념 자체를 들어보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그 개념을 설명한 후 다시 질문을 한 경우에도 연구자들과는 다르게 감정 노동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런 셈이죠. 저처럼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것 말고도 이런 서비스직이 많이 있잖아요. 지인 중에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이 있는데 거긴 여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더라고요. 애가 떼쓰거나 떠들 때 외국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고압적으로 내려다보면서 엄하게 주의를 주는데 우리나라는 달라요. 웃는 얼굴로 시선을 맞추면서 어르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뭐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 수도 있지만, 서비스 받는 고객 입장이라면 화날만한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말하는 게 훨씬 긍정적으로 다가오니까요. 내가 표정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속한 조직의 이미지도 달라지고, 이게 결국에는 실적과도 연결되니까 그냥 ‘일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사례 3)

감정 노동이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감정 노동을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일의 일부’로 수용하는 것은 모순된 태도로 보인다. 면접 전에 문헌 연구를 통해 질문지의 초안을 작성할 때에는 감정 노동에 대한 좋지 않은 발언이 나올 것임을 예상했지만, 인터뷰 대상자 중 한명의 예외도 없이 감정 노동이 자신에게 부과된 부당한 업무로 인식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정 노동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다면 그 사람은 일을 그만 두어야 한다는 다소 과격한 발언까지 존재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서비스 노동에서 감정은 필수 불가결하게 포함될 수밖에 없는 현대 산업 구조를 감안할 때 당연한 인식일 수도 있다. 상품을 가공하는 제작자와 이를 판매하는 판매자가 이원화 되어 있고 시·공간적으로 분리되어 매매가 이루어지는 1,2차 산업과 다르게 3차 산업인 서비스 산업은 생산(production)과 소비(consumption)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객 지향적 서비스가 발달할 수밖에 없다(김경희, 2006). 백화점의 경우 불평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 여부에 따라서 재구매율이 다르게 나타날 정도¹⁶⁾로 감정

16) 한 백화점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중요한 불만사항이 있지만 표현하지 않는 고객은 재구매율이 9%에

노동은 기업은 물론 개개인 노동자들의 매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감정 노동이 ‘일의 일부’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의 일반적인 인식이 인식된 현실의 일반적인 타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산업시대를 거쳐 아이들의 노동력까지 필요로 하던 시기에는 지금은 금지되는 아동 노동이 당연하게 생각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1845년 제정된 ‘날염공장법’은 8세에서 13세까지의 아동의 노동시간을 아침 6시에서 저녁 10시까지인 1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동시에 식사를 위한 법정 휴식시간을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이진경, 2004:176). 이처럼 감정노동에 대한 현직 노동자들의 인식이 ‘일의 일부’로 여겨진다고 하여도 이는 오히려 은폐된 문제로서 더 큰 의미로의 사회문제일 가능성도 있다. 혹셀드도 표현규범에 의해서 감정노동을 하는 델타 항공사의 여승무원이 위기 상황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 지를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지만, 내 얼굴에 놀라움이나 공포를 드러내지 않도록 교육받았다. 나는 내 승객을 보호해야 한다고 느낀다. ... 기내 방송 중에 내 목소리는 약간 떨고 있을지 모른다. 어찌되었든 나는 그들이 안전하다고 믿게 만들어야 한다...그것이 최선이다.(혹셀드, 1983:107, 김상표, 2000:205에서 재인용)

델타 항공의 여승무원은 자신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표현규범에 충실하다. 그 이유는 그 상황에서 표현규범에 충실한 것이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의 일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노동자들은 단순히 표현규범만을 표면적으로 따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내면화 하여 감정적 괴리를 없애려는 시도를 하는데, 인터뷰에서 들을 수 있었던 감정노동은 일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는 대답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감정 노동의 표면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진심행위를 통한 자기 합리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펠리 & 서튼(1987,1989)과 같은 학자는 이러한 행위가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물론 노동자의 자기만족감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혹셀드는 진심행위를 통한 감정부조화의 인위적인 역제는 오히려 진정한 자아(real self)를 기만하는 것이고, 따라서 표면행위를 통하여 겪는 것보다

불과하지만, 불만을 표현한 고객은 재구매율이 19%, 불만을 표현한 후 문제가 잘 해결된 고객은 재구매율이 54%, 문제가 아주 신속하게 해결된 경우의 고객은 재구매율이 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희(2006:216)

더 심각한 자기소외를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두 상반된 주장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어느 쪽이 더 우세하다는 비교 분석적인 연구들이 존재하지 않지만 감정과 몸의 관계에 관한 몇몇 학자들의 연구는 혹설드의 견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¹⁷⁾ 또한 국내에서 이복임(2006)은 양적 통계 연구를 통하여 감정노동의 진심행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할만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바가 있다. 또한 감정노동을 완화시켜주는 회사나 정부의 정책 도입의 희망 유무에 관한 질문에서 면접자는 생각해본 적은 없다고 하면서도 그런 정책이 도입되기를 강하게 원하기도 한 것으로 보아 이 노동자는 감정 노동을 ‘일의 일부’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에게 지워진 무거운 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있기만 하다면 너무나 좋죠. 힘든 일이 줄어든다는데 누가 싫어할 사람 있나요. 일 이니까 다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일하고 있는 거지, 누가 도와준다면야 만세죠 만 세. 이 질문 듣기 전에는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말이예요. (사례 8)

2.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가.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양상의 독립성

여성들의 인권은 그 동안 인권의 개념에서 제외되어 왔다. 인권운동의 역사의 중심에는 늘 남성이 있었고, 이들에 의해서 정립된 인권이라는 개념은 필연적으로 남성 중심적일 수밖에 없었다.¹⁸⁾ 따라서 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여성들은 배제되기 일쑤였고,

17) 프로인트(Freund)는 건강과 질병에 대한 연구에서 감정양식이 이른바 ‘몸의 평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우선 그는 사회적 건강인 병(illness)과 생리적 건강인 질병(disease)를 나누고 몸이 과잉 상태나 결핍 상태가 아닌 한계범위 내에서 혈압, 체온, 호르몬수준 및 전해물질의 균형과 같은 특성들을 조절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이고, 병은 정신과 신체의 밀접한 통합성을 벗어났을 때, 즉 몸의 내부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검토하여 이를 따르는 상호작용이 없을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감정노동은 몸 내부로부터 오는 감정적 요구를 묵살한 채 정신에 의해서 표현규범을 따르는 것을 요구하므로 이러한 몸과 정신의 괴리는 감정적 허위의식(emotional false consciousness)을 경험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람들이 제아무리 표현규칙에 의해서 특정한 감정만을 느끼도록 훈련되어 왔더라도, 실제로는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감정노동을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표현규칙을 따르는 경우라도(무례한 고객에게 웃으며 인사하기 등)실제로는 고향압을 유발하는 등 해로운 생리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크리스 쉘링, <몸의 사회학>, p.168-175에서 재구성

18) 인권이라는 용어가 현대적 의미를 띠게 된 것은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이지만 이 인권의 개념에는 여성 인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프랑스 혁명 직후에 올랭프 드 구즈는 ‘여성권리선언’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여 여성들에게 일반화 시키는 것이 당연히 되었다.

노동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성 노동권은 오랫동안 노동권에 대한 논의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었다. 그 이유는 노동과 그와 관련된 가치, 생산과 같은 개념이 남성들에게 의해서 정립되었고, ‘남성/여성’의 구별은 곧 ‘노동/비노동’, ‘가치/무가치’, ‘생산/비생산’과 같은 이분법적 개념 양분화를 확산시켰기 때문이다.(여명희, 2008) 따라서 노동권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여성의 관점에서 본 노동의 재정의¹⁹⁾와 여성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권의 침해에 대한 연구가 동시에 필요하다.

이는 이미 서비스 업종에서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69.8%(통계청, 2005 경제활동인구연보)에 이르는 것을 볼 때 더욱 시급한 과제로 생각된다. 특히 고객과 직접적인 대면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백화점 판매직 노동자들의 경우 여성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박홍주, 1995), 여성의 비중이 높은 직종 일수록 비정규직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구미현, 2002) 여성의 인권은 남성의 인권 침해 양상과는 독립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나. 감정노동으로 인한 여성 노동자의 인권 침해

감정 노동의 경우에도 여성이 겪는 감정 노동과 남성이 경험하는 감정 노동은 구분된다. ‘남성-강인함-이성’, ‘여성-부드러움-감성’식의 편견은 마치 여성은 당연히 감정 노동에 능숙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고 여성은 남성보다 더 친절해야 하고 더 잘 웃어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²⁰⁾남성들과 여성들 모두가 감정노동에 종사하지만 그

발표하고 남성과 동등한 지위의 여성 인권을 주장했지만 1793년 왕당파로 몰려 처형당하였다. 이후 여러 여성주의자들이 여성 인권운동을 펼쳤지만 실패하고, 여성 인권이 세계 인권 이슈의 중심적 과제로 설정된 계기는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제 4차 세계여성대회에서부터이다.(강남식, 2002)

19) 여성주의자들은 그 동안 노동활동이 가사와 양육과 같은 재생산 활동에 크게 빚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집안일은 비시장, 비생산, 비노동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러한 활동들은 사실 ‘관계, 감정 이입, 연민, 살아, 정사’등의 활동이 필요한 재생산 노동으로서 이를 ‘돌봄노동(care work)’라고 정의하고 돌봄 노동도 노동의 일부분임을 주장한다.

20) 이러한 편견은 전통적인 이성·남성 중심적 노동관에서 기인한 것이다. 서양에서 노동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천해 왔지만 이러한 개념의 변화의 중심에는 남성과 이성중심의 사고가 있었다. 플라톤 이래로 ‘남성-합리적인 것’, ‘여성-불합리적인 것’의 인식이 자리 잡고 여성은 불완전한 존재로서 언제나 남성을 보충해야 한다는 사고가 강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정립된 노동의 개념은 당연히 이성·남성 중심적일 수밖에 없었고, 감정노동은 이제까지의 노동의 개념이 포섭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하는 제한

들 사이에서도 노동의 분화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남성들은 빗쟁이와 같은 종류의 작업에서 감정노동을 하는 반면 여성들은 스투어디스와 같은 유형의 직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다(혹셀드, 1983). 이러한 경향은 백화점 매장을 둘러봐도 명확하다. 의류, 화장품, 가구, 식품 등 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제품의 판매원들은 대부분이 여성이지만 전자, 스포츠, 시계 등 전통적으로 남성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제품의 판매원들은 대부분이 남성이다.

여성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백화점 판매직의 경우, 남성 노동자는 경험할 수 없는 여성 노동자이기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판매 실적을 올리려는 경영자들의 시도이다. 몇몇 직종은 아예 입사 면접 때부터 외모에 대한 제한을 두기도 하고,²¹⁾ 대부분의 직종에서도 채용 후에도 드레스코드라는 기본이고 여성의 몸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홍주, 2007). 이러한 여성 노동자의 성에 대한 상품화는 감정노동과 결합하여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감정노동에서 성상품화는 특히 판매원 여성들의 경우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구매 욕

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21)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이와 같은 차별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별은 공공연하게 발생한다. 여성의 경우 취직을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는 것은 거의 필수처럼 인식이 되며, 취업 정보 사이트에 문의를 하면 사이트에선 여성 구직자의 성형을 권한다고 한다. 다음은 여성 구직자의 용모차별이 인권침해임을 밝히는 사설이다.

<한겨레>2004년 12월 27일 사설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면 으레 여성들의 취업문이 먼저 좁아진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요즘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 여성들은 ‘외모’라는 또 다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능력보다도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온라인 취업정보 사이트가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채용 때 입사지원자의 외모가 당락에 영향을 준다”는 대답이 3분의 2나 되더라고 한다. 2년 전에 같은 조사를 했을 때는 그런 대답이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이 앞을 다투어 성형수술이나 살빼기를 하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걱정스러운 일이다. 아름다움에 끌리는 것이야 누가 무어랄 수 없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은 상쾌를 벗어났다. 여러 아름다움 가운데 일부일 뿐인 외모의 아름다움이 마치 아름다움의 전부인양 과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용 성형수술이 우리나라처럼 일반화한 곳은 따로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비용과 부작용의 우려도 문제지만, 비슷비슷하게 눈 크고 코 오뎅한 서양식 미인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자신에 대한 비하요, 개성을 모독하는 행위 아닌가. 개인을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우리 사회의 병리가 문제다.

용모를 기준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에서 직무수행 능력과 상관없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성에게만 ‘용모 단정’ 등을 요구하는 것은 남녀차별이라고 본 것이다. 용모차별은 남녀차별에 앞서 인권침해다. 얼마 전 대통령 경호실이 여성 경호원을 공채하면서 ‘키 160cm 이상, 용모 단정’ 등의 기준을 내세운 데 대해, 인권위원회가 탈락자가 진정할 경우 조사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그런 맥락이다. 정부 기관이나 책임 있는 기업이 채용에서부터 인권을 침해해서야 되겠는가.

구를 자극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가장 단적인 예가 거리에서 판촉행사를 진행하는 내레이터 모델로 이러한 행위는 제품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제품 판매의 고전적인 방법으로 자리매김했다.

백화점에 근무하는 판매여성의 경우에는 미디어를 통한 광고나 모델을 통한 판촉 행사와 같이 제품의 구매욕구와 페티시즘을 결부²²⁾시켜야 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경우엔 단정한 용모(화장 상태, 장신구, 청결, 유니폼 점검 등)와 최대 몸무게를 규정하는 등의 포괄적인 규정만 존재할 뿐이다. 동시에 이들은 늘 미소를 띠고 고객을 응대하길 요구받으며, 회사에서는 이들이 ‘백화점의 움직이는 꽃으로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라고 강조한다(박홍주, 1995). 이들에게 아름다운 외모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외모가 뛰어나수록 채용 조건이 더 좋다는 마진율이 높은 부서로 배치된다. 하지만 지나치게 눈에 띄이는 외모는 오히려 기피되기도 한다.

얼굴이 예쁘면 좋아야 하죠. 손님들이 한 번이라도 더 쳐다보고, 점원이라고 막대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막 연예인처럼 예쁘면 별로예요. 제품보다 점원이 더 눈에 띄기도 하고, 너무 튀는 사람은 주변 매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제품 판매에는 외모도 외모지만 신뢰를 줄 수 있는 얼굴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냥 복장 단속만 하지 별 간섭은 안 해요. (사례 1)

과거의 연구(박홍주, 1995)는 연구에서 백화점은 지속적으로 여성의 미를 강조하고 이러한 주입된 여성관은 재생산되어 여성 판매원들은 외모를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옷차림, 화장품 등에 상당한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반해 면접자는 외모가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품 판매를 위한 신뢰도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10여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개선되고, 회사 측에서도 외모는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일부 요소일 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나타난 변화로 생각된다. 하지만 일부 고객들 중에는 여전히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페티시즘(fetishism)은 무생물이거나 부분적인 물건(발, 머리카락, 점 등)에 여성의 성적 대상물을 연관시켜 성적 만족을 얻어내려는 남성의 성적 도착 행위로 정의된다.(이선옥, 2003) 최근 들어 미디어에서는 제품과 여성의 성 이미지를 병치시켜 이러한 페티시즘을 유도하려는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 모주유소 기업의 광고에는 미모의 여배우가 자동차에 기름을 주유하면서 ‘맛을 알아가지고’라는 대사를 한다. 이 광고는 제품과 여성의 성을 결합시키는 페티시즘을 겨냥한 것이다.

이제 거의 사라졌지만 아직도 나이 드신 분 중에는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명령조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치 내가 자기 하녀라도 되는 냥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있었느냐면 제품에 컴플레인이 들어왔는데 규정상 교환이 안 되는 경우라서 계속 안 된다고 말했더니 나중엔 다 들으라는 듯이 ‘못생긴 게’라고 하더라고요. (사례 3)

이 밖에도 고객이 눈으로 자신의 몸 훑는다거나 명찰이 달린 가슴 부분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행위에 불쾌감을 느낀다는 대답도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성 판매원은 계속해서 감정노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괴로운 노동임과 동시에 생계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여성은 당연히 친절하다는 인식은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여성 노동자의 고충을 무시하게끔 하는 요인이 된다.

3. 감시 통제로 인한 억압

감정노동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표현규칙에 따라서 행동하여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념 내포적으로 통제를 수반한다. 앞서서 감정 노동으로 인하여 받는 직무스트레스와 이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건강의 악화에 관한 논의에서도 통제, 즉 표현규칙이 논의가 되었지만, 여기에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으로서의 통제가 아닌 인간을 개별화하여 권력구조의 일부분으로 만드는 배치(dispositif)²³⁾로서의 통제를 의미한다.

푸코가 말한 배치를 통해서 구현되는 통제가 앞에서 다룬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통제와 다른 점은 전자의 통제는 노동자 스스로가 통제를 내면화하게끔 조작되어 있다면, 후자의 통제는 노동자는 감시자를 인식하고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자신의 행동을 표현규칙에 맞게 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즉 혹셀드가 말한 진심행위(deep acting) 및 느낌

23) 푸코는 ‘배치(dispositif)’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는 담론적인 것과 비담론적인 것이 복합되어 각각의 요소들이 일정한 계열을 이루며 배열되고 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푸코는 <성의 역사> 1권에서 성에 관한 담론의 증가와 함께 교회에서 나타난 고백의 절차화, 그리고 가정 내부의 성의 배치까지도 통제하려는 전략(어린이의 성교육, 쾌락의 정신의학 편입 등) 등 담론적 요소와 비담론적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여 권력이 작용하는 효과를 밝혀보려고 하였다. 푸코의 ‘배치’는 들뢰즈/가타리가 사용한 ‘배치’와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이 있는데, 전자가 고유한 역사적 요소의 계열로 이루어지는 반면, 후자는 영토성과 관련해 지리적 요소가 강조된다는 점이 차이점으로 지적된다. 본 논고에서 푸코의 배치 개념을 사용 하는 것은 감정노동(담론적인 것)과 통제(비담론적인 것)의 복합체로서 결성되는 권력이 이루어내는 모습을 그려내는데 푸코의 ‘배치’ 개념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서이다.

규칙(feeling rule)이 푸코적 의미의 배치를 통한 통제라면, 표면행위(surface acting) 및 표현 규칙(display rule)이 앞선 논의에서 언급한 바 있는 통제이다.²⁴⁾

푸코적 의미의 통제가 문제시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노동자 스스로 통제 자체를 내면화 하고 그러한 자발적인 내면화를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혹셀드가 지적했듯이, 이러한 통제(감정노동)의 자발적인 내면화는 ‘거짓 자아(false self)’를 만드는 자기기만이며 정신 건강에 큰 해악을 끼친다. 하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자의 생활 전반에 걸쳐 통제가 침투하게 되는 것이다.²⁵⁾

기업은 감정노동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단순히 ‘친절해야 한다’, ‘고객을 대할 때 늘 웃어야 한다.’라는 추상적인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푸코가 지적한 것처럼 신체의 세부적인 것까지 규율하고 통제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매출증대를 위해 판매사원의 노동과정을 표준화 한 것을 판매 10단계별接客 판매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는 ‘대기자세 → 접근 → 상품제시 → 상품설명 → 입금 → 포장 → 대조 → 사음인계 → 전송과정’으로 세부화 된다. 더군다나 이들에게는 신용카드·수표·전표취급요령, 포장기술, 진열기법, 상품지식 등의 실무지식 및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투철한 서비스 정신이 동시에 요구된다. 또한 노동자는 고객을 대할 때뿐만이 아니라, 고객과 언제 대면할지 모르므로 늘 긴장된 상태에서 대기상태를 유지해야만 한다(박홍주, 1995).²⁶⁾

24) 그러나 엄밀히 말하여 진심행위나 느낌규칙이 푸코적 의미의 배치를 통한 통제와 일치한다고도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진심행위 또한 느낌규칙을 통하여 ‘감정생산의 수단을 점거하고 실제로 우리의 느낌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자신의 내면의 마음을 외부 상황에 일치시키는 점에서 일종의 감정노동의 ‘내면화’에 해당하지만, 이 또한 감정노동을 내면화하고자 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반면에 푸코적 의미의 배치를 통한 통제는 노동자가 통제가 작용하는 것을 의식하고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훈육’을 통해 노동자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무의식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감정노동과 관련된 개념 중에 푸코적 의미의 배치를 통한 통제와 유사한 개념이 부재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개념인 진심행위와 느낌규칙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하고자 한 것이다.

25) 푸코는 그의 저서 <감시와 처벌>중 ‘순종적인 신체’란 장에서 18세기 후반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근대화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어느 시대에나 신체에 대한 권력이 존재했지만, 18세기 후반 무렵부터 더 세밀한 기술적인 측면이 추가되었다. 첫째, 통제의 규모로서 단순히 신체를 한 덩어리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세부적인 단위(발, 허리, 키, 몸무게)로 나누고 세부 단위에 대한 통제로 변화했다. 둘째, 통제의 대상이 행위의 의미 있는 구성요소나 신체의 표현형식이 아니라, 행위의 내적 조직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이제 관심 대상은 신체보다는 체력과 그 훈련이 되었다. 셋째, 통제의 양상이 활동의 결과에서 활동의 과정에 중심을 맞추게 되었다. 따라서 행위자가 어떤 행동을 보였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훈육을 통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더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이렇게 신체를 통제하려는 권력의 미시물리학은 어느 한 작업에만 폐쇄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배치 관계를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26) A백화점의 고객을 대할 때의 지침에 따르면 올바른 대기 상태란 ‘판매의 수용태세를 갖추면서 고객에게 말을 건네는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다. 양손을 포개서 가볍게 아랫배에 대고 발뒤꿈치를 붙이고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자기검열이 내면화되는 이러한 현상은 푸코가 언급한 ‘원형감옥(pan-opticon)’을 연상케 한다. 원형감옥의 특징은 모든 개인을 개별화·고립화시킴으로써 그들을 통제 가능한 다수로 만들고 동시에, 감금된 자가 스스로 그 유지자가 되는 어떤 권력적 상황 속으로 편입되는 것이다.(푸코, 1994) 이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중앙의 관제탑에선 그들을 볼 수 있지만, 그들은 중앙의 관제탑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지 볼 수 없기 때문에 늘 긴장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백화점에서 푸코의 원형감옥과 놀랍게도 비슷한 유형의 통제 시스템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스터리 샤퍼(mystery shopper)와 감시카메라이다. 미스터리 샤퍼란 고객을 가장한 채 노동자들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를 점수화 하여 상부에 보고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노동자는 평가된 점수로 인하여 인사고과에 영향을 받거나 심하면 징계나 감봉·면직을 당할 수도 있다.

누가 모니터요원인지 알 수 없죠. 심지어 여자인지 남자인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언제 하는지, 어느 매장을 모니터할 차례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일반 고객 속에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고객을 볼 때마다 항상 조심하게 되고, 친절해야 된다는 걸 상기하죠. 모니터 요원에게 큰 힘이 없다고 해도, 그들의 보고를 토대로 처벌과 상이 주어지니까. 꼭 상을 바라는 게 아니고 전보나 호봉장등, 시 말서, 심하면 퇴직을 강요당하는 경우까지 있으니 조심이 최우선이죠.(박홍주, 1995:101)

많아요. 백화점마다 다 있어요. 모니터라 그래서 모니터링하는 건데 본사에서도 나오고 외부업체가 그걸 운영하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네요. 그래도 뭐 누가 오시던 무조건 손님이니까, 안 사셔도 손님이니까. (질문 - 감시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분이 어떠세요?) 그게 너무 항상 오래 당해오던 일이라서. 그게 집중단속 기간이 있어요. 그 때는 바짝 긴장해야죠. 그 때 걸리면 이 쪽에 불이익이 오는 거죠. 모니터링하는 건 좋아요 매출향상을 위해서라든가 직원들 약간 나태해지는 걸 막아주니까. (사례 4)

똑바로 서서 정면을 바라보면서 밝은 표정으로 고객의 태도나 동작을 관찰한다. 이는 친절과 서비스, 신용을 판매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님에게 부담가지 않도록 부드러운 눈초리로 살피고 말을 걸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한 대기자세이다. 박홍주(1995), ‘판매여직원의 감정노동에 관한 일연구 : 서울 시내 백화점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재인용

인터뷰를 하면서 발견된 점은, 노동자들이 미스터리 샤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 덕분에 고객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하게 되고 매출향상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권력의 작용이 단순히 금지나 부정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력 향상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푸코의 지적과 일치한다(이진경, 2002). 감옥에서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은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이지만, 동시에 ‘범죄자를 체념적이고 유익한 활동에 맞도록 훈련시키고 그에게 사교성의 습관을 회복시켜준다.’²⁷⁾ 노동자들이 미스터리 샤피가 자신들에 대한 심한 억압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들은 감시카메라에 관한 질문에서도 비슷한 인식을 보여주었다.

저기 저 감시 카메라 보이죠? 저게 누굴 찍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손님들이 뭐 훑쳐가나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제대로 서있고, 한눈 안 팔고 있나 감시하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엔 도둑을 적발하려고 설치한 것이었는데, 어느새 주 목적이 우리를 감시하는 게 돼버린 거죠. 저거 때문에 우린 앉아있지도 못하고 늘 손 가지런히 모으고 대기상태로 있어야 하는 거예요.(사례 1)

어느새 부턴가 감시카메라가 고객이 아닌 노동자들을 감시하기 시작했다는 면접자는 덧붙여 압구정이나 강남과 같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매장일수록 그리고 고가품 판매장일수록 정도가 심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러한 감시체제가 부담스럽다며 개선되길 원하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발전·유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보였다.

점수를 매기는 방법은 내가 보기에 좀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열 개 정도의 항목이 있대요. 거기 보면 뭐 매장정돈상태라던가 손님들 왔을 때, 갈 때 인사 여부라던가, 그런 건 중요하니까 괜찮은데. (중략) 이런 걸 운영하는 목적은 좋은데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는 거죠. 제대로 된 항목으로 모니터링을 해줬으면 하는 거죠. 그리고 모니터링이라면 사람이 없을 때 혼자 왔을 때 감시를 하든 안하든 오는 손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게 맞는데, 막 손님들 몰렸을 때 와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한참

27) 푸코, <감시와 처벌>, 나남 출판사, p.343

힘들 때. 막 몰렸을 때 와갓고 막 물어봐. 그러면 사람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한참 바쁘다보면 대답 못할 때도 있는 건데...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사례 4)

감정노동이 현대 서비스업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은 것처럼,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이러한 시스템들도 무조건 배척해야할 요소는 아닐지도 모른다. 이러한 통제 시스템을 아무리 부정적으로 보려고 해도 이것이 가져오는 생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요소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박홍주, 1995).²⁸⁾ 하지만 노동자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듯이, 이들은 통제 상황을 내면화 하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 어떠한 지점에서 현재 그들을 통제하는 상황이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통제 시스템이 어느 선까지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4. 소결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감정노동이 노동자의 인권에 미치는 문제점이 크게 세 가지 임을 지적하였다. 첫 번째는 가시적으로 관찰되는 노동자의 건강권에 관한 문제로,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의 주원인임을 밝힘과 동시에 직무스트레스가 가져올 수 있는 각종 질병들을 소개함으로써 감정노동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로 감정 노동이 여성 노동자들에게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따라서 남성 노동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감정 노동과 여성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감정 노동이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한 뒤, 이러한 차이는 그동안 감정을 노동의 개념에서 배제해왔던 남성·여성 중심적인 사고에서 기인한 것임을 밝혔다. 따라서 감정 노동은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과 동시에 남녀 불평등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이라는 부정적인 사회 효

28) 이러한 권력에 대한 한계 인식은 푸코에게도 잘 들어나는데, 권력이 단지 주체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주체를 생산해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권력에 대한 저항은 왜 나타나며, 권력에 저항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대두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푸코로 하여금 말년에 윤리학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그리하여 푸코는 문제설정을 다시 제기하게 된다. ‘권력이 불가피하다면, 권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차라리 권력 안에서 ‘저항’을 사고할 수는 없는 것일까?’ 하지만 이러한 문제 설정 또한 푸코의 권력이론의 한계를 완벽하게 극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진경, <철학의 외부>, p. 181-182에서 재구성

과도 수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감정노동으로 인한 통제가 가장 비가시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푸코의 논의에서 출발한 논의는 어떻게 해서 권력이 백화점에서 차용되고 노동자들의 신체를 통제하는지를 알아보았고, 그 구체적인 구현 양상인 미스터리 샤프와 감시카메라가 푸코가 지적했던 통제 권력의 특징과 유사한 점이 있음을 알아보았다. 따라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푸코가 계속해서 문제 삼았던 윤리학의 문제, 즉 노동자의 인권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IV.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1. 노동의 인간화

노동은 현대인에게 생업을 위한 생계수단의 의미를 넘어서 자이실현과 자기성취의 적극적인 수단이 되었다(여명희, 2008).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노동을 경쟁해야만 하는 어떤 것으로 만들고 있다. 생산성 향상과 최고 효율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업은 노동자들을 무한 경쟁사회로 몰아넣고, 그 곳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일을 해야만 하며, 이러한 과도한 경쟁은 근무 외 시간에도 회사 일을 처리해야만 하는 노동이 삶을 압도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야기하게 되었다.

노동이 오로지 생존과 연결될 때 인간의 삶은 피폐해지게 된다. 따라서 서구에서는 1970년대부터 ‘노동의 인간화’라는 개념이 출현하게 되었다. 노동의 인간화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성의 상실에까지 이를 수 있는 수행업무의 지나친 분할(분업)로 인한 단순, 반복되는 작업을 통해 인간이 작업장에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을 막고, 작업자 개개인의 책임과 의사결정 권한, 그리고 행동영역을 확대시켜 작업장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운동’을 말한다(김성국, 2005). 이러한 노동의 인간화는 주로 작업장에서 직무 설계(job design)와 조직설계(organizational design)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활동 영역을 넓게 하고, 책임을 증가시키고,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업과 조직을 설계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²⁹⁾

29) 직무설계란 종업원에 의해 수행되는 목표와 과업을 어떻게 부여할 지를 정하는 조치를 의미한다.(김강

감정노동을 경험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감정노동을 단지 서비스의 일부분으로만 생각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노동의 인간화의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감정 노동은 ‘단순, 반복되는 작업을 통해 인간이 작업장에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끔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감정 노동에 의해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그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매장이 판매원이 1명인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몸이 힘들어도 쉴 수 없을뿐더러 심지어는 화장실도 못하고 참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박홍주, 1995). 또한 감정 노동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택하는 방법은 수다, 노래방, 소리 지르기, 음주와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방법에 머물러 있었다.

손님이 자리를 뜨고 난 이후에 직원들끼리 손님에 대해서 이야기 하죠.(수다 및 뒷담화) 그리고 일을 마치고 저녁에 술 한 잔 하죠.(사례 6)

딱히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동료 직원들과 수다 떨고 집에 가서 혼자 욕하고 그래요. (사례 7)

오히려 회사는 이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철저히 고객 중심의 경영 전략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더 가중시키기도 한다. 회사에서는 고객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핫라인(hot line)설치나 고객센터 설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불만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이러한 회사의 노력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조금의 불친절도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자신에게 곧바로 돌아올 수 있다는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킨다(박홍주, 1995). 따라서 고객센터를 운영하면서도 일방적으로 고객의 입장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입장도 고려하여 서로의 의견 차이를 중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함께 서로의 근무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는 공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국, 2005) 핵만(Hackman)과 올드햄(Oldham)은 이른바 “직무특성모형(job characteristics model)”이론을 통하여 어떤 직무든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핵심직무 차원이 무엇인가에 따라 기술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①기술의 다양성, ②과업의 정체성, ③과업의 의미성, ④자율성, ⑤피드백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경영자는 노동자들의 자율성을 확대시키는 직무설계를 통해 그들이 좀 더 활기찬 분위기에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데, 이는 감정노동의 경우 너무 엄격한 표현규칙을 적용하기 보다는 좀 더 자율화되고 포괄적인 규범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변경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2. 여성주의 관점에서 노동의 재정의

노동의 인간화와 더불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남성·이성 중심적 노동 개념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재정의하는 것이다. 앞선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남성·이성 중심적 노동의 개념은 감정 노동을 노동의 일부라기보다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노동의 부수적인 요소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주로 공적 영역으로 간주되는 직장의 노동은 반드시 합리적이어야 하고, 감정은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린다.³⁰⁾

이러한 노동 경향에 반대하여 여성주의 학자들은 ‘무제한적인 감정성(unbounded emotionality)’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무제한적인 감정성’이란 노동 현장에서 관찰되는 공적 영역과 사적영역의 이분법을 허물고 노동의 과정에 성적 매력, 정의, 공포, 슬픔, 기쁨 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김상표, 2002). 여성주의 학자들은 ‘무제한적인 감정성’은 비록 조직에 비용적인 부담을 안겨줄 수는 있지만 조직 공동체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근로 환경을 눈에 띄게 개선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³¹⁾

마르크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광의의 노동력이란 ‘인간의 신체 즉 살아있는 인격 속에 존재하며 그가 어떤 종류의 사용가치를 생산할 때마다 움직이는 육체적, 정신적 능력의 총체.’(고미라, 1995:41)이지만, 그를 포함한 이후 마르크스주의 학자들의 노동에 관한 논의는 주로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의 분리를 통한 노동자의 노동으로부터의 소외에 대한 연구였다. 즉, 이들은 노동의 본질이 이성에 의해서 규정지어지고 감정이 어떻게 배제되어 왔는지를 밝히고 이를 비판해왔다.³²⁾

따라서 이러한 노동의 개념은 필연적으로 감정을 노동에서 배제시키고, 노동자들이 노동에서 기쁨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점점 더 노동으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을 낳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감정의 문제들, 여성의 문제들이 새롭게 노

30) 감정 노동은 노동자의 내심의 감정을 억제하고 통제되고 규범화된 감정을 만들고 이를 연기해야 된다는 점에서 감정이라기보다는 이성에 가깝다.

31) 감정적인 요소를 무제한적으로 노동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몇몇 여성 학자들은 조금은 완화된 형태인 ‘제한된 감정성(bounded emotionality)’을 주장하기도 한다. 제한된 감정성의 특징은 다음 여섯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①상호주관적 한계설정, ②자연스럽게 발현하는 작업 느낌, ③모호성의 수용, ④가치들의 다층위계, ⑤통합된 자아 정체성, ⑥공동체의 신장.

32) 브레이버만(Braverman)은 『노동과 독점자본』에서 현대사회의 생산 활동이 노동자들을 탈속련화하게 만들고, 통제와 감시를 극대화함으로써 그들의 노동이 단순화·분업화 되어간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산업 구조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를 불러일으키는데, 정신적인 노동은 경영자들에 의해서 독점되고 이제 노동자들은 육체적 노동만을 실행하게 된다고 한다. 고미라(1995)와 김성국(2005)에서 재구성

동의 영역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가사노동, 감정노동, 돌봄노동 등처럼 그 동안 훈련이 필요 없고 여성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왔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히 노동의 일부분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³³⁾

3. 소비자 운동

기업은 실적 향상을 위해 표현규범을 제정하고 노동자들이 이 표현규범을 지키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감정 노동을 요구하는 이러한 상황은 노동자-기업 양자 간의 관계이다. 하지만 노동자가 표현규범에 의해서 감정 노동을 수행하는 대상은 바로 소비자이고, 이 때 노동자-소비자의 양자관계가 다시 설정된다. 즉, 서비스 노동자들은 기업이 요구하는 감정 노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요구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일종의 삼자 관계의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김경희, 2006).

따라서 감정 노동의 경우 이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업의 일방적인 노력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사실상 기업이 표현규칙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감정노동을 하게끔 강요하는 이유가 이윤극대화를 위한 ‘고객제일주의’ 때문이기에, 감정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 즉 소비자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이다.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하면서 의식·무의식적으로 노동자들이 자신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욕망 때문에 감정 노동은 판매와 직결되며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몇몇 소비자들의 잘못된 욕망은 단순히 제품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불만 또는 단지 자신의 욕구에 대한 불만사항을 충족시켜주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고객들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특히 입었던 옷을 환불해 달라는 손님들이 가끔 있는데 정말 난처하죠. 살 때 다 입어봤으면서 며칠 후에 찾아와서 사이즈가 안 맞는다고 환불해 달라고 해요. 파티 같은 데에 입고 갔다가 그러는 거죠. 고

33) 이러한 새로운 노동의 개념은 한 문장에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기존의 이성·남성 중심적인 노동의 개념에 가사노동, 감정노동, 돌봄노동을 포함시키기 위해선 의미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들 수 있는 것이 경제적 가치나 생산성 위주의 노동 개념이다. 돌봄노동이나 가사노동은 물론 경제적 가치나 재생산을 가능케 하는 노동이지만 동시에 감정, 관심, 배려, 사랑을 포함하는 노동으로 인간관계 및 인간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관념이다. 박수경(2005), p.15-19

가인 제품일수록 이런 일들이 많아요. 원칙적으로 착용했던 것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려도 인격 모독적인 말을 뱉는 분들도 있고, 결국 논쟁이 심해지면 상담실까지 가서 해결해요.(사례 4)

백화점이라는 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백화점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걸 이용하는 분도 있죠. 예를 들어 시즌상품이 있는데, 봄에 사 가신 제품을 지금 들고 와서 이거 한 번도 안 입은 거라고 하시면서 새 걸로 바꿔달라고 하시는 거죠. 뭐 여기에 흠집이 있다던가 하는 이유를 대시면서, 아니 이거 입으신 거 아니냐고 물어봐도, 아니 이거 안 입은 거라고 우기시면 믿겠어요? 근데 저희는 믿어야 돼요. 이미 봄시즌상품은 다 처리가 됐어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손님 그건 좀 곤란합니다라고 하면 매니저 부르라는 거죠. 그러면 바로 사무실로 올라가서 시말서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백화점이라는 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힘들죠.(사례 3)

더군다나 최근에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소비자들 간의 정보 교환은 기업이나 노동자도 하여금 그들의 비위를 더욱 맞추도록 한다. 심지어 기업들은 신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과 관련된 블로그(blog)를 운영하는 블로거(blogger)를 초청해서 미리 상품을 사용하게 하고 대신에 그 후기를 올려주길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³⁴⁾ 이러한 모습은 인터넷상에서 소비자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34) 국민일보 2008년 8월 17일자 기사

전자업체들이 입소문 마케팅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블로거를 초청해 파티를 열거나 공짜로 제품을 준 뒤 사용 후기를 올리게 하는가 하면, 해외여행까지 보내주며 지극 정성이다. 전문 영역을 개척해 사이버 공간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파워 블로거가 올리는 사용 후기는 제품 판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전면 터치스크린 휴대전화인 햅틱폰이 출시 4개월 만인 지난달 말 현재 40만대 이상 높은 판매량을 기록한 데는 블로거 마케팅이 큰 몫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말 햅틱폰을 출시할 때 휴대전화 부문에서 널리 알려진 파워 블로거 30명에게 공짜로 휴대전화를 주고, 사용 후기나 햅틱폰 관련 에피소드를 공식 블로그인 ‘햅틱 피플’에 올리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네티즌과 소통하는 블로거 마케팅이 성공적이었다고 판단, 내달 출시될 햅틱2도 블로거 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국내 출시한 ‘소울폰’ 마케팅에도 블로거를 이용하고 있다. 요리, 인테리어, 여행 전문 블로거와 웹 아티스트 등 4명을 런던, 파리, 암스테르담에 여행을 보내 다양한 경험담을 올리도록 한 것. 이들이 소울폰 공식 블로그인 ‘소울 메이트’에 올린 93건의 글은 조회 수만 75만회를 넘어섰다. LG전자도 지난해 10월 엑스캔버스 공식 블로그 운영을 시작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입소문 마케팅에 본격 뛰어들었다. 소니는 바이오(VAIO) 노트북 탄생 10년을 맞아 지난 5일 블로거 100여명을 초청해 소니 바이오 리버스(Rebirth) 파티를 개최했다. 일본 본사 개발자를 불러 신제품을 소개하고 문답을 갖는 시간까지 마련했다.

에다. 따라서 경영자들은 소비자들이 혹여나 자신들의 제품에 나쁜 평을 올릴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고, 허위정보가 올라오고 지워져도 블로그를 통해서 빠르게 전파되는 인터넷의 특성상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기보다는 무조건 소비자의 요구사항만 들어주려는 태도를 보인다.

백화점 내 고객 상담 센터에서부터 외부 업체 측에 ‘무조건 손님의를 요구를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사 측에서도 백화점 내의 업체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제품에 불만을 가진 소비자가 ‘인터넷에 불만사항을 퍼뜨려서 제품이 잘 안 팔리도록 만들겠다’하고 협박하면 회사와 회사의 제품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님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요.(사례 5)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감정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소비자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소비자 운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직종에서 감정 노동이 필요하게 된 현 시점에서 감정 노동 종사자가 다시 소비자가 되어 다른 노동자에게 감정 노동을 강요하게 한다는 것은 역설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소비자 의식을 고양하는 캠페인을 벌인다거나 홍보책자를 발행하는 등의 운동을 통해 바람직한 소비자-노동자의 관계를 정립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소비자 운동으로 ‘의자캠페인’³⁵⁾을 꼽을 수 있다. ‘의자캠페인’은 매장에서 노동자들이 앉지 못하고 계속 서서 있기 때문에 늘 힘든 근무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되고 이러한 환경은 특히나 여성 노동자에게 하지정맥류와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노동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들이 연합한 캠페인으로 시작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의자가 비치되어 있는 매장은 매우 드물고, 있어도 소비자를 의식해서 잘 앉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블로거는 전문가인 동시에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올린 제품 사용 후기는 네티즌 구매 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다”며 “입소문이 성패로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업체마다 블로거 마케팅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35) <http://www.의자캠페인.kr>에서 참조

의자에 앉아 있다가 손님이 올 때만 서비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고객을 맞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회사에서는 음식도 매장 안에서 절대 먹을 수 없게 하는데, 그게 음식 냄새가 옷에 배거나 매장 내에서 진동하면 고객 입장에서 불쾌해서 그런 거잖아요. 앉아서 근무하는 것도 고객들 입장에서는 질 낮은 서비스로 비춰질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 손해니까 절대 그렇게 안하죠. 저희 매장 안에도 의자는 있어요. 다만 앉을 수 없을 뿐이죠. 의자를 갖다 두는 것이 법으로 정해도 있다고 해도 이곳 사정은 달라요. 그런 건 그냥 비현실적인 얘기쯤 되는 거죠.(사례 2)

의자가 있어도 앉을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소비자들에게 ‘질 낮은 서비스’로 비칠까 두려워서라고 밝히고 있듯이, 매장 환경은 철저하게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편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기업에서의 지원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앉을 수 있도록 소비자가 먼저 배려를 해줘야 한다. ‘의자캠페인’을 시작하는 단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전략)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규칙 제 277조에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노동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의자를 비치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의자를 제공하는 문제는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이고, 이에 대한 노동부의 근로감독의 문제이다.

의자가 제공되었을 때 앉을 수 있는 주위 여건과 인식의 해결 역시 중요하다. 고객을 기다리며 잠시 앉아 휴식을 취했을 때, 고객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를 해 주는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이에 오늘 출범하는 “서서 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국민캠페인단은 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의자비치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이행, 노동부의 철저한 근로감독 실시 촉구와 함께 서서 일하는 ‘노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위해 활동할 것이다.

특히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고객은 왕이다’라는 기업의 판매 경영의 미명아래 600만 명에 이르는 비스 노동자들을 ‘하대’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노동과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의자캠페인’은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문제점에서부터 한국 사회에서 서비

스 노동자들을 ‘하대’하는 인식을 포착해내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실천적인 소비자운동이다. 감정 노동으로 피해를 받는 노동자들의 피해는 이런 의자캠페인과 같은 소비자 운동이 더욱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자신들의 의식이 개선되었을 때 비로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1.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총 2달에 걸친 문헌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하여 감정노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써진 것이다. 심층면접을 통해 백화점의 고용구조가 단순하지 않고 노동자마다 다른 고용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백화점에서 직접 채용한 사원으로 백화점의 임금기준 및 복지혜택을 받게 된다. 둘째, 아르바이트 사원으로 특정 기간에만 고용된다. 셋째, 업체별 파견사원으로 백화점의 노동통제 하에 있지만 임금과 복지와 같은 것은 자신이 몸을 담고 있는 업체에서 직접 받는 형태로 백화점 노동자의 많은 이들이 이 고용형태에 속한다. 넷째, 시간제 고용 사원으로 주로 판매 계산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고용환경이 다른 만큼 감정노동을 체험하는 층위도 다를 것인데, 본 논문에서 노동자들의 다양한 스펙트럼까지 고려할 경우 연구의 외연이 크게 확대되어 논의가 자칫 비정규직과 같은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로 흘러갈 우려가 있어 연구의 대상은 세 번째 유형인 업체별 파견사원으로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따라서 백화점 판매 노동자들의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감정노동의 양상을 살피기 위해선 그들의 노동환경을 더 세밀하게 나누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하지 못한 점이 이 논문의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인터뷰 대상자가 오로지 판매 노동자로 한정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박흥주(1995)의 경우 판매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백화점 간부와 같이 노동자와 백화점 경영자들을 아울러 인터뷰를 하였는데, 그 결과 노동 환경과 백화점 조직 환경에 대한 이해가 폭넓고 균형 있게 다루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주로 노동자의 시각만 담길 수밖에 없었고, 그 숫자도 10명에 불과하

여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연구방법론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일반화의 위험을 안고 있다.

2. 제언

현대 사회에서 노동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는 최근의 경향으로 볼 때, 노동에 지치고 노동으로부터 소외되는 사회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경우 IMF라는 분기점을 맞아 고용구조가 크게 바뀌고 사회적으로 양극화와 비정규직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들의 문제점은 경제구조가 20대 80의 사회, 즉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양극화 분포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감정노동은 최근 들어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특히나 한국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여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감정노동의 본래 의미에 의하면 이제 어떤 노동자든지 감정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감정노동 문제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낮은 노동자들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회·경제적으로 곤궁에 처하면 저마다 의식·무의식적으로 이에 저항하게 되는데 저항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을 방어한다. 이를 지위 방패(status shield)라고 부르는데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자신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따라서 감정노동의 경우 고소득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 간에 경험하는 감정노동의 양상이 다른 것은 논외로 하고서도, 그들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근무 자율성이 폭넓게 인정되는 고소득직종의 경우 업무환경을 바꾼다든가 오랜 시간동안 휴직을 한다거나 여가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다. 반면에 약한 지위 방패를 지닌 노동자들의 경우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수다, 화풀이 등과 같이 개인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들은 경제적 제약 때문에 자신의 노동 환경을 바꾸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감정노동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업은 물론이고 전사회적인 인식의 확대와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기보다는 단지 감정노동이 생산성과 조직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연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노동자들을 단지 이윤 창출을 위한 도구로 인식

하고, 그들을 통제하고 제어해야할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 노동은 통제하여야 할 대상이 아니다. 단순한 통제와 억압은 현 상황의 문제점을 숨기는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감정노동 문제는 단순히 기업차원에서 근무환경을 개선해준다던가, 조직분위기를 바꾸는 등의 단편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감정노동 문제의 이면에는 감정노동을 노동으로 보지 않는 자본주의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숨어있다. 노동의 의미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감정노동을 단순히 노동의 부가적인 문제로만 생각하는 한 감정노동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여성주의는 최근 들어 서양 중심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세계관으로 인하여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였다. 노동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여성주의가 비판하는 이성·남성중심적 노동의 개념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그들이 지향하는 더 낫고 이 시대에 부합하는 노동의 개념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바로 감정노동에 관한 문제로서 이제껏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감정노동이 노동으로 인정되고 나서야 비로소 감정노동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초석이 쌓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노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다시 정립된 후에 다시 감정노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감정노동의 문제는 노동의 문제이며 동시에 현대 서비스 산업의 문제이다. 앞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서비스 산업에서 감정노동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문제는 서비스산업은 기업-노동자-소비자 삼자가 함께 참여하는 산업인데 현재는 지나치게 소비자 중심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기업의 이윤극대화의 경향과 동시에 급격한 자본주의화를 거친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맞물려서 발생한 것이다. 외국의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이 직접 나서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켜주려는 운동이 활발한데, 한국에는 아직 그러한 풍토가 조성되지 못한 것이다.

노동과 감정노동에 관한 연구가 학자들의 몫이라면 감정노동이 실제로 발생하는 현장에서는 기업·노동자·소비자 모두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들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고, 새롭고 참신한 다른 대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남식. 2002. “여성인권으로 본 여성노동권과 여성노동정책”. 아세아여성연구. Vol.41
- 강재호, 김민주(2008), “고객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감정노동의 강도와 감정노동 결과에 대한 차이 분석 :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제17권 제1호(통권 제 41호) pp.157~174-한국호텔경영학회
- 고미라. 1995. “감정노동의 개념화를 위한 일 연구-서구 이성중심적 노동개념 비판”.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미현. 2002.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용구조와 노동통제 : 백화점 판매직 여성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희. 2006. “대인 서비스 노동의 특징에 관한 연구-감정노동과 서비스노동의 물질성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2006년 겨울호(통권 제 72호)
- 김경희·강은애. 2008. “돌봄노동의 상품화를 통해 본 모성과 노동”. 한국 사회역사학회
- 김상표·윤세준. 2002. “감정 노동-인간감정의 상업화에 대한 평가와 대안의 모색”. 연세경영 연구 제 39권 2호
- 김상표. 2000. “감정노동 : 통제수단. 종업원의 심리적 반응, 그리고 방법론적 문제”. 산업경제 연구 제 13권 제 4호
- 김성국. 2005. “노동의 인간화와 직무설계에 관한 연구”. 이화경영논총 Vol. 23 No.2
- 김민수·강원경. 2006 “감정 노동 프로세스에서 감정 부조화의 역할에 대한 재고찰”.
- 김양희·김영택·선보영·고상백. 2006. “서비스직 여성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실태 및 관리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김은민. 1995. “감정노동: 조직의 감정표현규범에 관한 질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태균·박인수·전경철(2005), “외식산업에서 감정 노동이 감정적 고갈에 미치는 영향 - 서울 시내 패밀리 레스토랑 종사자를 대상으로”, The Korean Journal of Culinary Research Vol. 11, No. 3, pp.89~102
- 민영희. 2006. “항공사 승무원의 감정노동 및 심리적 강인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상언. 2008. “감정표현요구와 감정부조화, 그리고 심리적 반응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사관리 연구 제 32집 1권
- 박수경. 2005. “사회복지사들의 돌봄노동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고학력 여성들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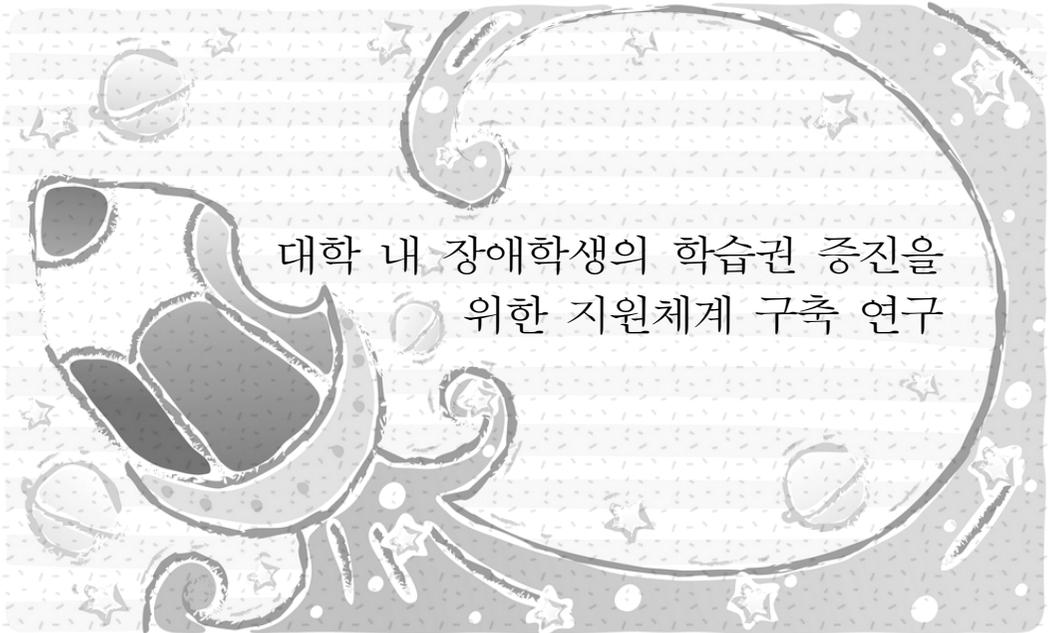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봉규. 2008. “조직구성원의 감정노동과 직무태도간의 관계에서 조직지원과 자기유능감이 미치는 조절효과”. 인적자원관리연구 제 15권제 1호
- 박홍주. 1995. “판매여직원의 감정노동에 관한 일연구 : 서울 시내 백화점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07. “여성학 : 여성주의 시각에서 바라본 또 다른 세상”. p.206-234. 미래M&B
- 송기석. 2008. “할인점 종사원의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 안준수. 1998. “서비스 종사원의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명희. 2008. “노동의 인간화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일과 삶의 균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시내. 2005. “콜센터의 직무환경, 감정노동, 소진 및 고객지향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 윤시내 · 이승륜. 2007. “항공사 콜센터 상담원의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관광경영학 연구 제 11권 제1호
- 이경복 · 정명선. 2008. “패션 제품 판매원의 감정 노동과 자기효능감 및 탈진감이 고객지향적 판매 행위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학회
- 이미옥. 2006. “카지노 산업에서 LMX의 영향요인과 결과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복임. 2006. “감정노동 종사자의 건강 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선규. 1992. “직무스트레스의 유발원인, 대처전략과 조직 구성원의 태도에 관한 실증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이선옥. 2003. “대중문화의 성상품화와 인권”. 아세아여성연구 Vol. 42
- 이유라. 2008. “호텔종사원의 감정노동이 소진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경. 2002. “철학의 외부”. 그린비
- _____. 2004. “자분을 넘어선 자분”. 그린비
- 전경구. 1998. “작업 스트레스 척도 개발: 이론적 탐색”. 재활과학연구 Vol.39 No.2
- 최승경. 2008.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 여성노동 현실에 대한 고찰 : 가톨릭 사회적 가르침의 관점에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명 · 김정희 · 김숙영. 1999. “근로자의 성격유형별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사무직 근로

- 자를 중심으로.”. 간호학논문집. Vol.13 No.2
- 한주원. 2005. “개인성격과 감정노동 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조직특성의 조절 효과 - ”. 한국비서학회
- 허지훈. 2000. “조직특성, 감정노동, 종업원 직무태도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ourdieu, Pierre et al.(1993), *LA MISÈRE DU MONDE*, Éditions du Seuil; 김주경 譯(2002), “세계의 비참”, 동문선
- 크리스 셸링. 임인숙 역. “몸의 사회학”. 나남출판사
- Ashforth,B.E. & Humphrey.R.H.. 1993. “Emotional labor in service roles : The influence of ident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8 : 88-115
- Goffman.E.. 1969. *Strategic Interaction*. Philadelphia :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Grandy.A.A.. 2000. “Emotion Regulation in the Workplace : A New Way to Conceptualize Emotional labor”.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5(1): 95-110
- Gross.J.J.. 1998. “Antecedent and Response-Focused Emotion Regulation : Divergent Consequences for Experiences for Experience, Expression, and Psyc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 224-237
- Hochschild.A.R.. 1983. *The Managed hear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orris.J.A. & Feldman.D.C. 1996. The dimension,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emotional labor.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
- Pennington.S.. 1991. “Chewing out the fat”. *The Guardian*. 23 May
- Rafaeli.A. & R.Sutton. 1987. “Expression of emotion as part of the work rol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 _____. 1989. “The Expression of Emotion in Organizational Life”.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1: 1-42.
- Sutton. 1991. “Maintaining norms about expressed emotion : The case of bill collector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6. p245~268



학생부
우수상



대학 내 장애학생의 학습권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연구

강영아·김희진·정소라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특수교육전공)

목 차

Contents

제1장 연구의 필요성	11
제2장 이론적 배경	40
제1절 인권으로서의 학습권	40
제2절 장애학생의 교육권	51
제3절 고등교육에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64
제4절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지원 현황	76
제5절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법률 현황	100
제3장 연구방법	115
제1절 연구 참여자	115
제2절 자료 수집 방법	116
제3절 자료 분석	117
제4장 연구결과	117
제1절 대학의 장애학생지원 체제	119
1. 운영 방법	119
2. 장애학생지원 범위 및 내용	121
3. 대학 내 기관 간 협력	122
4. 장애인식 개선	123

목 차

Contents

제2절 대학 간의 장애학생지원 체제	52
1. 국립대학 중심의 장애학생지원 방안	54
2. 지역별 권역화를 통한 거점 대학 중심의 지원 방안	5·
3. 특성화 대학 중심의 대학 간 지원 방안	64
제3절 국가기관 및 지역사회기관과의 협력적 지원 방안	7·
1. 교육과학기술부, 국립특수교육원 등의 국가기관과의 협력	7·
2. 지역사회의 복지관, 사회복지기관 등과의 협력 방안	8·
제4절 국가 정책 및 제도적 지원 방안	82
1. 대학평가를 통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 방안	8·
2. 대학 내 장애학생차별 금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	9·
제5장 결론 및 제언	9
<참고문헌>	31

요 약

모든 인간은 어떤 조건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받을 권리는 특정인에게 한정되지 않은 기본적인 인권이다. 이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님을 의미한다. 장애인에게 있어 고등교육에서의 학습권 보장은 보편적인 권리일 뿐 아니라 사회로의 통합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고등교육에서 장애학생은 특수교육 및 고등교육 영역에서 법적,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여 실질적인 학습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에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새롭게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들이 규정되어가고 있다. 보다 실질적인 차원의 고등교육에서의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이러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대학의 적극적 의지와 합리적 지원체계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 내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구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기존 장애대학생 지원 현황, 관련 법 및 제도 등과 관련된 문제점과 제한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장애학생 고등교육 정책 담당자,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면담 자료는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생태학적 관점에 기초하여 개인, 대학, 지역사회, 국가 등의 미시체계에서 거시체계에 이르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장애학생지원체제를 구축하는 이론적 틀에 근거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 대학 내의 장애학생지원 체제로서 운영 방법, 장애학생지원의 범위 및 내용, 대학 내 기관 간 협력, 대학 구성원들의 장애인식 개선, 2) 대학 간의 장애학생지원 체제에 있어 국립대학 중심의 지원 방안, 지역별 권역화를 통한 거점 대학 중심의 지원 방안, 특성화 대학 중심의 지원 방안, 3) 국가기관 및 지역 사회기관과의 공동지원 체제로서 교육과학기술부, 국립특수교육원 등의 국가기관과의 협력 방안, 지역사회의 복지관, 사회복지기관 등과의 협력 방안, 4) 국가 정책 및 제도적인 차원에서 대학평가를 통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 방안과 대학 내 장애학생차별 금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 방안이라는 네 가지 영역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대학 내 장애학생의 학습권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연구

강영아·김희진·정소라(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특수교육전공)

제1장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개인의 수준에 적절한 교육을 뜻하는 것으로서 성별, 인종, 종교, 경제·사회적 지위 등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즉, 모든 인간은 어떤 조건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받을 권리는 특정인에게 한정되지 않은 기본적인 인권임을 알 수 있다.

장애인 복지법 제18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그 연령·능력·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따른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님을 범으로 명시하는 것이며, 장애를 이유로 교육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개입과 정책 수립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고등교육에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보편적인 권리의 보장뿐 아니라 장애학생의 궁극적인 사회 통합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입학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실질적인 교육과정 접근을 통해 학습에서 진보를 보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과정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생산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 및 취업지도에까지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정정진, 2007).

그러나 고등교육에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특수교육 및 고등교육 영역에서 사각 지대에 놓여있다. 현재는 새로운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2007년까지 장애학생의 교육권 및 학습권에 대해 규정하였던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장애학생의 중등교육까지만 제시하고 고등교육 이후는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일반적인 고등교육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에서는 장애학생의 고등교육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를 가진 대학생들은 특수교육과 고등교육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적절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실질적인 학습권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2002년에는 장애대학생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장애 대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대학이 학습권을 침해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 2006년 2월 청각장애 2급 대학생은 수업을 듣기 위해 수화통역사가 필요하니 비용의 60%를 학교 쪽에서 분담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학 쪽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대학원 강의가 대화식 또는 참여식으로 진행돼, 수화통역 없이는 진정한 수업에 참여할 수 없다”며 청각장애 학생의 편의를 위해 조치하도록 대학 총장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학 측에서 권고를 수용해 2008학년도부터 모든 특수대학원에 입학한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 수준을 감안해 등록금 범위 안에서 정규수업에 대한 수화통역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와 같이 장애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장애학생이 직접 소송을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가 차원에서 대학 장애학생의 학습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체제가 확립되지 못하여 장애학생이 직접 소송이나 진정을 내지 않는 한 대학교육 환경에서 장애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기에는 부족한 현실이다. 현재 일부 대학들은 자구적 노력에 의해 장애학생들을 위한 각종 시설·설비를 개선하고 교수-학습지원 및 후생복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다수의 대학들은 장애학생에 대한 특별전형만 허용하고 있을 뿐 그들의 대학생활에 필요한 기본 시설조차 고려하지 않을 채 형식적인 시설·설비 개선 정도의 편의만을 제공하는 수준이다(김주영, 2005).

이것은 2003년과 2005년에 실시한 장애학생 고등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조사 및 평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2003년 평가 결과 전문성 부

족으로 인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였음에도 잘못된 편의시설 설치로 인해 경제적 낭비요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수·학습 영역에는 지원 체계가 미약하여 많은 장애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또한 2005년 평가 결과 2003년도에 비해 지원 정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지만, 규모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대학들의 지원은 여전히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 지난 2008년 5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었으며, 이 법에서는 장애인의 고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학생이 10명 이상인 대학에서는 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의 장은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2008년 4월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는데, 이 법은 장애인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인권법의 위치를 가진다. 이 법에서는 다음 표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종 이동용 보장구, 교육 보조 인력, 보조 도구,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해야 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새롭게 제정되어 시행된 법에서 이 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이와 같이 고등교육 환경에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새로운 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 내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한 확고한 정책 및 제도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해주는 대학의 적극적인 의지와 합리적인 지원체계가 뒤따라야 한다. 고등교육 환경에서 장애학생의 차별을 적절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과 그 구성원들의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률만으로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즉, 대학에서는 현재 장애 대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및 설비의 확충과 함께 장애학생의 학습 요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해주는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 내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구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및 제도에 관련한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심층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장애 대학생 지원 체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인권으로서의 학습권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추구하고 인간이면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는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인류가 생존해가는 동안, 그리고 인류가 번성하기 위하여 훼손될 수 없는 절대 절명의 지상 명제임에 틀림없다(김정래, 2002). 인권은 생득적이고 불가침성과 불가양성, 불가분성을 특징으로 한 자연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된다. 즉, 인권은 자유와 평등, 생존, 문화, 교육 등과 관련된 사회적 또는 개인적 삶의 작은 부분까지를 포함한다. 인권의 영역 가운데 교육은 첫째,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신장시키고, 둘째, 자기실현을 위한 자기계발을 유도하며, 셋째,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넷째, 교육의 결과로 인간다운 삶의 향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황준성, 1998). 이와 같이 교육과 관련된 권리의 내용은 인권의 내용이 되고 인권으로서의 교육에 관한 권리, 즉 교육인권이 된다(김기남, 2006).

1985년 ‘파리선언’은 학습권이 기본적인 인권임을 천명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현실적으로 발휘시키기 위하여 모든 국가에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하는 급진적 성격의 권리선언이다. 이 선언에서 천명하는 학습권은 인류의 생존에 요구되는 필수 불가결한 도구로써 보편적 복지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보편적 필요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교육권의 의미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교육권이 기초, 무상, 의무교육 등의 기본적인 학교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파리선언’의 핵심은 학교교육에 한정되지 않는 넓은 의미의 학습을 지향하고, 평생교육과 성인교육의 개념으로 관심의 영역을 확대하는 데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함부르크 선언’은 평생교육과 성인교육의 기초 위에서 여성교육, 소외된 사람의 교육, 소수민족의 교육 문제 등으로 선언의 내용이 담고 있는 영역을 확대해 간다.

‘함부르크 선언’에 나타난 학습권의 ‘능동적 권리(active rights; rights of action)’를 바탕으로 대학이라는 고등교육 상황에서 장애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장애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구호나 정치적 선전의 수준을 넘어 교육에 중

사하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주려면 어떠한 법과 제도가 정책 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제2절 장애학생의 교육권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개인을 사회의 주체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하고 동등한 인격체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세우는데 있다. 장애학생을 일반학교에서 분리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비 장애학생과 동일한 학급에 배치하여 그들의 특별한 요구를 지원하며 교육하자는 통합교육은 근본적으로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동일한 인간으로 인권을 존중 받아야 하며, 사회정의의 측면에서 동일하게 교육받아야 한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윤점룡,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차원에서의 장애인 통합교육은 철학적인 면보다는 편의 시설 증진 내지는 장벽 제거(barrier-free)의 차원에 머무는 듯하다(서울대, 2002 ; 동경대, 2003 ; 김형식, 2001). 대학은 장애인을 소외시킬 수도 배제시킬 수도 있는 대단한 선택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장애인 대학입학의 특별전형제도와 관련된 교육권과 인권의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야 할 여지가 충분하다(김주영, 2003).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통합교육의 흐름을 형성하는 탈근대화, 탈산업화의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과거 대량생산 주도형의 산업사회와는 달리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것, 획일적인 것보다는 다양한 것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 방법을 의미할 것이다(김정권외, 2002). 즉, 이전의 교육에서 강조하던 객관적이고 획일적인 표준화에서 벗어나 개별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계발시키는 접근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주류의 교육 현장에서 분리와 배제(exclusion)보다는 참여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가져왔으며 교육 환경 내에서의 다양성이 강조되고 학생들도 학업성취의 정도, 장애, 문화적 또는 사회 계층적 배경에 상관없이 존중됨을 의미한다.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교육은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 차별, 격리, 과잉보호, 소외 등 인위적 요인으로 인해 억압되었던 교육의 기회를 장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려는 교육이념으로 볼 수 있다. 즉, “통합교육은 장애인을 특수한 교육 대상으로 분리하여 부정적 요소를 가증시켰던 편향된 교육 방법 그 자체를 개선하려는 시도이다(Silvers, 1998, 김형식, 2003 재인용)”

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비 장애학생들과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간의 경쟁논리로 이해하려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다른 개념적 구상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동일하지 않아도 될 권리’(the right to be different)와 ‘동일해야 될 권리’(the right to be the same)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이 둘이 결합하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로 인한 특성을 부각시키지 않더라도 근본적인 시민권과 법, 정치, 경제 및 사회권의 차원에서, 상호의 차이점을 인정하는(김형식, 1998) 맥락 속에서, 고등교육 내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의 정당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장애로 인한 특성을 부각시키는 의도가 불평등한 관계, 속박, 부정의, 주변화 등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장애 그 자체는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가치로서 용납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우리가 사회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장애인의 교육권을 동등하게 보장한다면 그 기본 원리는 평등사상에 근거해야 될 것이다. 여기서 평등한 시민권이란 개념은 “사회는 인간을 존엄성을 갖춘 인격자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가진 자”로 규정하게 된다(김형식, 2003).

제3절 고등교육에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국내의 입장을 살펴보면, 1997년 Hamburg에서 열린 제5차 ‘성인교육회의’에서는 “생애에 걸쳐 교육받을 권리와 학습할 권리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권리가 여성, 장애인, 사회적 소외계층, 소수민족 등에 계도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1973년 재활법 504조(Rehabilitation Act, Section 504)를 통해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단지 장애를 이유로 참여에 배제되거나 급부를 거절당해서는 안 되며, 고등교육 프로그램이나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장애인 차별 금지를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그 연령, 능력,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따른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와 2항 ‘모든 교육기

관은 교육대상 장애인의 입학 및 수학 등에 있어서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의 정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를 통해 대학에서의 장애학생 교육을 위한 임무를 제시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7조)」을 통해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를 위하여 대학이 이동과 접근권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고도로 전문화되어 가며 그로 말미암아 고등교육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오늘날 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장애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획의 확대와 학습권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확대가 갖는 의의로는 첫째,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확대를 통해 능력 있는 장애학생들이 그들의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학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둘째,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의 전문적인 기술습득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되었고 셋째, 장애인들이 활동 영역을 단순 노동의 범위로부터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넷째,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수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고등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양교육을 통해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토론하며 활동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켜 줄 수 있고 인간적인 이해도도 높아지도록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강위영 외, 1997).

제4절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지원 현황

1995년부터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점점 더 많은 장애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 연도별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

(교육인적자원부, 2007)

학년도	전 문 대 학		대 학 교		합 계	
	실시대학수	학생수	실시대학수	학생수	실시대학수	학생수
1995	2	6	6	107	8	113
1996	2	16	16	201	18	217
1997	6	42	30	234	36	276
1998	6	57	39	298	45	355
1999	6	47	40	349	46	396
2000	9	55	48	313	57	368
2001	11	61	43	360	54	421
2002	15	194	46	420	61	614
2003	14	117	47	310	61	427
2004	24	115	49	309	73	424
2005	11	45	53	344	64	389
2006	10	31	63	388	73	419
2007	9	79	71	439	80	518

위의 <표 1>과 같이 1995학년도에 113명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장애 대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2007년도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한 대학은 전문대학 9개교와 대학교 71개교이며, 이를 통해 입학한 학생은 총 518명에 해당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그러나 상당수의 장애 대학생들은 교육적, 행정적, 물리적 환경 미비로 인해 대학 수업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방법론상의 이해 부족, 물리적·재정적 여건의 한계, 대학 구성원의 인식부족 등의 원인으로 장애학생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실이다(김용욱, 2000; 한국통합교육학회, 2005). 김동연(2000)은 장애 대학생 대상의 조사 연구를 종합하여 장애 대학생의 공통적인 요구를 다음 <표 2>와 같이 시설 및 설비, 학습, 행정, 교직원의 이해도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김동연은 이러한 요구들에 대해 대학의 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요구 항목 모두를 지원하고 있는 대학은 극소수이며 대학마다 지원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대학들이 편의시설 설치나 교육부의 지원 및 재정 확보에는

관심이 있으나, 장애 대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서비스’ 측면에는 인식도가 낮은 경향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표 2> 장애 대학생의 공통적인 지원 요구

(김동연, 2000)

생활 및 시설 · 설비	시각	청각	지체
화장실 시설 개선 : 좌변기, 전용화장실, 휠체어용 설치 등			○
휠체어용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			○
경사로, 경사각도 줄이기 및 난간 설치			○
휠체어용 책상 구비			○
장애이용 전화박스 : 턱 낮추기			
교내 시설의 보도 턱 낮추기			○
이동식 발판설치 : 도서실 이용	○		○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 마련	○		○
교실, 식당, 도서관 등 각종 시설의 복도와 출입문 개선	○		○
강의실 점자 번호판 부착 및 확대, 입체화	○		
점자보도 블록설치 : 교내 각 건물, 출입구 등	○		
조명시설 : 야간 보행	○		
방화등 설치		○	
교내 셔틀버스 운행 : 이동편의 제공	○		○
메모지 비치 : 행정실		○	
생활용품점 설치	○	○	○
전자제품 수리 지원	○	○	○
교수 · 학습	시각	청각	지체
점자 교재 - 점자 프린터기	○		
문자 확대 교재	○		
확대 독서기(CCTV)	○		
컴퓨터용 음성카드 부착	○		
시험지 및 답안지의 점자화	○		
열람실내 지정석 설치 및 점자번호판 부착	○		
강의 내용 대필 : 보조요원		○	
강의 노트 및 강의 계획서 우선 제공		○	
별도 장학금 지급	○	○	○
시험시간 대필	○	○	○

생활 및 시설 · 설비	시각	청각	지체
수화 통역 서비스		○	
학사관리(시험, 수강신청, 서류발급) 개선	○	○	○
강의실 변경 지양	○	○	○
시험시간 연장	○	○	○
OHP, 매직보드 설치	○	○	
행 정	시각	청각	지체
장애우 전담 부서 설치	○	○	○
보조요원 제도의 도입과 개선	○	○	○
전담 상담실 설치	○	○	○
장학금 제도의 도입과 개선	○	○	○
기 타	시각	청각	지체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 부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곤란	○	○	○
교수와 직원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배려 부족	○	○	○
심리적 갈등과 적응 어려움	○	○	○
기숙사 생활의 적응 곤란	○	○	○
장애인 이해 프로그램 실시 필요	○	○	○

West 등(1993)은 40명의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의 접근성, 서비스, 조정 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대학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하였지만, 교수, 직원, 학생들의 이해, 수업 보조 및 조정, 건물의 접근성 등에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김성애, 박찬웅, 이해균(2003)의 연구에서는 72명의 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장애 대학생이 일반 대학생에 비해 낮은 성취도를 나타내었으며, 교수-학습 부분의 지원에 만족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현재 대학에서는 장애 대학생의 요구에 따른 적절한 교수와 관련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학생에 대한 교수·학습의 지원 부족은 대학에서 수학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된다. 김남순(2001)의 연구에 따르면, 비장애 학생들에 비해서 장애학생들의 학사경고, 휴학 및 자퇴의 비율이 높으며, 이러한 현상은 실제적으로 장애학생이 대학에 적응하기 위한 교수·학습 및 시설·설비 등의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김성애, 박찬웅, 이해균(2003)의 연구에서도 특례입학제도로 입학한 장애 대학생들의 학사경고 회수가 매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지적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애 대

학생의 교수·학습 지원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 장애 대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및 설비의 확충과 함께 교수·학습을 도울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학업성취 측면에서 장애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학생의 학습 요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해주는 체계적인 지원 체계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5절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법률 현황

지난 2007년 5월 25일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공포되었으며,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하고자 그 후속조치로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였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무교육 실시 시기와 무상교육 비용 범위, 장애 조기 발견 및 장애영아 무상교육지원,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직원 배치기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등이다. 새롭게 포함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 실시 시기는, 만 5세 이상과 고등학교 과정은 2010학년도부터, 만4세 이상은 2011학년도, 만3세 이상은 2012학년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장애인의 고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등록 장애학생이 10명 이상인 대학에서 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새롭게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지만, 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에 국한해서 제시하고 있으며 장애 대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정책 조항들의 규정은 부족한 현실이다.

2008년 4월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는데, 이 법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들과 달리 장애인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인권법의 위치를 가진다. 이 법에서는 다음 표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종 이동용 보장구, 교육 보조 인

력, 보조 도구,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해야 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새롭게 제정되어 시행된 법에서 이 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표 3> 장애학생의 고등교육과 관련된 새로운 법률 및 조항

법률	조항	내 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	(특별지원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 3. 그 밖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0조	(장애학생지원센터) 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둬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제31조	(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제35조	(대학의 심사청구 등)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대학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법률	조항	내 용
		<p>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p> <p>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 보조 인력의 배치</p> <p>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p> <p>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 음성 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p> <p>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 공</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등 차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각종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벌칙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조항들로 인해 장애인의 차별 금지에 직접적인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장애학생의 교육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는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종 이동용 보장구 등의 편의 제공 의무, 교육보조 인력을 배치하여 제공하는 의무,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 및 공간 확보의 편의 제공 의무, 시·청각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과 평가방법을 제공할 의무, 편의 제공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지원을 위해 대학에서 어떤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상과 같은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장애학생이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대학이 편의시설, 서비스 지원, 인력 지원 등의 적극적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됨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차별시정위원회가 독립적인 형태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 산

하의 소위원회 형태로 두도록 하고 있어서, 시정 명령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김동일, 2008).

김주영(2005)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개선을 위해 어떤 내용들이 법률에 포함되거나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교육부 행정직, 대학 교무처장, 장애 대학생 관련 연구 수행 교수, 특수학급이 있는 고등학교 연구부장, 특수학교 연구부장 등 총 13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적으로 학습편의 보장 23.4%, 이동 및 접근 편의 보장 18.8%,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학칙 및 규정 의무화 15.0%, 교직원의 이해 증진 프로그램 10.0%, 선발제도에 9.7%, 취업 및 진로지도 지원에 6.0% 순으로 고등교육 지원 법률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이를 통해 김주영은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률 제·개정 내용에 대해 학습편의 보장과 이동 및 접근 편의 보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김주영은 장애인 고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해 같은 대상에게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국가에서 장애인의 고등교육 지원에 관한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모든 대학들이 기준 이상을 따르도록 장려한다에 34.3%,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 편의가 우수한 대학을 선정할 후 거점대학으로 육성한다에 22.2%, 학교 선발과 교육은 대학의 고유 권한이므로 전적으로 대학자율에 맡긴다는 13.0%, 재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희망 대학들로 하여금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계획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예산을 지원한다에 9.3% 순으로 반응하였다.

무엇보다, 새로운 법이 장애학생 고등교육에서 괄목한 만한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현재는 새로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제한적이거나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실행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고등교육 현장에서 전문가나 행정가 뿐 아니라 장애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담아내어 현재의 법 및 제도를 보다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제3장 연구방법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 대학생의 학습권 향상을 위해 지원체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기존 장애대학생 지원 현황, 관련 법 및 제도 등과 관련된 문제점과 제한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학생 고등교육 정책 담당자,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교수들과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통해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제1절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증진을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체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특수교육정책 담당자, 관련연구경험 교수들을 면담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문가 면담의 참여자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면담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인적사항

구 분	직책	소속	관련 경험
전문가 1	교수	A대학	장애대학생 고등교육 지원 체제에 대한 연구 경험
전문가 2	연구원	장애학생 단체	장애대학생 학습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 수행, 관련 연구 경험
전문가 3	연구관	교육과학기술부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정책 담당자
전문가 4	교장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법 제정에 참여 및 관련 연구 경험
전문가 5	연구사	B대학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실에서 실무 담당 및 관련 연구 경험
전문가 6	행정직	교육과학기술부	장애학생 고등교육 정책 관련 실무 담당자
전문가 7	교수	C대학	장애대학생 고등교육 지원 체제 및 장애대학생 복지와 관련된 평가수행 및 연구 경험

제2절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문헌 고찰을 통해서 기존에 장애 대학생 지원 체계와 관련된 문제점과 제한점이 무엇인지를 조사하며, 고등교육에서의 장애학생 지원 체제에 대한 선행 연구 및 각종 문헌을 검토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질문지를 개발하여, 장애학생 고등교육 정책 담당자,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교수, 장애학생자치단체의 대표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면담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조사연구에 사용되는 도구는 선행연구(김주영, 2005; 정정진, 2007; 정정진, 이해균, 2006)의 분석을 통해 밝혀진 현황과 실태조사 내용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면담질문지는 예비조사를 거쳐 문항 내용을 침삭, 수정 및 구체화한 후 완성하였다. 면담 질문의 내용은 다음<표 5>와 같이 간략하게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문항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면담 질문 내용 분류

구 분	설문 문항
행정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대학에서의 위치, 지원 범위 및 내용 ·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전담 인력의 역할
협력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대학 중심의 장애학생지원체제 · 대학 간 교류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에서 장애학생 차별금지를 위한 대책 · 대학 구성원 대상의 관련 교육 및 인식 개선
제도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의 활용 ·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정책 과제

본 연구의 면담은 전문가를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약 2~3시간 동안 실시되었다. 연구자는 전문가와 직접 만나 면담을 하기 전에 적절한 라포(rapport)를 형성하기 위해 이메일과 전화 통화를 실시하였으며, 면담 전에는 편안하고 친근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료 수집의 정확성을 위해 전문가의 사전 허락 하에 전체 면담 내용을 녹음하

였다. 면담 장소는 면담 대상자인 전문가가 원하는 장소에서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면담을 실시하였다. 주로 대학의 연구실, 식당, 사무실 등에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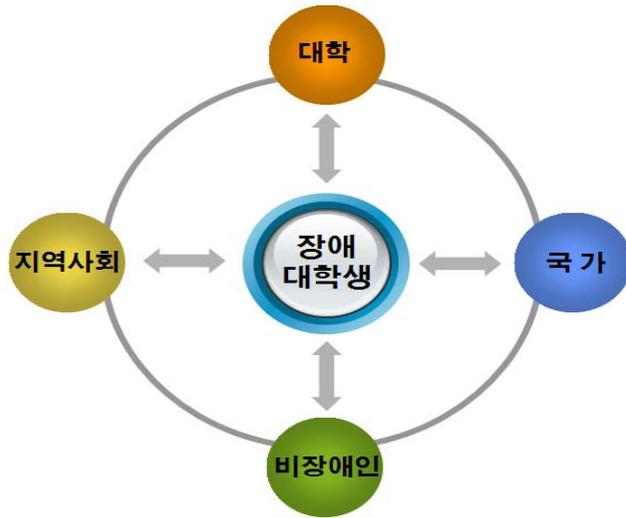
제3절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면담 자료들로부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내용분석은 텍스트로부터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련의 절차를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다양한 질적 자료들을 분석하여 어떤 유형이나 패턴, 경향성을 발견해낼 수 있다(Weber, 1990). 우선, 녹음된 모든 면담 자료는 연구자와 연구보조자에 의해 그대로 전사본으로 작성되었고, 면담 내용을 각 주제로 범주화한 후에 각 주제들을 주요 주제 아래로 하위 범주화하였으며, 이러한 과정들을 하위 범주들이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면담 과정에서 연구자가 전문가에게 얻은 내용에 대해 연구자의 이해가 맞는지 이메일을 통해 물어보고 확인하였으며, 분석 과정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학 박사 1인에게 자료 처리 과정을 검증받았다.

제4장 연구결과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은 개인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장애를 개인적 결함이나 이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구조

의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이 형성되어야 한다. 즉,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 서비스는 다음 [그림 1]과 같이 장애인, 비장애인, 지역사회, 국가가 모두 참여하는 하나의 맥락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발달에 사회 전체 시스템이 함께 작용한다는 생태학적 관점에 기초하여 (Bronfengrenner, 1992) 개인, 대학, 지역사회, 국가 등 미시체계에서 거시체계에 이르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장애학생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다음 [그림 2]의 이론적 틀에 근거하여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림 1] 장애 대학생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 요소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장애대학생을 중심으로 미시체계부터 거시체계로 점진적으로 그 범위를 넓혀나가고, 각 체계 간 상호 작용하며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장애학생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면담에 참여한 전문가 7명의 면담 결과를 [그림 2]의 분석 틀에 기초하여 분석·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및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2] 본 연구에서 결과 분석의 틀

제1절 대학의 장애학생지원 체제

1. 운영 방법

관련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학생이 대학생 활을 하는데 있어 완전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물적, 인적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 는 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전담기구로서의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 6의 면담 결과, 2008년 8월 현재 전국의 360여개 대 학 중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은 31개로서 극히 미미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현 장애학생지원센터가 독립된 기구로서의 역할보다는 기타 업무를 겸하 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위상 정립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 물리적 접근의 용이성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는 우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 접근용이성을 가져야 한다. 장애학생의 특성상 이동에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대학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장애학생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위치하여야 바람직한 장애학생 지원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전문가 4는 장애영역이나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정학적으로 중심이 되는 장소에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설치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지체장애나 시각장애를 지닌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장애학생들이 여러 가지 전공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캠퍼스 내에서 중심이 되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하겠죠.”(전문가 4)

나. 행정절차상의 간소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대학 기구 내에서의 행정적 위치 또한 장애학생지원센터 위상 정립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이다. 현재 대부분의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총장 산하의 학생처 혹은 교무부의 부속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행정 절차상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 자체의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단점을 갖게 된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최소한의 행정적 절차를 거쳐 의사결정이 가능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전문가 1과 전문가 5는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 내 독립기구로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독립기구로의 설치가 쉽지 않음을 고려하여 대학의 직속기구로 설치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독립된 부서로 존재하는 것이 가장 학생을 지원하기에 용이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학생을 지원하는 부서의 직속기구 형태로 설치되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좋겠죠.”(전문가 1)

“행정적인 절차가 길어질수록 장애학생지원센터 자체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기 어려

위요. 그러므로 가능한 독립된 기관이나 직속기관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전문가 5)

다. 전담 인력의 자격 및 역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전담 인력에 대한 자격 검증 및 관리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위상 정립을 위하여 요구된다. 전문가 5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거나 혹은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이 전담인력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전담인력이 주로 행정직원들로 배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공에 제한을 두기 보다는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력들에 대한 연수나 세미나 등의 재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하며 나아가 교육과학기술부, 국립특수교육원 등에서 자격연수를 실시하여 전담인력을 자격 기준을 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전문가 1은 각 장애영역별 전공자들로 전담인력들이 구성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권역별 혹은 국립대학들 간에 기구를 만들어서 담당자를 재교육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전담인력의 역할로 전문가 3은 장애학생 지원서비스를 관할하는 코디네이터(Coordinator)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이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중추적인 위치로서 학생 지도 및 지원, 교직원 연결, 기업체와 연결, 대필자와 대독자, 도서관 이용 등 개별적인 지원, 정책개발, 대학의 서비스를 감독하는 역할을 가리킨다. 또한 전문가 5는 이러한 지원의 차원을 넘어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연구자로서의 역할 또한 전담인력에게 요구되는 역할이라 제시하고 있다.

2. 장애학생지원 범위 및 내용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31조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취학편의 지원, 정보접근 지원, 그리고 편의시설 설치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학 내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을 크게 인적 지원, 물적 지원, 그리고 제도적 지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인적 지원

인적지원은 학생이 강의를 수강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인력으로서, 수화통

역사, 속기사, 대필 도우미, 이동도우미, 학습도우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미국 대학들의 경우, 위에서 열거한 지원 뿐 아니라, 학습전략의 지원까지 포함하는데, 바로 이 점이 인터뷰 중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강조한 부분이기도 하다. 수화통역이나 대필과 같은,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지원 뿐 아니라, 특정 장애로 인한 불편한 부분을 스스로 극복하고 능동적이며 유기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좀 더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학습전략 워크숍 개최 그리고 기초 학력증진을 위한 튜터 시스템의 운영을 제안할 수 있다(전문가 6).

나. 물적 지원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거,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지칭하는데, 휠체어의 접근성을 위한 승강기 및 경사로 설치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조공학은 음성 녹음기, 노트북, 독서확대기, 점자 프린터 등으로서, 대학 내의 장애인학생지원센터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장애의 종류와 경중도, 그리고 개인의 차에 따라 학생에게 필요한 보조공학 학습기자재가 지원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다. 제도적 지원

마지막으로, 제도적 지원은 장애학생에 대한 각 대학의 학칙 및 운영 체계의 변화를 꾀하는 데서 오는, 보다 근본적인 지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전문가 2와 6이 특히 강조한 부분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 및 가이드를 목적으로 하는 교수 대상 연수, 장애학생 지도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적절한 교수 및 평가 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학칙 및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재활법 504조의 고등교육관련 법안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부분으로서, 특히 교수조정과 평가조정에 있어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것이 비록 비장애인 학생에게 금지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장애학생들에게 허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 2의 의견에 따르면, 장애학생들이라고 해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보다, 각각의 서비스 수혜 조건을 명시화하여 비장애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우려의 소리

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국내의 대학들도 비록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대학의 학칙이나 정책에 이를 반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3. 대학 내 기관 간 협력

대학 내 장애학생들의 지원을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모두 도맡아 하기에는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있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 면담에 참여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대학 내 기관간의 협력이 두드러진다. 일례로 미국의 UC 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는,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은 장애학생프로그램(Disabled Students' Program)에서 총괄하지만, 인턴십이나 진로상담 및 취업에 관한 정보는 경력개발센터(career center)와 연계하여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TRIO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학생의 입학부터 졸업 후의 진로지원에 이르기까지 학교생활, 학업, 주거, 재정 등에 관한 지원을 대학 내 기관과 협력하여 제공한다. 일리노이대학(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의 경우도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이, 진로, 정보기술 접근성, 주거, 심신의 건강관리 등,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장애학생 지원센터와 대학 내 기관들과의 협력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선례를 따라, 국내의 장애학생지원센터도 각 대학 내의 기관이 가진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습전략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진로지도는 경력개발센터에서, 장학금과 같은 재정지원은 복지과에서, 그리고 학교생활 및 상담은 학생상담실에서 협력을 받는다. 이 뿐 아니라, 학술정보관, 기숙사, 중앙전산원 등, 장애학생의 대학 내 생활과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및 자원을 가진 기관은 많기에, 좀 더 우수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4. 장애인식 개선

숭실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지체장애 1급의 장애학생이 학습지원 체제의 미비 및 장애인용 편의시설 부족 등에 대하여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학습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과 최종 승소한 사례가 있다. 그 밖에 유사한 사례가 경남대학교, 고려대학교, 방송통신대학 등에서도 발생하였으며 소송이 제기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되어 승소 혹은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전문가 6은 이처럼 점차적으로 장애인의 권리의식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학에서의 장애학생에 대한 서비스 인식은 아직도 소극적인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을 지적한다.

가. 대학 내 인권교육

대학 내 인권교육은 교수 및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 그리고 교직원 등 대학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문가 1은 학기 초마다 교수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거나 장애학생을 지도하는 담당교수들에게 장애학생의 요구와 지원에 관련한 사항을 전달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와 인권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하며, 장애학생 인권과 관련된 교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도모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문가 3은 대학의 학교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애인 관련 각종 법률들에 대하여 이해가 용이하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이를 홍보함으로써 비장애학생, 교직원, 교수들에게 지속적으로 장애학생들과 더불어 실현되는 통합교육의 가치를 주지시켜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전문가 5는 신입교수 채용 시 워크숍을 개최하여 장애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함을 제안한다.

“000대학 같은 경우는 학기 시작 전에 총장의 이름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그 학생에 대한 특성과 그 학생을 지원해 줄 것을 담당교수에게 부탁해요. 그런 체계가 있어야 강의하는 교수도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을 배려할 수 있겠죠.”
(전문가 1)

“새롭게 임용된 교수들의 경우에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장애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더욱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나 워크숍 등을 통해서 장애학생의 특성이나 요구 그리고 그들의 인권에 대하여 전달할 필요가 있죠.”(전문가 5)

제2절 대학 간의 장애학생지원 체제

1. 국립대학 중심의 장애학생지원 방안

본 연구의 면담을 통해서 효과적인 장애학생지원을 위하여 대학 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특정 대학이 중심이 되어 정보와 자원을 공유, 배분하는 거점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전문가 1은 국립대학은 운영상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하여 거점화를 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고등교육 체제 내의 대학들은 설립 목적이나 운영 방침, 예산 분배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일괄적인 지침이나 규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성격이 유사한 국립대학 간의 거점화는 보다 현실적인 지원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국립대학끼리의 거점화의 장점은 뭐냐면 국립대학은 운영성격이 비슷하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다는 면 이런 게 공통점이고 굉장히 행정이 경직되어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로서의 공통점이긴 하지만 거기에 적절한 장애학생지원센터 상이 있을 거고 거점화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예요.”(전문가 1)

2. 지역별 권역화를 통한 거점 대학 중심의 지원 방안

정부기관과 대학 내 전문가 모두 장애학생지원을 위한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에서 물적, 인적 자원의 원활한 순환과 활용을 위하여 지역별 권역화가 필요함을 제안했다. 정보뿐만 아니라 속기사나 수화 통역사와 같은 전문 인력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지역권에 있는 거점 대학에서 이를 주관하는 것이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거리의 근접성으로 인해 정기적인 만남과 교류가 용이해짐에 따라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대학 간의 협력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경기권,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호남권 이런다던지. 그래서 거기에 가장 장애학생들이 오기 용이한 대학. 경북 같은 경우는 대구대학교가 되겠죠. 충남 같은 면 나사렛 대학. 이런 식으로 대학을 거점화시켜서, 국립은 아니지만 국가 예산이나

특정 예산을 집중화 시켜 준다면지. 이렇게 해서 그 대신 그 외의 대학이 지원의 서브역할을 해준다면지.”(전문가1)

“장애학생 수가 유동적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나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게 되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비용 효율적인 측면을 봤을 때 지역별 거점대학이 좋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그게 나올 거예요.”(전문가 3)

3. 특성화 대학 중심의 대학 간 지원 방안

고등교육 및 대학 내 전문가들은 특성화 대학 중심의 대학 간 지원을 제안했다. 전문가 1은 보조공학 기구와 같은 물적 자원을 중심으로 특성화 대학을 육성하여 자원의 대여와 배분을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답변하였다. 예를 들어 해외 대학의 경우, 시각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점역작업 및 인쇄, 출판 등을 한 대학에 집중시킨 후 필요로 하는 지역 사회 내 타 대학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보다 전문화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 2는 장애대학생의 취업준비와 진로와 관련하여 대학별 특성화를 제안하였다. 장애대학생이 학교 부적응뿐만 아니라 진로선택과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대학과 기업 간의 산학 협동사업 등을 통해 특정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조공학 기기 같은 경우에도 한 대학에 집중화 시켜놓고 그리고 필요한 대학에서 학생들이 요구할 때마다 학기 초에 빌려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전문가 1)

“위스콘신 메디슨 같은 경우에 위스콘신에 약 13개 정도의 주립학교들이 있어요. 위스콘신 주립대학이라고 하면 하난 줄 알았더니 여러 개가 있더군요. 그런데 이 대학이 시각장애인에 관한 거점대학이에요. 시각 장애에 관한 부분을 관장하고 시각장애에 관련된 부분을 텍스트화 시켜서 제공하는, 필요하다면 점역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 모든 대학이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시각장애 점자도서, 인쇄, 제본 등. 그런 걸 나중에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전문가 1)

“전문대에 장애학생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취업 때문에 전문대는 특화되기 쉬워요. 자동차정비 전문이나 멀티미디어 전문 등으로 특화시키면 되니까.”(전문가 2)

제3절 국가기관 및 지역사회기관과의 협력적 지원 방안

1. 교육과학기술부, 국립특수교육원 등의 국가기관과의 협력

전문가 면담 결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애학생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국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전문가 3은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역할을 주도하는 것은 대학의 자발적인 책임 하에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보조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제공해야한다고 답변하였다. 예를 들어, 다수의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들이 요구하는 전담인력의 교육과 연수, 지원체계의 전문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과 같은 공통적인 행사의 주관은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담당하되,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은 대학이나 대학 간의 네트워크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경우, 아직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고 고등교육 보다는 학령기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을 이유로 현재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 체계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문가 3은 고등교육의 특성상, 대학 내 교육 및 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므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행정 인력이 지원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중앙에서 끌고 올라가야 추진이 된다고 보고 있는 데 대학이 하는 게 바람직하죠. 중앙에서 하면 규제가 되어 버려요. 원치 않아도 해야 한다던가. 대학이 자발적으로 한 뒤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면 할 수 있지만... 지금 교육부에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거만큼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칙을 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하더라도 다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그게 규제가 된다는 사람이 있고 최소한의 기준으로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다 틀리더라고요.”(전문가 3)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아직 준비가 부족해요. 장애로 인한 차별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만 지원을 하는 것이지 교육청에서 대학생까지 지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학령기 말고 평생교육과 대학교까지 지원하려면 벽

차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장애학생을 잘 아니까 차후에 고려해볼 만하고.”(전문가 3)

2. 지역사회의 복지관, 사회복지기관 등과의 협력 방안

고등교육 전문가들은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이 유동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복지관 및 사회복지기관 등의 외부 자원을 연계하여 적극 활용해야함을 제안하였다. 전문가 1은 대학과 같은 지역사회에 있는 수화통역센터 뿐 아니라 특수학교에서 장애대학생의 기초학력증진을 위한 지원을 제공해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전문가 2는 대학 자체적으로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공유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되며 이와 같은 경우 대학과 지역사회를 중재하는 역할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수화통역센터, 보조공학센터, 특수학교, 특수학교는 기초학력증진 반을 개설하는 데 필요할 수 있고, 또는 장애인 복지관 등등. 시각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점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전문가 1)

“센터에서 기본적인 학습지원이나 취업지원 등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센터에서 점자 프린트 사고, 뭐 그런 것 다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만 하고 그 이상의 것들은 연결만 해 주면 된다는 거죠. 지역복지관하고.”(전문가 2)

제4절 국가 정책 및 제도적 지원 방안

1. 대학평가를 통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 방안

전문가 면담 결과, 대학 평가를 통하여 국가의 제도적 지원 기준을 정하고, 재정적 지원에 차등을 두는 것이 제안되었다. 즉, 대학 평가에 사용되는 평가지표가 대학이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선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피드백을 통해 현 체계의 개선을 도모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문가 1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체계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였지만 이미 잘 하고 있는 대학에 예산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었다. 전문가

3은 대학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우수한 성적을 받은 대학이 지역별 거점 대학 또는 특성화 대학과 같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어떤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벌칙들이 있지만 하다면 대단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심대한 부담을 끼치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 반드시 표준선을 만들어야 하죠. 그런데 예산을 지원 해주면 잘하는 대학은 예산이 생기니까 또 시설이 더 좋아지고 못하는 대학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계속 못하게 되고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전문가 1)

“당연히 잘하고 있는 사례는 모범으로 소개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걸 대학 간 비교, 과잉경쟁으로 자칫 활용되기 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를 지원하는 실태가 밝혀져서 알려지고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활용되었으면 좋겠어요. 대학 특성, 학교 분위기, 학생 특성, 설립 취지가 다 다르니까 우수사례가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게 소개되어야 할 것이에요.”(전문가 3)

2. 대학 내 장애학생차별 금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

대학 내 전체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장애학생 본인, 비장애학생, 교수,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부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전문가 3은 교내 인식 개선 교육에 국가인권위원회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 자료를 계속 배포하는 거. 협의회와 같은 큰 단체의 회의에 자료를 제공하면서 3분이라도 이야기하고, 학교 내 공식 회의, 행사에 참여해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서 대학 구성원의 공동책임의식을 강화해야 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든 자료를 활용해서 이런 회의 때 잠깐 보는 것도 방법이고.”(전문가 3)

제5장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전문가 면담을 통해 도출된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체계 방안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아래의 표를 살펴보면, 장애대학

생을 중심으로 대학 내의 지원, 대학 간의 지원, 지역사회 및 국가기관, 국가정책 및 제도 와 같이 거시체제로 점진적으로 범위를 넓혀나가고 각 체계 간에 상호작용을 하는 시스템 으로서 장애학생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6>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 방안

구분	범주		지원방안
대학 내 장애 학생 지원 체계	운영방법	물리적 접근의 용이성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
		행정절차상의 간소화	의사결정권을 갖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는 간소화된 행정절차를 지녀야 함
		전담 인력의 자격 및 역할	재교육 및 연수를 통한 전담인력 관리 장애학생지원서비스 관할 및 관련 연구자로서의 역할
	장애학생 지원 범위 및 내용	인적 지원	수화통역사 및 속기사와 같은 보조인력 활용
		물적 지원	편의시설 설치 및 보조공학 사용
		제도적 지원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 교수 및 평가 조정, 각종 서비스 수혜조건 등을 학칙 및 정책에 명시
	대학 내 기관 간 협력		교수학습개발센터, 경력개발센터, 학술정보관, 복 지과 등의 각종 기관 및 부처와 연계하여 자원과 인력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장애인식 개선	대학 내 인권교육	대학 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장애 인권 교육프로그램 구성	
대학 간 장애 학생 지원 체계	국립대학 중심의 장애학생지원 방안		운영상의 공통점을 지닌 국립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원
	지역별 권역화를 통한 거점 대학 중심의 지원 방안		지리적 근접성으로 물적·인적 자원의 공유 및 협업체 구성이 용이한 지역별 대학 간 네트워크 를 통한 지원
	특성화 대학 중심의 대학 간 지원 방안		물적·인적 자원 및 취업 관련 특성화 대학을 중 심으로 한 대학 간 지원

구분	범주	지원방안
국가 기관 및 지역 사회 기관과의 협력적 지원 방안	장애학생지원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의 국가기관과의 협력방안	대학이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며 교육과학기술부 혹은 국립특수교육원이 보조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제공
	지역사회의 복지관, 사회복지기관 등과의 협력 방안	지역사회 복지관 및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하여 물적·인적 자원을 공유하며 대학의 장애학생지원 센터는 이러한 협력관계를 중재하는 역할 담당
국가 정책 및 제도적 지원 방안	대학평가를 통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 방안	평가지표를 통해 최소한의 기본선을 제시하고, 평가결과에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
	대학 내 장애학생차별 금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	대학 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 활용

본 연구에서는 대학 내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구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현재 정책 담당자, 실무 담당자, 관련 연구 수행 박사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장애대학생 지원 체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에서 장애학생에게 제공해야 하는 구체적인 지원서비스를 미시적으로 다루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장애학생을 둘러싼 대학, 지역사회, 국가기관 등의 거시적인 조직의 역동성을 고려하였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장애학생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장애학생 지원이 더 효과적,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시적인 지원 조직 및 체계를 다루었다. 이러한 생태학적인 관점과 조직적인 관점에서의 지원 체계를 제안함으로써 사회 구조 및 환경이 장애학생을 중심으로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주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장애학생지원 서비스의 제공에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제한된 자원과 인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가능한 많은 장애대학생이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간, 대학과 지역사회 기관 및 국가기관 간에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면담에 참여한 다수의 전문가들이 강조하였듯이, 대학 자체적

으로 전문 인력과 하드웨어를 갖추어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전문 인력과 하드웨어,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면서 협력 체계를 이루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더욱 효율적인 체계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대학의 실무자 및 정책 담당자들에게 효과적인 장애대학생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및 전략을 제공해주고 있다. 올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으로 인해 다수의 국립, 사립대학들은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전담자를 갖추는 데 주력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어떠한 역할과 위상을 가지고 어떠한 전담자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지침을 실무자 및 의사결정자들에게 제공해줄 것이다. 또한 국가의 정책 담당자에게도 대학이 효과적으로 장애학생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떻게 장려제도 및 지원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후속 연구들이 기대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소수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 결과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단일한 자료수집 방법으로 인해 좀 더 구체화되고 실제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에서 제한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수의 전문가 대상의 면담, 실무자 및 장애학생 대상의 설문조사 등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져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들을 구체화하고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관점과 상황을 달리하여 분석결과를 재검토하는 검증 과정이 미비하였다. 이러한 자료 분석 과정을 보완하여 추후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결과를 더 정교하게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교육인적자원부 정기국회보고자료.
- 김기남. “새터민 청소년의 교육인권에 관한 연구”. 2006년도 인권논문 수상집, 351-396. 2006.
- 김남순. “장애학생의 특례입학과 대학시설환경 및 제도에 대한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36(1), 81-97, 2001.
- 김동연. “장애학생 고등교육 정책의 과제”. 한국특수교육학회 춘계학술심포지움 자료집, 113-149, 2000.
- 김동일. “새로운 특수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육의 혁신”. 현장특수교육, 15(3), 20-25, 2008.
- 김성애, 박찬웅, 이해균. “장애 대학생 학업성취 실태 및 대학생활 요구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37(4), 335-357, 2003.
- 김용욱. “장애대학생들을 위한 효율적인 가상강좌 연구”. 난청과 언어장애연구, 23(3), 193-211, 2000.
- 김정권의. “탈산업사회와 특수교육” 도서출판 특수교육, 2002.
- 김형식. “시민적 권리와 사회정책” 중앙대학교출판부, 1998..
- 김형식. “호주 장애인의 고등교육정책” 계간사회복지(겨울), 51, 2001.
- 김형식. “대학 통합교육의 쟁점과 방향” 재활복지, 7(1), 2003.
- 동경대학교 첨단과학연구소. “Barrier-Free Research Project” 한국재활복지대학의 연구세미나, 2003.
- 서울대장애인동문후원회. “장애인과 대학교” 제1회 서울대 장애인동문세미나 자료집, 2002.
- 김정래. “아동권리향연”. 교육과학사. 2002. 159-220.
- 김주영.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의 문제와 개선” 현장특수교육, 2, 2003.
- 김주영.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제도와 방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2005.
- 윤점룡. 한국재활복지대학 신입교원 연수 자료집. 2003.
- 정정진.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체제 개선 방안”.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8(1), 109-132, 2007.
- 한국통합교육학회(편). “통합교육”. 서울: 학지사. 2005
- 황준성. “교육의 권리성에 관한 연구-교육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pp.25, 1998.
- Bronfenbrenner, U. 인간발달생태학(이영 역). 서울: 교육과학사. 1992.(원저 1979출판).

- Disability Resources and Educational Services.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http://www.disability.uiuc.edu/>
- Frieden, L.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Postsecondary Education*.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
<http://www.ncd.gov/2003>
- Guidelines Applying to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http://www.ucop.edu/ucophome/coordrev/ucpolicies/aos/toc140.html/>
- Shaw & Dukes III. *Program Standards for Disability Services in Higher Education*. AHEAD: Association on Higher Education And Disability. <http://www.ahead.org/.2001>
- Section 504, Rehabilitation Act of 1973. U.S. Department of Labor.
<http://www.dol.gov/oasam/regs/statutes/sec504.htm>
- Weber, R. P. *Basic Content Analysis(2nd edi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Inc.
- West, M., Kregel, J., Getzel, E. E., Zhu, M., Ipsen, S. M., & Martin, E.D. Beyond Section 504: Satisfaction and Empowerment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Higher Education". *Exceptional Children*, 59, 456-467. 1993.

[부록 1] 본 연구의 면담질문지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장애학생이 10명 이상인 대학에서는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화 규정으로 인해 장애학생지원센터 역할 정립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에서의 위치, 지원 범위 및 내용 등)
2.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인권위원회,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지역별로 몇 개의 대학씩 권역화하여 국립대학을 거점 대학으로 하여 장애학생지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이 거점대학 중심으로 장애학생지원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각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역할과 전반적인 지원 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3.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전담 인력은 어떠한 자격기준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야 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이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대학이 편의시설, 서비스 지원, 인력 지원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대학에서 학생, 교수,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이나 정보 제공, 연수 등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6. 효율적인 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해 대학 간 교류나 지원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간 협의체, 대학 간 지원 체계, 국립대학의 거점화, 다른 국가기관과의 협력 체계 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7. 현재 3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가 대학의 장애 지원 개선을 위해 어떻게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8. 장애 대학생의 학습권 신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정책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학생선발, 교수·학습 지원 체제, 대학생활 및 진로 지도, 재정 지원, 편의시설 지원, 기타 활동 등

학생부
가 작



오 지 윤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목 차

Contents

제1장 들어가는 말	1
제2장 성범죄의 특징	4
제1절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실태	54
제2절 성범죄 피해 및 후유증	54
제3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전 예방 제도	74
제3장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검토	84
제1절 신상공개제도의 변화 과정	84
제2절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분석	15
1. 제도문과 관련된 조항의 삭제	15
2. 등록제도에 관한 문제	21
3. 열람제도에 관한 문제	41
제4장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청소년 인식 -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94
제1절 설문조사의 내용	94
제2절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인지도	106
제3절 신상공개열람제도에 대한 평가	116
제4절 사전예방 보호제도의 효과에 대한 평가	144
제5장 개선방안 및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	184
제1절 신상공개제도의 개선 방안	186
제2절 연계적 예방제도의 보완 방안	197
제6장 맺는 말	212
<참고문헌>	213

요 약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2008년 8월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형 확정을 받은 성범죄자는 958명이고, 피해 아동 청소년은 무려 1226명이다. 피해 아동 청소년들이 겪는 피해와 후유증은 야경증이나 수면장애부터 만성적인 우울증이나 섭식장애까지 발전할 수 있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성범죄는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자발찌제도나 취업제한제도, 신상등록 및 열람제도 등의 성범죄 사전 예방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들은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성범죄자의 인격권이나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까지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 2월 국회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였는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등록 및 열람 제도>으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신상 등록 및 열람 제도는 그 동안 성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었던 인터넷 공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모든 성범죄자의 신상을 등록하게 하는 방법을 도입하였고, 등록 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하여 국가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넓혔다. 등록 대상자와 달리 열람 대상자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로 제한을 두어 범죄자의 인권과 청소년의 성보호 사이의 균형을 이루었고, 열람 장소와 열람 대상자를 넓혀 성범죄 예방 효과를 늘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개정된 신상 등록 및 열람제도에도 아직 문제점이 남아있다. 성범죄의 잠재적 피해자인 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청소년들은 우선 신상 등록 및 열람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홍보가 부족하다. 또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열람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문제가 될 수 있고, 열람 자격도 정작 이 제도의 보호대상인 청소년에게 주어지지 않아 성범죄 예방책으로서의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신상 등록 및 열람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하여도, 이 제도만으로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자발찌제도나 취업제한제도 이외에도 다른 성범죄 사전 예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범죄의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 이런 제도들을 도입할 때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과 함께 성범죄자의 인격권과 사생활 침해정도 등도 고려하여 두 가지 이익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이 바라본 신상공개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오 지 윤(대원외국어고등학교)

제1장 들어가는 말

광주지법의 2008년 8월 발표에 의하면 성범죄 피해자 10명중 4명이 청소년이라고 한다.¹⁾ 또 보건복지부가 2008년 8월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에만 형 확정을 받은 성 범죄자는 958명이고 피해 아동청소년은 무려 1226명이다.²⁾ 더구나 성범죄는 아직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지우지 못할 충격과 후유증을 남기는 중대범죄이다. 이런 점에서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고 시급하다.

2007년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대상성범죄자 신상공개자료 분석보고서”와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에 의하면 성범죄로 형 확정을 받은 자 중 10% 이상이 동종전과자라고 한다.³⁾ 재범률이 높다는 것은 범죄자의 교화나 관리를 통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사전 예방 제도가 바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2000년부터 시행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이다.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초기의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자의 사진이나 구체적인 주소 없이 거주지의 광역주소와 이름 정도를 공개하는 수준이어서 실질적인 범죄 예방의 효

1) 광남일보/아시아경제, 2008.7.18자

<http://www.asiaeconomy.co.kr/uhtml/read.jsp?idxno=364674§ion=S1N53§ion2=S2N214>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발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2008.7.30, 2면

3) “제13차 청소년대상성범죄자 신상공개자료 분석보고서,”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12, 11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발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2008.7.30, 7면

과가 없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⁴⁾ 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의견과 함께 이중처벌금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즉 성범죄자의 경우 형사적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형사적인 처벌 이외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당한다는 것이다. 형사적 처벌과 함께 도덕적 처벌이 내려짐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다.⁵⁾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개정된 “청소년 성 보호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새로운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하였다. 개정된 법률은 성범죄의 사전예방과 범죄자의 인권보호라는 두 측면의 문제를 고려하였다.

개정된 법률에서 도입한 신상공개제도는 정보가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대상을 현저히 줄인 반면, 공개범위를 범죄자의 사진, 거주지, 범죄내용으로 크게 확대하였다. 또 열람장소를 인터넷이 아닌 관할경찰서로 하되, 열람기간을 6개월에서 5년으로 대폭 늘리고, 열람 가능한 자격을 청소년의 법정대리인과 청소년 관련시설의 장으로 제한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본 연구는 2008년 개정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전예방제도를 현실적측면의 적정성과 제도적 측면의 적정성을 청소년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새로 도입된 신상공개제도가 그 이전 국가청소년위원회 하의 제도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인 청소년의 성 보호라는 목적과 성범죄자의 인격권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었는지 살펴보고, 개정된 제도의 한계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잠재적 피해자 집단인 고등학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신상공개제도의 적정성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현행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방법과 우리나라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비교하여 범죄자의 인권을 고려하면서 청소년의 성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4) 강지원, 「신상공개 쟁점이 잘못되었다」, 『시민과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2004), 17면

5) 김상겸, 「청소년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위헌성 여부」, 『고시계』(국가고시학회, 2003), 65면 및 69면

제2장 성범죄의 특징

제1절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실태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 8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발표⁶⁾에 따르면 성범죄에 의한 청소년 피해자가 2005년 3789명, 2006년 5159명, 2007년 5460명에 이어 2008년 상반기에만 무려 2790명으로 3년 새 30.6%나 증가하는 등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작년의 경우, 전체 성범죄 피해자 1만 5232명 중 청소년 피해자가 무려 35%에 이르는 등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대상이 된 958명의 성범죄자들을 보았을 때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범죄가 총 52.8%에 해당하여 성매수나 성매수 알선보다 높았다. 피해 청소년은 총 1226명으로 전체 평균 나이는 14살이었다. 범죄 발생시간은 13~16시로 오후가 가장 많았으며, 범죄 장소로는 강간은 가해자의 집, 강제추행은 길거리였으며 특히 13세 미만의 범죄는 피해자와 친숙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 피해 범위도 심각한 상황이다.

또 이번 발표 자료에서 분석 대상이 된 958명의 성범죄자 중 전과기록이 있는 자가 무려 60%를 넘는 598명에 해당하며 이중 성범죄 전과기록이 있는 자는 전체의 13.7%인 132명에 달한다. 지난번 발표와 비교해보았을 때, 성범죄 경력이 있는 범죄자가 재범을 일으키는 경우가 제 12차 발표 때 10.9%, 제 13차 발표 때 11%, 그리고 현재의 13.7%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재범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출소 후에도 국가가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2절 성범죄 피해 및 후유증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에게 지우지 못할 상처와 후유증을 남기는데, 그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 더 심각하다. 이는 아동 청소년들이 아직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이다.

6)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발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2008.7.30, 2면 이하

성폭력 후유증은 크게 신체영역, 정신영역, 인지영역, 대인영역, 행동영역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지만,⁷⁾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초점을 맞추어 성범죄 후유증을 피해 후 바로 나타나는 급성기 증상과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야 나타나는 만성적인 증상, 학령 전기 아동과 학령기 아동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법도 있다.⁸⁾

동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동 청소년들은 피해 직후 혼란스러움, 기억상실, 그리고 성폭력 당한 기억을 현실에서 분리시켜 적용하려고 하는 해리 등을 겪을 수 있다. 또 악몽이나 야경증과 같은 수면장애를 겪기도 하며, 자주 울거나 안정되지 못하는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또 성범죄를 당한 기억에 대한 후유증은 식욕부진이나 병적인 식욕과다 등 섭식 장애로 표출되기도 하며,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치심과 부끄러움, 죄책감과 자기혐오, 열등감 등을 느끼게 되어 우울증의 증세를 보인다고도 한다.⁹⁾

성범죄는 피해 직 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후유증이 남는다. 피해 직후에 느끼는 감정들은 자존감을 낮추고, 이렇게 와해된 자존감과 무력감은 만성적인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 만성적인 불면증이나 두통, 복통, 근육통 등의 신체적인 증상이 지속될 가능성도 크다. 또 성폭력을 당한 기억은 남성이나 여성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으로 발전할 수 있고, 집중력의 저하나 학업성적의 저하,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에의 어려움이나 갈등, 또는 그로 인한 등교 거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도 한다.¹⁰⁾

성범죄의 후유증은 학령 전기 아동과 학령기 아동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도 있다. 우선, 어린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들은 정서적인 반응보다는 주로 신체적인 반응으로 그 후유증을 보인다. 예를 들자면, 손가락 빨기나 대소변 실수, 부모에게 지나치게 매달리거나 어리광을 부리는 행위 등이 있다. 또 동연구는 학령 전기 피해자들은 악몽을 자주 꾸고, 수면주기가 불규칙해지며 분리불안이 심해지는 경우도 대다수이며, 성적인 놀이를 하거나 성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기도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¹¹⁾

학령기 아동이 겪는 성범죄 후유증은 학령 전기 아동들이 보이는 증상을 비롯하여 우울증상과 같은 심리적인 영역으로 나타난다. 공격적으로 권위에 도전하는 반항적인 행동이나 규칙 위반과 같은 반사회적인 행동, 또는 부정적인 신체상, 지나친 성에 대한 지식이나 혼란스러움은 이런 우울한 증상을 더 심화시킨다. 집중력 결핍으로 인해 학업이 부진한

7) 김정규, 「성폭력 피해의 심리적 후유증」, <http://www.sungshin.ac.kr/~phi/abuse.htm>

8) 해바라기 아동센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2004, <http://www.child1375.or.kr/about/aftermath.asp>

9) 해바라기 아동센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2004, <http://www.child1375.or.kr/about/aftermath.asp>

10) 해바라기 아동센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2004, <http://www.child1375.or.kr/about/aftermath.asp>

11) 해바라기 아동센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2004, <http://www.child1375.or.kr/about/aftermath.asp>

경우도 있고, 친구관계에서 갈등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¹²⁾

이처럼 성범죄는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아동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어린시절을 보내지 못할 정도로 큰 피해를 남긴다. 또 성범죄는 그 피해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만성적인 후유증으로 발전하여 피해 아동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문제가 된다. 이렇듯,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 피해 대상이나 피해 범위가 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사전 예방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큰 범죄이다.

제3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전 예방 제도

위에서 살펴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와 그 후유증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몇 가지 사전 예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재범이 많은 성범죄의 특성을 이용하여 재범으로 인한 성범죄는 사전에 예방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선 2007년 8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등록 및 열람 제도>¹³⁾가 있다. 이는 유죄판결을 받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모두의 신상을 10년 간 등록하게 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중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자의 신상은 잠재적인 피해자인 청소년의 법정 대리인들로 하여금 5년 동안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성범죄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같은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또 다른 성범죄 예방제도는 바로 성범죄자의 청소년 관련 직장 취업 제한 제도¹⁴⁾이다. 즉,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 성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번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위치추적을 위한 전자발찌제도¹⁵⁾도 있다. 성폭력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르거나 13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출소 후 24시간 전자발찌를 차고 다녀야 한다. 이들의 움직임을 중앙관제센터가 관리하여 외출 제한이나 특정한 접근금지, 또는 유치원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금지와 같은 제한을 둬으로써 재범을 막는다는 것이다.

위의 신상 등록 열람제도, 취업제한제도, 그리고 전자발찌제도와 같이 적극적인 성범죄 예방 제도 이외에도 좀 더 소극적인 성범죄 사전 예방책들도 있다. 신상 등록대상자들을

12) 해바라기 아동센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2004, <http://www.child1375.or.kr/about/aftermath.asp>

13)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2008.2.29), 제5장 이하

14)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2008.2.29), 제5장 이하

15) 인터넷 법률 신문, 2008.9.1자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2077>

대상으로 한 교육제도나 사회봉사 및 교육 등이 있고, 또 잠재적 피해자인 청소년들에게 대처방안이나 성범죄 사전 예방책들을 알려주기 위한 교육제도 등도 있다.

위의 모든 성범죄 예방 제도들은 그 근본적인 목적이 청소년의 성보호이다. 하지만 성범죄 예방의 효율성과 동시에 고려해야하는 것이 바로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의 인권이다.

예를 들자면, 신상 등록 및 열람제도는 성범죄자의 이름과 주소 뿐 아니라 사진까지 자세히 공개하여 성범죄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도우기는 커녕, 오히려 사회에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음으로써 이중처벌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취업제한제도 역시 성범죄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가장 기본적인 권리까지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올 9월 처음 시행되는 전자발찌제도 역시 신체의 자유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이중처벌이라는 등 대상 범죄자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성범죄 사전 예방 제도들을 검토할 때에는 이 제도들의 효율성이나 범죄자들의 인권 침해 정도 중 한 쪽 측면만 살필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이익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아야 한다.

제3장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검토

제1절 신상공개제도의 변화 과정

나날이 증가하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막고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2000년 2월 23일 처음으로 제정¹⁶⁾되었다. 이 법의 제20조에서는 일반인에게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자 청소년보호위원회로 하여금 연 2회 계도문을 발표하도록 명시하였다. 이 계도문에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자들의 대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될 수 있었는데, 그 범위는 지극히 제한되었다. 시행령에 따르면 범죄자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확정판결문에 제시된 직업과 시군구까지의 주소, 그리고 간단한 범죄요지만이 계도문에 포함될 수 있었다. 이 계도문은 청소년보호위원

16)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2002.2.23)

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되었고, 중앙정부청사 및 특별광역시도의 분청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되었다. 그러나 그 공개범위나 내용이 너무 적어 “아무 짝에 쓸모 없는” 숨방망이 공개¹⁷⁾를 받아 2005년 12월 29일 일부 개정된 법률안¹⁸⁾이 통과되었는데, 가장 큰 변화는 성범죄자 등록제도의 신설이었다.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는 자는 “등록대상자”로 분류되어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성명, 생년월일을 비롯해 현 직장 및 실제 거주지의 주소,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까지 등록해야 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된 정보를 5년만 보관할 수 있었고, 5년이 지나면 등록대상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파기해야 하였다. 등록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등록대상자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와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만 주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성범죄를 막는 것엔 숨방망이에 불과하여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범죄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의견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그리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¹⁹⁾을 받았다.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하여 2008년 초 정부는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안²⁰⁾을 제시하였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피해 청소년의 보호를 확대, 강화하고 친고죄였던 성범죄를 반의사 불벌죄로 바꾸는 등의 개정안을 비롯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되어 있었다.

정부의 개정안을 토대로 수정되어 2007년 8월 3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²¹⁾에 명시된 신상공개제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등록 및 열람제도>로 그 이전의 제도와는 다른 점이 많았다. 이에 아래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 가운데 신상공개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몇 가지 주요항목으로 나누고 각각의 내용이 그 이전의 제도가 받아온 비판을 어떤 면에서 해결하는지 점검해보기로 한다.

17) 강지원, 「신상공개의 쟁점이 잘못되었다」, 『시민과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2004), 16면

18)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2005.12.29)

19) 금문현,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위헌 여부」, 『고시연구』(고시연구사, 2004), 163면

20)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법률안, 정부, 2007.1.30

2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2007.8.3)

등 록 제 도		
구분	구법	신법
기 간	○ 5년(형 집행 후)	○ 10년
등 록 정 보	○ 청소년대상 강간, 강제추행으로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 받은 자 전원 - 성매수의 경우는 재범자이거나 대상 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
결 정 권 자	○ 국가청소년위원회	○ 법원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 시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
등 록 기 관	○ 국가청소년위원회 (시행령에서 관할경찰서에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가청소년위원회
열 램 대 상	○ 등록대상자와 동일	①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② 그 외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 받은 자 중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자
결 정 권 자	○ 국가청소년위원회	○ 법원
열 램 정 보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현 직장 및 실제 거주지 주소, ④ 사진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⑤ 사진, 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열 램 권 자	① 등록대상자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 ②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①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내에 거주하는 자 중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②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내의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
열 램 장 소	○ 지방경찰청	○ 관할경찰서
제 제	○ 등록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동일

(자료 출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제2절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분석

1. 계도문과 관련된 조항의 삭제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연2회 인터넷을 통한 계도문 발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계도문 발표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한 것은 첫째 성범죄 예방에 별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계도문에 공개된 성범죄자의 신상은 성명, 연령, 생년월일, 확정판결문에 기록된 직업과 시군구까지의 주소, 간략한 범죄요지 등으로 지극히 제한되어있었다. 이는 범죄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침해금지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일반인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고자하는 방법이었다.²²⁾ 따라서 계도문에 의해 공개된 성범죄자의 신상은 “홍길동, 32세, 69.3.20 생 경기도 광주시 거주”식으로 말 그대로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였다.²³⁾ 즉 계도문은 범죄자의 본인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분적인 사실만을 리스트 형식으로 공개함으로써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을 높이는 것이었으므로 그 이상의 범죄 예방책으로서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었다. 따라서 계도문은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구체적으로 개별 사건을 막는 효과가 전혀 없어 성폭력상담소나 아동청소년보호단체의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계도문 발표에 관한 내용을 삭제한 두 번째 이유는 그 동안 문제가 되어온 범죄자의 인권문제를 비롯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003년 6월 26일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제청에 대해 합헌의견²⁴⁾을 내리면서 신상공개제도가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긴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인의 청소년대상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고, 또 공개되는 내용이 유죄확정판결문에 나온 것으로 제한되어 새로운 신상이 아니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신상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던 “자유주의자”²⁵⁾들에 의하면 신상공개제도가 아무리 “서울의 김서방 찾기” 식이더라도 공개대상자의 주변인들은 누군지 식별해 낼 수 있어 수치심을 유발하는 실질적인 명예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가문”이 중요한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고려하였을 때 범죄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집안 전체에 성범죄자 집안이라는 ”현대판 주홍

22) 심희기, 「신상공개의 정당화근거와 적절한 공개대상과 공개기준의 탐색」,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2002), 28면

23) 강지원, 「신상공개제도의 쟁점이 잘못되었다」, 『시민과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2004), 17면

24) 헌법재판소 2003. 6. 26. 2002헌가1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0조제2항제1호등위헌제청】

25) 심희기,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선고2002헌가14결정」, 『법률신문』 (법률신문사, 2006), 15면

글씨“를 연상시키는 제도라는 지적도 있었다. 26)

제도문에 관한 내용을 삭제한 세 번째 이유는 청소년의 정보보호범죄자의 인격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의 제도문처럼 고위험범과 저위험범, 초범과 재범, 성폭력범과 성매수범 등을 나누지 않고 신상을 똑같이 공개하는 것은 범죄자의 인격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와 청소년정보보호라는 공익의 균형을 고려하였을 때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²⁷⁾ 또 성폭력범에 한해서는 현실적으로 성범죄자의 치료나 효율적인 감시체계, 청소년 선도 등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다른 덜 제한적인 수단들이 신상공개제도보다 덜 침해적이라고 하지못하지만, 성매수범의 경우 신상공개 이외에도 처벌이나 사회봉사, 교육과 같은 보안처분에 의해 범죄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어 정당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다. 28)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여 성범죄자의 정보를 사례제공의 형태로 부분적으로 공개하던 인터넷 신상공개제도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더 구체적으로 범죄자의 위험정도를 나누어 그 공개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도록 추가한 안은 그동안 제시되어온 과잉금지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볼 수 있다.

2. 등록제도에 관한 문제

가. 등록대상자의 범위 확대 및 등록결정권자의 변화

개정되기 전의 법안에 따르면 등록대상자는 청소년대상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의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제한되어있었다. 새로 개정된 법안은 등록대상자를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모두로 확대하였다.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해서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열람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열람대상자는 등록대상자중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신상을 공개해야하는 자들을 말한다.

우선 등록대상자의 범위를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모두로 확대함에 따라 등록대상자를 결정하는 권한도 행정부였던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사법부인 법원으로 바뀌었다. 이를 통

26) 심희기,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현대판 주홍글씨인가」, 『법률신문』 (법률신문사, 2003), 14면

27) 금문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위험 여부」, 『고시연구』 (고시연구사, 2004), 164면

28) 강태수,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147면

하여 행정부의 권한에 대해 제기되어 오던 문제를 해결하였다.

등록대상자의 범위를 늘린 것의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등록제도의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이다. 성범죄자의 현주소나 현직업과 같은 정보를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가 형성되어 국가의 성범죄자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된다.²⁹⁾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검찰이나 경찰이 성범죄자를 검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또 등록대상자가 된 성범죄자는 신상과 범죄요지를 등록함으로써 국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는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불러 일으킨다. 국가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청소년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실제로 성범죄자의 취업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의 등록과 같은 관리 차원의 제도는 성범죄자의 치료와 재활 및 사회복지를 돕는 것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³⁰⁾

나. 등록기간의 연장

개정된 법률에 따라 등록대상자의 등록기간이 형 집행 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고, 등록대상자가 청소년의 성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간의 일부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 기간의 연장에 대해 아직까지 성범죄자의 재범률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 자료가 없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등록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³¹⁾ 등록 열람제도가 시행된지 2년 밖에 안 되어 5년 등록기간의 효과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10년으로 늘리는 것을 입증할 정도로 타당한 통계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또 등록 기간의 연장은 재사회화와 재활을 막아 성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반면에 등록 기간 연장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등록제도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국가의 통제, 관리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와 취업제한제도의 전제조건이면서 동시에 범죄자의 치료, 재활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강조한다.³²⁾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면 5년은 너무 짧다는 것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제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5년이 지난 후에 또 범죄를 저지르는 성범죄자가 전체 재범자의 20~30%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³³⁾ 성범죄가 짧은 기간 안에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노

29) 진술인 김혜정, 정무위원회 회의록, 제267회 정무소위제3차, 2007.4.19

30) 진술인 황성기, 정무위원회 회의록, 제267회 정무소위제3차, 2007.4.19

31) 이승희 의원, 정무위원회 회의록, 제267회 정무소위제1차, 2007.4.12

32) 국가청소년위원회청소년보호단장 전혁희, 정무위원회 회의록, 제267회 정무소위제1차, 2007.4.12

인과 바다 사건으로 불리는 전남 보성의 70대 어부의 강간 및 연쇄살인사건³⁴⁾이 보여주듯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없어지는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의무를 10년이 아니라 종신으로 바꾸어야한다는 의견³⁵⁾도 있다. 실제로 미국의 Pam Lychner Act처럼 성범죄자의 등록 기간을 종신으로 하여 국가의 관리시스템을 넓히고 있는 제도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없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고려하면서 등록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등록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되 종신제로 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종신 등록제도에 찬성하던 전문가들도 그러기위해선 재범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판별해 낼 수 있는 기준을 정해야한다는 것과 성폭력범죄와 성매수범죄 등을 나누어 차등적으로 생각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아무리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을 위해서일지라도 범죄자의 인권을 비롯하여 죄형법정주의와 같은 원칙과 균형을 맞추어야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앞으로 등록 열람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3. 열람제도에 관한 문제

가. 열람대상자의 범위 축소 및 열람기준과 열람결정권자의 변화

과거의 열람대상자는 등록대상자와 동일하여 청소년대상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의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였지만 개정된 법률에 따라 등록대상자 중 ①13세 미만 대상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 ②13세 미만의 성범죄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③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자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④열람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그리고 ⑤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으나 처벌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이다.

즉 바뀐 제도에 따르면, 전체 성범죄자들 중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들만 법원이 따로 정하여 열람을 명령하게 된다. 이는 잠재적인 피해자인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와 같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지역의 성범죄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접하게

33) 국가청소년위원회청소년보호단장 전혁희, 정무위원회 회의록, 제267회 정무소위제1차, 2007.4.12

34) 전남 보성의 오모씨는 7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성으로 관광을 온 여자 대학생 4명을 배를 태워 바다에 나가 성추행하고 살인한 혐의로 2007년 8월 검거되었다.

35) 진술인 권창국 및 황성기, 정무위원회 회의록, 제267회 정무소위제3차, 2007.4.19

하여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열람제도의 목적을 확실하게 한 것이다.³⁶⁾ 위의 ⑤와 같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인 ‘심신 상실상태에서 범죄를 범해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중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면 열람대상자가 되도록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³⁷⁾ 또 성매매법은 위의 열람대상에서 ②를 제외하고는 해당되지 않는데, 이것은 열람제도를 통해 성매매를 사전에 막는 효과가 실질적으로 적기 때문에 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 범죄자가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받는 정도가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을 이루는 것보다 크기 때문이다. 또 열람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전통적으로 집안과 가문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선 열람대상이 된 범죄자들 뿐 만 아니라 그 범죄자의 가족까지 성범죄자 집안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과 인권침해 정도를 고려하여 열람대상자를 제한하는 것이다. 열람대상자들이 정보 공개로 인한 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해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고, 범죄자들의 재활과 재사회화를 막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하지 말아야한다는 지적³⁸⁾도 있었지만, 이 역시 열람대상자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로 제한함으로써 범죄자들을 인권과 동시에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였다. 즉 열람대상자를 정할 때에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하여 열람제도가 범죄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하기 위한 목적이나 명예형과 같은 형벌의 목적이 아니라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 아래 만들어진 제도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또 열람대상자를 결정하는 권한을 행정부였던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법원으로 옮김으로써 열람제도의 성격자체가 형벌이나 행정처분이 아닌 보안 처분적 성격을 명확하게 띠게 되어,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을 확실히 하고 이중처벌의 논란을 해소하였다.

하지만 열람대상자의 기준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바뀐 제도에 따라 열람대상자는 크게 ①과 ④와 같이 무조건적으로 열람대상자가 되는 경우와 ②, ③, ⑤와 같이 법원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후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법률이나 시행령을 보면 전과 몇 범이라든지 관련 성범죄 기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 없이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그 사건을 담당할 법관에게 맡겨져 있다.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곧 범죄를 예

36) 진술인 김혜정, 정무위원회 회의록, 제267회 정무소위제3차, 2007.4.19

37)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죄를 범해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남아있으므로, 등록과 열람제도의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술인 김태명, 정무위원회 회의록, 제267회 정무소위제3차, 2007.4.19

38) 진술인 김혜정, 정무위원회 회의록, 제267회 정무소위제3차, 2007.4.19

측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테스트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 예로,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보면, 우선 비정형적 임상평가방식이라고 하여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등을 통해 면접형식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식과 정형적 평가방식으로 사전에 재범가능성을 나타내는 표지들을 산정해 내고 그 표지들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설문조사 방식으로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식, 그리고 실증된 평가척도에 의해 경험사례나 진단 사례 등을 통해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식 등이 있다.³⁹⁾ 또 미국에서는 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성을 좀더 객관적이고 통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크게 4가지의 분야로 나누어서 판단한다.⁴⁰⁾ 우선 그 첫 번째 분야는 범죄의 불법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폭력의 사용 여부,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여부, 피해자의 수, 피해자에 대한 범죄 행위기간, 피해자의 연령 등을 점수로 매겨 평가한다. 두 번째 분야는 범죄경력 사항으로 성범죄를 범한 최초 연령, 전과의 수와 성질, 이전 전과의 시기,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여부등을 점수로 매긴다. 세 번째는 범죄후의 행동으로 책임의 인정 여부, 구금 또는 감독 동안의 행동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감독환경이나 생활 또는 고용 환경 등으로 석방후의 환경을 평가한다. 이러한 네 가지의 평가기준에 따라 나온 점수를 합산하여 등급을 나누어 신상 정보의 열람 여부를 결정한다.⁴¹⁾ 우리나라 역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을 원칙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법관들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인 판단보다 형평성 있게 열람대상자를 정할 수 있도록 이런 구체적인 테스트와 그 결과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법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나. 열람정보의 확대

열람 정보는 많이 바뀌지 않았는데, 원래부터 공개되던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현 직장 및 실제 거주지의 주소, ④사진에 덧붙여 ⑤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이 추가된 정도이다.

우선 열람정보에 범죄요지가 추가된 것은 잠재적인 피해자에게 미리 범죄자와 범죄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범죄를 예방한다는 목적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또 이 전의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인터넷 신상공개에서처럼 확정판결문에 나온 주소나 직업이 아니라 실

39) 진술인 권창국, 정무위원회 회의록, 제267회 정무소위제3차, 2007.4.19

40) 리경재,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법적 문제점 고찰」,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2002), 8면

41) 리경재,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법적 문제점 고찰」,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2002), 8면

제 거주지와 실제 직업을 명시함으로써 지역의 피해자들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였다.

반면 연령만 공개하면 되는 것을 생년월일까지 공개하는 것은 지나친 인격권 침해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⁴²⁾ 또 등록 열람제도가 처음 시행되던 2006년 6월부터 있었던 의견으로 사진까지 공개하는 것은 지나친 인격권 침해라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열람대상자를 제한함으로써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의 신상과 범죄요지만을 공개하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 열람기간에 관한 사항

등록기간은 개정안에 의해 5년에서 10년으로 확장된 반면, 열람기간은 그대로 5년으로 변화가 없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위의 통계자료가 보여주듯이 재범자들 중 2~30% 정도가 5년이 지나서도 성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열람제도도 5년 이상으로 확장하여야한다는 지적을 하였다.⁴³⁾ 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단지 5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의 신상과 범죄요지를 보지 못한다면 성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하였다.⁴⁴⁾

하지만, 등록제도의 기본적인 목적 중 하나가 성범죄자의 치료 및 재활을 통해 재사회화를 돕는 것인데 열람제도를 등록 제도처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은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막는 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이라는 말처럼, 열람제도는 잠재적인 피해를 미리 막으려는 의사가 있는 사라들이 직접 찾아가서 정보를 얻어야 하는 제도이므로, 5년이라는 기한을 두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즉 열람제도를 5년으로 제한한 것은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범죄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을 제한하여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려고 한 것이라고 본다.

라. 열람 장소의 변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열람 장소가 지방경찰청에서 관할 경찰서로 바뀌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14개의 지방경찰청이 있고 그 아래 229개의 관할경찰서가 있다. 즉 열람 장

42) 진술인 김혜정, 정무위원회 회의록, 제267회 정무소위제3차, 2007.4.19

43) 종신열람 또는 최소 30년 이상으로 열람기간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김애실 위원, 정무위원회 회의록, 제267회 정무소위제3차, 2007.4.19

44) 진술인 황성기, 정무위원회 회의록, 제267회 정무소위제3차, 2007.4.19

소를 14군데에서 229군데로 늘림에 따라, 지역의 주민들이 좀 더 쉽게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전의 법률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에 가야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잠재적인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직접 가야지만 범죄자의 신상과 범죄 요지를 접할 수 있는 불편함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개정된 조항 역시 잠재적인 피해자들이 직접 정보를 찾는 것을 더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려는 입법목적을 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 열람권자의 확대 및 청소년의 열람권 제한

범죄자의 신상과 범죄요지를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은 ①등록대상자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 그리고 ②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으로 제한되어있었는데, 개정된 법률에 따라 ①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자 중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나 ②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으로 바뀌었다.

열람권자를 제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범죄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침해를 비롯하여 수치심을 유발하는 명예형이라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 관련된 논란 모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더욱 옆집 아줌마에게 전해진 말의 과장이 크듯이 열람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도 이것이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고,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⁴⁵⁾ 따라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은 이 정보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을 얻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질 때 범죄자의 인권침해가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 아래 정당화되는 것이다.

개정된 법률을 보면 열람권자가 피해자 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개정 이전의 법률은 열람권을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으로 제한함으로써 정작 정보를 얻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잠재적인 피해자인 지역주민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자면, 범죄자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범죄자의 신상이나 범죄요지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2006년 2월 집행유예기간에 있던 범죄자가 일으킨 용산 초등생 성폭력 살해사건⁴⁶⁾을 보면 지역주

45) 진술인 김태명, 정무위원회 회의록, 제267회 정무소위제3차, 2007.4.19

46) 2006년 2월 용산의 초등학교 청소년이 성폭력 전과를 가진 이웃 가게 주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살해당한 사건이다.

민들의 범죄자에 대한 무지가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켰는지 알 수 있다. 즉, 개정 이전의 법률에 따른 열람제도는 이미 열람대상자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보복심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에 따라 열람권자의 중심이 피해자에서 잠재적인 피해자로 옮겨감에 따라 잠재적인 피해자인 지역 주민들이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방지를 통한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입법목적은 강화하였다고 본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정작 성보호라는 입법목적의 대상인 청소년, 열람제도가 만들어진 원인인 잠재적인 피해자로서의 청소년에게는 열람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청소년성보호법”이나 등록 열람제도 모두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법률의 이름이 말해 주듯이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인데, 청소년이 성범죄 예방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직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게만 그 자격이 주어져 있다. 비밀누설조항에 있어 법정대리인들은 자신들이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그 정보를 얘기해도 되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범죄자의 사진을 직접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청소년들이 성범죄자의 사진을 직접 볼 수 있다면, 이 법이 목적으로 하는 사전적인 성범죄 예방이 효과가 더욱 클 것이다. 다만, 청소년은 9살부터 19살 미만의 미성년자 말하므로 모든 청소년에게 무제한 적인 정보 공개를 한다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범죄자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 또한 있는 것처럼, 법정대리인과 함께 있을 때만 정보를 볼 수 있다든지 청소년도 어느 연령 이상부터만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제한을 두면서 청소년에게 열람권을 부여한다면,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청소년 의식

-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제1절 설문조사의 내용

본 논문에서는 신상 등록 열람제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재학생 184명이었으며, 이 중 남

자는 88명이었고 여자는 96명이었다. 설문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그 첫 번째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등록 및 열람 제도>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이었다. 두 번째는 이 제도에 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물어보았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등록 열람제도의 이외의 보완제도의 효과와 인권 침해 정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견해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제2절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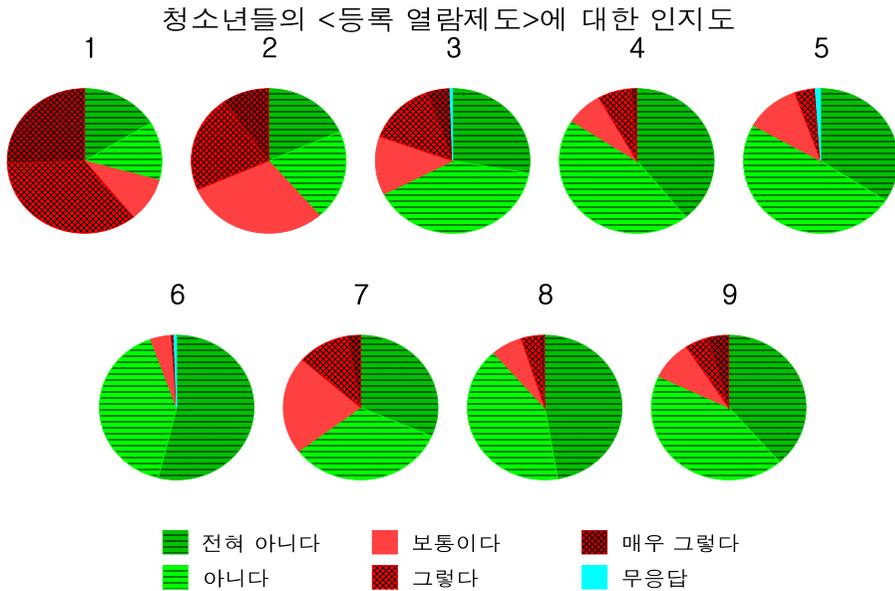
<표1>과 <그래프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등록 및 열람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청소년은 112명(60.8%)으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 제도에 대해 적어도 이름 정도는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거나 보통 정도로 알고 있다는 청소년은 113명(61.4%)이었다. 이 제도의 시행 시기에 대해 알고 있는 학생은 35명(19.0%), 열람 장소에 대해 알고 있는 청소년은 15명(8.1%), 열람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의 기준에 대해 알고 있는 청소년은 8명(4.3%), 열람 대상이 된 성범죄자의 수에 대해 알고 있는 청소년은 1명(0.5%), 열람 가능한 정보에 대해 알고 있는 청소년은 25명(13.5%), 열람 기간에 대해 알고 있는 청소년은 9명(4.9%), 그리고 열람 자격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청소년은 17명(9.2%)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청소년들은 신상 등록 열람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도,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1>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 나는 이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30 16.3%	24 13.0%	18 9.7%	65 35.3%	47 25.5%	0 0%
2. 나는 이 제도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34 18.4%	37 20.1%	55 29.9%	40 21.7%	18 9.7%	0 0%
3. 나는 이 제도가 2008년부터 더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51 27.7%	73 39.7%	24 13.0%	26 14.1%	9 4.9%	1 0.5%
4. 나는 이 제도에 의해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어디서 열람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72 39.1%	83 45.1%	14 7.6%	13 7.0%	2 1.0%	0 0%

5. 나는 이 제도에 의해 열람대상이 되는 성범죄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63 34.2%	90 49.0%	21 11.4%	7 3.8%	1 0.5%	2 1.0%
6. 나는 이 제도에 의해 올해 상반기 열람대상이 된 성범죄자의 수를 알고 있다.	99 53.8%	75 40.7%	8 4.3%	0 0%	1 0.5%	1 0.5%
7. 나는 이 제도에 의해 범죄자에 대한 어떤 정보가 공개되는지 알고 있다.	58 31.5%	61 33.2%	40 21.7%	20 10.8%	5 2.7%	0 0%
7. 나는 이 제도에 의해 열람대상이 된 성범죄자의 신상이 몇 년 동안 공개되는지 알고 있다.	87 47.3%	76 41.3%	12 6.5%	7 3.8%	2 1.0%	0 0%
8. 나는 이 제도에 의해 누가 성범죄자의 신상을 열람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	71 39.1%	80 43.5%	16 8.7%	9 4.9%	8 4.3%	0 0%



<그래프 1>

제3절 신상공개열람제도에 대한 평가

가.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과 성범죄자의 인권의 관계

<표2>와 <그래프2>를 보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등록 및 열람 제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견해를 알 수 있다. 우선 81명(44.0%)의 청소년이 성범죄와 관련된 제도를 시행할 때 청소년의 정보보호라는 공익과 범죄자의 인권을 모두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 59명(32.1%)의 청소년들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답했다. 동시에 청소년의 정보보호를 위해 성범죄자의 인권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136명(73.9%)인 반면, 제한할 수 없다고 대답한 청소년은 18명(9.8%)이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정보보호를 위해서라도 성범죄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제도는 시행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한 학생은 53명(28.8%)이었고, 시행되어도 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87명(47.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은 성범죄와 관련된 제도를 시행할 때 성범죄자의 인권과 청소년들의 정보보호라는 목적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자신들이 성범죄의 잠재적인 피해자인 만큼,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청소년의 정보보호라는 목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현재의 제도에 대한 견해

71명(38.6%)의 청소년이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열람 대상자를 정하는 것은 성범죄자의 인권을 고려한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59명(32.1%)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99명(53.8%) 청소년들이 현재의 제도에 의해 열람 대상이 된 성범죄자들의 수가 재범자의 수에 비해 적다고 여긴 반면, 22명(12.0%)의 청소년들은 적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 73명(39.7%)의 청소년들이 열람 권한을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범죄자의 인권을 고려한 것이라고 대답한 반면, 39명(21.2%)의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잠재적인 피해자인 청소년들에게도 열람권한이 있으면 성범죄 사전예방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대답한 청소년들은 129명(70.1%)으로 나타났다. 또 열람 권한이 주어졌다면,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성범죄자가 있을 경우 신상 정보를 찾아보겠다는 청소년이 76명(41.3%)으로 찾아보지 않겠다는 43명(23.4%)의 청소년보다 많이 나타났다. 또 이 제도가 더 홍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청소년은 125명(67.9%)으로 나타났고, 이 제도 이외의 다른 사전 예방제도나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32명(71.7%)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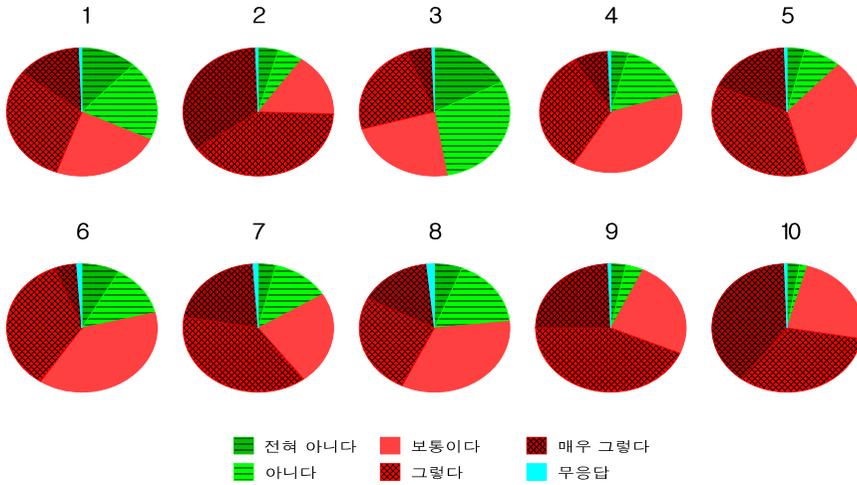
즉,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현재의 제도가 범죄자의 인권과 청소년의 정보보호라는 목적 사이의 조화를 어느 정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잠재적 피해자인 만큼, 여전히 이 제도에 의해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수가 실제

필요한 양보다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소년들은 잠재적인 피해자인 자신들에게 열람 권한이 주어지고, 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또 이외의 다른 사전 예방제도나 사후조치를 시행한다면, 성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나, 현재의 제도의 미비한 점을 지적하였다.

<표 2>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 나는 이러한 성범죄와 관련된 제도를 시행할 때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과 범죄자의 인권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22	37	43	55	26	1 0.5
2. 나는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범죄자의 인권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8	10	29	73	63	1 0.5
3. 나는 비록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을 위해서라도 범죄자의 인권을 본질적인 내용까지 지나치게 침해하는 제도는 시행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한다.	32	55	43	43	10	1
4. 나는 모든 성범죄자가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만 열람대상이 되는 것이 범죄자의 인권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17	28	67	57	14	1
5. 나는 재범자의 수에 비해 열람대상이 된 자들의 수가 적다고 생각한다.	7	15	62	66	33	1
6. 나는 열람권한이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로 한정되어있는 것이 범죄자의 인권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15	24	70	64	9	2
7. 나는 잠재적 피해자인 청소년들에게도 열람권한이 있으면 성범죄 사전예방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7	23	43	70	39	2
8. (내게 열람권한이 있다면) 만약 내가 사는 지역에 열람대상자가 있다면, 나는 관할 경찰서에 가서 열람할 의향이 있다.	11	32	62	47	29	3
9. 나는 이 제도가 학교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더 홍보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6	7	45	80	45	1
10. 나는 등록 열람제도 이외에도 다른 사전 예방제도나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3	43	60	72	1

<성범죄 등록 열람제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견해



<그래프2>

제4절 사전예방 보호제도의 효과에 대한 평가

<표 3>, <그래프 3>과 <표 4>, <그래프 4>는 각각 설문지에서 제시한 신상공개제도를 제외한 다른 7가지의 사전예방 보호제도의 효과 및 인권 침해 정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견해이다.

우선 전자기계를 발에 채워 성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제도로 올해 9월부터 실시된 전자발찌제도에 대해 119명(64.7%)의 청소년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제도에 대해 83명(45.1%)의 청소년이 인권 침해정도가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과 균형을 이룬다고 한 반면, 70명(38.0%)이 침해한다고 응답하였고, 30명(16.3%)이 침해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성범죄자의 대문 앞에 문패를 다는 제도에 대해서는 76명(41.3%)이 효과적이라고 한 반면, 69명(37.5%)이 효과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또 다수인 117명(63.6%)의 청소년이 이 제도가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한 반면, 40명(21.7%)은 공익과 균형을 이룬다고 하였고, 36명(19.6%)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성범죄자의 사회봉사 및 교육에 대해서는 79명(42.9%)의 청소년이 효과적이라고 하였고, 42명(22.8%)이 효과가 없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에 대해 10명(5.4%)의 청소년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응답한 반면, 대부분인 127명(69.0%)은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치료감호에 대해서는 76명(41.3%)의 청소년이 효과적이라고 하였고, 보통이라는 의견도 64명(34.8%)으로 많았고, 42명(22.8%)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하였다. 또 치료감호에 대해서는 다수인 86명(46.7%)의 청소년들이 공익과 인권침해정도가 균형을 이룬다고 하였고, 그 뒤를 이어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79명(42.9%), 침해한다는 의견이 19명(10.3%)으로 나타났다.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는 78명(42.4%)의 청소년이 효과적이라고 한 반면, 효과적이지 않다고 한 청소년이 60명(32.6%), 보통이라고 한 청소년이 41명(22.3%)으로 나타났다. 화학적 거세의 인권 침해 정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인 122명(66.3%)의 청소년이 침해한다고 응답하였고, 침해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1명(16.8%)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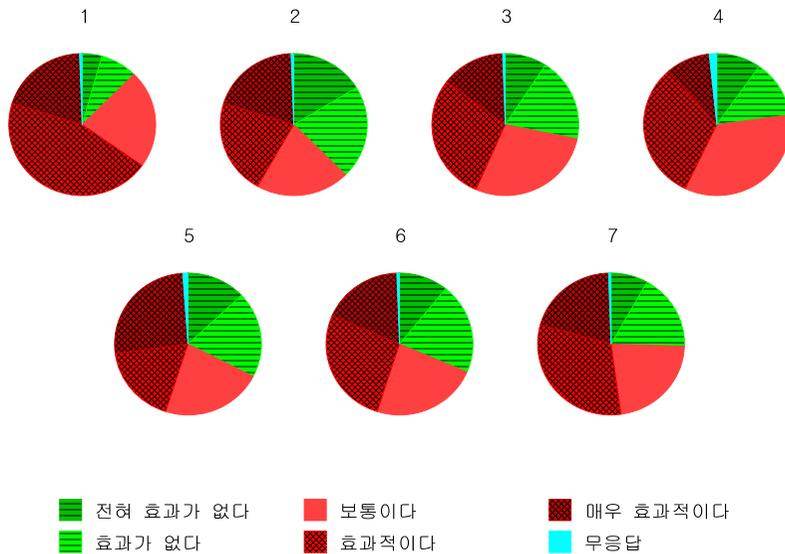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의 효과에 대해서는 82명(44.6%)이 효과적이라고, 58명(32.5%)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그리고 43명(23.4%)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이 제도의 인권 침해 정도에 대해서는 91명(49.5%)이 침해한다고 대답하였고, 49명(26.6%)이 공익과 균형을 이룬다고 하였으며, 43명(23.4%)이 침해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성범죄자의 청소년 관련 직장 취업제한제도의 효과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95명(51.6%), 효과적이지 않다고 한 청소년은 47명(25.5%), 보통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41명(22.3%)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의 인권 침해 정도에 대해서는 67명(36.4%)이 침해한다고 하였고, 58명(31.5%)이 공익과 균형을 이룬다고 하였으며, 58명(31.5%)이 침해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3>

설문 내용	전혀 효과가 없다	효과가 없다	보통이다	효과적이다	매우 효과적이다	무응답
1. 전자발찌제도	8	15	41	83	36	1
2. 성범죄자의 대문 앞에 문패 달기	30	39	38	40	36	1
3. 성범죄자 사회봉사 및 교육	17	35	52	53	26	1
4. 치료감호	18	24	63	58	18	3
5. 화학적 거세	24	36	41	33	48	2
6.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	20	38	43	49	33	1
7. 성범죄자의 청소년 관련 직장 취업 제한	15	32	41	58	37	1

보완제도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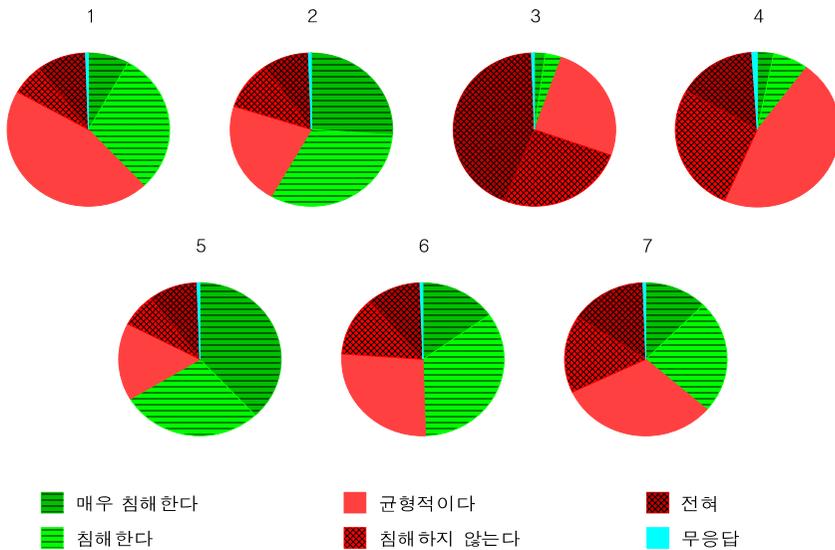


<그래프 3>

<표 4>

설문 내용	매우 침해한다	침해한다	균형적이다	침해하지 않는다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	무응답
1. 전자발찌제도	15	55	83	12	18	1
2. 성범죄자의 대문 앞에 문패 달기	48	59	40	19	17	1
3. 성범죄자 사회봉사 및 교육	4	6	46	47	80	1
4. 치료감호	6	13	86	50	29	2
5. 화학적 거세	70	52	30	13	18	1
6.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	28	63	49	23	20	1
7. 성범죄자의 청소년 관련 직장 취업 제한	23	44	58	30	28	1

보완제도의 인권 침해 정도



<그래프 4>

위의 통계자료를 보면, 청소년들은 보완제도들이 비교적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러 보완제도들 중에서도 사회봉사나 교육, 치료감호와 같은 소극적인 예방제도보다는 전자발찌제도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과 같이 적극적으로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제도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완제도의 인권 침해 정도에 대해서는 그 보완제도에 따라 의견이 달랐다. 우선, 많은 청소년들이 전자발찌제도와 대문 앞에 문패를 다는 제도, 화학적 거세, 주거지 제한 및 취업 제한제도 등의 제도에 대해서는 성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치료감호나 사회봉사, 교육등의 소극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은 적극적인 제도들이 성범죄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제도들이 소극적인 제도들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성범죄자들의 인권을 고려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성범죄의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과 성범죄의 예방이라는 목적을 성범죄자의 인권보다는 우선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5장 개선방안 및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

제1절 신상공개제도의 개선 방안

2000년 처음 제정되어 수차례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대상 신상 등록 및 열람 제도>는 이전의 신상공개제도가 지적 받아온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있다. 그 해결방안은 전적으로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는다거나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을 무시하는 방향이 아니라 두 가지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이었다. 즉, 범죄자의 인권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된 제도가 현재의 신상 등록 열람제도이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의 제도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

우선 그 첫 번째 문제점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도 드러났듯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것이다. 신상 등록 및 열람제도는 잠재적인 피해자들인 청소년들과 그들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찾아보아야만 정보를 얻어 성범죄의 예방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청소년과 그들의 법정대리인의 관심, 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바로 이 제도의 효과를 배로 만들 수 있는 전제조건인 것이다. 하지만, 설문조사에서 본 것처럼, 이 제도에 대해 이름만 들어봤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답변이 무려 61.4%에 달했다. 더 많은 홍보와 사회적인 관심을 통해 신상 등록 열람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두 번째 문제점은 현재의 제도에 따르면, 법관의 재량으로 열람대상자가 될 범죄자들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열람대상자의 기준에 대해 나열하고 있는 제37조의 3항, 4항, 5항을 보면, 문장 끝에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쓰여져 있다. 다시 말하자면,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법관이 알아서 인정, 그리고 결정한다는 것이다. 성범죄경력, 횡수라든지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폭력 정도와 같은 구체적인 기준이 아니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이라는 기준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는 법관에 따라 범죄자가 열람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자칫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같이 성보호법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비정형적 임상평가, 정형적 임상평가, 실증적 검증 사례, 범죄경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열람대상이 되는 자들을 추려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역시 이런 명확하고 객관적인, 덜 자의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성범죄자들의 재범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자료나 통계자료가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지금 당장 범조항을 더 명확하게 바꾸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우선 다른 나라의 연구사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맞는 성범죄자들의 재범에 대한 연구를 한 후에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열람대상자의 기준을 정하는 방법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현행 신상 등록 열람제도에 남아있는 또 다른 아쉬운 점은 바로 정작청소년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청소년들에게 열람자격이 주어졌는지 않다는 것이다. 열람 제도의 시행 목적이 잠재적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게 하여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인데, 정작 잠재적인 피해자인 청소년들은 범죄자의 이름은커녕 사진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청소년들의 법정대리인이 보고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지만, 사진과 같은 정보는 보지 않고선 제대로 전달 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의 범위가 만 9세부터 정의

되어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모든 청소년들에게 무제한적인 열람권을 부여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법정대리인과 함께 왔을 때 청소년들도 신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거나, 일정한 나이 이상의 청소년들에겐 자체적으로 신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야할 것이다. 또, 열람 자격을 가진 자가 늘어나는 것은 성범죄자들의 인격권을 더 침해하는 것인 만큼, 성범죄 예방이라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상 정보를 사용한다거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더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해야 할 것이다.

제2절 연계적 예방제도의 보완 방안

신상 등록 및 열람 제도가 위의 문제점들을 해결한다고 하여도 이 제도만으로 모든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상 등록 제도는 국가에게 성범죄자에 대해 통제, 관리할 수 있는 기록들을 주지만, 그 기록 역시 성범죄자 자신들이 직접 등록해야 하는 것이고, 1년 주기로 바뀌는 만큼 성범죄자들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는 줄 수 있지만, 24시간 성범죄자들의 행방을 알 수는 없는 일이다.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상 열람제도는 잠재적인 피해자들 모두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나누어주는 active notification이 아니라 관심이 있는 자들이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passive release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전적으로 모든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것은 아니다.⁴⁷⁾ 따라서 이러한 신상 등록 및 열람제도의 한계를 극복하여 성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다른 보완제도가 시행되어야한다.

위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자발찌제도와 취업제한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으므로, 지금은 다른 나라들에서 사용되고 있어 우리나라에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보완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자한다.

우선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서는 2007년 2월,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들이 특별한 자동차 번호판을 달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⁴⁸⁾ 출소한 성범죄자들은 초록색으로 되어 눈에 띄는 자동차 번호판을 5년 동안 필수적으로 달아야하고, 달지 않은 채로 적발되면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된다. 이어 위스콘신 주도 2007년 4월,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들에 한해서

47) 진술인 황성기, 정무위원회 회의록, 제267회 정무소위 제3차, 2007.4.19

48) Fox news, 2007.11.8 <http://www.foxnews.com/story/0,2933,309503,00.html>

초록색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시키는 제도를 도입하였다.⁴⁹⁾ 주립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성범죄자 스스로 재범을 범하는 것을 막고, 또 이웃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지역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들을 알게 하여 성범죄를 막겠다는 취지이다.

영국에서도 성범죄자들의 피부 안에 전자 칩을 넣어 GPS시스템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다.⁵⁰⁾ 이 시스템은 도난당한 자동차들의 위치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트래커와 같은 회사들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피부 안에 심어진 전자 칩은 위치를 추적하여 성범죄자가 아동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심장박동수나 혈압수 등을 측정하여 중앙관제센터로 보냄으로써 재범을 범할 상황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한다. 또 이 시스템은 전자 칩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경찰만 알고 일반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신상 열람제도가 겪는 범죄자의 인격권 침해와 같은 지적을 받기 보다는 피부 안에 전자 칩을 심는다는 것부터 모든 생활을 감시받는다는 것이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 강한 재범 방지 대안으로는 약물치료를 통해 성욕을 없애는 화학적 거세가 있다. 즉, 성충동의 원인인 테스토스테론을 줄이기 위해 호르몬제를 투입하는 것이다. 한 번 시행하면 되돌릴 수 없는 물리적 거세와는 달리, 약물치료를 중단하면 성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화학적 거세는 뚜렷이 다르다. 캐나다는 CPA(cyproterone Acetate)와 데포 프로베라라는 호르몬제를 투입하여 테스토스테론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이미 성범죄자들에 한해 화학적 거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⁵¹⁾ 실제로 이러한 약물투여와 심리치료를 함께하여 캐나다에서는 10년 만에 성폭행 재범률이 25%에서 15%로 떨어졌다.⁵²⁾

49) Kelly Peterson, Daily Illini, 2007.3.14

50) Martin Bright, The Observer, Guardian.co.uk, 2002.11.17

51) Kisti의 과학향기, 제469호, 2006.7.10

52) Kisti의 과학향기, 제469호, 2006.7.10

제6장 맺는 말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통계치를 보면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숙한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들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경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피해 청소년들과 그 가족들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손해임이 분명하다.

또한,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이는 범죄를 전혀 예하지 못하는 상황보다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재범률을 고려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취업제한제도, 신상 등록 열람제도, 그리고 지난 9월에 시작한 전자발찌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 신상 등록 열람제도는 개정되기 이전의 청소년성보호법에 있던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을 많이 해결하였다. 새로운 제도는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과 이중처벌이나 과잉처벌이라는 비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있다. 등록대상자를 성범죄자 모두로 확대하고, 등록 기간을 연장하며, 열람대상자를 제한하는 반면, 열람 장소와 열람권자를 더 넓게 확대한 것 등이 그 예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아직까지 신상 등록 열람제도는 잠재적 피해자인 청소년들의 권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정작 청소년에게 열람권이 없고, 열람대상자를 정하는 기준도 모호하다는 점이 그 예이다. 또 이러한 신상공개제도만으로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보완제도들도 필요하다.

2000년 처음 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등록 및 열람제도는 끊임없이 논란의 한가운데 서있는 문제이다.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들은 성피해에 대한 두려움에서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점에 더 주목하고 있지만, 범죄자의 인권이 지나치게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권리의식은 나름대로 균형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상공개제도의 개선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보다 폭넓은 관심과 토론을 통해,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과 범죄자의 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는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고문헌>

◇ 논문

- 강지원, 「신상공개제도의 쟁점이 잘못되었다」, 『시민과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2004,
강태수,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금문현,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위헌 여부」, 『고시연구』, 고시연구사, 2004.12
김상겸, 「청소년성범죄자 신상공개 위헌성 여부」, 『고시계』, 국가고시학회, 2003.8
리경재, 「성범죄자 신상공개 법적 문제점 고찰」,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2002.2
심희기, 「신상공개 정당화근거와 적절한 공개대상과 공개기준의 탐색」, 『저스티스』, 한국
법학원, 2002.2
심희기,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선고2002헌가14결정」,
『법률신문』, 법률신문사, 2003.6.26
심희기,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현대판 주홍글씨인가」, 『법률신문』, 법률신문사, 2003.4.17

◇ 기타 자료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발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 2008.7.30
<제13차 청소년대상성범죄자 신상공개자료 분석보고서>,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12
Kelly Peterson, Daily Illini, 2007.3.14자
Fox news, 2007.11.8자
Kristi의 과학향기, 제469호, 2006.7.10자
Martin Bright, The Observer, Guardian.co.uk, 2002.11.17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2008.2.29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 2008.4
인터넷 법률 신문, 2008.9.1자
광남일보/아시아 경제, 2008.7.18자
국회 회의록, 제267회 정무소위 제1차, 2007.4.12
국회 회의록, 제267회 정무소위 제3차, 2007.4.19
헌법재판소, 2002헌가1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0조제2항제1호등위헌제정】, 2003.6.26

학생부
가 작



김 정 식
(서강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목 차

Contents

국가인권위원회

제1장 문제 제기	1
제2장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에 대한 인권적 접근	3
제1절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에 대한 찬반 논의	3
제2절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에 대한 기존의 논의	5
제3절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 관련 학생의 선택권	7
1. 학생의 선택권에 대한 기존 논의의 한계	7
2. 선택권 논의 확장의 필요성	8
3. 학생의 선택권과 교사의 수업권의 문제	9
제3장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 관련 인권침해 실태	10
제1절 연구방법	11
제2절 서울시의 송파·강동 지역의 고등학교의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 운영 빈도	11
제3절 각 학교별 실태	11
1. 서울 B 고등학교(남녀 공학)	39
2. 서울 C 고등학교(여자)	79
3. 인천·경기 H 고등학교(남녀공학)	101
4. 인천·경기 S 고등학교(여자)	140
제4절 통계에 대한 종합적 논의	180
제4장 학생의 선택권의 관점에서 본 학교 자율화 정책	190
제5장 맺는 말	211
<참고문헌>	220

요 약

이 연구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으로 인한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여기서 침해되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이 연구에서는 지난 2008년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학교 자율화 방안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먼저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에 대한 기존 논의의 검토를 통하여, 강제적인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으로 인하여 핵심적으로 침해되는 인권은 학생들이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학습에 있어서의 선택권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학생의 선택권에 대한 논의가 주로 학교의 정규 교과과정 내의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정규 교과과정 외의 영역인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에 있어서도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택권에 대한 논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먼저 송파·강동지역의 20곳의 학교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총 4곳의 인문계 고등학교를 따로 선정하여 각 학교별로 100명씩 총 400명을 대상으로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으로 인한 학생들의 인권 침해 실태를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0교시가 학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가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63.75%, 0교시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64.5%로 나타났다. 방과 후 보충학습에 있어서도, 방과 후 보충학습이 도움이 되는 정도가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31.75%, 방과 후 보충학습으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28.5%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상당수의 학생들이 자신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강제적으로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 자율화 방안은 교육감 및 학교장의 자율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의 운영을 교육감 및 교장의 권한에 맡김으로써, 학생의 자율을 보장하는 데에 다소 미흡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 학교와의 관계에서 과거에는 학생들의 지위가 수동적·순종적 지위에 있었지만, 오늘날 학생을 교육관계에 있어서 능동적인 교육주체로 보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학생의 선택권의 보장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을 중심으로-

김 정 식(서강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제1장 문제 제기

지난 2008년 4월 15일, 과학교육기술부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자치를 내실화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¹⁾ 이러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의 주요 골자는 1)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가 결정하도록 하고, 2) 초중등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며, 3) 정부부처는 이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율성을 저해하는 지침을 4월 중 즉시 폐지하고, 6월 중으로 관련 규제를 정비하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7월 이후부터는 학교 단위로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 중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가 결정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하여 학교 운영과 관련된 대부분의 지침을 폐지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학교 자율화 방안은 각 학교의 운영은 전적으로 그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과연 학교의 자율을 보장하는 것이 학생의 자율 및 인권을 포함한 학생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이다. 학교의 자율을 보장한다는 것과 학생의 권익 보장은 서로 별개의 문제이며 학교의 자율 강화가 학생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별히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소위 0교시²⁾와 방과 후 보충수업³⁾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8.4.15.

2) 이 연구에서 0교시 수업이라 함은 오전8시 이전에 학교 주도로 진행되는 보충학습 또는 추가적인 수업을 하도록 하는 모든 형태를 말한다.

3) 이 연구에서 방과 후 보충수업이라 함은 정규 수업시간 이후에 학교 주도로 진행되는 보충학습 또는

학교 자율화 방안에서 폐지 대상으로 지정된 29개의 조항 중에는 강제적·획일적 보충 수업금지 및 정규수업 전과 오후 7시 이후의 보충학습을 금지하는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즉 이러한 규제를 폐지하고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왔던 강제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수업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하면서 학교 자율화 정책에 대한 찬반양론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이전까지의 교육당국의 기본적인 방침이었던 ‘0교시 금지 및 보충수업의 자율운영’이 학교의 재량으로 인하여 강제로 운영될 것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⁴⁾

최근에는 학생들이 직접 이 사안에 대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⁵⁾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 제도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은 학생 권익의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정치·사회적 현상에 대한 수용자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 정부와 사회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교육현장은 이러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미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08년 7월17일 한겨레 신문 “0교시 폐지’ 서명·집회 추진 학생 학교 쪽 징계 나서 논란’이라는 기사⁶⁾에 따르면, 마산 용마고의 성상영군은 0교시 폐지와 강제 야간 자율학습 철폐 및 두발 제한 철폐를 주장하며 서명운동을 펼쳤고, 학교는 이에 대해 ‘학생들을 선동한 행위’라며 징계를 가하는 일이 있었다.⁷⁾

이와 같이 우리 교육정책은 학생을 위하는 교육을 목표로 하면서도, 그 운영에 있어서 학생들의 참여와 인권 보장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

추가적인 수업의 모든 형태를 말한다.

- 4) 실제로 이런 교육과학기술부의 계획이 발표된 이후 0교시 부활에 대한 우려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파이낸셜 뉴스, 2008년 4월 16일자.
- 5) 이런 학생들의 움직임 주로 2008년 5~6월 쇠고기 반대 시위와 같이 맞물려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학교 자율화 방안이 발표된 직후 이미 학생들이 0교시 반대 및 학교 자율화 정책 반대를 기치로 내걸고 촛불문화제를 열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된 기사로는 ‘우리가 공부하는 기계나.. 청소년 학교 자율화 반대행동’, 파이낸셜 뉴스 2008년 4월 18일자 보도.
- 6) 2008.07.20 검색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299449.html>
- 7) 이 외에도 촛불시위에 참가하는 학생을 학교 교사 또는 경찰이 찾아와서 심문하고 배후세력을 추궁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이뤄지곤 하였다. 이와 관련된 보도로는 ‘수업중 학생 촛불문화제 심문.. 공안 경찰 연상’, 파이낸셜 뉴스, 2008년 5월 16일자 보도.

하는 이번 학교 자율화 정책에 대해서도 과연 학생들의 자율과 인권의 보장이 과연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는 검토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특히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0교시와 방과 후 보충학습에 대해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 각 고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0교시 수업과 방과 후 보충학습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학생들의 의견 조사를 통하여 학생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 자율화 방안과 관련하여 문제와 앞으로의 과제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에 대한 인권적 접근

제1절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에 대한 찬반 논의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에 대해서는 꾸준한 찬반 논의가 있어 왔다.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 속에서 이미 많은 학교들이 오래 전부터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을 시행해왔던 상황에서, 입시 위주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0교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⁸⁾ 이러한 찬반논의는 지난 2008년 7월에 있었던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주요 쟁점이기도 하였다.⁹⁾

찬성 쪽의 입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 정규 교과과정 외의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정규 교과과정에서 미처 달성하지 못한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

8) 이러한 찬반 논의에 따라서 교육 당국도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에 대하여 개입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에 대해서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고, 정부와 교육 당국의 입장이 같은 시점에서 엇갈리는 경우도 많았다. 예컨대 2002년 3월18일,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늘어나는 사교육비에 대한 대책으로 공교육 내실화 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교과교육을 포함한 학교 보충수업을 사실상 전면 자율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은 같은 달 26일,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8시 이전에 등교를 강요하는 0교시 수업을 전면 폐지하고, 동아리 형태의 특기적성교육 외에는 모두 금지하도록 하였다. 대략 일주일 전 발표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과 상이한 당시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은 당시 교육 일선에 상당한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9) 예컨대 “서울시 교육대통령 누가 될까?” 노컷뉴스 2008년 7월 22일 보도.

조한다.¹⁰⁾ 그리고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은 정규 교과과정에서의 미진한 부분을 학생들에게 보충해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며, 또한 학생들이 사교육에 투자하게 될 시간과 비용을 학교에서 보내게 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공교육 정상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또한 교사들의 의욕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도 있다. 찬성 교사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은 비난받을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학입시 경쟁체제에서는 불가피한 대안이다. 언론에서는 학생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나 우수한 학생은 이에 찬성하고 있다. 보충수업 참가를 거부하던 한 학생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돌아온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충·자율학습에 대한 무조건 폐지주장은 교육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나 하는 소리다. (서울 C고 교사)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은 방과 후에 학생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맞벌이하는 가정들이 많아지면서 학부모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갖는 불안감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학생보호는 필요하다. 또한 학교가 정규 교과수업만을 담당할 경우, 학생들이 학원에 의존하게 되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보충수업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보충수업비나 자율학습비를 별도로 징수한다고 해도 학원보다는 저렴하지 않은가? 학교가 학부모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데 왜 정부는 막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공교육 정상화를 원한다면 오히려 보충수업을 확대해야 한다. (경기 S고 교사)

이에 반하여 반대 쪽 논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들이 강제로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 학습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수면시간이 부족해지고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될 수밖에 없게 되어 학생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반대 근거로 든다.¹¹⁾ 그리고 실질적으로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에 임하는 경우집중도가 매우 낮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리고 보다

10) 이러한 사실은 1995년 5월에 정부가 발표한 ‘5.31 교육개혁안’과 김대중 정부의 ‘특기적성교육활동’정책의 취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11) 본문에는 실지 못했으나 연구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을 실시하는 조사 대상 4학교에서 학교별로 33~44%의 학생이 아침식사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거나 아예 먹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수면시간이 4~5시간 미만이라고 한 학생이 학교별로 평균 45%에 이르렀고 5~6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학교 별로 평균 83.25%(4~5시간 미만 포함)에 이르렀다. 참고로 ‘소아청소년학회’에서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청소년시기의 적정 수면시간은 9시간이다.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학생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에 임하게 됨으로써 성공적인 대학 입시라는 목표를 위하여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반대 학생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학기 초에 보충수업 찬반 동의서를 나누어주는데 담임선생님이 절대로 반대하지 말고 꼭 찬성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를 적어온 아이들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찬성으로 바뀌어서 내라고 하고, 의무적으로 2과목씩 신청하라고 했어요. 무료도 아니면서 강제로 하면서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D고 학생)

아침 일찍 학교에 오지 않으면 선생님한테 맞아요. 근데 와서 한다는 일은 그냥 자는 거예요. 아침도 먹지 않고 와서 졸린데 책이 눈에 들어와요? 고3이라서 밤에 일찍 자지도 못하는데 아침에 와서 강제로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도 없이 있으면서 왜 이걸 하는지 싫어요. (서울 C고 학생)

자율학습은 말이 자율이지 완전히 강제학습이나 다름없어요. 예체능하는 애들을 빼고는 강제로 전부 다 해야 되거든요. 자율학습을 빠지려면 직접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고3인데 부모님이 허락해 주시겠어요? 자율 선택이라면 열심히 듣겠지만, 이건 강제적으로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경기 S고 학생)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은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분명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며 교육 당국과 교사,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하는 교육 주체들에게 이익을 주는 부분도 존재한다. 하지만 학생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이 강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학생 인권상의 문제점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학생의 어떠한 인권이 문제가 되며 그 실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제2절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에 대한 기존의 논의

학생 인권의 관점에서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는 하승수, 이수광

이 있다.

하승수는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이 반강제적으로 학생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타율적인 학습 강제는 아동학대라고 규정한다. 하승수는 이것이 학생들의 쉼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육체와 정신의 균형있는 발달을 저해하고 자율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주장한다.¹²⁾ 그리고 학생의 쉼 권리의 근거로서 유엔 아동협약 제31조¹³⁾를 제시하고 있다.

이수광은 보충수업(보충학습)에 대하여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 번째 문제점은 학생들의 ‘보충수업 참여의 강제성’이다. 이수광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보충수업에 참여할 것을 압력을 통해 종용하는 경우 이것은 ‘교육기회 접근에 대한 선택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¹⁴⁾ 그리고 두 번째로 보충수업이 일제식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 각자에게 적합한 수준의 수업내용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학생들의 ‘교육내용 요구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또한 보충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재의 부적합함으로 인하여 참여 학생의 ‘학습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¹⁵⁾ 그리고 세 번째로 보충수업이 소위 ‘교과진도 나가기 식으로 진행된다면 보충수업에 참가하지 않는 학생들이 입어야 하는 불이익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의미 있는 공부를 할 권리’를 제한당한다고 주장한다.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으로 인하여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는 양상을 살펴보면, 하승수가 접근하는 방향인 쉼 권리의 침해라는 것은 주된 대상이 되는 권리가 침해된 것이 아니라 단지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에 강제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부수적인 효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의 강제 참여로 인하여 가장 직접적이고 1차적으로 침해되는 부분은 바로 강제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부분이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에 있어서의 선택권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었다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러한 선택권의 배제를 ‘교육기회 접근에 대한 자기결정권(선택권)’의

12) 하승수, “나이스로 살펴본 학생 인권”, 교육비평 2003가을호, 133쪽.

13)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14) 이수광, “학생인권 신장방안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0. 2. 72쪽. 여기서 말하는 이수광의 ‘교육기회 접근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은 학생의 선택권을 보다 방과 후 보충학습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여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5) 이수광, 전제논문, 73쪽.

침해로 보고 접근한 이수광의 논의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뒤이어서 열거하고 있는 ‘교육내용 요구권’, ‘학습과정에서 조력 받을 권리’라는 것은 하승수가 주장하는 쉼 권리와 마찬가지로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이 강제로 운영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효과에 관한 것일 뿐이다.

이상의 논의를 살펴볼 때, 강제로 운영되는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으로 인해 침해되는 학생의 인권은 ‘쉼 권리’나 ‘교육내용 요구권’, ‘학습과정에서 조력 받을 권리’,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의미 있는 공부를 할 권리’ 등으로 보는 것은 문제의 핵심과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권리는 모두 이러한 선택권이 침해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에 대한 것일 뿐이며, 가장 핵심적이며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인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들이 강제로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학생이 자신의 학습에 있어서 전혀 자율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이며 이로써 학습에 있어서의 선택권이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강제로 운영되는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으로 인해 침해되는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인권은 바로 학생의 학습에 있어서의 선택권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으로 인한 학생인권 침해의 문제는 바로 학습에 있어서의 선택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제3절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 관련 학생의 선택권

1. 학생의 선택권에 대한 기존 논의의 한계

학생의 선택권에 관련된 논의는 비교적 최근의 논의이다. 이러한 논의는 교육에 있어서 학생을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을 받아들여야 하는 수동적인 지위로 보는 기존의 관점에서 능동적인 교육 주체로의 관점으로 전환하려는 문제의식¹⁶⁾ 속에서 비로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학생의 선택권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선택권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과 관련한 학생들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과 학교 교육 내에서의 교과목 선택권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논문은 강인수의 “학

16) 이러한 문제의식을 구체적이고 자세히 제기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신현직, “교육기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1990)을 들 수 있다.

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관계법 검토의 과제”¹⁷⁾, 안주열의 “어린이의 학습권과 그 보장에 관한 연구”¹⁸⁾가 있다. 먼저 이들의 논의를 살펴보고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과 관련하여 학생의 학습에 관한 선택권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강인수는 선택권의 내용으로 교과서 선택권과 교육과정 선택권을 들고 있다.¹⁹⁾ 이 중 학교 교육과정 선택권의 내용이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으나, 강인수는 교육과정 선택권의 논의를 예체능 과목과 제2외국어 과목 및 소수과목을 학교가 기피하는 경우 이를 학습하고자 원하는 학생들의 교육과정 선택권이 침해된다는 부분에서만 논하고 있다.

안주열은 학습권의 내용 중 선택권을 학교 선택권과 교육내용 선택권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다.²⁰⁾ 이 중 교육내용 선택권과 관련하여서는 교과목 선택권(교육내용 선택권), 거부권을 들고 있다. 교과목 선택권의 내용으로는 교과목을 선택할 자유, 과외활동 선택의 자유, 더 나아가서 장래 진로의 선택까지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거부권의 내용으로는 교육 과목이수 거부권, 행사참여 거부권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안주열의 선택권 논의는 미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전개되고 있는데 주로 종교와 관련된 교육 과목 선택권, 종교와 관련된 행사의 참여 거부권을 위주로 논의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교육 과정에 있어서 학생의 선택권에 관한 논의는 학교 선택권, 교과과정 내의 영역에서 학교와 교과목에 대한 선택권 위주로만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논의의 범위에는 앞에서 살펴본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 등 정규 교육과정 외의 영역에서의 학생의 학습에 있어서 선택권 보장에 대해서는 논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 선택권 논의 확장의 필요성

교육관계에 있어서 학생의 능동적인 권리주체성을 고려할 때, 학생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학교와의 관계가 문제되는 영역은 ‘정규 교과과정 내의 영역’과 ‘정규 교과과정 외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은 정규 교과과

17) 강인수,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관계법 검토의 과제”, 「교육법학연구」, 제6호, 1994,

18) 안주열, 「어린이의 학습권과 그 보장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19) 강인수, 전계논문, 130쪽.

20) 안주열, 전계논문, 82쪽 이하

정 외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²¹⁾ 학교에서의 활동 및 교육은 단순히 정규 교과 과정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정규 교과과정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 내에서 학생의 선택권 역시 이런 영역에 대해서도 논의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논의는 학교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논함에 있어서 그 범위가 정규 교과 과정에 관한 부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에 대한 논의도 미흡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와 관련된 영역에서의 학습권의 내용은 정규 교과과정 외의 부분으로 확산되어야 하며, 이에 따르는 선택권의 내용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3. 학생의 선택권과 교사의 수업권의 문제

학생의 학습에 있어서의 선택권은 자칫 교사의 수업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실제 교육 현장에서 0교시 및 보충수업을 받지 않으려는 학생의 자율과 이에 학생을 참가시키려는 교사의 교육방침이 충돌할 경우에 어떠한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과거에 학생을 피교육적 주체로서 수동적인 지위에서만 파악했던 시기에는 학생의 학습권을 교사의 수업권 하에 철저히 종속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학생의 자율과 능동적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정규교육과정에서도 학교 및 교사의 교육권(수업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²²⁾ 또한 헌법재판소 역시 ‘교육법 제157조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교사의 수업권은 학생의 수학권(학습권)을 침해할 수는 없으며, 국민의 수학권의 보장을 위하여 교사의 수업권은 일정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²³⁾하여 교사의 수업권보다 학생의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교사의 수업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논리를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과 관련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의 관계에 적용시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1) 이 영역에는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 외에도 동아리 활동, 특기적성교육 등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지만 학교와 관계있는 학생의 학습과 관련된 일체의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22) 황홍규, “교육기본법에서의 학습권 개념의 도입 배경과 그 의의”, 교육법학연구 제12호, 312~348쪽 (2000), 234쪽 이하.

23) 헌법재판소 1992.11.12. 선고 89헌마88 <교육법 제157조에 관한 헌법소원>

학교 교육자체의 본질적인 속성은 궁극적으로 학생에 대한 교사의 간섭과 조정이라는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학교와 관련된 교육에서는 정규 교과과정의 경우 교육의 의무성 및 중립성에 따라 국가 교육의 목적과 이념, 학교 및 교사의 수업권에 의해서 학생의 선택권이 일정 부분 제한될 필요성이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정규 교과과정 외의 영역은 필수적 정규 교과과정 외에 학생의 학습권 및 복지를 위해서 마련된 영역으로 상대적으로 의무성 및 중립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교사의 간섭이 매우 축소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선택권이 제한될 필요성이 비교적 적거나 거의 없는 영역이다. 그러므로 이 영역에 있어서 학생의 선택권은 교사의 수업권에 비하여 정규 교과과정에서보다 더욱 두텁게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에 있어서 선택권은 교사의 수업권에 대하여 정규 교과과정 ‘외의’ 부분에 있어서 정규 교과과정 ‘내의’ 영역보다도 더욱 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살펴볼 때, 학생의 학습에 있어서의 선택권은 기존에 논의에 따라 학교 교과과정 내에 해당하는 학교선택의 부분, 교과서 선택의 부분에도 인정될 수 있지만, 학교와 관련되면서 정규 교과과정 외에 해당하는 영역에서도 행사 가능해야하고 또한 이 부분에서 더욱 보장되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사의 수업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규 교과과정 외의 영역에서는 학생의 선택권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규 교과과정 외의 영역에 해당하는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에 관한 부분에서도 학생들의 선택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제3장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 관련 인권침해 실태

기존의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에 관한 연구는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하에서는 위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제로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이 얼마나 침해되고 있는지를 각 학교의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수업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연구방법

먼저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이 얼마나 많은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의 송파·강동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20곳²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여,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2008학년도 1학기 동안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을 실시하는 학교의 수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개별 학교의 자세한 운영실태와 학생들의 인식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 및 인천·경기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중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을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4개의 학교를 선발하여 그 학교의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실시하였다. 서울에서 2개교, 인천·경기지역에서 2개교를 선발하였으며, 각 학교 별로 표본은 100명씩을 추출하였다. 서울에서 선발한 고등학교는 남녀공학 1개교, 여고 1개교이며 인천·경기지역에서 선발한 고등학교 역시 남녀공학 1개교, 여고 1개교이다.

각 학교별로 표본을 추출한 방식은 성적을 기준으로 하여 최상위반과 최하위반, 그리고 중간 수준의 반으로 3반을 선발하여 각 반의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았으며, 3개 반 전원의 합이 100명을 넘을 경우, 각 반의 최상위 성적의 학생과 최하위 성적의 학생의 질문지를 제외하였다. 이는 성적으로 인한 변수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내용은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0교시가 자신들의 학업에 도움이 되는 여부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²⁵⁾, 그리고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검토하며, 또한 방과 후 보충학습이 자신들의 학업에 도움이 되는 여부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수합된 설문지는 코딩 작업을 거쳐 SPSS Window Version 12.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24) 더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서울시 내의 인문계 고등학교를 전수조사하는 것이 좋겠지만 연구자가 혼자서 전부 조사하기가 어려웠던 점과 각 학교의 실태에 대해 외부인이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때문에 지역을 강동·송파지역으로 한정하게 되었다.

25) 여기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으로 인하여 느끼는 피로도, 압박감, 불만 등을 의미한다. 이는 설문조사 시에도 학생들에게 사전에 설명하였다.

제2절 서울시의 송파·강동 지역의 고등학교의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 운영 빈도

(표-1) 고3 대상 0교시 시행 여부

시행	미시행	총합
18	2	20

조사된 학교 중에서 0교시를 시행하는 학교는 모두 강제적으로²⁶⁾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고3 대상 방과 후 보충학습 시행 여부

시행		미시행	총합
강제	자율	2	20
10	8		

방과 후 보충학습을 시행하는 학교 중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는 10곳이었고,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는 8곳이었다. 추가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행하고 있는 학교들은 모두 이번 학교 자율화 방안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계속해서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율로 시행하는 학교 중 5곳은 이전에는 강제로 보충학습을 시킨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송파·강동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지만, 이를 서울지역으로 확대하여 생각해보다라도 고등학교 3학년에게 대하여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 실시를 하는 학교는 상당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특히 20개의 고등학교 중 18개의 고등학교가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0교시를 실시하고 있는데, 모두 강제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0교시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전혀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26) 강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학교에서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에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가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벌칙이 주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있다. 방과 후 보충학습에 있어서는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곳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곳으로 나누어지는데,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곳에서는 학생들의 선택권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통계와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제3절 각 학교별 실태

1. 서울 B 고등학교(남녀 공학)

이 고등학교는 지난 1학기 동안 오전 7시30분까지 등교하는 0교시를 의무로 진행하였으며, 0교시에는 담임교사의 지도로 자율학습을 하거나, 때에 따라 무료로 일시적으로 특정 과목에 대한 보충 수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방과 후 보충학습도 의무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원이나 과외 등을 가는 경우 보충학습에 나오지 않을 수 있었다. 방과 후 보충학습에 있어서는 비교적 예외의 폭이 넓다. 방과 후 보충학습은 자율학습으로 운영되었고, 저녁 8~9시까지 진행되었다.

가. 0교시에 관한 통계

(표-3) 0교시가 자신의 학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변수	데이터 값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아주 낮다	1	14	14.0	14.0
낮다	2	46	46.0	60.0
보통이다	3	25	25.0	85.0
높다	4	14	14.0	99.0
아주 높다	5	1	1.0	100.0
	합계	100	100.0	

B고의 경우 0교시가 자신의 학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낮다’고 응답한 학생과 ‘아주 낮다’고 응답한 학생 수의 합)이 전체 조사대상 학생 100명 중 60명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의 학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학생(‘높다’고 응답한 학생과 ‘아주 높다’고 응답한 학생 수의 합)이 15명에 이른다. 즉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4배에 이르는 수가 자신의 학업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강제로 0교시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4) 0교시로 인한 스트레스²⁷⁾ 정도

변수	데이터 값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아주 낮다	1	7	7.0	7.0
낮다	2	8	8.0	15.0
보통이다	3	30	30.0	45.0
높다	4	40	40.0	85.0
아주 높다	5	15	15.0	100.0
	합계	100	100.0	

B교의 경우 0교시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에 대해 조사대상 100명 중 15명의 학생은 낮다고 응답한 반면에, 55명의 학생은 스트레스를 높게 받는 편이라고 응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과반수에 이르는 학생이 강제적인 0교시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5) 0교시가 학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와 스트레스 사이의 상관관계²⁸⁾

		도움 정도	스트레스
도움 정도	Pearson 상관계수	1	.690(**)
	N100(개체수)	100	100

** 상관계수는 0.01 수준(한쪽)에서 유의합니다.

27) 여기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으로 인하여 느끼는 피로도, 압박감, 부담 등을 의미한다. 이는 설문조사 시에도 학생들에게 설명되었다.

28) 상관계수는 순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0~1사이의 값을 갖게 되며 역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1~0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0.0~0.3 사이의 수치로 나온 경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0.3~0.4 사이의 수치로 나온 경우 보통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0.5 이상의 수치가 나온 경우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상관계수가 0.690이 나온 것으로 보아, 0교시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0교시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가 높은 편이고, 0교시가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0교시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수의 학생들이 0교시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수의 학생들이 0교시로 인한 학습효과가 적다고 느끼면서 동시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방과 후 보충학습에 관한 통계

(표-6) 방과 후 보충학습이 자신의 학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변수	데이터 값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아주 낮다	1	5	5.0	5.0
낮다	2	31	31.0	36.0
보통이다	3	39	39.0	75.0
높다	4	22	22.0	97.0
아주 높다	5	3	3.0	100.0
	합계	100	100.0	

이 통계를 살펴보면 방과 후 보충학습이 자신의 학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총 36명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고, 25명이 자신의 학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방과 후 보충학습이 0교시보다는 학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비교적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신의 학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강제로 보충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 조사대상 학생의 수가 학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총 25%의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나있다.

(표-7) 방과 후 보충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변수	데이터 값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아주 낮다	1	5	5.0	5.0
낮다	2	19	19.0	24.0
보통이다	3	42	42.0	66.0
높다	4	28	28.0	94.0
아주 높다	5	6	6.0	100.0
	합계	100	100.0	

방과 후 보충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스트레스가 높다고 판단한 학생이 총 34명으로 높지 않은 편으로 대답한 24명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표-8) 방과 후 보충학습이 학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와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도움 정도	스트레스
도움 정도	Pearson 상관계수	1	.747(**)
	N100(개체수)	100	100

** 상관계수는 0.01 수준(한쪽)에서 유의합니다.

상관계수가 0.747로 나온 것은 대단히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보충학습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이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이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소결

종합적으로 살펴보자면 서울 B 고등학교는 학생의 60%가 0교시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강제로 0교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방과 후 보충학습에 대해서도 역시 상당수가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강제로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서울 C 고등학교(여자)

이 고등학교는 지난 1학기 동안 오전 7시30분까지 등교하는 0교시를 의무로 진행하였으며, 학기 초에는 0교시에 자율학습을 했지만 4월부터는 유료로 특정 과목에 대한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방과 후 보충학습은 예체능계열이라는 등의 특별한 예외가 없는 이상 고등학교 3학년 전원이 의무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저녁 7시까지의 가족행사나 질병 등의 이유가 아닌 한 무조건 남아 있어야 하고, 과외나 학원 등의 경우에는 저녁 7시가 지난 이후에만 나갈 수 있었다. 방과 후 보충학습은 저녁 10시 넘어서까지 진행되었다. 방과 후 보충학습은 특정 과목에 대한 유료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으로 운영되었다.

가. 0교시 관련 통계

(표-9) 0교시가 자신의 학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변수	데이터 값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아주 낮다	1	12	12.0	12.0
낮다	2	39	39.0	51.0
보통이다	3	34	34.0	85.0
높다	4	13	13.0	98.0
아주 높다	5	2	2.0	100.0
	합계	100	100.0	

C고의 경우 0교시에 대하여 도움이 되는 정도가 낮은 편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총 51명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조사대상의 과반수가 0교시를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도 참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도움이 되는 정도가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5명이었다.

(표-10) 0교시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변수	데이터 값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아주 낮다	1	4	4.0	4.0
낮다	2	13	13.0	17.0
보통이다	3	24	24.0	41.0
높다	4	40	40.0	81.0
아주 높다	5	19	19.0	100.0
	합계	100	100.0	

C고의 경우 0교시로 인하여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59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반해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낮다고 응답한 학생은 17명이다. 즉 조사대상 학생의 거의 60%에 달하는 학생들이 0교시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11) 0교시가 학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와 스트레스 사이의 상관관계

		도움 정도	스트레스
도움 정도	Pearson 상관계수	1	.524(**)
	N100(개체수)	100	100

** 상관계수는 0.01 수준(한쪽)에서 유의합니다.

상관계수가 0.524이 나온 것으로 보아, 0교시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0교시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가 높은 편이고, 0교시가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0교시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방과 후 보충학습에 관한 통계

(표-12) 방과 후 보충학습이 자신의 학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변수	데이터 값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아주 낮다	1	2	2.0	2.0
낮다	2	29	29.0	31.0
보통이다	3	33	33.0	64.0
높다	4	27	27.0	91.0
아주 높다	5	9	9.0	100.0
	합계	100	100.0	

방과 후 보충학습이 도움이 되는 정도가 높다고 응답한 학생이 36명으로 도움이 되는 정도가 낮다고 응답한 학생 31명보다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31명에 이르는 상당수의 학생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강제로 보충학습에 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13) 방과 후 보충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변수	데이터 값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아주 낮다	1	17	17.0	17.0
낮다	2	15	15.0	32.0
보통이다	3	38	38.0	70.0
높다	4	30	30.0	100.0
아주 높다	5	0	0	100.0
	합계	100	100.0	100.0

방과 후 보충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역시 학업이 되는 정도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스트레스가 낮다고 응답한 학생이 32명으로 높다고 응답한 학생 30명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14) 방과 후 보충학습이 학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와 스트레스 간 상관관계

		도움 정도	스트레스
도움 정도	Pearson 상관계수	1	.556(**)
	N100(개체수)	100	100

** 상관계수는 0.01 수준(한쪽)에서 유의합니다.

상관계수가 0.556이 나온 것으로 보아, 0교시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0교시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가 높은 편이고, 0교시가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0교시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소결

종합적으로 살펴보자면 서울 C 고등학교는 학생의 반 이상이 0교시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강제로 0교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0교시보다는 그 정도가 낮지만 방과 후 보충학습에 대해서도 상당수가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강제로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인천·경기 H 고등학교(남녀공학)

이 고등학교는 지난 1학기 동안 오전 7시30분까지 등교하는 0교시를 의무로 진행하였으며, 학기 초부터 전원 의무로 유료로 특정 과목에 대한 보충수업을 실시해 왔다. 방과 후 보충학습은 예체능계열이라는 등의 특별한 예외가 없는 이상 고등학교 3학년 전원이 의무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저녁 8시까지의 가족 행사나 질병 등의 이유가 아닌 한 무조건 남아 있어야 하고, 과외나 학원 등의 경우에는 저녁 8시가 지난 이후에 나갈 수 있었다. 방과 후 보충학습은 저녁 11시까지 진행되었다. 방과 후 보충학습은 특정 과목에 대한 유료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으로 운영되었다.

가. 0교시에 관한 통계

(표-15) 0교시가 자신의 학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변수	데이터 값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아주 낮다	1	41	41.0	41.0
낮다	2	45	45.0	86.0
보통이다	3	14	14.0	100.0
높다	4	0	0.0	100.0
아주 높다	5	0	0.0	100.0
	합계	100	100.0	

H고의 경우 학생들의 응답이 0교시가 학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주 극단적으로 낮은 쪽에 쏠려 있다. 이 학교 조사대상 학생 100명 중 86명이나 되는 학생이 자신의 학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0교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다. 이는 0교시의 효용성에 대해 상당한 의문점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표-16) 0교시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변수	데이터 값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아주 낮다	1	1	1.0	1.0
낮다	2	0	0.0	1.0
보통이다	3	15	15.0	16.0
높다	4	48	48.0	64.0
아주 높다	5	36	36.0	100.0
	합계	100	100.0	100.0

H고의 경우 학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가 낮다고 응답한 이전 질문과 같이 스트레스에 대한 응답도 극단적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쪽에 몰려 있다. 아주 낮다고 응답한 학생은 단 한 명에 불과하고 높다고 응답한 학생이 84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다른 학교에 비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15명에 불과한 것을 볼 때, 이 학교 학생들이 0교시로

인하여 느끼는 스트레스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17) 0교시가 학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와 스트레스 사이의 상관관계

		도움 정도	스트레스
도움 정도	Pearson 상관계수	1	.502(**)
	N100(개체수)	100	100

** 상관계수는 0.01 수준(한쪽)에서 유의합니다.

상관계수는 0.502를 보이고 있다. 이는 둘 사이에 약간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각 데이터가 다소 극단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스트레스가 높다는 쪽으로 쏠려 있음에도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것은 도움 정도가 낮다고 응답한 학생이 스트레스는 아주 높다고 응답하고, 도움 정도가 아주 낮다고 응답한 학생이 스트레스는 높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은 것이 반영되어 약간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낮다’와 ‘아주 낮다’를 하나의 데이터로 ‘낮다’로 정리하고 ‘높다’와 ‘아주 높다’를 묶어 하나의 데이터로 정리하여 5단위 응답을 3단위로 변형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18) 인천·경기H고 상관관계3단위로 변형

		도움 정도	스트레스
도움 정도	Pearson 상관계수	1	.928(**)
	N100(개체수)	100	100

5단위를 3단위로 정리하여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는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0.928에 이르고 있다. 즉 학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가 낮다고 응답한 학생은 그 스트레스 역시 높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방과 후 보충학습에 관한 통계

(표-19) 방과 후 보충학습이 자신의 학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변수	데이터 값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아주 낮다	1	0	0.0	0.0
낮다	2	31	31.0	31.0
보통이다	3	43	43.0	74.0
높다	4	18	18.0	92.0
아주 높다	5	8	8.0	100.0
	합계	100	100.0	

0교시와는 다르게 방과 후 보충학습이 높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학생이 26명으로 상당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도움이 되는 정도가 낮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31명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학생이 더 많으며, 이러한 학생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강제로 방과 후 보충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20) 방과 후 보충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변수	데이터 값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아주 낮다	1	0	0.0	0.0
낮다	2	24	24.0	24.0
보통이다	3	46	46.0	70.0
높다	4	28	28.0	98.0
아주 높다	5	2	2.0	100.0
	합계	100	100.0	

스트레스에 관한 응답도 학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와 유사한 수치를 보여준다. 방과 후 보충학습으로 인하여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30명으로 상당한 수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21) 방과 후 보충학습이 학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와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도움 정도	스트레스
도움 정도	Pearson 상관계수	1	.621(**)
	N100(개체수)	100	100

** 상관계수는 0.01 수준(한쪽)에서 유의합니다.

상관계수가 0.621이 나온 것으로 보아, 0교시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0교시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가 높은 편이고, 0교시가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0교시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소결

종합적으로 살펴보자면 인천·경기 H 고등학교는 학생의 대부분이 0교시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강제로 0교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0교시보다는 그 정도가 낮지만 방과 후 보충학습에 대해서도 상당수가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강제로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인천·경기 S 고등학교(여자)

이 고등학교는 지난 1학기 동안 4월부터 오전 7시30분까지 등교하는 0교시를 의무로 진행하였으며, 자율학습으로 운영되었다. 방과 후 보충학습은 예체능계열이라는 등의 특별한 예외가 없는 이상 고등학교 3학년 전원이 의무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저녁 9시까지 남아서 있어야 하고, 과외나 학원 등의 경우에는 비교적 예외가 잘 인정되는 편이다. 학기 중간에 방과 후 보충학습에는 특정 과목에 대한 보충학습이 한시적으로 유료로 실시되었다.

가. 0교시에 관한 통계

(표-22) 0교시가 자신의 학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변수	데이터 값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아주 낮다	1	15	15.0	15.0
낮다	2	43	43.0	58.0
보통이다	3	39	39.0	97.0
높다	4	2	2.0	99.0
아주 높다	5	1	1.0	100.0
	합계	100	100.0	

S고의 경우 0교시가 도움이 되는 정도가 낮다고 응답한 학생이 상당수에 이르고, 높다고 응답한 학생은 매우 적은 편이다. 응답자의 58명에 이르는 학생이 학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강제로 0교시에 나오고 있으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3명에 불과하다.

(표-23) 0교시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변수	데이터 값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아주 낮다	1	2	2.0	2.0
낮다	2	8	8.0	10.0
보통이다	3	30	30.0	40.0
높다	4	46	46.0	86.0
아주 높다	5	14	14.0	100.0
	합계	100	100.0	

S고의 경우 0교시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응답도 학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와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조사대상 100명 중 총 60명의 학생이 0교시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다고 응답하였고, 이에 반해 낮은 편으로 대답한 학생은 총 10명에 그쳤다.

(표-24) 0교시가 학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와 스트레스 사이의 상관관계

		도움 정도	스트레스
도움 정도	Pearson 상관계수	1	.576(**)
	N100(개체수)	100	100

** 상관계수는 0.01 수준(한쪽)에서 유의합니다.

상관계수는 0.576를 보이고 있다. 이는 둘 사이에 약간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과반수의 학생이 자신의 0교시 수업에 관하여 높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동시에 학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방과 후 보충학습에 관한 통계

(표-25) 방과 후 보충학습이 자신의 학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변수	데이터 값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아주 낮다	1	2	2.0	2.0
낮다	2	27	27.0	29.0
보통이다	3	27	27.0	56.0
높다	4	32	32.0	88.0
아주 높다	5	12	12.0	100.0
	합계	100	100.0	

방과 후 보충학습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는 정도가 높다고 응답한 학생 수가 총 44명으로 도움이 되는 편이 낮다고 응답한 29명의 학생들보다 비교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역시 상당수에 이르는 학생은 학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가 낮다고 판단하면서도 보충학습에 참가하고 있다.

(표-26) 방과 후 보충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변수	데이터 값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아주 낮다	1	13	13.0	13.0
낮다	2	30	30.0	43.0
보통이다	3	37	37.0	80.0
높다	4	19	19.0	99.0
아주 높다	5	1	1.0	100.0
	합계	100	100.0	

방과 후 보충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낮다고 응답한 학생에 비해 비교적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총 20명의 학생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강제로 방과 후 보충학습에 임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27) 방과 후 보충학습이 학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와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도움 정도	스트레스
도움 정도	Pearson 상관계수	1	.867(**)
	N100(개체수)	100	100

** 상관계수는 0.01 수준(한쪽)에서 유의합니다.

상관계수가 0.867이 나온 것으로 보아, 두 변수 사이에는 아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즉 방과 후 보충학습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그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가 높은 편이고, 방과 후 보충학습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그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소결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인천·경기 S 고등학교는 학생의 대부분이 0교시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강제로 0교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아주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0교시보다는 그 정도가 낮지만 방과 후 보충학습에 대

해서도 상당수가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강제로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제4절 통계에 대한 종합적 논의

4개 학교별 통계를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8) 0교시가 자신의 학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학교종합통계

학교 \ 항목	아주 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아주 높다	합계
서울B고	14	46	25	14	1	100(명)
서울C고	12	39	34	13	2	100(명)
인천·경기H고	41	45	14	0	0	100(명)
인천·경기S고	15	43	39	2	1	100(명)
합계	82	173	112	29	4	400(명)

(표-29) 0교시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학교종합통계

학교 \ 항목	아주 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아주 높다	합계
서울B고	7	8	30	40	15	100(명)
서울C고	4	13	24	40	19	100(명)
인천·경기H고	1	0	15	48	36	100(명)
인천·경기S고	2	8	30	46	14	100(명)
합계	14	29	99	174	84	400(명)

(표-30) 방과 후 보충학습이 자신의 학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학교종합통계

학교 \ 항목	아주 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아주 높다	합계
서울B고	5	31	39	22	3	100(명)
서울C고	2	29	33	27	9	100(명)
인천·경기H고	0	31	43	18	8	100(명)
인천·경기S고	2	27	27	32	12	100(명)
합계	9	118	142	99	32	400(명)

(표-31) 방과 후 보충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정도-학교종합통계

학교 \ 항목	아주 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아주 높다	합계
서울B고	5	19	42	28	6	100(명)
서울C고	17	15	38	30	0	100(명)
인천·경기H고	0	24	46	28	2	100(명)
인천·경기S고	13	30	37	19	1	100(명)
합계	35	88	163	105	9	400(명)

4개 학교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강제로 운영되는 0교시가 도움이 되는 정도가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400명 중 255명, 63.75%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고, 0교시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400명 중 258명으로 64.5%에 이른다. 앞에서 본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0교시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이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의 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방과 후 보충학습에 있어서도, 방과 후 보충학습이 도움이 되는 정도가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400명 중 127명으로 31.75%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고, 방과 후 보충학습으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학생도 전체 400명 중 114명으로 28.5%에 이른다. 0교시 관련 통계보다는 그 크기가 작지만, 상당한 숫자가 강제적인 방과 후 보충학습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이 사교육비 지출을 막고,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교육제도가 필요한 학생들, 그리고 이로 인해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도 역시 앞에서 살펴본 통계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선택의 여지없이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 또한 상당수에 이른다. 설사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는 학생들이 소수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권리 보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인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물며 이와 같이 많은 수에 이르는 학생들이 강제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수업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강제로 운영되는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이 심각한 정도로 학생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위 통계 결과를 종합해볼 때,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의 강제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학생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정도는 매우 심각하며 이러한 점이 개선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제4장 학생의 선택권의 관점에서 본 학교 자율화 정책

지금까지의 논의 및 조사에 따라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으로 인하여 학생의 선택권이 침해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여기서는 현재 시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학교 자율화 정책에 어떠한 보완점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 자율화 정책은 학교단위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 자율성을 저해하는 지침을 즉시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강제적·확실적 보충수업금지, 정규수업 전과 오후 7시 이후의 보충학습 금지 등의 지침’을 폐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방과후학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요 안내사항 규정’을 폐지하고 있다. 이는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감 및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을 강제로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을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반대로 학교장이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학교 운영을 전개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학생의 권리 침해·보장 여부를 학교장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학생의 권리 보장의 측면에서 부적합한 방법이라고 본다.

학교 자율화 방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0교시와 방과 후 보충학습에 대한 규제가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통계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제 각 학교의 교육현장에서는 강제로 0교시와 방과 후 보충학습이 진행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규제를 아예 없애는 것은 강제로 운영되는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의 확산을 가속화시킬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국가와 학교, 교사의 교육권은 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식으로 전개되어왔고 학생의 권리는 이러한 제한의 대상이었다. 아직도 교육 현실상 이러한 인식이 극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학생의 자율과 상충될 수 있는 학교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교육정책은 자칫 잘못하면 학생을 억압하는 교육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며 학생의 선택권 침해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규 교육 과정을 충족하는 부분 ‘이외의’ 교육 영역에서는 교육감 및 학교장의 자율이 아니라 학생의 자율, 즉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침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거나 학교장의 자율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에 부수적으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겠지만,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부분에까지 이러한 방식을 적용시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즉 정규 교육과정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에 대해서는 그 참가 여부에 있어서만큼은 전적으로 학생의 선택과 자율을 존중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또한 이는 형식적으로 보장되는 자율이어서는 안 된다. 실제 이전까지 교육청에서 강제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였음에도 상당수의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강제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교육현장에서 공식적으로는 자율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제로는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에 비협조적인 학생에 대해서 체벌 등의 벌칙이 가해지는 것을 감안할 때, 형식적인 규정은 물론이며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도 학생의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제5장 맺는 말

우리 사회의 학교 교육은 국가와 학교의 권위주의적인 풍토 속에서 학생은 국가와 학교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수동적 지위에 있었다. 게다가 각 학교에서 이뤄지는 입시 성과 위주의 교육제도 운영이 이와 같은 교육풍토와 결합하여, 학생은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아들이는 데에만 집중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강제로 운영되는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의 실태가 바로 이런 복합적 환경에서 비롯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학생을 능동적인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이 이론적으로, 그리고 법 해석의 관점에서 확산되어 가는 중이다. 따라서 우리 교육 현실도 이와 같이 달라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강제로 운영되어 왔던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 역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학교 자율화 방안은 학교의 자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목적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학생의 선택권을 침해할 여지를 남겨둔 채, 학교의 권한만을 강화시켜주었다는 점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므로 학생의 선택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러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특별히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과 같은 정규 교과과정 외의 영역에 있어서는 학생의 선택권이 더욱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강제로 운영되는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은 입시 위주의 교육열을 등에 업고 오랫동안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해 왔지만, 우리 교육현장은 좋은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 속에 그 폐해를 감수할 것을 학생들에게 강요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학생을 단순히 교육을 받는 대상으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권리주체로서 바라보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0교시 및 방과 후 보충학습의 문제도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학생들이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의 보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우리 교육계가 이와 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학생의 인권에 대하여 그 보장의 필요성을 받아들여서 이와 같은 인권침해의 현실을 극복해나가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강인수,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관계법 검토의 과제”, 교육법학연구, 제6호, 117~140쪽, 1994.
- 권형준, “어린이의 학습권”, 고시계, 95년 9월호. 32~40쪽. 1995.9.
- 김명길·배영길, “학습권 보호를 위한 사회교육의 재평가”, 법학연구, 35권 제1호, 199~223쪽, 부산대학교 법과대학법학연구소, 1994. 12.
- 김은숙, “교칙의 인권침해 관련 규정에 대한 고등학교 학생, 교사 및 학부모의 인식 실태 비교”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6.
- 김정래·고전, “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1999. 12.
- 김준수, “학교생활규정을 통해 본 학생인권 실태분석”, 여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2.
- 라미녀, “학교생활규정에 나타난 학생인권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2.
- 박인희, “현대교육법원리로서의 교육의 자유·영·일의 법원리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박창언, “교육권 논의를 위한 기초 연구”, 교육법학연구, 제7호, 275~197쪽, 1995. 12.
- 신현직, “교육기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0.
- _____, “교육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고시계 95년9월호, 15~31쪽, 1995. 9.
- 안주열, “어린이의 학습권에 관한 고찰”, 전북법학논집 제1집, 279~294쪽, 2000. 2.
- _____, “어린이의 학습권과 그 보장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_____, “어린이 학습권에 관한 법적 고찰”, 교육법학연구 제15권 2호, 145~174쪽, 2003. 12.
- 우창숙, “교사의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2.
- 이상영, “교육권, 학습권, 평생학습권, 그리고 법학”, 헌법학연구 제13권 4호, 201~227쪽, 2007. 12.
- 이수광, “학생인권 신장방안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0. 2.
- 정현승,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의 관계”, 교육법학연구 제15권 2호, 223~252쪽, 2003. 12.
- _____, “학교생활에서의 인권 침해와 보호”, 교육법학연구 제16권 2호, 233~256쪽, 2004. 12.
- 조금주, “2006년도 중·고등학생 인권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청소년학연구 제14권 제3호, 189~216쪽, 2007. 9.
- 조현민, “고등학생과 교사가 인식한 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학위 논문, 2003. 8.
- 최규원, “학생인권실태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8.
- 표시열, “학교의 민주화와 학생·학부모의 교육권”, 교육법학연구제8호, 171~194쪽, 1996. 12.
- _____,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의 보호제도” 한국행정학회 1996년도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II), 157~173쪽, 1996. 12.
- 하승수, “나이스로 살펴본 학생 인권”, 교육비평 2003가을호, 124~141쪽, 2003.
- 하윤수, “현행 교육법상 교육주체 개념을 둘러싼 교육권의 재검토”, 교육법학연구 제12호, 230~253쪽, 2000. 12.
- 황홍규, “교육기본법에서의 학습권 개념의 도입 배경과 그 의의”, 교육법학연구 제12호, 312~348쪽, 2000. 12.

학생부
가 작



일반아동과 다문화 가정
아동과의 관계 개선 방안

최아라·한빛나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목 차

Contents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2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2
제2장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차별인식에 관한 선행연구	51
제1절 다문화가정의 개념	52
1. 국제결혼 가정 및 그 자녀	62
2. 외국인 근로자 가정 및 그 자녀	62
제2절 다문화가정 아동의 현황과 문제점	71
1. 다문화가정 아동의 현황	72
2.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92
제3절 일반아동의 차별에 의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인권침해 사례	31
1. 겉모습, 외모에서 나타나는 차별	33
2. 부모님이 외국인이어서 나타나는 차별	41
3. 문화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차별	53
4.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편견 및 차별	61
제3장 다문화가정 아동의 SWOT 분석	71
제1절 다문화가정 아동의 SWOT 분석	71
1. 강점 (Strength)	8
2. 약점 (Weakness)	8
3. 기회 (Opportunity)	9
4. 위기 (Threat)	9
제2절 전략의 개발 논리	22
1. 영역별 전략	2

목 차

Contents

제4장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과의 인식 차이 분석	4
제1절 조사목적	4
제2절 조사 대상	4
제3절 조사방법	5
제4절 일반 아동의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상호간 인식 차이 분석	52
제5장 대응 방안	8
제1절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35
제2절 현재 프로그램의 상황 및 문제점	35
제3절 프로그램 실시로 실시 전과 실시 후의 인식 변화 사례	50
제4절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75
1.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방향	75
2. 프로그램 개발	8
제6장 결론	23
<참고문헌>	28

요 약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결혼과 이주노동자 등의 증가로 인해 외국인 인구가 총인구의 1%를 넘어서면서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08. 5. 1. 현재 외국인주민은 891,341명으로 주민등록인구(49,355,153명)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외국인주민 891,341명 중 외국인근로자는 49%인 437,727명, 결혼이민자가 16.2%인 144,385명, 국제결혼 가정자녀는 6.5%인 58,007명이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단일민족·단일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 받는 등 이들의 인권보호와 한국문화와의 융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 중에도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는 주로 편견과 차별에 의한 것이 많았다. 특히 아동들의 경우 겉모습, 외모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함께 부모님이 외국인이어서 '놀림'에서 '따돌림'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로 인해 학교 부적응 문제가 생기게 되어 또래 친구들을 사귀는 데 수동적이며,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또한 문화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차별도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은 불이익을 받으며 이중고를 겪게 된다. 따라서 이제 국가와 사회, 학교, 가정 모두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때 이다.

이에 학계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인식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그들이 학교에서 겪었던 편견이나 차별에 대한 연구도 차츰 시작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아동과 함께 똑같은 구성원으로 어울릴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 그들을 더 부각시키고, 특별한 존재로 인식시키는 방안들이 대다수여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차별에 대한 선행 연구 및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해 사회적 소수인 다문화가정 아동이 처해있는 문제점과 인권상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비교·분석하여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의 상호 작용에서 나타난 서로의 편견을 재고하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반(反)편견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다문화가정 아동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상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전체 프로그램은 모두 9회기로 구성하였으며, 설문결과 체육활동·여행·문화체험·요리실습이 가장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결과를 참고하여 프로그램의 방향을 결정하였으며, 회기에 따라 구성요소를 수행하면서 일반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이 서로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서로가 다름을 이해하고 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하고자 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친구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아동의 사회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나아가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편견을 재고하고 그들의 관계를 개선하며,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인식을 변화시켜 인권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아닌 주류집단인 일반아동의 인식을 파악하여 소수집단인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편견을 찾으려했다는 점과, 이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없애고, 상호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고자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새로운 시각에서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현존하는 프로그램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띄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도약하였다는 데에 본연구의 의의가 있다.

일반아동과 다문화 가정 아동과의 관계 개선 방안

최아라·한빛나(성결대학교 행정학과)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화·지구촌화의 가속화에 따른 국제결혼과 이주노동자 등의 증가로 인해 외국인 인구가 총인구의 1%를 넘어서면서 전통적 단일민족사회가 아닌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2008년 5월 현재 외국인주민은 891,341명으로 총인구(49,355,153명)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 722,686명보다 168,655명이(23.3%) 증가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이번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주민 891,341명 중 외국인 근로자는 49%인 437,727명, 결혼이민자가 16.2%인 144,385명,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6.5%인 58,007명이며, 외국인주민 중 국적취득자는 7.4%인 65,5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취득자 65,511명 중 내국인 남성 또는 여성과의 결혼으로 국적을 취득한 혼인귀화자가 63.6%인 41,672명(여성이 92.8%)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¹⁾.

이처럼 외국인주민이 급증함에 따라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몇 년 전부터 사회적 소수인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한국 사회의 적응을 돕기 위한 정부 및 시민단체의 지원책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

1) 행정안전부, 2008. 외국인주민은 90일 초과 장기체류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및 그 자녀를 말하며, 결혼이민자(144,385명)는 국제결혼이주자(102,713명) 및 혼인귀화자(65,511명)를 말한다. 또한 국적취득자는 2007년에 비해 21.2% 증가한 수치이며, 귀화·출생·인자·혼인 등을 통해 국적을 취득한다.

원칙은 대부분 어른들에 집중되어 있는데, 초기에는 이주노동자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최근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이주해온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²⁾.

현황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온 외국인들의 대부분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에서 자녀를 낳고 평생 한국인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이들은 언어와 문화의 이질감, 경제력, 자녀의 교육문제, 부부갈등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단일민족단일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사회의 문화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 받는 등 이들의 인권보호와 한국문화와의 융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 및 시민단체에서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끝내고 지원을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로 한글 교육, 육아도우미, 한국어 실습 등 한국 내 빠른 정착을 위한 사회통합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자녀에 대한 지원도 시급하다.

현재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58,007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6.5%이며, 2007년 44,258명보다 13,749명(31%)이 증가하였다. 이들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6세 이하가 57.1%, 12세 이하가 32.2%를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부모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학교 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왕따·소외를 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 부적응, 성적부진, 심지어 정서적인 장애를 겪는 등 이들의 인권보호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표출 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며, 이들의 지역별·부모 출신국별 재학현황 등 이제야 기초적인 현황과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지금세대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책이 중요하다. 하지만 일반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이 함께 이끌어 나가야하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우리 사회의 인종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 이 땅의 주류로 성장할 수 있는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미국이나 프랑스 등 이미 선진국에서 경험한 것처럼 향후 인종갈등으로 인한 많은 사회적 비용과 사회통합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2) 여성결혼이민자는 여성이 88%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적을 취득한 혼인귀화자 또한 여성이 92.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 대부분이 여성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특별한 존재로 부각시킨다면 일반 아동들이 다문화가정 아동을 특별하게 인식하게 되어 서로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해 오히려 다문화가정 아동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세계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제2조과 평등권(차별금지)과 제2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일반아동이 다문화가정 아동을 사회적 약자가 아닌 나와 똑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교육이 필요하다³⁾. 이러한 교육은 세계화 시대에 더욱더 중시될 것이며, 타인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인식하여 나와와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인권교육의 일환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본 연구에서 일반아동이 다문화가정 아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인식차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을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같은 특별한 존재가 아닌 우리나라의 당연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도록 도와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편견을 재고하고 상호간 관계를 개선하여 서로의 인권을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이러한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선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3)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1989년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에 가입하였다. 모든 조항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하며, 꼭 지켜져야 할 것이다.

또한 평등권(차별금지)제2조 제1항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2항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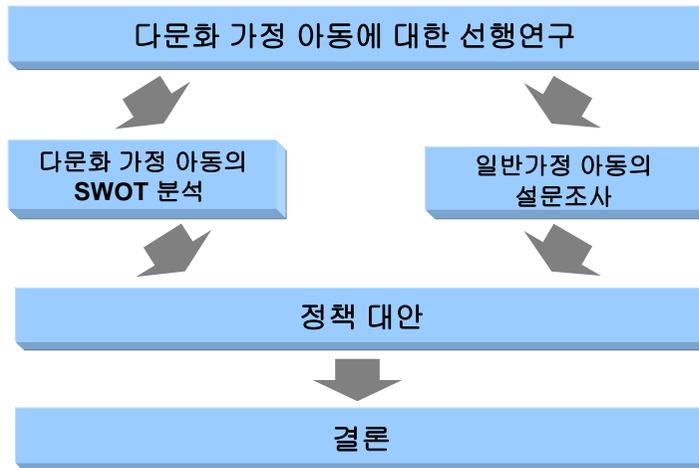
제29조 제1항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개발,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라.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차별인식에 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과 아동의 현재 상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국민의 순수혈통주의와 각종 편견·고정관념에 의해 현재 사회적 소수의 입장인 다문화가정 아동이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을 분석한 결과와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비교 분석한 후, 이를 이용해 상호간 인식의 편견을 재고하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반(反)편견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서로의 인식의 차이를 좁혀 인권의식을 함양하며,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의 인권신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우선 다문화가정 및 아동에 대한 문헌분석을 통해 선행연구가 이루어지며, 다문화가정 아동의 분석은 SWOT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SWOT는 강점(Strength)·약점(Weakness)은 내부 환경을 분석한 것이며, 기회(Opportunity)·위기(Threat)는 외부환경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초등학교 1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다문화가정 아동들에 대한 경험과 특정한 상황을 통한 행동 분석,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향 등의 질문을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 아동과 관련하여 보고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론적 논의와 사례가 실린 문헌들을 분석하여, 현재 프로그램의 상황 및 문제점과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인식변화 사례를 통해서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의 편견을 재고하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조사한 자료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제시를 위하여 문화센터, 평생교육원에서 프로그램의 개발 지침서로 사용하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제”라는 교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제시하는 프로그램 예시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양자 간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그림 1]의 연구의 흐름에 따라 본 연구의 기본인 다문화가정의 개념과 다문화가정 및 자녀의 현황과 문제점 등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하고자한다.

제2장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차별인식에 관한 선행연구

제1절 다문화가정의 개념

‘다문화 가정’이란 용어가 정관계(政官界)는 물론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을 흔히 ‘혼혈아’, ‘튀기’, ‘코시안(Kosian)’ 또는 ‘온누리안’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하는데, 이러한 용어들이 차별적인 요소를 담고 있어 오히려 인권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⁴⁾.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정부는 공문서에서 이들에 대한 표현을 ‘혼혈아’에서 ‘국제결혼가정 자녀(또는 결혼이민자 자녀)’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4) 코시안 (Kosian) 또는 온누리안이란 한국인과 아시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2세 또는 아시아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뜻한다.

하지만 ‘국제결혼가정 자녀’라는 용어 또한 이들을 차별 없이 지칭하는 용어로 적합하지는 않다는 의견에 따라 ‘국제결혼가정’을 ‘다문화가정’으로 고쳐 부르는 것에는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어왔다⁵⁾.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최근에 일반화 되고 있으며, 비교적 차별 없이 이들을 지칭하는 ‘다문화가정 아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가능하다. 넓은 의미에서 세계의 모든 가정은 다문화 가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사회는 지금까지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의 다문화를 경험해 왔다. 6·25전쟁을 전후한 좌우의 가치관 대립에 의한 이중문화 사회를 경험해 왔다. 또 1970년대를 전후한 산업화와 함께 빈부격차에 따른 또 다른 이중문화 사회를 경험해 왔다. 그뿐 아니라 한 가정 내에도 세대 간의 문화 차이에 따른 다문화 현상이 존재한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오래 전부터 다문화 가정을 경험해 온 셈이다.

반면에 최근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문제는 국제결혼에 따른 이주 여성 및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등 한국 사회 내에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문화권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생성을 의미한다. 이를 좁은 의미의 다문화 가정으로 보고 그 개념을 범주화 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서혁, 2006, PP2~3).

1. 국제결혼 가정 및 그 자녀

국제결혼 가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한 집단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 및 그 자녀, 다른 집단은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 및 그 자녀로 나눌 수 있다.

2. 외국인 근로자 가정 및 그 자녀

외국인 근로자 가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 외국인 근로자인 남성과 여성이 한국에서 결혼하여 이루어진 가정 및 그 자녀와, 둘째는 외국인 남성과 여성이 그들의 자국에서 결혼 한 후 한국에 이주한 가정 및 그 자녀,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로서 결혼

5) 2003년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가정시민연대는 ‘국제결혼’, ‘혼혈아’ 등의 차별적 용어를 추방하고 그 대신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가족 2세’로 부르자고 제안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한겨레신문, 2003년 12월 3일자).

하지 않고 단독으로 또는 동료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으로 나뉘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두 집단 중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 및 그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다문화가정 아동의 현황과 문제점

1. 다문화가정 아동의 현황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통계청(2006)보도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2,319건에서 2003년 25,658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04년 다시 35,447건, 2005년 43,121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국제결혼이 한국사회 전체 결혼에서 차지하는 비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2003년 국내 결혼에서 국제결혼 비율이 8.54%에서 2004년 11.4%, 그리고 2005년 13.4%까지 증가하였다.

현재 2008년 결혼이민자는 144,385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16.2%에 해당하며 2007년도에 비해 17,430명(13.6%)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세는 당연 출생 자녀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국제결혼 비율의 증가세로 인하여 당연 출생 자녀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총 58,007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6.5%이며 2007년 44,258명 보다 현재 2008년에는 58,007명으로 2007년보다 31%증가 되어 이들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사회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음 [표 1]은 연도별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재학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표 1] 연도별 국제결혼 가정 자녀(청소년)의 재학현황

구 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5	5,332		583		206		6,121	
2006	6,795	27.4	924	58.5	279	35.4	7,998	30.6
2007	11,444	68.4	1,588	71.9	413	48.0	13,445	68.1
2008	15,804	38.1	2,205	38.9	760	84.0	18,769	39.6

자료: 이재분, 한국 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재학현황 및 문제, 2008, 120쪽

위 표를 보면 매년 재학생수의 증가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사회 내의 국제결혼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급별로는 여전히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여전히 경기도가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지난 2006년 경기(23.1%), 서울(12.2%), 전남(11.8%), 전북(9.1%), 경북(6.0%) 순이었던 것과는 달리, 2008년 올해에는 경기(31.2%), 서울(18.2%), 전남(15.0%), 경남(12.3%), 충남(11.9%) 순으로 이전과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국제결혼가정 학생들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국제결혼가정 자녀 시·도별 학교급별 현황

(*08.4.1기준,단위:명)

	국제결혼가정 학생수 (A)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B)*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경기	3,091	576	211	3,878	2,656	477	163	3,296
서울	1,813	319	127	2,259	1,446	220	80	1,746
전남	1,675	136	58	1,869	1,644	136	57	1,837
경남	1,239	237	54	1,530	1,212	232	46	1,490
충남	1,235	185	56	1,476	1,162	166	52	1,380
전북	1,235	131	18	1,384	1,160	112	18	1,290
계	10,288	1,584	524	12,396	9,280	1,343	416	11,039
비율(%)	82.9	12.7	4.22	100	84.0	12.1	3.7	100%

* 주) 모가 외국인인 학생 비율은 국제결혼가정 학생 수 대비임.

자료 : 이재분, 한국 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재학현황 및 문제, 2008, 120쪽

2.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이와 같이 다문화 가정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다인종, 다문화에 대비하기 위한 다문화가정 및 그 자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부 및 민간차원의 많은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문제를 보는 견해는 다양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가족내부의 문제, 사회적 인식에 따른 문제, 자녀교육의 문제,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가. 가족 내부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혼 초기에는 특히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심한 갈등을 겪기도 한다. 의사소통은 언어와 비언어적인 부분의 소통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언어적 소통의 불편함을 강조하는데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이 생겨도 언어의 소통에서 오는 문제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없어 상대방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로 인해 서로의 갈등이 깊어져 가정 내 불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남편이나 그 가족은 아내 모국어 및 문화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아내에게만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빨리 배우고 익힐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녀의 출산 후에는 그 요구가 더 커지고 있다.

이외에도 서로 다른 결혼목적으로 인해 갈등하기도 한다. 국제결혼가정 부부는 사랑에 의하여 연애기간을 가지고 결혼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른 목적을 가지고 결혼중개업체에 의해 만나며, 단기간에 결혼을 결정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에 부족함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돈을 매개로 상업화된 결혼이 이루어지며, 남편의 정서적 불안정 등으로 가정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부부의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부족, 결혼의 목적에서 오는 갈등으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부족하며, 가정 폭력 등의 이유로 가정의 불화가 나타나게 되는 등 가족 내부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나. 사회적 인식에 따른 문제

민족의 경계를 넘나드는 세계화 시대에 ‘국제결혼’은 우리사회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국제결혼한 개인들은 민족주의적 경향 속에서 사회의 변방적인 위치에 서게 된다. 특히 남성 중심의 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가부장제와 맥을 같이 하면서 여성에 대한 배제와 차별성을 내포하게 된다. 이는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한국여성을 중심으로 단일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데 전략적으로 이용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다(홍영숙, 2007, PP11).

이런 사회적 인식에서 다문화가정은 가족공동체에서 이중문화의 존재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게 되며, 이러한 고통과 긴장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 등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가정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복합적인 상황이 조성된다. 따라서 남편 중심적 생활양식을 취하고 있는 한국문화배경에 대한 이질성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주의의 전통이 없고, 순혈주의 중시 풍토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들을 비정상적인 가족 등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잔존하며, 불쌍하다고 보는 시각, 무턱대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판단하는 시각, 위장 결혼자가 대다수라고 보는 시각 등 선입관에 기초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김경자, 2008, PP11). 이와 같은 편견과 차별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경우 미국의 LA흑인폭동이나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프랑스의 외국인이주민의 폭동 등과 같이 사회적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 자녀교육의 문제

다문화가정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자녀교육의 문제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치관과 생활 태도가 각각 다른 이중문화의 성격을 지닌 국제결혼 가정으로부터 태어난 2세대들은 성장하면서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그들은 성장 과정에서 사회와 가정에서 경험되는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정체성과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그들은 태생적으로 언어·풍습 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났다. 첫째로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인식의 차이 문제, 둘째로 언어소통에서 오는 문제로 인하여 부모자식간의 대화를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거나 자기를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셋째로 국제

결혼가정 자녀들은 부모의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풍습 중에서 어떤 것을 따라야 할 지 혼란을 겪을 수 있다(홍영숙, 2007, PP 13).

또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문제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나 단체가 소수에 그치고 있으며 이런 문제를 해소할 기관도 부족한 실정에, 한국사회의 배타의식 때문에 부모와 자녀들은 소외감과 정신적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또 부모의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풍습으로부터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혼란을 겪게 되는 자녀가 많을 뿐 아니라 자녀교육이 주로 어머니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어머니가 한국말이 서투르고 한국의 풍습에 익숙하지 못할 경우 자녀 교육을 하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김경자, 2008, PP 10).

라.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제

기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녀교육이 주로 어머니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국제결혼 아동이 유아기에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므로 언어 발달 지체를 보이거나 언어 발달지체 및 문화 부적응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문제를 지닌다고 보고하고 있다(이재분, 2008, PP120~122). 이처럼 다문화 가정의 아동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이주 여성이 자녀교육을 담당함으로써 아동이 다른 과목에 비해 문장이해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쓰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이로 인해 성장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학습결손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골이 깊어지고 폭이 넓어져서, 아동 스스로 혹은 각 가정의 도움으로 해결하기가 점점 어렵게 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수업도 따라가기 힘들어 흥미를 느끼지 못하며, 이로 인해 기초학습 능력이 뒤떨어지게 되며, 수업태도가 산만하여 동료 학생들의 학업 효율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표 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의 어려움

유형	학교부적응의 문제
심리적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로움, 소외, 고립감 · 학업에 대한 기대와 성취의 차이로 인한 자신감 결여 · 부정적인 자기 개념
또래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친구에 대한 신뢰도 낮음 · 또래와 교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함

유형	학교부적응의 문제
학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수업 힘들고 흥미를 느끼지 못함 · 수업태도 좋지 않음 · 언어사용의 어려움 · 기초학습능력의 부족

자료: 김명선, 다문화가정 중학생을 위한 학교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구안, 2008

이로 인해 일반아동들이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집단 따돌림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이유가 된다. 다문화가정 아동이 겪는 집단 따돌림은 가정과 부모에 대한 자신감과 존경심의 결여로 인한 자존심의 상실시키며, 또래 친구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린다. 또한 부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되어 외로움·소외·고립감 등을 심리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학업은 물론 생활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급과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긍정적이지 못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위에서 가족내부의 문제, 사회적 인식에 따른 문제, 자녀교육의 문제,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제 등에서 살펴보았듯이 다문화 가정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 인식과 함께 맞물려 다문화가정 아동이 받는 차별도 많아 이들의 인권침해가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권 침해로 인해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심리적·사회적 발달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일반아동들이 겪는 것 보다 더 심각하다.

일반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차별은 상호작용 관계에서 주로 나타나기에 이들에 대한 반(反)편견 교육은 중요하며, 또한 아동기에는 인식을 깨우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일반아동이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가지게 되면 일반아동이 성장할 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사회전체에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된다면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인권침해는 평생 사라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일반아동들과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의 누적 때문에 더 큰 사회문제를 유발 할 수 있기에 이들의 차별을 없애는 교육이 중요하다. 그 전에 다문화가정 아동이 무엇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선행 연구 하였다.

제3절 일반아동의 차별에 의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인권침해 사례

각종 시민단체와 지원센터를 통해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들은 차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려 했으나 다문화가정 아동이 상처를 받는 것을 원치 않는 기관에 협조를 구하지 못해 직접적인 접근이 제한되었다. 그리하여 학계에 보고된 선행 연구를 통해서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아동의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어떤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지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2조 평등권(차별금지)을 근거로 하여 네 가지 원인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의 교우관계에서 어떠한 차별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일반아동이 다문화가정 아동을 차별하는 첫 번째 이유는 겉모습·외모가 다르기 때문이었고, 둘째로는 부모님이 외국인이기 때문이었으며, 셋째는 문화차이로 인한 이해부족 때문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으로 인해 다문화가정 아동까지 차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겉모습, 외모에서 나타나는 차별

다문화가정 아동의 겉모습, 외모에 따른 차별은 피부색의 차이에 따라 차별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일단 겉모습에 다른 외모를 가졌다는 것이 눈에 띄는 다문화가정 아동은 그 차이가 ‘놀림’의 이유가 된다.

사례 1) 인도네시아 어머니를 둔 성현이는 피부가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까무잡잡하고 눈이 커서 저학년 시기에 “너희 부모님 외국인이지니?”라는 질문을 받곤 했다. 어머니가 인도네시아에서 오셨다고 하면 아이들은 명백한 차이를 확인하고 그 차이를 놀릴 때 활용한다. “까맣다”라는 놀림은 기본이고 인도네시아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기도 하며, 체형에서도 당시에 비만이었고, 수업시간에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아들에게 놀림을 당하였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6, PP 109).

사례 2) 다문화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해빈이는 러시아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말은 잘하는 편이었으나 이곳에 오기 전 다녔던 일반 초등학교에서 외모 때문에 한국친구들로부터 따돌림과 멸시를 많이 당했다고 한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6, PP109).

이처럼 겉모습, 외모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아동들은 이를 이용하여 다문화 가정 아동을 놀리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아동은 겉모습, 외모의 차이 때문에 인권침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놀림의 과정에서 집단 따돌림이나 폭행 등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처하는 인권침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 부모님이 외국인이어서 나타나는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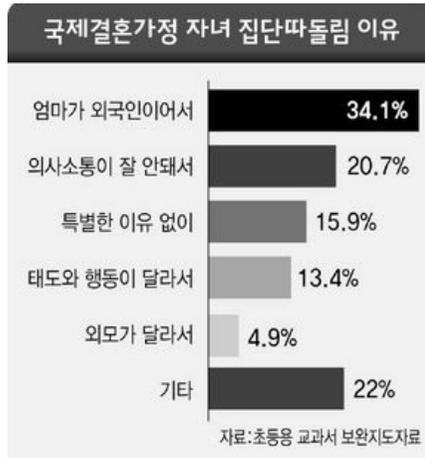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조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이처럼 부모의 인종, 피부색, 언어,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등에 의해 아동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아동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17.6%가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였으며, 따돌림 이유는 ‘엄마가 외국인이어서’가 34.1%로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였다⁶⁾.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지적·정의적 발달수준 분석 연구(이재분 외, 2002, PP120~122)에 나타난 일반 초등학생의 집단따돌림 경험비율 13.4%와 비교할 때 이들의 집단따돌림 경험은 비율에 있어 큰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따돌림 당한 이유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반 아이들의 경우는 ‘잘난 척(29.4%)’했기 때문인 것과는 달리, 다문화가정 아동은 어머니의 출신국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가 그들의 가정 및 부모와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6) 보건복지가족부의 2005년 통계자료 인용.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 2006

[그림 2] 다문화가정 아동이 말하는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아동은 학교에서 엄마의 이름을 써내어야 하는 경우 등 다문화가정 아동이라는 것을 들켜 놀림을 받을까봐 걱정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놀림을 받아도 엄마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놀림이 즉시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은 친구를 사귄 때 먼저 말을 걸지도 않으며, 친구들과 어울려 놀이를 할 때도 수동적이며,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3. 문화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차별

국제결혼으로 문화적인 차이에서 나타나는 차별을 살펴보면 각국의 문화나 국가정서에서 차이가 나타나다 보니 비슷한 문화도 있겠지만 서로 다른 문화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

사례 3)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경남 하동의 농촌가정에서 낳은 아이가 처음에는 어머니의 행동을 따라서 손을 밥으로 먹었다가 유치원에 다니면서 유치원 교사에게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은 비위생적인 나쁜 행동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아이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손으로 밥을 먹으면 나쁜 행동이라고 말했고, 어머니는 부끄러운 나머지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스스로를 감추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문화적인 차이가 발생할 경우 서로의 문화를 존중해 주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은 비위생적인 나쁜 행동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국제결혼 여성은 자신의 문화에 대하여 은폐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다. 이에 따라 아이 또한 위축된 부모 아래에서 스스로 움츠러 들며, 유치원에서는 그 가정과 아동을 다문화 가정이라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4.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편견 및 차별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주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다문화주의의 전통이 없고, 순혈주의 중시 풍토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들을 비정상적인 가족 등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잔존하며, 불쌍하다고 보는 시각, 무턱대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판단하는 시각, 위장 결혼자가 대다수라고 보는 시각 등 선입관에 기초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잘못된 시선이나 편견은 한국사회에 대한 빠른 적응력을 떨어트리고 스스로 자꾸 고립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은 위험성으로 배타적 민족주의 성향이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 혼혈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자녀들을 보육기관에 맡기지 못하게 되며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문제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나 단체가 소수에 그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기관도 부족하다. 이로 인해 한국사회의 배타의식 때문에 부모와 자녀들은 소외감과 정신적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편견과 차별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경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김경자, 2008, PP 11).

위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인식은 주로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인식들이 많았다. 특히 아동들의 경우 겉모습, 외모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함께 부모님이 외국인이어서 ‘놀림’에서 ‘따돌림’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학교 부적응 문제가 생기게 되어 또래 친구들을 사귄 때 수동적이고,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또한 문화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차별도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문제가 되는데, 모(母)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충돌할 경우 다문화가정 아동과 함께 어머니도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사회적응을 어려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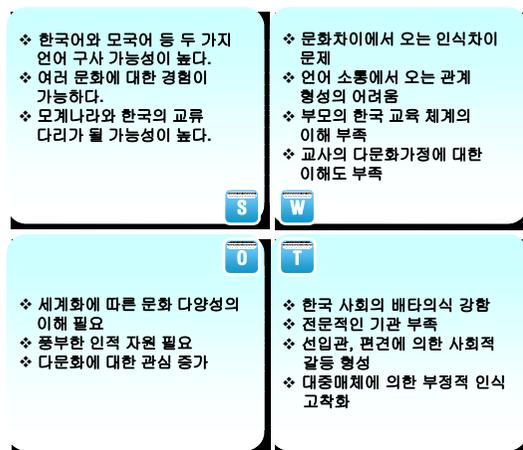
이와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성결혼이민자 자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차별로 인해 이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빠른 적응력을 떨어트리고, 스스로 고립되게 하여 여성 뿐 아니라 아동까지도 고립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단일민족주의 성향 때문에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받아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인권 문제가 사회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인권상황 및 문제점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해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3장 다문화가정 아동의 SWOT 분석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제점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차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SWOT분석 한 것이다. 강점(Strength)·약점(Weakness)은 내부 환경을 분석한 것이며, 기회(Opportunity)·위기(Threat)는 외부환경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제1절 다문화가정 아동의 SWOT 분석



[그림 3] 다문화가정 아동의 SWOT 분석

1. 강점 (Strength)

가. 한국어와 모(母)국어 등 두 가지 언어 구사 가능성이 높음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어릴 때부터 한국어와 어머니 나라의 국어 등 두 가지 언어를 접하게 되며, 외국인 어머니가 한국어를 잘 구사할 경우 두 가지 언어를 습득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나. 여러 문화에 대한 경험이 가능

또한 이들은 사회생활과 어머니의 생활습관을 통해 한국문화와 어머니 나라의 문화를 모두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여러 문화에 대한 직접경험은 타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다가오는 다문화시대에 다양한 사람들과 편견 없이 어울릴 수 있는 개방적사고의 기초를 제공한다.

다. 모(母)계 나라와 한국의 교류 다리가 될 가능성이 높음

위와 같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꾸준히 한국과 모계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서로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따라서 이들은 국가 간 교류에 있어 한국과 모계나라를 잇는 다리역할을 수행 할뿐만 아니라 민간외교관의 역할도 훌륭히 수행할 것이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가지는 특수한 가정환경은 국제교류가 활발한 세계화시대에 더욱더 큰 강점이 된다.

2. 약점 (Weakness)

가. 문화 차이에서 오는 인식차이 문제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가정 내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각각 다른 가치관과 생활 태도를 접하게 된다. 이러한 이중문화의 경험은 강점이 되기도 하지만 사회와 가정에서의 생활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정체성과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나. 언어 소통에서 오는 관계 형성의 어려움

어머니의 서툰 한국어 실력으로 인해 대부분의 자녀들은 유아기에 가정이나 또래집단과의 사회화 경험이 부족하다. 이는 한국어학습을 더욱 어렵게 하는데 예를 들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서툰 한국어를 구사하지만 고학년이 되면 일반아동과 별 차이 없이 한국어를 구사하게 되는데, 이는 또래집단과의 사회화가 한국어습득에 도움이 됨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있어 서툰 한국어실력은 가장 큰 약점이 되는데, 수업 이해도가 떨어져 성적이 낮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한국 친구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며, 점차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게 하여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등 학교 부적응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

다. 부모의 한국 교육체계의 이해도 부족

다문화가정의 부모들 역시 교육을 잘 시켜 보려는 열의는 있으나 서툰 한국어와 자기가 경험한 것(학년제나 사교육문제) 등)과는 다른 한국의 교육체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자녀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학교생활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저학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서툰 한국어 실력이 약점이 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알림장이나 가정통신문을 읽지 못해 준비물과 교과 과제물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라. 교사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도 부족

다문화가정 아동들 중 저학년의 경우 서툰 한국어 때문에 소극적인 수업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이 교사의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수업시간에 어머니 나라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 한다거나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것을 밝히는 등 교사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험 부족뿐만 아니라 낮은 이해도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다.

7)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이루어져 총 12학년제이지만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달리 초등학교 6년, 고등학교4년 총 10년제로 되어있으며, 필리핀은 학원이 없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공교육만 받고 자라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것과 같은 한국 교육체계의 이해도가 부족하다.

3. 기회 (Opportunity)

가. 세계화에 따른 문화 다양성의 이해 필요

급속히 진행된 세계화는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었으며, 각 나라들은 경제·사회·정치·문화 등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협력하기도 하며, 갈등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다른 나라와의 교류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으며, 다른 나라와의 교류에 있어 그 나라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이처럼 세계화 시대에는 필연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은 강점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큰 기회가 된다.

나. 풍부한 인적자원 필요

위와 같이 세계화의 시대에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국가 간 교류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하는데, 강점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세계화시대에 가장 적합한 인적자원이 될 것이다.

다. 다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

정부에서는 '07년 6월 6일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08년 9월 22일부터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시행 되었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다문화 사회구조 속의 이주민 인권보호」를 '08년도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밖에 대중매체나 시민단체 등 최근 들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에 대한 관심증가는 다문화가정 아동에게로 이어져 이들의 사회적응과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

4. 위기 (Threat)

가. 한국 사회의 배타 의식 강함

월드컵 등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한국사회의 결속력은 자랑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결속

력이 강함만큼 타인에 대한 배타의식도 강한 것이 사실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민족, 다문화 사회”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사회는 “단일 민족”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각은 이들을 “혼혈아”, “코시안”, “국제결혼가정 자녀”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면서 배제와 차별성을 내포하게 된다.

나. 전문적인 기관 부족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문제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나 단체가 소수에 그치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배타의식 때문에 부모와 자녀들은 소외감과 정신적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만 이런 문제를 해소연할 상담기관도 부족하다. 현재 정부에서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1577-5432)를 15개 도·시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다. 선입관, 편견에 의한 사회적 갈등 형성

다문화주의의 전통이 없고, 순혈주의 중시 풍토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들을 비정상적인 가족 등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잔존하며, 불쌍하다고 보는 시각, 무턱대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판단하는 시각, 위장 결혼자가 대다수라고 보는 시각 등 선입관에 기초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김경자, 2008, PP10). 이와 같은 편견과 차별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경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 대중매체에 의한 부정적 인식 고착화

KBS1 “러브인 아시아(’05.11~현재)”, KBS2 “미녀들의 수다(’06.11~현재)”, SBS 일요일이 좋다의 “사돈 처음 뵙겠습니다.”, KBS2 추적60분의 “사라진 베트남신부들, 누가 이들을 데려갔나?(2007.5.23)” 등 다문화에 대한 대중매체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대중매체의 편향된 관심으로 인해 왜곡된 인식을 전해 부정적 인식을 더욱 고착화시키기도 한다. 대중매체에서 방

송되는 다문화 가정은 대부분 부정적인 삶을 살고 있거나, 온정주의 시선에 머무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이들에 대한 실제 차이를 인정하려하기보다는 화합,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으로 부각시키는 한계를 보이기 때문이다.

제2절 전략의 개발 논리

외부 요인 내적 요인	O (Opportunity, 기회)	T (Threat, 위기)
S (Strength, 강점)	S - O 전략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강점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 (강점 ↑, 기회 ↑)	S - T 전략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 (위기 ↓, 강점 ↑)
W (Weakness, 약점)	W - O 전략 약점을 극복, 제거 하여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 (약점 ↓, 기회 ↑)	W - T 전략 위기를 회피 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전략 (약점 ↓, 위기 ↓)

[그림 4] SWOT을 통한 전략적 분석

위에서 살펴 본 다문화가정 아동의 SWOT 분석을 [그림 16]을 통하여 내부적 강점과 약점, 외부적 요인의 기회와 위기를 토대로 전략적 방법 구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1. 영역별 전략

가. S - O 전략

앞서 살펴본 다문화가정 아동의 SWOT분석을 통해 기회를 활용하여, 강점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으로 세계화에 따른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하며, 한국 문화만 강요하는 정책이 사라진다면, 다문화가정 아동은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한국과 모(母)계 나라의 문화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나중에 두 나라의 문화 교류의 다리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발견 할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일반아동과 함께 한다면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우리나라의 풍부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W - O 전략

약점을 극복·제거하여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으로의 다문화가정 아동을 살펴보았을 때 일반아동과의 문화차이와 의사소통이 약하다는 약점이 있지만 이는 정부와, 대중매체, 시민단체 등 최근 들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이 증가로 인해 이들의 문화차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프로그램을 개발·진행함으로써 약점을 보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팀 (Team) 프로그램이 있다.

다. S - T 전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다민족, 다문화 사회”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여전히 한국사회는 ‘단일민족’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감 극복을 위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은 어려서부터 꾸준히 한국과 모계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서로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강점이 있다. 일반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이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단일민족’이라는 생각을 버리게 되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활동으로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

라. W - T 전략

위기를 회피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에는 팀(Team) 활동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일반아동들의 선입관과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팀 활동을 통해 한국문화만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다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일반아동,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나뉘지 않고 하나로 화합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과의 인식 차이 분석

제1절 조사목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은 상호 작용적이어서 일반아동의 인식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아동을 중심으로 한 조사 목적을 기획하였다.

1.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일반 가정 아이들의 경험 파악 한다.
2. 특정한 상황에서의 행동을 분석해 일반 가정 아이들이 생각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이나 차별 수준을 파악한다.
3. 다문화가정 아동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을 파악 한다.

이와 같은 조사를 통해 일반아동들의 사회적 배경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일반아동들의 의견을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인식과 차별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의 친밀도 형성, 인식변화에 대한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에 반영하기 위한 조사이다.

제2절 조사 대상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58,007명으로 이 중 6세 이하가 57.1%, 12세 이하가 32.2%로 전체의 89.3%를 차지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몇 년 후 초등학교 재학생은 급증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학교적응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연구대상을 초등학생으로 선정하고, 일반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질문의 내용은 문헌 연구를 기초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학교 또는 사회에서 일반 아동에게 받는 차별이 있다고 밝혀진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아동들이 다문화가정 아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2008년 8월19일부터 8월 22일 까지 실시하였으며 100명의 아동이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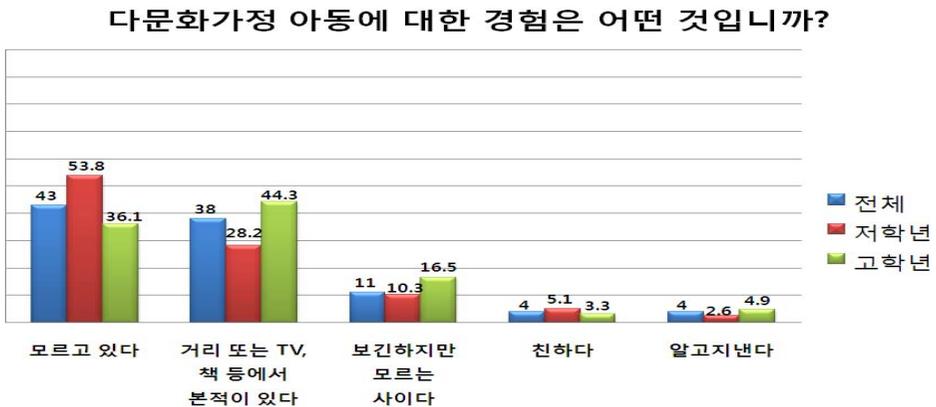
제3절 조사방법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아동 초등학생이 자주 다니는 거리를 중심으로 설문지 조사와 인터뷰를 같이 병행하였으며, 통계자료 분석 프로그램인 SPSS⁸⁾를 이용하여 위에서 조사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인식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와 설문지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비교분석 하였다.

제4절 일반 아동의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상호간 인식 차이 분석

일반 아동이 다문화가정 아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얻고, 상호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문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설문문항은 다문화 가정에 대해 접해보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의응답으로 하였다. 1~3학년은 저학년으로 하였으며, 4~6학년은 고학년으로 하였다.



[그림 5]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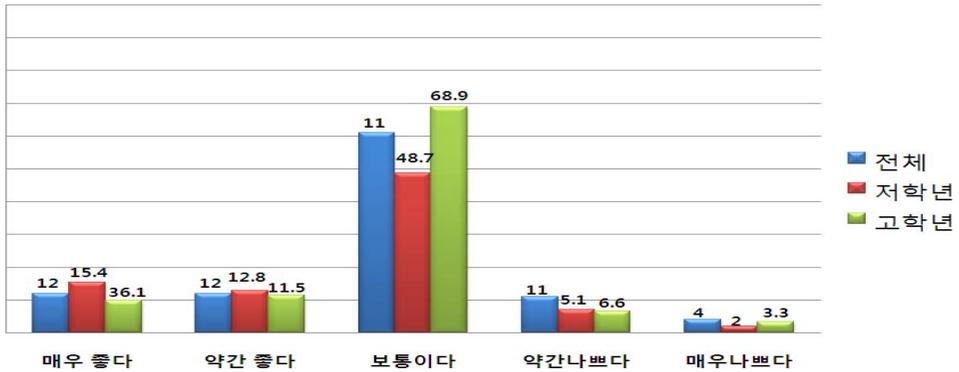
이 질의응답으로 살펴 본 결과 전체적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한번쯤은 보았거나, 혹

8) SPSS란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의 약자로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은 본적은 있지만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92%로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또한 고학년 일수록 거리 또는 TV, 책 등에서 본 적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4.3%로 다양한 매개체를 이용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해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설문문항은 다문화가정 아동과 짝이 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질문을 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과 짝궁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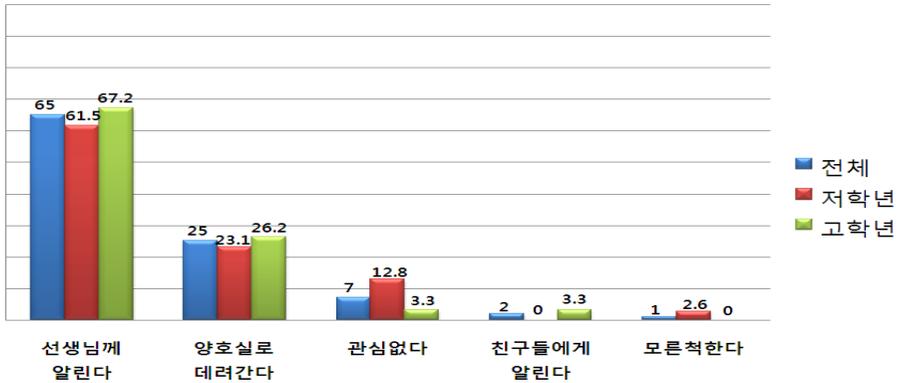
[그림 6] 다문화가정 아동과 짝이 되었을 경우

이 설문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선행연구에서 외모에 따른 편견과 차별을 알아보기 위하여 질의 응답한 것으로써 외모에 따른 편견과 차별로 겉보기에 다른 외모를 가진 다문화가정 아동은 그 차이가 놀림의 이유가 된다는 연구 분석과 비교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이 응답에서 일반 아동들은 85%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중 저학년은 부정적인 반응이 23%인 반면 고학년의 경우 9.9%로 저학년이 고학년에 비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 이유는 의사소통이 잘 안될 것 같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고학년은 긍정적인 반응이 많은 이유가 영어를 가르쳐 줄 것 같다는 이유가 많았다.

이 설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문화가정 아동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과는 달리, 일반아동들은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비교적 없었다.

세 번째 질문은 일반 아동이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정한 질의응답으로 짝이 된 다문화가정 아동이 아프다고 가정한 행동유형을 알아보고자 한다.

짜깁인 다문화가정 아동이 아프다면 어떤 행동을 할 것입니까?



[그림 7] 짜이 된 다문화가정 아동이 아프다고 가정한 행동유형

이 설문에서 알 수 있듯이 적극적인 행동유형인 ‘양호실로 데려 간다’를 선택한 아동은 25%였으며, 소극적인 행동유형인 ‘선생님께 알린다’, ‘친구들에게 알린다’는 각각 65%, 2%로 나타났다. 소극적인 반응이지만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네 번째 질문은 다문화가정 아동이 생일파티에 초대한다고 설정하고 일반 아동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미지와 친밀감을 알아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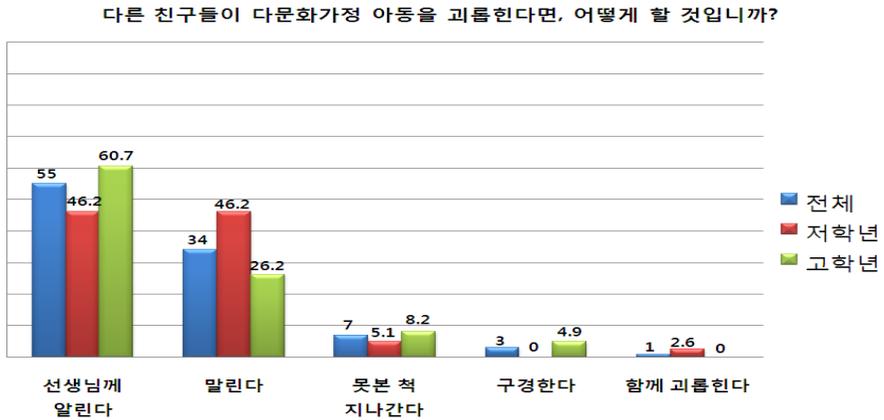
다문화가정 아동이 생일파티에 초대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림 8] 다문화가정 아동이 생일파티에 초대한다고 설정한 행동유형

이 설문에서는 66%가 참석한다고 응답하여 문화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편견과 차별과는 상관없이 같이 어울릴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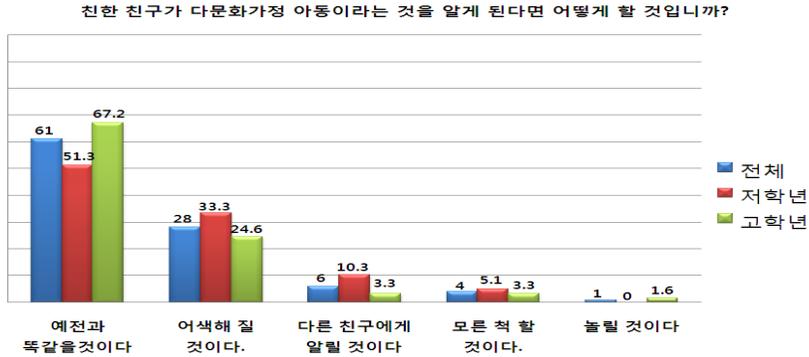
다섯 번째 질문은 다른 친구들이 다문화가정 아동을 괴롭힌다는 가정을 세우고, 일반 아동의 행동유형을 알아보려 한다.



[그림 9] 다른 친구들이 다문화가정 아동을 괴롭힌다는 가정의 결과

이 질의 응답의 결과는 ‘선생님께 알린다’가 55%, ‘말린다’가 34%, ‘못본 척 지나 간다’가 7%, ‘구경 한다’가 3%, ‘함께 괴롭힌다.’가 1%로 나타났다.

여섯 번째 설문에서는 친한 친구가 다문화가정 아동이라는 것은 숨기다가 우연히 부모님 중 한분이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가정 하에 부모님이 외국인이어서 나타나는 편견이나 차별과 비교하고자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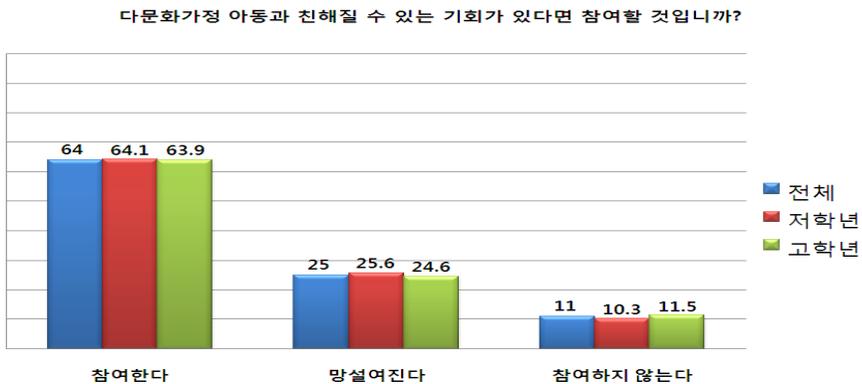


[그림 10] 친한 친구가 다문화가정 아동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행동유형

선행연구에서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것을 약점이라 생각하고 그 가정의 아이를 놀린다는 결과와 달랐으며, 그 밖에 28%가 ‘어색해 질 것이다’, 6%가 ‘다른 친구에게 알릴 것이다’, 4%가 ‘모른 척 할 것이다’, 1%가 ‘놀릴 것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이 질문의 응답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이 집단 따돌림을 당한 가장 큰 이유인 부모님이 외국인이어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응답한 선행연구 결과와는 달리 일반 아동은 예전과 같을 것이라고 응답해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일곱 번째 문항은 다문화가정 아동과 친해 질 수 있는 기회의 참여유무를 통해서 외모나 부모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깨고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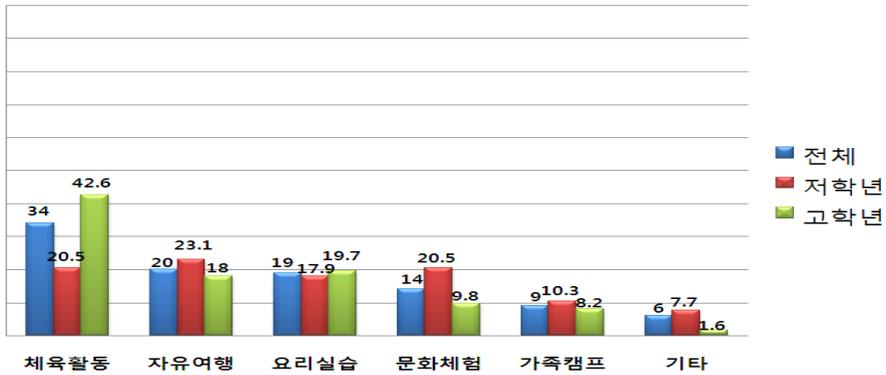


[그림 11] 다문화가정 아동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발생시 참여유무

이 결과에서는 64%가 ‘참여 한다’고 응답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편견보다는 호감,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반(反)편견 프로그램의 참여유무와 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아동과 함께 하고 싶은 활동을 파악하여 새로운 반(反)편견 프로그램에 어떠한 활동이 아동을 경계 없이 어울릴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본 문항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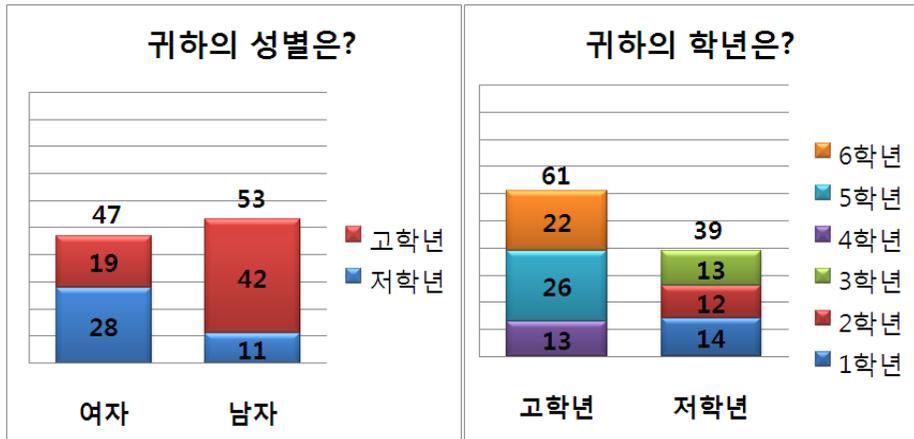
다문화가정 아동과 함께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입니까?



[그림 12] 다문화가정 아동과 함께 하고 싶은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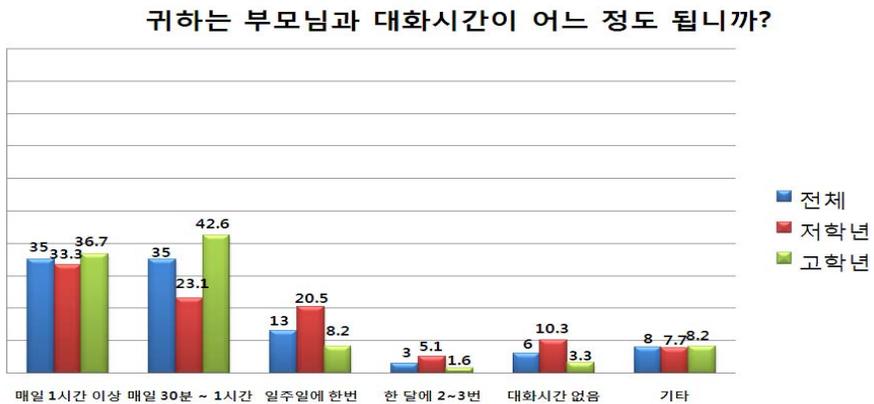
이 결과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체육활동과 자유여행을 함께 함으로써 친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학년의 경우 문화체험을, 고학년의 경우 요리실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 of 참여자 인적사항으로는 남자가 52명, 여자가 48명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참여를 보인 학년은 5학년이었고, 그 뒤로 6학년, 1학년이었다.



[그림 13] 참여자 인적사항

그밖에 일반아동들이 어떤 사회적 배경을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님과 대화 시간과 독서량을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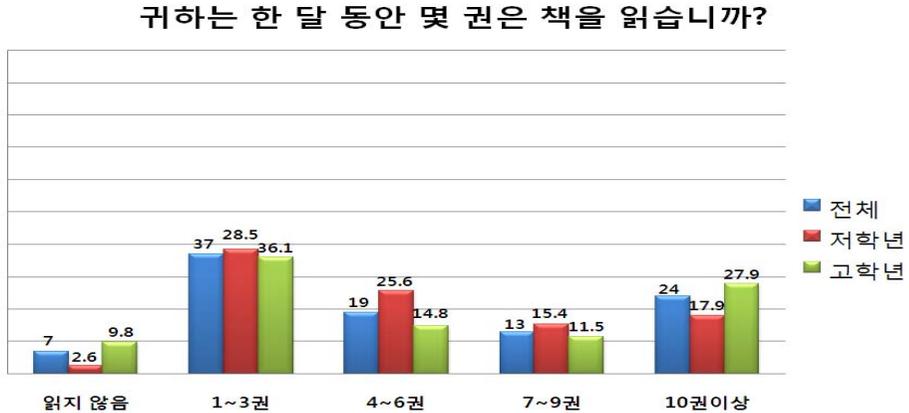


[그림 14] 부모님과의 대화시간

부모님과의 대화 시간은 전체적으로 35%로가 매일 이라고 답해 주었고, 저학년 일수록 부모님과의 대화 시간은 33.3%가 매일 1시간 이상으로 보여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았으며 고학년은 42.6%가 매일 30분~1시간 정도의 대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

다. 이를 통해서 학교생활, 교우관계, 사회적 이슈 등을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사회적 배경을 확인 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책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림 15] 참여자의 독서량

전체적으로 한 달 동안 책을 읽는 권수는 37%로 1~3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는 10권 읽는 아동이 24%로 나타나 책에서 다양한 지식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해 접할 수 기회의 가능성이 보였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인식에 대한 선행 연구와 다문화가정 아동의 SWOT를 통해 알게 된 편견과 차별을 바탕으로 설문지의 질문을 설정하여 일반아동들이 생각 하는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이 서로에 대해 생각하는 차별에 대한 생각은 차이가 있었다.

우리는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일반아동에게 차별을 받고 있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행동유형을 설정하여 일반아동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지의 행동유형 설정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아동과 짝이 되었거나, 짝이 된 다문화가정 아동이 아플 때, 다문화가정 아동이 생일파티에 초대할 때, 다른 친구들이 다문화가정 아동을 괴롭힐 때, 친한 친구가 다문화가정 아동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등 다섯 가지의 행동유형 분석 결과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로 인해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일반아동들에게 차별과 편견을 가지고 있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일반아동들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차별과 편견이 비교적 적게 가지고 있어 서로의 생각이 다르게 나왔다. 이와 같은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일 수 있도록 서로 어울릴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제5장 대응 방안

제1절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설문지를 통해 살펴본 것과 같이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들이 서로에 대한 인식으로 알아 본 결과 서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일반아동들에게 차별과 편견을 받는다고 하여 학교 부적응 문제가 나타났지만, 일반아동들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차이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SWOT 분석과 전략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 아동만의 문제가 아닌 학교와 사회 전체의 인식의 문제가 같이 형성되어 있었다. 일반아동과의 언어소통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다문화가정 아동이 우리나라 사회의 또 다른 소외 계층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문제점만을 부각시키지 않고, 다문화가정 아동을 우리나라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받아 드릴 수 있도록 서로에 대한 이해와, 문화의 다양성을 발견하고 익히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제2절 현재 프로그램의 상황 및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는 다문화 가정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다인종, 다문화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과 민간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제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한

글교육, 한국음식 교육, 컴퓨터 교육 등 한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를 교육하고 있는 시점이다. 즉,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동들을 위한 교육은 이제 서야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 또는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올해 7월에는 안산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할린 청소년과 관내 청소년들 간의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할린 친구랑 함께하는 해피 섬머’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일반아동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봉사시간 부여라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또 다른 프로그램이 올해 8월에 진행되었다. 국립중앙 청소년 수련원에서 진행한 ‘다문화 가정 역사 체험캠프’이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아동은 참여하지 않고,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한국 우리 전통문화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수업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캠프들이 진행 되고 있으나, 안산시 청소년 수련관과 국립중앙 청소년 수련원에서 진행 한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한국문화에 융합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정 아동을 오히려 더 특별한 존재로 부각 시키고 있어 일반아동들의 편견을 유도할 가능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참여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캠프와 축제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들이 한데 어울려 있는 시간이 1박2일, 2박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로 진행 되고 있는 캠프와 축제는 짧은 기간에 친해 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캠프와 축제가 끝난 뒤 꾸준한 관리가 없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특별하다고 인식하게 되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머니 나라의 문화는 수용하지 않고 한국문화만을 강요하고 있어,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은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한국문화만을 강요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국문화와 어머니 나라의 문화의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하며, 일반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서로 장기적으로 어울리게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처럼 현재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단점을 보완한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자신 스스로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사회의 편견과 차별,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를 개선 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제3절 프로그램 실시로 실시 전과 실시 후의 인식 변화 사례

다양성과 차이점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선입견이 형성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반(反)편견 프로그램 교육의 효과와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르지만 같은 우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들의 인식이 실시 전과 후,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⁹⁾.

이를 알아보기 위해 2008년 7월 23일 무지개 청소년 센터를 방문하였으며, 무지개문화탐험대의담당자와 가진 인터뷰와 무지개문화탐험대 대원들의 활동모습이 담긴 UCC를 통해 이들의 인식이 프로그램 전·후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았다.

‘다르지만 같은 우리’라는 반(反)편견 프로그램의 하나인 무지개 문화탐험대는 우리사회에 살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23명(일반청소년12명, 다문화청소년 11명)의 청소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다르지만 같은 우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차별 없이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작은 디딤돌이 되고자하는 취지에서 2007년 7월에 출범하였다.

2007년 7월에 출범한 무지개문화탐험대는 이날 발대식 및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는데, 홍보대사에는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다문화 리더로 활동 중인 가수 윤미래가 위촉되었고, ‘다르지만 같은 우리, 함께 하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시작하였다.

8월에는 ‘미션! 한국 속의 다양한 문화를 찾아라’라는 주제였는데, 무지개문화탐험대 대원들은 우리사회 속의 세계문화(이태원의 이슬람 사원 방문, 인도 음식점)를 체험하였다. 아동들은 인도에 관한 체험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아동, 일반아동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거워했으며, 그 다음 코스로 전통문화(남산 한옥마을)를 체험함으로써 선조들의 생활 방식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들도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면서 한국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는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한다.

9월에는 홍보대사 윤미래와 함께 신나는 힙합을 배우는 예술 활동을 하였는데, 홍보대사 윤미래 그리고 동료 테비와 함께 힙합을 배우고 팀별 로고송을 만들었다고 한다.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타문화이자 동시에 우리 문화화 된 힙합을 즐기는 과정을 통해 무지개문화탐

9) 반(反)편견 교육은 성, 인종, 민족, 장애, 사회계층 등의 개념에 대한 편견, 선입견 등에 도정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고 존중하는 실천적 태도의 형성을 중시한다. 그리고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에 대한 개념을 연령(노인, 젊은이 등), 성(남자, 여자), 언어(다민족 언어)장애, 종교 등으로 제시하면서 이러한 다문화 요소들의 다양성을 가지 있는 자원으로 인정하며 확장해 주는 교육이다. (Baker,1979)

힘대 대원들은 힙합을 패션이나 루머가 아닌 하나의 문화로 인식하게 되었고, 랩·가사를 만들고 연습하면서 주로 선생님과 함께 만났던 아동들이 스스로 시간을 정하고 만나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친해진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무지개문화 탐험대가 만들고 완성한 ‘다르지만 같은 우리’라는 노래는 무지개문화 탐험대의 로고송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10월에는 나눔 문화 ‘장애인과 함께 한 즐거운 나들이’라는 주제로 봉사활동을 하였다. 무지개문화탐험대 대원들은 장애인들에게 무작정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은평 천사원을 방문하였다. 하지만 서로 다른 걸모습에도 금세 보통친구처럼 지낼 수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며, 장애체험을 통해 장애인에 대해 이해하고, 함께 한 강유람선 나들이를 하면서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일반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장애인으로 각각 걸모습은 다르지만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 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12월까지 진행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반아동들은 처음에 생각했던,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한국어도 알려주고, 힘들 때 도와주겠다는 자원봉사의 개념이 아닌 다문화가정 아동들도 나와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많은 문화를 경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해 했다고 한다.

이처럼 무지개청소년 센터의 반(反)편견 프로그램을 체험한 아동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이 주어지면 “너는 다문화가정 아동이야, 나는 일반 아동이야”라는 구분을 짓지 않고 평범한 아이들처럼 지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히려 선생님 또는 학부모, 또래 친구들이 뭔가 있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다문화가정 아동을 사회에서 따로 구분 짓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들이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로 나타나게 되며,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이러한 차별을 받게 되면 소극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되어서 이 세상에 자기 혼자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부정적인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선생님, 학부모, 또래 친구들 등 모든 사람들이 일반아동, 다문화가정 아동을 구분 짓지 않고 바라보는 시선을 기르는 반(反)편견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의 인권을 보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제4절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1.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방향

우리 다음 세대의 아동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게 되는데 일반아동들에 의해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사회적 편견과 학교생활, 교우관계에 대한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반아동들이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문화와 역사를 존중·이해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현재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단기적인 캠프뿐이며 장기적인 프로그램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 또한 일반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을 분리하여 다문화가정 아동만을 부각 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보았듯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한 학교 부적응, 성적부진, 심지어 정서적인 장애를 겪는 등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시급한 것은 이들이 실제적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일반아동들과 함께 어울려 사회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인 반(反)편견 프로그램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입장을 가지고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반(反)편견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

첫째, 프로그램의 기본관점은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전제하에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다양성을 제시한다.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이 모두 똑같은 인간이며 살아가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김명선, 2008, PP 37).

둘째, 프로그램은 동아리 모임으로 운영 되어 진다. 이는 동아리 모임을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어울릴 수 있도록 하나의 틀을 만들어 주어 상호 상호 협력하여 함께 성장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프로그램은 1학기가 16주임을 감안해 볼 때, 학교 행사 및 시험기간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9회기를 기본으로 하였다.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에서 진행할 경우 주1회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하거나, 클럽활동 시간에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 외에서 진행될 경우 한 달에 두 번씩 있는 놀토(놀다+토요일의 합성어)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넷째, 제시된 프로그램은 일반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조화를 이루고 친밀감 형성을 위해 개인적인 프로그램 보다는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형성되어 있다.

다섯째, 제시된 프로그램은 한 학기 과정이다. 모든 아동들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기에, 지역·아동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운영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 테면 한 학기는 아동의 어색함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정해진 범위에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 학기에는 아동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의논·결정하여 동아리를 이끌어 나가면서 흥미를 잃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여섯째, '08년 9월 22일부터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¹⁰⁾에 의거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예산은 정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받아 업무수행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한다.

위의 여섯 가지 체계를 통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서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 간에 인식차이를 줄일 수 있고, 관계를 한층 더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위의 여섯 가지 체계를 통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서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 간에 인식차이를 줄일 수 있고, 관계를 한층 더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2.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은 이 프로그램을 하려는 목적을 수립하고, 각각 파트별 구체적인 목표를 정립하며, 회기별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추진될 것이고,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과 기대효과를 수립함으로써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존재하는 프로그램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한다.

가. 프로그램의 목적

일반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이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다양한 문화에 대해 폭넓은 참여

1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를 기반으로 하며, 다름을 인정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바꿔 교우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협동심을 개발하고, 나아가 학교와 사회에 대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두려움을 떨쳐내고자 하며 이를 통해 일반아동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구체적인 목표

첫째,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일반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은 새로운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일반아동은 다문화가정 아동이 경험했던 다양한 문화를 문화체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한국문화를 경험해 다름을 인정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일반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리더십을 개발하는 한편, 주인의식과 책임의식, 도전의식을 함양한다.

넷째, 개인이 아닌 하나의 단체로써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협동심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프로그램 추진 방향

전체 프로그램은 모두 9회기로 구성했다. 설문조사 결과 체육활동·여행·문화체험·요리실습이 가장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참고하여 프로그램의 방향을 결정하였다. 첫 회기와 마지막 회기는 프로그램의 소개와 마무리 및 평가를 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발견 할 수 있음을 2회기,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활동을 위해 1회기,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의 타인에 대한 이해와 협동심을 개발하기 위한 팀(Team) 활동 3회기, 책임의식과 도전의식을 위한 활동 1회기로 구성하였다.

회기에 따라 구성요소를 배열한 순서는 일반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이 서로에 대한 호감을 위함에서 시작하여 서로가 다름을 이해하고 협동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아갔다. 프로그램의 목적 및 각 회기별 목표는 [표 4]와 같다.

[표 4] 프로그램 회기별 활동주제와 목표

프로그램의 목적
일반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관계 개선



목표
첫째, 일반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다름의 이해 둘째, 타인에 대한 이해와 협동심 개발 셋째, 책임의식과 도전의식을 함양



실천과제
1. 동화 만들기 & 그림책 만들기 - 일반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이 경험을 통해 동화 만들기 -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협동심 개발 - 동화 내용에 대한 특징과 이유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발표준비 2. UCC (동영상) 만들기 -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간직하고 싶은 사진 촬영 - 자신들의 느낌과 긍정적인 생각 변화 찾기



회기	활동주제	회기별 목표
1	프로그램 소개	· 오리엔테이션 및 프로그램 소개, 대인관계 형성
2	문화체험	·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3	전문지식 습득	· 실천 과제를 위한 지식 습득
4	문화체험(체육활동)	·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5	팀(Team) 활동	· 서로의 경험에 대한 이해
6		· 타인에 대해 이해하기
7		· 협동심 기르기
8	도전의식, 책임의식 개발 및 자신감 기르기	·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감과 도전의식 개발을 통해 자신감 기르기
9	마무리 및 평가	자신의 느낌 및 평가하기

라. 프로그램의 회기별 활동 내용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의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과 구성은 [표 5]와 같다.

[표 5] 프로그램의 회기별 활동 내용

1	안녕, 반가워!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의 목적 알기 -자기소개와 네임게임, 협동게임 -일촌 맺기	각종게임들로 인해 친밀감을 형성 하게 되어 서로에 대한 호감을 가질 수 있다.
2	중남미 놀이터를 가다.	문화의 다양성 발견	-다양한 문화 중 중남미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재미있게 인식하고 편안하게 체험하기	중남미 문화원을 방문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 발견할 수 있다.
3	challenge (도전), UCC!	지식 습득	-UCC에 생소한 아동들을 위한 배우는데 도전하기	새로운 지식을 배움으로써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게 되고, 도전 의식을 가질 수 있다.
4	독특한 리듬, 택견	문화의 다양성 발견	-한국의 문화 중 독특한 리듬을 가진 택견 배워보기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재발견과 여러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이야기나라 푹푹	타인의 이해 및 협동심	-서로의 경험을 표현하여 새로운 동화를 창작하고, 협동해 그림책으로 완성하기	동화를 만들기 위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게 되어 타인을 이해하고, 그림책을 함께 만듦으로 인해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
6				
7				
8	바람과 별의 집	자신감 갖기	-함께하는 활동(텐트, 음식, 게임 등)을 통해 도전의식 기르기	야영을 통해 서로에 대한 협동심을 더 가질 수 있으며, 도전의식을 갖게 되어 자신감을 찾을 수 있다.
9	행복한 우리들	마무리 및 평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낀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긍정적인 변화 찾기 -UCC 발표회	서로에 대한 어색함이 사라져 차별과 편견에 대한 생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마. 프로그램 활동 예시안

일반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관계개선 프로그램의 회기별 목표 및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14, 표15와 같다. 이 프로그램은 모두 9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회기는 90분 ~ 120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방문체험 학습인 경우 120분을 초과하여도 된다.

[표 4]와 [표 5]를 이용해 프로그램 활동 예시안을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프로그램 예시안

프로그램 명	중남미 놀이터를 가다!			적용시기	2회기
				활동장소	중남미 문화원
참여대상	초등학생	참여인원	24명	시간	5시간
활동 주제	문화의 다양성 발견				
활동목표	다양한 문화 중 중남미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재미있게 인식하고 편안하게 체험하기				
활동단계	활동내용			소요시간	준비물
도입	1. 출석 부르기 - 네임게임처럼 자기팀원의 이름을 다 불러 본 후 선생님께 확인 받는다. 2. 프로그램 소개 - 오늘 활동할 프로그램의 목적과 방법을 간략히 소개한다. 3. 활동 장소로 이동 - 대중교통 이용 시 혼잡한 상황이 생길 있으니 팀의 조장이 조원들을 책임지도록 한다.			1시간 30분	
전개	1. 활동 장소 도착 - 팀의 팀원이 다 있는지 다시 한번 출석체크를 한다. 2. 박물관 관람 - 박물관 관람에 앞서 주의사항을 말한다. - 팀별로 도착문화와 카톨릭 문화를 체험한다. 3. 미술관 관람 - 미술관 관람에 앞서 주의사항을 말한다. - 팀별로 둘러본다. 4. 점심식사 및 자유 시간 - 중남미 문화원에서 판매하는 스페인 음식인빠에야, 멕시코 전통·대중음식 타코(Tacos)를 체험해 본다. - 점심 식사 후 조각공원에서 자유 시간을 가진다. 5. 활동 장소에서 집으로 귀가			3시간	
정리	1. 소감 나누기 2. 다음 회기 활동 소개 3. 다음 회기 준비사항 공지			30분	

제6장 결 론

현재 모든 국가들은 세계화, 지구촌화의 가속화에 따른 국가 간 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국제결혼과 이주노동자 등의 증가로 인해 외국인 인구가 총인구의 1%를 넘어서면서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08. 5. 1. 현재 외국인 주민은 891,341명으로 주민등록인구(49,355,153명)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외국인 주민 891,341명 중 2008년 결혼이민자는 144,385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16.2%에 해당하며 2007년도에 비해 17,430명(13.6%)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세는 당연 출생 자녀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국제결혼 비율의 증가세로 인하여 당연 출생 자녀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총 58,007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6.5%이며 2007년 44,258명 보다 현재 2008년에는 58,007명으로 2007년보다 31% 증가 되어 이들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사회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문화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 받는 등 한국문화와의 융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급증하게 될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인식은 주로 편견과 차별에 의한 것들이 많아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 또한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단일민족주의 성향 때문에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받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아직 이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제도가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은 불이익을 받으며 이중고를 겪게 된다. 따라서 이제 국가와 사회, 학교, 가정 모두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때이다.

이에 학계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인식에 관한 연구와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그들이 학교에서 겪었던 편견이나 차별에 대한 연구가 차츰 시작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이 똑같은 구성원으로 어울릴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 그들을 더 부각시키고, 특별한 존재로 인식시키는 방안들이 대다수여서 다문화가정 아동이 상처를 받아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반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차별은 상호작용 관계에서 주로 나타나기에 중요하며 또한 아동기에는 인식을 깨우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일반아동이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가지게 되면, 일반아동 성장의 전 과정에 영향을 끼치며, 성인이 된 뒤에도 차별로 나타나

사회전체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유지·강화되며,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인권침해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일반아동들과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의 누적 때문에 더 큰 사회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에, 우리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의 인식차를 조사·분석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이들의 편견을 재고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만의 문제가 아닌 일반아동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의해 일반아동들이 다문화가정 아동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비교적 긍정적인 답변이 많이 나와 서로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대한 인식 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반(反)편견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동아리 프로그램으로 6개월간 놀토를 활용하여 만남을 주최하고, 아동들이 서로를 꾸준히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서로에게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시키고, 타인에 대한 이해심 및 협동심을 기르고 친밀감을 형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친구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아동의 사회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나아가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편견을 재고하고 그들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아닌 주류집단인 일반아동의 인식과악을 통해 소수집단인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편견을 찾으려 했다는 점과, 이들의 편견과 고정관념, 그리고 상호간의 관계를 개선하며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찾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새로운 시각에서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현재 존재하는 프로그램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띠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도약하였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조혜영 [저], “다문화 자녀의 학교생활 실태와 교사, 학생의 수용성”,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위원회, 2007, PP. 109

이화정, 양병찬, 변종임[공저],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의 실제”, 서울: 학지사, 2005, PP.59~168

2. 논문

(1) 학술지

김현희, “다문화 복지 아동, 청소년의 실태와 과제”, 청소년 보호 지도 연구, 한국 청소년 보호 지도 연구학회, PP. 76~ 77, 2007

이재분, “한국 내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 재학 현황 및 문제”, 이주가정청소년 정책수립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무지개청소년센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PP. 120, 122, 2008

(2) 학위논문

서혁, “다문화 가정 현황 및 한국어 교육 지원방안”, PP. 2~3 , 2006

김경자, “다문화 가정 아동의 심리적 문제와 학교 적응”, PP. 1, 10~11, 2008

승해경, “경상남도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 및 방과후 생활분석”, PP.13, 2008

홍영숙, “다문화 가정이 봉착하는 자녀교육 문제와 시사점”, PP.11,13 ,2007

김명선, “다문화 가정 중학생을 위한 학교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구안”, PP. 24,37,39~40 , 2008

2. 기타 참고 자료

(1) 홈페이지

행정 안전부 <http://www.mopas.go.kr>

언론재단 <http://www.kinds.or.kr>

안산시 청소년 수련관 <http://www.ansanyouth.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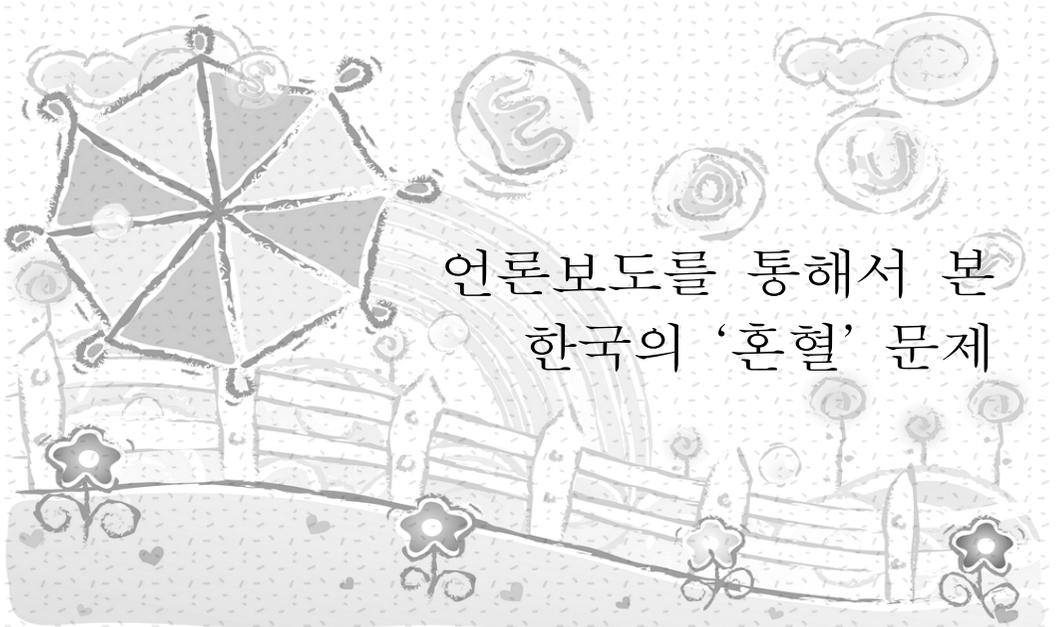
국립 청소년 수련관 <http://www.nyc.or.kr>

무지개 센터 <http://www.rainbowyouth.or.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www.kwdi.re.kr>



학생부
가 작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한국의 '혼혈' 문제

한 솔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목 차

Contents

국가인권위원회

I. 서론	23
1. “순혈주의” 국가에서 “혼혈”에 눈뜨기까지	273
2. 이 글의 초점과 방법	27
II. 하인스 위드 현상을 통해 본 우리의 “혼혈” 문제	87
1. 혼혈에 대한 관심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다	9·
2. 혈인에게 희망을 쏘다	10
3. 대중의 파토스를 움직이다	38
4. 가난-눈물-천사로 조건화된 삶을 극복하는 이야기	4·
5. 또다른 측면: 성공한 뒤에야 “한국인의 피”가 부각된다	88
6. “땀으니 쓴다”는 태도는 보통 혼혈인에 대한 또다른 차별?	98
7. 하인스 위드 거울을 통해서 본 우리의 자화상	0·
III. 편견과 차별의 고통,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	2·
1. 언어적 폭력	2
2. 혼혈인의 성공기회는 연예인과 운동선수 뿐?	7·
3. 혼혈 연예인에 특수한 상황	99
4. 차별을 방지하는 법적 변화의 전망	20
5. 혼혈인—줄어들고 있다?	30
6. 혼혈인—너무 불쌍하기만 한 존재?	60
IV. 결론	30
1. 이 글의 요약 및 한계	0
2. 마치는 소감	3

요 약

“대한민국은 반만년 단일민족국가”라는 관념이 최근 도전받고 있다. 역사적 사실에도 맞지 않고, 인종차별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소위 ‘순혈’에 속하지 않는 ‘혼혈인’들에게 편견과 차별 속에 살아가도록 만든다. 혼혈인들이 겪는 고통에 주목하여 나는 언론 보도를 통해 나타난 우리사회의 ‘혼혈’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고자 했다. 언론은 여론을 반영하고 또 형성하기에 ‘혼혈’ 문제에 있어 언론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2000년~2007년까지의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혼혈관련 기사량은 2006년에 크게 늘어났다. 하인스 워드 때문이다. 하인스 워드에 대한 기사는 가난-눈물-천대를 딛고 일어난 영웅의 스토리로서 혼혈인에게 희망을, 대중들에게 찬탄을 자아냈다. 그러나 성공한 뒤에야 한국인임을 부각시키는 면, 보통의 혼혈인에게 오히려 차별적으로 다가오는 면을 지적했다. 더욱이 ‘어머니’와 ‘김치’로 상징되는 한국인상을 끌어냄으로써, 그들을 ‘추방’하는데 기여했던 한국민족주의와 가부장제 강화에 이용하는 면을 비판했다.

다음 혼혈인에게 가해지는 편견과 차별의 실체를 살펴보았다. 혼혈인에게 가해지는 언어적 폭력, 직업범위의 제한 등을 지적했다. 혼혈인의 성공기회는 연예인과 운동선수 뿐이었다. 유명혼혈인들에게는 ‘혼혈’이란 딱지를 늘 붙이고, 혼혈임을 ‘고백’하라는 압력에 시달림을 보았다. 가장 문제는 혼혈인들이 한국땅에 살수 없어 혼혈인 자체가 격감해버린 상황이다. 이는 인종차별로 인해 간접적 강제이주를 당한 셈이다. 다른 한편 최근 혼혈연예인들이 혼혈성을 오히려 강조하는 모습에서 긍정적 자기확신의 등장을 주목했다.

이 글의 한계는 새롭게 대두된 ‘코시안’을 다루지 못한 점이다. 코시안의 아동들은 사회복지, 교육의 관점에서 주로 다루어지기에 초점이 분산될까봐 가끔 인용하는 정도로 했다. 가장 큰 문제는 ‘혼혈’이란 용어를 계속 썼다는 것이다. 용어의 문제를 느끼지만, 그 용어 자체가 현상을 대변하기에 대안을 찾을 수 없었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I. 서론

1. “순혈주의” 국가에서 “혼혈”에 눈뜨기까지

2007년 8월 나는 제네바에 있었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Committee on Elimination of All Kinds of Racial Discrimination)에 NGO 활동가들의 고등학생 인턴 자격으로 참관하기 위해서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인종차별철폐조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정부보고서를 발표했고, 그에 대하여 8월 9일 위원회의 보고관들이 그 보고서의 사실성에 대한 의문 또는 보고실태를 통해서 볼 때 개선되어야 할 점을 권고하였다. 이미 한국의 인권 NGO의 활동가들이 서류 및 미팅을 통해 문제점을 UN보고관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격했으므로, 그것이 실제 회의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회의에서 가장 지적이 되었던 정부 보고서의 조항은 두 가지였다. 다음과 같다.

4.대한민국은 단일민족국가로서 ‘인종’을 기준으로 한 인구조사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인종별 인구 구성 상황이 명확히 자료화되어 있지 않다.¹⁾

44. 단일민족의 자긍심에 기초한 ‘순혈주의’는 혼혈인의 취업, 결혼, 주거, 교육, 인간관계 등 생활 전반에서의 다양한 차별을 초래한다. 특히, 혼혈에 대한 차별은 세대 간에 대물림되는 형태로 나타나므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²⁾

1) “The Republic of Korea is an ethnically homogeneous country with a total population of 47,254,000 as of November 2005. However, the ethnic composition of the population is not clearly documented since the Republic of Korea does not conduct a census on ethnicity.”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9 of the Convention, Republic of Korea, CERD/C/KOR/14(18 August 2006), in <http://daccessdds.un.org/doc/UNDOC/GEN/G06/438/59/PDF/G0643859.pdf?OpenElement>.

2) “The Principle of the ‘pure-blooded,’ based on the Republic of Korea’s pride in the nation’s ethnic

심의 회의에서 보고관들이 가장 주목한 부분은 “대한민국은 단일민족국가”라는 명제였다. 더 나아가 ‘순혈주의’라는 용어가 품고 있는 문제점을 예리하게 짚어냈다. 심지어 “순혈주의”는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국내에서는 “우리는 백의민족”이니 “단군의 자손”의 자랑(pride)이 국민적 상식이자 지식³⁾인데, 그 자랑이 국제무대에서는 조롱거리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렸다. 다음과 같은 것이다.

Lingdgren 위원: 순혈(pure-blooded) 라는 것은 어떠한 피를 말하는 것입니까? 빨간 색? 파란색?”

Thronberry 위원: “순혈주의’라는 것은 인종 차별을 조장하는 ‘강패 철학’(gangster philosophy)라고 보여질 수 밖에 없다.”⁴⁾

물론 보고관들은 대한민국이 최근까지 이룩한 인권의 성과를 치하했다. 그러면서도 거의 모든 보고관들이 순혈주의라는 것을 비판한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 한국인의 기본적인 정서와 생각 그 자체가 바로 인종주의적 편견에 바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순혈”과 “혼혈”로 자연스럽게 나누는 인식, 그리고 차별적인 인종편견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깨달으면서, “혼혈” 이슈는 나의 중심적 관심사가 되었다.

**

한국에 돌아온 후 내가 참관한 UN회의가 어떠한 조명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일반인의 잘못된 인식을 더 강렬히 느꼈다. ‘싸이 월드’, ‘네이버’, ‘다음’, ‘야후 코리아’, ‘엠포스’ 등의 유명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기사에는 그 날의 심의회의에 대한 내용과 함께 순혈주의에 대한 각성을 요구하는 기사들이 많이 떴다. 그러나 이런 정돈된 기사와 달리, 가장 원초적 인식을 오히려 표현한다고 볼 수 있는 “덧글”의 내용은 시큰둥하거나 부

homogeneity, has incurred various forms of discrimination, largely invisible and not illegal, against so-called “mixed-bloods” in all areas of life including employment, marriage, housing, educ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is is particularly serious since such practices are passed down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위의 주. 44.

- 3) 다음은 우리 교과서에 등장하는 단일민족주의 표현들이다. “우리나라는 한 핏줄을 이어받은 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초등학교),” “바로 우리가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한 민족이라는(중학교),” “본래 우리 민족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 혈통을 지닌 단일민족(고등학교)” 등등 초/중/고를 가리지 않고 단일민족의 혈통은 이의없이 언급된다. 인용구는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인데, 박경태, 소수자와 한국사회, 후마니타스, 2008, 219면에서 재인용함.
- 4) 회의석상에서 필자가 받아적은 내용임.

정적인 게 압도적이었다.⁵⁾ 이를 볼 때 한국에서의 혼혈의 문제는 기본적인 인식의 문제이런 것을 느꼈고 기본적인 인식을 깊게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순혈주의에 대한 또다른 문제점에 대해 나는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다. 작년과 올해 나는 <열국아이학교>라는 난민신청자들의 자녀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틈틈이 시간을 내어 했다. 내가 만난 난민아이들은 아프리카에서 내전을 피해 부모와 함께 탈출한 경우인데, 그들이 한국에서 적응하는 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느꼈다. 아이들은 한국말을 하고, 부모는 본국어(정확하게는 그 본국을 식민지로 만든 유럽어)를 하니 우선 가족내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골목과 학교에 가면 피부색으로 인해 따돌림을 당하며, 멸시를 못참고 싸우면 말썽꾸러기가 되었다. 그들을 반갑게 맞이해주는 열국아이학교에 오려니 너무 멀고 차비도 없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면 무언가 멸시적 시선으로 쳐다본다. 아마 혼혈인들이 당하는 차별과 비슷한 차별을 이들도 겪어야 할 것임을 생각할 때 ‘짠’한 느낌이 들었다. ‘살색’에 대해 단일한 관념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순혈’ 아닌 사람들이 겪어야 할 고난은 한국에 사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두루 체험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난민수용정책은 너무도 인색하다.⁶⁾ 난민아이들과 함께하며, 순혈주의의 고집이 또하나의 인종주의가 아닌가 하는 지적에 점점 공감이가 갔다.

2. 이 글의 초점과 방법

‘혼혈’의 반대말은? 물론 ‘순혈’이다. ‘단일민족’의 순혈주의라는 폐쇄적인 인식이 존재하는 한국에서 혼혈의 문제는 어떻게 조명해야 할까? 더욱이 최근 인종 구성이 급변하며 다문화 사회로 변화할 때 생겨나는 혼혈에 관한 문제는 또한 어떻게 조명해야 할까? 몇몇

5) 엠파스에 나온 조선일보를 예시적으로 인용한다. <2007-08-25 한국을 ‘인종차별’ 국가라 부르는 걸까> rbsgudrkarkr: 단일민족 국가라는 말을 사용하는 그 자체가 인종차별이다, 이것을 자각해야한다, dmsens69: 웃기고들 있다. 다민족 국가들은 무슨 지상 천국이니? 중남미를 보라. 말이 좋아 다민족 국가지, 백인들이 주인 노릇하면서 유색 인종들을 악질적으로 착취하고 있다. ... 침략자인 백인의 후예들은 원주민들을 착취한 돈으로 땡땡거리며 호화관으로 산다.

aizencom: 우리는 우리식대로의 민족주의를 가면 된다. 종교 문제를 보라. 식구들 중에 종교가 다른 경우가 있어도 대개는 무리 없이 지내는 것이 우리 나라 아닌가? 대체로 그렇다는 거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얼마나 잘 지내는가? 혼혈이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는 우리 민족주의를 잘 살려가면 된다.

6) 이호택, “재한 난민의 인권실태,” 서울지방변호사회, **난민의 실태와 법적 지위에 관한 세미나**, 2008.7.15. 참조. 이 논문의 5~6면에는 한국의 난민신청과 인정현황이 나와 있다. 2008년 5월까지 난민신청자의 총수는 1,951명인데, 그 중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의 총수는 76명에 불과하다.

연구를 살펴보았다. 큰 줄기는 1) 혼혈의 진위성 여부. 즉 우리나라에서 ‘순혈주의’라는 개념의 역사적인 타당성 여부 2) 혼혈인에 대한 차별, 그리고 법, 행정 절차 등의 문제 3) 다문화가정의 문제와 그 자녀들의 교육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나름대로 중요한 성과이며, 좋은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현재 펼쳐진 담론의 형태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졌다. 한국에서 혼혈인에 대한 차별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식 문제다. 특히 우리사회는 신체나 외모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정상적으로 여기고, 차별하는 경향이 있다.⁷⁾ 기존 연구들은 실질적으로 ‘인터넷의 댓글’과 같은 수준의 인식과 표현이 등장하는 사고의 바탕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 기본적인 일반인의 인식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혼혈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거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혼혈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파헤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설문조사의 방법도 있고, 관찰의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등학생인 나로서는 설문조사나 참여관찰 모두 능력과 비용 면에서 감당불능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내가 근본문제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문제는 수치 통계로 설명되기 어렵다. ‘인식’의 상황을 둘러싼 복잡한 콘텍스트가 존재한다. 나에게 허용된 조건과 나의 문제의식을 고려하여, 내가 택한 방법은 “언론”에 반영된 현상을 통해 혼혈문제를 검토하고 비판하는 것이었다.

언론은 정직한가. 언론은 모든 면을 제대로 보여주는가.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언론은 대중이 알고 싶어하는 이슈들을 취재해서 보여주는 동시에, 여론을 이끌어 간다. 사실을 표현하고, 여론을 형성한다. 언론은 대중의 관심사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대중의 관심사를 유도하기도 한다. 혼혈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의 주도적 역할이 좀 더 두드러진 것 같다. 혼혈인의 수가 적으므로 대중들은 일상적으로 혼혈인들을 대하는 편은 아니다. 그러기에 혼혈인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정보를 보다 얻는 편이다. 최근에 혼혈인의 수가 급증하면서 대중에게 가까운 이슈가 되기 전에는 더욱 그랬을 것이다.

‘다문화가정자녀,’ ‘하인즈 워드,’ ‘코시안’ 등의 단어는 최근의 혼혈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이런 단어는 아주 낯선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단어로 상징되는 변화상에 이젠 익숙하다. 혼혈이 증가하는 현실적 변화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문화 가정을 직접 접해보지

7) 김동춘, “한국의 인권상황과 인권문제,” 김동춘-한홍구-조효제 엮음, **편견을 넘어 평등으로**, 창비, 2006, 35면.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숙하게 느끼는 이유는 언론을 통해 많은 케이스를 접해 보았기 때문이다. 언론은 위 단어에서 나타난 담론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여론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 글에서는 혼혈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언론을 통해 비추어진 “혼혈”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를 위해서 일단 거시적인 관점에서 혼혈에 대한 기사가 전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어떤 기사가 시대별 관심사인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언급했다. 이런 경우는 방대한 양의 모든 기사를 보여주기 보다는 통계를 사용하거나 혹은 그 추세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기사를 언급하였다. 그렇지만 또 전반적인 면에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비판하는 좋은 기사는 대안으로써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사들 중 혼혈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간접적으로라도 심어줄 우려가 있는 기사에 대해서는 우려할 점을 적었다.

조사대상으로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기사를 선택했다. 기간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두 신문에서 “혼혈(인)”을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최근의 혼혈(인)에 대한 인식, 혼혈인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8년간의 기사를 기본 자료로 삼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키워드 검색을 늘렸다. 최근의 현상을 다루면서 가령 “코시안” “하인스 워드” “다니엘 헤니”와 같은 관련기사들을 참조했다.

여러 신문을 두루 검토하면 더욱 바람직하겠지만, 방대한 양 때문에 오히려 초점을 놓칠까 걱정되었다. 많은 신문 중 ‘조선일보’와 ‘한겨레’ 둘 만을 택한 이유는 이 두 신문이 ‘보수’와 ‘진보’의 특징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 신문 사이에는 강조점과 표현내용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조되는 여러 기사와 논조를 합쳐서 균형적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동시에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혼혈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문제의식을 언론보도를 통해 진단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언론과 대중은 사실 쌍방향적이다. 그렇다면 언론에서 다루어진 혼혈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는 것 뿐 아니라 대중의 반응 또한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시시콜콜한 댓글을 모아 전반적 의견을 추론해나가는 과정과 기사들에 대한 반응을 설문 조사하는 것 까지. 아마 언론학을 본격적으로 배운 상태에서 도전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여 이 점을 보류한다. 또 하나의 주요한 쟁점은 언론보도에 대해 혼혈인 자신들의 반응

은 어떤가 하는 점이다.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전문연구에서 언급되는 경우⁸⁾가 있으나, 이 점에 대해서도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했다. 결국 이 연구에서는 언론에서 다루어진 혼혈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고 분석하는데 집중하였다.

II. 하인스 워드 현상을 통해 본 우리의 “혼혈” 문제

한국에서 한순간에 혼혈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사건은 2006년 2월 6일 하인스 워드가 미국 슈퍼볼 MVP로 등극한 것이다. 이는 모든 언론을 통해 순식간에 대중에게 알려졌다. 그는 무엇보다 “혼혈”인으로 묘사되었다. 이 사건 직후부터 언론에 혼혈 이야기가 확 늘었다. 하인스 워드의 성공 신화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혼혈인에 대한 편견을 문제삼고, 그들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 말하게 되었다. 이는 언론만이 그러했던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화두가 되었다.

물론 하인스 워드의 대두 전 연예인 다니엘 헤니의 등장도 있었다. 그러나 보도의 양에서 우선 비교가 되지 않았다.→ 물론 하인스 워드의 대두 전에 연예인 다니엘 헤니의 등장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을 혼혈과 관련짓는 보도의 양에서 우선 비교가 되지 않았다. 조선일보의 경우 [다니엘 헤니+혼혈]로 검색할 때 총 10건이 나오는데 반해, [하인스 워드+혼혈]로 검색하면 총 74건이 나온다. 기사의 크기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다니엘 헤니는 하인스 워드보다 훨씬 ‘혼혈’ 관련도가 낮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론에서의 ‘하인스 워드’는 무엇이었던가?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서 하인스 워드를 알게 되었다. 해마다 미식축구 슈퍼볼에서는 영웅이 한사람씩 등장한다. 그러나 한국 대중들은 그 영웅들의 이름을 거의 알지 못한다. 그런데 하인스 워드를 모르는 한국인이 없을 지경이 된 것은, 그가 ‘한국계’였기 때문이고, 그 중에서도 한국의 기지춘 현실이 만들어낸 역경을 이기고 스타가 되었음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이다. 언론은 하인스 워드의 삶에 자연스럽게 투영된 한국계 혼혈인의 어려움을 기사화했다. 특히 하인스 워드와는 약간 다르지만 한국 땅에 존재하는 혼혈인이 언론의 집중 관심을 받았다. 이리하여 하인스 워드는 한국인의 뇌리에 무엇보다 ‘혼혈인’의 대표선수로 자리잡았다. 그에

8) 박경태, **소수자와 한국사회**, 후마니타스, 2008, 247면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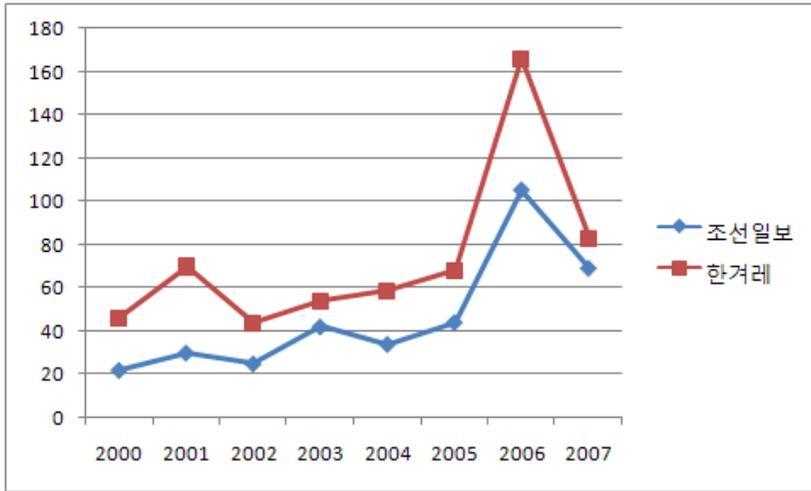
대한 모든 기사가 긍정적 인물의 창조였으므로, 언론을 통해 혼혈인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조성되었다.

한편, 하인스 워드(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 보통 한국인들은 뭔가 찝찝한 반성거리를 갖고 있었다. 이 점을 언론이 부각시켰다. 하인스 워드의 혼혈인 자녀돕기와 같은 후속 활동들도 그 점을 부각시켰다. 이렇게 하여 혼혈에 대한 자각적 태도의 기사는 ‘피’에 대해 한국인이 가지는 양면적 태도까지 파헤침으로써 한층 더 진지한 혼혈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1. 혼혈에 대한 관심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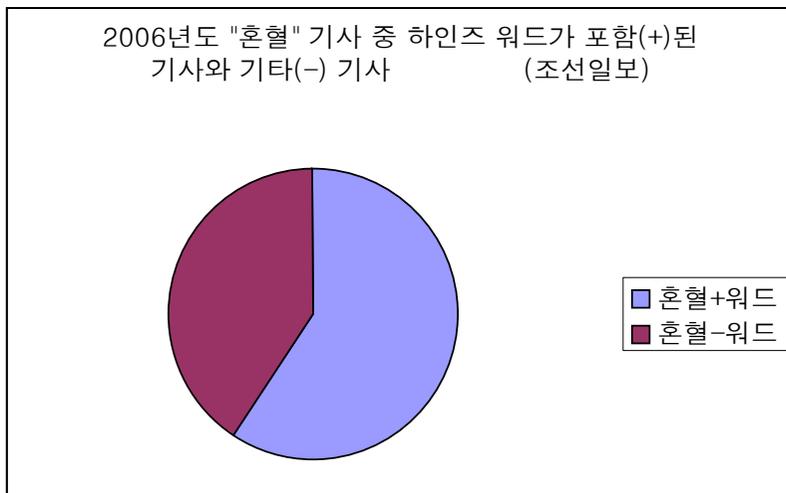
“혼혈”의 키워드를 갖고 기사를 검색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면은 2006년도 기사가 압도적이라는 사실이다. 그 이전 년도들과 2007년에 비해 2배 이상의 수치이다. 2005년에 연예인 다니엘 헤니가 하나의 이슈로써 6월 초부터 부각되었고, 2007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순혈주의’ 논쟁 덕분에 기사가 나올 수 있었다. 그런데 2005년과 2007년은 다른 해와 비교하여 대폭적 상승세가 없다.

한겨레와 조선일보의 기사 수의 상승세와 숫자를 통해 하인스 워드의 영향력을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롭다. 2006년 전까지는 기사 수의 증가, 감소, 기울기 등이 일정하지 않다. 심지어는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전환할 때의 그래프를 보면, 한겨레는 약간 상승한 반면 조선일보는 약간 하락하기도 하는 등 일정하지 않는 면을 보인다. 이를 볼 때 2000년대 초반에는 언론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쏟을 만한 ‘이슈 거리’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에 비교해본다면, 2006년 하인스 워드는 언론사의 논조에 관계없이 국민적 사건으로 엄청난 관심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그림 1> '혼혈' 검색어로 검색한 결과 연도별 보도량

다음 2006년도 기사를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조선일보를 예로 들어보면, “혼혈”의 키워드로 검색되는 105건 중에서 “하인즈 워드”가 포함된 것이 총 62건이며, “하인즈 워드”가 포함되지 않는 기사가 43건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혼혈” 기사는 “하인즈 워드”의 직접 영향권 안에 있거나, 그와 관련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그림 2> 혼혈-하인즈 워드의 상관성

그러면 하인스 워드는 얼마나 지속성을 가질 만한 소재가 될 수 있을까. 2007년의 전체 “혼혈” 기사 중에서 하인스 워드가 언급된 비율을 보면 될 것이다. 2007년에도 “혼혈” 관련 기사에서 “워드”의 비중은 다른 상관언어보다 더 높은 편이다. 특히 2007년 8월 중순부터 9월까지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순혈주의’ 논쟁이 제기된 시기였고 이는 하인스 워드의 아우라와 맞물려 우리 사회에 던져준 혼혈에 관한 문제에 대한 접근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게 한 점도 있다. 인종차별에 대한 여러 논설적 형식의 글에서 하인스 워드가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인스 워드는, 흔히 말하는 하나의 문화적 ‘코드’가 된 것이다. 그것도 ‘혼혈’에 특별히 연관된 코드로 말이다.

2. 혈인에게 희망을 쏘다

다음 ‘하인스 워드’의 코드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나, 사회를 어떻게 바꾸었나 질문하고 싶다. 2004년과 2006년의 <한겨레>의 두 기사를 비교함으로써 간접적인 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지촌여성인권단체 ‘두레방’에 방문해 국내거주 혼혈인 50명에게 물어본 설문조사의 한 내용이다.⁹⁾ 혼혈인 중 42.2%가 ‘자살시도 경험’이 있었다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준다. 그 밖에도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¹⁰⁾

- 학창시절 피부색으로 놀림받은 적이 있다. (73.3%)
- 피부색으로 따돌림당한 경험이 있다. (64.4%)
- 졸업이후에 길거리에서 쳐다보거나 수군거리는 것을 경험했다.(75.6%)
- 성희롱당한 경험이 있다. (29%)
- 성폭행당한 경험이 있다. (8.9%)
- 고용에서의 차별 경험이 있다. (44.4%)
- 이성교제 및 결혼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37.8%)

9) 연구보고서 원본은 박경태, “기지촌 혼혈인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3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03 참조.

10) “혼혈인 42.2% ‘자살시도’ 경험,” 한겨레, 2004-02-16. [서울/연합뉴스] 이하 통계는 신문의 내용을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부모에 대한 사회적 질타를 본 적이 있다. (24.4%)

이와 같이 혼혈인들은 출생부터 학교와 직장, 결혼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차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열악하다. 혼혈인 가구의 월평균 수입은 101만원, 생활비는 75만원, 혼혈인 본인의 수입은 월평균 89만원에 불과했으며, 저축은 거의 없는 반면 혼혈 가구의 평균 빚은 3천882만원으로 수입과 비교했을 때 감당하기 힘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반복적인 사회적 차별과 빈곤으로 인해 혼혈인들은 심각한 무기력과 심리적 장애를 갖게 돼 응답자 중 42.2%는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책도 없다. 혼혈인들의 62.2%는 차별을 받은 경우 참거나 무시한다고 답했으며, 법적인 대응방법을 찾겠다는 응답을 한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차별적 요소는 도처에 깔려 있는데, 대처방법은 없다고 느끼는 셈이다. 참으로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느낌이 들었다.

그들에게 희망의 빛은 없는가. 그런 의문점을 갖고 기사를 읽어가던 중 2006년도 4월에서 그런 '빛'을 찾아냈다. 2006년 4월의 <한겨레>의 한 기사였다. 이 기사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혼혈 청소년 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대한 것이었다.¹¹⁾ 첫째, 그들도 여전히 차별의 그림자 속에 살아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길을 다닐 때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수군·거리는 경험을 했다 (10%)

-학교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 (21%)

그러나 뭔가 바뀌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바라보는 미래상이었다. 자신의 미래 모습으로 ▶취미와 소질 계발 (22.9%)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것 (21.4%) ▶돈을 많이 벌거나 유명인이 되는 것 (각각 12.9%) ▶어려운 사람을 도와줌 (10%) 등을 꼽았다. 미래가 희망적이라는 응답은 71.4%에 이른 반면, 비관적이라는 응답은 없었다.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려면,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같은 설문지를 갖고 같은 조사기관이 조사해야 할 것이다. 물론 온갖 차별을 다 겪고 어른이 된 기지촌 어른들과 학교에서 차별을 받은 청소년은 다르다. 하지만 변화가 없다면 기지촌의 어른들의 절망이 청소년에

11) 혼혈 청소년 10명중 7명 “내 미래는 희망적,” 한겨레, 2006-04-05,

게 고스란히 되풀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자살경험”의 절망으로부터 벗어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응답의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 사이에 엄청난 정책적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보면, 두 해 사이의 가장 중요한 의식변화의 배경으로 하인스 워드 현상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모든 원인을 ‘하인스 워드’로 돌리는 것도 어렵다. 하지만 2년 전만 해도 암울했던 현실에서 하인스 워드의 대두는 2006년, 혼혈인에게 큰 희망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는 비혼혈인의 인식을 바꿀 수도 있었을까?

3. 대중의 파토스를 움직이다

하인스 워드라는 인물은 분명 언론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었다. 노력 끝에 엄청난 성공을 일궈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한국인’으로써. 신문마다 ‘대문짝만한’ 기사가 실렸다.



<그림 3> 하인스 워드 관련기사12)

12) 왼쪽은 2006년 2월 7일자 한겨레 1면, 오른쪽은 같은 날짜 조선일보 1면 기사,

하지만 단순한 성공이었다면 이렇게 큰 이슈가 되진 않았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겼던 것은 무엇일까? 바로 파토스(pathos)의 힘이였다. 하인스 워드의 인생은 대중들의 연민을 자아냈다. 한국인 앞에서 그는 단순히 가난과 시련을 딛고 성공한 일개 스포츠 선수가 아니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힘겹게 살아남을 수 밖에 없는 혼혈인이었다.

혼혈인으로써의 하인스 워드는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 또 혼혈인으로써 하인스 워드는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극복했을까? 혼혈인이라는 것은 하인스 워드의 아이덴티티(identity) 중 단 한 측면인데 그 한 측면만으로 한 사람을 조명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한국의 언론에서 나타난 하인스 워드는 ‘혼혈’으로써의 아이덴티티였다. ‘혼혈’의 콘텍스트 속에 위치가 매겨진 것이다.

4. 가난-눈물-천시로 조건화된 삶을 극복하는 이야기

그의 아이러니한 인생에서 한국인은 무엇을 배웠나? ‘가난’, ‘어머니’의 이슈에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사회에서 혼혈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고난의 짐을 지고 출발한다는 것이다. 그에게는 가난하고 눈물흘리며 천시받는 삶이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워드는 1976년, 주한 미군으로 복무했던 흑인 병사 워드 시니어와 그의 한국인 어머니 김영희씨 (56) 사이에서 태어나 다음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곧 그의 어머니와 헤어졌[다]....¹³⁾

13) “어머니 눈물이 영웅을 키웠다.” 조선일보, 2006-02-07, 종합A1면.

위드의 부모의 결합은 흑인병사와 한국인 여성이다. 미국과 한국의 특수관계 속에서 미국인 군인이 한국에 왔고, 한국인 여성과 결혼했다. 그로부터 태어난 아이가 혼혈인이다. 그들의 피부색으로부터 무언가 사회적인 눈초리가 따가우며, 한국에서는 참으로 그들을 키우기 어렵기도 하다. 그런 이유도 있겠고,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으로 갔다. 그런데 그런 가정이 잘 유지되지 않는 것 같다. 부모는 곧 헤어졌고, 엄마는 열심히 일해야 했고, 아이는 방치된다. 벌써 경제적 가난과 정서적 결핍이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에서도 그런 가난과 결핍이 당연한 것일까. 이런 가정과 이런 자녀가 한둘도 아닐 텐데, 한-미 양국 정부는 적절한 대책이 없었을까. 우선 하인스 위드의 케이스처럼 미국에서 사는 한국 혼혈에 대한 정보에 대해 보자.

“미국에서는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가 18살이 되기전까지 아버지가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돼있지만 한국 여성들에게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두레방에서는 미군과 국제결혼해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인 여성 가운데 90% 정도가 이혼을 한 채 살고 있는 것으로 미뤄 짐작하고 있다. 물론 한-미 양국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는 알려진 바가 없다.¹⁴⁾

이는 한국에 사는 1세대 혼혈인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똑같은 기사를 보자

[하인스 위드 처럼 1세대 혼혈인 집안은] “다수가 절대 빈곤층입니다. 미군 아이를 낳은 뒤 혼자 사는 여성들은 대체로 기초생활수급권자이지만, 자식과 함께 사는 여성들은 노동능력이 있는 젊은 자녀가 있다고 해서 그것도 안돼요. 혼혈인은 취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절대 빈곤 상태인거죠.”

결국 하인스 위드와 같은 출생조건을 가진 혼혈인에게 경제적 빈곤과 정서적 결핍은 일반적 환경이었다. 그런데 빈곤과 결핍은 말처럼 단순한 것이 아님을 기사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다. “빈곤”과 “결핍”은 정말 갖가지 모양으로 나타나, 아동기의 하인스 위드에게 온갖 타격을 입혔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14) “한 미 ‘위드 엄마 찬양’ 속사정은?” 한겨레, 2006-02-14, 사회종합면.

1976년 서울에서 워드를 낳았고 다음해 미국으로 같이 건너갔다. 하지만 워드는 곧 어머니와 헤어졌다.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김씨는 영어를 못하고 경제능력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양육권마저 박탈당했다.¹⁵⁾

부모 중 아버지는 그를 떠나갔다. 그는 엄마와 경제적 절대빈곤에다 (언어능력이 있는 아버지의 떠나감으로 인해) 언어적 소통을 차단당했다. 그런 모자를 국가가 보호한 게 아니라, 국가는 법의 이름으로 모자를 떼어놓았다. 모든 힘있는 세력(아버지, 정부, 법)은 그를 버렸다. 기사는 이어진다.

김씨는 아들과 같이 살겠다는 일념으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미국에 남았다. 닥치는 대로 허드렛일을 맡으며 돈을 모은 뒤, 시부모'를 설득해 워드를 자신이 머무르는 애틀랜타 인근의 포레스트 파크에 데려왔다. 김씨는 잠자는 시간만 빼고는 하루 16시간씩 세 가지 일을 했다. 접시를 닦고, 호텔 청소를 하고, 잡화점 계산대에서 일했다. 워드가 깨기 전 밥을 차려놓고 출근한 뒤, 다시 워드가 학교를 끝내고 들어오기 전에 집에 잠깐 들러 저녁을 차려놓고 다른 일터로 나가는 식이었다.

워드는 “방과 후 집에 오면 랩에 씌워진 밥이 어김없이 식탁에 있었다. 전자레인지로 데워먹었는데 계속 먹다 보니 입에 익숙해졌다”고 말했다.

혼혈인으로 태어난 그에게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었다. 양육권마저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또 법의 영역을 뚫고 어머니의 품으로 갔지만 아무런 지원과 보조도 없는 무관심 속에 어머니는 세가지 일을 번갈아가며 16시간씩 일해야 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싶어 떠나온 아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거의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 빠지게 된 것이다. 물론 어머니의 사랑은 더 절실하게 표현되었는지 모른다. “랩에 씌워진 밥”은 없는 시간에 엄마의 사랑이 더 안타깝게 나타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앞에 사진으로 붙였던 제목에도 모두 “어머니”가 공통된 단어이다. 모성애가 특별히 강조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항상 헌신하는 존재로써의 이미지를 지닐 때가 많다. 하인스 워드의 어머니는 그런 이상적 ‘전통 어머니’로써 비추어졌다. 그의 어머니는 한국적인 것을 많이 강조했고, 하인스 워드는 처음에 그런 어머니를 따르지 않았지만 그녀의 헌신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런데 뜻밖이다. 언론에서는 그의 어머니는 그를

15) “어머니 눈물이 영웅을 키웠다,” 조선일보, 2006-02-07, 종합 A1면.

한국식으로 키웠다고 한다.

김씨는 위드를 한국식으로 키웠다. 집에 들어오면 한국식으로 신발을 벗으라고 했고, 항상 한국 음식을 상에 차려냈다. 위드는 “한국, 한국 문화에 거부감이 일어날 정도였다”고 회상했다.¹⁶⁾

어머니는 단지 한국식 스타일을 고집한 것이 아니다. 어머니는 한국 전통에서 그토록 강조해온 헌신하는 모성애를 가득 담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아침, 작은 사건이 어린 위드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고 한다. 위드는 평상시처럼 어머니가 태워주는 차로 등교 하면서 친구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깊숙이 몸을 숨겼다. 하지만 급히 차문을 열고 나가면서 고개를 돌리다 어머니의 눈물을 보게 됐다.

위드는 그때 “나를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다니...그래 아무리 놀려도 나는 한국인의 피가 섞인 혼혈이다. 그게 내 인생이다” 하는 생각이 스쳤다. 언제나 또래 아이들보다 비싼 옷을 사주고 원하는 것을 다 해주던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 한 번도 돈을 써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은 하인즈 위드를 다시 만들었다. 이후 그의 인생엔 오로지 어머니만 존재했다. 위드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미식축구를 처음 접했다..... 하지만 김씨는 위드를 운동선수로만 키우지 않았다. 고교 졸업 무렵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구단으로부터 계약금 2만5000달러 제안을 받은 위드에게 “학업을 계속해야 한다”며 대학 진학을 권유했다. 위드는 미식축구로 이름난 학교의 입학 제의를 뿌리치고 집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인 조지아대학을 택했다. 어머니를 홀로 두기 싫어서였다.

대학 때 위드가 이름을 날리자 어느 날 아버지가 학교로 찾아왔다. 위드는 “내게는 어머니만 있을 뿐”이라며 아버지를 만나지도 않고 돌려보냈다. 위드는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했다.

위드는 프로에 입단하면서 어머니에게 새 집과 벤츠 승용차를 선물했다. 올스타에도 4차례나 출전했고, 지난해엔 스틸러스 사상 최고 연봉 계약 소식을 전했다. 위드는 수퍼볼을 앞두고 “나와 어머니에게 수퍼볼 우승은 매우 특별한 것이다. 한국을 위해서도 우승하

16) 조선일보 2006-02-07, 스포츠일반면.

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꿈은 우승과 MVP 수상이라는 영예로 현실이 됐다.

“저는 어머니에게 포기하지 않는 근성과 끈기, 정직과 신뢰, 희생정신과 성실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배웠습니다. 지금의 저를 만든 것은 어머니가 몸소 실천하신 그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MVP로 뽑히고도 공을 작전을 세워준 코치와 동료에게 돌렸다. 어머니 김씨는 한 인터뷰에서 “아들에게 하는 얘기는 한 가지다. 겸손하라(Be Humble)고 한다”고 했다.

언론은 그와 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한국적 미덕을 열심히 찾아냈다. 어머니의 근성, 끈기, 희생, 성실성, 겸손, 그리고 효도의 덕목을 끌어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인임을 잊지 않음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그들의 한국방문의 목적은 “말로만 들었던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뜻을 나타내고 싶어서” 마련한 선물이라는 것이다.

5. 또다른 측면: 성공한 뒤에야 “한국인의 피”가 부각된다

담론을 파악하고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는 바로 그 담론이 누구를 통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 현재와 같은 담론으로 형성되었느냐는 것이다. 이는 현재 존재하는 담론을 파악하는 것 이상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인스 워드는 한국인인가. 많은 기사들은 그를 매우 ‘한국화’하는 데 열심이다. 물론 국적상으로는 미국인이지만, 그의 한국인적 면모가 훨씬 강조된다. ‘놀림 받아도 나는 한국인,’ ‘어머니 정성 담긴 갈비며 김치가 지금 당장 생각나,’ ‘절반의 한국인, 축복이라 생각’ 등의 부제를 보아도 그렇다. 물론 아마도 진짜 모습은 이런 언론의 묘사상과는 다를 수 있음이 암시되기도 한다.

[김영희 씨] “한국 사람 안쳐다보고 생각 안하고 살아온 30년이었어. 내가 워드 데리고 한국 왔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 놈 거지 밖에 안됐겠지? 여기선 누가 파출부라도 시켜줬을까?... 이제 와서 우리 워드가 유명해지니 관심을 참 많이 가져준다. 썸 그래. 부답스럽지 뭐.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짧지만 깊은 회한이 서려있는 푸념 속에는 혼혈 담론의 형성배경은 참으로 옳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살았더라면 성공은커녕 거지밖에 안될 조건을 만들어낸 것

은 한국이라는 환경이었다. 유명해지지 않았다면 한국사회는 여전히 혼혈인에 대한 비하감을 갖고 그를 대하게 될 것이었다. 그런데 언론의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오직 유명해졌다는 사실 밖에 없다. 이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이후에야, 비로소 그는 갑자기 한국인으로 맥락화된다.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절반의 한국인이라는 말이 그 때 갑자기 등장한다. 이렇게 성공한 혼혈인만이 하나의 호감있는 ‘이슈거리’가 된다.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팽배해있는 두가지 문제점을 드러낸다. 하나는 성공지상주의, 또 다른 하나는 ‘피’(혈통)를 하나의 사회적 아이덴티티로 사용하는 한국 사회. 그 두 가지가 합쳤을 때 하인스 워드의 대두가 가능케 되었다. 혼혈의 문제점을 집중부각시킨 하인스 워드 현상은 이렇게 새로운 담론의 가능성과 함께, 우리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인다.

6. “똥으니 쓴다”는 태도는 보통 혼혈인에 대한 또다른 차별?

그렇다면 바람직한 면을 계속 이어나가며 바람직하지 못한 면을 견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담론을 계속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되 바람직 하지 못하게 형성된 담론을 적절히 견제하고 비판해야 할 것이다. 언론은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해내고 있는가.

하인스 워드 기사에는 개인예찬의 시각이 아닌, 비판적 기사가 동시에 등장한다. 하인스 워드 모자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이슈화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사고가 문제라는 것이다. 한 신문 내에서도 예찬과 각성의 두가지 시각이 혼재한다. 조선일보보다 한겨레가 후자의 관점에 선 기사가 더 많다.

<워드 모자’와 혼혈인들 앞에 참회한다.>¹⁷⁾의 기사가 그 대표적이다. 거기서는 한겨레를 비롯한 여러 언론 매체들이 하인스 워드가 한국에 온 후 “움직임을 날날이 중계한” 것을 보고 일단 “어머니는 술한 악조건을 이기고 아들을 의연하게 키웠고, 아들은 미국 최고의 슈퍼스타가 됐으니 당연한 환대다”라고 일차적 의견을 밝혔지만 우리 자신에 대한 비판도 서슴치 않았다. “이런 법석에서 우리 사회의 가식이 먼저 느껴지는 건 왜일까”라는 말과 함께 “30년전 워드가 태어났을 때 조국은 어머니와 아들을 순혈주의 의식에 차서 경멸했다. 도망치듯 떠났지만 미국에서도 한국인사회는 이들을 따돌렸다”라는 말로 하인스 워드의 일시적인 대두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17) “워드 모자’와 혼혈인들 앞에 참회한다,” 한겨레, 2006-04-03 정치종합면.

또 다른 기사에서는 “‘일단은 뜨고 봐야 한다’를 확실하게 입증해 주는 전 세계적 사건, 아니 우리 한국에서만 특히 유별나달 수 있는 빅이슈가 우리 곁을 다시 찾았다.”¹⁸⁾와 같은 야유성 어조의 말로 시작해 처음부터 끝까지 언론의 일시적 관심에 대해 비판을 했다.

이 같은 비판과 함께 언론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하는 글이 실렸다. 대표적인 기사로 <인순이 윤수일 함중아 덕분에 혼혈문제 해결되었나?>¹⁹⁾이다. 신드롬은 일시적이고, 문제 해결에 도움 되지 않으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지였다.

기사의 논조에서의 차이점도 지적되었다. <조선>, <중앙>, <동아>, <문화> 등은 워드의 인생 역정과 그의 어머니와의 인터뷰를 중점적으로 기사화시키는데 반해, <경향>과 <한겨레>는 워드 열풍과 혼혈인 문제를 칼럼에서 다루면서 ‘국내 혼혈인에 대한 시각을 바꿔보자’는 제안을 했다고 비교시켰다. “혼혈 스타로 해결된다면 인순이 윤수일 나왔던 70~80년대에 해결되었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여러 네티즌들의 비판적 의견을 언급했다.²⁰⁾ 자칫 하인스 워드의 이야기는 “(혼혈인에게) 너희도 워드처럼 성공해라, 그래야 인정받는다’는 식으로 몰고가는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7. 하인스 워드 거울을 통해서 본 우리의 자화상

하인스 워드가 처해 있는 상황이 혼혈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주었지만 미묘한 착각으로 인해 잘못된 인식을 굳히는 경우도 있다. 하인스 워드 같이 국적으로는 미국인이지만 한국인의 ‘피’가 섞인 사람을 그냥 ‘한국인’으로써 받아들인다. 그러나 성공하지 않는 한국계 인사에겐 그런 한국인 상이 통용되지 않는다. 한국인이냐 여부가 성공의 여부에 따라 바뀐다는 것이다. 이 점을 특히 비판대상으로 삼은 부분은 기사가 아니라 몇몇 칼럼/시론이었다.

김어준은 과거 미국에서 존재했던 사회통념중 하나인 “‘한 방울 원칙’ (one drop rule)” 즉, “단 한 방울의 흑인 피만 섞여도 그 사람은 흑인으로 분류한다는” 원칙을 언급하며 현재 하인스 워드를 “한민족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사례로 만들어내려는...눈물겨운” 노력을 비판했다.²¹⁾ “평소엔 한 방울만 섞여도 온전한 한국인으로 안쳐주다 성공하면 한 방울만

18) “하인스 워드에 대한 지나친 관심 너무 속보이다.” 한겨레, 2006-02-08 사회면.

19) “인순이 윤수일 함중아 덕분에 혼혈문제 해결되었나?” 한겨레, 2006-02-10 사회면(인권복지).

20) 위의 기사. 혼혈의 담론에 숨겨진 우리나라의 코드를 파헤치며 다른 언론사의 논조까지 상호견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은 그만큼 하인스 워드 스토리가 여러 각도의 파급력을 가짐을 보여준다.

쉬여도 자랑스런 한국인이 되고 마는 한국형‘한 방울 원칙’”이라며 비판을 가했다.

또 더 강력하고 직설적인 비판도 있다. 한겨레의 한 논설²²⁾에서는 “천박한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는 소제목 밑에 세속적 자본주의와 결합된 민족주의에 관한 비판을 가했다. “미국 생활 2년만에 혀가 완전히 꼬부라진 박찬호의 모습을 보며 한국 사람들은 갑자기 혀 꼬부라진 사람에 대해 관대해졌다”와 같이 한 스타를 통해 편견이 깨진 사례를 몇가지 들으면서 “하인즈 워드라는 선수가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다가 그가 유명해지자 (정확히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자) 갑자기 혈통을 따지며 환호작약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사회의 금기들이 깨져나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과정과 그 뒤에 숨은 욕망이 너무 저열하다”며 강력한 비판을 하였다.

이 장의 앞머리에 하인즈 워드가 혼혈아들에게 안겨준 희망을 언급한 적이 있다. 그의 인생은 무척 감동적이다. 그 감동을 통해 혼혈 청소년에게는 희망을 주었고 대중들의 인식 변화 촉구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사례를 보고, ‘억울하면 출세하라’ 라든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게 교훈이 될 수도 있다. 보통의 혼혈아들에게는 더욱 큰 짐을 안겨줄수도 있다. 우리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질문은 근본적인 문제이다. 하인즈 워드(혹은 혼혈인)의 가정이 왜 그런 고난을 떠안아야 했는가 하는 것이다. 또 하인즈 워드는 한국을 떠나 영웅이 되어 금의환향했는데, 그럼 이제부터 한국에서는 제 2의 하인즈 워드가 탄생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도 중요하다.

그에 대한 답변은 쉽게 긍정적일 수 없다. 조국 교수의 칼럼²³⁾은 이 점을 정확히 짚고 있다. 그는 “단일민족의 신화에 사로잡혀 혼혈인들을 무시하고 폄하해왔”던 한국의 상태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인의 인식적 변화를 촉구했다. “그리하여 미국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성공하여 존경받는 혼혈 한국인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결론을 내렸다. ‘두레방’의 유명인 원장은 미국은 혼혈인에 대한 차별 제로 지대인가 하는 다른 종류의 질문을 던진다.²⁴⁾ “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국 순혈주의, 군사주의와 연관된 다양한 차별 속에 살아가”며 이는 “미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

“어머니”와 “김치”를 유달리 강조하는 언론은 또다른 문제점을 보여준다. “어머니” 그 것도 전통적 모성애상을 부각시키는 것은 기존의 젠더 질서를 오히려 옹호한다. 아버지는

21) 김어준, “단일민족은 사기다,” 한겨레, 2006-04-07, 문화종합.

22) 김두진, “[필진] 빌게이츠가 한국인 2세였다면,” 한겨레, 2006-02-09 사회일반.

23) 조국, “하인즈 워드, 한국엔 없다,” 한겨레, 2006-02-09, 정치종합.

24) “한미 ‘워드 엄마 찬양’ 속사정은?,” 한겨레, 2006-02-15, 사회종합.

없어도 되지만, 현모가 영웅이자 효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유달리 강조하는 것은 참으로 전통적이다. 거기다 “김치”의 민족적 맛까지 가세시키는 것은 너무 어색하다. 하인스 워드 모자의 감동적 성공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는데, 마치 한국인이기 때문에 영웅이 된 것처럼 묘사하고, 어머니의 ‘눈물’을 흘리게끔 만든 한국사회가 그 여성의 눈물을 이용하는 것은 아이러니의 극치이다.

하인스 워드 이야기는 영웅의 서사를 닮아 있기에 대중의 열광을 자아냈다. 그러나 영웅 서사가 그러하듯, 그 바탕에는 비극적 스토리가 깔려있다. 한두 영웅이 그 비극을 헤쳐나오는 데 성공했다고 해도, 그 비극적 배경은 여전히 그대로다. 모두가 영웅이 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우리가 더욱 봐야 할 것은 그 영웅탄생의 밑바탕이 되어 있는 그 비극적 상황 속에 살아가는 보통 혼혈인들의 아픔과 고난 그 자체이다. 그리고 그 아픔과 고난을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문제점 그 자체이다.

III. 편견과 차별의 고통,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

한국에서 혼혈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면 가장 처음 떠올려지는 것은 ‘차별’이라는 단어이다. 혼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차별로 표출된다. 따라서 언론에서 다루어지는 혼혈에 대한 차별 문제는 그 이슈화의 존재 자체로써 큰 의미를 지닌다. 혼혈에 대한 차별이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그 과정에서 혼혈인이 입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를 생생하게 드러냄으로써 개개인에게는 감성적 호소의 메시지를, 사회 전체적으로는 인식의 변화를 요구를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효과를 지닌다.

제II장에서도 인용한 2004년의 혼혈인 통계에 관한 기사에서는 여러 가지 차별의 종류가 나온다.²⁵⁾ ‘피부색으로 인한 놀림’ 뿐만 아니라 ‘따돌림의 경험,’ ‘성희롱, 성폭행’의 경험, ‘고용에서의 차별,’ ‘부모에 대한 사회적 질타’ 등이 있다.

차별의 내용을 보면 혼혈인들은 참 원초적인 차별부터 사회적 차별까지 다양한 차별을 받고 있음을 느낀다. 첫째, 피부색이 놀림과 따돌림의 원인이 되는 가장 한심한 수준의 풍토 속에 살아가고 있다. 성희롱, 성차별 등은 우리 사회의 여러 곳에 존재하고 있지만, 혼

25) “혼혈인 42.2% ‘자살시도’ 경험,” 한겨레, 2004-02-16 [서울/연합뉴스] 한겨레의 기사는 박경태, “기지촌 혼혈인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3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03를 보도한 것이다.

혈인의 경우 그들에 대한 비하적 의식이 성폭력의 한 배경을 만들어낸다. 둘째, 고용상의 차별은 매우 심각하고, 그들의 직업기회를 극한적으로 제약한다. 셋째, 학력에도 비혼혈인과 큰 차이를 보인다.²⁶⁾ 넷째, 결혼 등 새로운 관계의 형성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차별은 엄연한데, 그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는 전무하다. 차별의 내용을 깊이 분석하고 대책을 고민한 예가 거의 없기에, 법적 보호장치 자체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탓이다. 보도에서 인용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요약하자면, “혼혈인들이 학교, 고용, 결혼 등 전 생애에 있어 지속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차별을 당할 때 (혼혈인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혼혈인에 대한 법적인 보호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본다.²⁷⁾ 혼혈인에 대한 차별은 반인권적 인식에 기초한 문제인데 법적인 결함이 또한 이를 막지 못했기에 생긴 비극이다.

특정적으로 혼혈인으로써 겪는 고용에서의 차별과 성희롱, 성폭행 경험은 언론에 사실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특히 혼혈인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성폭행에 대해서는 한차례의 사례도 언론에 등장하지 않았다. 물론 피해자의 난처한 입장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무런 언급조차 볼 수 없었다.

1. 언어적 폭력

언론에도 자주 공공연하게 지적되는 혼혈인에 대한 차별은 언어적 폭력이었다. 특히 혼혈인에 관련한 인신공격적 욕설은 혼혈인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단어 자체를 분석하는 것도 큰 의미를 가진다. 혼혈인에 대한 비하적 지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26) 박경태의 조사에 따르면, 혼혈이 중 47%는 학교를 중퇴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혼혈인의 평균학력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 그쳤다. 중퇴율이 높은 이유는 ‘따돌림’에다 ‘너무 가난했다’는 것, 자신을 ‘더러운 아이’로 보는 것 같아 미래에 대한 절망감이 겹쳐있기 때문이다. 박경태, **소수자와 한국사회**, 후마니타스, 2008, 224-228면 참조.

27)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혼혈인 73.3% “피부색 때문에 놀림받았다, 2004/02/16,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NT_ID=24&flag=VIEW&SEQ_ID=554727

<표 3-1> 혼혈인에 대한 비하적 지칭

단어	의미	인용	나의 검토
아이노꾸 ²⁸⁾	구슬에 있는 파란색을 뜻하며 일반적 한국인과 달리 눈의 색깔이 파란색이라서 비하적으로 쓰이는 말투	<한겨레 2006-02-10, “한국인은 머리색은 바뀌도 생각은 안 바뀌”> “(한국에 거주하는 혼혈인은) 이들은 한국 땅에 남겨져.....’아이노코’ 등으로 불리며 온갖 냉대와 차별을 받아오다...” <[이지누의인물로세상읽기]그이는 끝내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나 [기자] 또한 그랬다.....그들을 ‘아이노꾸’라.....고 놀렸었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눈동자는 검은색이다. 눈동자 색깔의 차이를 놀림대상으로 삼는다. 외모의 차이를 용납못하는 수준의 언어.
튀기	종(種)이 다른 두 동물 사이에서 난 새끼를 일컫지만 사람에게 빗대어 혼혈인을 비하적으로 부르는 말투	<한겨레 2006-03-13, 엄마, 안정리 떠나지마> “‘튀기’라는 놀림 못이겨 20년 전 남매 미국 입양 생이별” <[이지누의인물로세상읽기]그이는 끝내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나 [기자] 또한 그랬다.....그들을 ‘튀기’라.....고 놀렸었다.” <한겨레 2005-07-07 혼혈인들 뭉쳤다>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형님마저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에게 “몸을 팔았다”, “튀기”라며 욕을 했다.	혼혈인, 즉 인종이 다른 사람들끼리나 자녀를 잡종-동물에 빗대어 표현했다는 점에서 매우 비하적.
깜둥이	흑인들 및 흑인 혼혈인만을 대상으로 쓰는 비하적인 말투	<조선일보 2003-08-28, ‘길거리 농구’ 개인전 준우승 스킷, “혼혈의 서러움 농구공에 날렸죠”> “애들이 많이 놀렸죠. 피부색이 다르니까요. ‘야, 이 미국놈아’ ‘어이, 깜둥이! 영어 좀해봐’ 하면서요. <조선일보 2007-02-23, “미국인 한국인 흑인 사이에서 늘 혼란스러웠다” 윤미래의 고백> “그러나 혼혈인 그에게 고통은 익숙했다.....제가 영어 한마디만 하면, 애들은 “깜둥이.....라고 소리치며....”	인종차별적 언어의 대표적인 말. 더욱이 흑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백인보다 흑인이 훨씬 더한 차별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키 (양놈)	외국인 혹은 외국인의 피가 섞인 사람을 비하적으로 부르는 말투	<한겨레 2006-04-06, 설음 자해하며 삭여...남은 인생 ‘혼혈 인권’에 바치고파> “친구들도 ‘양놈’이라고 놀리기 시작했다. <조선일보 2007-02-23, “미국인 한국인 흑인 사이에서 늘 혼란스러웠다” 윤미래의 고백> “그러나 혼혈인 그에게 고통은 익숙했다.....제가 영어 한마디만 하면, 애들은.....’양키 고희’ 이라고 소리치며.....”	서양인 혹은 미국인에 대한 막연한 배타심이 내포, 혼혈인을 비하하는 데도 지칭된다.
양공주 (양갈보)	서양인과 결혼한 여성들을 비하적으로 부르는 말투	<한겨레 2005-07-13, 욕필 수기 ‘아메리카 타운 ...’ 펴낸 기지촌 운동가 김연자씨> “그가 풀어낸 이야기는 기지촌 양공주로 살아온 밑바닥 인생이 온몸으로 마주한 거칠고 험난한 삶의 연속이었다.” <조선일보 2003-05-02, 동두천 오진희씨 가족의 기구한 인생> “진희씨는.....내가 혼혈인이고,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모든 걸 체념했다”고 울먹였다. 학교에 가면 “니네 엄마 양공주지”, “너도 그딴 잘하니”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쏟아졌다고 했다.	가장 악질적인 욕설 중 하나. 혼혈인에 대한 차별 의식 뿐만 아닌 여성의 성적 차별까지 축진하는 욕설이다.

혼혈에 관련된 여러 비하적 지칭을 살펴보았다. 차별적 인식이 차별적 언어를 불러 일으킨다는 점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그런 차별적 언어가 다시 차별적 인식을 조성한다는 면도 있다. ‘아니노꾸’라는 욕설은 혼혈인을 비하하는 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만든 것인데 그 언어가 퍼지다 보니 원래 혼혈인에 대해 별 감정이 없었을 아이들에게조차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별적 언어의 시정이 중요하다.

언어는 기존에 쓰이는 인식을 반영하고 새로 생성한다. 따라서 잘못된 언어는 미래를 위해서라도 바뀌어야 한다. 편견과 차별의 언어와 결별하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말(politically correct words)의 선택은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다. 그렇지만 자의식을 갖고 노력하는 과정이 곧 편견과 차별을 하나하나 시정해가는 과정일 것이다.

<표 3-2> 비하적 지칭의 수정가능성

종래의 언어	수정된 언어 (제안)	수정이유	출처
혼혈인	결혼이민자의 자녀	피부색과 인종에 대한 차별적 의미가 있는 ‘혼혈인’	한겨레, 2006-04-07
코시안(혹은 온누리안)	한국인	특별한 범주로 구별 짓는 것을 거부	조선일보, 2007-03-21

이 기사들에 나온 것처럼 언론은 수정을 제안하면서도 수시로 그 말을 답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발성 기사가 아니라 지속성을 갖고 대중의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언론사 내부의 합의를 갖고 일관성있게 쓰는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

최근의 경향은 더욱 특별하다. 몇몇 기사에는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자녀를 “혼혈인”은 물론, “코시안”²⁸⁾이니 “온누리안”이니 하는 식의 구분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한다.

28) 이는 일본말인 間の子에서 나왔다고 한다. 튀기나 잡종이나 별 차이 없는 말인데 나이든 분들이 많이 사용하며 어린이들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박경태, **소수자와 한국사회**, 후마니타스, 2008, 201면.

29) 한국인(Korean)과 아시아인(Asian)을 합친 말인 코시안(Kosian)은 한국인과 아시아인의 혼혈인을 뜻하는 말로 1997년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단체들이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출처, 조선일보 2006-04-03, [Korea Asian] 피부색 달라도 “우리는 단짝”) 이 말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은 언제부터일까? 조선일보에서는 2000년 4월 24일, <TV 하이라이트> (TV 프로 소개중 코시안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소개)라는 기사에서부터, 한겨레에서는 2001년 12월 17일, “여성은 ‘출가 외국인’ 남편 국적 따르라?”라는 제목의 기사로부터 코시안이란 말이 사용되었다.

본인은.....가정의 자녀가 코시안 또는 온누리안으로 불리는 상황에 비통해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태어날 나의 자식은 한국인일뿐 특별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거부한다.³⁰⁾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말도 잘하고 그냥 한국 사람이예요. ‘혼혈인’이나 ‘코시안’등으로 부르며 달리 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³¹⁾

“아이들은 한국말도 잘하고 그냥 한국 사람이예요. 차별 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반쪽 한국인 (half Korean)’이 아니라 ‘온전한 한국인 (whole Korean)’이지요 반쪽인 사람은 없어요.”³²⁾

국제결혼한 부모의 자녀들의 정체성 문제가 그들에 대한 지칭의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되고 있는 것이다. ‘코시안’이나 ‘온누리안’의 명칭을 만든 쪽은 선의로 시작했지만, 다문화 가정에서 특히 부모들은 이러한 특별한 범주화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편견을 만들어낼까봐 우려하는 것이다. 어떤 한 부모의 요구는 그야말로 단순하다.

“그냥 아이의 이름을 불러달라”³³⁾

이 말에도 진실한 울림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와 제일 가까운 사람은 “철수야” “영희야” 하고 이름을 부르지, “까무잡잡한 애” “키작은 애”라고 하지 않으니까 말이다. 우리와 먼 사람,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꼭 범주화해서 인식한다.³⁴⁾ 그들이 우리의 일부

30) “열등생 눈흘김에 따돌림 ‘시름겨운 2세 교육,’” 한겨레, 2007-02-12 사회종합면.

31) “‘코시안’ 호칭 싫어요,” 조선일보, 2007-03-21 [서울/연합뉴스]

32) 위의 기사.

33) 위의 기사.

34) 그와 관련하여 Ralph Ellison의 소설 Invisible Man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 인상깊었다. 주인공이 병원에서 눈을 떼을 때 의사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듣는다. “흑인들은 정말 리듬감이 있어!”라고. 자칭 의료용 전기충격을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주인공을 보고 하는 말이다. 이처럼 주인공은 흑인으로서 여러 차별을 겪는다. 그는 대항한다. 하지만 그와 같은 흑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의 눈초리다. 흑인은 짐승우리에 몰아넣고 싸움을 붙여도 된다는, 흑인은 1회용 섹스상대로 좋다는 그런 편견적 눈초리들. 그 눈초리 속에 그들 고유의 개인적 정체성은 ‘흑인’이라는 통칭의 정체성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인간(Invisible Man)이 되어버린다. 이 책의 가장 근본은 사람들의 인식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동안 나는 난민 아이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했는데, 처음엔 낯설게 여겨지던 그 아이들이, 다가가수록 ‘흑인’이 아니라 내 동생들로 느끼게 되었다. ‘보이지 않는 인간’을 ‘보이는 내 이웃’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인권의 기초임을 일깨워준다. Ralph Ellison, Invisible Man, Penguin Group 참조.

이고, 우리도 그들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그 이름을 자연스럽게 부를 것이다.

물론 다른 측면도 있다. 한국에 국제결혼을 통한 자녀가 얼마나 되는가,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등을 정확히 알아보려면 범주화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특별한 범주를 거부하기 보다는, 특별한 범주화를 할 때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은 매일같이 해야 할 것이다.

언론에서는 여러 비하적·차별적 언어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보도가 적지 않게 나온다. 그 자체는 물론 바람직하다. 어떤 용어가 가장 적합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용어 속에 담긴 비하적이고 차별적인 요소에 대해 늘 자기의식(self-consciousness)을 갖는 그 마음가짐이다. 언론보도는 어떤 때는 이런 말은 고쳐야 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때는 그 말을 그대로 쓰고 있는 자기모순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 적어도 한국을 대표하는 언론사라면 자신들이 선택할 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각 언론사마다 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비교하면, 언론간 경쟁을 통해 선순환하는 일도 생길 것이다. 또 언론과 정부, 시민사회가 상호합의를 통해 적합한 언어를 찾아내고, 주도적으로 ‘혼혈’을 대체할 말을 찾았으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한다.

2. 혼혈인의 성공기회는 연예인과 운동선수 뿐?

우리가 사회의 축소판으로 생각하는 교실의 풍경을 생각해보자. ‘내가 되고 싶은 직업은?’이라는 질문에 학생마다 다양한 답을 준비할 것이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검사’ ‘의사’ ‘연예인’ ‘비행기 조종사’ ‘과학자’ ‘연예인’ 등. 그러나 혼혈인에게는 그러한 다양한 직업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언론에서 비추어진 혼혈인, 다시 말해 유명해진 혼혈인의 직종은 두가지였다. 연예인과 운동선수가 그것이다. 흔히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변호사’ ‘의사’ ‘비행기 조종사’ ‘과학자’ 같은 직종에서 혼혈인이 성공했다는 뉴스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국회의원’이나 ‘시장’과 같은 선출직은 아예 없었다. 말하자면 누구나 열심히 하면 이를 수 있는 전문직에의 접근이 사실상 차단되어 있다고나 할까. 연예인과 운동선수는 다소 예외적인 길이고, 우연적 요소가 많이 작용하며, 성공한다고 해도 오래 성공의 지위를 향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 혼혈인의 풍부한 꿈은 현실에서는 예외적 직종에만 열려있는 셈이다. 혼혈인과 직접 인터뷰해서 쓴 기사를 보면 확연하다.

<표 3-3> 언론에 비추어진 한국계 ‘혼혈’인의 직업 구성

운동선수	연예인	기타 (전문직)
하인스 워드 (풋볼 선수) 데니스 강 (격투기 선수) 존 김 (농구 선수) 강수일 (축구선수) 에릭 산드린 (농구 선수) 장예은 (농구 선수) 김민수 (농구 선수) 김준 (축구 선수)	데니스 오 (연예인) 윤수일 (가수) 다니엘 헤니 (연예인) 이상 (가수) 김 디에나 (연예인) 제니퍼 리 (여배우) 우르술라 메이스 (모델) 소냐 (가수) 함중아 (가수) 인순이 (가수) 윤미래 (가수)	룩 샘슨 (교수)
8명 (국적까지 한국인: 6명)	11명 (국적까지 한국인: 8명)	1명 (국적까지 한국인: 0)

결국 한국사회에서 혼혈인들이 ‘출세’하는 길은, 혹은 정상적 직업을 갖고 성공하는 길은 실질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셈이다. 위의 통계에서 보듯이, 혼혈인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운동선수와 연예인 뿐이다. 전문직으로 진출한 인사는 1명 밖에 언론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것도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닌, 미국의 대학에서 의대 교수로써의 성공이다. 한국에서의 혼혈인들은 자신의 꿈을 착실히 준비할 길이 봉쇄되어 있었던 과거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현재 그 길을 법 혹은 정책을 통해 열려고 한다고 해도 배울 역할모델 (role model)이 없다는 점은 적어도 몇 년 간은 전문직의 혼혈인을 꿈꾸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간접적으로 큰 어려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³⁵⁾

35) 박경태, **소수자와 한국사회**, 후마니타스, 2008, 229면을 보면, 혼혈인의 직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가 나온다. 혼혈인들이 가져본 직장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건설노동이었고, 이외에도 공장노동, 일용노동의 순이었다.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24%에 불과했다고 한다. 전문직은커녕 정규직에도 이르기 어려웠음을 보여준다.

3. 혼혈 연예인에 특수한 상황

연예인들 중 혼혈의 의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굳이 혼혈인이지 아닌지에 대해 밝힐 필요가 없는데도 의심이 따라다닌다. 자꾸 물어보니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한다. 인기관리가 생명인 연예인에게 ‘혼혈’이란 인기에 플러스 요인은 아닌 모양이다. 그러다 어느 단계에 와서 그들은 혼혈임을 ‘고백’한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린다.

예컨대 이유진의 사례를 본다. 혼혈인임을 감췄던 텔런트 이유진은 기자 회견을 통해 스스로 자신이 혼혈인임을 밝혔다. 거기서 이유진의 인용된 말을 뽑아내면 다음과 같다.³⁶⁾

“나의 아버지는 스페인계 주한미군이었다”

당시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미국에 함께 가자고 했지만 어머니가 ‘외국생활은 자신 없다’며 거절했고, 이후 자연스럽게 이혼하게 됐다”

“혼혈이 범죄도 아닌데 자꾸 거짓말하는 게 싫다”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아버지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감춘 적은 없었지만, ‘튀기’라고 놀리는 아이들 때문에 남몰래 눈물 흘린 적도 많았다”

“그간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무서웠던 게 사실”이라며 “어차피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만큼 언젠간 밝힐 생각이었지만, 신인 때만이라도 선입견 없이 평가받고 싶어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했다”

“혼혈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없어지는 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 기사를 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떠오른다. 왜 어떤 연예인은 ‘혼혈’임을 밝혀야 하는가. 다르게 보면 왜 집요하게 혼혈인지를 알고자 하는가. 왜 혼혈로 밝혀지면 인기에 지장이 온다고 생각하는가.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이 혼혈인들의 삶에 매우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굳이 밝힐 필요도 없는 사안에 대해 ‘거짓말’을 하도록 만드는 우리 사회의 편견과 선입견 속에 노출되어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분노스럽기도 하다.

일단 혼혈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에게는 자주 ‘혼혈’이란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혼혈 정체성이랑 전혀 관련없는 기사가 분명한 경우에도, 그냥 습관적으로 ‘혼혈’ 연예인

36) “나는 혼혈입니다” 텔런트 이유진 기자 회견, 조선일보, 2003-05-30, A25면.

이니, 혼혈 선수니 하는 식으로 기사가 작성된다. 이렇듯 혼혈인 연예인·운동선수에게 있어서 ‘혼혈’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은 ‘꼬리’와 같은 낙인처럼 보이기도 한다.

혼혈이라는 배경에 대한 부연설명과 함께 ‘혼혈’의 딱지가 붙은 기사도 있었다. 하지만 이도 기사의 전반적 내용에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 혼혈에 대한 정체성과 전혀 관련 없는 기사라고 봐도 무방했다. 그런데도 ‘혼혈인’이면 무조건 ‘혼혈인’으로 수식어를 붙이는 이상한(?) 습관 속에 들어있는 사고의 정체가 궁금해지는 것이다. 혼혈문제에 대한 인권의식이 비교적 높다고 생각되는 <한겨레>의 기사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4> 혼혈을 습관적으로 붙이는 언론의 경향들

제목	전반적 내용	혼혈의 꼬리표가 붙어있는 기사
<한겨레, 2004-02-26 “올해 최고의 유망주는 김디에나”	네티즌들이 2004년 최고의 CF모델 유망주로 김디에나를 뽑았다는 내용.	”17살 혼혈소녀 김디에나는...”
<한겨레, 2004-09-12, “테니스 강 ‘자존심 세웠다’”>	스피릿MC라는 격투기 대회에서 테니스 강이 승리를 했다는 내용	””테니스 강은 한국인 부친과 프랑스계 캐나다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파이터로...”
<한겨레, 2005-07-17, 테니스 강, 세메노프에 판정승>	테니스 강이 프라이드라는 격투기 대회에서 러시아 격투기 선수를 꺾었다는 내용	”한편 지난해 2월 스피릿MC 대회부터 한국 무대에서 활약 중인 테니스 강은 한국인 부친과 프랑스계 캐나다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캐나다 국적의 혼혈 파이터이다.
<한겨레, 2005-11-09, “[농구] 신세계, 신인 1순위로 김정은 지명>	’신세계’ 밑 여러 농구팀들의 선수 지명 뉴스. 선수 중 장예은 선수가 소식중 하나로 나옴.	”...춘천 우리 은행은 혼혈 선수로 잘 알려진 선일여고 장예은...을 각각 1라운드에서 지명했다”
<한겨레, 2005-11-24 남상미 “한달반이나 화장 안했죠”>	배우 남상미에 대한 내용. 같이 찍는 드라마의 동료로써 테니스 오와 연기를 한다는 부분에서 테니스 오 언급.	”그는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혼혈스타 테니스 오와도 연기호흡을 맞추고있다.”
<한겨레, 2005-11-29, ‘해바라기’ 이주호 아들도 가수 데뷔>	가수 이상이 데뷔한다는 내용.	”포크 듀오 ‘해바라기’ 멤버 이주호의 아들이자 혼혈아인 가수 이상이 아버지의 히트곡...으로 데뷔한다.”
<한겨레, 2006-03-22, 윤수일 ‘웰빙음악’으로 7년만에 컴백>	가수 윤수일이 새 노래로 7년여 만에 컴백한다는 내용.	”국민적인 애창곡의 주인공인 혼혈 가수 윤수일(51)이 새 노래로 7년여 만에 컴백한다.

제목	전반적 내용	혼혈의 꼬리표가 붙어있는 기사
<한겨레, 2006-03-27, “힙합그룹 업타운 과거 청산하고 새 출발”>	힙합 그룹 업타운이 새로운 멤버와 함께 새 출발을 한다는 내용	”...여기에 윤미래 대신 새로운 한국계 혼혈인 여성 래퍼 세이(Say·22)가 합류했다.”
<한겨레, 2007-09-04, “가수 인순이, 고졸 아닌 중졸 학력 고백”>	가수 인순이가 자신은 고졸 학력이 아닌 중졸 학력을 가짐을 시인한다는 내용	”...혼혈로 태어나 음악성 있는 가수로 성장한 인순이...”
<한겨레, 2007-11-22, “프로농구 ‘르네상스’ 오나”>	한국의 프로농구가 새로운 스타와 신인 덕분에 급부상하고 있다는 내용	”그런데 내년엔 특급신인이 더 많다. ...귀화 혼혈 선수 김민수가 드래프트 시장에 나온다.”

위의 기사와 같이 ‘혼혈’이라는 정체성이 기사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꼬리처럼 갖다 붙인다. 기자와 언론은 ‘혼혈’을 습관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관행은 독자들에게 일정한 메시지를 주입시킨다. 즉 ‘혼혈이 특이해서 주목해야할 정체성’이라는 메시지를.

특히 위의 표에서 정리한 ‘데니스 강’에 관한 기사를 보면 거의 비슷한 형태로³⁷⁾ 데니스 강의 혼혈 정체성이 언급됨을 알 수 있다. 만약 이처럼 계속 데니스 강에 대한 기사에 윗 내용과 같은 말이 똑같이 나온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데니스 강이 혼혈이고, 또 그 정체성이 특이한 것이라는 생각이 고착될 것이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기사에서는 “혼혈 선수로 잘 알려진” 농구 선수로 기사에 적혀있다. 왜 꼭 사람들이 그 선수를 혼혈 선수로 알아야만 할까? 이런 수식어는 없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 하다고 본다.

우리는 어떤 연예인이 게이라고 해서 항상 그 연예인에 관련된 기사에 ‘게이인 xxx연예인은...’라는 식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또 우리는 어떤 운동선수가 제주도 출신이라 해서 ‘제주도 출신으로 잘 알려진’ A라고 부르지 않는다. 운동선수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실력과 노력이지, 그의 출신과는 별로 관계없는 것이다.³⁸⁾ 그런데 유독 ‘혼혈’을 꼭 연예인 이름 앞에 붙이는 것은 일반인들이 길을 가다가 유난히 혼혈인만 뵈는 심리와

37) “한국인 부친과 프랑스계 캐나다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과 같은 표현들이다.

38) 그런데 운동선수인 경우에도 외국인에 대한 취급이 너무 다르다. 외국인 농구선수가 있다면, 거의 ‘용병출신’인 누구누구라고 지칭한다. ‘용병’은 대개 돈벌려고 온 외국인을 말하는데, 돈버는 목적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가 있을 리 없다. 그런데 용병이라 부르면서, 외국인선수를 비하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습관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다를 바 없다.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차별적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기사에 직접 관련된 내용³⁹⁾이 아니라면, 극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4. 차별을 방지하는 법적 변화의 전망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변화의 시작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문제를 파악한 후 대안을 찾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법적인 측면 뿐 아니라 다방면에서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법적인 대안부터 검토해본다.

“차별금지법 같은 장치들이 혼혈인 차별을 없애는 첫걸음이 되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법 제정으로 책임을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외모와 피부색이 다른 이들에 대한 차별 의식이 사회 전체적으로 뿌리 깊은 만큼, 법하나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긴 어렵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구석구석의 크고 작은 차별적 관행을 찾아 바꾸는 노력이다.”⁴⁰⁾

다음 기사에서 지적 했듯이 법 하나의 변화로 쉽게 끝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 함축된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법의 변화로 끝날 일은 아니란 말의 뜻은 법적 변화 하나라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혼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생활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적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또 그 영역선상에 있는 논쟁점은 무엇인가.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크게 세가지였다. 첫째, 차별금지법 제정. 둘째, 외국에서 태어난 혼혈인에 대해 한국국적을 부여하는 방안. 셋째, 혼혈인에 대한 입대의 허용. 그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39) 가령 혼혈인으로서 어떤 차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주제라면 혼혈을 부각시켜 쓰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40) “법제정으로 끝낼 일 아닌 혼혈인 대책, 한겨레, 2006-04-09, 정치종합.

<표 3-5> 혼혈인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률안

법안	인용
차별금지법	<p>*차별금지법 제정 <한겨레> 2006-04-07 사실혼 관계 외국인 자녀에 국적 준다.</p> <p>-법무부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혼혈인 처우 개선 대책을 열린우리당에 보고하고,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p> <p><한겨레> 2006-08-02 [기고] 인권보장 폭 넓힐 차별금지법안/ 이숙진</p> <p>-국가 인권 위원회의 차별금지법안을 놓고 경제계는 ‘기업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하고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차별의 근절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한다.</p> <p>-(미국 사례) ‘차별하지 않고 기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하지 않는다. 그것은 차별이 도덕적으로 부당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인식에서 근거한다.</p>

차별 금지는 실제로 다른 법 조항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만 차별 금지만을 위한 목적으로 한 법이 만들어져야 사람들이 쉽게 차별에 대해 주의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에서의 고용 문제와 같은 여러 분야에서도 차별이 실질적으로 금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안을 2007년 12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 차별내용에는 “...출신국, 출신민족, 인종, 언어...등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차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⁴¹⁾

한국국적 부여	<p><한겨레> *한국 국적 부여 2006-04-27 “‘라이파이한’ 한국국적 부여 검토하겠다”</p> <p>-정부는 베트남 전쟁 혼혈인 (라이파이한) 및 외국 주재 현지 2세 혼혈인 등이 한국 국적 취득을 원할 경우, 한국인 아버지가 친자관계 확인을 거부하더라도 사진 등 객관적으로 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p> <p>-또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여성 (여성 결혼 이민자) 가운데 생활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는 국적취득 전이라도 최저 생계비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p>
---------	--

41) 법무부,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법무행정, 참여정부 법무부 정책백서, 125~126면.

둘째, 한국국적 부여 문제는 일반적으로 베트남 전쟁 혼혈인인 ‘라이파이한’에 관한 것이다. 이는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급박하게 출산된 자식이므로 친자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무책임하게 자녀만 낳고 귀국해버린 점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뜻도 있다. 다만 이들에게만 한국국적 부여를 허용한다는 것은 해외의 한국계 혼혈인에게 이중 잣대를 사용하지 않고 공평한 기회를 준다는 큰 의미를 지닌다.

셋째, 혼혈인(남성)은 군대에 가야 하는가의 쟁점이다. 그동안 2005년 이전에는 혼혈인은 군대에 가지 못했다. 군대를 안가도 되니 좋지 않냐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안가는 것’과 ‘못가는 것’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큰 차이일 수 있다. 병역대상자도 안된다는 것은 아예 보통국민으로 취급될 수 없다는 뜻이니까 말이다. 2005년에 병역법 시행령이 바뀌었다.⁴²⁾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만 군대의무를 면제받지만, 그들도 원하면 군복무를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면 혼혈인에게는 안가고 싶으면 안가고,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으므로 혼혈인에게는 매우 혜택적으로 한 것 같지만, 그것도 또하나의 문제이다.

사실 혼혈인 입대는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는 것 같다. 다음과 같은 대립상황이 보도되고 있다.⁴³⁾

송영선 의원(한나라당)“혼혈인모임 회장에 전화했더니, 우리도 군대를 가고 싶지만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 쳐다보고 차별이 심해 가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종인 의원(열린우리당)“윤수일, 김동광씨 같은 백인계, 인순이씨 같은 흑인계, 아시아인계를 동등하게 대하는 것은 중요한 일”“(혼혈인에 대한) 평등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에게 징병을 당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황진하 의원(한나라당)“필리핀, 베트남 여성들과 결혼한 농촌총각이 수 만 명에 달하는데 조만간 그 자제들이 징집장병 대상이 될 것 아닌가...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이렇듯 혼혈인 입대는 큰 사회적 이슈중 하나였다. 혼혈인도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병역에도 예외 없다”는 기본원칙에는 동의하는 것 같다. 하지만 또 “원숭이 보듯”에서 상징되는 차별상황이 군입대에도 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본다. 보다 적극적인 의식의 개선노력이 법제도의 개선에 못지 않게 중요함을 이 논쟁은 일깨워준다.

42) “혼혈인도 군대 간다,” 조선일보, 2005-02-15. A14면

43) “국방위 ‘혼혈인 입대, 해야..말아야..’ 설전,” 한겨레, 2006-02-13 사회일반면.

5. 혼혈인—줄어들고 있다?

과거에 혼혈인에 대하여는 혼혈‘아’의 문제로 주로 다루어져 왔다. 혼혈아의 대모라고 할만한 필벽 여사는 6.25전쟁후 전쟁고아 중 혼혈아들을 미국에 입양을 시켰다.⁴⁴⁾ 이는 본격적인 해외입양의 시초를 열었다고 한다. 그동안 혼혈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재단의 학비 및 생활비보조금이 2003년도에 와서 완전히 끊긴 일도 있었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이 되면서 우리보다 못한 후진국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미국본부의 뜻에 따라 후원금 지급이 중단된 데 따른 결과였다.⁴⁵⁾ 한편 혼혈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인터넷을 통해 찾아봐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사례와 너무나 비교되었다. 독일의 경우는 2차대전 이후 생겨난 독-미 혼혈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 비용을 반분하는 조약까지 체결하였다고 한다.

정부의 시책은 그 자체로 문제지만, 기사를 살펴보면 조금 특이한 측면을 알게 되었다. 다른 아님 혼혈인들의 연령이었다. 원래 아동은 잘 언론보도의 대상이 되기 쉽다. 엽기적인 피해를 당한 피해자 등이 아니면 말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혼혈‘아’에 대한 보도는 지나치게 적다. 인순이, 윤수일의 나이도 40대 이상이다. 그러면 과거의 혼혈아들은 어디에 다 숨었을까. 다른 글을 보다 답이 나왔다. 미군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들은 결국 이 땅의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우리나라를 떠났던 것이다.

한 때 2만~6만명에 달했던 이들 혼혈아들은 한편으로는 해외입양이 되고, 1980년대에 미국의 수용정책으로 대거 미국으로 이주했다. 미국에서는 1982년 아시아에서 태어난 미군자녀들에게 미국이민자격을 주는 특별이민법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정책으로 그동안 냉대 속에서 생활하던 혼혈인들은 대부분 미국으로 갔다. 이런 저런 결과로, 현재 한국에는 1천명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⁴⁶⁾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난 뒤 비로소 언론에 등장하는 혼혈인의 연령분포가 납득이 조금 가게 되었다. 첫째, 국내 거주 혼혈인들은 (윤수일, 인순이처럼) 연령이 40대 이상이다. 둘째, (하인스 워드처럼) 보다 젊은 혼혈인들은 (성공했을 경우) 해외로부터 소식이 들려온다. 셋째, 40대 미만의 국내혼혈인의 이야기는 별로 없다. 한국에서 최근 활약하는 혼혈인들은 [한국성+외국이름]⁴⁷⁾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44) “혼혈아동 양육비 등 사회적 지원 절실,” 조선일보, 2003-05-06, A9면.

45) 위의 기사.

46) 박경태, **인권과 소수자 이야기: 우리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책세상, 2007, 70면, 74~75면.

그 이유는 [한국→외국→한국]의 과정을 밟거나, [외국→한국]으로 ‘귀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느껴지는 문제점은 자명하다. 주류 한국인의 문화는 혼혈인에 대해 너무나 배척적이어서 그들이 살기에 편안한 곳이 되지 못했다. 국민 중 일부를 틈만 나면 떠나고 싶게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순혈주의’ ‘단일민족’을 이의의 여지 없이 내세우는 나라는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이라 볼 수 없는 혼혈인을 강제로 추방시키고 있다. 직접적 강제만 강제가 아니다. 회롱, 차별, 탄압 등으로 소수자가 떠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간접적 추방도 강제이다.

좀 더 심하게 과장하면 히틀러의 유대인 정책을 떠올릴 수도 있다. 게르만 민족의 피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인종주의 정책 하에서 유대인은 ‘노란 별표’를 가슴에 달고 다녀야 했고, 인종적 격리를 단행하고 결국에는 아우슈비츠의 학살로 이어졌다. 물론 우리는 혼혈인들을 학살한 적도 없고, 노란 별표를 달고 다니라고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초리 속에서 혼혈인의 그 피부색 자체가 별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즉 대중의 눈초리 속에 그 ‘별표’가 보여지는 것이다. 한국의 혼혈인들은 유대인처럼 강제격리당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이주를 강제한 셈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한국의 ‘순혈-단일민족’ 담론이 UN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 되었구나 하는 이해를 할 수 있었다. 몇만명을 1천명으로 줄여버린 효과는 우리의 부끄러운 지표일 것이다.⁴⁸⁾ 혼혈인이 거리에 적게 보인다고 단일민족국가라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부끄럽게 여겨야 할 현상일 수 있는 것이다.

6. 혼혈인—너무 불쌍하기만 한 존재?

기사를 꼼꼼히 읽을수록, 혼혈인에 대한 전혀 다른 시각도 부분부분 발견된 것이 무척 흥미로웠다. 최근에 올수록 혼혈인이 받은 서러움, 차별과 같은 기사가 여전한 한편으로, 성공한 혼혈인 중 일부는 혼혈의 특유한 강점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한다. 혼혈인으로서의 자기정체성(self-identity)를 분명히 하고, 그 혼혈스러움이 어떤 강점을 가질 수 있

47) 김디에나, 테니스 강, 테니스 오 등.

48) 사실 부끄러운 지표는 한둘이 아니다. 해외입양의 건수가 세계적으로 높은 것도 마찬가지다. 해외입양을 위해 노력하시는 필벽재단과 홀트아동복지회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동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 하지만 나라 전체로 볼 때 우리나라에 태어난 아이들이 살기 어려운 생활 조건을 만들어낸 점은 부끄러워할 일이다.

다는 자기발견은 마치 흑인민권운동에서 탄생한 ‘검은 것이 아름답다’(Black is Beautiful)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물론 그런 말이 비혼혈인으로부터 나올 때 차별의 정당화의 방법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하는 점도 있겠지만, 혼혈인 자신으로부터 당당하게 나올 때는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최근의 기사를 정리해본다.

국내에 번역된 책으로 『혼혈 파워』라는 책이 있다.⁴⁹⁾ ‘왜 그들이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가’라는 부제와 함께, 이 책은 학술보고서와 역사, 대중문화,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혼혈인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이점이 많다고 이야기한다. 유전학적으로 혼혈인은 부모가 각각 가진 인종의 장점을 고루 섞어서 가진다는 것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와 조선일보 기사에서 직접적으로 이러한 혼혈인의 장점을 과학적으로 비춘 기사는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다룬 기사의 연예인들이 그러한 진술을 하는 것이 종종 나타난다. 그들은 자신의 재능을 ‘혼혈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혼혈이기 때문에’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⁵⁰⁾

‘혼혈이기 때문에...’라는 접근은 혼혈성의 무엇이 장점인가에 대하여 너무 피상적인 기사사실이다. 자칫하면 우생학적 관점이 아무 생각 없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도 있는 기사들도 있었다. 또 단순히 외모적 우수함, 음악적 재능 등 예능에서의 우수함만 강조한다는 점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순혈주의’와 같은 문제를 부분적으로는 상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혼혈인만이 가진 특수한 능력이 연예인을 통해 알려지며 많은 편견이 깨질 수 있다. 소위 한민족이 가장 순수하고 좋은 것이고, ‘순혈주의’가 가장 우월하다는 다수 집단의 편견을 깨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기사를 정리하고 논평을 하기로 한다.

49) 앨런 지브, **혼혈 파워**, 부글북스, 2006. 원제는 Alan Ziv, *Breeding Between the Lines: Why Interracial People Are Healthier And More Attractive*, Natl Book Network

50) 기자들은 인터뷰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인터뷰 대상자들의 서술이 가진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①	대중문화 혼혈인 봄 ...인종관념 바뀐다? < 조 선 일 보 , 2004-04-29>	-“그 [김디에나]는 “서양인인 듯, 동양인인 듯 묘사해 보이는 제 눈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매력으로 느껴지지 않겠냐”며... -그 [제니퍼 영 위즈너]는 “옛날에는 단점이 뻤을 뭔가 다른 제 외모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대중들은 그냥 예쁜 것보다 독특한 외모에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영어·한국어 모두 유창하다는 것도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	--	--

대체로 신문기사가 혼혈을 다룰 때는 그들의 ‘장점’보다는 ‘단점’에 더욱 주목한 기사들이 훨씬 많았다. 물론 유전에 기이한 ‘단점’을 집어낸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혼혈인으로써 어떠한 차별을 받아왔던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혼혈연예인을 다루면서 언급된다. 윤수일, 인순이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①에서 최근 [김디에나] [제니퍼 영 위즈너]를 다룬 위의 기사는 혼혈인 자신의 입을 통해 혼혈로 인한 ‘장점과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②	“대니얼 “혼혈은 축복” 양쪽 피 장점만 물려받아 음악·운동 재능 많아” <한겨레, 2005-07-26>	아이들을 한명 한명 가슴에 안아준 대니얼은 “혼혈을 축복으로 생각하라”는 충고를 던졌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혼혈이기 때문에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목표를 세우면 힘들었던 경험들이 모두 꿈으로 녹아들어요.”
---	---	--

이 기사는 다니엘 헤니가 ‘혼혈아동희망나누기캠프’에 와서 한국에 있는 혼혈 아동들에게 전한 희망의 메시지에 관한 것이다. 매우 추상적인 내용이지만 혼혈의 어두운 면을 부각하기보다 혼혈을 ‘축복’으로 생각하라는 긍정적 메시지를 적극 전하고 있다.

③	제시카 알바 검은 피부가 S자 몸매보다 좋은 이유는 <한겨레, 2006-03-29>	많은 사람들은 제시카 알바의 S자 몸매를 얘기하지만, 여전히 나는 그 검은 살갗이 흥미롭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원고고 뛰고 땀개치고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달리기를 하거나 등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지니 더욱 더 제시카 알바의 그 검은 살갗이 아름답게만 보인다. 미처 몰랐지만 혼혈이라고 하니 그녀는 무죄지만, 어쨌든. 비 오는 날에도 테니스 칠 수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다.
---	--	--

③의 기사는 소설가 김연수가 특이한 시각을 통해 본 혼혈의 매력적인 살갗에 대한 내용이다. 그는 현대 사회에서 태양 빛에 약간 검게 그을린 색깔의 피부란 매력이라고 말한다. 밖으로 나가 열심히 운동과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경제적 부유함까지 반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시카 알바는 원래부터 혼혈이라 피부가 약간 그을린 색깔이고 이는 그녀의 고유의 색깔로써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미를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다며 부러움을 표시한다. ‘검은 살갗이 더 아름답다’는 고백은 (아직까지는) 우월적 편견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용납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④	“양쪽 피 장점만 물려받아 음악·운동 재능 많아” <한겨레, 2006-04-07>	“혼혈인은 양쪽 피의 장점만 물려받았기 때문에 음악이나 운동 등에 재능 있는 사람이 많다”고 자랑하는 소냐는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주면 더 많은 ‘하인스 워드’가 자라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혼혈 윤미래 “반흑인 나는 복받은 사람” <한겨레, 2007-02-26>	“음색에 흑인 특유의 필(Feel)이 있다”고 하자 “반(半) 흑인인 난 정말 복 받은 사람”이라며 손을 가리고 ‘킁킁’ 댄다.

소냐는 언론에 ‘차별을 딛고 올라선 소녀 가수’의 이미지로 유명했다. 그런 차별을 딛고 올라서서 자신의 혼혈 정체성을 하나의 장점으로 부각시키는 자세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우리 사회에 끼칠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혼혈파워』의 수준처럼, 혹은 말콤 엑스의 당당한 주장의 수준으로 혼혈 연예인들이 자신있게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긍정적 고백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하나의 문제는 이를 다루는 기자들이 그런 점에 대해 단순히 연예인의 말을 인용하고 지나가버리는 식으로 정리한다는 것이다. 보다 의식을 갖고, 혼혈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좀 더 파고든다면, 자라나는 혼혈아들에게도 새로운 비전과 자신감을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든다.

혼혈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혼혈인들은 한국언론을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한국언론이 언제나 우리(혼혈인)들을 불쌍하게 그리”기 때문이라고 답변하고 있다.⁵¹⁾ 혼혈인과 같은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드러내는 것만 언론의

51) 박경태, **소수자와 한국사회**, 후마니타스, 2008, 248면에 다음과 같은 혼혈인의 욕성이 나온다. “한국언

역할이 아닐 것이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그들의 혼혈이라는 조건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IV. 결론

1. 이 글의 요약 및 한계

한국에서 혼혈문제는 존재했지만, 언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부각된지는 오래되지 않는다. 그만큼 이 문제의 의미나 대책 같은 것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 한국에서 혼혈담론을 단숨에 끌어올린 사건은 뜻밖에도 하인스 워드의 수퍼볼대회 우승이라는 미국발 보도였다. 여러 통계에서도 보았듯이 하인스 워드 때문에 2006년에 이르러 혼혈에 대한 집중적 관심이 쏟아지게 되었다. 그가 단순히 성공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의 성공의 이면에 존재한 혼혈인으로써의 어려움이 대중의 연민을 자아냈다는 것이 가장 컸다. 혼혈인으로써 조건화된 어려움은 대중의 감성을 자극했고, 기사는 직·간접적으로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인 특유의 모성애도 강조되었다. 이는 ‘모성애에만 집중되어 자꾸 미화시키며 현실을 왜곡한다’는 비판적 지적도 받았지만, 그의 경우 모성애가 전반적으로는 고난을 헤쳐가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할 만한 것이었다.

하지만 하인스 워드는 개인적인 측면에서만 기사의 주제가 국한되지 않았다. 하인스 워드를 받아들이는 우리 사회의 가식적이고 비판되어야 할 점도 많이 지적되었다. 성공한 뒤에야 한국인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나라의 경향, 평소에는 무시하다가 “똥으니 쓴다”는 기사 태도 등은 비판받을 요소도 있었다. 또한 제 2의 하인스 워드가 한국에는 존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하인스 워드 개인에만 집중 하지 말고 현재 한국에 어렵게 살고 있는 (유명하지 않는) 혼혈인들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했다.

다음 장에서는 혼혈인에 대한 차별의 양상과 대책에 대한 검토를 언론에서 찾아보았다.

문은 언제나 우리를 불쌍하게 그려요. 제발 우리를 불쌍하게 그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남 54세) “언론에서 (힘들게 사는 혼혈인에 대해서) 쇼킹한 것을 보여 줌으로써 우리가 당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남 51세).

혼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차별로 표출된다는 점에서 인식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기회였다. 차별은 일상, 고용, 학력, 결혼, 성폭력 등 사회 전반적인 면에서 존재했다. 일상에서의 차별 문제는 상당한 양이 언론에서 다루어지고 있었지만 고용에 대한 차별은 거의 기사가 없었고, 성폭력에 관한 것은 아예 없었다.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비하적 지칭 등 언어폭력이었다. 언어에 내포된 차별적 분위기 때문에, 기존 언어 중 차별적 어감이 있는 ‘혼혈’과 ‘코시안’ 등을 바꿔쓰야 한다는 주장들이 여럿 제기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촉구한 표기법을 바꾸지 않고 다수의 기사에 혼혈과 코시안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모순이기도 하다.

직업 세계에서 차별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분류를 해보니, 혼혈인들의 성공영역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연예인과 운동선수는 많았지만 정작 전문직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연예인들도 혼혈인으로써의 어려움이 많았음이 울며 고백해야 했다. 가장 문제는 혼혈 정체성이랑 전혀 관련 없는 기사에도 혼혈인 연예인이 등장하면 별 문제 의식 없이 ‘혼혈’ 연예인으로 쓰는 경향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별의 대안으로써는 가장 최소한으로 법적 변화가 시급함이 드러났다. 차별 금지법, 라이파이한 등의 혼혈인 한국 국적 부여, 그리고 혼혈인 입대 허용등이 언론에 등장한 혼혈에 관련한 법적 변화였다. 그 중 특히 입대 허용은 군대 내의 차별적 현상이 심해 찬반이 심하게 엇갈렸음을 보여주었다. 둘째로 조심스럽지만, 혼혈인의 성공영역이 연예인과 운동선수로 된 것이 오직 차별 탓만일까도 한번 생각해보았다. 언론에 등장한 기사들을 살펴본 결과 의식적으로 혼혈인들만이 가진 고유의 장점을 쓴 기사는 없었다. 하지만 여러 연예인들의 인터뷰에서 혼혈 연예인 자신들이 간혹 혼혈인의 특수한 능력을 자랑스럽게 발언하는 장면이 여럿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아쉬운 것은 한국에서 혼혈의 양상이 역사적으로 달라져 왔고, 그에 따라 제기되는 어려움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한 점이다. 혼혈인의 탄생배경에 따라 어려움의 종류도 확연히 달라진다. 가령 제1세대 혼혈인들의 경우, 부모 중 한명이 양육의 책임을 맡지 않은채 떠나 버린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들은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힘든 나날을 개척해와야 했던 아픔이 느껴진다. 한편 최근의 코시안계 혼혈인들은 농촌인구의 상당수를 형성하며, 앞으로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것이다. 숫자도 전세계의 혼혈인들과는 비할 바 없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주요한 면에 대해서는 한 장을 할애하여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루지 못한 것은 시간 탓도 있지만, 다소 초점을 달리하

기 때문이다. 앞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예방적 노력으로 차별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2. 마치는 소감

이 논문을 공모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그 순간 나는 첫 항목부터 키보드에 올린 손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제목에 대한 내면적 갈등 때문이었다. 우선 다른 칸을 채운 후 항상 파일을 닫은 후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은 신청 마지막 날에 ‘언론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혼혈 문제 및 인식’이라는 어정쩡한 제목과 함께 인권위로 메일을 보내야 했다. 내가 무슨 내용을 쓸지 몰라서 헤맨 것이 아니었다. 논문 공모 공고를 본 것도 한참 전이었거니와, 탈북자와 난민에 대한 자원봉사를 하면서 ‘혼혈’ 주제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었고 혼혈에 관련된 여러 기사도 찾아보고 있었다. 하지만 제목을 작성할 때 항상 머릿속에서 걸리적거리는 단어가 있었다. “혼혈”.

“혼혈”이라는 단어가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단어이며,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 불려야 바람직하다는 논의⁵²⁾는 당연히 수긍이 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냥 “혼혈”이라는 단어를 쓰기로 했다. 누구나 쉽게 아는 단어였고 피부에 와 닿는 단어였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는 말은 전문가들이나 알뿐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혼혈”이라고 그냥 썼다. 제목 뿐만 아니라 내용 전체에서 수없이 “혼혈”이라는 단어를 썼다. 계속 자책감이 들었다. 기존의 차별적인 ‘혼혈’ 담론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었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게 내 모든 변명이다.

이처럼 사람들의 인식은 쉽게 바꿀 수 있는게 아니다. 혼혈에 대한 인식은 쉽게 바꿀 수 없는 담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더욱이 ‘피’와 ‘살’로 사람을 따지는 것이 하나의 코드가 된 우리나라, ‘단군의 자손이자 반만년 단일민족’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우리나라에서 ‘혼혈’의 미래는 무엇일까.

얼마전 국가인권위를 통해 논란되었던 ‘살색 크레파스’ 논란을 생각해본다. 당연히하던

52) 박경태는 ‘이중문화가정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보다 포괄적이고 중립적인 개념으로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한다. 전라북도에서는 국제결혼가정과 혼혈인을 대체할 새로운 용어를 공모까지 해서 ‘온누리안’으로 선정했다고 한다. 이렇게 차별없는 언어로 고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박경태, **소수자와 한국사회**, 후마니타스, 2008, 202~204면.

그 ‘살색’이 ‘연주황’을 거쳐 이전 ‘살구색’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크레파스의 ‘살색’이 살구색으로 변한 과정은 단일 과정이 아니라 두 개의 거의 별개인 과정을 거쳐서였다. 먼저 법적, 혹은 공식적 변화가 일어났다. 외국인들과 그 지원단체의 인사들이 ‘피부색 차별’의 하나로 ‘살색’을 바꾸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여 연주황으로 바꾸라고 권고했다. 다시 어린이들이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인 연주황색”을 사용하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했다. 그 진정은 각하되었지만, 이 사실을 안 기술표준원은 살구색으로 최종 확정했다.⁵³⁾ ‘살색’에 내포된 차별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어린이, 국가인권위, 그리고 기술표준원까지 가세했다. 작지만 몇 있는 변화였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닐 것이다.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살색’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작업이 진짜 중요하다. 우리 국민들이 ‘살구색’을 보고 여전히 ‘살색’으로 생각하는 한, 첫 번째 변화의 효과는 단지 외형상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 거의 모든 곳을 뒤덮고 있는 ‘살색’ 담론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중매체들의 노력이 필요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광수 생각> 만화를 통해 이 문제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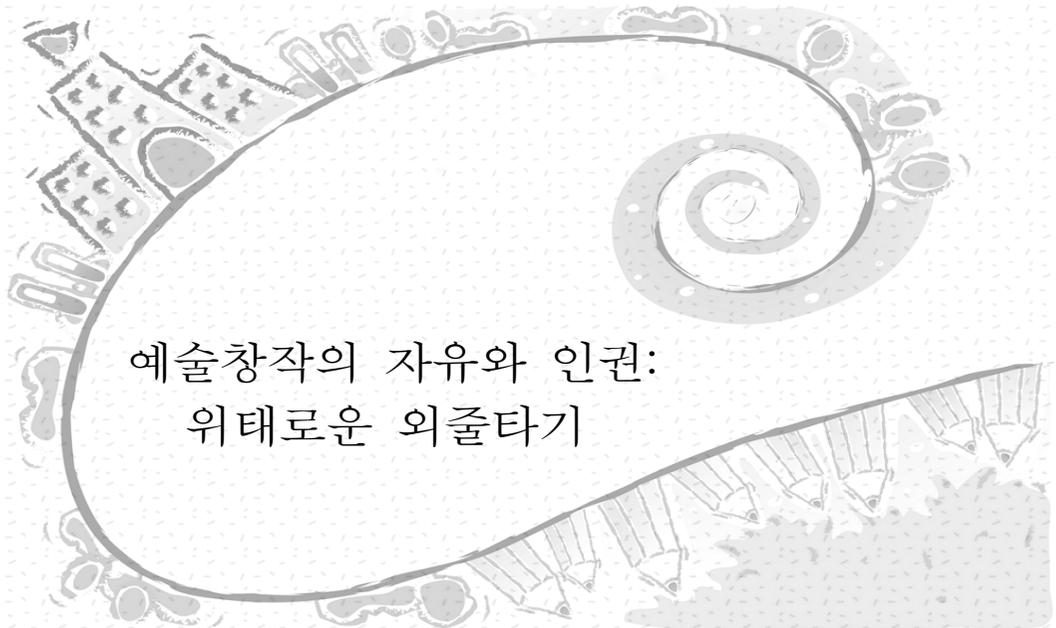
혼혈 담론도 마찬가지다. 혼혈에 대한 인식변화에 언론의 촉진적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언론은 여러 문제들 중 혼혈 문제를 하나의 문제로 다룰 뿐 총체적 시각이 부족하다. 이를 위해서는 ‘살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과 같은 역할을 시민단체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언론은 보도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혼혈 등을 다루는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왜 누구에게는 ‘혼혈’ 가수니, ‘혼혈’ 권투선수라는 식으로 항상 딱지 붙이듯이 하느냐 말이다. 직접적 차별 뿐 아니라 이렇게 차별적 인식을 간접적으로나마 조장하는 것들은 권고를 통해 견제해야 한다.

혼혈과 관련된 차별에 대해 제도적, 정책적 처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은 고등학생인 나로서 매우 벅차다. 그러나 신문 기사를 보면서 나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우리 사회에 대해 큰 문제점을 느낀다. 왜 혼혈인으로 태어나면 유독 극복해야 할 시련과 아픔을 자동적으로 제공받는 것일까, 피부색 하나 가지고 남을 차별할 특권은 어떻게 생성되어온 것인가, 시련을 극복해야 비로소 각광을 받고 시련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은

53)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팀, “살색 크레파스, 살구색으로 최종 확정,” 2005/05/17,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NT_ID=24&flag=VIEW&SEQ_ID=554921

차별 속에 방치되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점들이다.

편견과 차별이 ‘혼혈’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자기와 다른 존재를 너무 쉽게 멸시해도 된다는 사회풍토 하에서는 ‘혼혈’이라고, ‘흑인’이라고, ‘장애인’이라고....이런 저런 핑계로 남을 쉽게 멸시하게 되는 것이다. ‘동질성’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익숙하게 수용하는 자세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다문화가정이 보편화되는 새로운 한국상황에서 별다른 잘못없이 차별받고 멸시받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유 성 애
(한양대 철학과 석사과정)

목 차

Contents

제1장 현행 인권논의와 예술	42
제1절 인권의 역사	43
제2절 기본권과 다원주의	63
제3절 표현의 자유와 예술	83
제2장 예술과 창작	3
제1절 예술의 이상: 도덕과 합일	13
제2절 저항, 창조, 인권: 증인의 시각과 천재의 시각	4
1. 리얼리즘: '사실을 사실대로'	34
2. 모더니즘: '예술을 위한 예술'	37
제3절 현대 예술과 인권	83
제3장 예술 표현의 자유와 충돌	93
제1절 창작 행위와 평등권	93
제2절 예술표현의 허용범위	245
제3절 창작의 자유와 인권: 다원주의 비평적 접근	4
제4장 화해의 모색: 예술창작, 비평, 민주주의	7
제1절 예술의 종말과 인권	73
제2절 민주주의 비평	9
제5장 다중의 시대, 예술, 인권	15
<참고문헌>	5

요 약

이 글은 예술과 인권의 관계를 밝히려는 시도이다.¹⁾ 예술과 인권의 관계는 그 중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없었다. 인권논의 자체도 광범위한데다, 한편으로 예술 영역의 특수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이유도 크다.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작품들이 있다. 이 작품들을 둘러싼 논란은 우리 사회가 예술과 인권을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다양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작품들에 단정적 평가를 내리거나, 예술과 인권에 대한 선부른 규정을 하는 것은 논의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권 논의는 이론적 명분만으로 완결될 수 없고 작품이 빠진 예술 논의는 추상성에 머물 수밖에 없다. 작품들을 둘러싸고 흩어져있는 다양한 쟁점들을 찾아 엮어볼 것이다. 여타 사회과학 방법론이나 인문과학 방법론과 달리 실제 사례와 이론적 모색의 결합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1) 인권논의를 역사적으로 조망하고 그 특성을 살펴본다. 특히 자유주의 사상에서 기본권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이 무엇인지 개괄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예술 논의와 인권 논의의 유사성을 논구할 것이다. 2) 예술의 독특성을 논구할 것이다. 예술표현의 특수성을 찾고, 예술의 이상을 계몽주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주요 예술 사조의 대립구도에 따라 논의할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계몽주의의 예술 이상이 현대예술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할 것이다. 3) 실제 논란이 일었던 작품들에 대한 이론적 논구와 그 비평적 시각을 소개해, 인권 논란의 가능한 대안을 찾아볼 것이다. 4) 예술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어떻게 현대예술이 비평공간에서 그 화해를 모색하고 있으며, 인권논란도 비평에서 그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탐색해 볼 것이다. 5) 마지막으로 현대 사회에서 예술의 가능성을 계몽주의 이상의 필요성과 그 현대적 해결을 위한 물음으로 제기할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예술에서 인권논의는 예술의 발전을 위한 필수 요건이고, 더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할 것이다.

1) 예술 일반이 아닌, 시각 예술에 국한 시켜 논의를 다룰 것이다. 예술 일반을 다루기엔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자칫 추상적 논의에 그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흔히 시각 예술과 미술은 별다른 구분 없이 쓰이곤 한다. 하지만 현대 시각예술의 다양한 흐름을 포괄하기엔 미술이란 용어는 다소 한정적이다. 때문에 이 글은 미술 대신 예술이란 용어를 쓴다.

예술과 인권

이 글은 예술과 인권의 관계를 밝히려는 시도이다.¹⁾ 예술과 인권의 관계는 그 중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없었다. 인권논의 자체도 광범위한데다, 한편으로 예술 영역의 특수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이유도 크다.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작품들이 있다. 이 작품들을 둘러싼 논란은 우리 사회가 예술과 인권을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다양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작품들에 단정적 평가를 내리거나, 예술과 인권에 대한 선부른 규정을 하는 것은 논의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권 논의는 이론적 명분만으로 완결될 수 없고 작품이 빠진 예술 논의는 추상성에 머물 수밖에 없다. 작품들을 둘러싸고 흩어져있는 다양한 쟁점들을 찾아 엮어볼 것이다. 여타 사회과학 방법론이나 인문과학 방법론과 달리 실제 사례와 이론적 모색의 결합을 시도하는 것이다.

어떤 작품들이 심판대 위에 섰는가. 소개한다. 첫째 사례는 음란물 시비에 휘말린 경우다. 2001년 5월 최경태는 전시 <여고생>을 연다. 전시된 31점의 유화작품은 교복을 입은 여고생의 신체,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전시품들의 음란성 여부가 문제되었다. 재판에 회부되었고, 원심은 전시된 작품을 헌법에 규정된 음화로 판결했다. 전시 작품을 책으로 묶은 도록도 음란 문서로 규정되었다. 전시와 관련된 작가의 모든 활동은 위법이 되었다. 왜곡된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로 여고생 성매매를 다룬 작가의 의도도 중요치 않게

1) 예술 일반이 아닌, 시각 예술에 국한 시켜 논의를 다룰 것이다. 예술 일반을 다루기엔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자칫 추상적 논의에 그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흔히 시각 예술과 미술은 별다른 구분 없이 쓰이곤 한다. 하지만 현대 시각예술의 다양한 흐름을 포괄하기엔 미술이란 용어는 다소 한정적이다. 때문에 이 글은 미술 대신 예술이란 용어를 쓴다.

되었다. 작가는 음화 전시 및 판매, 음란문서 제조교사, 판매, 반포죄로 200만원 벌금형과 31점의 전시 작품 압류 소각조치를 선고받았다. 작가는 항소했다. 제한된 공간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만 전시했기 때문에 작품의 악영향을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작품의 사실적 묘사에 주목했다. 법원은 작품의 사실적인 성적 묘사가 일반인의 성적 욕구를 자극,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그 음란성을 완화할 만한 어떠한 예술성도 찾아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은 원심판결대로 종결되었다.

둘째, 인권침해 논란의 중심에 선 경우이다. 2008년 4월 김홍석은 전시 <밖으로 들어가>의 개막 행사 일환으로 퍼포먼스를 기획했다. 원제 <Post 1945> 퍼포먼스의 요지는 지금 관객들에 섞여있는 ‘창녀’를 골라내는 사람은 120만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안내문에는 이 여성이 실제 몸을 파는 여성이며 미술관에 3시간 있는 대가로 60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소개한다. 미술관 인턴 직원이 창녀를 찾아내 돈을 받는 걸로 작가가 제안한 숨바꼭질은 끝이 났다.

퍼포먼스가 보도되고 매우 거센 반감 여론이 형성되었다. 애초에 작가가 밝힌 기획 의도는 한국 자본주의 모순의 고발이었으나, 인권 침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 사건을 다룬 몇몇 언론매체의 눈도 깜짝 않았다. 2008년 5월 40여명의 여성들이 미술관을 찾아가 창녀 찾기를 패러디한 <인간 말종 찾기> 퍼포먼스를 벌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후 작가는 퍼포먼스를 위해 고용된 여성은 몸을 파는 여성이 아닌 배우라고 밝혔다. 하지만 퍼포먼스의 인권침해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관객을 우롱했다는 비난만 더해졌을 뿐이다.

예술에서 외설시비 소동은 친숙하지만, 인권 침해 논란은 그리 흔하지 않다. 음란한 작품과 인권을 침해하는 작품은 어떻게 다른가? 가령 예술가가 초상화를 그리기로 하고 모델을 고용했는데, 계약과 달리 예술가 임의대로 누드로 바꿔 그려서 배포했을 경우, 법적으로는 이 모델의 명예 및 기본 권리를 훼손한 것이다.²⁾ 그런데 모델의 권리를 침해한 건 예술가인가, 그려진 이미지인가? 그려진 이미지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가? 또 창작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엔 어떠한가? 가령 예술 창작 과정으로 인정되는 방식에 따른 수위 높은 성적 묘사는 인권 침해와는 상관없는가? 도대체 어떤 경우에 어떤 예술작품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예술작품은 기본적으로 미학적 평가, 즉 예술 비평의 대상이다. 그런데 때로 도덕적 평

2) 김민호, “낙서화가 바스키아 감옥가다”, 예경 2004. 참고.

가의 대상이 된다. 혹은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경계는 어떻게 정해지나? 그리고 예술에서 인권은 어느 경계에서 있는가? 필자는 예술과 인권의 관계가 크게 두 구도로 대립된다고 설정한다. 우선, 예술과 인권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는 입장이다. 예술은 인권 신장을 위해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예술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입장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국내에도 억압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주제로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이 있다. 그 반대는 예술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자유로운 표현에 억압이 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들은 예술작품에 대한 도덕적 혹은 법적 평가가 예술적 평가의 기회를 애초에 박탈해 버리거나, 권력과 결탁해 임의대로 예술가들을 억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입장의 극단은 좋은 예술은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입장의 극단은 모든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하며 예술은 예술로만 봐야 한다는 것이다. 두 입장은 때로 충돌한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양자택일이 아니다. 기존의 입장들을 기반으로 예술과 인권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1) 인권논의를 역사적으로 조망하고 그 특성을 살펴본다. 특히 자유주의 사상에서 기본권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이 무엇인지 개괄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예술 논의와 인권 논의의 유사성을 논구할 것이다. 2) 예술의 독특성을 논구할 것이다. 예술표현의 특수성을 찾고, 예술의 이상을 계몽주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주요 예술 사조의 대립구도에 따라 논의할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계몽주의의 예술 이상이 현대예술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할 것이다. 3) 실제 논란이 일었던 작품들에 대한 이론적 논구와 그 비평적 시각을 소개해, 인권 논란의 가능한 대안을 찾아볼 것이다. 4) 예술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어떻게 현대예술이 비평공간에서 그 화해를 모색하고 있으며, 인권논란도 비평에서 그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탐색해 볼 것이다. 5) 마지막으로 현대 사회에서 예술의 가능성을 계몽주의 이상의 필요성과 그 현대적 해결을 위한 물음으로 제기할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예술에서 인권논의는 예술의 발전을 위한 필수 요건이고, 더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할 것이다.

제1장 현행 인권논의와 예술

예술과 인권은 어떤 관계일까? 그 연결고리를 찾기란 쉽지 않다. 예술에서 인권은 때로 소수자에 대한 예술가의 시선으로 제시되었다. 또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다. 예술과 인권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선, 무엇보다 인권의 본질과 특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예술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필자는 이 물음을 세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다. 첫째, 서구 인권 논의 역사의 특징을 개괄해 볼 것이다. 서양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인권 논의가 서구에서 체계적으로 전개되었음을 감안할 때 그 특징을 살펴보는 건 필수적인 것 같다. 둘째, 서구 인권 논의의 주축이었던 자유주의 인권 논쟁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다양한 인간 삶의 연결고리를 찾아볼 것이다. 셋째, 인권과 예술과의 연관성을 밝혀볼 것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예술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제1절 인권의 역사

현대의 체계적인 인권 개념은 서구 계몽주의 시대의 역사적 산물이다. 유럽의 신분제 사회는 특권층을 위한 사회였다. 지배층은 피지배층의 종교, 사상, 행동을 통제했다. 부당한 폭압을 견디지 못한 피지배층은 소수 권력층에 항거하기 이른다. 이 저항의 근거가 인간의 권리, 곧 인권이다.³⁾ 18세기 계몽 사상가들이 주창한 인간의 자유와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실현하려는 일련의 혁명은 구제도로 요약되는 신분제 사회 철폐를 향한 동력이 되었다. 곧이어 등장한 대의 민주제는 피지배층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고, 지금까지 우리의 정치현실을 지배하고 있다. 이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바탕은 인간이 불가침의 권리를 갖고 있고, 이 기본 권리를 보호할 때만 국가 권력은 정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구 인권개념은 도덕적 권리인 동시에, 법적 권리가 된 것이다.⁴⁾ 도덕적 차원에서

3) 인권을 가장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프랑스 인권선언이다. “국민의회로 모인 프랑스 민중의 대표들은 무지와 나태함 또는 인간 권리에 대한 경멸이 정부의 부패와 사회의 공적인 재난의 유일한 원인을 믿고 엄숙한 선언을 통해 그리고, 사회적 조직체의 모든 구성원들 앞에 언제나 존재하는 이 선언으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의무와 권리를 일깨우기 위해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으며 신성한 인간의 권리를 발표할 것을 결정하였다.”

인권은 억압받는 피지배자, 사회적 약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권리로서 인권은 이 기본 권리를 실정법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 문제는 실정법 차원에서 매우 복잡해진다. 실정법은 이념과 불평등한 현실제도의 화해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불평등 문제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추상적 이념인 인권개념을 어떻게 역사적 상황과 지리적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구체 법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인권논의를 더욱 심화시킨다. 이 문제는 이미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예고되고 있다. 프랑스 인권선언 제 1조는 기본권의 충돌을 언급한다.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사회적 차별은 공적인 이익을 근거해서만 있을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추상적인 기본권의 보장을 선언한 제 1조가 기본권의 제약을 말한다. “공적 이익”을 위해선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 이 “공적 이익”은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규정하는가?) 인권 논의가 심화되던 근대 사회는 산업혁명으로 부르주아라는 새로운 권력이 등장했고,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으로 부의 팽창을 경험했다. 하지만 동시에 심한 부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던 시기이기도 하다.

실질적 불평등은 이념과 법의 불일치를 가속화 시켰다. 문제의 핵심은 개인의 권리가 실제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국가가 개인의 권리에 어디까지 간섭할 수 있는지 그 한계선을 정하는 것이었다. 이념상 개인의 자유는 무한하다. 합리성의 총체인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 이상과 달랐다. 대의명분을 내건 소수 권력집단이 국가의 이름으로 개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국가와 개인 간 충돌과 갈등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권리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도 여

-
- 4) 법과 도덕과의 관계를 박이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권리라는 낱말은 규범으로서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비로소 그 의미를 갖는다.”(박이문, “인권이나 주권이나” 철학과현실 통권61호 (2004 여름) pp.180-188) 독일의 철학자 회페도 “정의”(박종대 옮김, 이제이북스 2004, 110쪽)에서 인권을 도덕적 개념과 법적 개념으로 나누어 구분한다. 도덕적 개념으로서의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의 권리이다. 도덕적 권리인 인권이 법제화되어 법적 개념이 될 때 구속력을 갖는다. 더 나아가 인권 논의의 핵심은 도덕적 권리를 법적 권리로 담아내는 데에 있다고 주장한다.
- 5) 미셸린 이샤이는 계몽주의 이래로 지속된 기본권의 충돌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계몽주의 당시나 오늘날이나 국가와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이 같은 이원적 충성으로 인해 이중적 도덕 기준이 지속되었고, 인권의 의무를 보장하려는 여러 시도가 ‘국익’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다.”(미셸린 이샤이, “세계인권사상사”, 조효제 옮김, 길. 2005.)

전혀 남아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국가와 개인 간 충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다층적이고 복잡한 사회 구조에 따라 발생하는 각 개인 간 기본권 충돌 문제가 부각된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권 개념은 역설적이다. 상호 모순되는 주장을 조화시키려는 시도처럼 보이기도 한다. 마치 자유와 평등의 조화처럼. 그러나 인권은 자유와 평등 사이의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자유는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기본 권리이다. 그러나 인권은 자유의 이념에서 그칠 수 없다. 현실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아직 법이 담지 못한 인간의 기본권을 성취할 때만 인권은 완결될 수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는 인권의 역설을 결코 풀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겨 놓아서 안 된다.

제2절 기본권과 다원주의

자유주의 사상은 인권을 한층 심화된 정치철학 논의로 이끌었다. 자유주의 사상은 개인의 권리를 사회적 제도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며, 국가 권력의 행사를 제한한다. 자유주의 사상은 현대 인권논의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⁶⁾

특히 개별성(individuality)⁷⁾을 인간 행복의 필수 요건으로 파악한 밀의 논의는 지금도 많은 인권 논객들의 단골메뉴이다. 밀의 자유주의 사상의 핵심은 다양한 삶의 다양한 표현이 인류문명과 사회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다양함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이라는 사실은 개인의 의견 못지않게 행동 양식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인간이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유익하듯이, 삶의 실험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각자의 개성을 다양하게 꽃피울 수 있어야 한다.⁸⁾

6) 현대 인권협약들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유엔의 [세계 인권선언 1948] 전반부, [유럽 인권 협약 1950] 제 9조, [미주 인권협약 1969] 제13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 제 18조, [아프리카인권헌장 1986] 제 8조를 참조.

7) 밀은 개별성을 ‘행복한 삶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한해서만 사회가 간섭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 당연히 절대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 자기 자신, 즉 자신의 몸이나 정신에 대해서는 각자가 주권자인 것이다.”(존 스튜어트 밀, 서병훈 옮김, “자유론”, 책세상, 2000. 31쪽)

8) 위의 책 108쪽

각자의 개별성이 발전하는 것과 비례해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더욱 가치 있는 존재가 되며, 또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도 더욱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자기 존재에 대해 더욱 충만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각 개인이 이처럼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면, 개인들이 모인 사회 역시 더욱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⁹⁾

자유주의 맥락에서 인권은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된다. 우선 서구 인권담론에서 자주 언급되듯, 잘못된 사회제도의 해악을 없애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어느 사회 체제나 그 구조상, 스스로의 권리를 전면에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주의 인권논의는 거대 권력에 억압받는 개인의 권리에 주목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그 체제 내에서 옹호하려는 급진성을 담고 있다.

자유주의 인권논의에서 두드러지는 또 다른 점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밀의 ‘해악의 원리’는 각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타인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않는 한 무한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⁰⁾ 밀의 원리는 원론적으로 많은 동의를 얻고 있으나,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타인에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¹¹⁾ ‘어디까지, 어떻게’ 라는 문제는 표현의 자유 문제에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개인의 권리에 대한 자유주의 논의에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 예가 ‘악인의 권리’를 어떻게 대우 또는 인정해야 하는 가이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가령 살인자나 성범죄자의 권리는 보통 사람의 권리와 동등한가? 아니면 지속적인 제약을 가해야 하는가? 우리가 실생활에서 마주하는 어려운 문제이다. 성 범죄자에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하거나, 반인륜적 행위자엔 극형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반면에 이런 대처가 또 다른 인권유린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논란이 뜨거운 건 개인의 권리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¹²⁾

9) 위의 책 119쪽

10) 국가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경우를 해악의 원리로 규정하고 있다. “인간 사회에서 누구든 -개인이든 집단이든 -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위의 책 30쪽)

11) 밀은 또 다른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 하나는 ‘효용의 원리’, 또 다른 하나는 ‘진보의 원리’이다. 효용의 원리에 대해서는 위의 책 32쪽, 진보의 원리에 대해서는 131쪽 참고.

12) 악인의 권리에 대한 밀의 직접적인 대답은 분명하지 않다. 다만 밀이 자유의 원리를 성숙한 사람에게만 국한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의 입장은 악인을 ‘도덕적으로 비성숙한 사람’으로 취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자유의] 원리가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

또 다른 반론의 핵심은 인권의 보편타당성이다. 인권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모든 인류에게 보편타당할 수 있는가. 자유주의자들은 인권의 보편타당성을 인정한다. 각 국가의 법과 문화를 초월해 인간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 권리가 실정법의 테두리에 들어오면, 시대와 문화의 영향을 비껴갈 수 없다. 한 국가에서조차 개인의 법적 권리는 매우 중첩된 층위로 나타난다. 한 개인은 다양한 세대, 다양한 집단에 속해있다. 때문에 종종 권리의 충돌을 경험한다. 현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고, 서로 모순되어 나타나는 권리들을 조화시킬 수 있을까? 물론 조화의 당위성은 인정한다. 빈 인권선언(1993)은 이러한 당위성의 선포라 할 수 있다. 인권에서 국가와 문화의 경계를 허물자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남아있다. 특정 제도를 통해서만 현실화되는 인권이 그 제도를 초월해 보편성을 획득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폭력의 세기” 20세기의 긴 터널을 지나야 했다. 전체주의와 같은 극단적인 복종의 강요와 참혹한 폭력이 있었다. 종교, 민족에 따라 때로 선동을 위한 근거 없는 기준에 따라 각 개인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기도 했다. 이러한 폭력의 경험은 국가와 문화에 상관없이 억압받는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그리고 어떻게 인권 개념이 역사적 맥락에 제약받지 않고 이를 담아낼 수 있을 것인지, 비극적 역사의 반복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는 지금도 풀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아직도 폭압을 지속하는 독재자, 독재 국가가 존재하기에 우리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글로벌 차원에서 인권논의는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관심을 도외시킬 수 없다. 앞서 언급했던 인권의 역설은 이 시간에도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제3절 표현의 자유와 예술

대한민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자유주의 정신에 따른 것이다. 헌법적 보장의 의미를 되살리고 예술과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기 위해 세부 내용을 살펴보자.

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굳이 부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우리가 여기에서 검토하고 있는 자유의 원리는 인류가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을 통해 진보를 이룩할 수 있는 시대에나 성립되지, 그런 때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위의 책 31쪽)

제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4)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언론 출판을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2 조 (1)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1항과 2항을 보면, 개인이나 집단의 표현에 대해 무제한적인 자유가 허용됨을 알 수 있다.¹³⁾ 하지만 이때 제약 없는 자유는 일종의 선언일 뿐이다. 좀 더 명시적이고 세부적인 표현의 자유는 단서조항을 충족할 때만 허용된다. 4항이 단서조항이다. 타인 혹은 사회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제약이 가해진다. 그런데 어느 경우 타인 또는 사회에 피해를 입혔다고 말하는가? 사실 4항은 제약의 조건으로 규정했을 뿐, 그 기준은 불명확하다. “타인의 명예”나 “공중도덕”, “사회윤리”와 같은 지극히 도덕적 개념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분명한 법적 기준은 하위 법에서 결정될 사항이다. 하위 법 수준에서 그 기준이 얼마나 분명한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힘들지만, 여전히 기준이 애매하고 작위적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¹⁴⁾

인권 논의는 헌법조항에 대한 상이한 해석의 여지가 있고, 하위 법과의 상호 조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점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 현행법은 이해관계의 충돌은 물론, 기본권에 대해서도 상이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여기서 법적 논란을 상세하게 논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필자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이런 법 규정이 예술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예술 활동은 창작활동이다. 여기엔 개인의 표현이 전제된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이다. 곧 예술의 자유는 인간에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이미 헌법 제 22조에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는 규정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 인간능력의 발휘는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다. 각 개인이 가진 개성의 자유로운 표출과 발현은 인류의 모든 가능성

13) 이는 미국의 인권협정문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난다.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and expression. This right includes freedom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of all kinds, regardless of frontiers, either orally, in writing, in print, in the form of art, or through any other medium of one’s choic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rticle 13.1)

출처 : <http://plato.stanford.edu/entries/rights-human/>

14) 법에서의 음란 규정(형법 제 243조, 제 244조)에서 그 애매함을 확인할 수 있다. 최경태에 관한 논의에서 자세히 다룬다.

의 총체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가 항상 우리 기대에 부합하는 건 아니라는 점도 이미 살펴보았다. 밀의 지적대로, 창작의 자유가 자유인 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밀의 해악의 원리는 사회적 원리다. 이 원리를 예술 표현의 자유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예술 표현은 여타 인간행위와 다소 다른 것일까? 사실 출판물, 포스터, 예술 작품과 같은 ‘표현 자체’는 타인에 대한 물리적 해악과 별 상관없는 것처럼 보인다. 표현이 구체적인 행동과는 다른, 말 그대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허용범위는 매우 넓어진다. 하지만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잔디밭에 ‘여성 출입금지’라거나, ‘백인만 통행 가능’이라는 뜻말은 금지된다. 도덕적 비난은 물론, 법적 제약도 가해진다. 그 표현 자체가 특정 집단에 대한 노골적인 편견을 담고 있고, 그 표현이 상징하는 행위, 즉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표현에 대한 제약의 경계가 분명한 건 아니다. 서문에서 언급한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예술적 표현도 거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제약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예술적 표현은 일상의 표현 행위와 달리 제약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 이면에는 서구 계몽주의 시대부터 강조된 생각이 깔려있다. 예술만의 독특한 영역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예술적 표현은 현실 억압의 탈출구, 때로 강한 저항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가령, 한 예술가가 아직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 어떠한 비난이나 제약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예술가가 권력자의 전횡을 주제로 한다면 어떤가? 예술사는 국가로부터 검열당하고, 재정적 지원을 박탈당한 수많은 예술가를 보여준다. 이렇게 상이한 지위의 예술적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인권논의와는 어떻게 연관될까? 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예술의 독특성과 창작의 자유에 관한 세부적 논의로 나아가 보자.

제2장 예술과 창작

제1절 예술의 이상: 도덕과 합일

국내의 수많은 미술 공모전 중 몇몇 모집 요강에는 흥미로운 점이 있다. 작품내용이 “미풍양속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이다.¹⁵⁾ 은연중 우리 사회에서 예술과 도덕이 면밀한 관계에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예술과 도덕을 결부시키는 건 최근의 논의가 아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미 고대부터 예술의 두 가지 얼굴에 대한 통찰이 있었다. 즉 예술은 타락한 쾌락을 위한 유희거리로 전락할 수도 있고, 반대로 선을 담아 ‘잘 사용하면’ 정신을 고양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도덕적 예술을 강조했고, 공자도 마음의 고양에 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¹⁶⁾

예술은 이중적 특성을 갖는다. 이른 바 삶의 고양, 즉 인간의 삶을 지금과 다른 차원으로 개선할 수 있다. 반면, 기존 체제의 옹호 수단으로 전락해 억압체제나 불평등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종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중적 규정 이면에 깔린 예술에 대한 자각은 동일하다. 예술은 인간의 삶에서 어떤 독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예술의 역할에 대한 평가이다. 어떤 때 예술은 좋은 것이고, 어떤 때 예술은 나쁜 것인가? 우리는 이 평가의 기준을 도덕에서 찾곤 하는 것이다.

물론 예술은 도덕과 다르다. 예술은 도덕이 되는 순간 사라진다. 그런데 우리는 왜 특정 예술 표현의 좋고 나쁨을 평가할 때나 창작행위의 허용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요구될

15) 대한민국 여성 미술대전, 부산 미술대전, 대한민국 미술대전 등.

16) “우리는 아름답고 우아한 것의 성질을 천부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장인들을 찾아야만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젊은이들이 마치 건강에 좋은 곳에서 거주함으로써 그렇게 되듯, 모든 것에서 덕을 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아름다운 작품들에서 뭔가가, 마치 좋은 곳에서 건강을 실어다 주는 산들바람처럼, 그들의 시각과 청각에 부딪쳐 오게 되어, 어릴 적부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ho kalos logos)과의 닮음(homoiotēs)과 친근함 그리고 조화로 이끌릴 걸세.” (플라톤, 박종현 옮김 『국가』 서광사, 2005. 220쪽)

“《논어》 <팔일편>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 인하지 않으면 예는 해서 무엇하며, 사람으로 인하지 않으면 음악은 해서 무엇하랴?』 하였는데, … 우리는 공자가 음악을 중요시한 까닭이 … 음악이라는 예술은 먼저 정치상의 교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인격을 수양하고 향상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 어진 인격의 완성에 도달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도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서복관, “중국예술정신“ 동문선, 2000, 49쪽.)

때, 도덕에 기대는 것일까?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개인의 삶을 고양시키는 예술과 사회를 분열시키고 개인의 피폐한 삶을 조장하는 예술은 그 도덕적 내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인가?

도덕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좋은 예술이라는 생각은 계몽주의 시대에 지배적이었다. 특히 루소는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예술은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권력에 편승한 예술이 힘 있는 자와 힘없는 자의 착취 관계, 불평등한 사회의 모습을 가린다는 것이다. 그 지배구조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예술행위와 문명은 거부되어야 한다. 루소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통치와 법이 사회를 이루어 사는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을 돌보아주는 반면, 학문과 문예, 그리고 예술(그것들은 덜 독재적이지만 더 강력하다)은 사람들을 결박하고 있는 쇠사슬을 꽃다발로 치장함으로써 사람들에게서 타고난 자유(사람들은 자유를 타고 났다)의 감정을 질식시킨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예술을 사랑하게 만듦으로써 자신들을 언필칭 ‘개화한 국민’으로 만들어 낸다.¹⁷⁾

위에 따르면,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꾸미고 메시지의 전달에 이용된 예술의 이면에는 기존 권력의 미화와 체제의 정당화가 있다. 루소의 과격한 주장은 당시 자본주의 체제가 자리를 잡고 있던 시점에 예술이 기존 체제의 시녀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정적 판단에 따른 듯하다. 그의 현대비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더 교활한 가식과 더 섬세한 세련미로 타인의 환심을 사는 기교를 신조처럼 떠받들게 만들어놓은 오늘날, 우리의 풍속에는 어떤 비열하고 기만적인 획일성이 지배하고 있다. 그리하여 모든 정신이 똑같은 하나의 주형에 부여된 것 같다. 한결같이 정중함과 격식에 맞는 행위가 요구된다. 사람들은 항상 관습을 따를 뿐 자신의 타고난 자질은 등한시 한다. 그들은 더 이상 본래의 자기 자신을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동일한 정황 속에서 사회라고 일컬어지는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항구적인 속박 상태의 사람들은 더 강력한 동기에 따라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모두 똑같은 짓만을 되풀이할 뿐이다.¹⁸⁾

루소는 ‘도덕화’와 ‘문명화’라는 미명 하에 벌어지는 개별성의 소멸을 염려한다. 가식적 인간관계의 확산도 루소의 비판대상이다. 사회관습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은 결코 독

17) 루소, “학문과 예술에 대하여 외”, 김중현 역, 한길사, 2007. 36쪽

18) 위의 책, 38쪽

창성을 발휘할 수 없고, 독특한 개성을 드러낼 수도 없다. 개인의 표현은 항상 관습이 요구하는 표현인 셈이다. 관습의 추종이 과연 우리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현행 체제를 그대로 답습하자는 것 아닌가?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가장 염려했던 것은 변화 가능성이 없는 사회다. 변화를 모르는 사회는 기존의 악습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좋은 사회일 수 없다. 이에 동조하는 예술행위는 사회의 ‘타락’을 공고하게 한다.¹⁹⁾

모든 계몽주의자들이 루소처럼 예술을 비판적으로 본 것은 아니다. 사실 루소의 주장도 모든 예술 행위에 대한 거부로 읽는 것은 큰 무리가 있다. 오히려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루소의 순수주의는 비판적인 현실 예술과는 다른, 예술의 순수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계몽주의자들은 궁극적으로 예술이 인간소통의 가능성을 확대하고 인류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믿었다. 예술에 대한 계몽주의적 이상은 예술을 통한 인간 정신의 고양과 소통이었다. 도덕화, 문명화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칸트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이상이었다.

지속적인 공동체를 구성하도록 하는 합법적 사회성을 향한 활발한 경향이 있는 민족들처럼, 그 세기도 자유와(따라서 평등과) 제약을(두려움보다는 의무를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을 통해) 결합하는 무거운 임무에 내재적인 커다란 어려움들과 싸웠다. 따라서 그러한 세기와 그러한 민족은 우선 가장 교양된 계급들의 생각들과 가장 교양되지 못한 계급들의 생각을 상호적으로 소통시키는 예술을 발견하여야 했고, 첫 번째 계급들의 발전과 세련을 두 번째 계급의 단순성과 독창성에 적응시키는 예술을 발견해야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위적인 문화와 소박한 자연 사이에서 매개자를 발견해야 했다. 이 매개자는 또 인간의 상식으로서 취향에 대해서도 보편적인 규칙들에 의해 주어질 수 없는 정확한 척도를 구성한다.²⁰⁾

19) 계몽주의 철학자 칸트는 이 점을 분명하게 언급한다. “인간의 자연 본성에는 자연에서 유래한 모든 것이 그러하듯, 중국에는 선한 목적들을 위한 소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는 일정한 불순함이 있다. 곧 자신의 진짜 마음씨는 감추고, 사람들이 좋다고 훌륭하다고 여기는 일종의 거짓 마음씨를 내 보이려는 경향 같은 것 말이다. 매우 확실하게도 인간은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가상을 받아들여려는 성벽에 의해 자신을 문명화했을 뿐만 아니라 차츰차츰 어느 정도 자신을 도덕화했다. ... 사람들이 실제보다 자신을 더 좋게 보이려하고, 가지고 있지도 않은 마음씨를 표현하려는 이 소질은 인간을 조야함에서 탈각시키고 그로하여금 우선 적어도 그가 알고 있는 선의 수법을 받아들여도록 하는 데에 단지 이룰테면 일시적으로 쓰일 뿐이다. 왜냐하면 나중에 진정한 원칙들이 일단 개발되고 사고방식으로 이행되는 때에는 저 거짓됨을 차차 강력하게 쳐부서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 거짓됨은 심정을 부패시키고, 너무나 아름다운 가상의 잡초들 사이에서 선한 마음씨가 싹트지 못하게 할 것이니 말이다.”(칸트, 백종현 옮김, 『순수이성비판2』, 아카넷, 2006. 891쪽 강조는 원문)

비록 인간 문명의 기원에서 현시점까지 이행을 타락의 진행으로 진단하더라도 성숙한 인간, 진보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계기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계몽의 이상은 회의주의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때 예술은 그 계기가 될 수 있는가? 예술은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는가?

제2절 저항, 창조, 인권: 증인의 시각과 천재의 시각

계몽주의 예술 이상은 곧바로 실현될 수 없었다. 서양 예술사는 계몽주의 예술 이상에 와해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필자는 서양 예술사에서 대립 관계로 간주되어 온 리얼리즘 전통의 예술과 모더니즘 예술을 비교해 볼 것이다. 이 비교는 사적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권과 관련해 예술에 대한 상이한 시각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1. 리얼리즘: ‘사실을 사실대로’

예술의 본성상 저항은 떼어낼 수 없는 개념이다. 일상 언어에서 저항은 과거와 현재의 억압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예술에서 저항의 의미는 복잡한 측면이 있다. 근본적으로 예술은 새롭고자 하는 욕구의 표출이다. 인간의 욕구는 이중적이다. 인간의 욕구는 기존 욕망체계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을 뜻할 수 있다. 가령 유행이라면 무조건 따라하고 싶은 욕망은 맹목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다. 맹목적인 욕구만 있는 건 아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것을 찾으려는 욕망도 있다. 이런 욕구는 기존의 욕망체계를 벗어나고자 한다. 이 욕구는 저항의 욕구를 포함한다. 예술가의 욕구는 근본적으로 후자의 경우에 속한다. 예술가의 욕구표출은 기본적으로 저항을 전제한다. 이때 저항은 예술 전통의 수용과 재해석이다.

실제 근대까지 예술사의 동력은 이전 예술전통에 대한 저항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욕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일하다. 중국에도 선인들의 작품을 충분히 학습하고, 새롭게 해석해 자신만의 독특한 양식을 만들어내는 전통이 있다.²¹⁾ 선인들이 만들어놓은

20) I, Kant, “Critique of Judgment”, trans. Werner S. Pluhar (Indianapolis : Hackett Co. 1987) §60, 이브미쇼, “예술의 위기”, 하태환 옮김, 동문선, 1999. 213쪽에서 재인용

21) 중국에는 입모 전통이 있다. 마이클 설리반은 “중국의 산수화”(김기주 역, 문예출판사, 1994)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중국의 화가는 그의 기법이나 기법들 - 그가 많은 기법의 대가일 수도 있기 때문

전통은 배움의 대상인 동시에 극복의 대상이다. 낡은 건 새로움을 가능하게 하고, 새로움은 낡은 것이 있어야 빛난다. 다른 한편, 전통적 미적 가치에 대한 저항을 넘어 사회 제도와 도덕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반항을 기치로 한 예술가들도 있다. 여기서 저항은 현실 사회 부정의와 참혹함에 대한 폭로이자 교정의 시도이다. 예술가가 사회의 전면에 나선 것이다.

이 때 예술가의 역할은 “증인”의 역할과 같다. 예술가들은 전쟁이나 대학살 같은 극한 상황 속 피해자들의 모습과 고통을 작품에 담고자 한다. 그 형식은 상징화되거나 추상화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가령 고야의 작품들은 사실적 방법과 은유적 방법으로 전쟁의 참혹함과 인간적 비극을 잘 담아내고 있다.²²⁾ 여기서 저항의 시선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다. 작품 속 예술가의 시선은 자신의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보다는, 사실의 무게를 감상자에게 전한다. 앞서 언급했던,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주목하는 초기 인권 논의와 같은 맥락에 있다.

우리 미술사에서 민중예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내려지는 대목도 여기다. 처음으로 예술이 억압된 사람들의 권리에 주목하고, 부당한 사회체제에 전면적으로 항거한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이라는 데 민중 예술의 의의가 있다.²³⁾ 이 뿌리는 노동자 예술, 사회소수자 예술, 일련의 예술 인권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미술사에서 민중예술 운동은 검열과 표현의 억압으로 채워졌다. 작가들이 모인 단체전은 그 성격에 따라 검열 받고 무산되기 일췌였다. 많은 예술가들이 구금, 연행, 처벌받았으며 수많은 작품들이 사라졌다.²⁴⁾ 숨죽여야 했던 독재가 막을 내리고, 특정 사상 및 정치적 입장에 대한 억압이 공식적으로는 모두 사라진다. 하지만 과거 독재의 벽은 깨졌으나, 자본의 그물이 사람들을 옥죄다. 재질만 바뀌었을 뿐 벽은 그대로다. 우리 사회엔 숨죽이며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때문에 여전히 소수

에 기법들일 수도 있다. - 의 근원이 그가 수세기간에 걸쳐 앞뒤로 뻗어 1있는 초기 대가들의 작품으로부터 영양분을 이끌어낸 것임을 매우 잘 자각하고 있는 문인이기도 하다. ... 예를 들어 황공망黃公望은 고의로 거연巨然식으로 그렸고, 문징명文徵明은 황공망식으로 그렸다.” (13쪽) 책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설리반의 핵심문제는 왜 중국 화가들은 실제 본대로 그리지 않았는 가이다. 그리고 그는 이 문제가 회화를 비롯해 중국의 모든 예술표현에 적용된다고 본다. (31쪽)

22) 박홍규, “총칼을 거두고 평화를 그려라”, 아트북스, 2003. 참고

23) 일제 강점기 시대의 미술가들의 어려움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으나, 대부분 작품에 사회 모순을 담기 보다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미술가 개인의 고난, 갈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김윤수 외, “한국미술100년”, 한길사, 2006. 참고) 따라서 사회 모순 고발이라는 저항의 뜻에는 맞지 않다.

24) 광대원, ‘80년대 민중미술과 오일광주’ <광주비엔날레 1995> (삶과 꿈, 1995), 119쪽.

자의 권리에 관심을 두는 예술가들이 있다. 그 중에는 매우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강조하는 예술가들도 있다. 이른바 “행동주의 예술”이다. 특히 미디어 행동주의²⁵⁾는 현장을 기록해, 증인의 관점을 더욱 부각시킨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미처 감지하지 못한 사건의 또 다른 측면을 담는다.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에게겐 알지 못했던 세계의 이면을 보여준다. 미디어를 매개로 이미지를 접한 사람들은 암묵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행동주의 예술은 예술의 증인 역할을 극대화 한다.²⁶⁾

예술의 증인 역할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린다. 민중예술 운동의 비판자들은 예술행위가 특정 이데올로기에 오염되거나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비판을 한다. 반면 지지자들은 예술의 도덕적 역할을 현대에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 그런데 정치참여적, 사회비판적인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는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다. 사람들의 권리 보호를 촉구하기 위한 시위 현장에 왜 굳이 예술가가 필요한가? 시위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이라면, 예술가가 아닌 시위대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은가?²⁷⁾ 더 근본적인 물음으로 나아가보자. 예술은 목적을 갖는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술은 도덕적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예술의 다른 측면을 강조한 예술 운동에서 찾아보아야 한다. 예술의 완결성을 강조한 사람들은 도덕적이지도, 정치적이지도 않은 예술표현 자체만을 중시한다. 그들은 말했다. 예술은 예술일 뿐이다.

-
- 25) “미디어라는 테크놀로지와 사회운동의 결합으로 태어난 미디어 행동주의는 권력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급진적인 가치나 반체제적인 내용을 알리고자 할 때 기존의 상업 매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대안 미디어를 생산하여 직접 행동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경기문화재단, “희망의 예술”, 서울, 2007. 114쪽)
- 26) 물론 단순히 현장의 생생한 이미지를 전달만을 목표로 두지 않는 경우도 많다. 현장 미술가 최병수는 오히려 이러한 행동이 곧 사회변혁의 기수로 작동될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지구와 민중이 만족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예방하는 일도 하겠지만, 불이 났을 때 물을 들고 달려가듯 그렇게 자연 파괴, 인간성 파괴 현장에 달려가 내 작품으로 그것을 막아내고 싶다.” (위의 책 141쪽)
- 27) 미술 평론가 김준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비판적 거리를 두는 것과 문화 예술적 개입의 간극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정말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비판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 가장 심오한 통찰력과 가장 발달한 상상력과 가장 기발한 창의력으로 핵심을 내치르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원불멸의 아트를 생산해내야 한다는 데 대해서 반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위의 책162쪽) 이에 대해선 따로 논의가 필요하다. 김준기는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행동주의 예술은 고정된 결과물을 목표로 하지 않고 행동주의적 예술 실천을 유발하는 정신성을 가장 큰 자산으로 삼는다. 나아가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을 중요시한다. 중국에는 실천의 결과를 예술적인 유산으로 남기려 하기보다는 그 결과를 토대로 하는 또 다른 예술 실천의 디딤돌로 삼으려 한다. 그런 점에서 가장 예술적인 방법으로 사회에 개입하고 참여하는 자세를 행동주의 예술의 전거로 삼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164쪽)

2. 모더니즘: ‘예술을 위한 예술’

사회, 정치, 도덕과 무관한 ‘예술을 위한 예술’을 지향하는 예술가 상은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 세속적 속박에도 초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념에 찬 예술가, 천재적 예술가는 우리에게 꽤 친숙한 예술가 상이다. ‘진정한 예술가’에 대한 허버트 리드의 설명은 이러한 예술가 상을 전제하고 있다.

예술의 궁극적인 가치들은 개인과 그 개인이 사는 시대와 환경을 초월한다. 그 가치는 예술가가 오직 자기 직관의 힘으로밖에 파악할 수 없는 하나의 이상적인 균형이나 조화를 표현한다. 자기 직관을 표현하면서 예술가는 그 시대의 사정에 따라 자기 손 안에 놓인 여러 재료를 사용한다. ... 진정한 예술가는 자기에게 부여된 온갖 재료와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다. 자신의 조형의지를 표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떠한 조건이라도 받아들인다. 그리고 역사의 좀 더 넓은 변천 속에서 예술가의 여러 노력은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받아들여지거나 배척당하거나 하는데, 예술가가 예견할 수 없는 여러 힘을 통해 그렇게 되며, 그 힘들은 예술가가 실증하는 가치들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그렇지만 이들 가치는 인류의 영원한 속성들에 존재한다는 것이 예술가의 신념이다.²⁸⁾

모더니즘 예술운동은 예술작품을 창조하는 예술가의 지위를 강조한다. 은연중 예술가는 감상자보다 우위에 선다. 예술가는 천부적인 재능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실 예술가의 표현에서 감상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예술가의 관심은 내적 주관의 표현이다. 오히려 감상자는 예술가의 독창적 표현을 지지하거나, 억압하거나, 외면하는, 예술가가 창작을 하는 데 필연적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조건과 동일시되고 있다.²⁹⁾

낭만주의에서 시작된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구호가 지금까지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분업화와 전문화에 따른 요구인 동시에 기계화되는 사회에서 예술 표현의 독자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다.³⁰⁾ 이 구호는 서구 전위 예술가들의 작품에서 다시 부활한다. 그리

28) 허버트 리드, “예술의 의미”, 박용숙 옮김, 문예출판사, 2007. 283쪽.

29) 하우스는 독자의 개입을 필요치 않는 예술에 대해 ‘예술의 역설’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평하고 있다. “예술작품의 가장 불가사의한 역설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또 그 자체로서만 존재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데에, 역사적/사회학적으로 제약을 받는 구체적인 감상자 층에 의존하면서 동시에 도대체 대중을 안중에 두려고 하지 않는 것같이 보인다는 데에 있다.” (아르놀트 하우스, 백낙청 외 옮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4” 창작과 비평사, 35쪽)

고 90년대 이후 우리 미술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자기 주관에 대한 관심과 표현, 급격한 형식의 파괴는 감상자들을 당황하게 했다. 이제 난해함을 빼놓고 현대 예술을 말할 수 없다. 이러한 흐름은 분명 국내의 제도권 미술계를 특별한 영역으로 경계 짓는 데 일조했다. 동시에 예술적 표현의 경계 설정과 예술작품 정의의 문제가 탐구 대상으로 떠올랐다. 현대 예술, 어떻게 보아야 할까? 예술을 위한 예술일까? 이러한 예술은 인간의 삶, 인간의 권리와 무관한가?

제3절 현대 예술과 인권

현대 예술의 핵심은 실험정신이다. 예술가들은 기존 형식과 내용을 송두리째 거부하고 파괴하기도 한다. 파괴와 저항으로 보이는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의 이면엔 무엇이 있을까? 오르테가는 현대 예술의 정신을 “비인간화”로 규정했다. 현대 예술가들이 인간의 관심을 벗어나 예술 자체에 관심을 기울인 것을 주목한 것이다. 자연주의나 낭만주의 예술, 새로운 예술 이전의 예술들은 철저히 인간화를 지향했다. 예술작품은 인간 현실을 보여주는 창이었다. 사람들은 그 창을 통해 보이는 인간 모습에 공감하고 갖가지 감정을 쏟아낸다. 하지만 새로운 예술가들은 인간 삶의 반영이 아니라, 철저한 변형을 통해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낸다. 현실과 전통에 대한 완벽한 부정이 새로운 현실의 창조로 이어진다. 이때 예술은 현실의 창이 아니라, 철저히 예술 그 자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예술은 낭만주의나 자연주의 예술보다 비대중적이다. 새로운 예술엔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인간 현실의 모습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술가가 변형하고 창조한 현실만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유희적인 파괴자이다. 전통을 파괴하고, 현실을 무너뜨리며 미적 가치를 중시하지 않는다. 아름다움을 위한 파괴는 가능할지 모르나, 파괴 자체는 아름다울 수 없다.

현대 예술의 문제는 무엇이 예술이고 예술이 아닌지 결정하기 애매하다는 것이다. 뒤샹을 비롯한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의 저항은 고급화된 예술 향유에 대한 거부였다. 일부 특권화 된 소위 부르조아 감상층을 위한 예술을 거부한 것이다. 그들은 기존의 감상자들이 생각한대로 예술 활동이 엄청나게 진지하거나 고귀한 것이 아니라, 어찌면 일상적 행위와

30) 위의 책, 33쪽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려 했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 예술을 이해하고, 다가서는 감상자가 소수라는 건 역설적이다. 현대 예술은 ‘예술을 위한 예술’의 일면을 띠고 있다. 하지만 역으로 현대 예술은 적극적인 감상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가? 과거의 감상자처럼 수동적인 자극에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닌, 예술작품을 규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새로운 감상자의등장이 요구되는 것이다.

현대 예술이 새로운 감상자의 시선을 요구한다는 것은 인권논의에서도 중요하다. 창작자와 감상자를 매개해주는 예술작품의 위상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술에 대한 반성과 고찰이 전제된 표현이라 해도, 감상자의 기본권이 훼손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술가는 기존 예술방식이나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가? 이는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일까? 무한한 자유와 그 충돌의 문제를 살펴보자.

제3장 예술 표현의 자유와 충돌

제1절 창작 행위와 평등권

모든 예술적 표현은 허용될 수 있는가? 여기엔 하나의 전제가 붙는다. 타인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정신적 해악을 가하지 않는 한. 가령 최근 논란이 되는 포르노그래피를 살펴보자. 포르노그래피가 하나의 표현이라면, 포르노그래피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음란판정을 받은 최경태 작품은 어떠한가? 최경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 아닌가? 정말 포르노그래피가 하나의 예술적 표현인가? 아니면 예술적 표현에서 배제해야 하는가?

가령 『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가』의 저자 김호석은 포르노그래피도 하나의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김호석은 도덕을 이유로 표현을 검열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면에는 기존의 권력집단이 새로운 힘의 등장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본다. ‘도덕’, ‘미풍양속’의 미명하에 검열을 정당화하는 것은 변화하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포르노그래피도 제재만 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표현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김호석의 주장은 상당부분 자유주의 노선에 있다.

김호석은 밀턴의 예를 들며, 지금은 당연한 권리가 과거엔 사회적 도덕과 상충된 것이었음을 역설한다. 따라서 현재 도덕에 어긋난다고 처음부터 제약을 가할 것이 아니라, 개방된 비평 공간에서 토론하는 것이 건설적 미래를 위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김호석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데 반대하는 주장의 이론적 근거를 밀의 『자유론』에서 찾고 있다. 또 법적 측면에서는 미국의 수정헌법 1조를 예로 제시한다.

김호석의 주장은 인간의 모든 표현이 유의미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인간의 삶은 고귀하고 특수한 경험을 담는다는 점에서 분명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표현이 유의미하다고 해서 모든 표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미 밀이 언급한대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언행은 타인의 승인을 얻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표현이나 행동의 의미는 중요치 않다. 강도행위가 강도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다 해서 피해자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예술의 표현방식이 기존 도덕에 위배된다고 무조건 금지하는 건 부당하다. 기존의 도덕이 교정 대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예술표현의 타당성은 잠재적이든 현실적으로 존재하든 감상자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표현의 의미는 토론을 통해서 더욱 명확해진다. 그런데 개인의 표현을 억압해선 안 된다는 논의와 포르노가 하나의 표현이라는 논의는 전적으로 다르다. 포르노그래피, 아동성매매, 근친상간 등을 담은 영상들이 유의미한 표현인가? 나아가 예술적 표현일 수 있는가?

포르노그래피 문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포르노그래피에는 제작자와 감상자가 있다. 제작자가 포르노를 제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감상자들이 포르노를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포르노그래피는 앞에서 구분한 예술 표현의 성격 중 어디에 속하는가? 특정한 사회적 목표를 성취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감상자와 상관없이 그 자체 완전한 표현으로 보아야 하는가? 둘째, 왜 비슷한 이미지를 계속 양산하는가? 우리는 전쟁 보도사진을 볼 때 전쟁의 참혹함을 느끼고, 이야기한다. 많은 경우 포르노는 강간, 근친상간 등과 같은 왜곡된 성행위를 담고 있다. 우리는 이를 보면서 인간의 욕망 구조를 분석하거나, 성폭행 같은 사회문제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누구도 전쟁 이미지를 담기위해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지만 포르노 이미지 제작을 위해 성행위 장면이 연출된다. 이미 포르노는 엄청난 돈이 오기는 큰 사업이 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언뜻 포르노그래피 자체는 특정 개인에게 해악을 가하는 것 같지 않다. 또 이미지 속 상

황이 실제 상황이 아니라면 문제될 것이 있을까? 그렇다면 포르노는 표현일 수 있지 않은가? 여기서 캐서린 매किन의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녀에 따르면, 포르노그래피가 표현이라는 주장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나머지, 그 표현을 성립하게 만드는 불평등 관계를 간과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 포르노그래피의 남녀는 평등하지 않다. 여성은 성행위를 강요당하거나, 남성의 지배하에 있다. 혹은 남녀의 불평등 상황에 대한 논의를 끌어낼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여전히 표현 방식의 문제가 남는다. 포르노가 여타 예술적 표현처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면, 그 의미를 외화 하는 다른 방식은 없는가? 남녀의 불평등 상황을 논하기 위해, 불평등 상황을 연출해 영상에 담아야만 할까? 더 큰 난점은 그 ‘의미’를 의도한 사람과 행위를 한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다. 포르노그래피 속 여성이 그 이미지가 담고 있는 의미를 논하는 비평공간에 참여할 수 있을까? 실제 성범죄 현장을 담은 이미지의 경우 대답은 더욱 분명하다.

최경태의 그림은 어떤가? 분명 그의 그림은 포르노처럼 ‘보인다.’ 하지만 작가는 그림을 포르노 업체에 팔지 않고, 미술관에 전시한다. 비평가들은 그 이미지에 대해 글을 쓴다. 우리 사회에서 최경태는 돈과 무관한 포르노제작자가 아니라, 괴짜 ‘예술가’이다. 그의 그림이 포르노처럼 보여도 또 실제 법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포르노와는 전적으로 다른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최경태의 경우에서 포르노그래피도 예술적 표현일 수 있다는 주장의 이중적인 성격을 엿볼 수 있다. 현실에서 예술가의 작품은 분명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 예술작품이라는 용어는 가치 평가적 의미로 쓰이거나, 분류적 의미로 쓰인다.³¹⁾ 가치 평가적 의미로 예술작품이라는 말을 쓸 때, 포르노가 예술작품이라는 주장은 포르노그래피에도 미학적 평가가 가능한 예술미가 담겨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예술가들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할 때는 예술작품의 고상함, 숭고함이라는 기존 통념에 대한 거부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분류적 의미에서 포르노그래피가 예술적 표현이라는 주장은 포르노가 예술 비평의 대상이며, 제작의 주요 목적이 감상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포르노는 가치 평가적 의미로도, 분류적 의미로도 예술작품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점을 갖고 있다. 결정적으로 평등권을 위배할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분명 현대 예술의 경계는 모호해 졌다. 그 때문에 현대 예술에서 비평이 강조된다. 현대

31) 예술작품에 대한 이러한 구분은 일련의 영미 철학자들의 분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조지 디키는 이 구분을 토대로 자신의 핵심적 논의를 전개시키고 있다.

의 예술 비평은 작품의 ‘의미’를 찾는 작업이다. 비평은 외적으로는 전혀 예술작품처럼 보이지 않는 대상이 함의하는 바를 제기하고 논의해 보는 것이다. 비평이 강조되는 이유는 그 어떤 예술적 표현도 부당하게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사회의 도덕과 충돌하는 ‘불쾌한’ 예술작품도 그 불쾌함이 예술작품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작품들을 논의하는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비평의 과정은 전문 비평가 한 사람이 완결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완전히 열린 공간에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의 의견 교환을 상정해야 한다.³²⁾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선 안 되는 점이 있다. 단일한 기준으로 예술을 부당하게 재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비평 공간을 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곧 모든 표현이 예술의 이름으로 미학적 비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분명 우리는 예술 표현의 경계와 각 표현의 함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제2절 예술표현의 허용범위

다음 경우를 생각해보자. 미술관에 개가 한 마리 묶여있다. 병이 들었는지 아위었다. 개 앞에는 코카인과 양초가 타고 있다. 개가 묶여있는 벽에는 “당신이 본 것이 당신이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개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개는 이튿날 죽었다. 코스타리카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다. 이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 작가 아바꼭Habacuc은 코스타리카 내에서 거센 비난을 받았다. 동물보호 단체들은 개의 죽음을 결코 예술적 표현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작가의 비엔날레 참여도 제약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야기는 간단하지만, 남은 문제는 복잡하다. 미술관에서 병든 개를 굶겨 죽였다. 개를 굶겨 죽이는 행위를 예술적 표현으로 볼 수 있을까? 국내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이른바 ‘능지처참 퍼포먼스’이다. 2007년 5월 이천에서 군부대 이전 반대 시위가 있었다. 시위 도중 몇몇 시민들이 새끼 돼지의 사지를 묶어 잡아당기며 능지처참을 재현했다. 돼지는 참혹하게 죽었다. 이 퍼포먼스를 예술적 표현이라고 평한 사람은 없다. 실제로 행위자들은 동물학대혐의로 벌금형을 언도받았다.³³⁾

이 두 사례 모두 의도를 갖고 행한 표현이다. 코스타리카의 작가는 미술과 미술관에 대

32) 비평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 4장에서 민주주의 비평이라는 개념으로 자세히 다루겠다.

33) 김지은 기자, “돼지 능지처참 퍼포먼스’에 벌금형,” 연합뉴스 2008년 1월 4일 기사

한 사람들의 위선을 보여주려, 개를 미술관에 묶어두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새끼돼지를 죽인 건, 상대적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특정 현안에 반대하는 표현이다. 돼지 퍼포먼스는 목표를 이루겠다는 행위자들의 결연한 의지 표출이었으나, 목표에 찬동하던 사람들조차 이 표현을 수용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은 현행 동물보호법에도 저촉되고, 다른 생명을 함부로 대해선 안 된다는 일반적인 도덕과도 충돌한다. 실제로 비난을 받고, 법적 처벌을 받았다. 반면 코스타리카 작가의 경우 거센 반발이 일긴 했지만, 여전히 예술 표현의 자유를 누린 것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우리는 여기서 뵐플린의 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모든 시대에 모든 것이 가능한 건 아니다.”³⁴⁾ 이는 매우 복합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뵐플린은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무한한 자유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실제 표현되는 바는 시대와 사회, 문화의 제약 하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한 것이다. 다른 한편 뵐플린의 말에서 알 수 있듯, 개인의 표현은 필연적으로 타인과의 영향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인간이 자유를 누리며 더불어 살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도덕적 강령은 밀의 말대로 타인에게 해를 끼쳐선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타인에게 끼칠 수 있는 해악은 매우 광범위하다. 필자가 분명히 하려는 건, 다른 생명의 존엄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어떤 숭고한 의의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두 사례가 도덕적 비난과 법적 처벌을 비껴갈 수 없었던 요인 중 하나는 직접성이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개와 돼지가 ‘진짜’ 죽었다.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밝힌 것처럼, 예술 성립조건은 허구성에 있다. 사람들은 실제 동물의 시체를 보면 불쾌해 하지만, 시체를 자세히 그린 그림을 보는 것은 즐거워한다.³⁵⁾ 가장 좋은 예술은 있을 법하지만 실체는 아닌 것이다.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실체가 아니라는 인식은 사유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예술가의 독창성은 이야기를 개연성 있게 꾸미는 능력이다. 예술이 허구라는 것을 인식할 때만 작가의 독창성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 예술에서 작가의 독창성을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은 예술 비평이다. 예술 비평을 통해 작품에 내재한 기존 가치와는 다른 새로운 가치가 발견될 수 있다. 비평 공간에서 예술

34) “가장 독창적인 재능조차 출생시에 고정된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 모든 시대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특정한 사유는 특정한 발전단계에서만 생각될 수 있다.” (Heinrich Wölfflin, *Principles of Art History : The Problem of the Development of Style in Later Art*, trans. M.D. Hottinger(New York : Dover Publications, n.d.), ix. 아서 단토, “예술의 종말 이후”, 미술문화 2006. 107쪽에서 재인용

35)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이상섭옮김, 문학과지성사, 2005, 22쪽

작품은 법적, 도덕적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때 예술의 허구성이 전제된다. 영화 속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살인죄를 선고받는 배우는 없다. 그런데 서문에서 언급한 김홍석과 최경태의 작품이 문제된 건 그 직접성 때문이다. 왜 그들의 작품은 예술의 허구적 영역에 속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했는가?

제3절 창작의 자유와 인권: 다원주의 비평적 접근

김홍석의 ‘창녀 찾기’³⁶⁾의 경우 대답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맨 처음 관객들이 작가의 지령을 보았을 때, 그건 ‘진짜’였다. 역설적이게도 김홍석은 전시를 관통하는 표현방식으로 ‘거짓말’을 택했다. 김홍석의 의도대로 모든 사람들은 개막 작품에 참가한 여성이 실제 몸을 파는 여성이라는 ‘거짓말’에 속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여성이 실제 몸을 파는 여성이 아닌 배우였다는 데 있지 않다. 즉 여성 개인을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따른 것이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사람들은 그 여성이 배우임을 알았을 때, 작가를 더 이상 비난하지 않았을 것이다. 혹은 그 표현방식이 맘에 들지 않는 관객은 작가가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는 데 그쳤을지 모른다. 하지만 작가는 인권침해 혐의를 받았다.

작가의 다른 작품, <This is a Rabbit>의 안내문에는 탈북자가 돈을 받고 토끼 탈을 쓰고 있다고 소개되어 있었다. 이 작품에 대해선 어떠한 인권침해 비난도 일지 않았다. 또 그 토끼옷 안에 탈북자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도 관객을 속였다는 비난여론은 없었다. ‘창녀 찾기’와 토끼 탈을 쓴 탈북자의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 결국 행위가 문제된다. 한 여성을 ‘창녀’라는 용어로 지시한 것도 문제지만,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거슬린 건 여성을 고용하고, 상금을 지불하는 행위가 ‘진짜’ 일어났기 때문이다. 관객들의 불쾌함은 사람의 성을 돈으로 사고파는 현재의 구조와 묘하게 유비된 결과일 것이다.

물론 작가의 의도는 관객들의 낯설음, 불쾌함이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 불쾌함은 자본주의 체제의 불평등한 구조에 대한 사유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필자는 김홍석의 작품이 감상자들의 상식적 도덕에 어긋나고, 불쾌하게 했으므로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건 결코

36) 관련기사와 비평은 다음을 참조. 김광일 “예술이 사회에 침을 뱉는가” 조선일보 2008. 4.23, 김수혜 “창녀 찾아내면 120만원 줍니다” 조선일보 2008.4.18 기사, 전경옥, 매일신문 2008.4.18.기사, 반이정, “예술, 창녀, 수수방관, 현대미술의 ‘괴이한 소동’”, 시사인 34호, 김홍주선, “혹시 여기 적힌 창녀분?”... “내가 그렇게 보이냐?”, 오마이뉴스, 2008.5.2 기사, 조철희, “120만원에 창녀찾기, ‘자본 모순고발’vs‘약자조롱’“ 머니투데이, 2008.5.21기사, ”

아니다. 모두가 유쾌한 작품을 만든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뿐더러 예술이 그래야할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불쾌함은 직접적 행위에서 유발된 것이고, 작가가 실제 행위의 주체가 아니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작가는 소수자를 통해 사회 전체 구조를 다시 생각해 볼 것을 제시했다. 그런데 작가는 관객과 공유하는 현실에서 억압받는 소수자에 속하지 않는다. 관객이 본 것은 몸을 파는 여성에게 ‘창녀’라는 이름을 붙인 작가의 행위, 현실에서와 똑같이 돈을 주고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자본을 가진 작가의 행위뿐이다. 그리고 행위의 직접성 측면에서 봤을 때, 인간의 잔혹함과 위선을 알리기 위해 미술관에 개를 묶어 굶겨 죽인 잔혹한 행위를 한 코스타리카의 작가와, 자본주의의 모순을 알리기 위해 사람을 고용해 비극적 설정을 눈앞에서 보여준 김홍석의 연출은 차이가 없다. 여기서 감상자는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것처럼 상정되어 있으나, 실상은 매우 수동적이다. 그들은 전혀 뜻하지 않게 작가의 폭로를 지켜보아야 하는 것이다.

최경태³⁷⁾의 경우는 조금 복잡하다. 앞에서 필자는 작품을 통한 감상자의 불쾌함, 특히 사회적, 도덕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을 때 유발되는 불쾌함이 작품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작가가 법적 처벌을 받을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개인적인 감정은 주관적, 임의적이기에, 예술가의 창작 자유를 제약할 만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음란법을 보면, 음란물이 끼칠 수 있는 해악의 근거가 성적 흥분, 성적 수치심과 같이 매우 측정이 애매한 영역이다. 때문에 지금까지의 판결은 직접적인 묘사를 그 기준으로 한다. 성행위나 성기의 매우 ‘사실적이고 직접적인’ 묘사는 법적 판결의 대상이 된다. 이 기준에 따라 최경태의 여고생 시리즈도 음란물 판정을 받았다.

판결에 대한 최경태 측 법정 반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변호를 맡은 비평가는 최경태의 작품이 캔버스에 유화로 그려진 고전적인 예술 양식을 따르고 있고, 사진과 달리 작가가 모델의 표정에 변형을 가해 수용자로 하여금 하나의 예술작품이라는 면을 강조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³⁸⁾ 이는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법원은 성행위의 사실적 묘사가

37) 관련 기사와 비평, <http://www.040913.com>에서 2004년 12월 20-27일에 행해진 최경태 인터뷰, 박건, “화가 최경태”, 오마이뉴스 2007.10.7기사, 반이정, “우리에게 즐길 기회를 줘”, 시사인, 4호, 2007년 10월.

38) 최경태의 작품이 음란물이 아닌 이유 (최진욱)

- 1) 피부와 성기등을 유화의 칙칙한 색깔로 표현한 채 내버려둠으로서 관객을 유혹할 의도를 처음부터 배재했다. 이것은 생생한 살색을 탄력있고, 긴장되게 표현하여 음란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것과는 상반되는 매우 냉소적인 표현 방식이라 할수있다.
- 2) 얼굴표정에서 일관되게 멍하고 수동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나 (관객에게 무언가를 묻고 있는듯한 표정) 불경스런 포즈에서 아예 장난스런 표정을 짓는 것 등은 관객을 머쓱하게 만드는 효과를 낸

사람들을 성적 흥분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해악을 가하며, 그 내용이 사회도덕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경태의 그림은 철저한 허구다. 감상자들이 허구임을 아는 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보다는 다른 사유를 가능하게 한다. 즉 이것은 예술작품이고, 예술비평이 필요한 대상임을 알게 한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선 물감과 붓으로 그린 표현방식은 사진 이미지와는 다른 이질감을 주며, 작가가 변형한 피부 톤이나 어울리지 않는 표정이 실제 성적 대상에서 느끼는 성적 흥분을 유발하지 않는다. 최경태의 그림이 ‘변형된’ 2차원 평면 이미지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분명 직접성의 정도를 따지자면, 실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3차원적 행위가 가장 직접적이고 그 다음은 2차원 이미지이다. 그중 사진 이미지나 영상 이미지가 가장 사실적이고 유화 같은 전통적 표현 방식은 그 사실성에서 조금 떨어진다. 이 구분에 대한 강조는 그림이 재현하는 대상에 관심을 두기보다 그림을 분석 가능한 하나의 텍스트로 봐달라는 요구인 것이다.

그런데 최경태 측 반론에서 최경태 그림의 도상을 분석할 때 대표성, 객관성을 통한 사회적 환기가 이야기되는 것이 눈에 띈다. 언뜻 앞의 주장과 모순된 것처럼 보인다. 작가의 변형 공간을 강조해 기존의 음란물과 거리를 두면서도, 작품 자체는 누가 봐도 불쾌함을 일으킬만한 보편적 혹은 객관적 시선을 담고 있다고 하니 말이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작가의 변형공간을 적극 강조한다면, 물을 수 있다. 왜 작가의 독특한 시선이 드러날 만한 적극적인 변형을 택하지 않았는가? 최경태의 작품에 범원이 문제 삼은 바는 묘사의 ‘사실성’이다. 반대로 성에 대한 불쾌함을 재현해 성 담론을 이끌어낼 목적이 더 우선했다면, 왜 작가는 사진을 찍지 않았는가? 작가의 변형과 ‘객관적’ 시선이 위태롭

다. 이것은 관객으로 하여금 어떤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로, 음란함을 목적으로 그렇게 그렸다고 볼수 없다. (성담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이다)

- 3) 성기의 표현을 기계적으로 단순하게 (평범하게) 표현한 것은 일반적 음란물의 자극적 표현과 다르다. 그림은 사진보다 훨씬 더 묘사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음화의 경우, 단순하게 그리더라도 흥분으로 이질러지거나, 과장되게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 4) 등장인물의 음란한 자세는 작가가 필요에 의해 대표적으로 선택한 것들로, 일반적 포르노물이 특별하고도 별난 것을 추구하는 취향과 상반 된다. 여기서 “대표적” 이라함은 표현에 있어 개별적이고 충동적인 효과를 지니기보다 사회적 환기를 목적으로 하는 심리적 효과가 더 큰 것을 의미한다.
- 5) 회화적 표현에 있어서, “그래픽”의 방식을 구사한 것이야말로 눈여겨 보아야하는데 이것은 작가가 자신의 은밀한 세계로 관객을 끌어 들이기보다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성의식에 대한 객관적인 시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아야한다.
- 6) 결론적으로 이 그림들은 우리사회의 성에 대한 불쾌감을 재현할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 <http://www.040913.com>에서 2004년 12월 20일-27일까지 행해진 최 경태 인터뷰

게 공존하는 최경태의 그림은 현대 예술의 모호함을 그대로 담고 있다.

지금까지 필자는 최근 논란이 일었던 작품에 대한 비평들을 중심으로 인권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았다. 이들 비평에서 분명한 건, 법의 논리나 기존 도덕관을 근거로 선블리 예술작품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술작품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말은 아니다. 특히 인권과 결부될 때는 더욱 그러하다. 인권논의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또 다른 가능성이 모색될 때까지 이 작품들을 둘러싼 논란은 적어도 예술비평 공간에서는 유효할 것이다.

제4장 화해의 모색: 예술창작, 비평, 민주주의

제1절 예술의 종말과 인권

도발적 현대 예술과 그 모호한 경계는 감상자들의 신경질적인 반응과 함께 예술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야기했다. 사회적 논란의 주동자라는 시선에는 현대 예술에 대한 찬사와 불만이 섞여 있다. 현대 예술에 대한 불만은 예술가의 우위를 거부하며 더욱 가속화된다. “예술의 종말” 담론이 큰 힘을 얻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모든 예술은 끝장났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술이 정신적 평온함을 가져준다는 오래된 명제를 믿고 있다. 각기 다른 시대와 역사적 계기에 따라 위안을 주는 예술, 즐거운 예술, 휴식을 위한 예술 등은 부르조아의 도구, 포퓰리즘의 전형 등으로 폄하되며 온갖 고초를 겪었지만³⁹⁾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술에서 위안과 휴식을 구하는 것 같다. 불운한 천재, 정신적 고통과 승화의 산물로서 예술작품, 불멸하는 가치를 지닌 걸작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현대 예술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 어느 순간 예술은 별다른 재능

39) 이는 러시아 작가 블라지미르 프리체의 예술논의에서 분명한 대립구도로 나타난다. 저자가 상정하는 건 선전과 교육을 위한 극히 사회적·도덕적 내용의 예술과 예술을 위한 예술, 순수예술의 대립구도이다. 저자는 이분법에 따른 계급사회를 전제하고 있다. 근대 예술로의 전환, 즉 도덕적 내용을 강조하던 예술이 점점 ‘내용’을 포기하고 ‘형식’에 대한 탐구로 전환되는 지점을 퇴락된 부르주아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순수예술은 단순한 유희나 쾌락만을 위한 것이다. 예술가들은 특정 도덕이나 사상을 작품의 내용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무엇인지 보다는 어떻게 보일지가 중요하다. 저자는 프랑스 후기 예술운동도 순수미술로의 ‘타락’ 선상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블라지미르 프리체, 김휴 옮김 “예술 사회학” 온누리, 1986. 참고)

없이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누구나’ 만들 수 있을 법한 작품들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정말 예술은 죽은 것 같다

과연 예술은 종말을 고한 것인가? 이제 소통을 통한 사회합의라는 예술의 이상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까? 최근 미국의 철학자 겸 예술 비평가인 아서 단토(Arthur Danto)도 “예술의 종말”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단토는 예술의 종말을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 현재 우리는 예술의 종말을 맞은 시기에 살고 있다. 이때 예술의 종말은 예술의 소멸, 퇴락이 아닌 다양한 예술 활동이 빚어낼 다양한 모습에 대한 기대와 긍정의 표현이다. 종말을 맞은 건 예술이 아니라, 예술의 본질로 여겨지던 정의들이다. 아름다움, 도덕성은 이제 예술의 본질이 아니다. 그리고 동시에 현대 예술은 낭만적 예술가에 대한 환상을 깰 것을 요구한다. 노버트 린튼의 지적대로, 현대의 예술가는 우울한 천재가 아닌, 우리와 시공간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인간으로 바라봐야 한다.

미술가들도 인간이다. 그러므로 미술가들의 작품이 그들 자신을 표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 대해 근본적인 신뢰감을 갖게 되는 요인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 신뢰는 모든 사회적 존재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미술가가 초인으로 숭배되지 않고 인간이라는 그의 진정한 위치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 대부분이 현대 미술에 대해 갖게 되는 잘못된 기대나 찬양을 배제하면서 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미술의 다양성, 즉 현대 미술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양한 역할들이 결국 그러한 지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미술가들이 이제는 새로운 매체와 방법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를 제작자인 동시에 행위자, 즉 다른 노동자들 속에 있는 또 한 종류의 노동자로 인식하게 되어야 한다.⁴⁰⁾

이제 예술가를 정의하고 규정하는 건 크게 중요치 않다.⁴¹⁾ 예술가는 예술작품을 만드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 예술작품은 ‘표현’에 그치지 않고 대화의 시작으로 던져져야 한다. 예술작품 자체는 침묵의 형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침묵을 깨는 활동은 매우 형식적으로 부정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예술, 특히 현대 예술조차도 논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수잔 손탁의 논의를 살펴보자.

현대 예술은 아무리 부정에 대한 취향으로 자신을 정의해 왔다 하더라도 형식적 중

40) 노버트 린튼, 윤난지 역 “20세기의 미술”, 예경, 2007. 358쪽)

41) 헤겔, 임석진 옮김, “법철학” 한길사, 2008. 133쪽 참고

류에 대한 명백한 언설들로서 분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개개의 예술작품은 무언가를 지각하는 형식, 모범, 모델을 부여한다. 그러나 정신적인 목표 - 절대를 향한 소망의 도구-로서 본다면 모든 예술작품이 제공하는 것은 초사회적 내지 초윤리적인 책략의 특수한 모델, 어울림decorum의 기준이다.⁴²⁾

손탁에게 예술은 침묵을 말하게 하는 것이다. 있을 수 있는 것을 통해 현실을 있게 하는 것이 예술이 아닌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인간이 미래를 위해 소통하는 것과 같다. 물론 이 과정은 예술작품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계몽주의자들이 예술과 도덕을 결국 일치시키려고 했던 것도 이 같은 매개가 아주 독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제2절 민주주의 비평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예술을 즐길 권리, 학문적 진보와 그 혜택을 함께 누릴 권리를 가진다.” 세계 인권선언문 27조 1항이다. 왜 예술을 즐기고 참여할 권리가 인간의 기본 권리로 이야기되는 것일까? 인권 선언의 이 조항은 예술을 통한 소통과 고양이라는 서양근대 계몽주의의 소망을 담고 있다. 미적 판단을 통한 주관의 확장과 소통이라는 인간능력은 모두에게 가능하다. 하지만 분명 현실에선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하에 있는 것은 아니다. 현실엔 소위 교양인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예술이 어떻게 이들을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예술은 단순히 개인의 정신적 고양을 위한 매개 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위대한 천재가 나와 사회통합을 이룩할 것인가? 어쩌면 현대인에게 익숙한 건 이러한 낭만주의적 천재와 같은 예술가 상일지 모른다. 그러나 현대 예술에서 사회통합의 역할은 요원해 보인다.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줄 천재가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사회정치적 조건도, 또 예술적 조건도 과거와 다르다. 현대사상은 천재에 기대를 걸지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계몽의 힘을 믿고 있다.

칸트가 꿈꾸었던 계몽의 이상을 생각해보자. 『판단력 비판』 60절에서 칸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력하게 작동할 하나의 유력한 모델을 제시한다. 그 모델은 각 개인의 무한

42) 수잔 손탁, “급진적의지의 스타일, 이병용, 안재연 옮김, 현대미학사 2003. 52쪽.

한 능력의 확장과 소통의 힘에 기대고 있다. 칸트는 교양과 무교양을 신분이나 계급의 차이가 아닌, 능력의 인정차이로 바라본다. 예컨대 교양인과 무교양인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다. 스승과 제자는 모두 가능성을 가진 개인이다. 스승은 먼저 가능성을 발휘하고 확인받은 사람이다. 스승의 역할은 제자를 온전한 한 개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스승은 제자가 아직 발휘하지 못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 이처럼 한 사회의 각 개인들은 서로를 가능성의 관계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예술은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실현하게 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

칸트가 꿈꾼 계몽의 이상은 현대 정치공간에도 유효하다. 현대의 정치적 이상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사회는 계급, 신분의 상하종속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 사회를 신분이나 계급에 따른 교양인·비교양인으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한 사람과 아직 발휘하지 못한 사람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체제를 택하는 공동체는 사회성원들이 각자의 능력을 마음껏,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이 한 민족국가에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계몽주의자들은 인간성을 토대로 이러한 가능성이 인류 전체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보았다. 중요한 것은 상호 인정과 능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하는 소통이다. 현대 예술이 상호 소통의 매개가 될 수 있는가?

예술의 이상이 모든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 해도, 그 실천방식은 결코 분명하지 않다. 예술의 상호 소통은 예술 영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술의 다양한 장르의 특성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필자는 이 모든 가능성이 비평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싶다. 특히 필자는 ‘민주주의 비평’ 개념을 도입해 예술이 수행할 수 있는 상호 소통의 가능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품에 대한 해석의 권리는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비평공간을 임의적으로 꾸밀 수 있는, 상대적 공간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작품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해석해버릴 상대론의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다. 감상자의 비평공간은 철저히 작품을 매개로 한 다양한 해석의 공간이어야 한다. 민주주의 비평의 목적은 다양성 가운데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창작자의 의도를 확장시키는 데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 비평은 근본적으로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어디까지나 작품의 객관적 해석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비평 자체도 또 다른 소통의 매개가 될 수 있다. 누군가의 비평은 설사 작품을 직접 보지 않은 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비판될 수 있다. 영화 비평 잡지에 실린 글을 읽

고 또 비평하는 것이 논의의 층을 풍부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좋은 비평은 작품을 다른 측면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또 비평은 아직 작품을 보지 않는 예비 감상자의 관심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때 단순한 관심이나 비평에 대한 비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작품을 감상하고 새로운 비평의 주체로 행동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끌 때에만 비평은 소통의 매개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 비평이 꿈꾸는 것은 다양한 해석과 시선을 만들어주는 소통의 무한한 힘이다.

소통의 가능성이 전무 해 보이는 현대예술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영역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물론 예술가도 이 담론의 영역에 참여해야 한다. 예술가의 표현은 감상자들의 표현과 결합될 때, 확장 및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현대 예술의 비평공간에서 계속 주목해야 하는 건, 작품 속에 숨어있을지도 모르는 불평등 구조와 담론 형성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약자들이 있는 지이다. 이 논의가 분명히 이루어져야만 예술에 대한 부당한 억압과 예술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횡포 모두를 걸러낼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인권선언문에서 언급했듯 이 모든 것은 사회성원들의 문화 참여 권리를 인정할 때 가능하다. 예술영역은 민주주의 체제가 인정하고 있는 대표성이나 대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작품 앞에서 우월적 권리를 접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직접 작품을 대면하고 있는 누구라도 비평 주체일 수 있다. 비평은 작품을 넘어서는 어떤 특권도 가질 수 없다. 민주주의 비평은 각 개인이 스스로의 능력과 가능성을 발휘하게 하는 도우미 일뿐이다. 민주주의 비평은 직접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방식이다. 예술 영역은 근본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표방한다. 평등한 개인들의 예술 비평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은 현대 사회·정치 영역의 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예술이, 문화가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

제5장 다중의 시대, 예술, 인권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약속을 앞에 두고 우리 공동체가 과연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예술을 즐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가? 예술은 너무나 고급화되고 낮선 것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예술계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은 약자의 편에서 불평등을 드러내고 해소를 시도하는 예술가보다는 오히려 불평등을 소재로 자신을 드러내고 권력에 편입하려는 예

술가를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하게 된다. 스타시스템은 요즘 예술의 한 경향이다. 예술가들은 방송에서 자신과 작품을 광고한다. 일부 예술가 집단은 어떤 의미에서 권력집단화 되었다. 몇몇 비평가들은 진정성 없는 비평으로 이들이 권력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이는 대중의 예술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킨다. 혹은 예술은 상업화되어 대중의 사랑을 받는다. 예술은 고립되거나 상업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술에서 원하는 것이 컵이나 수첩, 혹은 광고 카피를 보기 좋게 꾸미는 것일까? 예술이 인간 삶에 의미를 가진 활동이라면 이를 넘어서야 하지 않을까?

현재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 양식은 없다. 공통된 양식은 자유다. 특정 양식에 대한 탐구만으로 예술작품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과거의 특정 양식으로 현재의 예술을 재단하고 평가할 수 없다. 이제 예술작품의 정신성은 비평 영역에서 말할 수 있다. 현대 비평의 핵심은 담론의 형성이다. 과거 예술에 대한 평가와 예술의 진행 방향이 형이상학적 이론에 근거한 것이었다면, 현대의 비평은 어떤 형이상학도 전제하지 않고 출발한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술작품, 종종 그 정체를 잘 알 수 없는 예술작품 뿐이다. 어떤 예술도 완벽한 환영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때문에 우리는 예술작품에 감정을 몰입해 그 의미를 찾으려 한다. 하지만 작품만으로는 전혀 감정적 소통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작품에 대해 이야기한다. 각자의 삶에 비추어 이 작품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본다. 이때 작품에 관한 공부가 필요할 수 있다. 예술작품은 예술가의 활동 결과라는 측면에서 어떤 가치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각자 하는 평가는 가치에 따라 이루어진다. 우리가 아무런 가치 체계도 갖고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술작품에 대한 비평의 권리 또한 누구나 갖고 있다. 전문적 비평이 예술작품에 대한 더 많은 우위를 점하는 건 아니다. 누구에게나 발언의 권리는 있다.

누구에게나 발언의 권리가 있다는 것은 항상 새로운 형태의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필자가 강조했듯 예술은 이러한 가능성을 심화시킬 수도, 해소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닌다. 현대 예술에서 비평의 문제를 심화시켜 보려는 것도 예술의 긍정적 가능성을 좀 더 강화시키려는 시도이다.

흔히 지금을 대중사회라고 말한다. 흔히 자본주의 체제와 결합된 대중은 ‘덩어리’로 지칭되며 폄하된다. 저급취향으로 무시된다. 대중은 이익이 되거나 즐거움이 되는 것이라면 모든지 좋아한다고 여겨진다. 대부분 ‘덩어리’들은 더 좋고, 더 감각적이고, 더 멋진 것에 표를 던진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숙한 인간을 기대할 수 있는가? 결국 진정한 예

술은 소수에 의해 행해지고, 소수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닌가. 어느 체제에서나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문제점을 교정해 나가기란, 누구나 쉽지 않다. 특히 자본주의 체제는 자기의식의 여지가 극히 제한적이다.

각자가 서로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예술이 사람 간 소통을 확장시키는 이상 사회에 대한 칸트의 꿈은 그저 꿈일 뿐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예술은 실러가 말한, 무지한 이들을 교화시켜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예술일까? 가다머가 정보 홍수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낮설게 하기’를 수행할 수 있는 감상자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고민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지점에서 예술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예술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이브미쇼의 주장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⁴³⁾ 그에 따르면 계몽주의 예술관은 여전히 예술의 이상이 자 사회 통합의 계기이다. 그런데 현실은 계몽주의 이상과 떨어져 있다. 이상에 맞지 않는 예술은 모두 비난의 대상이 되고, 구조적으로 불균형한 사회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현대 예술은 주된 공격의 대상이다. 극도로 대중적이면서도 반대증적인 현대 예술의 양면성 때문에 현대 예술에는 소통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예술이 사회를 통합시킬 수 있다는 환상을 지워버린다면, 현대예술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까? 국가적 검열이나 형식화의 구조로 나타나고, 또 다른 사회적 억압의 기제가 되는 예술은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개성에 기대는 다윈주의는 여전히 희망이다. 파편화되고 다양한 각 개인들의 활동이 만들어내는 문화의 복잡한 층위가 전통을 만들고, 그 전통의 해석과 변형을 통해 보편성을 획득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자유주의, 또 자본주의를 큰 축으로 삼고 있는 한국 사회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띤다. 더 이상 대중 ‘덩어리’는 없다. 모든 시민은 각자의 삶을 개척하고자 한다. 마치 다중처럼. 가슴 아픈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남겼다. 한 사회, 한 체제 내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다양한 삶이 하나의 기준으로 저절로 조화되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자본주의 하의 대중이 부각되고 또 한편으로 꾸준히 폄하되는 건, 미성숙한 개인들이 자의식 없이 그저 돈이나 쾌락만을 좇는다는 일종의 근대적 편견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각 개인들은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데 거대 자본 시스템을 필연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하지만 누구든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지길 바란다. 문제는 그 삶의 고양이 대부분 돈을 매개로 한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 예술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위태로운 외출타기를 마다하지 않는 곡예사의 꿈은 무엇일까?

43) 이브미쇼, “예술의 위기”, 하태환 옮김, 동문선, 225쪽 참고.

<참고문헌>

- 경기문화재단, “희망의 예술”, 솔, 2007.
- 광주 비엔날레 1995, “증인으로서의 예술: 광주 5월정신전”, 삶과 꿈, 1995.
- 광주 비엔날레 2000, “MAN + SPACE”
- 김민호, “낙서화가 바스키아 감옥가다”, 예경 2004.
- 김성호, “주류와 비주류의 미술현장과 미술비평”, 다빈치 기프트, 2008
- 김순영, 이철, 이임출, 박현중, 조인규, “조선미술사”, 학민사, 1993.
- 김영경, “여성과 문화”, 학문사, 2001.
- 김옥조, “표현과 보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 김윤수 외, “한국미술100년”, 한길사, 2006.
- 김호석, “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가”, 한울, 2002.
- 김성호, “포르노를 해부한다”, 한림미디어, 1999
- 노르마 부르드, 메어리 개러드 편저, “미술과 페미니즘”, 동문선, 1994.
- 노버트 린튼, “20세기 미술”, 윤난지 역, 예경, 2007.
- 로지카 파커, 그리젤다 폴록, “여성, 미술, 이데올로기”, 이영철, 목천균역, 시각과언어, 1995
- 레오 스트라우스, “자연권과 역사”, 홍원표 옮김, 인간사랑, 2001.
- 린다 노클린, “페미니즘 미술사”, 오진경 옮김, 예경, 1997.
- 마이클 프리먼, “인권 : 이론과 실천”, 김철효 옮김, 아르케, 2006.
- 모리스 메를로 폰티, “현상학과 예술”, 오병남 역, 서광사, 2003.
- 미셸린 이사이, “세계인권사상사”, 조효제 옮김, 길, 2005.
- 미쇼 이브, “예술의 위기 : 유토피아, 민주주의와 코미디”, 하태환역, 동문선 1999.
- , “미술, 여성 그리고 페미니즘”, 정재곤 역, 궁리, 2004.
- J.S.밀, “자유론”, 서병훈 옮김, 책세상, 2005.
- 박홍규, “총칼을 거두고 평화를 그려라”, 아트북스, 2003.
- 베네디토 크로체, “크로체의 미학 : 표현학과 일반 언어학으로서의 미학”, 이해완 역, 예전사 1994.
- 블라지미르 프리체, “예술 사회학”, 김휴 옮김, 온누리 1986.
- 수잔 손탁, “급진적 의지의 스타일”, 이병용, 안재연 옮김, 현대미학사 2003.
- 스티븐 슈트, 수잔 헐리 엠크 “현대사상과 인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옮김, 사람생각, 2000
- 심상용 외, “현대 미술: 구축과 부패사이”, 아트미션 2007.

-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이상섭 역, 문학과지성사, 2005.
- 아서 단토, “The Artworld” *The Journal of Philosophy*, Vol. 61, No. 19 (Oct. 15, 1964)
- *The Transfiguration of the Commonplace*, Mass.: Harvard Univ. Press, 1981.
 (“일상적인 것의 변용”, 김혜련 옮김, 한길사 2008.)
- *The Philosophical Disenfranchisement of Art*,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86.
- *Beyond the Brillo Box : The Visual Arts in Post-historical Perspective*, New York : The
 Noonday Press Farrar. Straus and Giroux, 1992.
- *After the End of Art : Comtemporary Art and the Pale of History*, Princeton : Princeton
 Univ. Press, 1997.
 (“예술의 종말이후 : 컨템퍼러리 미술과 역사의 울타리”, 이성훈등역, 미술문화, 2004.)
- *Philosophizing art : selected essay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철학하는 예술: 예술작품의 철학적 특성“, 정용도 역, 미술문화 2007)
- *The Abuse of Beauty : Aesthetics and the Concept of Art*, Chicago: Open Court, 2003.
- 오상길, “비평가들이여 내 칼을 받아라”, 오상길, ICAS, 2005.
- 오르테가 이 가세트, “예술의 비인간화”, 안영옥 역, 고려대학교출판부, 2004.
- 오토프리트 회페, “정의”, 박종대 옮김, 이제이북스, 2004.
- 윤혜준, “포르노에도 텍스트가 있는가”, 나남 2001
- 이김정희, “여성운동하는 사람들”, 여성신문사, 2002.
- 이나영, “포르노, 섹슈얼리티, 그리고 페미니즘”, 서원 1999
- 이봉철, “현대 인권사상”, 아카넷, 2003.
- 이사야 벌린, “계몽시대의 철학 : 18세기의 철학자들” 정병훈 옮김, 서광사 ,
- 이혁발, “누가 그림 속의 즐거움을 훔쳤을까? : 화가 이혁발의 몸 에세이”, 스테디북, 2001.
- 장 자크 루소, “인간 불평등 기원론”, 최현 옮김, 집문당, 2006.
- , “학문과 예술에 대하여 외”, 김중현 역, 한길사, 2007.1992.
- 전경옥, “문화와 정치”, 숙명여대출판부, 2006
- 존 듀이, “The Political Writins”, “The Ethics of Democracy, Hackett Publishing co, 1993.
- , “Art as experience”, New York: Perigee Books, 2005, c1934.
- 존 버거, “본다는 것의 의미”, 박범수 역, 동문선, 2000.
- 쥘리 디키, *Aesthetics : an introduction*, Indianapolis: Bobbs-Merrill, 1971.
 (“미학 입문”, 오병남등역, 서광사, 1983.)

- *Art and the aesthetic : an institutional analysis*, Ithaca :Cornell Univ. Press, 1974.
 (“현대 미학:예술과 미적인 대상의 분석”, 오병남등역, 서광사, 1982.)
- *The art circle : a theory of art*, New York : Haven Publications, 1984.
 (“예술사회”, 김혜련 역, 문학과지성사, 1998.)
- 츠베탕 토도로프, “개인의 탄생: 서양예술의 이해”, 전성자 역, 기파랑, 2006.
- 카렐 바삭, “인권론”, 박홍규 옮김, 실천문학사, 1986.
- 캐서린 A. 맥키닌, “포르노에 도전한다”, 신은철 옮김, 개마고원, 1997.
- Carol C. Gould, “*Rethinking Democracy : Freedom and Social Cooperation in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1988.
- 콜링우드, “상상과 표현: 예술의 철학적 원리”, 김혜련 역, 고려원 1996
- 툼 울프, “현대 미술의 상실”, 박순철 역, 아트북스, 2003.
- Trager, Robert, Dickerson, Donna L,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21st century*”, Thousand Oaks, Calif. : Pine Forge Press, c1999.
- 페드로 알모도바르, “현실은 포르노를 모방한다”, 송병선 역, 열음사 1995.
- 하인츠 프리드리히 외, “예술의 종언-예술의 미래”, 김문환 역, 1993.
- 한국인권재단 엮음, “제주 인권학술회의 :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 사람생각, 2000.
- 허버트 리드, “예술의 의미”, 박용숙 옮김, 문예출판사, 2007.



일반부
우수작

헌법상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구속기준



정영훈
(국선 전담 변호사)

목 차

Contents

제1장 서론	3
제2장 헌법상 불구속 수사의 원칙	66
제1절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	6
1. 무죄추정의 원칙	6
2. 불구속 수사의 원칙	3
제2절 구속제도의 예외적 운용 원칙	86
제3장 불구속 수사의 실현 수준	96
제1절 구속관련 통계와 그 변화	97
1. 구속비율	30
2.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기소 인원 현황	11
3. 제1심 형사공판사건 구속비율과 처리결과	31
제2절 구속관련 통계의 분석과 평가	57
1. 제1단계(1993년~1996년)	53
2. 제2단계(1997년~2004년)	63
3. 제3단계(2005년~2007년)	83
제3절 구속제도운영의 평가	97

목 차

Contents

제4장 구속기준	9
제1절 구속기준의 의의와 문제점	08
제2절 구속요건	31
제3절 필요적 고려사유	38
1. 필요적 고려사유의 의의	38
2. 세 가지 구속관(拘束觀)과 형사소송법의 태도	41
3. 필요적 고려사유에 대한 검토	58
제4절 구속절차	9
1. 의의 -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구속절차	91
2.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98
3. 구속영장의 발부	9
제5장 조건부 석방제도와 영장향고제도	31
제1절 영장단계에서의 조건부 석방제도	31
제2절 영장향고제도	9
제6장 결론	35
<참 고 문 헌>	78

요약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준수사항으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규정하였다(법 제198조 제1항).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었지만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신체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단순한 훈시적 규범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는 “헌법적 의무”이다. 따라서 검찰과 법원 등 인신구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구속제도는 그동안 이른바 “위장된 구속사유”인 수사의 편의, 자백획득, 일반예방(범죄에 대한 응징과 처벌), 피해회복, 특별예방, 사회여론 등에 의해 남용되어 왔다. 최근에도 검찰은 헌법상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망각한 채 경찰관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무조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여 여전히 사회의 특유유해범죄에 대해 구속요건을 무시하고 구속제도를 범죄에 대한 응징과 처벌의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구속기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공평하고 엄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구속기준은 이를 해석·적용 하는 법원 또는 판사들 간의 편차가 커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더욱이 실무에서는 그동안 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수사의 편의 등 이른바 ‘위장된 구속사유’를 고려함으로써 구속기준의 예측불가능성을 가중시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저해하여 왔다. 한편 이번 개정법에 종래 실무상 고려되어 왔던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이 필요적 고려사유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필요적 고려사유는 그 법적 성질이 모호하여 구속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범죄의 중대성’을 도망을 억제하는 요소와 비교형량을 통해 결정하지 않고 확일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재범의 위험성’ 역시 현재 입건되어 수사 중인 범죄도 무죄로 추정되는데 아직 입건도 되지 않은 장래 범죄가 행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반할 우려가 크다.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구속요건 중 ‘증거인멸의 염려’의 해석으로 포섭하거나 경찰에 대한 신변보호요청 등 다른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구속제도의 예외적 운용원칙에 부합한다.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구속의 대체수단으로 영장단계에서의 조건부 석방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의 최소제한과 최대보장의 정신, 소송경제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또 각 법원과 법관 간의 구속기준에 대한 편차가 커 이에 대한 불신이 깊은 점을 고려하면 구속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영장항고제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1993년부터 2007년까지 구속영장발부율 등의 구속관련 통계를 분석하여 보면, 영장실질 심사제가 시행된 1997년과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불구속 수사를 강조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시작한 1999년, 대법원장이 교체되면서 영장발부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강조한 2005년 이후에 큰 폭의 인신구속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구속자 중 많은 수가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석방되고 있어 구속영장발부가 신중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구속이 많은 상황이다. 불구속 수사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구속요건과 절차 등 구속제도에 대한 입법자의 끊임없는 ‘개선의지’와 더불어 검찰과 법원의 헌법상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실천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제1장 서론

형사사법에서 인신구속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검사와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는 법관이다(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따라서 검사와 법관은 구속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인신구속을 제한하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령상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갖는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을 제한하고 인권을 담보하는 원리에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¹⁾이 있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소법 제198조 제1항, 제275조의2). 무죄추정을 받는 자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의 신체적 자유를 보장받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속수사는 예외적으로 해야 한다.²⁾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수사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수사의 원칙으로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에도 직접 명문화되었다.³⁾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비록 법률에 규정되었지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신체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원칙이다.⁴⁾

- 1) 인신구속의 남용과 인권침해는 수사단계에서 자주 발생한다. 구속수사가 구속기소와 구속재판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의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중심으로 논한다.
- 2) 헌법재판소 1993. 12. 23. 93헌가2[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위헌제청] 결정: “피의자, 피고인의 구속은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만부득이 인정되고 있는 제도이므로 구속이 도망의 방지나 증거인멸의 방지라는 구속의 목적을 넘어서 수사편의나 재판편의를 위하여 이용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
- 3) 형사소송법(2007.6.1 법률 제8496호, 2008.1.1 시행) 제198조 제1항(준수사항)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헌법재판소 1994. 4. 14. 90헌마82 결정; 법원행정처, “영장실질심사제도Ⅱ(이론적 기초와 논리)”, 1997, 16쪽.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헌법상의 원칙이자 동시에 국가기관이 지켜야 할 헌법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속제도는 그동안 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위장된 구속 사유-수사의 편의, 자백획득, 일반예방(범죄에 대한 응징과 처벌), 피해회복, 특별예방, 여론의 압력 등-에 의해 남용되어 왔다.⁵⁾ 최근 검찰은 경찰관의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술에 취했는지 여부, 동종전과 여부, 피해정도 등을 불문하고 심지어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정도의 행위도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⁶⁾ 이는 검찰이 사회의 특정유해 범죄에 대하여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구속요건을 무시하거나 확대하여 구속제도를 범죄에 대한 응징과 처벌의 수단으로 남용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법원은 구속요건을 무시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계속 기각하고 있고⁷⁾ 이에 대한 찬반의견도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⁸⁾

잘못된 인신구속관행을 막고 구속에 대한 법적 통제장치를 강화하여 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인신구속제도를 정립하기 위해 1997년부터 피의자의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가 시행되었다.⁹⁾ 하지만, 2007년 12월 변호사

-
- 5) 독일에서는 1965년 당시 형사소송법에 ‘반복의 위험’이 구속사유에 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위와 같은 위법한 구속사유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유로 논쟁이 벌어졌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추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에 언급된 것과 다른 목적의 구속명령은 근본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BVerfGE 19, 334, 348: 위장된 구속사유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전게서(각주 4), 429~430쪽 참조.
- 6) “경찰 멱살만 잡어도 영장…처벌강화 논란”, 경향닷컴(이영경 기자), 네이버 검색 2008. 6. 2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6132350495&code=940301.
- 7) “멱살 잡으면 구속? 기각! 검찰-법원 엇박자”, [SBS TV 2008-6-19 20:40], 네이버 검색 2008. 7. 2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7&oid=055&aid=0000132133>.
- 8) “공무집행방해는 국가공권력에 도전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근거로 법원의 구속영장기각을 비판한 글은 “구속영장의 발부기준에 관하여”, 법률신문(박준서), 2008. 7. 3, 15면; “구속영장의 발부기준에 관하여”, 법률신문(석동현), 2008. 7. 17, 14면; “사회기강이나 법집행기관의 권위가 추락한 가장 큰 이유는 법원의 그러한 영장기각 경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성 해이와 부패 비리행위 및 법집행에 있어서의 이중기준 적용 때문이며 인신구속은 예외적인 제도로 신중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글은 “구속영장의 발부기준에 관하여”에 대한 반론”, 법률신문(오세열), 2008. 8. 4, 13면.
- 9)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국제인권B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9조 제3항은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반드시 판사 앞에 인치되어 판사의 면전에서 변명을 할 수 있도록 필요적 심문을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구속영장재판은 피의자의 법관 앞에서의 변명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수사기록에 대한 형식적 심사만으로 이루어져 헌법상 영장주의의 취지가 형해화되었다. 1994년 2월 대법원산하 사법제도발전위원회는 피의자의 인권보호방안으로 기소 전 보석과 함께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1997년부터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시행되었다. 법원행정처, 전게서(각주 4), 100, 115쪽; “영장실질심사제도 10년’ 明과 暗”, 문화일보, 네이버 검색 2008. 8. 22.

300명을 대상으로 인신구속에 대해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답자의 90%가 영장실질심사제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에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응답자의 81.7%는 아직까지 형사재판이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라는 형사소송절차상의 법이념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고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구속영장 발부기준 강화’를 들었고 기타 구속적부심과 보석제도의 활용, 구속영장단계에서의 보석 허용 등을 지적했다.¹⁰⁾

구속영장 발부기준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끊임없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이는 ‘사법 불신’의 주요 요인이었다. 구속영장재판이 비공개 재판인데다가 구속기준의 해석과 적용도 각 법원과 법관마다 그 편차가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¹¹⁾ 2006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관예우’ 시비 등 ‘사법 불신’을 개선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구속영장처리 원칙과 기준을 공개하고¹²⁾ 그 영향이 전국법원으로 확산되었지만 그 불신은 여전하다.

이하에서는 먼저 헌법상 구속제도의 취지와 원칙은 무엇이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어느 정도 실현되면서 변화되어 왔는지 구속관련 통계를 통해 살핀다. 다음 불구속 수사를 확립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 구속기준은 어떠한지 그 개선방안과 함께 살펴본다. 특히 개정 형사소송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에 새로 도입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라는 필요적 고려사유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구속의 대체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영장단계에서의 조건부 석방제도와 구속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영장항고제도를 검토한다.

10) 구속영장 발부기준 강화(28%)외에 구속적부심과 보석제도의 적극적 활용(27.7%), 구속을 수사의 성과로 여기는 검찰의 인식전환(24.3%), 구속영장단계에서의 보석 허용 등 다양한 제도 개선(14.7%) 등을 들었다. “인신구속 설문조사”, 법률신문(창간57주년 특집), 2007. 12. 4.

11) 영장발부의 편차를 묻는 질문에 판·검사출신 변호사 중에서 편차가 없다고 답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판사 출신 변호사의 경우 72.5%가 ‘다소’ 있는 편이라고 답했으며, ‘매우 심하다’ 또는 ‘심하다’라고 답한 사람은 각각 5.9%와 21.6%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다소 있다고 답한 사람은 26.5%인 반면 ‘매우 심하다’ 또는 ‘심하다’라고 답한 사람은 각각 38.2%, 35.3%이다. 전관 경력 없는 변호사들은 다소 있다(60.9%), 심하다(28.8%), 매우 심하다(8.8%), 편차 없다(1.5%) 순으로 답했다. “인신구속 설문조사”, 법률신문(창간57주년 특집), 2007. 12. 4.

12) 서울중앙지법이 밝힌 구속영장 처리 원칙은 ①가장 중요한 실형기준의 원칙 ②형사정책적 고려의 원칙 ③방어진 보장 원칙 ④비례의 원칙 ⑤소년법(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 등 5가지이다. [법원, 불구속 재판 확대] 교통사고 사망=무조건 구속, 네이버 검색 2008. 7. 22.

<http://blog.naver.com/flatline21?Redirect=Log&logNo=110000660346>.

제2장 헌법상 불구속 수사의 원칙

제1절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

1.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이다. 법 규정은 피고인만을 무죄추정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으나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보다 구체화되어 공소가 제기된 형사피고인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상, 아직 공소제기조차 되지 아니한 형사피의자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¹³⁾

무죄추정의 원칙은 언제나 불리한 처지에 놓여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피고인의 지위를 옹호하여 형사절차에서 그들의 불이익을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게 하자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궁극의 목표로 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서 나온 것이다.¹⁴⁾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단순히 형사절차의 여러 지도이념 가운데 하나로만 파악하면 동 원칙은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처우를 가능한 한 일반인과 동등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훈시적 규범에 그치기 쉽다.

13) 헌법재판소 1992. 1. 28. 91헌마111[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 이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은 오로지 재판단계에서만 적용되는 거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원칙에 불과하고 수사단계에 적용되는 원칙은 아니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이태훈, “미국의 인신구속제도와 운영실태”, 법조, 제490권, 1997. 7, 17쪽). 이 견해는 미연방대법원이 미결구금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재판의 단계에서 거증책임분배에 관한 원칙이므로 재판이전에는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미결구금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판시한 결정[Bell v. Wolfish, 441 U. S. 520(1979)] 논지를 그 근거로 든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의 판시내용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의자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모든 면에서 항상 일반인과 동등하게 취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는 논지가 보다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재석, “수사와 인권”,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2호 특집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12, 각주2) 참조.

14) 헌법재판소 1992. 1. 28. 91헌마111[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 무죄추정의 권리는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9조에서 규정된 후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11조에서 재천명되었고, 1953년 시행된 유럽 인권규약은 조약 가입국에 대해 형사피고인에게 무죄추정의 권리를 인정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1990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조약 1007호) 제14조도 형사피의자를 무죄추정권의 향유주체로 명시하고 있다. 신동운, “형사소송법(제3판)”, 법문사, 2005, 490~491쪽.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해함에는 이 원칙이 실정법체계인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됨으로써 법원을 비롯한 형사절차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기속하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¹⁵⁾

2. 불구속 수사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으로 나타난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으나 헌법 제12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피의자의 신체적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적 자유를 보장하려 함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보장함을 선언한 헌법정신이다. 이 헌법정신의 구현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을 형사소송절차에서 불구속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속에 이르는 절차나 구속 후에 있어서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¹⁶⁾

이에 따라 검찰과 법원은 불구속 수사라는 헌법상 원칙을 준수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법원은 1996년부터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요령’¹⁷⁾에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수사·재판의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인신구속제도의 운용을 규정하였다. 법무부는 2005년 검찰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받던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구속여부를 두고 충돌한 후 2006년 6월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전면개정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체포·구

-
- 15) 신동운 교수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원칙’이 아닌 ‘권리’로 파악하면서 구속피의자·피고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을 독립된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헌법 제28조(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를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신동운, 전게서(각주 14), 491~493쪽.
- 16) 헌법재판소 1993. 12. 23. 93헌가2[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위헌제청] 결정.;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3호도 “...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라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17) 법원은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2007. 12. 13 재판예규 제1178호, 재형 2003-4) 제2조에서 “인신구속제도의 운용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지향하는 법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수사·재판의 원칙에 입각하여 인신구속을 엄정하게 함으로 형사사법에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였다. 1996년에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요령’(1996. 12. 13 제정, 재판예규 제501호, 재형 96-4) 제2조에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었으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요령’이 2003.9.3 재판예규 제900호에 의해 폐지되었다.

속의 최소화 원칙을 규정하였고 검찰 역시 같은 달에 ‘구속수사기준에 관한 지침’을 제정·공개하면서 무죄추정 원칙과 기본권제한의 과잉금지원칙을 기초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규정하였다.¹⁸⁾ 그리고 국회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법률차원에서 규정하였다. 형사절차적인 측면에서는 그동안 ‘임의적’이었던 구속영장실질심사제를 ‘필요적’으로 변경하였으며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을 붙여주도록 하였다(형소법 제201조의2 제1항, 제8항). 법원과 검찰, 국회의 이러한 노력들은 형사재판에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아직까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함과 동시에 구속의 요건과 절차를 엄정하게 함으로써 향후 구속수사의 남용을 없애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제대로 실현해 보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제2절 구속제도의 예외적 운용 원칙

헌법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향하면서도 체포·구속이라는 인신구속제도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3항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체가 일정기간 체포·구속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체포와 구속은 피의자의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으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고(강제처분법정주의)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한다(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의 원칙). 다만,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는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영장에 의한 체포이외에 무영장체포로서 현행범체포와 긴급체포를 인정하는 근거를 두고 있다.¹⁹⁾ 범죄의 명백성과 중대성을 근거로 사전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를 둔 것이다.

18)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구속여부를 놓고 천정배 법무장관과 김종빈 전 검찰총장의 충돌이 있는 후 검찰은 천 장관의 지시로 그동안 각 검찰청별로 관행이나 개별적으로 적용했던 기준을 최초로 집대성해 지침화하였다. “검찰 사상 첫 구속영장 청구기준 공개”, 네이버검색 2008. 6. 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9&oid=122&aid=0000002978](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9&oid=122&aid=0000002978;).; 법무부는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 훈령 제474호, 2003.1.1. 제정·시행, 2006. 6. 27. 개정) 제14조(체포·구속의 최소화)에서 “체포·구속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였다. 대검도 ‘구속수사기준에 관한 지침’(대검예규 기획 제400호, 2006. 6. 15. 시행) 제2조(불구속 수사의 원칙)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무죄추정 원칙과 임의수사의 원칙에 따라 수사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헌법이 인신구속에 있어서 강제처분법정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영장주의의 원칙을 규정한 것은 범죄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과정에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12조에서는 예외적인 제도로 운용되어야 할 ‘구속’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사전·사후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라고 한다.²⁰⁾ 구속된 피의자는 장기간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구금되어 가족과 단절되고 직장을 잃게 되는 등 정신적·경제적·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이 뒤따르게 된다. 또 형사소추와 관련하여서는 자신의 형사절차상의 기본적 방어권이 제약되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수집 등 방어준비를 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유·무죄의 판단에 있어서 법원으로 하여금 유죄추정의 편견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다. 구속피의자에게 따르는 이와 같은 큰 불이익을 고려하면 법관은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근거하여 구속을 예외적인 처분으로 인식해서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인신구속을 하지 않고도 피의자의 수사·재판에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기본권 최소제한과 최대보장’이라는 헌법상 의무에 합치하는 일이다.

제3장 불구속 수사의 실현 수준

이하에서는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시행된 1997년 전후로부터 2007년까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어느 정도 실현되면서 변화되어 왔는지 구속관련 통계를 통해 파악하여 본다.

19) 헌법상의 체포제도가 형사소송법에 반영된 것은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 때이다. 당시 수사실무에서는 긴급구속만으로 피의자의 신병확보가 어려워 임의동행이라는 위법한 형식의 부당한 체포가 관행처럼 이루어졌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에 피의자에 대한 간편한 신병확보수단을 주면서 한편으로는 임의동행이라는 위법한 수사관행을 없애기 위해 체포제도를 도입하였고 긴급구속은 긴급체포로 바꾸었다. 이에 대해 긴급체포와 현행법 체포의 경우 영장 없는 체포를 인정하여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도 ‘사후 체포영장’제도는 도입되지 않았다. 다만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 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되 ‘지체없이’하도록 하였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경찰은 검사에게 즉시, 검사는 석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지가 기재된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도록 하였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1항, 제4항, 제6항).

20) 헌법재판소 1993. 12. 23. 93헌가2[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위헌제청] 결정.

제1절 구속관련 통계와 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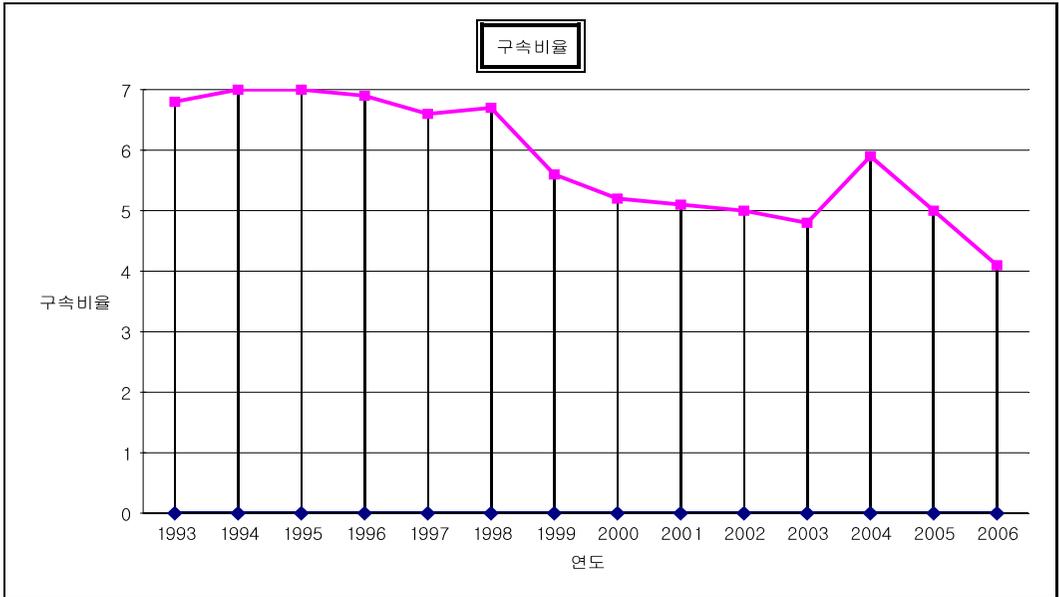
1. 구속비율

표-1) 구속인원의 변동현황(교통사범 제외)²¹⁾

연 도 \ 구 분	처리인원	구속인원 ²²⁾	구속비율(%)
1993	1,257,948	86,140	6.8
1994	1,230,945	85,662	7.0
1995	1,299,403	90,866	7.0
1996	1,363,089	94,313	6.9
1997	1,332,622	88,677	6.6
1998	1,513,424	101,008	6.7
1999	1,699,617	94,660	5.6
2000	1,564,596	81,095	5.2
2001	1,567,405	81,190	5.1
2002	1,505,852	75,605	5.0
2003	1,527,040	72,735	4.8
2004	1,052,156	62,516	5.9
2005	895,692	44,737	5.0
2006	885,767	35,996	4.1

21) 법무연수원, “범죄백서”(제2편 범죄사건의 처리 중 구속현황), 1993~2006년.

22) 표-1)의 구속인원이 표-2)의 구속영장발부인원보다 적은 것은 전자는 구속영장발부 후 기소 전과 후에 구속적부심사와 보석 등으로 석방된 인원을 제외한 인원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래프-1) 구속비율의 변동현황

표-1)과 그래프-1)은 검찰이 처리한 인원 중 구속인원의 변동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구속인원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6.8%~7.0%이었다가 1997년 6.6%, 1998년 6.7%로 소폭 감소한 후 다음 해 5.6%로 급감하고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3년에는 4.8%까지 낮아졌다. 2004년 5.9%로 높아졌으나 2005년 5.0%, 2006년 4.1%로 다시 감소했다. 2004년에 구속비율이 갑자기 높아진 것은 구속인원은 전년 대비 1만 명 감소하였으나 이에 비해 검찰이 처리한 인원이 전년대비 약 5만 명 정도로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기소 인원 현황

표-2)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인원은 1996년 이전에는 대체로 15만 명대 이었으나 1997년 14만 명대로 감소하였다. 다음 해인 1998년 16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1999년에는 12만 명으로 급감하였다.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3년과 2004년에는 10만 명대를 유지하였고 2005년에는 처음으로 10만 명대 아래인 7만 명대로 진입하였다. 그리고 2006년 6만 명대, 2007년에 5만 명대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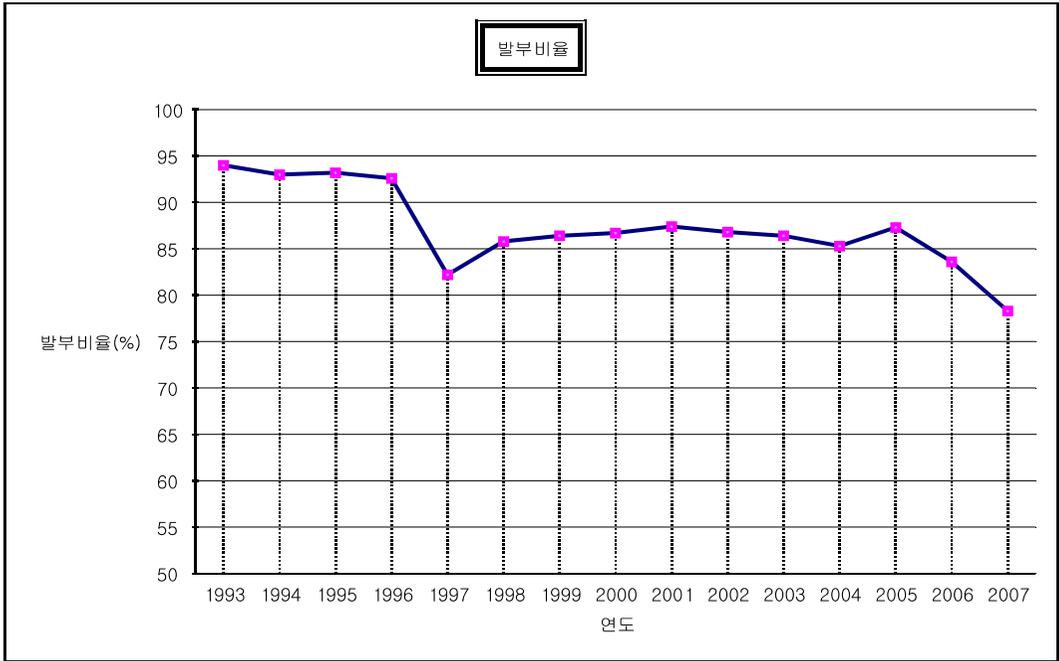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1996년 이전에는 92%이상이었으나 1997년에 82.2%로 처음으로 80%대로 진입하였고 그 감소폭도 10%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후 차츰 증가하여 2001년 87.4%에 까지 이르렀고 이후 소폭 감소하다가 2005년에는 87.3%까지 올랐다. 그러나 2006년 83.6%, 2007년 78.3%로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법원의 영장발부대비 검찰의 구속기소인원도 1996년 이전에는 76% 이상이었으나 1997년에 처음으로 80.5%로 진입한 후 계속 증가하다 2002년에는 86.3%에까지 올랐다. 2003년에 84.7%로 소폭 낮아지더니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6년 89%, 2007년에는 91.1%까지 증가하였다.

표-2)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기소 인원 현황²³⁾

구 분 연 도	청구인원	발부인원(%) (직권발부제외)	기각인원	발부대비 구속기소인원(%)
1993	158,109	148,647(94.0)	9,462	118,700(79.9)
1994	145,899	135,723(93.0)	10,176	104,083(76.7)
1995	154,153	143,665(93.2)	10,488	109,492(76.2)
1996	154,435	143,068(92.6)	11,367	109,969(76.9)
1997	144,232	118,576(82.2)	25,460	95,508(80.5)
1998	163,507	140,297(85.8)	23,086	116,086(82.7)
1999	129,250	111,633(86.4)	17,690	94,892(85.0)
2000	122,395	106,089(86.7)	16,229	88,338(83.3)
2001	121,031	105,815(87.4)	15,263	90,014(85.1)
2002	115,171	99,995(86.8)	15,091	86,266(86.3)
2003	109,620	94,741(86.4)	14,879	80,265(84.7)
2004	100,693	85,916(85.3)	14,767	74,231(86.4)
2005	74,613	65,150(87.3)	9,592	56,680(87.0)
2006	62,160	51,990(83.6)	10,178	46,275(89.0)
2007	59,109	46,274(78.3)	12,868	42,159(91.1)

23)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제5장 통계 중 제1심 구속영장 등 발부율 누년비교표), 1993~2007년.



그래프-2) 구속영장발부율

3. 제1심 형사공판사건 구속비율과 처리결과

표-3)에서 제1심 불구속 기소 인원 대비 구속 기소 인원의 비율은 1996년까지 63%이상 이었다가 1997년에 54.5%로 처음으로 50%대로 진입하였고 그 감소폭도 10%에 가까웠다. 이후 계속 감소하여 1999년 48.6%로 40%대로 진입한 후 2003년 37.7%, 2005년 26.2%, 2006년 20.3%로 급격히 감소하더니 2007년에는 16.9%까지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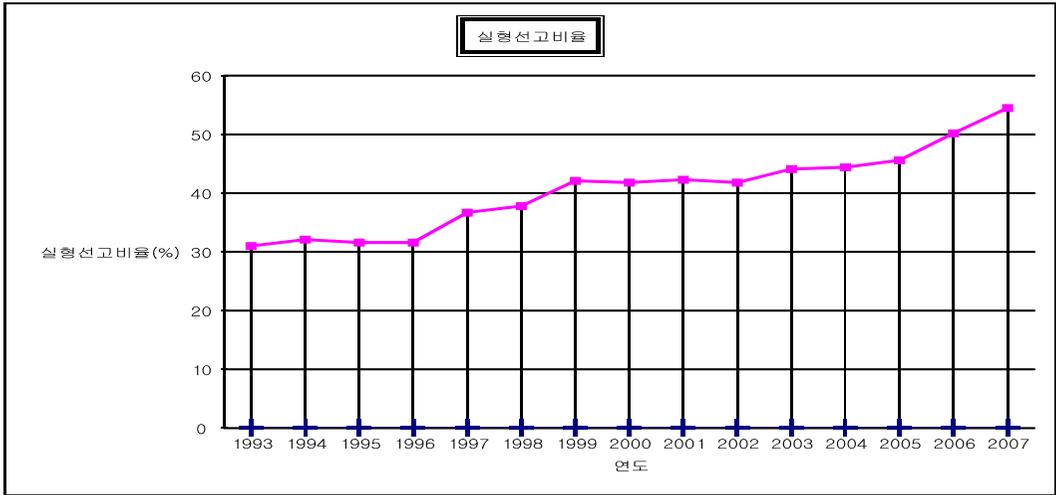
법원의 실형선고비율도 1996년 이전에는 31%이상이었으나 1997년에 36.7%로 큰 폭으로 증가한 후 계속 올라 1999년 42.1%, 2003년 44.1%, 2005년 45.6%, 급기야 2006년에는 50.2%로 처음으로 50%대로 진입하였고 2007년에는 54.5%까지 증가했다.

표-3) 제1심 형사공판사건 구속기소비율과 처리결과²⁴⁾

연도	구분	1심 총원	구속기소인원(%)	1심 처리결과	
				처리 인원 ²⁵⁾	실형 인원(%)
1993		165,835	118,700(71.6)	117,083	36,330(31.0)
1994		149,984	104,083(69.4)	103,216	32,298(32.1)
1995		164,681	109,492(66.5)	110,365	34,950(31.6)
1996		172,996	109,969(63.6)	110,848	35,043(31.6)
1997		175,165	95,508(54.5)	96,676	35,556(36.7)
1998		216,219	116,086(53.7)	113,424	42,939(37.8)
1999		195,374	94,892(48.6)	99,328	41,851(42.1)
2000		191,654	88,338(46.1)	93,617	39,173(41.8)
2001		198,506	90,014(45.3)	89,990	38,110(42.3)
2002		208,506	86,266(41.4)	87,224	36,534(41.8)
2003		212,893	80,265(37.7)	80,154	35,363(44.1)
2004		238,358	74,217(31.1)	75,472	33,543(44.4)
2005		216,460	56,657(26.2)	59,986	27,397(45.6)
2006		227,696	46,275(20.3)	46,295	23,255(50.2)
2007		250,172	42,159(16.9)	43,210	23,556(54.5)

24)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제5장 통계 중 제1심 구속영장 등 발부율 누년비교표), 1993~2007년.

25) 구속기소 인원과 구속자 처리인원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구속자 처리인원이 구속인원보다 많은 것은 전년도에 처리되지 않은 사건이 당해 연도에 이월되었기 때문이고 구속자 처리인원이 구속인원보다 적은 것은 피고인이 보석 등으로 재판 중에 석방된 인원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래프-3) 실형선고비율

제2절 구속관련 통계의 분석과 평가

구속비율과 구속영장발부율, 구속기소인원 비율, 실형선고율 등의 통계수치는 1997년, 1999년, 2006년을 전후해서 상대적으로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 구속관련 통계를 연도별 특징이 있던 해를 기준으로 3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1. 제1단계(1993년~1996년)²⁶⁾

제1단계는 구속영장재판에서 피의자의 법관 대면권이 인정되지 않고 수사기관이 제출한 수사기록만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하여 헌법상 영장주의의 취지가 형해화되어 있던 시

26) 1993년의 기준점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첫 문민정부로 김영삼 정권이 출범하던 시기로 필자 임의로 잡았다.; 1990~1996년까지의 연 평균 구속영장 청구인원 148,606명 중 138,214명이 구속되었고 그 중 107,357명이 구속 기소되었다. 나머지 10,392명(22%)은 기소 전에 석방되었고 1심에서는 34,632명(31%)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단 구속하였다가 2/3 이상을 검사의 구속취소나 법원의 집행유예 등으로 며칠 또는 몇 달 만에 석방하는 구조가 반복되었다. 1993년의 구속인원의 비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았고 범죄발생율은 높지도 않은데 인구 10만 명당 구속자 수는 일본이 69명, 독일이 61명임에 반하여 우리는 무려 330명으로 5배나 높았다. 응보적 징벌 구속의 관행은 지극히 한국적인 인권 감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사법적 정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자세를 포기하고 정의 관념을 무시하고 안일하게 법을 해석·적용한데 그 원인이 있다. 법원행정처, 전계서(각주 4), 113~114쪽.

기로 검찰과 법원의 불구속 수사에 대한 의지는 미약하여 불구속 수사라는 헌법상 원칙은
흔시적인 지침에 불과한 단계이었다.

1993년부터 1996년까지 평균 통계율을 보면 검찰의 구속비율은 6.9%,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93.2%, 검찰의 영장발부대비 구속기소인원 비율은 77.4%, 법원의 실형선고 비율
은 31.5%이었다. 예를 들어 만약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인원이 100명이라면 법원은
9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은 구속된 93명 중 71명만 기소한 것이며 구속 기
소된 71명 중 실형을 받은 인원은 22명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구속된 93명 중 71명만을 기소하고 나머지 22명은 기소도 하기 전에 석방시켜
구속영장청구가 신중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대부분 인
용하여 주면서도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31% 정도에 불과하
다. 법원이 밝혔던 가장 중요한 구속기준인 ‘실형선고가능성’에 비추어보더라도 검찰은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한 100명에서 실형선고를 받은 22명을 뺀 78명 그리고 법원은 구속
영장을 발부한 92명 중 실형선고를 받은 22명을 뺀 70명에 대한 구속여부를 잘못 판단한
것이었다. 잘못 구속된 이들은 불필요하거나 또는 과잉되게 그들의 신체적 자유와 방어권
을 제약당한 것이었다. 검찰은 구속을 남발하고 법원은 헌법상 영장주의의 취지에 따르는
검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 의무를 방기(放棄)한 단계로 “판·검 일체의 사법정신”²⁷⁾이 지배
되던 시기이었다.

2. 제2단계(1997년~2004년)

제2단계는 1997년부터 피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헌법상 영장주의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는 영장실질심사제도 등이 시행되었고 1998년 대
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의지표명으로²⁸⁾ 검찰과 법원의 불구속 수사에 대한 의지가 조금씩

27) 下村幸雄, 刑事裁判を門ろ, 243-244, 249, 251쪽, 법원행정처, 전계서(각주 4), 17쪽 재인용.

28) 1998년 2월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김태정 검찰총장에게 “검
찰이 수사상의 편의만을 내세워 구속을 남발하고 있다는데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불구
속 수사를 확대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과감한 발상전환을 통
해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고 형사소송법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대통령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 억울한 피

엿보이면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실효성을 띄기 시작한 단계이었다.

동 제도의 시행으로 법원의 검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구속 비율은 1996년 6.9%에서 1997년 6.6%로 소폭 감소하였지만 구속영장발부율은 1996년 92.6%에서 1997년 82.2%로 급감하였다. 그러나 과도기적인 시기도 있었다. 1998년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불구속 수사 확대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인원은 16만여 명으로 사상 최대이었고, 구속비율은 6.7%로 오히려 전년 대비 0.1% 증가하였으며 더불어 법원의 영장발부율도 85.3%로 전년 대비 3.6%가 증가하였다.²⁹⁾ 그러나 법무부장관이 1999년부터 구속을 남발하는 검찰 기관장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기 시작하면서 검찰의 구속비율과 구속영장청구인원은 급감하기 시작했다.³⁰⁾ 권력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의해 행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던 법원은 구속영장발부율 등에 있어서 1997년에 비해 조금씩 후퇴하거나 제자리 수준에 머물렀다.

1997년부터 2004년까지의 평균 통계율을 보면 검찰의 구속비율은 5.5%, 법원의 구속영장발부율은 85.8%, 영장발부대비 구속기소 인원 비율은 81.4%, 실형선고비율은 41.8%이었다. 예를 들어 만약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인원이 100명이라면 법원은 8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고 검찰은 구속된 85명 중 69명만 기소한 것이며 구속 기소된 69명 중 실형을 받은 인원은 28명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구속된 85명 중에 69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는 기소이전에 석방시켜 주고 있다. 법원도 8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결과적으로 28명에 대해서만 실형선고를 하였다. ‘실형선고가능성’ 기준에 비추어보면 검찰은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한 100명 중 실형선고를 받은 28명을 뺀 72명, 법원은 영장을 발부한 85명 중 실형선고를 받은 28명

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라”고 하여 불구속 수사 확대 지시를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 법무부 업무보고 대화록”, 한겨레, 1998. 4. 10, 22면, 카인즈 뉴스 검색, 2008. 7. 23.

29) “국민의 정부 출범 후 피의자 인권상황 크게 악화”, 세계일보, 1999. 3. 17, 27면, 카인즈 뉴스 검색, 2008. 7. 23: 이러한 원인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불구속 수사 확대 지시를 과거 잘못된 구속관행에 젖어 있던 일선 경찰과 검찰 등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 1997년 시행된 영장실질심사제는 피의자의 심문여부를 판사의 직권에 맡겼으나 1년 후인 1998년부터는 판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개정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30) “구속남발 땀 인사 불이익-법무부, 지검.지청장 대상”, 경향신문, 1999. 1. 7, 23면, 카인즈 뉴스 검색, 2008. 7. 23.

을 뺀 53명에 대해 구속여부를 잘못 판단하고 구속영장청구와 발부를 남발한 것이었다.

3. 제3단계(2005년~2007년)

제3단계는 2005년 검찰의 상급기관인 법무부와 검찰의 인신구속을 통제하는 법원의 수장이 교체되면서 헌법상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강조하고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던 시기로서 불구속 수사라는 헌법상 원칙과 의무의 실효성이 강화되어 인신구속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가는 단계이었다.³¹⁾

구속인원은 2005년 8만 9천여 명으로 처음으로 10만 명 이하로 떨어졌고 이에 따라 구속비율도 2004년 5.9%이던 것이 2005년 5.0%, 2006년에는 4.1%까지 감소하였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통계율을 보면 법원의 구속영장발부율은 83%, 구속기소인원 비율은 89%, 실형선고비율은 50.1%이었다. 검찰이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한 100명 중 법원은 8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고 검찰은 구속된 83명 중 73명에 대해서 구속기소한 것이며 구속기소된 73명 중 실형선고를 받은 인원은 36명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구속된 83명 중에 73명만 기소하여 나머지 10명은 기소이전에 석방시켜 주었고 법원은 8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결과적으로 36명에 대해서만 실형을 선고하였다. 실형선고가능성 기준에 의하면 검찰은 100명 중 36명을 뺀 64명, 법원은 83명 중 36명을 뺀 47명에 대해 구속여부를 잘못 판단한 것이었다. 피의자의 인권상황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불필요한 구속이 많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²⁾

31) 2005년 6월 29일 변호사이자 정치인 출신인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취임하였고 같은 해 9월 26일에는 영장발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가진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하였다. 법원과 검찰은 다음 해인 2006년 처음으로 구속기준을 제정·공개하였다. 사실 검찰은 2003년 참여정부 들어서서 첫 법무부장관에 검찰사상 최초로 비검찰출신으로 여성판사출신인 강금실 초대 법무부장관이 취임되면서 그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다. 구속비율과 구속영장청구인원이 2003년부터 참여정부 내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을 표-1),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다.

32) 제1, 2, 3단계를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단 계 \ 항 목	영장청구인원 (%)	영장청구인원대비 발부인원 (%)	영장발부인원대비 구속기소인원 (%)	영장발부인원대비 실형선고인원 (%)
1단계 (1993~1996년)	100명(100%)	93명(93.2%)	71명(77.4%)	22명(31.5%)
2단계 (1997~2004년)	100명(100%)	85명(85.8%)	69명(81.4%)	28명(41.8%)
3단계 (2005~2007년)	100명(100%)	83명(83%)	73명(89%)	36명(50.1%)

제3절 구속제도운영의 평가

구속영장청구인원과 구속비율, 구속영장발부율과 구속기소인원 비율, 실형선고비율 등의 인신구속관련 통계를 보면 영장실질심사제가 시행된 1997년에 큰 폭으로 개선되었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불구속 수사를 강조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시작한 1999년과 대법원장이 교체되고 영장발부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강조한 2005년이후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다. 헌법상 불구속 수사의 원칙의 실현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구속제도의 개선과 함께 구속제도를 운영하는 검찰과 법원의 불구속 수사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최근 검찰 일부에서는 법원이 론스타 외환은행 사건과 신정아 학력위조사건 등에서 구속영장청구를 계속 기각하는 것은 “불구속은 좋은 것이고 구속은 나쁜 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의 전제하에 한국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여 구속비율이 월등히 높으므로 이를 낮추어야 한다는 법관의 인식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구속율은 독일과 일본 등 다른 선진국보다 낮으므로 우리나라의 구속율이 월등히 높다는 전제하에 논의되고 있는 불구속 확대 논란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³³⁾ 하지만 불구속 수사라는 헌법상 원칙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여부는 구속비율, 구속영장청구와 영장발부비율, 구소기소인원비율, 실형선고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지 단순히 구속사건 점유율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그리고 다른 선진국과의 구속율 비교는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이지 결정적인 근거로 원용될 수 없다. 각국의 구속율은 그 나라의 형사사법의 역사와 문화, 통계작성대상이 된 범죄의 내용, 통계작성법 등에 따라 다르므로 이를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3단계

33) “헌직 검사 법원 정면 비판…‘구속률, 선진국보다 낮다.’”, 쿠키뉴스, 네이버 검색 2008. 6. 17.; 이완규, “각국의 구속 관련 통계 자료”, 형사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호, 2006.10.: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구속인원 점유율이 2002년 3.99%, 2003년 3.70%, 2004년 3.16%, 2005년 2.60%인 것에 비하여 일본의 구속률은 2001년 5.30%, 2003년 6.40%, 독일의 구속률은 2002년 3.80%, 2003년 3.71% 라고 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인용된 한국의 ‘구속인원 점유율’의 수치는 대검 홈페이지에 게재된 검찰자료 중 ‘형사사건동향’의 통계수치를 원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료는 공식적으로 발간된 것도 아니고 검찰 자체적으로 전산통계를 낸 것이어서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다. 법무부산하 법무연수원에서 1984년부터 매년 책자형식으로 발간하는 ‘범죄백서’가 있는데 2007년도 범죄백서에 나와 있는 ‘구속인원의 변동현황’의 통계 수치는 ‘형사사건동향’의 통계수치와 차이가 많이 난다. 범죄백서를 기준으로 한 구속률은 2002년 5.0%, 2003년 4.8%, 2004년 5.9%, 2005년 5.0%이다.

인 최근 3년간의 구속관련 통계를 보더라도 여전히 구속자 중 많은 수가 수사단계나 재판 단계에서 석방되고 있어 구속영장발부가 신중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구속이 많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⁴⁾ 헌법상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무상 구속율이 높은 것을 한편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고, 신속한 처벌을 갈구하는 국민적 범감정’에 충실한 형사사법절차의 운영결과라고 하여 변호하는 입장도 있으나³⁵⁾ 기본적으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파행적인 운용실태라고 하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³⁶⁾

제4장 구속기준

제1절 구속기준의 의의와 문제점

구속제도가 헌법의 취지에 반하여 파행적으로 운용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검찰과 법원은 불구속 수사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함과 동시에 구속기준³⁷⁾의 해석과 적용을 공평하고 엄정(嚴正)하게 하여야 한다.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체포·구속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구속영장발부절차만 규정하고 가장 중요한 구속요건에 대해서는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 제12조 제3항 후단에서 사후영장발부의 대상인 현행범과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구속자체가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있는 피의자의 자유를 박탈하여 수사과 재판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구금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구속은 원칙적으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절차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지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요건도 이러한 취지하에 규정되었다.

34) 황정근, “불법인신구속과 인권보호”, 한국형사법학회 하계학술회의, 2000, 5쪽.

35)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보고자료, 2004. 1. 5, 20쪽.

36) 한국형사정책연구원(박미숙, 도중진), “피의자·피고인·참고인·증인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2004. 12, 32쪽.

37) 구속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요건으로 볼 수 있으나 구속요건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구속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구속기준을 논함에 있어서 구속요건과 절차를 분리하여 논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도망³⁸⁾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구속요건은 그 추상성으로 말미암아 이를 해석·적용 하는 법원 또는 법관들 간의 편차는 커 그동안 구속기준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구속기준의 예측불가능성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더욱이 과거 재판실무에서는 구속사유인 ‘도망할 염려’를 판단함에 있어 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이른바 ‘위장된 구속사유’-수사의 편의, 자백획득, 피해 회복, 일반예방(범죄에 대한 응징과 처벌), 특별예방, 사회여론 등-을 고려하여 구속기준에 대한 예측불가능성을 가중시켰다.³⁹⁾ 법원이 1996년부터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요령과 예규’를 제정하면서 불구속 수사·재판을 강조하였고 2006년에는 법원과 검찰이 구체적인 구속기준을 제정하고 공개하였음에도 구속기준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어 왔다. 구속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위장된 구속사유’를 걸러내는 것이고 이는 효과적인 제도개선과 검찰과 법원의 구속제도에 대한 예외적이고 엄정한 운용의 지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요건과 절차를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살펴본다. 특히 개정법에 도입된 범죄의 중대성 등 필요적 고려사유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한다.

제2절 구속요건

헌법상의 위임에 의해 입법자가 정한 구속요건은 ①범죄혐의의 상당성, ②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라는 구속사유(형소법 제201조 제1항, 제70조 제1항), ③구속의 비례성⁴⁰⁾이다. 구속요건이 충족되면 검사는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⁴¹⁾

38) 실제 영장재판에서 ‘주거부정’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구속사유로 작용하는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고, 실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도망의 염려’이다. 서정, “영장실질심사와 10년, 그 성과와 과제: 인신구속제도에 관한 실증적 분석”, 사법논집(제45집), 2007, 382쪽.

39) 법원행정처, 전계서(각주 4), 429~430쪽.

40) 구속의 비례성은 형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장기간 구금하는 구속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비례성 원칙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구속요건이다. 법관은 영장을 발부할 때 구속의 목적과 구속이라는 수단 사이에 비례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발부할 수 없다.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제6판)”, 홍문사, 2004, 236쪽; 이재상, “신형사소송법(제6판)”, 박영사, 2008, 246쪽; 신동운, 전계서(각주 14) 106쪽.

41) 그러므로 구속요건은 구속영장발부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배종대/이상돈, (각주 40), 236쪽.

- ① 범죄혐의의 상당성은 범죄혐의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서 ‘상당한 증명’ 즉,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어야 한다.⁴²⁾ 실무상 용어는 ‘소명’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증명’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 ②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도 독자적 구속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주거부정의 여부는 피의자의 직업, 가족관계, 주거의 종류(소유, 전세 또는 월세)와 거주기간, 주민등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주거부정은 도망위험을 판단하는 구체적 사실의 하나일 뿐이며 독자적 구속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⁴³⁾
- ③ 도망은 수사, 공판절차 그리고 장래 형 집행의 형사절차를 지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도망의 염려는 피의자가 이처럼 행위 할 고도의 개연성을 말한다.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하거나 외국으로 도피하거나 도피하려 하는 경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⁴⁴⁾
- ④ 증거인멸이란 인적·물적 증거방법에 대해 부정하게 영향을 미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진실발견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증거물이나 증거서류 등을 위조·변조·은닉·손괴·멸실하거나 공범자·증인·감정인 등에 대해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경우이다.⁴⁵⁾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거나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다투거나 자백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의 위험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⁴⁶⁾

42) 이재상, 전계서(각주 40), 247쪽; 배종대/이상돈, 전계서(각주 40), 237쪽; 신동운, 전계서(각주 14), 162쪽.

43) 신동운, 전계서(각주 14), 163쪽; 이재상, 전계서(각주 40), 248쪽; 배종대/이상돈, 전계서(각주 40), 238쪽.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 한해 독자적 구속사유로 작용한다(법 제201조 제1항 단서).

44) 배종대/이상돈, 전계서(각주 40), 238쪽; ‘도망할 염려’ 유무는 ①범죄의 경중, 태양, 동기, 횡수, 수법, 규모, 결과, 자수여부 등 범죄사실에 관한 사정 ②직업과 생계수단, 약물복용이나 음주경력, 피의자의 도망을 억제할 만한 치료 중인 질병유무 또는 출산직전 등 피의자의 개인적 사정 ③보호자유무, 배우자 또는 나이 어리거나 학생인 자녀 유무, 부모의 부양여부, 피의자에 대한 가족들의 의존 정도 등 가족관계 ④지역사회에서의 거주기간 및 정착성 정도, 교우 등 지원자 유무의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49조).

45) 신동운, 전계서(각주 14), 163쪽; 배종대/이상돈, 전계서(각주 40), 240쪽; 증거인멸의 염려는 ①인멸의 대상이 되는 증거의 존재여부, ②그 증거가 범죄사실의 입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여부, ③피의자측에 의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물리적·사회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④피의자측이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48조).

46) 이재상, 전계서(각주 40), 247쪽; 배종대/이상돈, 전계서(각주 40), 163쪽.

제3절 필요적 고려사유

1. 필요적 고려사유의 의의

개정법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 불신의 요인을 제거하여 구속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동시에 범죄로부터의 사회방위를 위해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필요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법 제198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2항, 제201조 제1항, 제209조).

과거 수사와 재판의 실무에서는 구속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실체적 요소인 사안의 중대성과 형사정책적 요소인 재범의 위험성을 모두 고려하여 왔다.⁴⁷⁾ 이러한 실무관행은 형사소송법의 명문규정에 반하고 구속영장청구와 발부에 있어서 검사나 법관의 해석 재량의 폭이 지나치게 넓어지고 결과적으로 구속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어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법은 지금까지 수사·재판 실무에서 실제 구속사유로 고려되어 왔던 사안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필요적 고려사유로 추가하여 구속의 예방적 구금으로서의 기능을 인정하고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규정과 실무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나아가 구속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 것이다.⁴⁸⁾

처음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범죄의 중대성 등이 ‘구속사유’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심의 과정에서 구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구속사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형사절차적인 이유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범죄의 중대성 등 실체적 사유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으며, 이미 법원 실무에서는 위 사항들을 이미 고려하고 있다는 이유로 상징적인 의미에서 고려사항으로 변경되었다.⁴⁹⁾

47) 수사와 재판 실무에서는 관행적으로 법에 규정된 구속사유외에 ①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죄를 범한 때, ②누범 또는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③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사유로 인정하여 왔다.

48) 법제사법위원회(김종두 수석전문위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장윤석 의원의 11인), 2006. 4.

49) 법제사법위원회, “제267회 국회 임시회 법사위 제4차 회의록”(이상민 제1소위원장 발언 중), 2007. 4.

이에 대해서 필요적 고려사유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속사유인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와 필요적 고려사유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며 예외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구속제도를 너무 확장시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2. 세 가지 구속관(拘束觀)과 형사소송법의 태도

구속사유, 특히 도망의 염려의 해석과 관련하여 절차적 접근론, 실체적 접근론, 형사정책적 접근론 세 가지 구속관이 있다. 절차적 접근론은 절차확보의 관점에서 오직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직업관계,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도망의 염려’ 여부를 판단하지는 견해이다. 실체적 접근론은 규범적 도주론에 입각하여 ‘도망의 염려’를 사안의 경중과 결부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평가하여 범죄가 중대하여 실행선고가 예상되는 경우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본다. 형사정책적 접근론은 구속을 형사정책의 실현수단, 즉 형벌 집행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수사·재판 절차에 따라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인으로부터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범죄인으로부터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예방적 기능으로 적극 활용하자는 견해이다.⁵⁰⁾

구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는 ‘주거부정,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절차적 접근론에 입각해 있었다. 그러나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필요적 고려사유로 한 개정법의 태도는 구속요건을 원칙적으로 절차적 관점에서 판단하되 실체적 관점과 형사정책적 관점도 함께 고려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제12조는 인신구속이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른 영장주의에 근거”해야 함을 밝히면서도 별도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처벌·보안처분 등”과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한 자백강요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구속제도를 형사절차의 확보라는 기능이외에 처벌·보안처분의 대체수단, 자백강요의 수단 등으로 전용될 수 없음을 밝히는 것이다.⁵¹⁾ 그리고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 구

26. 29쪽.

50) 서정, 전게서(각주 38), 384~394쪽.

51) 같은 취지로 이재석, 전게서(각주 13), 812쪽. “무죄추정을 받는 자에게 ‘형벌 또는 강제처분’ 등과 같

속제도의 예외적 운용 원칙, 구속이 피의자·피고인에게 미치는 큰 불이익, 최근 활성화 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에서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등을 고려한다면 구속은 원칙적으로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의자·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의 인멸을 방지하는 등의 절차적 수단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필요적 고려사유에 대한 검토

가. 법적 성질

개정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특별한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고려하도록 하였다. 이 사유들은 독립된 구속사유가 아니라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정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구속사유가 없는 경우에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은 도망할 염려를 판단할 적극적 요소가 되며,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⁵²⁾

이에 대해서는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인신구속과 관련하여서는 그 사유가 엄격하여야 하며 구속사유를 어정쩡하게 해 놓는다면 국민들에게 또 다른 제약”이 된다는 비판이 있다.⁵³⁾

나. 실체적 접근요소인 범죄의 중대성

재판실무에서는 ‘높은 처단형 예상’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사안 경미’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구속 기준으로 삼는 실체적 접근론에 입각한 것이다. 실체적 접근

은 성격의 강제처분은 과할 수 없으므로 인신구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형벌의 성질을 가질 수 없으며 이것에 의한 형벌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일반예방 혹은 특별예방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52) 이재상, 전제서(각주 40), 247~248쪽; 법무부, 개정 형사소송법, 41쪽.

53) 법제사법위원회, “제267회 국회 임시회 법사위 제4차 회의록”(김명주 의원의 발언 중), 2007. 4. 26. 29쪽.

론의 근거에는 사안이 중하여 실형이 선고될 사람만 선별하여 구속함으로써 사회적 필요악인 구속의 폐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6년 법원이 구속기준을 공개하면서 가장 중요한 구속기준으로 실형선고가능성을 언급하고 개정법이 범죄의 중대성을 필요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실제적 접근론이 중시하는 사안의 중대성과 도망의 염려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안이 중대해도 도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반면 사안이 경미해도 도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것이 이른바 ‘규범적 도주론’이다. 규범적 도주론에 따르면,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피의자는 규범적으로 평가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⁵⁴⁾

법조인 중 다수가 실제적 접근론에 공감하고 있고⁵⁵⁾ 살인, 강도, 강간 등과 같은 중범죄의 경우 실형과 중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아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완전히 부인할 수 없으며 범죄의 중대성 또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절차적 구속사유를 규범적으로 판단할 뿐이라는 점을 근거로 찬성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죄질이 무거울수록 중형 선고가 예상될수록 도주의 우려는 더욱 커지게 마련이지만, 이는 도망을 억제하는 요소와 비교형량을 통해 결정될 성질의 것이지, 죄질의 중대성이나 높은 형량이 예상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⁵⁶⁾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음에도 중범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구속하는 것은 일반예방의 효과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실제적 접근론에 대한 다음 비판은 경청할 만하다.

“요즈음 구속영장 담당 법관들은 구속영장에 ‘높은 처단형 예상’이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법관들 누구나 이견없이 높은 처단형을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란 것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알 수도 없다. 또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처단형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으며, 또한 실형선고가 예상된다고 하여 도망염려가 추단된다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이상한 논리인지 알

54) 서정, 전계서(각주 38), 388~399쪽.

55) 2007년 12월 법조인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변호사의 71.7%가 “사안이 중대하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봐야한다.”고 하였다. “인신구속 설문조사”, 법률신문, 2007. 12. 4.

56) 이호중, “형사절차와 인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제 19집, 2006, 60쪽; 신동운, 전계서(각주 14), 163쪽.

수 없다... 여기에는 다른 중대한 문제점도 있다. 수사기관이 아닌 법관이 재판을 시작해 보기도 전에 구속영장에 버젓이 '높은 처단형 예상'이라고 기재하여 놓으면 구속적부심 재판부나 본안재판부 법관들은 당연히 이것을 보게 된다. 아마도 예단 형성에 이것보다 더욱 지름길이 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⁵⁷⁾

다. 형사정책적 접근요소인 재범의 위험성 등

형사정책적 접근론은 실체적 접근론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인신구속관행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과거에는 구속영장이 징벌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관계로 범죄혐의에 비추어 다소라도 응징이 필요한 피의자는 도주의 우려와 관계없이 일단 구속하고 미결구금기간 동안 사실상의 단기 자유형을 복역하게 한 다음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하였다. 이는 대량 구속과 대량 집행유예를 의미하는 것이었다.⁵⁸⁾ 그러나 구속은 형벌이 될 수 없다. 무죄추정을 받는 자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으므로 구속이 사전형벌의 성질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⁵⁹⁾ 특히 형사정책적 접근론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것이 자명함에도 일반예방 또는 특별예방효과를 고려하여 구금을 허용하므로 비례성의 원칙에 반한다.

그런데 국회는 “미국, 독일 등 선진 각국의 입법례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들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사·재판 절차에 따라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인으로부터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범죄인으로부터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예방적 기능도 함께 수행하여야 한다.”⁶⁰⁾는 형사정책적 관점을 반영하여 형사소송법에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라는 요소를 구속사유심사시 필요적 고려사유로 규정하였다. 이는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재범의 위험 또는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가 있는 피의자를 구속함으로써 피의자의 2차 범행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사회방위의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57) “새로운 인신구속제도 시행의 의미”를 읽고(하)”, 법률신문(김용원), 2603호(1997. 6), 13면.

58) 윤남근, “불구속 재판의 실천적 과제”, 형사재판의 제문제 4권, 2003, 501쪽.

59) 이재상, 전게서(각주 40), 227쪽, 법원행정처, 전게서(각주 4), 32쪽.

60) 법제사법위원회(김종두 수석전문위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장윤석 의원 외 11인), 2006. 4.

하지만 현재 입건되어 수사 중인 범죄도 무죄로 추정되는데 아직 입건도 되지 않고 장래 범죄가 행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신체적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약하는 것은 기본권제한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 만약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구속할 수 있다면 상습범과 누범은 물론 확신범이나 양심범, 심지어 경범죄의 경우에도 구속가능성이 높아져 구속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⁶¹⁾

한편,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들은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중요 증인들이므로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라는 요소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구속요건으로 상당부분 포섭할 수 있다.⁶²⁾ 설령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요건에 포섭되지 않는다하더라도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의 보호는 경찰에 신변보호요청⁶³⁾ 등의 다른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헌법상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구속제도의 예외적 운용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만약 피의자에게 재범의 우려 등이 있다면 피의자의 주거지를 제한하거나 보호관찰을 붙이는 방법 등 피의자를 조건부로 석방함으로써 해결하고 석방된 피의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재범을 행하거나 피해자 등을 위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양형에도 이를 반영하면 될 것이다.

61) 재범의 위험성을 구속요건으로 둘 경우 구속이 남용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견해는 신동운, 전게서, 162쪽. 최근 검찰은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주를 상대로 광고 중단 운동을 벌여온 누리꾼(네티즌)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재범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검찰, 조종동 광고 불매 네티즌 ‘사전구속영장’청구”, 네이버 검색 2008. 8. 21, <http://blog.mediaus.co.kr/969>.

62) 같은 취지로 이재상, 전게서(각주 40), 248쪽.

6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은 “검사는 살인, (특수)강간, 강도, 폭력단체등의 구성·활동 등과 같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증인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에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검사의 요청을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절 구속절차

1. 의의 -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구속절차

불구속 수사여부는 검찰과 법원이 구속요건의 해석과 적용을 공평하고 엄정하게 함으로써 뿐만 아니라 구속절차가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정신에 따라 헌법합치적으로 규정되고 운용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피의자에 대한 구속 결정전에 피의자에게 판사와의 대면 허용여부, 허용한다면 이를 피의자의 청구 등에 의해 임의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필요적으로 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구속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을 붙여 줄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구속여부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를 중심으로 구속절차를 살피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본다.

2.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가. 구속영장의 청구와 영장실질심사의 유형

구속영장⁶⁴⁾은 검사가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청구하여야 한다(법 제70조, 제201조 1항). 영장실질심사의 유형은 두 가지이다.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영장의 효력에 기하여,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는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에 기하여 법원에 인치한 후 피의자를 심문한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와 조사, 법원 심문에 응하는 미체포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없고 체포로도 수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에도 구속여부를 먼저 논하게 되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그리고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의 경우

64) 법원이 발부하는 구속영장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를 법원에 인치하기 위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과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이 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에 관해서는 집행주체가 검찰이므로 법원이 구속을 허가하는 허가장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헌법상 영장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재판의 일종인 명령으로서 검사가 집행 지휘해야 할 재판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신구속권한을 법관에게 전속시킴으로써 수사기관의 구속남용을 사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종대/이상돈, 전거서(각주 40), 236~237쪽; 헌법재판소, 1993. 12. 23, 93헌가2 결정.

이를 통제할 ‘사후 체포영장’ 제도가 없어 48시간 동안 무영장체포가 인정되고 결과적으로 헌법상 영장주의의 취지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다.⁶⁵⁾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체포전치주의’를 도입하고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의 경우에도 헌법상 영장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사후 체포영장’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심문주체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은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경력이 풍부한 판사 중에서 전담법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5). 영장전담 판사제도는 199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된 ‘구속영장실질심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당직판사가 청구된 영장을 일괄처리 할 경우 구속영장심사가 형식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었다.⁶⁶⁾

하지만 평일 야간과 공휴일에는 여전히 당직법관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의 인신구속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⁶⁷⁾

다. 심문절차와 사항

구속영장발부 전 피의자심문은 필요적 사항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법 제201조의2 제1항). 개정법 이전에는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임의적이었으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중 90%이상이 심문을 신청하는 등 피의자의 법관대면 요구가 매우 높았고 인신구속에 관한 국제적 기준이 피의자의 “법관

65) 다만 이번 개정 형소법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 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되 ‘지체없이’하도록 하였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경찰은 검사에게 즉시, 검사는 석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지가 기재된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도록 하였다(형소법 제200조의4 제1항, 제4항, 제6항).

66) “영장판사의 파워”, 한국경제, 2007. 9. 19, 네이버 검색일 2008. 5. 7.

67)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2007년 한해 처리한 구속영장 사건 수는 59,109명이고 영장전담판사는 2명이었다. 2008년부터는 3명으로 증원되었으나 구속재판의 중요성에 비추어 판사 1명이 담당하는 사건 수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영장이외에 압수·수색영장과 통신감청허가 등에 대한 심사업무도 함께 처리하고 있어 구속영장재판의 전문화와 실질화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의자신문 신청이 있으면 대부분 심문을 행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법에 반영한 것이다.⁶⁸⁾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은 심문 일시 및 장소, 피의자, 검사, 변호인의 성명, 심문 및 진술의 요지 등을 기재해야 하고(법 제201조의2 제6항)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법 제201조의2 제8항).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피의자에 대한 심문권은 없다(법 제201조의2 제4항, 규칙 제96조의13 제3항).

구속재판에서 변호인의 방어권을 실질화하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변호인은 수사기록은 물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청구서조차 열람하지 못한 채 재판에 임하고 있다. 변호인에게 구속영장청구서는 물론 수사기록도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하여 변호인이 실질적인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선변호도 형식화 되지 않도록 국선변호인 한 명이 담당하는 피의자의 수를 적절히 제한하고 충분한 접견시간과 제한적 수사기록열람권을 인정해야 한다. 중국적으로는 한 명의 국선변호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선임되어 피의자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변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⁶⁹⁾

라. 심문기일의 절차와 방법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68)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제3호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과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석방은 재판 기타 사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김종두 수석전문위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검토보고”, 2006. 4. 35쪽; 김경애,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63-65쪽.

69) 국선변호인은 대개 구속재판 전날 또는 당일 선임되고, 피의자와의 접견은 수사기록은 열람하지 못한 채 구속재판 시작 직전에 짧은 시간동안 이루어지며 국선변호인 1명이 맡는 피의자의 수는 적지 않아 실질적인 변론과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

구속영장재판의 비공개 원칙은 수사의 기밀 유지와 기소도 되지 않은 피의자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제109조는 재판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장실질심사도 재판이라는 점, 수사도 아닌 재판을 비공개 원칙으로 하는 것은 구속재판의 비밀성으로 인해 재판에 대한 불신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재판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는 수사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피의자의 인격권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검사와 피의자의 신청으로 판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구속영장의 발부

피의자를 심문한 후 피의자에게 구속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에 기하여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때에는 구속영장청구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형소법 제201조 제4항).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하는 경우 판사는 구속영장청구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여 검사에게 교부한다. 그러나 실무상 변호인에게는 구속결정등본이 송달되지 않는다. 변호인이 피의자를 위해 구속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와 연계된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발부여부와 그 이유를 당연히 알아야 한다. 물론 구속피의자의 변호인은 구속영장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01조). 그러나 변호인들이 동 규정을 인식하지 못해서인지 실무상 전혀 이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변호인들의 적극적인 자세도 중요하지만 변호인들에 대한 구속결정등본의 송달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제5장 조건부 석방제도와 영장항고제도

제1절 영장단계에서의 조건부 석방제도

영장단계의 조건부 석방제도는 피의자가 보증금 제출, 주거지 제한, 보호관찰 조건을 받아들이면 구속영장발부 후 피의자를 석방해 주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선진국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영장심사단계에서 구속의 대체수단을 인정하고 있다.⁷⁰⁾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201조는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증거인멸의 우려,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의자를 조건부로 석방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구속피의자에게도 구속의 첫 단계부터 보석을 허가함으로써 우리 형사절차에서도 체포되는 순간부터 치안판사에 의하여 보석이 결정되는 미국의 보석제도가 도입되고 불구속 수사의 길이 대폭 확대된다고 할 수 있다.⁷¹⁾ 하지만 검찰의 반대로 개정법에 도입되지는 못하였다.

반대론은 동 제도를 도입한다면, 원래 구속영장이 기각될 피의자에 대하여 오히려 대체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게 되어 동 제도가 구속비율을 낮추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아니고, 체포·구속적부심 청구를 통하여 조기 석방이 가능하므로 동 제도 도입의 실익이 크지 않으며, 오히려 영장심사 기간의 무제한, 피해회복 등 정상사항까지 심리하는 것은 영장심사의 본안 재판화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한다.⁷²⁾ 그리고 검사에게 조건부 석방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구속여부를 가지고 플리바게닝으로 이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⁷³⁾

그러나 구속적부심재판과 기소 전 보석에 의한 석방은 피해자와의 합의, 건강악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렵고, 구속적부심단계에서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는 사항은

70) 독일의 구속영장등의 집행유예 제도, 오스트리아의 구속면제 제도, 프랑스의 사법감시명령 제도 등이 같은 취지에서 인정되는 제도들이다. 사법개혁위원회,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제5차 회의의 보고자료), 2004, 25~29쪽.

71) 김경애,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6, 77쪽.

72) 법제사법위원회(김종두 수석전문위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정부제출), 2006. 4, 94쪽.

73)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형사소송법 개정안 설명자료”, 2006. 1. 26, 60쪽; 법제사법위원회(김종두 수석전문위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정부제출), 2006. 4, 96쪽.

그보다 앞선 구속영장단계에서 조건부 또는 보석의 이름으로 조기에 석방하는 것이 헌법상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소송경제에 비추어 타당하다. 또 영장심사의 본안재판화가 더욱 심화된다고 하나, 영장심사는 늦어도 구속영장 청구 익일까지 신속히 완료되는 것이 실무이고,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은 특히 개인적 법익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여부가 구속의 필요성과 연관을 가지므로 그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지 이것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주거가 일정치 않은 피의자에게 핸드폰도 없고 연락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사안이 아무리 경미해도 수사와 재판의 진행을 위해 법원에서 부득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있는데⁷⁴⁾ 이런 경우에는 피의자의 거주지를 제한하거나 보호관찰을 붙이거나 재판출석 서약서를 받는 등의 조건으로 ‘조건부 석방’을 허용하는 것이 구속의 비례성 원칙에 합치한다.

제2절 영장항고제도

형사소송법은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와 피의자의 불복방법으로 영장재청구와 구속적부심사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항고, 재항고는 허용하지 않는다.⁷⁵⁾ 하지만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201조 제8항은 판사의 구속영장 청구기각, 조건부 석방, 구속영장발부에 대한 검사 또는 피의자 등의 항고를 규정하였다.

형사소송법상 항고의 대상은 법원의 결정이고(법 제402조), 준항고의 대상은 수소법원의 구성원인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임에 반하여 영장재판은 수임판사의 재판이며, 수임판사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일반적인 불복대상이 아니지만, 영장재판도 ‘판사에 의한 재판’이며, 재판의 당부에 대한 불복을 인정할 실익이 있다는 점에서 안을 마련한 취지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영장항고제는 신속한 인신구속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

74) 예컨대 무전취식을 상습적으로 하는 생계형 범죄자의 경우 대개 노숙하거나 쉼터와 같은 보호소에 거주하여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신용불량자로서 핸드폰 등 연락처도 일정하지 않아 그 불법의 정도가 아무리 경미해도 형사절차의 진행을 위해 구속하게 된다.

75) 대결 1958. 3. 14. 4290형항9: “구속영장의 신청을 기각할 때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3항의 규정(구속영장발부 및 기각결정)은 우리 현행 형사소송의 기본정신 및 제201조 제6항(구속적부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한하여 항고를 할 수 있다) 배열상의 위치와 문리해석상으로 보아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나 재항고를 불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으며, 검사에게는 영장재청구제도, 피의자에게는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인정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⁷⁶⁾

하지만 인신구속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영장향고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⁷⁷⁾ 그리고 검사의 영장재청구제도와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제도는 사실상 제도적 기능을 발휘하기가 힘들다. 영장재청구는 피의자에 대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구속적부심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건강악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리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구속영장재판은 부장판사 내지 경력이 풍부한 판사가 담당하는데 구속적부심재판의 경우 비록 합의부가 담당하나 재판은 실제 합의부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상대적으로 경력이 낮은 수명법관이 실질적으로 진행한다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각 법원과 판사들 간의 구속판단에 대한 편차가 커 구속재판과 그 기준에 대한 불신이 널리 퍼져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하급심의 위법한 영장재판을 시정하고 구속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영장향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제6장 결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신체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국가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그만인 단순한 훈시적인 지침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는 법적 의무이다. 그러나 우리 형사사법에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헌법상 원칙이자 의무로서 제대로 각인되지 못하고 있다. 검찰과 법원은 절차확보의 수단인 구속제도를 예외적인 제도로 운용하려고 하기 보다는 수사를 위한 편의적인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범죄에 대한 응징과 처벌의 수단으로 남용하는 모습을 보여 왔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76) 법제사법위원회(김종두 수석전문위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정부제출), 2006. 4. 97~100쪽.

77) 하지만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이 길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영장향고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피의자의 영장향고권의 보장을 소홀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구속기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공평하고 엄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구속기준은 이를 해석·적용 하는 법원 또는 판사들 간의 편차가 커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더욱이 실무에서는 그동안 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수사의 편의 등 이른바 ‘위장된 구속사유’를 고려함으로써 구속기준의 예측불가능성을 가중시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저해하여 왔다. 한편 이번 개정법에 종래 실무상 고려되어 왔던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이 필요적 고려사유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필요적 고려사유는 그 법적 성질이 모호하여 구속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범죄의 중대성’을 도망을 억제하는 요소와 비교형량을 통해 결정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재범의 위험성’ 역시 현재 입건되어 수사 중인 범죄도 무죄로 추정되는데 아직 입건도 되지 않은 장래 범죄가 행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반할 우려가 크다.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구속요건 중 ‘증거인멸의 염려’의 해석으로 포섭하거나 경찰에 대한 신변보호요청 등 다른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구속제도의 예외적 운용원칙에 부합한다.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구속의 대체수단으로 영장단계에서의 조건부 석방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의 최소제한과 최대보장의 정신, 소송경제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또 각 법원과 법관 간의 구속기준에 대한 편차가 커 이에 대한 불신이 깊은 점을 고려하면 구속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영장항고제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1993년부터 2007년까지 구속영장발부율 등의 구속관련 통계를 분석하여 보면, 영장실질심사제가 시행된 1997년과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불구속 수사를 강조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시작한 1999년, 대법원장이 교체되면서 영장발부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강조한 2005년 이후에 큰 폭의 인신구속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구속자 중 많은 수가 수사나 재판단계에서 석방되고 있어 구속영장발부가 신중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구속이 많은 상황이다. 불구속 수사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구속요건과 절차 등 구속제도에 대한 입법자의 끊임없는 ‘개선 의지’와 더불어 검찰과 법원의 헌법상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실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1993~2006년.
법원행정처, “영장실질심사제도 II”, 1997.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993~2007년.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제6판)”, 홍문사, 2004.
신동운, “신형사소송법(제3판)”, 법문사, 2005.
이재상, “신형사소송법(제6판)”, 박영사, 2008.

<학위논문>

- 김경애,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일반논문>

- 서정, “영장실질심사 10년 그 성과와 과제”, 사법논집 45집, 2007.
이완규, 각국의 구속 관련 통계 자료, 형사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호, 2006.
이태훈, “미국의 인신구속제도와 운영실태”, 법조, 제490권, 1997.
이재석, “수사와 인권”,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2호 특집호, 한국비교형 사법학회, 2003.
이호중, “형사절차와 인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제19집, 2006.
윤남근, “불구속 재판의 실천적 과제”, 형사재판의 제문제 4권, 2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피의자·피고인·참고인·증인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2004.
황정근, “불법인신구속과 인권보호”, 한국형사법학회 하계학술회의, 2000.

<일반자료>

- “구속영장의 발부기준에 관하여”, 법률신문, 2008. 7. 3.
“구속영장의 발부기준에 관하여”, 법률신문, 2008. 7. 17.
“‘구속영장의 발부기준에 관하여’에 대한 반론”, 법률신문, 2008. 8. 4.

- ”인신구속 설문조사”, 법률신문(창간57주년 특집), 2007. 12. 4.
- “검찰 사상 첫 구속영장 청구기준 공개”, 법률신문, 2006. 6. 14.
- “제267회 국회 임시회 법사위 제4차 회의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07. 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장윤석 의원외 11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06. 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정부제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06. 4.
-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제5차 회의 보고자료), 사법개혁위원회, 2004.
- “형사소송법 개정안 설명자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6. 1.

<인터넷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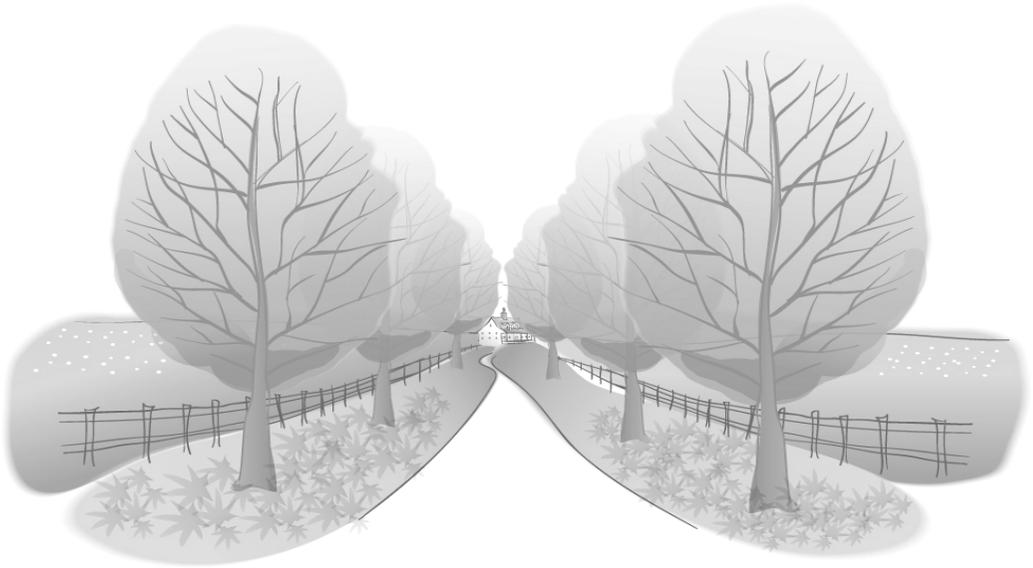
- “경찰 떡살만 잡아도 영장...처벌강화 논란”, 경향닷컴(이영경 기자), 네이버 검색 2008. 6. 2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6132350495&code=940301.
- “떡살 잡으면 구속? 기각! 검찰-법원 엇박자”, SBS TV(2008-6-19 20:40), 네이버 검색 2008. 7. 2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7&oid=055&aid=0000132133>.
- “[법원, 불구속 재판 확대]교통사고 사망≠무조건 구속”, 네이버 검색 2008. 7. 22.
<http://blog.naver.com/flatline21?Redirect=Log&logNo=110000660346>.
- “검찰 사상 첫 구속영장 청구기준 공개”, 법률신문(2006. 6. 16), 네이버 검색 2008. 6. 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9&oid=122&aid=0000002978>.
- “현직 검사 법원 정면 비판...‘구속율, 선진국보다 낮다’”, 네이버 검색 2008. 6. 17.
<http://blog.naver.com/speedtax?Redirect=Log&logNo=60030558745>.
- “영장판사의 파워”, 한국경제, 2007. 9. 19, 네이버 검색 2008. 5. 7.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7091985521>.
- “검찰, 조중동 광고 불매 네티즌 ‘사전구속영장’청구”, 네이버 검색 2008. 8. 21.
<http://blog.mediaus.co.kr/969>.
- “김대중 대통령 법무부 업무보고 대화록”, 한겨레, 1998. 4. 10, 22면, 카인즈 뉴스 검색 2008. 7. 23.
- “국민의 정부 출범 후 피의자 인권상황 크게 악화”, 세계일보, 1999. 3. 17, 27면, 카인즈 뉴스 검색 2008. 7. 23.
- “구속남발 땀 인사 불이익-법무부, 지검.지청장 대상”, 경향신문, 1999. 1. 7, 23면, 카인즈 뉴스 검색 2008. 7. 23.

<판례>

헌법재판소 1994. 4. 14, 90헌마82 결정
헌법재판소 1993. 12. 23. 93헌가2 결정.
헌법재판소 1992. 1. 28. 91헌마111 결정.
대결 1958. 3. 14, 4290형향9.

<외국문헌>

Bell v. Wolfish, 441 U. S. 520(1979)
Schlüchter, Rn. 211.1, 211.3.
BVerfGE 19, 334, 348



주거권 지표 개발

- 인권으로서의 적절한 주거

김명수·김은영·문혜정·임재우
(인권운동사랑방 주거권지표개발팀)

목 차

Contents

제1장 주거권 지표개발의 배경과 목적	70
제1절 주거권 지표개발의 배경과 필요성	70
제2절 주거권 지표개발의 목적	80
제3절 연구 방법	4
제2장 주거권의 개념	21
제1절 국제적 논의에서 찾은 적절한 주거권의 요소	21
제2절 한국사회에서의 주거권	71
제3절 소결	45
제3장 주거권 지표개발	92
제1절 지표개발의 방향과 원칙	92
제2절 주거권 지표 영역	94
제3절 주거권 지표 목록	94
제4장 결론 및 제언	4
<참고문헌>	94

요 약

본 주거권지표개발 연구는 주거가 가지는 인권으로서의 성격에 주목하여 한국사회에서 주거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반영하면서 주거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파악할 수 있는 주거권 지표군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국내외의 문헌연구를 기본적인 연구방법으로 하였으며, 주거권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인권단체활동가, 연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주거권과 관련되어 국제사회에서 진행된 논의에서 점유의 안정성, 필수적인 시설과 서비스의 이용가능, 부담가능한 주거, 살만한 주거, 접근가능한 주거 및 차별금지, 위치, 문화적으로 적절한 주거, 공동체의 형성과 의사결정에의 참여 등의 요소를 주거권의 일반적인 구성요소로 확인하였다. 한국사회의 주거권 침해 문제로는 강제철거로 인한 점유의 안정성 파괴, 부담 가능하지 않은 주거비, 살만하지 못한 물리적 주거환경, 노숙문제, 주거권에 있어서의 차별 등을 정리하고, 국제사회 주거권 논의의 한계와 국제적인 주거권 논의로 해결될 수 없는 한국의 주거권 문제를 지적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지표군은 6개 대영역, 12개 소영역, 32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최근 심각한 문제인 점유의 불안정성과 주거비 부담을 다루었고, 홈리스의 문제와 주거권에서의 차별문제를 다루었다. 살만한 주거환경을 주택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으로 다루었고, 정부의 주거권 실현 노력도 주거권지표에 포함시켰다.

주거권 지표들이 가진 인권적 의미들은 주거가 권리로서 인식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거권의 실현을 위해 한국사회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내용,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내용이 지표를 통해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표들은 이후의 다양한 노력들로 보완되어야 한다. 관련지표와 하위지표들이 보다 풍부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개발된 지표들을 활용하여 주거권의 현실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운동, 정부의 정책 변화 등을 통해 주거권을 실현할 수 있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거권 지표 개발

- 인권으로서의 적절한 주거

김명수·김은영·문혜정·임재우(인권운동사랑방 주거권지표개발팀)

제1장 주거권 지표개발의 배경과 목적

제1절 주거권 지표개발의 배경과 필요성

주거는 삶의 기반이 된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먹고, 자고, 마시고, 누는 생리적 욕구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추위, 질병, 위험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안전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은 안정된 주거 속에서 활동을 위한 휴식과 정비를 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생활을 영위한다.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주거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필수조건으로서 인권의 구성요소가 된다. 주거권은 유엔의 보편적 인권에 관한 선언(이하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되었고,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도 주거가 국민의 권리임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 주거권의 현실은 선언의 당위성과 차이가 크다. 주거에 관한 전통적인 기준인 주택의 물리적 환경의 열악함은 최저주거기준이라는 법적 기준이 마련된 후에도 여전하다. 폭등하는 주거비는 모든 사람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재개발 사업 등으로 새로운 주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있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주거권은 무시되고 있으며, 노숙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주거권지표의 개발은 이러한 주거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주거권, 건강권 등 사회적 영역의 권리들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은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게 된다.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주거는 인권이라는 추상적인 선언을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사회의 사회권문제들을 파악하고 측정하여 사회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 인권지표목록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건강권, 교육권, 노동권 등 사회권지표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며, 주거권과 관련해서는 UN-Habitat에서 ‘Monitoring Housing Rights’라는 주거권지표목록을 제시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권리지표와 비교했을 때, 기존의 주거지표들은 주택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주거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움직임을 반영하지 못했다. 주택의 문제만으로는 권리의 문제를 포괄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등록주거지인 비닐하우스촌에 대해 최저주거기준을 지표로 제시하는 것은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의 주거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강제철거의 문제, 세입자의 권리에 관한 문제,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 등 주거권의 당면문제들은 지금까지의 주거지표들로 파악되지 않는다. 이런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국제사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적절한 주거’의 내용을 현재 한국사회에서 구체적인 권리항목으로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관계들을 반영하면서도 사회적 소수자들의 주거권 문제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주거권지표의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2절 주거권 지표개발의 목적

1. 주거권 지표의 개념

사회지표는 가치 및 목표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가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측정하고, 특정한 정책 내용을 평가하고 결정할 수 있는 통계 및 모든 여타의 증거물¹⁾로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회의 여러 조건을 제시해주는 계량적 자료이다.²⁾ 주거권 지표는 이러한 사회지표의 일반적인 성격과 함께 인권지표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인권지표의 개발은 각 권리별로 보호되고 침해당해서는 안되는 항목들을 정하는 작업

1) Raymond A. Bauer, SOCIAL INDICATORS, M.I.T. Press, 1967

2) Biderman A. D., Social indicators and goals, 1966

으로서 추상적인 권리를 구체화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권지표는 인권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인간의 인권 상황 중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고, 달성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외국의 인권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척도로서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³⁾

이에 대해 찰스 휴매너는 세계인권가이드를 작성하면서 그 목적을 세계적으로 쉽게 통용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자신의 인권에 대해 자각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계몽하기 위한 것이라 밝히면서, 인권지표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인권지표가 수행하는 모니터링은 악랄한 인권범죄를 지속시키려는 국가체제에 압력을 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⁴⁾

주거권 지표는 한국사회의 주거권 현실을 측정하는 계량적 자료의 성격과 침해당해서는 안 될 주거권의 구체적인 내용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일련의 도구들이다. 특히 인권지표로서의 주거권 지표는 인간의 권리라는 특수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역으로, 일관적으로 객관적 지표를 설정하거나 수치화하는 것이 어렵고, 인권 침해는 수량과 관련된 문제보다는 질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2. 주거권 지표개발의 목표와 목적

본 주거권 지표개발 연구는 현재 한국사회의 주거권현실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주거권실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일련의 지표군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거권 지표의 개발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최종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주거권 논의의 확산 및 구체화

현재 한국사회의 주거권 논의는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강제퇴거에 맞서는 구호로서 주거권 보장이 요구되고 있을 뿐, 포괄적이고 완결된 권리체제로 인식되거나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주거권 지표의 개발은 특정 현안에 머무르지 않고 권리의 보편적 실현의

3) 길은배, 청소년 인권지표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1

4) 정근식 외, 한국형 인권지표의 모색, 경인문화사, 2004

관점에서 주거권이 논의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다. 또한, 개별 지표 항목들의 개발은 주거권 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주거권 실태 파악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지표의 본연적 기능이다. 주거권 실태 파악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의 비교할 수 있고, 사회 변화의 방향을 알 수 있으며, 외국과의 비교도 가능하게 된다. 한국 정부에서 생산하는 주거관련 통계는 주거의 권리 측면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주거권 침해의 상황을 왜곡하거나 은폐하기도 한다. 따라서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주거권 실태파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주거와 관련하여 정확한 인권실태의 파악은 주거권에 대한 토론과 논쟁, 교육, 정책적 변화를 촉진하여 한국사회가 인권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다. 사회 전반적인 권리의식 강화

권리의 측면에서 구성된 주거권 지표항목들은 경제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주거가 인권의 영역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전반적으로 권리의식이 강화되고, 각 권리주체들은 주거권 지표를 활용하여 공동체의 주거권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과정은 곧 주거권 실현을 위한 권리주체들의 연대와 주거권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 정부의 주거정책의 방향 변화

현재 한국정부의 주거 정책은 공급확대와 세금조절뿐이며, 이러한 경제적인 접근은 주거권을 보장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 모든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주거권의 실현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주거권 지표와 이를 통한 실태파악은 정부의 주거정책이 주거권에 기반한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사회적 논의를 만들어 가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연구 방법

주거권지표개발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지표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국제적 논의와 국내의 주거권 문제 두 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제적 논의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와 유엔 인간정주센터, 주거권 특별보고관과 해외 주거권 민간단체들의 문헌들을 검토하였으며, 국내 주거권 문제는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와 권리침해 당사자들의 요구 등을 함께 검토하였다. 이에 대해, 주거권 운동을 하고 있는 인권운동단체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 장애인과 철거민 등 주거권 운동을 하고 있는 권리 당사자들, 주거권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여기서 파악한 주거권의 요소들을 정리한 후 각 영역으로 나누어 지표 항목들을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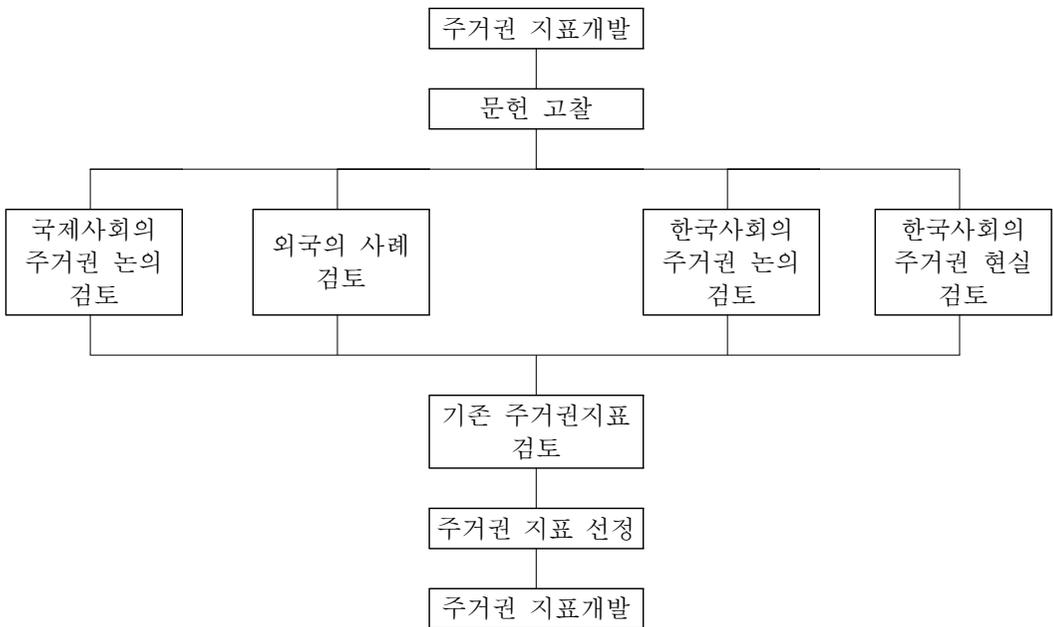


그림 1. 주거권지표개발 연구 과정

제2장 주거권의 개념

제1절 국제적 논의에서 찾은 적절한 주거권의 요소

1. 주거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역사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의식주와 의료,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를 명시하였다. 필수 사회서비스로의 주거에 대한 세계인권선언에서의 최초 언급 이후, 1966년 유엔총회에서 제정되어 1976년에 각각 발효된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에서는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주거의 권리를 인정하게 된다. 두 국제규약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상당한 생활수준으로 누구나 자기와 가족이 쓸 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언급하고 가맹국이 이러한 생활수준 유지와 생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후 1976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제1차 Habitat(Habitat I, 제1차 유엔인간정주회의)에서는 저소득층이 겪고 있는 주거불평등과 차별, 도시전반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하는 등, 이전보다 다양한 주거문제를 논의하고 주거권 실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1차 Habitat가 있던 지 20년이 지난 1996년에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제2차 Habitat가 열렸고, 이때 채택된 ‘Habitat II 의제’는 주거권과 관련된 포괄적이고 중요한 국제보고서가 되었다. Habitat II 의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적절한 주거와 도시화는 세계의 지속가능한 인간정주 개발을 목적으로 하지만 단순한 주택공급이나 주거공간의 확보만이 아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로의 주거권을 선언하였다. 이후에는 국제사회에서 큰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꾸준히 자국의 주거권문제를 고민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논의가 세계사회포럼 등을 통해 더해지고 있다.

2. 적절한 주거권의 요소

현재 우리의 주거가 인권적으로 적절한 주거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어떤 것들이 모자라고 추가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적절한 주거권의 요소들을 분명하고 영향력있게 제시하고 있는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4

의 분류체계를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점유의 안정성

적절한 주거를 위해서는 거주자가 원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점유의 안정성이라고 한다. 점유의 안정성은 강제퇴거에 의해 공격받는데,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일반논평7에서 강제퇴거를 “개인, 가족 및 공동체가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거주하고 있는 집이나 영토로부터 적절한 법적형태 또는 다른 형태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축출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강제퇴거의 진행형태는 대규모 개발이나 건설 사업, 빈민가 철거, 도시 재개발, 강제매입과 수용, 부동산투기, 높은 임대료 요구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강제퇴거와 관련하여 실제로 강제퇴거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위협이나 방해가 존재하는 시점부터 주거권이 침해되는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강제퇴거는 거주인으로부터 주거공간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던 공동체 관계도 함께 파괴하는 심각한 주거권 침해이다.

나. 필수적인 시설과 서비스의 이용가능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적절한 주거를 위해서는 깨끗한 식수와 조리를 위한 에너지, 난방과 조명, 위생시설, 음식저장수단, 쓰레기 배출수단, 하수구와 긴급서비스에 대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의 수준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위에 언급한 시설과 서비스들은 현재 한국사회의 수준을 고려할 때 보편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 부담 가능한 주거

Habitat는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실천계획을 주장함으로써 주거에 있어서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비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회권위원회 역시 “주거와 관련된 개인 또는 가정의 비용은 다른 기본적인 수요의 확보 및 충족을 위협하지 않거나 제한하지 않는 수준이 되어야 하고 비용의 적정성 원칙에 의거하여 점유자는 적절한

수단을 통해 불합리한 임대료 수준이나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시하여 비용의 적정성이 적절한 주거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라. 살만한 주거

주거공간에서는 외부와 적절히 구분된 공간에서 추위, 습기, 더위, 비, 바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병원균 등 건강을 위협하는 다른 요소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주택의 구조적 안정이 보장되어 붕괴의 위험으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도 살만한 주거가 갖추어야 할 요소에 포함된다.

마. 접근 가능한 주거 및 차별금지

접근 가능한 주거는 물리적 접근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접근을 의미한다. Habitat는 여성과 가난한 사람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점유권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고, 동등하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노인, 여성, 어린이, 장애인, 시민권이 없는 사람, HIV보균자,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심리적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연재해 피해자, 자연재해 예상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주거에 있어서 소외받아서 안 되며 오히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차별금지항목은 인권의 대원칙 중 하나이므로, 주거권에 있어서도 차별금지의 내용은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바. 위치

집의 적절한 위치 역시 인권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적절한 위치는 물리적으로 적당한 거리 안에서,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노동, 재화, 서비스, 편의시설을 보다 쉽게 구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복지, 교통 및 통신 시설, 에너지, 보건 및 긴급구조서비스, 학교, 치안 등의 기반시설과 서비스의 이용시설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앞서 기술한 필수적인 시설과 서비스의 이용가능이 주택 내부의 필수적인 요소를 의미한다면, 적절한 위치는 주택 외부와의 관계와 주거환경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 문화적으로 적절한 주거

문화적으로 적절한 주거는 건축양식과 건축 재료 등이 다양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전체 주택 중 고층아파트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한국에서 의미있게 고려되어야 할 주거권의 요소이다. Habitat는 이와 관련하여, “개방 공간과 녹지 공간의 경관과 도시의 동·식물을 비롯하여 원주민과 그 밖의 사람의 전통적인 주거와 정주 형태 등과 같은 역사적·문화적·자연적 유산을 보호하고 유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 공동체의 형성과 의사결정에의 참여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과 참여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적절한 주거는 주택 안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권리주체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주거와 관련한 공통의 계획 수립과 집행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 주거를 실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과 지역주민조직이 인간정주전략정책·사업의 의사결정·수행·감시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촉진하는 제도적·법적 틀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아무 방해없이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표현하고 생각과 정보를 찾고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할 뿐 아니라 조직화된 공동체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그 결성을 촉진하는 것이 주거권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하다.

3. 주거권을 위한 외국의 노력

주거권이 인간이 존엄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만큼 많은 나라들에서 주거권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는 1989년 법으로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했고, 1990년 5월 31일 법은 “주거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전 국민에 대한 연대적 의무”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주거권의 인정에 따라 국가와 각 지자체는 동일한 비율로 공동부담을 하는 거주연대기금을 준비하였다. 2000년 12월 13일 제정된 ‘연대와 도시재건’ 법안은 모든 꼬뮌이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실업과 빈곤 등으로 인하여 일정한 주거가 없는 사람들(SDF: Sans Domicile Fixe)이 계속 증가하면서 프랑스의 주거권은 2006년에 다시 전

환기를 맞는다. 일명 ‘돈키호테의 아이들’이라는 단체의 주도하에 강변의 텐트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퍼포먼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주거권 실현에 대한 압력이 커지자, 정부는 결국 ‘대항력있는 주거권을 설정하고 사회연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는 2007년 3월 5일의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 이 법안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정부에게 사회적 주거를 제공할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것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사법적으로 정부를 제재하여 실질적인 주거권 실현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

영국은 대대적인 주거권 캠페인이 벌어진 후인 1986년 12월, ‘1987년 주택인권법안’ 개요를 발표했다. 주택인권법안은 안전한 거주가 보장된 주택, 만족스러운 주택에 살 권리를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려는 의도로, 주거의 안전성을 물리적인 시설뿐 아니라 사회적, 제도적 안정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종차별, 성차별, 동성애자 차별, 가정 내 폭력 혹은 거주방해 등의 행위로부터 안전한 주거를 보장하고자 한 점이다. 주택법(Housing Act)과 세부지침을 통해 주택의 최저기준(Housing Standard)을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기준미달 주택을 발견하여 고발조치, 상태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급, 또는 거주민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의 주거안정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닌다.

위에서 살펴본 두 나라의 정책사례들이 현실적인 주거권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세입자가 대항력을 가질 수 없는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비교할 때, 대항력있는 주거권을 설정한 프랑스의 법률 등은 큰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

4. 국제사회의 주거권 논의의 한계

국제사회는 변화하는 주거권 상황과 지금까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굴하여 앞으로 정교하고 풍부하게 만들어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과 Habitat 의제가 국제사회 논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주거권에 대한 합의이기 때문에, 개별 국가나 개별 공동체에 적용되기에 추상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국제규약이 개별 국가 내에서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못해 결국 선언에 그치게 되는 현실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 논의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법 중 하나인 금융적 지원은 원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주택의 소유에 근간을 두는 주거권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도출된 금융적 지원이라는 해법은, 당사자에게 이자 부담이 있는 부채로 고스란히 남아 경

제력이 약한 이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된다는 점과, 경제영역을 넘어서는 권리로서의 주거권을 여전히 시장의 영역에서 해결하려는 점 등의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제7회 세계사회포럼에서는 ‘세계적 의제로서의 주거와 주거권’과 ‘주거권과 퇴거당하지 않을 권리’의 포럼을 통해 국제사회의 주거권 논의가 여전히 시장의 기능과 국제금융기구의 금융적 지원에 제한되어 있는 현실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한계들을 고려할 때, 주거권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의는 주거권 영역만 독립적으로 평가되어서는 안되며, 주거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경제의 흐름 속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는 한국사회의 주거권 논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단기간에 압축된 형태로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가 발생시킨 한국의 고유하고 특수한 상황과, 주거가 부동산이라는 명목으로 재산권이라는 틀에 묶여 있는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2절 한국사회에서의 주거권

1. 한국사회에서 주거권의 위상

주거가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사회문제이면서도 주거에 대한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한국사회에서 주거권은 실정법상 용어는 아니지만, 헌법 제10조 ‘행복을 추구할 권리’,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5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한 권리’에서는 이미 주거권을 지시하고 있으며,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부의 책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 등 여러 법률에 나타난 내용들은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으며⁵⁾, 한국 정부가 조인한 국제협약들⁶⁾은 주

5) 주택법 제1조에서는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국가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법 제 5조에서는 정부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한국정부는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에 대해 1990년 3월 국회의 동의를 얻어 7월 10일부터 국내에서도 효력을 발하게 되었는데, 특히 사회권규약 11조에서는 ‘가입국은 누구나 상당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또한 부단히 생활조건을 향상시킬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상당한 생활수준이란 자기와 자기 가족이 쓸 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그 내용을 한다.’ 고 하였고 이 중 주거권의 영역은 일반논평 4를 통해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거권의 국제기준이 국내에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조항과 국제규약의 타당성만으로 주거권을 거론할 수는 없다. 인권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은 법률 조항의 유무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또한 법 조항이 구비되어 있어도 현실에서는 인권이 침해당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한국사회에서는 주거권에 관한 입법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나마 존재하는 법률조차 주거권을 옹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은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보다 명백하게 보여준다. 한국사회에서 주거권을 쟁취하고 지켜내는 과정은 주거권을 침해당하는 사람들의 투쟁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1970~80년대 경제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많은 사람들이 강제철거와 강제이주를 경험하게 되고, 그에 대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주거권은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이후 강제철거와 폭력행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소득의 향상, 주택보급률의 증가 등 외적인 여건이 향상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재개발, 청약, 뉴타운 등에 관심을 갖게 된다. 주택은 상품으로 인식되어 투자대상이 되고, 투자와 투기가 구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거권의 권리로서의 위상은 많이 약화되었다.

무분별한 뉴타운 개발이나 신도시 건설은 오히려 주거권을 파괴할 수 있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철거가 진행되고 있지만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없으며, 재개발은 오히려 집을 가진 사람들이 집을 더 늘리기 위한 과정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그러한 결과로 상승한 집값은 주변지역의 전반적인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새로운 주거빈곤층을 형성하게 되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밀려나게 된다.

이러한 한국사회에서 주거권의 실현은 요원해 보인다. 하지만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주거권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과 국제규약, 그리고 기타 국내법 역시 모든 인간의 권리로서의 주거권을 지향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2. 한국사회에서의 주거권 문제

주거를 인권으로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복잡한 논의 속에 간혀있는 동안에도, 주거권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주거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저항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주거권과 관련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그로부터 법률적인 논의를 넘어서는 한국사회에서의 주거권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가.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주거권 침해⁷⁾

(1) 점유의 안정성

한국은 1987년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주거문제협의회(Habitat International Coalition) 회의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강제철거를 자행하는 국가로 지목당했던 불명예를 안고 있다. 그러나 그 후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한국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사회에서 주택의 소유는 안정된 주거공간의 확보라는 의미에, 잠정적인 수입원이라는 의미를 추가로 갖고 있다. 실제로 의도적인 부동산투기세력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오르기를 기대하거나,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임대료 수입을 얻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예상만큼 돈이 되지 않거나, 돈이 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강제퇴거의 형식으로 점유의 안정성을 파괴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개발사업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개발의 과정에서는 건설업체와 주택소유주의 이윤동기가 세입자와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만약 개발과정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끝까지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한다면, 결국 강제철거의 형식으로 퇴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민간·공공 영역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면서 강제철거도 대규모로 일어나게 된다. 하지만, 강제철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퇴거대상자들이 어느 정도의 위협과 폭력을 경험하고 이주를 결정하게 되는지, 자진이주를 거부한 주민들이 경험하는 사적·공적인 폭력의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통계나 조사는 거의 없다. 철거업체 직원과 철거민들이 극단적으로 충돌할 때 언론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강제철거와 관련된 기록의 전부이다.

게다가 정부는 주거의 안정성을 노골적으로 파괴하는 강제철거로부터 주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기업이 앞장서서 강제철거를 수행하거나, 사기업의 폭력적인 강제철거를 경찰력을 이용하여 지원하거나, 비닐하우스촌 화재에 대해 뒤늦게 대응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주거권에 대한 분명한 침해이며, 정부가 지

7) 이 부분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주거권 침해 현실을 일반논평4에서 제시된 7가지 요소의 틀을 변용하여 점유의 안정성, 비용의 적절성, 물리적 환경의 문제, 노숙인의 주거 실태, 주거권에서의 차별 금지, 국제사회의 논의에 포함되지 않은 주거권 문제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켜야할 국제규약과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서울 등의 지역에서는 뉴타운이라는 명칭으로 대규모 주거박탈상황이 발생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로 인해 시민들의 주거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뉴타운 대상 지역 주민의 재정착률은 10~20%에 불과하며 거기서 밀려난 원주민, 세입자, 철거민들의 상당수는 전세값, 주택값 상승으로 인한 주거불안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2) 비용의 적절성

적절한 주거는 모든 사람들이 비용의 부담 없이 접근가능하고 이용가능해야 한다. 비용의 적절성은 내 집 마련이 용이한(affordable) 가격의 집과 임대료 지불이 가능한 집을 포함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거점유형태는 자가(owner occupation)와 임대(rental sector)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주거안정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는 자가소유가 선호되고 있지만,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이후에도 10명 중 4명은 집을 갖지 못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한국사회 주거 빈곤층의 대부분은 임차가구로, 임차시장이 민간주택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의 주거불안은 심각한 수준이다. 집값의 폭등은 연쇄적으로 전월세비용을 폭등시키며, 집값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전월세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꾸만 높아만 가는 주거비로 인해 대다수 저소득 서민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고 실업과 물가상승으로 인해 주거비는 더욱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거빈곤가구는 주거비 지불능력미달인 가구로 정의할 수 있다. 주거비지불능력미달은 주거비가 소득의 일정비율(20%~30%)을 초과하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주거비 문제는 소득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주거비는 소득수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소득 1~3분위의 74.6%가 최저주거기준과 같이 물리적 기준에 미달하면서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⁸⁾⁹⁾

이러한 저소득층의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다. 영구임대주택으로 시작한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되어 최근 국민임대정책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은 1993년 이후 공급이 중

8) 윤주현 외, 지역간, 계층간 주거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연구: 주거서비스 지표의 개발 및 측정, 국토연구원, 2005

9) 강신욱 외,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단되었고,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감소시키는 등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오히려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와 관련된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정부 재정투자¹⁰⁾의 미비는 곧바로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조성비용에 근거한 신규 임대단지의 임대료 인상과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비 지원 축소로 위기상황에 봉착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2007년 6월말 현재 주택공사 임대아파트의 체납율은 21.2%에 달하며 임대료를 하루만 연체해도 9.5%의 이자를 물어야하는 상황이라 입주민의 주거빈곤을 가중시키고 있다.

(3) 물리적 환경의 문제

사람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이라면 적당한 면적에 전기와 수도, 냉난방, 튼튼한 외벽 등이 갖춰져야 하고, 빛과 바람, 소음도 등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기준도 필요하다. 집 안에서 살아가는 개개인의 사생활도 보장되어야 하며, 생존을 위한 일터와 가깝고 지역사회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하거주, 옥탑방, 비닐하우스,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방치되어 있다.

2005년 최저주거기준¹¹⁾ 미달가구는 전체 가구의 21.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한국 사회의 열악한 주거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불량거주의 수준은 심각하다. 한국도시연구소의 2005년 실태조사를 보면, 지하거주 가구 중 기준미달 가구는 전체 가구 평균치의 두 배 이상인 43.3%에 이른다. 비닐하우스촌의 경우 가구원수 대비 사용방수에 있어서는 39.4%가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원 수 대비 사용면적은 37%가 미달하였다. 이는 그나마 최저주거기준에서 추상적으로 명시된 구조, 성능, 환경 기준을 제외한 수치이다. 이것을 포함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기준미달비율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이처럼 불량거주지에 거주하는 경우 여러 가지 생활상의 위험에 노출될 여지가 크다. 채광, 환기, 방습에 불량한 구조재질로 건강 및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내열, 방열, 내화에 있어 불량재질 사용으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기본적인 설비의 미

10)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재원 중 정부비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영구임대일 경우 85%, 50년임대일 경우 50%, 국민임대주택일 경우 10~30%만을 투자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1) 최저주거기준은 대체로 “적절하고, 법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는 추상적인 규정 하에 기존 법령들의 규정에 위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한계를 보이며, 주거의 안정성과 물리적 상태보다는 가구의 주거공간이나 시설점유기준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다.

비로 생활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위생상의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한편, 적은 비용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주거빈곤층은 주거의 접근성, 주변환경 등에 있어서도 불편을 참고 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가구는 물리적 불편함을 선택함으로써 편리한 교통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하거나 반대로 불편한 위치에 있는 보다 넓은 집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주거빈곤층이 선호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가 필요한 가구의 거주지와 동떨어진 지역에 건설되고 있어 거주지와 직장이 근접해 있기를 원하는 가구의 입주를 어렵게 하기도 한다.

요금체납으로 인한 단전, 단수 조치는 또다른 주거권 침해 상황이다. 2003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3개월 간 요금을 못내 단전된 건수는 2001년 477,173건(월평균 39,674건)이었으나 2003년 상반기 동안만 340,029건(월평균 56,671건)으로 40%가량 증가했다. 또한 단수 역시 2001년 20,429건(월평균 1,702건)이었으나 2003년 상반기에는 16,096건(월평균 2,683건)으로 2년 만에 60%가 증가했다.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와 수도의 사용을 정부가 중단시키는 것은 심각한 주거권 침해이다.

(4) 노숙인의 주거실태

국제사회에서 홈리스의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적인 주거권의 영역으로 간주된다. 홈리스의 개념에는 노숙상태(rooflessness), 집이 없는 상태(homelessness), 불안정/부적절한 주거, 불안정한 주거(insecure housing), 부적절한 주거(inadequate housing)가 모두 포함되며, 보다 세부적으로는 거리노숙, 쉼터 생활, 시설 생활, 임시주거에서의 생활, 임박한 강제퇴거의 상황 등이 폭넓게 홈리스의 개념에 포함된다.¹²⁾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홈리스의 개념이 거리노숙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살만한 주거가 없는(homeless) 다양한 사람들이 겪고있는 주거권 침해를 권리침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기도 한다. 물론 거리노숙은 생명에까지 위협이 될 수 있는 최악의 주거빈곤 상태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보다 노숙인들에게 주거의 기본욕구가 충족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IMF 이후 노숙인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전에도 노숙인은 존재하였지만 1997년 말 이후 실업자의 증가 등과 연계되어 도시지역의 노숙인은 심각한 주거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12)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인권상황실태조사, 2006

현재 정부의 노숙문제 해결방안은 입소 위주의 시설 지원이 중심으로,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의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거확보 대책이 없는 실정이며, 노숙위기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예방책 또한 전무한 상황이다.¹³⁾ 적절한 주거로부터의 배제는 노숙인들에게 거리에서의 생활을 강요하고 있다. 쉼터 등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들은 근본적인 접근방식이 될 수 없다. 지금의 시설들은 과도적인 적절한 거주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사회참여를 배제시키는 수용시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5) 주거권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주거권에 접근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아야 함은 당연한 일이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소수자들을 포괄하는 주거정책이 거의 없으며, 편견과 공포증(phobia)을 드러내는 직간접적인 차별로 이들을 지속적으로 주거권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법과 정책의 지속적인 보완으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이 완화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차별의 성격이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차별에서 점차 비가시적이고 간접적인 차별로 변화됨에 따라 직접 차별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불평등 상황의 개선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아 주거의 안정된 점유가 보장된 경우라도, 주거권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좁은 입구와 문턱, 나사식 수도꼭지 등 시설 및 서비스 제공의 특정한 기준이나 행위가 장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합리적인 편의(reasonable accomodation)를 제공함으로써 특정한 기준이 차별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방문 및 면접, 전화조사 방법으로 중증장애인 70세대를 설문조사한 결과 집 구입시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으로 구입비(30%)에 이어 집 내부 편의시설이 21.2%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집주인과의 마찰(10.6%), 집 주변 편의시설(9.1%)순¹⁴⁾이었다. 장애인은 주거권에 대해 물리적 접근성이 낮을 뿐 아니라, 주택개조 비율 또한 0.2%로 극히 미진하여 적절한 주거에 대해 접근이 어렵다.

13) 신명호 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거권 기초현황조사, 국가인권위원회/한국도시연구소, 2004. 8.

14) 장애인 주거복지의 실태와 정책방향 토론회 자료집, 2007. 8. 20

또한, 시설 중심의 정책은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성매매 여성, 청소년/녀들을 위계화된 시설 속에 밀어넣어 사회로부터 단절시키고,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시설의 경우 자립생활에 대한 사회의 편견이 독립된 주거에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어 시설에의 장기간 입소, 입소와 퇴소의 반복으로 이어지고 있다.

차별로 인한 주거권 침해는 한국사회에서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집단에게 특히 심각하게 일어나는데, 미등록이주노동자나 성소수자 등이 그러한 집단에 속한다. 미등록이주노동자는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 일상적인 체포위협 등의 주거권을 침해당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떠한 보호조치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동성애자는 합법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여 가족수당, 의료보험 적용, 연금, 상속 등에서 ‘정상가족’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주거권 영역에서도 다양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한국사회의 공고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주거권을 제약하는 인권침해로 나타난다.

이처럼,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비혼)여성, 다양한 폭력상황에 처한 여성(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들은, 지배적인 사회질서와 권력으로부터 소수자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직간접적인 차별을 경험하고, 소수자의 주거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 공동체를 이루며, 노동하고, 사회구성원이 될 권리도 침해당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통계마저 없기 때문에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주거권에 있어서의 차별은 끊임없이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사업 지역에서 이주노동자가 세입자 대책도 없이 쫓겨나가거나, 파트너와 살아가는 동성애자가 이웃들에게 아웃팅을 당하고 폭력으로 이어질까 두려워하거나,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구조가 전동휠체어가 드나들기에는 너무 좁고 계단이 많아 불편하거나, 시설에 입소한 사람이 짧은 생활 시설 이용 후 대안없이 사회로 내보내지거나 하는 등의 주거를 둘러싼 불평등과 폭력상황이 존재하여 주거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6) 국제사회의 논의에 포함되지 않은 주거권 문제

국제사회의 논의가 주거권의 개념 성립과 발전, 기준 마련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국사회에는 국제사회의 논의 안에서 해결될 수 없는 주거권 문제들 역시 존재한다.

2006년 경기도 평택의 미군기지확장으로 인해 강제철거 당한 대추리와 도두리의 주민들은 주거권을 침해당한 것이 분명하지만, 법적 절차에 따른 퇴거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국제규약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¹⁵⁾

또 한국의 부동산 투기는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인데, 인간답게 살기 위한 적절한 주거의 개념보다 매매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품의 개념이 우세한 한국사회에서는 주거권이 재산권에 의해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자유권으로서의 재산권과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이 충돌하는 경계에서 국제사회의 논의는 아직 침묵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고유의 요구(need)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주거권의 개념은 국제적 논의에서는 찾아 볼 수 없지만, 한국 사회의 현실에 존재하는 문제들에 주목하여 발전시켜야 할 주거권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아이가 많은 집이나, 병이 있어 일조에 특히 민감한 거주민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요구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 장애인의 경우도 장애인 고유의 혹은 특수한 요구에 주목해야 하는데, 휠체어 장애인은 적절한 주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집이라고 하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고층에 있다면 무용지물이 된다. 턱을 없애거나, 개수대를 낮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고유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도 역시 주거권에 있어서 충족되어야 할 요건으로 중요성을 가진다.

제3절 소결

지금까지 주거권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논의와 한국사회에서의 주거권의 위상, 그리고 한국사회에서의 주거권 현실을 살펴보았다. 일반논평 등 국제사회의 논의는 인간답게 살기위한 인권으로서의 적절한 주거가 가져야할 기본적인 원칙들을 제시해주지만,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주거권의 요건들은 각각 다른 비중을 가질 수밖에 없다. 기본적인 원칙을

15) 한국정부는 언론을 통해 법적인 절차를 따랐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철거에 저항하는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을 폭력으로 탄압했으며, 군대와 경찰을 항시 배치하여 불법검문을 자행하고 사람이 살고 있는 생가를 철거하는 등 일상적인 인권침해를 계속하였다.

통해 한국사회의 현실을 조망했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높은 주거비 부담과 점유의 불안정성인 것으로 파악된다. 주택의 물리적 환경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으며, 주거권에서의 차별문제는 점점 그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이다. 극단적으로 주거권을 침해받은 노숙인의 주거실태는 별도 항목으로 두어 강조하였으며, 일반논평의 기준으로 파악할 수 없지만 주거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들은 국제사회의 논의에 포함되지 않은 주거권 문제로 다루었다.

이렇게 파악된 한국사회의 주거권 문제 현실은, 주거권지표의 대영역에 반영되었다.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파악된 중요한 문제영역을 주거권지표의 대영역으로 하되, 정부의 주거권 실현노력이 포함되었다. 국제사회의 논의에 포함되지 않은 주거권의 구체적인 모습은 별도로 다루지 않았으나, 전체적인 주거권지표의 방향을 통해 그 추가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일반논평⁴, 한국사회의 주거권 문제, 주거권지표 대영역의 대략의 상호연관성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일반논평4, 한국사회의 주거권 문제, 주거권지표 대영역의 상호연관성

제3장 주거권 지표개발

제1절 지표개발의 방향과 원칙

1. 대영역의 인권적 의미

주거권 지표는 한국 내에서의 주거권 문제를 반영하는 6개의 대영역과 13개의 소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영역은 점유의 안정성, 부담 가능한 주거비, 살만한 주거환경, 홈리스, 주거권 접근을 위한 차별금지, 정부의 주거권 실현 의무로 구성되었으며, 각 영역에서 선택한 다양한 지표들은 ‘적절한 주거’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주거권의 실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되었다.

점유의 안정성 대영역에서는 강제퇴거와 강제철거는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 등의 개발사업이 실제로는 주거의 안정성을 파괴하여 주민들의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임을 드러내고, 그 주거권 침해 양상을 지표화하였다.

부담 가능한 주거비 대영역은 한국사회의 큰 문제인 주거비 부담의 문제를 다루었다. 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비용이 없어서 적절한 주거에 거주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은 주거권 실현을 위한 사회적 개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영역에서는 임대료, 대출, 이자 등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주거비를 부담시키는 현실을 지표화하였다.

살만한 주거환경 대영역에서는 주택의 물리적인 조건과 함께 전기, 난방 등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살만한 주거환경은 최저주거기준을 넘어서는,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홈리스 대영역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주로 거리노숙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홈리스의 의미를 확장시켜, 주거권을 침해받은 다양한 당사자들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거리노숙, 시설생활, 임시주거 생활, 불안정한 주거 등이 모두 홈리스의 영역에 포함되며, 홈리스의 주거권 실현은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주거권 접근을 위한 차별금지 대영역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의 주거권 문제를 다루었다. 정상/비정상의 구분에 의해 주거권을 침해받고 있는 비혼여성, 동성애자, 장애인, 불량주거 거주민, 이주노동자 등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지표화하였다. 차별금지란 인권의 기본

적인 명제로서, 사회적 소수자가 주거권 실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주거권 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

정부의 주거권 실현 의무 대영역에서는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지표화하였다. 여러 국제규약 등에 가입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정부는 사실상 그 의무를 방기하고 있으며, 그러한 정부의 역할을 다른 대영역과의 연관성 속에서 지표로 개발하였다.

2. 지표선정의 원칙

가. 지표의 원칙

사회지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하여 선정된다. ①실제에 있어서 사용하는 자료가 지표의 내용을 변화시킬 정도로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화하여서는 안되며(quality), ②지표의 구성에 있어서 지표는 포괄적이며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지표가 대상으로 하는 인구의 전체, 또는 부분을 대상으로 한 자료로부터 산출될 수 있어야 하며(completeness of coverage),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들의 실체를 반영하여야 하며(specificity), 관계된 현상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sensitivity). ③제시된 사회지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해 이해가능해야 하며(understandability and acceptance), 지표의 이론적인 근거나 기술적인 작업이 전문가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일반 이용자와 대중들에 의해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¹⁶⁾

이러한 지표의 원칙들은 연구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권리지표는 ①포괄성, ②타당성, ③기존자료의 가용성과 선정과정의 용이성, ④질적 안정성, ⑤현실성과 실제성, ⑥이용의 광범위성, ⑦해석의 용이성, ⑧국제적 비교가능성 등을 원칙으로 하기도 한다.¹⁷⁾

이러한 지표들의 성격과 함께 인권지표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주거권지표를 개발하는데 있어 다음의 원칙들을 고려하였다.

1) 타당성(validity) :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들의 실체를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16) 조남훈 외, 한국의 사회지표체계개편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45-46

17)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지표개발팀, 한국의 아동권리지표개발 연구. 아동권리연구, 제3권 제1호, 1999: 8

- 2) 객관성(objectivity) :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3) 민감성(sensitivity) : 주거권과 관련된 경향 및 변화를 즉각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 4) 비교성(comparability) : 지표는 집단 간의 비교, 시계열적 비교 또는 국제적 비교가 가능하여야 한다.
- 5) 정확성(accuracy) : 시간과 장소에 따라 자료가 지표의 내용을 변화시킬 정도로 달라져서는 안된다.

나. 지표 배분의 원칙

주거권 문제를 드러내고 측정하기 위해 검토한 후보지표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유엔개발계획의 인간개발보고서가 제시한 방식이 고려되었다. 인간개발보고서는 발전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사회의 평균치를 보는 평균의 시각, 가장 어려운 자들의 처지를 반영하는 결핍의 시각, 사회집단 간의 차이에 주목하는 불평등의 시각 등 세 가지 틀을 제시하고, 이 세 가지 틀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였다.¹⁸⁾

주거권지표개발 연구에서도 세 가지 시각의 배분을 염두에 두고 지표를 선정하였다. 개발된 주거권 지표는 세 가지 시각이 종합적으로 드러나되, 평균의 시각보다는 결핍과 불평등의 시각이 조금 더 강조되도록 구성되었다. 각각의 지표들은 특정한 한 가지 시각을 중심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제2절 주거권 지표 영역

주거권 지표는 6개 대영역, 12개 소영역, 32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대영역은 지표개발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영역 하위에 구성된 소영역은 주로 주거권이 침해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각 소영역과 지표는 개별적인 인권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각각의 인권적 의미는 해당 부분에서 설명되었다. 각 지표들은 한국사회 주거권 문제들을 분류하여 대표적인 문제를 측정하는 대표지표들로 구성되었다. 개발된 지표는 다음과 같다.

18) UNDP 한국대표부, UNDP 인간개발보고서 2000, 2000

표 1. 주거권 지표 영역

대영역	소영역	지표
점유의 안정성	강제퇴거	강제퇴거 가구수
	개발사업으로 인한 불안정	개발 사업 대상 지역 가구수
		강제철거 주택수
		강제철거과정에서 불법행위 적발 건수
		개발지역 주택소유주/세입자의 재정착률
		개발사업에서 가이주단지 가이주주택 비율
		개발사업을 전후하여 주거비 부담의 변화
부담 가능한 주거비	주거비 부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강제퇴거 가구수
		소득분위별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소득분위별 월소득 대비 모기지 이자비용비율
		세입자에대한전세자금대출의이자율수준
		주택금융의접근성
살만한 주거환경	필수적인 서비스의 이용가능	요금체납으로 인해 단전된 가구 수
		월 소득대비 월 난방비
		긴급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어 적절한 주거를 누리지 못하는 개인의 수
		1인당 주거면적 부족 가구수
	주택의 물리적 적절성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
		지하주거거주인수
		시설형태별 가구비율
홈리스	주거형태에 따른 홈리스의 규모	노숙인의 수
		쪽방 거주인의 수
		비닐하우스 거주인의 수
		고시원 거주인의 수
주거권 접근을 위한 차별금지	주거정책에 있어서의 차별성 배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접근성
	당사자에 따른 불안정 주거	시설 생활자 퇴소후 정착형태
	주거환경의 유연성	긴급 주거지원서비스의 양
		장애인의 주택개량 비율
정부의 주거권 실현 의무	존중	커뮤니티 이용 접근성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강제퇴거와 관련된 구제절차
	보호	전기, 수도, 난방비 체납가구에 대한 지원 여부
실현	강제철거과정에서 철거대상가구에 대한 지원절차 존재 여부	
		국토해양부의 장기 정책에 주거권과 관련한 국제규약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제3절 주거권 지표 목록

1. 점유의 안정성

표 2. 점유의 안정성 지표

대영역	소영역	지표
점유의 안정성	강제퇴거	강제퇴거 가구수
	개발사업으로 인한 불안정	개발 사업 대상 지역 가구수
		강제철거 주택수
		강제철거과정에서 불법행위 적발 건수
		개발지역 주택소유주/세입자의 재정착률
		개발사업에서 가이주단지 가이주주택 비율
		개발사업을 전후하여 주거비 부담의 변화

가. 영역 설명

불안정한 주거는 주거 자체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므로, 주거공간의 안정성은 주거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불안정한 주거는 홈리스의 개념에 포함되기도 한다. 주거공간의 안정성은 물리적 환경의 안정성뿐 아니라 점유의 안정성에 의해서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한국사회에서는 점유의 안정성이 점차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점유의 안정성 대영역에서는 주로 개발사업과 관련된 점유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지표들을 선정하였으며,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점유의 안정성 침해 등은 해당 대영역에서 다루었다.

나. 지표 목록

1) 강제퇴거 가구수

- (1) 지표의 정의 : 한 해동안 강제퇴거된 가구수
- (2) 지표의 인권적 의미 : 국제 인권 규범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퇴거를 강제퇴거로 정의하고, 주거권의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강제퇴거는 매우 심각한 주거권

침해 상황으로 즉각적으로 중단되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강제 퇴거가 매우 폭넓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통계는 전혀 생산되고 있지 못하다. 포괄적 의미에서 강제퇴거된 가구수를 측정하여 주거권 침해의 정도를 파악한다.

- (3) 지표의 산출방법 : 임대비/차별/개발사업관련 등으로 강제퇴거의 원인을 구분한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

2) 개발 사업 대상 지역 가구수

- (1) 지표의 정의 : 한 해동안 이루어진 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가구수
- (2) 지표의 인권적 의미 : 개발사업은 개발사업을 전후로 하여 주거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지만, 개발사업 과정에서 안정된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은 매우 부족하다. 특히 세입자나 영세가옥주 등에게 개발사업은 주거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쉽다. 이처럼 대규모 개발사업 자체가 주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규모를 통해 주거의 안정성이 침해되는 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한다.
- (3) 지표의 산출방법 : 지난 1년 동안 인가된 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가구수(전국/지역별)

3) 강제철거 주택수

- (1) 지표의 정의 : 한 해동안 강제철거된 주택의 수
- (2) 지표의 인권적 의미 : 우리나라에서 강제퇴거의 문제는 쉽게 강제철거로 귀결된다. 강제철거는 점유의 안정성을 극단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강제철거와 관련된 실태조사 및 통계마저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강제철거의 규모를 우선적으로 파악한다.

4) 강제철거과정에서 불법행위 적발 건수

- (1) 지표의 정의 : 한 해동안 강제철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의 단속 및 사법처리 건수
- (2) 지표의 인권적 의미 : 주거권을 극단적으로 위협하는 강제철거의 과정에서, 합법적인 절차가 무시되고, 거주민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로부터의 법적 보호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불법행위의 적발 및 사법처리 현황을 건수로 확인한다.

(3) 지표의 산출방법 : 한 해동안 강제철거 관련 불법행위의 단속 및 사법처리 건수

5) 개발지역 주민의 재정착률

(1) 지표의 정의 : 개발과정을 전후하여 기존 주택소유주/세입자가 다시 개발지역에 정착하는 비율

(2) 지표의 인권적 의미 : 개발과정은 주택소유주든 세입자든 개발지역 주민들의 주거의 안정성을 크게 혼란시킨다. 그 혼란이 더 나은 주거를 위한 일시적인 후퇴인지, 개발이익을 위한 강제퇴거인지를 확인하는 지표로 주민 재정착률, 특히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재정착률을 확인한다.

(3) 지표의 산출방법 : (사업구역내 주택소유주/세입자 세대 중 사업완료 후 입주세대 수) / (사업인가시 거주 주택소유주/세입자 세대수)

6) 개발사업에서 가이주단지 가이주주택 비율

(1) 지표의 정의 : 개발사업 과정에서 개발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이주단지 주택수 비율

(2) 지표의 인권적 의미 : 개발사업 과정에서 입주권 등 일정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개발사업의 기간의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의 하락 등을 이유로 지역을 떠나게 된다. 가이주단지의 건설이 과도기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하나의 방법이므로 가이주단지의 규모를 측정하고 개발사업의 규모와 비교한다. 가이주단지의 확보는 지역주민의 재정착과 순환식 개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3) 지표의 산출방법 : 가이주단지 주택수/개발지역 거주 가구수

7) 개발사업을 전후하여 재정착 세입자 가구의 주거비 부담 변화

(1) 지표의 정의 : 개발사업 대상 지역의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을 전후하여 거주하게 된 주택에서의 가구당 주거비 부담의 비율

(2) 지표의 인권적 의미 : 세입자들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주거의 하락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지역 내에 재정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개발사업을 전후로 하여 전반적으로 지역의 임대료 수준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이다. 전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의 변화율로 주거의 하락 정도를 확인한다.

(3) 지표의 산출방법 : (개발사업 이후의 주거비 부담)/(개발사업 이전의 주거비 부담)*100(%)

2. 부담 가능한 주거비

표 3. 주거비 지표

대영역	소영역	지표
주거비	주거비 부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강제퇴거 가구수
		소득분위별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소득분위별 월소득 대비 모기지 이자비용비율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의 이자율수준
		주택금융의 접근성

가. 영역 설명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부담가능한 주거비용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사회에서 전월세 비용, 주택관련 대출의 이자비용 등 주거비 부담은 부동산 경기와 개발과 함께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점유의 안정성까지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비 해결을 위해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에서조차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강제퇴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편, 주거비는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소득분위별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를 지표로 삼아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불평등과 자본의 논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주택금융과 관련된 지표를 살펴보았다.

나. 지표 목록

- 1)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강제퇴거 가구수
 - (1) 지표의 정의: 1년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으로 인해 강제퇴거당한 가구 수
 - (2) 지표의 인권적 의미: 공공임대주택은 수급자, 장애인 등 소득이 불안정한 가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시설이다. 그러나 최근 경영합리화 방침에 따라 임대아파트의 관리가 민간업체 위탁으로 전환되면서 소형단지의 관리비가 급등하였다. 예를 들어 36.3m² 정도 면적의 임대아파트 관리비가 9만원 정도로 일반분양아파트와 비교하여 4-5배인 현실이다. 땅 값과 주택조성비용이 급등한다는 이유로 임대료 역시 갈수록 높아져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임대아파트 거주자를 압박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임대료 및 관리비가 체납되어 강제퇴거 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주거권 실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의미 자체가 훼손되는 것이므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 (3) 지표의 산출방법: 전체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중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으로 인해 강제퇴거 당한 가구의수
- (4) 조작적 정의: <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자체 및 주택공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이나 국가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임대주택법, 제2조)

2) 소득분위별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 (1) 지표의 정의: 소득분위별 월소득에서 월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
- (2) 지표의 인권적 의미: 임차 거주자를 대상으로 월 소득 중에서 월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주거를 향유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인해 다른 기본적인 수요의 확보와 충족이 위협받거나 제한되는 정도를 확인한다. 결과는 소득분위별로 분석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 정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
- (3) 지표의 산출방법: (월임대료/월소득)*100(%)

3) 소득분위별 월소득 대비 모기지 이자비용비율

- (1) 지표의 정의: 소득분위별 월소득에서 모기지 월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 (2) 지표의 인권적 의미: 인권으로서의 주거권은 소유와 상관없이 보장되는 점유의 안정성을 지향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점유의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턱없이 높은 주거구입자금대출금 이자비용으로 적절한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소유자중 모기지를 이용하여 주택을 구매한 사람을 대상으로 월소득중에서 월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핌으로써, 주거를 향유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인해 다른 기본적인 수요의 확보와 충족을 위협하거나 제한하는지를 살핀다.

(3) 지표의 산출방법: (월이자비용/월소득)*100(%)

4)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의 이자율 수준

(1) 지표의 정의: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의 평균 이자율 수준

(2) 지표의 인권적 의미: 한국의 주택임대형태 중 다수를 차지하는 전세는 일시적으로 큰 비용을 필요로 하는데, 이 돈을 금융기관에서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는 것은 과도기적으로 안정된 주거에 도움이 된다.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은 그 특수성이 고려되어 여타의 다른 이자율 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야 한다. 세입자 전세자금대출의 평균 이자율을 다른 이자율과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인 크기를 측정한다. .

(3) 지표의 산출방법: (세입자 전세자금대출의 평균 이자율)/(3년만기 국고채이자율)*100(%)

5) 주택금융의 접근성

(1) 지표의 정의: 주택 금융 이용 시 각종 사유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지 유무

(2) 지표의 인권적 의미 : 금융 이용은 은행의 대출심사에 따라 자의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세입자 주택금융에 대해서는 주거권의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차별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3) 지표의 산출방법 : 세입자 주택금융 이용자 중 여성, 장애인 소수자의 이용비율 측정

3. 살만한 주거환경

표 4. 살만한 주거환경 지표

대영역	소영역	지표
살만한 주거환경	필수적인 서비스의 이용가능	요금체납으로 인해 단전된 가구 수
		월 소득대비 월 난방비
		긴급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어 적절한 주거를 누리지 못하는 개인의 수
	주택의 물리적 적절성	1인당 주거면적 부족 가구수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
		지하주거거주인수
		시설형태별 가구비율

가. 영역 설명

살만한 주거환경은 필수적인 서비스의 이용가능과 주택의 물리적 적절성을 포함한다. 사람이 살만한 주거환경은 거주공간의 물리적 적절성뿐만 아니라 거주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시설물과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한국사회의 경우 대체적으로 필수적인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지불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기, 난방 등을 비용과 연결하여 지표화하였다. 주택의 물리적 적절성은 주택의 구조, 성능, 환경기준을 지표로 만든 것으로, 최소한의 면적기준과 과밀을 보여주는 지표를 선정하였고 환기, 통풍, 채광 등이 불량하여 건강을 위협하는 지하주거를 지표로 삼았다.

나. 지표 목록

1) 요금체납으로 인해 단전된 가구 수

- (1) 지표의 정의 : 요금체납으로 인해 전기가 보급되지 않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수
- (2) 지표의 인권적 의미 :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적절한 주거를 위해서는 깨끗한 식수와 조리를 위한 에너지, 위생시설, 조명 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필수적인 시설과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으나 지불

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전기의 경우 공과금 연체에 따른 주거빈곤가구의 단전조치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요금체납으로 인해 단전된 가구 수를 지표로 삼아 에너지 공급을 받지 못해 주거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 (3) 지표의 산출방법 : 지난 1년 동안 요금체납으로 인해 1회 이상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가구 수

2) 월 소득대비 월 난방비

- (1) 지표의 정의 : 월 소득에서 월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

- (2) 지표의 인권적 의미 : 난방은 적절한 주거를 위해 필요한 요소 중 하나로 특히 겨울철 난방은 생존의 문제이다. 현재 저소득층은 석유, (도시)가스 등 연료비를 지불할 수 없어 추위 속에 살아가거나 전기난로 등으로 난방을 대체하여 화재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난방권은 한국사회 주거권 논의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소득에 대비한 난방비를 지표로 설정하여 저소득층의 난방권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 (3) 지표의 산출방법 : (월난방비/월소득)*100(%)

3) 긴급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어 적절한 주거를 누리지 못하는 개인의 수

- (1) 지표의 정의 : 긴급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어서 적절한 주거를 누리지 못하는 개인의 수

- (2) 지표의 인권적 의미 : 화재, 수해 등 재난이나 상해·사고 발생 시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상황에서 지리적 위치나 그 외 주거환경의 문제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으며 인권의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

- (3) 지표의 산출방법 : 지난 1년 간 긴급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어 적절한 주거를 누리지 못한 개인의 수

- (4) 조작적 정의 : <긴급서비스> : 화재, 수해 등 자연재해나 강도·사고 등 인재 발생 시 긴급하게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4) 1인당 주거면적 부족 가구수

- (1) 지표의 정의 : 1인당 주거면적이 전체인구의 1인당 주거면적 평균보다 이하인 가구수
- (2) 지표의 인권적 의미 : 기존연구들에서는 보통 가구의 주거면적을 1인당으로 환산한 주거면적을 지표로 삼으나 그것보다 1인당 주거면적이 전체인구의 1인당 주거면적 평균보다 이하인 가구수를 측정하는 것이 면적과 관련한 주거권박탈 상황과 그 개선 추세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다.
- (3) 지표의 산출방법 : 전체 인구의 1인당 주거면적(가구전용면적/가구원수)의 평균이하 가구수 측정

5)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

- (1) 지표의 정의 : 방 하나 당 3인 이상 거주하는 가구의 수
- (2) 지표의 인권적 의미 : 주거공간은 개인의 적절한 사생활을 보장해야 하며, 그 안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일정 밀도를 초과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다. 3인 이상 단칸방에 거주할 경우 주거과밀로 보며, 주거과밀은 주거빈곤상황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 (3) 지표의 산출방법 : (3인이상단칸방거주가구수)/(3인이상 가구수)*100(%)

6) 지하주거거주인수

- (1) 지표의 정의 : 지하주거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
- (2) 지표의 인권적 의미 : 주택의 반지하나 지하주거는 임대료가 저렴해 저소득 가구의 주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주거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하주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채광, 습기, 환기, 냄새 등 적합하지 않은 생활환경으로 인해 심각한 건강권의 위협을 동시에 받고 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주거환경은 빈곤의 악순환을 매개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건강의 상실은 곧 소득의 상실로 직결된다. 따라서 주거권과 건강권을 동시에 위협할 여지가 있는 지하주거 거주인수를 지표로 삼았다.
- (3) 지표의 산출방법 : 연중 특정시기의 전국 지하주거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 조사

7) 시설형태별 가구비율

- (1) 지표의 정의 : 부엌시설, 목욕시설, 화장실에 대한 시설형태별 가구비율
- (2) 지표의 인권적 의미 : 주거공간은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가능해야 하는 곳이다. 따라서 안전한 부엌시설과 적절한 목욕시설 등이 필요하다. 특히 세균 전염의 위험을 최소화할 있는 화장실 설비가 필수적이다.
- (3) 지표의 산출방법 : 부엌시설(재래식, 입식, 없음)/ 목욕시설(온수, 비온수, 없음)/ 화장실(재래식, 수세식, 없음)에 대한 가구비율 조사

4. 홈리스

표 5. 홈리스 지표

대영역	소영역	지표
홈리스	주거형태에 따른 홈리스의 규모	노숙인의 수
		쪽방 거주인의 수
		비닐하우스 거주인의 수
		고시원 거주인의 수

가. 영역 설명

홈리스는 주거권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거리노숙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지는 개념이다. 한국사회에서 홈리스는 거리노숙에 한정된 의미로 주로 사용되고 있어, 거리노숙-쪽방-고시원 등의 연결고리는 오히려 은폐되고 있는 상황이다. 홈리스 대영역에서는 국제사회의 홈리스 개념을 따라 홈리스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홈리스의 다양한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지표들이 선정되었다.

나. 지표 목록

1) 거리 노숙인의 수

- (1) 지표의 정의: 거리노숙인의 수
- (2) 지표의 인권적 의미: 거리노숙은 주거권이 극단적으로 박탈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리노숙은 한명도 없어야 한다는 인권적 방향을 지닌 지표로서, 노숙문제가 노숙인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이며, 주거에 대한 권리는 노숙인을 포함한 누구에게나 있음을 확인한다. 노숙상태(rooflessness)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3) 지표의 산출방법: 연중 특정시기의 전국 노숙인의 수

2) 쪽방 거주인의 수

(1) 지표의 정의: 쪽방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수

(2) 지표의 인권적 의미: 쪽방과 거리노숙의 관계는 동일한 홈리스의 개념에서 파악할 수 있다. 잠시 돈이 생기면 쪽방에서 살다가 다시 돈이 떨어지면 거리생활을 하게 되는 등, 살만한 주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거리와 쪽방을 순환하는 양상을 볼 때 거리노숙과 쪽방거주의 차이는 크지 않다. 그러므로 주거권이 상당히 박탈된 형태의 주거형태로서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를 홈리스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파악한다. 부적절한 주거(inadequate housing)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3) 지표의 산출방법: 연중 특정시기의 전국의 쪽방 거주인의 수

3) 비닐하우스 거주인 수

(1) 지표의 정의: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수

(2) 지표의 인권적 의미: 비닐하우스촌은 공유지를 점유하고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루는 주거형태이다. 이들 비닐하우스는 미등록이며 미허가 구조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닐하우스촌은 물, 전기 등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고, 화재위험 또한 상존하여 살만한 주거가 되기 힘들다. 그럼에도,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주거권 보장을 위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불법 등을 빌미로 향시 퇴거의 위협을 받고 있다. 홈리스의 한 형태로서 비닐하우스 거주인의 수를 파악한다. 불안정한 주거(insecure housing)의 정도를 대표적으로 측정한다.

(3) 지표의 산출방법: 연중 특정 시기의 전국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

4) 고시원 거주인 수

(1) 지표의 정의: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수

- (2) 지표의 인권적 의미: 고시원은 도심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주로 청년층의 임시 거주에 활용 되거나 1인 가구에 저렴한 주거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고시원은 주거용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안정성, 시설 등 여러 면에서 적절한 주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홈리스의 개념에 포함된다. 불안정/부적절한 주거한 주거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 (3) 지표의 산출방법: 연중 특정 시기의 전국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

5. 주거권 접근을 위한 차별금지

표 6. 주거권 접근을 위한 차별금지 지표

대영역	소영역	지표
주거권 접근을 위한 차별금지	주거정책에 있어서의 차별성 배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접근성
	당사자에 따른 불안정 주거	시설 생활자 퇴소후 정착형태
		긴급 주거지원서비스의 양
	유연한 주거환경	장애인의 주택개량 비율
커뮤니티 이용 접근성		

가. 영역 설명

한국사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된 점유를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혼인여부와 가구원수 등으로 제한하여 비혼/여성, 성소수자, 단신가구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공공재인 주택을 점유하는데 어떠한 차별도 배제되어야함을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대표적인 주거정책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독립된 주체의 다양한 주거요구를 시설입소라는 단기적인 편의성으로 주거권을 침해당하는 시설생활자의 퇴소 후 정착형태와 긴급주거지원서비스를 측정함으로써 당사자에 따른 불안정한 주거를 확인해볼 수 있다. 삶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친근하고 유연한 주거환경은 주거의 질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이동과 생활편의를 위한 주거시설 개량과 동류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이용 접근성은 의미있는 주거지표이다.

나. 지표 목록

1)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접근성

- (1) 지표의 정의 : 공공임대주택 이용에서의 당사자 유형별 분양률
- (2) 지표의 인권적 의미 : 임대주택에서 인정하는 가족은 혈연 중심의 가족구성만 인정되며, 그 결과로 장애인, 비혼여성, 단신가구, 성소수자 등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소수자는 공공임대주택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에서는 특히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평가한다.
- (3) 지표의 산출방법 : 유형별 분양률(%)=(유형별 분양가구수/전체 분양수)*100(%)

2) 시설 생활자 퇴소 후 정착형태

- (1) 지표의 정의 : 시설 생활자 생활기간 종료 후 정착형태별 비율
- (2) 지표의 인권적 의미 : 보호와 선도 개념의 위계적인 시설은 생활자에게 충분한 자활을 위한 과도기적 주거의 기능을 제공하지 못한다. 짧은 생활기간 종료 후 정착형태를 확인하여 주거권의 불모지인 반인권적인 시설과 정책을 파악한다.
- (3) 지표의 산출방법 : (퇴소 후 정착형태별 사람 수/퇴소 시설생활자의 수)*100(%)

3) 긴급 주거지원서비스의 양

- (1) 지표의 정의 :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규모
- (2) 지표의 인권적 의미 : 가정폭력, 성폭력 등 모든 위급상황 시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가 마음의 안정을 취할 여유를 제공할 수 있는 긴급 주거지원서비스의 개입이 필요하다. 쉼터 이외에도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긴급주거지원서비스를 받아야할 때 입소 및 퇴소가 유연해야 한다.
- (3) 지표의 산출방법 : 유형별 긴급 주거지원서비스

4) 장애인의 주택개량 비율

- (1) 지표의 정의 : 장애인 주택이용 편의를 위한 주택개량 비율
- (2) 지표의 인권적 의미 : 취약집단은 적절한 주거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야 하며, 주거법과 주거 정책은 주거에 대한 이들 취약집단의 특수한 필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노인들, 아동들, 신체적인 장애를 지닌 사람들, 중환자, 에이즈 양성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지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정신질환자, 자연재해의 희생자, 재해 위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등의 취약 집단은 주거에 있어서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특수한 필요가 충족되는 정도를 장애인 주택 개량비율을 대표지표로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3) 지표의 산출방법 : (주택개량 장애인/장애인 거주 주택)*100(%)

5) 커뮤니티 이용 접근성

(1) 지표의 정의 : 소수자 의 커뮤니티 이용 접근성

(2) 지표의 인권적 의미 : 소수자 당사자의 특별한 삶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각각의 커뮤니티 활동은 단순 참여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진다. 정체화시키고 힘을 받는 기능의 커뮤니티에 대한 접근성과 만족도를 측정한다.

(3) 지표의 산출방법 : 이용 용이/이용 불편을 묻는 설문조사

6. 정부의 주거권 실현 의무

표 7. 정부의 주거권 실현 의무 지표

대영역	소영역	지표
정부의 주거권 실현 의무	존중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강제퇴거와 관련된 구제절차
		전기, 수도, 난방비 체납가구에 대한 지원 여부
	보호	강제철거과정에서 철거대상가구에 대한 지원절차 존재 여부
	실현	국토해양부의 장기 정책에 주거권과 관련한 국제규약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가. 영역 설명

정부는 대표적인 인권 실현의 의무주체이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규약과 한국정부가 가입한 여러 규약들에서 한국정부는 주거권 노력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그 의무를 방기하거나 오히려 침해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주거권 실현 의무를 수행할 것이 보다 강력하게 요구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주거권 실현 의무 대영역에서는 정부의 의무를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의 구분에 따라 존중/보호/실현으로 구분하여 그 아래에 대표적인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나. 지표 목록

- 1)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강제퇴거와 관련된 구제절차
 - (1) 지표의 정의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으로 인해 강제퇴거 위기에 있는 가구에 대한 구제절차의 유무
 - (2) 지표의 인권적 의미 :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강제퇴거당하는 것은 주거권 침해이다. 특히 주거취약집단에게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임대주택에서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강제퇴거가 이루어지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존중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 2) 전기, 수도, 난방비 체납가구에 대한 지원 여부
 - (1) 지표의 정의 : 전기, 수도, 난방비 등 필수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여 체납한 가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 지원 여부
 - (2) 지표의 인권적 의미 : 전기, 수도, 난방에너지 등은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자원이다. 이 필수적인 자원들은 공공과 민간 어느 쪽에서 제공되더라도 부담을 할 수 없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주거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공서비스영역에 주목하여 정부의 존중의 의무 실현 노력을 파악한다.

- 3) 강제철거과정에서 철거대상가구에 대한 지원절차 존재 여부
 - (1) 지표의 정의 : 강제철거과정에서 철거대상가구에 대한 지원절차 존재 여부
 - (2) 지표의 인권적 의미 : 강제철거는 극단적인 주거권 침해이며, 정부는 이로부터 거

주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강제되거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적 경제적 지원은커녕 오히려 구속과 처벌 등이 가해지는 현재 상황에서, 정부는 강제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종 지원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4) 국토해양부의 장기 정책에 주거권과 관련한 국제규약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1) 지표의 정의 : 국토해양부에서 작성하는 연도별 주요업무계획에 주거권 관련 국제규약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2) 지표의 인권적 의미 : 현재 주택과 개발사업에 관련된 가장 큰 정부조직인 국토해양부가 인권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장기적인 정책에서 국토해양부가 주거를 권리로서 인식한다는 근거를 확인한다.

제4장 결론 및 제언

주거권지표개발 연구를 통해 개발된 지표들은 지금까지 개인의 경제력 문제로 여겨졌던 주거의 문제를 모든 사람의 권리의 문제로 만들었다. 또한 주택의 문제로 환원되어왔던 주거의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여 총체적인 권리의 형태를 구성하였다.

주거권 지표들은 단순히 사회 현상의 양적 파악에 머무르지 않으며, 각각의 지표들이 의미하는 인권적 지향을 포함하고 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원칙과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표들의 인권적 의미들의 종합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표들은 각 문제영역에서 대표적으로 선정된 지표들이므로, 추가적인 지표들로 보강이 될 필요가 있다. 홈리스의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지표들만으로는 홈리스 문제의 해결방안까지 제시하지 못한다. 따라서 홈리스의 개념을 확장하기 위한 보다 상세한 하위지표들과 홈리스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관련 지표들이 계속 개발되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주거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 개인, 그리고 정부에 의해 본 연구에서 제시된 주거권 지표와 관련된 지표 또는 하위의 지표들이 추가됨으로써 주거권의 실현을 위한 도구들이 풍부해질 수 있다.

주거권과 같은 인권영역을 지표화하는 것은 다소 자기모순적인 한계가 있다. 억압받는

자의 단어인 인권은 계속해서 확대되는 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지표화는 지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권지표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현재 어떤 문제가 쟁점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지시하는 문제해결적 도구로 인식되어야 한다.¹⁹⁾

따라서 풍부하게 만들어지는 주거권 지표들은 현실의 주거권 실현 운동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각 지역사회와 주거권운동단체, 개인들은 주거권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주거권 현실을 파악하고, 문제지점을 발견해야 한다. 정부는 인구주택총조사 등에 주거권 지표의 의미를 반영하여 의미있는 주거권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이 주거권 지표들이 활용되어 주거권의 현실이 파악되고,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강화되어 주거권 실현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될 때에야 비로소 권리로서의 주거가 현실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주거권 지표가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 주거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가장 일차적인 의무주체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정부는 정부가 가입한 국제규약과 국내 법률 등에서 부과하고 있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문제 파악의 단계에서부터 정책 개발 및 정책 수행의 단계에서까지 보편적인 주거권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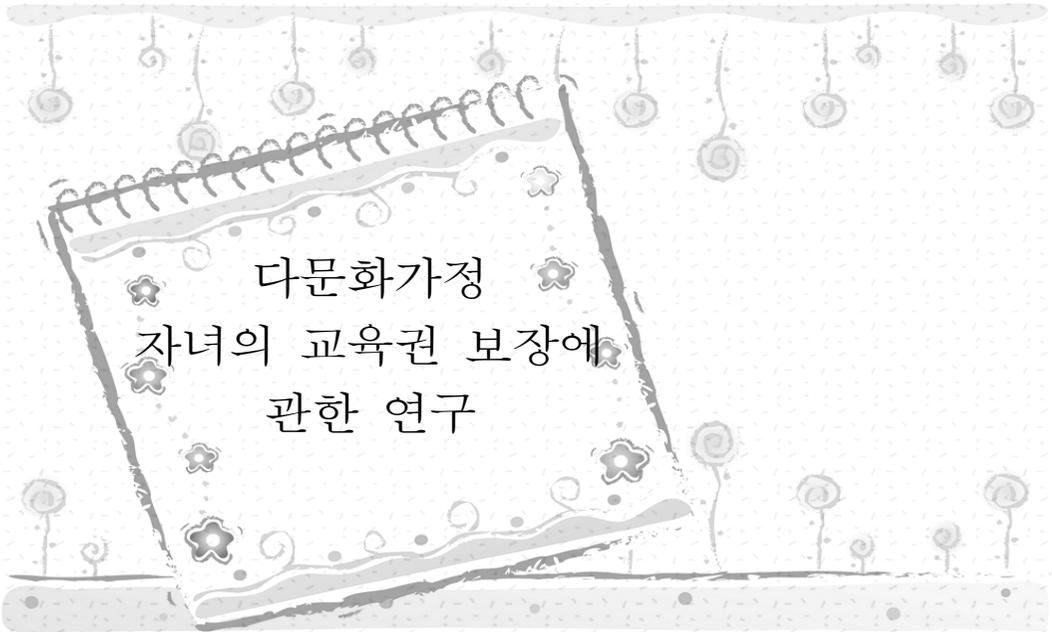
19) 정근식 외, 한국형 인권지표의 모색, 경인문화사, 2004

<참고문헌>

- Biderman A. D., Social indicators and goals, 1966
- Raymond A. Bauer, SOCIAL INDICATORS, M.I.T. Press, 1967
- UN-HABITAT, Monitoring Housing Rights, 2003
- UNDP 한국대표부, UNDP 인간개발보고서 2000, 2000
- 강신욱 외,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인권상황실태조사, 2006
-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2006
-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2006
- 길은배, 청소년 인권지표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1
- 남원석, 공공임대주택 주민참여 활성화 조건, 도시와 빈곤 통권64호, 2003
- 박완기, 주택정책의 문제점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도시와 빈곤 통권74호, 2005
-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7
- 서종균, 지역주거운동, 도시와 빈곤 통권 53호, 2001
- 서종균, 쪽방 사람들의 기록, 도시와 빈곤 통권 38호, 1999
- 신명호 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거권 기초현황조사, 국가인권위원회/한국도시연구소, 2004. 8.
- 윤주현 외, 지역간, 계층간 주거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연구: 주거서비스 지표의 개발 및 측정, 국토연구원, 2005
- 윤주현, 주거복지지표의 개발, 국토연구원, 1999
- 이호 외, 개발사업지역 세입자 등 주거빈곤층 주거권 보장 개선방안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한국도시연구소, 2005. 11.
- 장경석,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비지불능력, 도시와 빈곤 통권65호, 2003
- 장애인 주거복지의 실태와 정책방향 토론회 자료집, 2007. 8.
- 전홍규,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노숙인의 거주, 도시와 빈곤 통권78호, 2006
- 정근식 외, 한국형 인권지표의 모색, 경인문화사, 2004
- 조남훈 외, 한국의 사회지표체계개편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45-46
- 하성규, 적절한 주거와 주거권 보장, 주택연구 제7권 제1호, 1999

한국도시연구소, 주택시장의 양극화와 주거빈곤, 한국도시연구소 연례심포지움 자료, 2002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지표개발팀, 한국의 아동권리지표개발 연구. 아동권리연구, 제3권 제1
호, 1999: 8

일반부
가 작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 보장에
관한 연구

김 솔
(도제원초등 교사)

목 차

Contents

제1장 서론	4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48
제2절 연구의 목적	49
제3절 연구문제	49
제4절 연구의 방법	50
제5절 용어의 정의	49
제6절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49
제2장 다문화가정의 교육적 환경	56
제1절 다문화가정의 개념 및 범위	56
제2절 다문화가정의 교육환경	76
제3절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의 문제점	77
제3장 인권의 일부로서의 교육권	37
제1절 교육권의 개념	37
제2절 인권과 교육권	37
제3절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	87
제4장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 보장의 실태	04
제1절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규정	04
제2절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정책의 개발	34
제3절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관의 노력	74
제4절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시사점	49
제5절 국내 다문화교육에 대한 평가	79

목 차

Contents

제5장 외국의 교육권 보장 실태	89
제1절 미국	48
제2절 영국	49
제3절 독일	49
제4절 프랑스	50
제5절 스웨덴	51
제6절 외국사례에 대한 시사점	200
제7절 외국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평가	30
제6장 정책적 제언	4
제1절 법적·제도적 차원의 정비	40
제2절 다문화교육 정책지원 시스템 구축	50
제3절 다문화 교수-학습 여건의 조성	70
제4절 교원연수시스템의 구축	90
제5절 교육과정의 개발 및 적용	110
제7장 결론 및 제언	4
제1절 연구의 결과	4
제2절 제언	56
<참고문헌>	70

요 약

최근 우리 사회의 다문화화는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결혼이주여성과 도시지역의 외국인 근로자가 바로 그것이다. 아울러,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도 공교육기관에 본격적인 취학을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하지만, 이들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인권적 차원의 교육권 보장은 법제도적으로 매우 미흡한 상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자는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교육권 보장을 주제로 본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다문화가정의 개념적 의미는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으로 정의하였으며 다문화가정자녀의 경우, 가정에서의 언어적 자극 부족, 의사소통의 부재, 경제적인 빈곤등으로 인해 매우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고 일선 학교에서도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고 있는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자녀가 겪는 어려움으로는 자아정체성의 혼란, 학습능력 부족, 언어적 소통능력의 미흡등으로 일반 한국인 가정의 자녀에 비해 낮은 취학률과 높은 중도 탈락률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육권 보장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중요 키워드(Key-word)인 교육권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인 인권(Human-rights)의 개념 속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교육권의 구체적 개념범주 속에는 학교선택권, 교육내용의 결정, 무상교육, 평등교육의 개념이 포함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의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교육권 보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여전히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헌법 제31조 등에서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대한민국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 특히, 외국인근로자가정의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권 보장은 현실적으로 전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상에도 최근 외국인근로자자녀에 대한 취학허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본질적인 법제도적 보완책은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일선 초중고등학교 차원에서는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한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다문화정책연구학교 운영,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설치등을 통해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일선학교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등 다문화사회의 역사가 깊은 국가들은 국가적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이들이 주류(主流)사회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무상교육, 의무교육, 이민자를 위한 이중언어 프로그램 제공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반여건을 보장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결과, 본 연구자는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인권적 차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교육권 보장에 대한 법적 규정을 외국인근로자자녀를 포함한 영역으로 확대함과 함께 다문화교육을 전달할 정부차원의 전달기구를 설치하여 다문화교육정책 추진의 중심점을 형성할 필요가 있고 일선학교 차원에서는 다문화교육 연구시범학교와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을 확대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언하였다.

※ 주제어 : 다문화,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자녀,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교육권, 인권,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정책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지난 2007년은 한국이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데 있어 기념비적인 해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5000만명의 국내거주 인구중 약 2%에 해당하는 100만명의 인구가 외국인이며 결혼이주여성의 수도 최근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단언해도 과언(過言)이 아닐 것이다.¹⁾

예컨대, 한국의 농촌사회는 1990년대 이후, 베트남, 태국등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의 결혼이주여성과 함께 최근에는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의 결혼이주여성이 적극 유입(流入)되면서 혈연적, 인종적으로 다양화된 다문화 가정을 형성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²⁾ 이미 국내 결혼건수의 1/8, 농촌 결혼 건수의 1/4이상을 국제결혼이 차지할 만큼 우리사회에서 국제결혼은 더 이상 낯선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³⁾

- 1) 법무부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8월 24일 단기체류외국인을 포함한 체류외국인이 처음 100만명(100만 254명)을 돌파한 것을 시작으로 국내체류 외국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사회가 이미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법무부, 「체류외국인 100만명 돌파」, 법무부 보도자료, 2007.)
- 2) 법무부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의 국적별 결혼이민자 체류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결혼이민자 중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중국인, 베트남인, 일본인등 동아시아의 결혼이민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미국, 우즈베키스탄등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민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국적별 결혼이민자 체류현황(2007.12.31)」, 법무부 보도자료, 2007.)
- 3) 2006년 국제결혼 건수는 3만9071건으로 전체 결혼(33만7528건)의 11.6%를 차지했으며 이는 8쌍의 결혼 부부중 1쌍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은 4쌍중 1쌍이 국제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보다 농촌에서 다문화가정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향신문, 「신혼부부 8쌍중 1쌍, '국제결혼」, 2007.4.15 기사)

한편, 도시지역에서도 다문화가정의 형성은 농촌 못지않게 급속히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몽골등 아시아 각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流入)되어 가정을 이루는 등 다문화 사회는 과거에 비해 우리 곁에 한 걸음씩 성큼 다가서 있는 듯한 인상을 가지게 하고 있다.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결혼이주여성은 노령화된 우리의 농촌에 있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도 대다수 3D업종에 종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업발달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인적자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가 이들을 보는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저임금으로 인한 불법체류자의 증가와 함께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일탈현상은 다문화 사회가 가진 명암(明暗)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⁴⁾

한국사회의 필요성에 의해 유입된 이들 이방인들이 우리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진정한 우리사회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수립과 실천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은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육문제에서도 결코 예외라고 할 수 없으며, 우리사회에서 이들 교육 소외계층을 배려한 교육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부모 중 한 쪽이 외국인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 언어사용능력의 부족, 피부색 및 문화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따돌림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비싼 교육비, 경제적인 빈곤, 불법체류 단속에 대한 부담등으로 공교육기관에 대한 낮은 취학률을 보이고 있는 이주노동자 자녀도 이와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⁵⁾

앞서 제시한 다문화 가정의 교육적 소외문제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인 교육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제기하기에 충분한 몇 가지 시사점들을 제공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의 적용대상을 과연 어느 정도의 범위에까지

4) 다문화 사회의 도래는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국제결혼가정의 이혼률 증가와 외국인 범죄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가정의 경우, 언어적 소통의 부재와 경제적인 빈곤등으로 이혼률이 내국인 가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일보, 「기교/다문화가정 이혼대책을」, 2008.4.24 기사)

5)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는 일반 한국인 가정 자녀에 비해 여러 면에서 열악한 교육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인 남편-외국인 아내로 구성된 가정의 경우, 언어사용능력의 부족, 정체성의 혼란, 집단따돌림등으로 한국생활의 적응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의 경우, 8000여명 이상의 청소년이 학교교육권 밖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달,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정책연구과제 2006-이슈-3, pp.3~12.)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와 함께 교육권 자체가 국적, 혈연, 피부색, 언어 등으로 인해 차별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는 더 이상 우리사회가 단일민족을 근간으로 한 혈연중심의 사회가 아니며 다양한 인종적 다양성이 혼재(混在)하는 상황에서 과거와는 다른 관점에서 교육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⁶⁾

이와함께 한국사회에 비해 반세기이상 먼저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구미(歐美)선진국의 경우, 이들 다문화 가정에 대해 어떠한 교육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미 오랜기간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 사회를 형성해온 미국, 프랑스, 독일등의 구미(歐美)선진국들의 경우,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과 통합에 있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⁷⁾ 이들 국가에서 초래된 뿌리깊은 인종갈등은 추후 한국사회가 겪어야 할 문제의 본질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過言)이 아닐 것이다.

결국, 다문화 사회의 진입 초기인 현재의 시점에서 정부가 어떤 형태의 교육정책을 구상하여 적용하느냐에 따라 향후 우리사회에 다문화가정이 신(新)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분열의 단초가 될 것인가를 결정지을 중요한 갈림길에 왔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받을 권리(교육권)는 인권적 차원에서 볼 때, 결코 인종적 특성, 피부색, 언어, 문화 등 개인이 가진 정체성(Identity)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순혈주의와 민족주의에 입각한 우리의 교육정책

6) 교육권은 교육을 할 권리와 교육을 받을 권리(학습권)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전문에서 규정한 교육권은 대한민국 국민 대상으로 하며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교육소외계층은 사실상 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물론, 2003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이후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가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도 초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나,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여전히 정식학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영달,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정책연구과제2006-이슈-3, p.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개정을 통해 고등학교 단계까지의 교육권을 보장하도록 그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7) 미국을 비롯한 구미(歐美)선진국의 경우, 이미 50~200여년전부터 다문화사회를 형성하기 시작했으며 각국별로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인종의 용광로(Melting Pot)로 표현될 만큼 대표적인 다문화 다인종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서구 선진국은 대부분 사회통합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흑인소요사태, 호주의 인종갈등등은 다문화사회가 상당히 많은 위험요인을 안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것이다.(: 한국일보, “호주 인종폭동 ‘종교충돌’ 비화”, 2005.12.4기사)

은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맞게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교육권에 대한 헌법적 규정으로부터 초중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 교육행정당국의 교육정책, 일선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수립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국제결혼가정 및 이주노동자가정으로 대별(大別)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권의 보장을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고찰함으로써 실정법상으로 제한된 교육권의 보장대상을 이들 교육소외계층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법 제도적 차원의 정비, 다문화교육의 정책 및 시스템 구축, 다문화 교수·학습 여건의 조성, 교원연수시스템의 구축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조치가 구현될 필요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본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국제결혼가정 및 외국인근로자가정등으로 대별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권적 차원의 교육권 보장방안을 제언하기 위한 정책적 취지의 연구로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첫째, 다문화가정의 범위 및 형태에 관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탐색하며,
- 둘째, 다문화가정의 범주에 속하는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이 가진 교육 환경적 특성을 분석하고,
- 셋째, 다문화가정의 형태인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적 제언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3절 연구문제

1. 다문화가정이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형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2. 다문화가정의 구체적인 형태인 국제결혼가정 및 외국인근로자가정이 직면한 교육적 환경의 특성은 어떠한가?

3.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인권적 차원의 교육권 보장은 어떠한 방향으로 구현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실현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제4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주제로 한 연구였으며 연구의 과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1장 연구의 필요성에서는 우리사회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증가와 관련하여 그로인한 사회적 문제와 함께 다문화가정자녀의 교육권 보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한 다문화가정의 개념은 국제결혼, 산업연수생등 문화적, 인종적인 면에서 기존의 한국인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는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새터민가정은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제2장 다문화가정의 교육적 환경에서는 다문화가정의 개념에 대해 관련문헌을 참고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이 가진 교육환경과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았다. 다문화가정은 언어적 자극의 부족,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재, 경제적 빈곤등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었고 차별과 편견,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의 장애, 자아정체성, 학습능력의 부족으로 학교생활에 있어 부적응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외국인근로자가정의 자녀는 한국가정의 자녀에 비해 낮은 취학률과 높은 중도 탈락률을 보이고 있어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장 인권차원에서 본 교육권편(編)에서는 교육권이 가진 개념을 참고문헌 및 관련이론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인권은 인간이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로서 그 개념상 교육권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권중 교육을 받을 권리인 학습권을 연구의 대상으로 했으며 여기에는 학교선택권, 교육내용의 결정 및 선택권, 무상교육권, 평등교육권등이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장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 보장 실태에서는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규정,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정책의 개발,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관의 노력, 교육권 보장

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1조에서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밖에 초·중·등 교육법시행령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한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 대한 적용 규정이며 외국인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교육권 보장을 위해 시도교육청은 매년 교육시책에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명시하고 있으며 일선학교의 경우, 연구시범학교,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설치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여건을 마련하고 있으나, 일선학교에 대한 일반화는 부족한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5장 외국의 교육권 보장 실태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독일 등 5개 구미(歐美) 선진국의 다문화교육정책을 탐색하여 보고 한국에 비해 다문화사회의 역사가 긴 이들 국가에서의 다문화교육정책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과 유럽 국가의 경우, 국가적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보장하고 있었으며 초등교육으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무상교육, 의무교육의 대상에 다문화가정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서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6장 정책적 제언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제도적인 차원의 정비, 다문화교육 정책시스템 구축, 다문화교수-학습여건 조성, 교원연수시스템 구축, 교육과정의 개발 등 5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적인 제언을 실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추진결과,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다문화교육 전담기구, 교육시스템, 법제도적 뒷받침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국제사회가 권고한 외국인의 인권에 대한 보장 차원에서 교육권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제5절 용어의 정의

1.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은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하며 그 구체적인 범주에는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새터민가정등이 포함된다.⁸⁾

8) 교육인적자원부, “다문화 가정 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개발 연구”, 조영달 정책연구과제 2006-이슈-3,

국제결혼가정은 한국인과 그 배우자 및 2세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하며 이는 구체적으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이 국제결혼을 통해 이룬 가정의 형태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들 사이에서 출생한 2세 혼혈아동도 국제결혼가정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가정은 가정 구성원 전원이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 구성된 형태의 가정으로 그들의 2세 또한 혈연적으로 한국인과 무관함을 보인다고 할 수 있으며 국적 또한 한국이 아닌 외국의 국적을 소지한 가정을 의미한다.

새터민가정은 민족적, 혈연적으로 한국인과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남북간의 교류 단절로 인해 언어적, 문화적인 이질성(異質性)을 형성하게 된 탈북(脫北)동포 가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성격상 다문화가정의 개념상에 국제결혼가정과 이주노동자가정만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새터민가정은 제외하였다.

2. 다문화가정 자녀

다문화가정의 세부 형태인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근로자가정, 새터민가정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2세)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중 새터민 가정을 제외한 국제결혼가정과 이주노동자가정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가정의 2세로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정의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지칭하는 유사개념으로는 코시안⁹⁾, 온누리안¹⁰⁾, 튀기¹¹⁾ 등 다양한 용어가 존재하고 있으나, 이들 단어는 토착인에 대하여 혼혈인을 구별하는 차별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인권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문화가정 자녀로 통일하여 지칭하고자 한다.

2006, p.22.

9) 코시안(Kosian)은 코리안(korean)과 아시안(asian)을 합성하여 만든 신조어로 한국인과 아시아계 외국인간의 결혼을 통해 출생한 2세를 의미한다.(:오성배, “코시안(Kosian)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제32권 제3호, 2005, p.62

10) 코시안(kosian)이 가진 차별성을 극복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이 제안한 용어.

11) 혈통이 다른 종족사이에서 출생한 아이.(: 표준 국어대사전)

3. 교육권

교육권이란, ‘교육을 할 권리’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며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¹²⁾에는 교육권에 대해 헌법 제 3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로 규정하여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제 31조 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로 규정하여 교육권이 국민의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임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31조 3항에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로 규정하여 모든 국민이 법이 정하는 최소한의 의무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함으로써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 대한 무상교육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교육권은 학습권과 개념적으로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교육권의 개념을 교육수요자인 학습자의 입장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인 학습권의 의미로 정의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교육자인 교사의 입장에서 교육을 할 권리는 연구의 성격상 제외하도록 하였다. 교육권의 핵심은 ‘능력에 따른 교육’과 ‘균등한 교육’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¹³⁾

제6절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1. 본 연구는 국제결혼가정 및 외국인근로자가정의 자녀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2. 국제결혼가정은 한국인 남성-외국인 여성, 외국인 남성-한국인 여성간의 결혼에 의해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가정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성-외국인 여성 및 외국인 남성-한국인 여성간의 결혼에 의해 이루어진 국제결혼가정의 경우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외국인근로자가정의 경우, 외국인 간의 결혼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남성-외국인 여성간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들의 가정과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외국인 남성-외국인 여성이 각자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이혼 가정의 경우 연구의 성격상 국제결혼가정의 사례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주노동자의 사례에 포함시켜 연구하고자 하였다.

12)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교육에 관해 언급한 조항은 헌법 제31조 1~6항이며 그 중 교육권은 1~3항에서 언급되고 있다.(대한민국 헌법 전문)

13) 국가인권위원회,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기본용어”, 2004. pp.73~75.

4. 본 연구는 연구의 성격상 가설설정-검증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관련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탐색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 보장 방안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실시하는 정책연구의 형태로 진행하였다.

제2장 다문화가정의 교육적 환경

제1절 다문화가정의 개념 및 범위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어인 ‘다문화 가정’이라는 개념은 그 성격상 몇 개의 중첩되고 유사한 용어군(群)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그에 해당되는 용어로는 국제결혼가정¹⁴⁾, 외국인근로자가정¹⁵⁾, 새터민가정¹⁶⁾, 귀국인 가정 등 다양한 용어군(群)들이 존재하고 있다.

다문화가정과 그 자녀의 유형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표1>

<표 1> 다문화 가정 및 그 자녀의 유형 분류¹⁷⁾

다문화 가정	그 자녀
국제결혼가정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외국인 근로자 가정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하여 태어난 아이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국내에 거주한 가정의 아이
새터민 가정	북한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입국한 아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

14) 유사용어로는 ‘국제결혼이민자가정’을 들 수 있다.

15) 유사용어로는 ‘외국인이주노동자가정’을 들 수 있다.

16) 정치, 경제적인 이유로 북한지역을 탈북(脫北)하여 국내에 유입된 가정으로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이주노동자가정과 달리 혈연, 언어, 민족등에서 상당한 동질성(同質性)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50년 이상의 분단으로 인해 문화적 이질성을 겪고 있는 데에서 다문화 가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7) 교육인적자원부,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2006-이슈-3, p.1에 제시된 표를 그대로 인용함.

<표 1>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유형을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 가정, 새터민가정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중 혈연적인 다중성을 가진 가족유형으로는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근로자가정을 들 수 있으며, 새터민 가정의 경우, 한국인과 민족적 혈연적인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다문화가정의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하여 귀국아 가정의 경우, 넓은 의미에서는 다문화 가정에 포함시키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⁸⁾

한편, 다문화가정의 범위를 더욱 세분화하여 개념화한 연구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2>

<표 2> 다문화 가정 및 그 자녀의 유형 분류²¹⁹⁾

다문화 가정	그 자녀
국제결혼가정 및 그 자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으로 이루어진 가정 및 그 자녀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으로 이루어진 가정 및 그 자녀
외국인 근로자 가정 및 그 자녀	외국인 근로자인 남성과 여성이 한국에서 결혼하여 이루어진 가정 및 그 자녀
	외국인 근로자인 남성과 여성이 자국에서 결혼하여 이루어진 가정 및 그 자녀
	외국인 근로자로서 결혼하지 않고 단독 또는 동료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
새터민 가정 및 그 자녀	탈북자 출신인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 및 그 자녀
	탈북자 출신인 남성 또는 여성이 한국에 입국한 후 한국의 여성 또는 남성과 결합하여 이룬 가정 및 그 자녀
	탈북자 출신으로 결혼하지 않고 단독으로 또는 동료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

18) ‘귀국인 가정’이라는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이 발간한 장학자료 ‘多문화! 다문화’에서는 ‘귀국아’를 다문화가정 자녀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 “多문화! 다문화?”, 장학자료 2008-8, p.82) 조영달외(2006)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범주에 귀국아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고 있다.(: 조영달,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 제2006-이슈-3, p.1.) 이는 곧 다문화 가정(또는 다문화가정 자녀)이라는 개념에 대해 일반적으로 합의된 개념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개념 범주에는 다문화 교육의 대상을 국제결혼 가정자녀, 외국인 이주노동자(근로자)가정 자녀, 새터민가정 자녀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외국인 이주노동자(근로자)가정 자녀의 경우 부모의 합법적인 체류여부에 따라 자녀가 처한 교육적 환경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 서혁, “다문화가정의 현황 및 한국어 교육지원방안”, 인간연구(Journal of Anthropological Studies)제 12권, 카톨릭대학교 인간학 연구소, 2007, p3.

이상에서 제시된 다문화가정에 대한 개념 설정 및 분류는 연구의 성격 및 분류자에 따라 다소 상이한 부분을 보이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① 국제결혼가정, ② 외국인근로자가정, ③ 새터민가정등은 공통적으로 다문화가정의 범주에 속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개념중 혈연적, 문화적으로 토착 한국인과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지 않고 외국인 부모가 가족 구성원의 일부를 유지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과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근로자가정을 연구의 주(主)대상으로 설정하여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포함시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²⁰⁾

제2절 다문화가정의 교육환경

다문화 가정의 교육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가정의 형태가 국제결혼가정인지 외국인근로자가정인지에 따라 현실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부모 한쪽이 한국인인 국제결혼가정에 비해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근로자가정의 경우,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에 있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제결혼가정 내에서도 부모 중 어느 쪽이 한국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문화가정이 처한 교육적 환경은 각기 다른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평범한 한국인의 가정에 비해 통상적으로 다문화가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한 교육적 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은 데, 특히, 부모의 언어구사능력, 경제적 능력등은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1. 언어적 자극의 부족

부모의 언어구사능력은 자녀의 교육환경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언어사용능력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유아기에 대부분의 자녀는 부모(특히 어머니)로부터 언어적 자극을 받게 마련이다. 기초적인 어휘, 발음, 언어사용 습관등을 부모로부터 전수받게 되거나 자신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유아기의

20) 본 연구에서 규정한 다문화가정의 개념은 연구의 성격상 한국인과 혈연적 공통요소를 가진 새터민가정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의미하며, 다문화가족의 본질적인 개념에서 이들을 제외시킨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언어 형성은 부모중 특히, 어머니로부터 받는 언어적 자극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어머니가 한국인인 가정의 자녀에 비해 외국인인 자녀의 경우, 한국어 언어능력을 형성하는데 많은 제한이 따르는 측면이 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 한국어를 사용하는 부모와 외국어를 사용하는 부모와의 이중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언어를 습득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언어장애, 말더듬, 발달장애, 행동장애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학습장애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¹⁾ 한편,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인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어 한국어에 대한 기초적인 언어적 자극조차 제공되지 않아 일선 교육기관에 취학하여 한국어 수업을 받을 경우, 한국인 교사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거의 불가능하며 읽기, 쓰기, 말하기 등의 기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심각한 학습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²⁾

2.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족

부모와의 의사소통능력 부족으로 인해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국제결혼가정의 증가로 인한 한국어 및 외국어를 통한 이중적 의사소통은 언어사용능력 형성기에 있어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에 있어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이 그 자녀에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생활습관에 대해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여 자녀의 사회 적응 및 교우관계 형성 등에 많은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²³⁾ 예컨대, 중국계 한국인 결혼이주 여성(조선족)의 경우, 한국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자녀의 학습을 도와주지 못하는 비율이 21.1%에 이르는 등 언어활용능력은 자녀의 교육권 보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21) 김재련,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지위”,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2007, p.50.

22) 안산W초등학교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의사소통능력 부족으로 입학초기에 입을 열지 않고 생활하는 자녀가 많으며, 취학 2개월 후에도 협력학급에서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한국인 급우에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일초등학교, “생활적응 프로그램 구안 및 적용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학교생활지도방안”, 2007, p.15)

23) 한국경제, “농촌 국제결혼2세, 학습장애 심각”, 2005. 11. 22기사.

3. 경제적 빈곤

부모의 경제적 능력 및 여건은 자녀의 교육환경과 교육권 보장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주요 출신국은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있으며,²⁴⁾ 한국 남성과의 주된 결혼동기로는 출신국에서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목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⁵⁾ 아울러, 경제적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국내에서 국제결혼가정을 이룬 이주여성의 경우 대부분 도시 및 농촌지역의 저소득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⁶⁾

국제결혼가정 이주여성의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무직(65.2%), 노동직(16.3%), 사무직(8.7%)등으로 나타났고 가정형편에 대한 인식은 ‘매우 어렵다’(또는 ‘어려운 편이다’)로 응답한 비중이 45.6%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 빈곤상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²⁷⁾

국제결혼가정 및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의 낮은 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교육문제에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도를 형성하거나 일반 한국인 가정에 비해 자녀에 대한 낮은 교육적 투자로 인해 일반 한국인 가정 자녀에 비해 낮은 교육접근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교육기회의 배분과 접근성면에서 볼 때,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낮은 유아교육기관 취원률을 보이고 있으며²⁸⁾, 초등학교 미진학 또는 중도탈락률이 9.4%에 이르는 등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일반 한국인 가정 자녀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도 다문화가정이 놓여 있는 교육적 환경을 잘 나타내주는 지표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다문화 가정의 열악한 경제적 사정은 학부모들로 하여금 의식주 해결을 위한 경제활동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에 대한 기

2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07. 12.31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는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중국인, 베트남인, 일본인, 필리핀인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인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별 결혼이민자 체류현황(2007.12.31현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도자료.)

25) 김재련,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지위”,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2007, p.9~10.

26) 대부분의 국제결혼가정 경우, 경제적으로는 저소득층이며 도시와 농촌의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도 이와 유사한 경제적 여건을 형성하고 있다.(조영달,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개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2006-이슈-3, 2006, p.22.)

27) 박은애,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실태 조사연구-경상남도 다문화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창원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p.29~32.

28) 미 취학자녀를 둔 국제결혼 이주여성 중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가정은 14.5%로 우리나라 미취학 자녀 보육시설이용률 56.8%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여성결혼 이민자 생활실태 조사결과 및 보건복지부 대책방안”, pp.8~9.)

본생활습관의 미형성, 부정적 인성형성, 다양한 형태의 학교 부적응 현상을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²⁹⁾

이상에서 제시된 국제결혼가정의 교육적 환경은 대체적으로 농촌 및 도시에서의 경제적 빈곤, 언어적 소통 부재등으로 자녀양육 및 교육권 보장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절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의 문제점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한국인 가정의 자녀교육에 있어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학교생활 부적응, ②언어소통능력의 장애, ③자아정체성의 혼란, ④ 학습능력의 저하, ⑤가치관의 혼란등을 들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았다.

1.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신체적 외모의 차이로 인해 친구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군거림을 당하거나 놀림을 받은 적이 있으며³⁰⁾, 외모에 대한 놀림은 같은 아시아계 이주여성의 자녀보다 백인이나 흑인계 이주여성 자녀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³¹⁾ 이러한 경향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피부색, 사용언어등이 차별과 편견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은 학교생활에서의 무시, 따돌림, 경멸, 언어적 육체적 모욕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그 결과, 한국사회와 다문화가정 자녀간의 문화적 갈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혈통주의와 뿌리 깊은 혼혈인에 대한 민족의식은 다른 인종에 대한 배타적인 차별의식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여러 면에서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다문

29) 원일초등학교, “생활적응 프로그램 구안 및 적용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학교생활지도방안” 2007, p.16.

30)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17.6%가량이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돌림이 일어난 주요 이유는 ‘엄마가 외국인이어서(34.1%)’,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20.7%)’,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13.4%)’ 등이었다.(조영달,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2006-이슈-3, p.8.에 제시된 표를 인용함.)

31) 국가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 상담원, “다문화가정(혼혈 청소년) 청소년 연구-사회적응 실태조사 및 고정관념 조사”, 2006, pp.57~58.

화가정 자녀의 피부색에 따른 차별은 한국사회가 다문화가정 자녀의 인권에 대해 가진 이중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³²⁾ 이로 인한 차별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겪는 가장 큰 부적응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따돌림을 예방할 수 있는 인권교육과 다문화교육이 일선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될 필요가 있다.

2. 언어소통능력의 장애

한국어에 대한 이해는 한국의 초등학교에서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것처럼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사용능력은 한국 가정 자녀에 비해 많은 부족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³³⁾ 언어적 소통능력의 부족 원인은 다름아닌 한국어를 익혀야 할 시기에 적절한 언어적 자극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국제결혼가정), 이에 대한 언어적 자극의 기회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이다.(외국인 근로자가정) 이러한 언어소통능력의 장애는 한국어가 서투른 부모(특히, 어머니), 또는 가정에서 한국어 사용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여 한국어로 말하거나 들을 경험이 없는 아동일 경우, 일선 교육기관에서의 심각한 언어장애, 원만하지 못한 교우관계 형성의 주된 원인이 되곤 한다.³⁴⁾

이와함께 대부분의 일선학교 현장에서도 정규학급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특별한 지도없이 일반학급 학생들과 같이 편성되어 한국어 사용능력의 부족으로 학급에서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이거나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³⁵⁾

32) 우리사회의 서열화된 인종주의는 흑인계 혼혈인에 관한 냉대 및 비하, 백인계 혼혈인에 대한 상대적인 존경등 이중적인 행태(行態)로 나타나고 있어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 적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다문화 개방사회를 위한 사회적책연구”,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연구과제06-07, pp.76~79.)

33) 다문화 가정 자녀중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에 비해 말하기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발음 및 맞춤법에 대한 기초적인 능력이 떨어지며 3학년 이상은 문장이해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응용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과목 중 국어과에 대한 선호도에 현저히 타교과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세계일보, 「'다민족 사회' 코리아 리포트」한국말 끝잘 하지만 말뜻 이해는 부족」, 2007.4.24 기사.)

34) 김갑성, “한국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p.34~39.

35) 이재현·안동현·황옥경, “아동과 권리”, (서울:창지사), 2007, p.183.

3. 자아정체성의 혼란

정체성(Identity)은 자신이 스스로를 어떠한 사람으로 보는가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란, 한국어 사용, 한국인과 같은 피부색, 한국인 국적의 부모 나아가 한국인 조상등 과거에는 이러한 기준들을 충족할 때 한국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진 것으로 보곤 했다. 하지만, 다문화시대에는 이러한 기준으로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한국인으로 인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국인에 비해 약간 검은 피부, 유창하지 못한 한국어 구사능력, 외국인 어머니를 둔 자녀라면 당연히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 형성에 있어 곤란함을 느낄 것이다. 실제 많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를 한국인(35.7%) 보다는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42.9%)로 느끼며 이러한 경향은 피부색과 외모가 한국인과 유사한 아시아계 보다는 그렇지 못한 비아시아계(흑인, 백인계) 다문화 가정의 자녀일 경우, 그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³⁶⁾

4. 학습능력의 저하

가정에서의 언어 구사능력 및 외국인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부재(不在)는 궁극적으로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문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 주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하며³⁷⁾ 이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로 하여금 한국어에 대한 학습능력의 저하를 유발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³⁸⁾ 아울러, 국어과 뿐만 아니라, 수학, 사회등 여타 교과에 대한 연쇄적인 학습부진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능력저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학교에서의 읽기, 쓰기, 말하기 기능의 부족으로 인해 국어과 및 기타 교과의 학습결손이 발생하게 되고 점차 학년 초반에 발생한 학습결손이 누적되어 전반적인 학습능력의 저하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일정수준의 한국어 구사능력의 습득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대한

36) 국가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 상담원, “다문화가정(혼혈 청소년) 청소년 연구·사회적응 실태조사 및 고정관념 조사”, 2006, pp.53~54.

37) 여성가족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결혼이민자가 자녀의 학업지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여성이 민자의 경우 ‘교과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서(39.7%)’, 남성이민자의 경우에는 ‘생업이 바빠서(45.5%)’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 한국사회학회,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향 연구“, 여성가족부 용역과제, 2006, pp.124~125.)

38) 오성배,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교육실태와 대안 모색”, 2007, p.7.

교육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요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및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사용교육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³⁹⁾

제3장 인권의 일부로서의 교육권

제1절 교육권의 개념

교육권에 대한 개념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교육권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에 대한 정의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행위’⁴⁰⁾, 또는 ‘인간의 성장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키도록 돕는 일’⁴¹⁾등으로 교육이 정의되고 있음을 비추어볼 때, 교육권은 인간의 성장가능성(또는 잠재능력)을 신장하도록 돕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권이 가진 개념적 특징에는 교육을 하는 권리로서의 교육권⁴²⁾,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의 교육권⁴³⁾, 교육을 받게 할 권리이자 의무로서의 교육권⁴⁴⁾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교육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서 모든 국민이 가지는 기본 권리로서 언급되며 그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권이 가진 여러 가지 측면 중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의 교육권과 관련된 영역이다. 이는 학생이 가진 교육에 대한 권리로서 학습권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는 크게 다음

39) 전북 장수초등학교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20명을 대상으로 ‘국제학부모 사랑방 운영’, ‘교원-국제결혼가정 자녀 1대1 결연활동’, ‘도우미 친구 연결’, ‘토요휴업일 공부방’ 등의 활동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성취도 신장과 한국어 사용능력 신장에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혁, “다문화가정의 현황 및 한국어 교육지원방안”, 인간연구(Journal of Anthropological Studies)제 12권, 카톨릭대학교 인간학 연구소, 2007, p.18.)

40) 정범모, “교육과 교육학”, (서울: 배영사, 1971), pp.20~22.

41) 김중서·이영덕, “교육학개론”,(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92), pp.14~16.

42) 교사가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권리

43) 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흔히 학습권(學習權), 또는 수학권(修學權)으로 지칭한다.

44) 학부모가 자녀를 교육받게 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가짐

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⁴⁵⁾

1. 학교선택권

학교선택권에는 의무취학권, 사립학교 선택권, 통학권, 취학학교 지정 변경처분에 대한 학생의 권리, 종교의 자유, 입학에서의 차별금지등에 대한 사안 이 포함된다. 학교선택권 중 본 연구의 대상인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습권의 내용에는 의무취학권과 통학권, 입학에서의 차별금지와 관련한 것을 들 수 있다.

의무취학권은 초등학교 및 법이 정하는 수준의 의무교육을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헌법31조에서는 그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 우리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의무취학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그동안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의무교육을 받는데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 온 게 현실이다. 이는 취학에서의 차별과도 연관되어 입학과정에서 그동안 유무형의 차별 대상이 되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다.

2. 교육내용의 결정·선택권

교육내용의 결정 선택권은 교육내용의 중립성과 관련된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한 가치관을 강요받지 않도록 가치중립적 성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현실적으로 교육내용의 결정·선택권에 대해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당연시 되어오던 단일민족 중심적 사고 및 혈연과 피부색을 중시하는 가치관등은 다문화가정 자녀에 있어 자기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역할을 한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권(학습권) 보장의 차원에서 기존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나타난 단일민족 중심적 가치관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맞게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5) 김귀옥, “교육권의 이론적 근거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p.25~29.

3.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무상교육은 의무교육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헌법 제31조가 초등학교 및 법이 정하는 무상교육을 인정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의 자녀 특히,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자녀들은 학교선택권에 대한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무상교육에 관한 권리또한 제한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2003년 이후, 초등학교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취학이 허용되어 초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고등학교이상으로 의무교육이 확대될 경우, 과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형태의 무상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보장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⁴⁶⁾ 따라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평등교육을 받을 권리

평등교육은 교육대상에 대한 기회균등과 깊이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사회적 신분, 성별, 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별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는 학교선택권, 교육내용의 결정·선택권,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와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 취학한 다문화가정 자녀 및 외국인 이주노동자가정의 자녀에게 있어서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권리이며 낮은 수준의 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에 있어서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선학교에서 현실적으로 이는 많은 제 한점이 따르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기본적인 학습능력 부족으로 일반 한국인가정 자녀에 비해 평등교육을 받는 데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그중 가장 큰 원인으로는 언어적 제약과 함께 경제적인 빈곤으로 인한 상대적

46) 외국인의 교육기본권은 초등교육에 대하여 자국민에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하여야 하며 초등교육이상의 교육에 있어서도 가능한 유리한 대우를 해줄 것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 및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조약’ 등 국제적 차원의 각 조약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수훈, “교육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pp.54~55.) 하지만, 국내법상으로는 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이는 헌법에서의 교육권 적용주체가 ‘국민’으로 명시되어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 이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교육권 보장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논쟁의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인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대안적 차원의 교육시스템을 제공하여 경제적 차이, 언어적 제약에서 오는 교육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시급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⁴⁷⁾

예컨대, 일선학교에서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방과 후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특기적성교육을 통해 교육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인권과 교육권

1. 인권과 교육권의 관련성

인권(human rights)는 인간이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 인간의 권리를 넘어 인간이 되기 위한 권리로 규정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개념적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⁴⁸⁾

- ① 인권은 인간이 갖는 기본적 권리이다.
- ② 인권은 인간이 갖는 보편적인 권리이다.
- ③ 인권은 약자를 위한 권리이다.
- ④ 인권은 책임을 동반한 권리이다.
- ⑤ 인권은 개인과 집단을 포괄한 권리이다.
- ⑥ 인권은 정당성의 기준으로서 국가권력을 제어한다.
- ⑦ 인권은 사회변화를 요구한다.

①~⑦항에 제시된 인권의 개념을 기본권, 보편성, 약자배려, 책임동반, 포괄성, 국가권력 제어, 사회변화등으로 요약해 볼 때, 이들 개념은 교육권이 가진 개념적 속성과 상당부분 중첩되거나 일치됨을 확인할 수 있다.

47) 교육 받을 권리의 핵심은 ‘능력에 따른 교육’과 ‘균등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능력에 따른 교육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닌 능력에 따른 차별을 의미하며 균등한 교육은 수학 및 취학의 기회균등을 의미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기본용어”, 2004, pp.73~75.)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 대한 일선 학교나 교육기관의 입학거부는 ‘균등한 교육’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교육받을 권리를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8) 국가인권위원회,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2004, pp.12~14.

그 중 가장 중요한 속성은 인권과 교육권 모두가 인간을 그 대상으로 했으며 인간이 가진 권리라는 점에서 동질성(同質性)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권은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사람답게 살 권리’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인권은 교육권과 함께 특정한 국적, 종교, 시민권, 배우자의 유무,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기본권으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강자의 위치가 아닌 약자의 위치에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 보장되는 권리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교육권은 본질적으로 교사의 교육권,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권으로 구성되며 헌법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무상교육, 의무교육에 대한 의지를 관련 법률이나 헌법을 통해 명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더하여 인권은 책임이 동반된 상호존중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권은 권리이자 의무(책임)으로써의 상반된 속성을 지니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질적으로 교육권은 헌법상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의 범위를 넘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권과는 별개의 개념이 아닌 인권의 일부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

다문화가정 자녀의 인권은 교육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표 4>

<표 4>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의 권리⁴⁹⁾

권리의 종류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보편적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의 자유 • 표현의 자유 • 정보접근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받지 않을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취득의 권리 • 휴식, 여가 및 문화 생활에 참여할 권리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받을 권리 • 가족 재결합의 권리 (합법체류자일 경우) •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받을 권리 • 노동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외국인 이주노동자가정 자녀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등 세 가지 영역에서 보편적 인권(권리)과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인권(권리)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교육권과 관련한 부분은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특별한 인권으로서의 양육받을 권리,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와 관련된 것을 알 수 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학교교육에서 일반 한국인 가정의 자녀에 대해 차별을 받거나 초등학교 및 법이 정하는 의무교육에 있어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로 해석할 수 있으며, 양육받을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는 일선 교육기관으로부터 국제결혼가정 자녀나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인해 교육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로 대입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권 보장-특히,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에 대한 취학, 진학-은 실질적으로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일선학교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학이나 진학을 허용하는 것에

49)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 관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004, p.55의 <표 4-1> 외국인 노동자 아동 인권의 세가지 영역에 나타난 표를 재구성함.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취학연령대 아동 중 극히 일부만이 취학을 하는 실정에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한 외국인 아동에 대한 교육권이 한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⁵⁰⁾

따라서, 외국인근로자가정의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취학·진학등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학, 진학, 취학에 대한 사안을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2001년의 사례처럼 교육부가 단순히 행정지침의 차원이나 2003년 1월 19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사례처럼 학교장의 재량으로 교육권을 보장하는 등의 소극적인 교육권 보장의 행태(行態)를 벗어나 취학이나 진학, 입학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교육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적 규정에 있어서도 단순히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는 형태에서 탈피하여 “...입학을 허가하여야 한다”등의 형태로 일선학교 및 행정당국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국내 저소득계층과의 형평성 문제에서 많은 비판의 요소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정의 자녀들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권을 보장할 경우, 내국인이 오히려 외국인에 대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국내법적 단계에 국한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비판의 요소이며 ‘세계인권선언’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서의 교육권에 대한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상대적인 불이익의 요소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권의 보장은 국가가 경제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펼쳐야 하는 차원의 문제이며 결코 외국인근로자가정과 같은 우리사회의 소수자와의 형평성을 중시하는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50) 이재현·안동현·황옥경, 「아동과 권리」, (서울:창지사), pp.182~183.

제4장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 보장의 실태

제1절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규정

교육권의 법률적인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교육기본법등으로 요약하여 정리해 볼 수 있다.

1. 헌법에 나타난 교육권 보장관련 조항

대한민국의 헌법은 제 31조에서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권⁵¹⁾에 관해 언급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⁵²⁾

-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31조 1항은 교육의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과 함께 국적을 취득한 국제결혼가정의 이주여성의 자녀도 포함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유입된 국적취득전의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는 교육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31조 2항 역시 국민을 대상으로 초등교육 및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교육권을 국민이 가진 권리이자 의무라는 2가지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헌법 31조 1~2항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자녀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못한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 제2조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국가

51) 본 연구에서의 교육권의 개념은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의 교육권을 말하며 학습권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52) 대한민국헌법전문 제31조.

의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⁵³⁾ 하지만, 헌법 제2조에서도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보호의무는 규정해 놓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결국 제31조의 교육권 관련 조항과 연계시켜 볼 때,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교육권 보장관련한 조항이 법률적으로 전무(全無)함을 확인할 수 있다.

2. 초중등교육법에 나타난 교육권 보장관련 조항

초중등교육법은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운영과 관련한 법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2조에는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에 대한 의무교육을 제13조에서는 취학의무를 명시하고 있다.⁵⁴⁾

제13조 (취학의무) ①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만 12세(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12세에서 해당 연수(연수)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02.8.26, 2007.8.3] [시행일 2008.3.1]

초중등교육법 제 12~13조에 나타난 의무교육 및 취학의 의무 규정은 그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헌법과 마찬가지로 국제결혼가정, 이주노동자가정의 자녀에 대한 별도의 조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헌법과 마찬가지로 초중등교육법 차원에서도 국내거주 외국인 또는 이주노동자자녀에 대한 별도의 교육권 보장 조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나타난 교육권 보장관련 조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초중등교육법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하위 법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제19조(재외국민자녀의 입학절차등)관련 조항에서 부분적으로 외국인 가정 자

53) 대한민국헌법전문 제2조.

54) 초중등교육법 제13조.

녀의 취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⁵⁵⁾

제19조 (재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 등) ①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2008.2.22]

②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제 19조의 재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등에서 명시된 사항은 지난 2003년 유엔아동권리 위원회의 유엔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에 따른 권고를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외국인 및 불법체류자 자녀 에 대한 교육권을 일부 보장한 것으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⁵⁶⁾

이에 따라 초등학교의 경우,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및 불법체류노동자의 자녀에게도 취학의 길이 열리게 되어 초등학교 과정에 한해 정식으로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중학교 이상의 진학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⁵⁷⁾

5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56)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총4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교육권 보장과 관련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 1항)

1. 당사국은 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며, 균등한 기회제공을 기반으로 이 권리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나. 일반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형태의 중등교육 발전을 장려하고, 모든 아동이 중등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무상교육을 도입하거나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다.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가 개방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라. 모든 아동이 교육 및 직업관련 정보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마. 학교출석률과 중퇴율 감소를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상에서 본 연구자는 대한민국의 법제도상에 나타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권 보장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범주에 속하는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의 교육권 보장의 측면에서 각각 다른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정받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의 경우, 법제도적 차원에서는 ‘대한민국국민’의 범주에 포함되어 차별적 요소가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의 경우, 헌법, 초중등교육법 차원에서는 교육권에 대한 일체의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체류자의 자녀의 경우, 이로 인해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인권적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었다. 지난 2003년 유엔의 권고로 인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외국인 관련조항이 삽입되었지만, 이는 별도 조항이 아닌 재외국민자녀의 입학과 관련한 조항의 일부로 등장하고 있는 만큼, 법 제도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⁵⁸⁾

제2절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정책의 개발

일선 교육기관에서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舊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참여정부시절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국내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88.0%는 외국인 결혼이주여성을 어머니로 두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 일선 교육기관에 대한 낮은 취학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6~2007년간 실시한 다문화 자정 자녀교육 지원계획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표 5>

53) 불법체류자의 자녀는 청강생 신분으로 수학(修學)이 가능하며 공식적인 진학은 불가능하다. (: 조영달,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2006-이슈-3, p.12.)

58)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제협약으로서 국제법적 지위를 가지며 국내에서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해당 조항들이 우리의 법체계에 잘 적용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표 5>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계획(2006~2007)⁵⁹⁾

주요정책	정책별 세부추진내용(2006~2007)
□□ 학교 중심의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용‘교과서 지도 보완자료’발간,배포 • 시범학교 운영(2006-2개교/ 2007-12개교) •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교재 개발보급 • 한국어반(KSL), 방과후 학교 운영 • 한국문화 이해체험활동 운영 • 다문화교육 학부모 연수 및 자녀 지도자료 개발 보급
□□ 다문화 가정자녀 교육지원 정책수립 및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이해교육 포럼’을 통한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 대책」 발표 • 실천사례나눔대회 • ‘국제이해포럼’을 통한 「다문화가정 자녀지원 대책」 홍보 • ‘교육 지원방안 연구 보고회’개최
□□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국제이해교육 실시 • 관련교과(사회, 도덕등) 개정 교육과정에 타문화 이해, 존중, 편견극복 및 관용을 위한 성취목표 반영(‘07.2. 고시) <p>※ 교과서는 ‘09년부터 연차적으로 개발·보급</p>
□□ 지역단위 협력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등 10개 교육청에 외국학생 입학상담센터 설치 ※국내학교 편입학 절차, 학교생활적응, 교우관계 상담 •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RHRD)」를 통해 12개지역 51개 세부 프로그램 지원 • 다문화가정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조영달외’96)

<표 5>에 따르면, 교육정책당국의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은 ①학교중심의 교육지원, ②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 정책수립 및 추진, ③다문화 이해교육강화, ④지역단위협력

59) 교육인적자원부, “2007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 지원계획”, 2007, pp.10~14 에 제시된 내용을 표로 재구성 한 것임.

체제의 구축이라는 4가지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학교중심의 교육지원측면에서는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교재 개발보급, 한국어 (KSL) 방과후 반 운영이 중심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를 담당할 교원에 대한 양성 및 연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의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중 사회, 도덕등 다문화 교육관련 교과목의 개정시 타문화 이해, 편견극복에 대한 구체적인 성취목표를 2007학년도부터 반영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선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지난 10여년동안 급속한 사회의 다문화화로 인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이 사회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변화하지 못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시도교육청에서는 매년 시도별 교육시책을 제정하여 지역교육청을 통해 각급학교에 하달함으로써 시도의 교육이념과 목표가 구현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다음은 2007학년도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시책중 다문화가정 지원과 관련된 교육시책을 제시한 것이다.<표 6>

<표 6> 시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지원시책(2007)⁶⁰⁾

구현중점	추진사항
25. 교육복지의 증진	외국인 근로자 자녀 특별학급 운영지원
254. 외국인 근로자 자녀 특별학급 운영지원	<p>□□추진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에게 정상적인 초등교육의 기회 제공 -한국문화에 적응하고 한국인에 대한 신뢰감 형성 <p>□□도교육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근로자자녀교육 기본계획 수립 -외국인근로자자녀 특별학급 지정 · 지원 -외국인근로자자녀 지도 교재 및 학습자료(프로그램)개발 지원 -외국인근로자자녀 교육 연구회 운영 -외국인근로자자녀 담임교사 연수

60) 경기도교육청, “2007 희망경기교육 구현계획”, 2007, pp.241~243.

구현중점	추진사항
	<p>□□지역교육청 -외국인근로자녀교육 자체계획 수립 -외국인근로자녀 교육 지원 -외국인근로자녀 교육 프로그램 활용 및 안내 지도</p> <p>□□단위학교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 운영의 내실 -한국을 이해하기 위한 문화체험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p>
25. 교육복지의 증진	외국인 근로자 자녀 특별학급 운영지원
254. 아이러브 스쿨 프로그램 개발/지원	<p>□□추진방향 -다양한 문화를 건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학생들의 인식 변화 유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취학 전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기회 제공 및 강화 -지역교육청 단위 중심학교 시범 운영 후 점진적 확대 운영</p> <p>□□도교육청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교육 자료 개발·보급 (중등교육과) -다문화 시대에 적합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 개발·보급 (교육정책과) -다문화 이해 교육 업무 담당 교사 연수 실시(중등교육과)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초등교육과)</p> <p>□□지역교육청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을 위한 지역 중심학교 운영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다문화 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국문화 체험 교실 운영 -다문화 가정 자녀의 유치원 교육 바우처제 운영</p> <p>□□단위학교 -다문화 가정 학부모를 교육 도우미로 활용 「세계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가정 자녀와 전문 상담자(교사) 1:1 결연제 운영</p>

<표 6>은 경기도교육청의 2007년 교육시책중 다문화가정 지원과 관련한 시책을 정리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시책을 교육복지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세부시책으로는 ①외국인 근로자 자녀 특별학급 운영지원, ②아이러브 스쿨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전국 최초로 안산과 시흥의 일선초등학교에 외국인근로자 특별학급을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한글지도를 위한 교재를 개발하는등 타시도에 비해 활발한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⁶¹⁾

하지만, 다문화 특별학급으로 지정된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인 시흥, 안산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는 여전히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배려한 특별학급이나 프로그램등이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지도교원의 부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교육수요를 흡수 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제3절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관의 노력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일선 교육기관의 경우, 이전에 비해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규교육기관은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일반 한국인 학생과 다문화 가정자녀들이 같이 수업을 하는 형태가 아닌 별도로 다문화가정의 학생만을 교육대상으로 하여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규교육기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노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정규교육기관의 교육권 보장

정규교육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국립학교(사범계 대학 부설 초중고등학교) 및 시도교육청 산하의 공립학교(초중고등학교), 사립 초중고등학교를 그 대상으로 하며, 이들 교육기관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61) 경기도교육청은 2009년까지 다문화 특별학급을 4개학교 4개학급으로 증설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플러스, “친구들 사이에서 영어 박사로 통해요”, 2008.5.6기사)

가. 연구시범학교의 운영(통합학급형)

정규교육기관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차원의 목표달성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은 연구시범학교의 운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교육 연구시범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시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2년 기간내에서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연구시범학교를 공모하여 채택된 학교에 대해 연간 1,0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하며 연구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는 다문화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관련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해당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함으로써 다문화 교육의 저변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연구시범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교육 관련 프로그램은 정규 교과(사회, 도덕등) 및 재량활동, 특별활동시간을 통해 실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한 것이 대부분이며 다문화 가정자녀들만의 특별학급을 구성하지는 않고 일반 학급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 대한 다문화교육 연구시범학교로 지정된 남양주시 C초등학교의 연구시범학교 운영사례를 제시한 것이다.<표 7>

남양주 C초등학교의 경우, 2008년 3월 ~ 2010년 2월까지 약 24개월 동안 경기도교육청 지정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위한 다문화 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지난 2008년 6월, 연구시범학교 1차년도 운영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C초등학교가 다문화 교육연구 시범학교로 지정된 것은 지역여건상 학구내에 대단위 가구공단(남양주 S공단)이 위치해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이주노동자가 전체 노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다문화 교육에 대한 적절한 여건을 형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남양주시C초등학교의 연구학교 운영사례⁶²⁾

학교명	• 남양주 C초등학교						
지역여건	• 지역 내에 대규모 가구공단이 위치함(남양주 성생공단) •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높으며 C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도 있음						
재학중인 다문화가정 자녀	외국인 부모국적	필리핀	일본	베트남	중국	몽골	계
	학생수 (명)	3	4	1	8	1	17
지정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기관 : 경기도교육청 • 주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결손 해소 및 공동체의식함양 • 영역 : 외국인 근로자자녀 다문화교육 • 연구기관: 2008. 3.1 ~ 2010.2.28 						
운영과제	1. 다문화교육을 위한 환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의 외국인 복지센터와 연계한 다문화교육 연수 실시 ② 학부모 대상 다문화교육 연수 실시 ③ 다문화 학술대회 참여 					
	2.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결손해소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학생 1교사제 운영을 통한 학생-교사간 신뢰 형성 ② 상담자료를 활용한 학교생활 상담 실시 ③ 다문화가정 학부모 학교방문의 날 운영 및 학부모 연계 상담활동 실시 					
	3.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② 현장체험을 통한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③ ‘지구촌 가족의 날’행사 운영을 통한 외국인 한국인 만남의 장 마련 					
운영결과 (1차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을 통해 다문화 교육 분위기 조성 • 학습결손해소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습적 불안감 해소 및 다문화 가정 자녀와 일반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왔음 • 다문화 교육관련 연수를 본교 교사 뿐 만 아니라 지역 다문화 담당교사에게까지 확대하여 다문화 교육의 지역 중심학교로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및 인식을 높임 • 학생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한 학습결손 해소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문화 가정 학생의 기초 학습 능력이 신장되었음 • 문화체험 활동을 전개하여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자신감과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일반 가정 학생에게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였음 						

62) 천마초등학교,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결손 해소 및 공동체의식 함양”, 경기도교육청지정 외국인 근로자자녀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1차년도 보고서, 2007, pp.1~22.

<표 7>에 따르면, 남양주C초등학교의 경우 지역 내에 대규모 가구공단이 입주해 있으며 공단내에는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고 특히, 이주노동자의 자녀중 일부가 C초등학교에 학생으로 재학 중(17명)인 점등은 다문화교육에 대한 일정한 수요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뜻하며 일반 한국인 학생들과의 원만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등 여러 가지 면에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기에 적절한 여건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남양주 C초등학교의 경우,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해 학습결손 해소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학생 1교사제, 학생상담활동,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문의 날 운영,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구촌 가족의 날’ 행사를 통한 외국인-한국인 만남의 날 운영등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지구촌 가족의 날’행사의 운영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표8> 남양주시 C초등학교의 ‘지구촌 가족의 날’운영사례⁶³⁾

학년	수업 일시	수업 주제(나라)								비고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7반	8반	
1	5/15	샤니 (방글라 데쉬)	자만 (방글라 데쉬)	라자 (방글라 데쉬)	나인 (방글라 데쉬)	클라우디아 아에이알 티젠 (필리핀)	정영진 의 모 (중국)	-	-	3교시
2	5/16	샤니 (방글라 데쉬)	자만 (방글라 데쉬)	라자 (방글라 데쉬)	석정미 (중국)	클라우디아 아에이알 티젠 (필리핀)	정영진 의 모 (중국)	나인 (방글라 데쉬)	-	3교시
3	5/22	샤니 (방글라 데쉬)	자만 (방글라 데쉬)	라자 (방글라 데쉬)	나인 (방글라 데쉬)	클라우디아 아에이알 티젠 (필리핀)	정영진 의 모 (중국)	샤니 (방글라 데쉬)	-	1,2,3,4반- 3교시 5,6,7반- 4교시
4	5/26	샤니 (방글라 데쉬)	자만 (방글라 데쉬)	라지 (방글라 데쉬)	나인 (방글라 데쉬)	클라우디아 아에이알 티젠 (필리핀)	정영진 의 모 (중국)	자만 (방글라 데쉬)	-	1,2,3,4반- 3교시 5,6,7반- 4교시

63) 천마초등학교,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결손 해소 및 공동체 의식 함양”, 경기도교육청지정 외국인 근로자자녀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1차년도 보고서, 2007, p.20의 <표17>을 인용함.

학년	수업 일시	수업 주제(나라)								비고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7반	8반	
5	5/27	샤니 (방글라 데쉬)	자만 (방글라 데쉬)	라지 (방글라 데쉬)	나인 (방글라 데쉬)	클라우디아 아에이알 티젠 (필리핀)	정영진 의 모 (중국)	라지 (방글라 데쉬)	-	1,2,3,4반- 3교시 5,6,7반- 4교시
6	5/29	샤니 (방글라 데쉬)	자만 (방글라 데쉬)	라지 (방글라 데쉬)	석정미 (중국)	클라우디아 아에이알 티젠 (필리핀)	정영진 의 모 (중국)	나인 (방글라 데쉬)	샤니 (방글라 데쉬)	1,2,3,4반- 3교시 5,6,7,8반- 4교시

본 연구주제와 관련된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학교차원의 노력으로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학습결손 해소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특히,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기본적인 읽기,쓰기,셈하기등의 3R을 중심으로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일반 한국인 학생을 대상으로는 재량 및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지구촌 한 가족의 날’을 운영함으로써 한국인과 외국인 학생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하나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C초등학교의 다문화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사례는 일선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여전히 많은 연구와 시범운영을 통해 정책의 구현방향을 합리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남양주 C초등학교의 경우,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일반학급에 학적을 유지하며 수업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시흥, 안산등 특별학급의 운영사례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선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남양주C초등학교와 같은 특설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재정지원 또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 학교의 경우, 학교내에 다문화가정이 소재하거나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재학중인 경우에도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학급을 개설하기에는 여러 가지 행정적 제한요소가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인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정규교육기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되었으며(헌법 제 31조, 초중등교육법 제 13조),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을 전담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다수의 일선 국공립 초중고등학교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해 특화된 교육 시스템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원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일선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특별학급이나 교육과정을 별도로 구축하고 있지 못하며 나아가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지도요령을 연수받은 교사가 거의 전무(全無)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정규교육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학교를 의미하며 교육당국의 교육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교육권이 일선학교에서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들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교육행정당국의 정책적 의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지역적으로 이농(離農)현상이 심하거나 다문화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라북도의 경우, 타시도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다문화 가정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업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수도권 의 경우에도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한 특별학급등이 해당지역의 정규교육기관에 개설되어 나름대로 교육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는데 비해 그렇지 못한 지역도 많이 존재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다문화 특별 학급운영

일선 교육기관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다문화 특별학급을 운영하는 사례가 최근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시흥 및 안산의 외국인 밀집지구 초등학교에 외국인 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을 설치한 바 있으며 이들 학교를 연구시범학교로 운영한 뒤, 운영결과에 따라 다문화 특별학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안산의 w초등학교와 시흥의 s초등학교의 경우, 다문화 교육 연구시범학교로 지정되어 교내에 1학급씩의 외국인 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의 형태로 다문화 학급을 설치하여 지난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사례로는 전라북도 장수의 j초등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다문화교육정책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는등 시도별로 5개 이내의 학교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지정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w초등학교의 외국인 근로자 자녀 특별학급 운영실태를 통해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권 보장에 대한 일선학교의 노력에 대해 살펴보았다.<표9>

<표 9> 다문화자녀 특별학급 운영실태(안산 w초등학교)⁶⁴⁾

학교명	• 안산 w초등학교									
지역여건	• 안산시의 공단밀집지역에 학교가 위치하며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비중이 높음.									
재학중인 다문화가정 자녀	외국인 부모국적	스리 랑카	일본	우즈벡	러시아	중국	몽골	인도	계	
	학생수 (명)	1	3	2	1	3	1	1	12	
지정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기관 : 경기도교육청 • 주제: 생활적응 프로그램 구안 및 적용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학교생활지도방안 • 영역 : 외국인 근로자자녀 다문화교육 • 연구기관: 2007. 3.1 ~ 2008.2.28 									
특별학급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 구성은 외국인 자녀 특별학급과 협력학급(원적학급)으로 이원화하여 구성함 • 외국인 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은 15인 이내로 구성함. • 외국인 합법 근로자 및 불법체류자 자녀 모두를 대상으로 함 • 입학일 기준으로 장기체류 학생, 고학년 학생 순으로 입학 결정 • 무학년 복식학급 형태로 운영함. 									
교육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은 생활적응(도덕,사회), 문화언어적응(국어,영어), 교과적응(수학,과학)의 형태로 구성함. • 예체능교과 및 실과, 재량, 특활은 협력학급에서 운영함. 									

<표 9>에서는 안산 w초등학교의 다문화 자녀 특별학급에 대한 운영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w초등학교의 경우에도 남양주C초등학교와 같이 교육정책당국의 교육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교육 연구시범학교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64) 원일초등학교, “생활적응 프로그램 구안 및 적용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학교생활지도방안” 2007, pp.21~22.

있으며 이는 시흥 S초등학교의 경우에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W초등학교의 사례는 남양주C초등학교와 달리 별도의 특별학급을 설치하여 (특별학급+협력학급)의 이원화된 운영사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운영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W초등학교의 경우, 특별학급 구성을 위한 학급규모, 교육과정, 입급기준 등에 대한 학교자체의 원칙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예체능 교과 및 재량, 특별활동을 제외한 교과(도덕,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교과에 대해 무학년제 복식수업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운영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서 남양주C초등학교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을 두지않고 일반학급에서 모든 수업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크게 대비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들 사례에서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학급운영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급편성을 위주로 한 교육권 보장방안에 대한 내용이 연구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모중 한 쪽이 한국인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사례와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제4절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시사점

1~3절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현황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정책(시책), 일선학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교육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속가능하며 실천가능한 장기적 로드맵(Load-Map)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최근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한 한국의 경우, 구미(歐美)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할 때, 지속가능하며 실천가능한 형태의 장기적 차원의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권 보장 계획의 마련이 절실하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지난 수 년간 한국사회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각종 플랜(Plan)을 제시하고 있지만,⁶⁵⁾ 우리 사회의 다문화화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종합계획은 여전히 구축되어 있지 못

65) 지난 참여정부 기간동안, 정부는 제1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2010) 및 사회비전 2030을 통해 새로운 사회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차별과 배제가 없는 열린 다문화’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제결혼가정 및 이주노동자 가정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다분히 선언적 의미가 강하며 실질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후속 방안은 마련되고 있지 않다.

한 실정이다.⁶⁶⁾ 이는 결국, 미국을 비롯한 유럽각국이 지난 기간동안 겪어왔던 인종간의 갈등, 교육권 보장의 불평등을 한국사회 역시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 한국이 추구하는 미래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둘째,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가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문화 가정의 범주에는 한국국적을 가진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와 함께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가 포함된다. 하지만, 현행 법 체계에는 새로운 교육 소외계층인 이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권 보장 방안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못하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유엔아동권리협약이나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외부로부터 한국정부에 대해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권 보장을 요청받은 후 우리정부는 뒤늦게 초등학교 교육에 대한 교육권 보장을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중고등학교 이상의 중등교육에서는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개선될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을 위시한 구미(歐美)선진국들이 인권보장적 차원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육권 보장에 대해 한국사회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임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과정이 국가단위에서 구축되어 있지 않다. 현행 교육과정은 다문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우리 국민만을 위한 교육과정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백의민족, 한민족등의 원색적인 표현과 함께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성이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곳곳에서 묻어나고 있으며 다문화 사회를 맞아 새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되고 있는 국제결혼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에 대해 학습자와 교사가 고민하고 열린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해 놓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앞서, 일부 연구시범학교의 경우, 교육과정과는 별도의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다문화 가정자녀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주류(主流)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시대의 변화에 맞게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마인드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66)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등 다문화 정책관련 기관이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분산적인 정책을 추구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해 볼 수 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의 경우,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대책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지원정책으로 일관은 아쉬운 것운 점으로 지적된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사회비전2030”, 2006, pp.115~117. ; 대한민국정부,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0“2006,p.30 ; 교육인적자원부,“2007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 지원계획”, 2007,pp.10~14.)

할 것이다.

넷째, 국제결혼가정 자녀 및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국제결혼가정 자녀 및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는 인종, 혈연, 문화면에서 기존의 한국인과는 다른 차별성을 지닌 존재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있어서도 이들의 문화, 정체성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에 비해 우리 교육현장은 여전히 주류(主流)한국인들만의 교육을 위한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거나 매우 독특한 외모 등으로 인해 부적응과 좌절을 겪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고 정착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다문화 특별학급을 담당할 교원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 및 연수체제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지도에 있어 열린 마인드를 통해 지도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지도할 지도교원에 대한 구체적인 양성 및 연수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그들이 가진 문화와 정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다문화 학급 담당교사 양성 및 연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다문화 교육정책이 일선학교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 교육은 교육행정당국이 가진 열린 마인드가 일선학교에 까지 전파되고 내실있게 실천될 때,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연구시범학교로 지정받은 일부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다문화 교육의 마인드가 내실있게 전파되고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곱째, 다문화 특별학급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부 다문화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교 자의적으로 설치하거나 복식수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선 학교현장에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 다문화 특별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며 이에 대한 입급, 정원, 재정지원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제5절 국내 다문화교육에 대한 평가

이상에서 국내의 다문화 교육정책과 일선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교육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내의 다문화교육은 일부 국제결혼가정 및 외국인근로자가정자녀가 밀집한 지역의 초등학교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이 지정한 연구시범학교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물론, 과거에 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과정이 양적으로 증가하며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사양성과정에서 이들 다문화가정 자녀 지도를 위한 커리큘럼 개설에 대해 과거에 비해 적극적이지만, 여전히 일선학교에서 체감하는 다문화교육의 실태는 미흡한 면이 적지 않다.

예컨대, 일선학교의 관리자(교장,교감)들은 여전히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해당학교에 취학하거나 진학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특히,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이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하며 학교 내에서 소수를 차지하고 나아가 언어적 표현능력의 미흡과 사회성 결여로 인해 잠재적으로는 따돌림 내지는 학교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아동을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교사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가정 및 결혼이주여성을 부모로 둔 다문화가정자녀의 경우, 학교에서의 교사와 아동간, 교사와 학부모간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며 다른 한국 아동들로부터 따돌림, 편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꺼려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시도교육청과 같은 교육행정당국이 다문화교육을 현재처럼 특별학급 또는 연구시범학교의 차원에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일선학교에 다문화교육을 위한 학급을 확대·신설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일선학교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5장 외국의 교육권 보장 실태

제1절 미국

200년 이상의 이민 역사를 지닌 미국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 및 이민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교육제도 및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각 인종간의 통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교육정책은 건국 초기부터 상당기간동안 공교육제도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유입된 이민자와 이주민을 ‘미국인’으로 융화시키려는 노력을 견지해왔다.⁶⁷⁾ 이는 각 인종이 민족적 인종적 특성을 살리면서 미국사회에 융합되는 것이 아닌 기존 주류(主流)미국사회에 대한 일방적인 동화(同化)를 강요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동화위주의 정책은 흑백차별, 인종폭동 등 일련의 인종간 갈등을 거치며 1960년대 이후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백인위주의 교육과정, 교육정책개발에서 벗어나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있어 다양한 민족과 인종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고 교원연수를 통해 다문화 학습자료 개발방안과 인종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촉진하는 수업방법에 대해 개발하여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등 다문화교육의 마인드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⁶⁸⁾ 특히, 미국의 교육정책은 영어와 모국어 사용을 병행한 이중언어(ESL)정책이 특징이며 주정부마다 각기 다른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사회에서의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을 평균적으로 단언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다문화자정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연방 및 주정부차원에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다문화가정 교육권 보장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⁹⁾

예컨대, 불법이민자를 비롯한 교육소외계층을 위해 미연방정부는 초중등교육법 및 다양한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관련법을 기초로 학습증진프로그램, 학생건강, 영양, 생활조건,

67) 미국은 ‘인종의 용광로’라고 할 만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상호 어우러진 국가이며 국가통합을 위해 연방정부차원에서 건국이후 모든 인종의 특성을 융합시키려는 정책(Melting-pot/멜팅포트)을 추구해왔다.

68) 오성배, “한국 사회의 소수민족, ‘코시안’ 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제16권 제4호, 2006. pp.147~148.

69) 황범주,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 분석”, 안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pp.67~69.

가족환경등의 개선을 지원 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⁷⁰⁾

제2절 영국

영국은 미국과 함께 다인종 다문화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18~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동안 대영제국(大英帝國)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에 많은 식민지를 보유했던 영국은 일찍부터 다문화 다인종 사회를 유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영국사회는 다인종 다문화사회가 초래한 다양한 갈등상황에 처해 있다. 영국에 유입된 이슬람계 이민의 증가로 인해 기존 영국사회의 이념과 가치관이 이들과 충돌을 빚은 것이다.⁷¹⁾

영국의 다문화 교육정책의 기본 기조는 소수민족을 위해 교육기회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부터 초중등교육과정에 시민의식 형성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켜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인종차별이나 따돌림 같은 반 사회적 행동, 인종주의적 성향에 대한 훈련을 포함시켜 다문화사회에서의 소수민족을 위한 교육권 보장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한국과는 달리 교육을 포함한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전담기구인 ‘Future of Multi-Ethnic Britain’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소수인종의 불평등을 해소하거나 외국인을 위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⁷²⁾

제3절 독일

제2차 세계대전이후, 독일의 경제발전을 위해 유입된 터키계 이주민은 독국가차원의 사

70) 조영달,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2006-이슈-3, pp.26~27.

71) 영국에 유입된 이슬람계 주민은 그들 특유의 관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국사회와 인종적, 문화적 충돌을 빚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여성들이 착용하는 복장인 ‘히잡(Hijap)’, ‘니캅(Niqap)’에 대해 기존 영국사회는 공공장소에서 이들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슬람계 주민의 경우 그들의 문화적 관습을 유지하기를 바라며 이는 유럽에서의 주류(主流) 백인 사회와 외국인 이민자들간의 갈등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주간동아, “영국 ‘다문화주의’는 사회분열의 시한폭탄”, 주간동아 558호, 2006. 10.31.)

72) 오성배, “한국 사회의 소수민족, ‘코시안’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제16권 제4호, 2006. pp.149~150.

회통합정책 및 교육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독일은 이주난민 연방청과 산하 23개 사무소를 통해 다문화자녀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으며 다문화자녀에 대한 교육정책의 주요 방향을 독일사회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를 이해시키며 생산능력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상호 문화교육 프로그램, 가족프로젝트, 언어교육등이 대표적이데, 이는 독일사회의 발전을 위해 학교교육, 직업교육, 언어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⁷³⁾ 독일의 다문화교육정책의 특징은 가족프로젝트에서 나타나는데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유입을 단순한 노동자 개인이 아닌 가족 차원의 프로젝트로 인식하여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출신국가 언어교육을 통해 외국인 가족 세대간의 통합 및 사회적 부적응 현상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⁷⁴⁾

제4절 프랑스

프랑스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알제리, 모로코등의 북아프리카 식민지와 베트남등의 아시아 식민지에서 유입된 이주민으로 인해 이민의 역사가 깊으며, 2005년 아프리카계 이민에 의한 인종폭동으로 사회통합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의 교육체제는 보통교육, 의무교육, 무상교육이라는 세가지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종교, 인종의 차별을 두지 않고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고 외국인 이주노동자 및 그 자녀의 경우에도 프랑스어와 함께 모국어 교육대상에 포함시켜 그들의 출신국 문화와 언어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이후 상호문화교육의 확대와 함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을 위해 교육부 및 국립이민진흥청 차원에서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관용, 비인종 차별주의 교육에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상호문화교육을 통해 민족, 문화, 인종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⁷⁵⁾

프랑스의 다문화 정책의 방향은 다문화, 다언어 구성원의 완전한 통합을 통한 사회적

73) 황범주,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 분석”, 안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pp.67~69.

74) 조영달,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2006-이슈-3, pp.29.

75) 황범주,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 분석”, 안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pp.67~69.

안정을 기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통합적 정책서비스의 일환으로 우선교육지대(ZEP)를 시행하여 만 3세 아동의 유치원 조기입학, 결혼이민가정 자녀를 위한 진학지도⁷⁶⁾, 언어숙달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기존의 프랑스 사회와 외국인 자녀의 융화를 위한 시민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도 프랑스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따라 국가적 통합의 차원에서 모국어 교육은 최근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프랑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주민의 다양성을 공적영역에서는 제한하고 사적영역에서만 인정하는 것으로 다문화교육정책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⁷⁷⁾

제5절 스웨덴

스웨덴의 교육체제는 취학전 단계(pre-school), 의무교육(compulsory education), 중등학교(upper secondary education), 성인교육(adult education)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정책의 핵심은 언어교육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초등교육) 및 중등교육 단계에서 ‘제1언어교육(First language instruction)’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스웨덴어가 아닌 이주민의 출신국 언어를 지도하는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 한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함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스웨덴어 교육을 집중으로 실시하여 스웨덴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향상되도록 ‘제2언어로써의 스웨덴어(SSL, Swedish as a Secodary Language)’과정 및 ‘이주민을 위한 스웨덴어(SFI, Swedish For Immigrants)’과정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교육권 보장을 시도하고 있다.⁷⁸⁾

스웨덴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권 보장 정책은 근본적으로 인종적 문화적 소수

76) 생활환경이 열악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해 교사교류, 보충수업, 상급학교 방문, 안내책자 배부등을 통해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돕고 있다.(조영달,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2006-이슈-3, pp.28.)

77) 박원섭, “이주민 통합전략의 국가간 다양성 비교: 프랑스와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p.67~69.

78) SSL은 스웨덴학교에 재학중인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한 스웨덴어교육과정으로 의무교육(초등교육) 및 중등교육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비해 SFI는 16세 이상의 스웨덴에 이주한 모든 이주민을 대상으로 스웨덴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도록 스웨덴어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박원섭, “이주민 통합전략의 국가간 다양성 비교: 프랑스와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p.105~109.)

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스웨덴이 가지는 국가 정체성의 틀 속에서 유지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동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6절 외국사례에 대한 시사점

이상에서 나타난 미국과 유럽각국의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권 보장 정책에 나타난 시사점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미국과 유럽각국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수단을 갖추고 있다. 이민의 역사가 한국에 비해 월등히 긴 이들 국가들의 경우,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인종, 문화적 갈등을 경험한 데서 얻은 교훈을 통해 안정적인 다문화사회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동화보다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출신국의 문화와 언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다문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육 정책 역시 사회복지정책의 큰 틀 속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이를 보장하기 위한 무상교육, 의무교육, 출신국 언어·문화교육이 실천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둘째,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언어교육정책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었다. 스웨덴, 프랑스 등의 경우,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배척하지 않고 주류(主流)문화와의 상호공존을 인정하는 다문화 교육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와함께 자국의 언어를 교육하는 이중언어교육(ESL)정책을 병행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가 적극적으로 기존 사회에 적응하고 편입되며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다문화 교육정책에 대한 확고한 방향과 기초가 확립되어 있어야 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럽 및 미국의 다문화 교육정책은 큰 틀에서 볼 때, 국가적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소수자의 언어와 문화를 인정하는 기초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가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사회의 통합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으며 인종갈등, 문화간의 충돌로 인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은 최근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다. 결국, 서구 선진국의 이러한 시행착오는 한국의 다문화 교육정책이 분명한 철학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인권적 차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제7절 외국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평가

이상으로 미국과 유럽의 주요 다문화국가를 중심으로 이들의 다문화 교육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미국과 유럽의 다문화교육정책은 다문화사회의 출발단계인 우리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이중언어정책과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영국의 다문화정책 전담 기구 설치, 독일의 가족 프로젝트 및 상호언어교육, 프랑스의 우선교육지대(ZEP)시행, 스웨덴의 체계화된 언어교육정책등은 한국사회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다문화사회에 있어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어떠한 방향에서 시행되어야 할지에 대해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하지만, 구미선진국 역시 다문화사회가 지속되면서 인종간, 민족간의 불협화음, 갈등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프랑스와 호주의 인종간 갈등, 미국의 흑백갈등등의 문제는 이러한 형태의 다문화 교육정책들이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인종간의 화합, 다문화 교육을 통한 교육권 보장을 부르짖고 있지만, 그 근저에는 여전히 주류사회와 마찰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의 한국사회 또한 이러한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농촌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및 도시지역의 외국인근로자자녀들은 미래의 우리사회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구미선진국이 겪어왔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사회전반에 다문화 교육을 통한 교육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다. 그 첫걸음은 본 연구자가 앞서 제안하였던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의 법적 보장을 통해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권 보장은 반편견의 관점에서 인간 기본권의 하나인 교육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책들이 정부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6장 정책적 제언

4장과 5장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법적·제도적 차원의 정비, 다문화교육 정책지원시스템 구축, 다문화 교수·학습 여건의 조성, 교원연수 시스템의 구축, 교육과정의 개발 및 적용이라는 5개의 관점에서 실시하고자 한다.

제1절 법적·제도적 차원의 정비

1.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 법제화

4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행 법체계 내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권 보장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등 어느 영역에서도 보장되고 있지 않다. 물론, 2003년 유엔의 권고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이행 차원에서 합법 및 불법체류외국인 자녀에 대한 초등학교 과정의 교육권을 인정하여 초등학교에 한하여 취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외국인 노동자가정의 자녀(불법체류가정 포함)에 대해 초등학교과정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등 상급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헌법 및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인권적 차원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신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의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불법 합법체류여부를 막론하고 가장 기본적인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호혜적 차원의 근거조항이 될 수 있으며 신분불안, 불법 취업 및 체류등에 의한 신분노출 우려로 인해 가장 기본적인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다수의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다문화가정 자녀의 의무교육 대상 포함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자녀, 특히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의 경우, 경제적으로

빈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학교 이상의 진학에 있어서는 법·제도적으로 실질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순히, 중고등학교에 대한 진학의 길을 보장한다고 하여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으로 간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존재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교육비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 국적을 가지지 못한 가정의 자녀인 경우, 법이 정하는 의무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한국 학생에 비해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되며 이는 교육권을 제한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초·중등 교육법 12~13조에 나타난 의무교육대상 및 취학의무에 대한 법령을 개정하여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자녀의 경우에도 초·중등교육과 법이 정하는 수준(중학교 교육)에 대해 의무교육대상으로 포함시키도록 법제화하여 실질적인 교육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3.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에 대한 동등한 교육권 보장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제28조~29조에서 협약당사국이 아동의 교육권을 인정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법체계에서 이에 대한 어떤 규정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인권적 차원에서 불법체류외국인 자녀에 대한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헌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포함한 법제도 전반을 다문화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2절 다문화교육 정책지원 시스템 구축

1. 국가차원의 장기적 다문화 교육 로드맵 마련

법·제도적 차원의 정비와 함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국가적 차원의 다문화교육 로드맵의 수립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사회는 지난 1990년대 이후 10년이상 다문화사회를 지속시켜왔으나,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 정책비전은 여전히 수립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물론, 정부의 각 부처별로 단기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그때그때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기적 전략이나 비전은 여전히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

다. 이는 결국 각 정부부처별 다문화 정책에 대한 혼선(混線) 가능성과 함께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권 보장에 대한 장기적 계획과 방안 마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난 2003년의 사례와 같이 외부의 권고에 의해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하는 등의 수동적인 정책을 추구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장기적 전략마련이 필수적이다.

2. 정규교육기관과 대안교육 기관의 연계 시스템 마련

다음으로 정규교육기관인 일선 초중고등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인 다문화 대안학교의 연계를 통한 교육권 보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선 초중고등학교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에 대한 의무교육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한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정규교육기관에 취학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기존 한국학생들과의 교우관계 형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육기관차원에서도 이들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학급편성 및 특별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결국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부적응을 유발하며 궁극적으로는 교육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적응에 곤란을 느끼거나 대안학교에 대한 수학을 학부모나 학생이 원하는 경우, 본교의 학적(學籍)을 유지한채, 위탁교육의 형태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유연성 있는 연계시스템을 마련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⁷⁹⁾ 물론, 이 경우에도 학교 자체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교육 여부를 결정하도록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3. 교육행정기관의 다문화교육 정책 담당부서 신설

다문화 교육과 관련한 정책이 일선 학교현장에서 올바르게 적용됨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등 교육행정·정책기관에 다문화 교육을 전담하는 담당부서(담당과)를 신설하여 다문화교육 정책의 전문화를 기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현실적으로 요구된다. 예컨대, 교육과

79) 단,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교과에 대한 이수기준을 다문화가정 자녀에게도 적용하여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비정규교육기관에서 부실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기술부의 경우, 국제협력국내에 다문화교육 관련 담당과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육 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전문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함께 시도교육청은 교육국내의 학교정책과(교육정책과)에 다문화교육 담당과를 전문화시켜 신설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아동의 입·진학업무, 다문화교육 담당교사 양성 및 연수, 다문화교육 정책개발, 다문화교육 관점에 입각한 교육과정 개발등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과 함께 교육권 보장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3절 다문화 교수-학습 여건의 조성

1. 다문화교육 연구 시범학교의 활성화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의 경우, 매년 연구시범학교를 지정하여 1~2년의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을 주제로 한 시범학교의 경우에도 매년 전국적으로 시도별 3~4개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다문화 교육(외국인 근로자 특별학급)시범학교는 연구시범학교의 전체적인 지정규모로 보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매년 시도별로 1~2개 학교를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20개 교 이내의 학교를 연구시범학교로 지정하고 있으며(1,2년차 모두 포함), 시도교육청은 지역별로 2~3개소를 운영하여 전체적으로는 30개교이내의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시범학교 운영비율은 전체적인 교육수요로 보았을 때, 매우 미흡한 편이며 앞으로 다가올 다문화 사회의 추세와 변화의 속도를 감안할 때, 연구시범학교 지정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싶다. 구체적으로 교육부의 경우 시도별로 다문화가정 자녀가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시도별로 3~6개학교, 시도교육청별로는 관내 5~10개 학교를 추가로 지정하여 다문화교육을 활성화시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및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 다문화교육 특별 학급/다문화교육 중심학교 지정 운영

다문화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나타난 운영성과를 일선 초등학교에 일반화하거나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의 확대 설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미 경기도교육청의 시흥 및 안산지역에 1개 학급씩의 다문화 교육 특별학급(외국인 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는 다문화 교육의 수요에 비해 현실적으로 턱없이 낮은 설치율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인천, 남양주, 안산, 안양, 시흥등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국제결혼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 가정이 분포하고 있는 만큼 각 지역교육청 별로 관내의 다문화교육 수요를 조사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취학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문화 특별학급은 앞서 시흥S초등학교, 안산W초등학교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 다문화교육 특별학급과 협력학급의 2원화된 학급설치를 통해 한국어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콘텐츠 제공 및 한국 사회의 적응을 위한 사회성 함양이라는 2가지 관점에서 학급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자녀가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공단지역의 경우에는 이들을 위한 다문화교육 중심학교를 지정하여 해당학교에 다문화학급을 2개학급 이상 개설·운영하는 것도 필요할 것도 생각된다. 다문화교육 중심학교는 일종의 지역 다문화교육 거점학교의 개념으로 해당 지역교육청의 교육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학년별 다문화학급을 개설하거나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적용함으로써 좋은 환경 속에서 양질의 교육컨텐츠를 적극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문화교육 중심학교는 해당 지역교육청 관내에서 공동학구(學區)를 운영하여 공동학구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다문화교육 중심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며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통학버스)등을 부수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3.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상담시스템 구축

다문화 특별학급 및 중심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상담시스템 구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제3장-제3절. 다문화가정 자녀의 특성 편(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정적 자아형성, 언어 및 피부색의 차이에 의한 자아정체성 혼란, 외국인 부모의 출신국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 언어사용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사회

성 부족, 따돌림, 국가적 사회적 소속감 부족,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부적응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한국사회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맞춤형 상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상담시스템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가정, 학교, 사회에서 접하는 각종 부적응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助言)을 실시하고 해당 학생의 정상적인 학교 및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지역교육청이 학교별로 상담교사자격을 갖춘 전문상담교사를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상담교사자격을 보유한 교사풀을 조직하여 하여금 관내 학교를 순회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중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의 상담사 연수를 통해 관내학교를 순회하면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상담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다문화 가정 자녀 후견교사제 도입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찾아 이를 그 해결에 있어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 후견교사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정 자녀 1인당 1명씩의 후견교사를 학교내에서 지정하여 이들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여 줌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 및 후견교사간 1대1 상담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 후견교사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및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가 학교 및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있어 학교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절 교원연수시스템의 구축

1. 다문화 특별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양성 및 연수 체계 구축

다문화 특별학급을 담당할 담당교사에 대한 양성 및 연수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 초등학교는 특수목적대학인 교육대학교 및 한국교원대학교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교원을 양성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지도할 별도의 양성과정은 현

재로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교원대학교의 경우에도 초등교육과를 통해 초등교원을 양성하고 있는데 이 역시 다문화교육에 관한 별도의 교사양성과정을 개설해 놓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선교육대학 및 한국교원대학교에 설치된 심화과정(부전공)에 ‘다문화 교육과’를 별도로 설치하여 해당영역을 전공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교사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다문화사회가 요구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권 보장에 필요한 내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전공필수과목에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강좌를 편성하여 필수적으로 수강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다가올 다문화 사회에서 국제결혼가정 2세 및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인권존중 및 교육권 보장에 관해 현장 교원이 변화된 마인드를 가지고 교직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요구된다.

중등교사의 경우,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을 통해 교원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들 과정에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강좌를 개설하여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현직교사들을 위한 교원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이미 현장에서 학생지도를 맡고 있는 교사에 대해 필수적으로 다문화교육에 관한 내용을 이수하도록 연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직교사들의 경우, 교육대학, 한국교원대학교, 국사립 사범대학, 교직과정등에서 다문화교육에 관련한 강좌를 이수하지 않고 교직에 입문(入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 현직교사에 대해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마인드를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론,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이해에 관련된 내용으로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해당학급에 재학중이거나 다문화 특별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경우, 이에 대한 연수대상에서 우선 순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원연수의 경우, 다문화가정 자녀를 직접 지도하는 교사들은 120시간(8학점)이상의 시간을 배정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지도하도록 프로그램화 할 필요가 있다.

2. 협력학급 교사에 대한 연수체계 마련

다문화 특별학급 교사와 함께 협력학급 교사에 대한 연수과정의 개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협력학급이란, 다문화 특별학급에 입급한 아동이 원래 소속된 원적학급(原籍學級)을 의미하며, 예체능교과 및 재량활동, 특별활동을 일반 한국인 학생들과 같이 이수하도록 편성된 학급을 의미한다. 협력학급에서는 주요과목을 지도하지는 않으나, 일반 한국학생들과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어울려 사회성을 가르고 편견을 없애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협력학급 교사에 대한 연수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협력학급 교사의 경우에는 60시간이상(4학점)을 연수시간으로 확보하여 일선 교사들이 변화된 마인드를 가지고 다문화 가정자녀들의 학습권을 존중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연수 콘텐츠를 조직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에 다문화 특별학급, 협력학급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 교사는 교내 교사연수 및 교육청별 15시간이내의 연수를 통해 다문화 교육의 기본 개념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한 마인드 형성에 대해 수강하도록 연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5절 교육과정의 개발 및 적용

1.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현행 교육과정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 보장 차원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한 면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인적·물적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상에 나타난 민족중심, 혈연중심의 교과서 기술방식이 고쳐지지 않는 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곤란할 수 밖에 없음은 자명(自明)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초중등교육과정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단일민족중심의 교과서 기술관점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민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큰 울타리 속에서 혈연과 피부색이 다를지라도 개방적으로 받아드리며 차별하지 않는 반편견·반차별교육 교육의 이념이 교육과정상에서 교과서를 통해 실질적으로 구현될 필요가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구성상에서 있어 한국사 중심의 역사교육보다는 세계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교육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며 도덕, 사회과등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목적으로 한 교과들에 있어 다문화 사회의 변화와 이를 받아들이는 바람직한 자세에 대한 내용이 대폭 보강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아울러, 일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초중고등학교를 막론하고 다문화사회 및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인권존중에 관련한 내용을 특별활동의 적응활동영역 및 재량활동 영역에서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가령,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초등학교의 경우 연간 8시간이상, 중고등학교는 12시간이상을 다문화 사회의 이해와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인권존중에 관한 내용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한국어 교육과정 필수 이수 시스템 마련

국제결혼가정 및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가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단연 언어적 소통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내 국제결혼가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인 남편-외국인 이주여성 가정의 경우, 자녀의 양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외국출신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그 2세의 언어적 소통능력도 일반 한국인 가정의 자녀에 비해 매우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결국, 언어적 자극의 부족과 의사소통능력의 부족으로 상당수의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학습결손 및 따돌림, 사회성 부족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의 경우에는 양쪽 부모 모두가 한국어 구사능력이 매우 부족하여 학교현장에서 여러 가지 부적응을 겪고 있음을 상정해 본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국제결혼가정 및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과정 필수 이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현장에서 이들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고 이를 통해 필수적인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언어적 자극이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시기에 해당과정을 편성하여 방과후 다문화 특별학급 담당교사들로 하여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를 맡도록 함으로써 충분한 언어적 자극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학교생활에 조기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3.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자료의 개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한국어 교육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교육자료의 개발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 개발된 각종 다문화교육관련 교육자료의 경우, 한국인의 입장에서 우리 문화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데 치우친 느낌을 가지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부모의 출신국의 여건을 고려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일선학교에 일반화하여 보급하는 노력이 기울여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최근 베트남, 중국등 아시아권 뿐만아니라, 우즈베키스탄, 러시아등 다양한 국가에서 결혼 이주여성 과 이주노동자가 유입되는 만큼 한국어와 이들 외국어로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4.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적용

다문화 가정 및 일반 한국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 인권존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인권은 혈통, 피부색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한국사회에 만연한 순혈주의(純血主義), 혈통중심의 사고, 혼혈인에 대한 차별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성형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인 유치원·어린이집등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보육기관으로 부터 초등교육, 중등교육에 이르는 시기동안 인권존중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실질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사회, 도덕등 관련교과 뿐 아니라, 재량, 특별활동등 활동시간에 다문화 가정 급우에 대한 인권존중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 및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등이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가정 급우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당국과 학교가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은 단기간의 이벤트성 행사가 아닌 국가차원의 다문화교육 로드맵의 일환으로써 지속적으로 시행될 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7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의 결과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자녀의 교육권 보장에 관한 연구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다문화가정은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등을 의미하며 이들 가정의 형태는 세계화 및 국제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농촌사회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비중이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높아져있으나, 이들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문화적 차이, 언어적 이질성등으로 인해 차별과 편견, 언어소통능력의 장애, 자아정체성의 혼란등 복합적인 부적응현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그 결과, 일반 한국인 가정의 자녀에 비해 낮은 취학률과 학습결손등 교육권 보장면에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다문화가정자녀의 교육권이 적극적으로 보장 받지 못하는 주요인으로는 헌법을 비롯한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다문화가정자녀의 교육에 적합한 교육시스템을 국가적 차원에서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는 데에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다문화가정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 시스템 구축, 교육과정 개정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 내에서도 국제결혼가정에 비해 외국인근로자가정이 처한 현실은 더욱 열악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협약을 비준한 한국정부의 경우, 2003년 이후 외국인근로자가정의 자녀에 대한 초등학교 취학을 허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법제도적으로 구체적으로 명문화 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국을 비롯한 유럽각국의 경우, 국가적 정체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소수민족, 외국인을 위한 이중언어정책등을 통해 다문화가정자녀의 교육권 보장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무상교육, 의무교육의 대상에 다문화가정자녀를 포함시키고 별도의 언어사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등 제도적 정책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었다. 구미선진국의 다문화교육정책은 언어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적 소수자이자 취약계층인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해 교육소외계층을 배려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국가적 정체성의 유지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으며 최근 인종간 갈등을 겪는등 사회적 통합에 있어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깊이 참고해야 할 점으로 생각되었다.

넷째,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사회의 심화로 인해 교육정책당국에서 최근 다문화교육 및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의 개발, 적용에 있어 과거에 비해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나, 법 제도적 미비점, 다문화교육을 위한 정책지원시스템의 미흡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일부 연구시범학교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이 주도되고 있으며 일선학교에 있어 다문화특별학급, 다문화교육관련 프로그램등이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일선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을 위한 제반 여건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미래지향적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선 학교의 관리자 및 교사들 역시 언어적,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한 학습부진, 언어적 소통부재, 학부모-교사간 의사소통곤란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지도에 있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권 보장을 내국인의 수준과 동등하게 명문화하고 의무교육, 평등교육대상에 포함시키며 다문화교육정책 로드맵(load- map)을 마련하여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인 정책비전을 제시하여 이를 중심으로 전담정책부서 설치, 다문화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운영 활성화, 상담시스템구축등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육정책당국의 정책은 구미선진국이 거친 정책적 시행착오를 참고로 우리의 실정에 맞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제2절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가정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후속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은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새터민가정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각 가정의 구성 형태를 고려한 적절한 교육권 보장방안에 대한 후속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현재 부족한 편이며 가정의 형태 및 특성을 고려한 교육권 보장방안에 대한 탐색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정의 교육권 신장을 위해서는 우리보다 먼저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외국의 다문화 교육정책 적용사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50~200년 이상 먼저 다문화사회를 형성하여 유지하고 있는 유럽 및 미국의 다문화사회는 최근 다문화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한 한국사회에 여러 가지 유용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가 펼친 정책적 방향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변화의 중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정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제도와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이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우리사회의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 편견이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제도적 보완과 개선은 실질적인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교육권 보장에 있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며 사회적 통합과 인권의 보장측면에서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경기도교육청, “多문화! 다문화?”, 장학자료 2008-8, 2008.
- _____, “2007 희망경기교육 구현계획”, 2007.
- 곽원섭, “이주민 통합전략의 국가간 다양성 비교: 프랑스와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교육인적자원부, “2007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 지원계획”, 2007.
- _____, “다문화 가정 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개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 제2006-이슈-3, 2006.
- 국가인권위원회,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기본용어”, 2004.
- _____,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2004.
- _____, “외국인 관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004.
- 국가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 상담원, “다문화가정(혼혈 청소년) 청소년 연구-사회적응 실태 조사 및 고정관념 조사“, 2006.
- 김갑성, “한국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귀옥, “교육권의 이론적 근거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재련,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지위”,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2007.
- 김종서·이영덕, “교육학개론”,(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92.
-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다문화 개방사회를 위한 사회정책연구”,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연구과제06-07, 2006.
-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사회비전2030”, 2006.
- 대한민국정부,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2010” 2006.
- 박은애,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실태 조사연구-경상남도 다문화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법무부, “체류 외국인 100만명 돌파”, 법무부 보도자료, 2007.
- _____, “국적별 결혼이민자 체류현황(2007.12.31)”, 법무부 보도자료, 2007.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별 결혼이민자 체류현황(2007.12.31 현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도자료, 2007.
- 보건복지부, “여성결혼이민자 생활실태 조사결과 및 보건복지부 대책방안”, 2006.

- 서혁, “다문화가정의 현황 및 한국어 교육지원방안”, 인간연구(Journal of Anthropological Studies)제 12권, 카톨릭대학교 인간학 연구소, 2007.
- 오성배,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교육실태와 대안 모색”, 2007.
- _____, “한국 사회의 소수민족, ‘코시안’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제16권 제4호, 2006.
- _____, “코시안(Kosian)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교육, 제32권 제3호, 2005.
- 원일초등학교, “생활적응 프로그램 구안 및 적용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학교생활지도 방안”, 2007.
- 이수훈, “교육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이재현·안동현·황옥경, “아동과 권리”, (서울:창지사), 2007.
- 정범모, “교육과 교육학”, (서울: 배영사), 1971.
- 조영달,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정책연구과제2006-이슈-3. 2006.
- 천마초등학교,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결손 해소 및 공통체의식 함양”, 경기도교육청지정 외국인 근로자자녀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1차년도 보고서, 2007.
- 한국사회학회,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향 연구”, 여성가족부 용역과제, 2006,
- 황범주,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 분석”, 안양대학교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08.

참고기사

- 경향신문, “신혼부부 8쌍중 1쌍, ‘국제결혼’”, 2007.4.15 기사.
- 세계일보, “[‘다민족 사회’ 코리아 리포트]한국말 곧잘 하지만 말뜻 이해는 부족”, 2007. 4.24기사.
- 코리아플러스, “친구들 사이에서 영어 박사로 통해요”, 2008.5.6기사.
- 한국경제, “농촌 국제결혼2세, 학습장애 심각”, 2005.11.22기사.
- 한국일보, “기고/다문화가정 이혼대책을”, 2008.4.24 기사.
- _____, “호주 인종폭동 ‘종교충돌’ 비화”, 2005.12.4 기사.

기타참고자료

대한민국헌법전문